

# 목 차

## 보좌기관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1	3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공 보 관	27
2	4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안	상생협력 담 당 관	33
3	5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감 사 관	41
4	6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 한 조례안	"	43
5	7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	49
6	8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9
7	9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	65

## 기획경제실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8	10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안	정책기획과	75
9	11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87
10	12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	93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11	13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정책기획과	97
12	14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안	"	105
13	1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	117
14	16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	"	147
15	17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안	"	183
16	18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91
17	19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예산법무과	195
18	20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안	"	211
19	21	청주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	223
20	22	청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	227
21	23	청주시 장기발전계획심의회 설치 조례안	"	233
22	24	청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239
23	25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43
24	26	청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251
25	27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257
26	28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65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27	29	청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예산법무과	277
28	30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81
29	31	청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	289
30	32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	299
31	33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303
32	34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309
33	35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	"	317
34	36	청주시 정보화 조례안	정보통신과	327
35	37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37
36	38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	지역경제과	347
37	39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357
38	40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61
39	41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87
40	42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안	"	403
41	43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	435
42	44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	447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43	45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기업지원과	453
44	46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안	"	471
45	47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 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	481
46	48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491
47	49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안	"	497
48	50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	"	501
49	51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일자리창출과	509
50	52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19
51	53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	527

## 안전행정국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52	54	청주시 공인 조례안	총 무 과	535
53	55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 례안	"	553
54	56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	557
55	57	청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569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56	58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총 무 과	573
57	59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	583
58	60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591
59	61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605
60	62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	609
61	63	청주시 포상 조례안	"	625
62	64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637
63	65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안	"	643
64	66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	647
65	67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	663
66	68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안	"	677
67	69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안	"	881
68	70	청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	897
69	71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	899
70	72	청주시 리개발위원회 조례안	"	907
71	73	청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안	"	913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72	74	청주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	917
73	75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	"	923
74	76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안	"	929
75	77	청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안	"	943
76	78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953
77	79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	967
78	80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안전총괄과	971
79	81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	981
80	82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	1013
81	83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19
82	84	청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1025
83	85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033
84	86	청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51
85	87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063
86	88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	1069
87	89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	1077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88	90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총괄과	1085
89	91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91
90	92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운영 조례안	"	1095
91	93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101
92	94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09
93	95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	1117
94	96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	1129
95	97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1133
96	98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세 정 과	1145
97	99	청주시 시세 조례안	"	1167
98	100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	"	1183
99	101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93
100	102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1209
101	103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안	"	1215
102	104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229
103	105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	1247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104	106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 정 과	1259
105	107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 계 과	1263
106	108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	1271
107	109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1275
108	110	청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1281
109	111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안	"	1289
110	112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	1305
111	113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1349

## 복지문화국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112	114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복지정책과	1355
113	115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63
114	116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	1369
115	117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75
116	118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	1379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117	119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복지정책과	1387
118	120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	1395
119	121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안	"	1399
120	122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405
121	123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	1423
122	124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37
123	125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1445
124	126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용자 조례안	"	1449
125	127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	1457
126	128	청주시 장애인 자립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인장애인과	1463
127	129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	1467
128	130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	1475
129	131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485
130	132	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97
131	133	청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01
132	134	청주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	1505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133	135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노인장애인과	1513
134	136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519
135	137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525
136	138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31
137	139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	1539
138	140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	1545
139	141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	1551
140	142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575
141	143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79
142	144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583
143	145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591
144	146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여성가족과	1601
145	147	청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	1609
146	148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	1617
147	149	청주시 보육 조례안	"	1629
148	150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41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149	151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1649
150	152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 례안	"	1659
151	153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	1665
152	154	청주시 미혼자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71
153	155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 례안	"	1679
154	156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 례안	"	1689
155	157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 례안	"	1701
156	158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	1711
157	159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 례안	위생정책과	1721
158	160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729
159	161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안	문화관광과	1747
160	162	청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1751
161	163	청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	1755
162	164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운영 조 례안	"	1763
163	165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 례안	"	1777
164	166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783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165	167	청주시 총렬사 관리 조례안	문화관광과	1787
166	168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	1791
167	169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801
168	170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	"	1809
169	171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13
170	172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	1819
171	173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1829
172	174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	1841
173	175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859
174	176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867
175	177	청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체육교육과	1871
176	178	청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	1877
177	179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	1883
178	180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93
179	181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903
180	182	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911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181	183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체육교육과	1921
182	184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929
183	185	청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안	"	1945
184	186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	1951
185	187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965

## □ 농정국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186	188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안	농업정책과	1973
187	189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79
188	190	청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89
189	191	청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안	"	1995
190	19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안	원예유통과	2001
191	193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	2067
192	194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관리 조례안	"	2073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193	195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산 림 과	2077
194	196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	2117
195	197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131

## □ 도시주택국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196	198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시계획과	2141
197	199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	2145
198	200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155
199	201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시재생과	2163
200	202	청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	2167
201	203	청주시 도시개발 조례안	"	2183
202	204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안	"	2193
203	205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2201
204	206	청주시 건축 조례안	허가민원과	2209
205	207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	2251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206	208	청주시 경관 조례안	허가민원과	2279
207	209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공디자인과	2301
208	210	청주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309
209	211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	2323
210	212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377
211	213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2385
212	214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거정비과	2397
213	215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	2405
214	216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지적정보과	2453
215	217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	2457
216	218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	"	2463
217	219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	2473
218	220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	2487

## □ 건설교통국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219	221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	지역개발과	2509
220	222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	2515
221	223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525
222	224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도로시설과	2535
223	225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안	"	2539
224	226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	2553
225	227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2563
226	228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	2569
227	229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교통행정과	2583
228	230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2591
229	231	청주시 주차장 조례안	"	2603
230	232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633
231	233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	2639
232	234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중교통과	2659
233	235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665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234	236	청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대중교통과	2669
235	237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673
236	238	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2677
237	239	청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하천방재과	2689

## □ 직속기관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238	240	청주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 건 소	2699
239	241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	2703
240	242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안	"	2709
241	243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안	"	2717
242	244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723
243	245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733
244	246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2741
245	247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2747
246	248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	2759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247	249	청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 건 소	2763
248	250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2767
249	251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2773
250	252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781
251	253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안	"	2787
252	254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795

## □ 사업소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253	255	청주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평생교육원	2805
254	256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817
255	257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829
256	258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2839
257	259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	2855
258	260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고인쇄박물관	2865
259	261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875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260	262	청주시 유네스코 직지상 지원 조례안	고인쇄박물관	2879
261	263	청주시 직지의 날 조례안	"	2883
262	264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887
263	265	청주시 직지찾기운동 지원사업 운영 조례안	"	2897
264	266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	"	2903
265	267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문화예술 체육회관	2913
266	268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	"	2933
267	269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941
268	270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공원관리 사업소	2977
269	271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 례안	"	2997
270	272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 례안	"	3005
271	273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안	"	3013
272	274	청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021
273	275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상수도사업 본부	3027
274	276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안	"	3035
275	277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안	"	3069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276	278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상수도사업 본부	3085
277	279	청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	3099
278	280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안	"	3105
279	281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	3113
280	282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환경관리본부	3119
281	283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안	"	3127
282	284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안	"	3137
283	285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 례안	"	3143
284	286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 례안	"	3159
285	287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3165
286	288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 한 조례안	"	3181
287	289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	3201
288	290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	3213
289	291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3279
290	292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	3303
291	293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안	"	3325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292	294	청주시 지하수 조례안	환경관리본부	3331
293	295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	3349
294	296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	3375
295	297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안	"	3379
296	298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	3409
297	299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3417
298	300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안	"	3423
299	30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안	"	3459
300	302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3471

## □ 폐지조례안

순번	의안번호	조례명	소관부서	페이지
1	303	청원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폐지조례안	예산법무과	3485
2	304	청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폐지조례안	"	3487
3	305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 폐지조례안	정보통신과	3489
4	306	청원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지역경제과	3491
5	307	청원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폐지조례안	총무과	3493
6	308	청원군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3495
7	309	청원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행정과	3497
8	310	청원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499
9	311	청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501
10	312	청주시 행정절차조례 폐지조례안	"	3503
11	313	청주시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안전총괄과	3505
12	314	청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복지정책과	3507
13	315	청주시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노인장애인과	3509
14	316	청원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3511
15	317	청원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여성가족과	3513

순번	의안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페이지
16	318	청원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문화관광과	3515
17	319	청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3517
18	320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체육교육과	3519
19	321	청원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농업정책과	3521
20	322	청원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친환경농산과	3523
21	323	청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축 산 과	3525
22	324	청원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 건 소	3527
23	325	청원군 축택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3529



---

# 보좌기관

---



#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공보관)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규칙」, 「청원군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청원군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신문의 제호 및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4조)
- 신문의 게재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시민신문편집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 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시책 및 제도와 각종 생활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신문의 제호는 청주시민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발행인) 신문의 발행인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규격 및 발행) 신문의 규격은 타블로이드(273x394밀리미터)로 하고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민에게 긴급하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청주시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청주시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등에 관한 주요 내용
4. 각종 기관 사회단체의 행사 및 시민공지사항
5.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 예술, 경제, 농림축산, 법률 등 시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발행부서) 신문의 발행에 관한 사무는 공보관에서 주관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신문의 편집을 위하여 청주시민신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신문게재 내용의 기획·조정
2. 그 밖의 신문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편집위원은 신문발행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외부인사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신문발행 전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3조(시민투고 및 보상) 시민은 신문에 원고(사진, 만화 포함)를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된 원고가 채택되거나, 문답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배부처)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다음과 같다.

1. 청주시 지역의 전체 세대
2. 각 기관·단체·협회, 출향인사, 해외교민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민 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신문발행편집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 위 축 장

성 명 :

주 소 :

귀하를 매월 발행하는 청주시민신문의 기획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청주 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편집위원( . . . ~ . . . )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



#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상생협력담당관)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원청주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 조례」를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이행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3월 26일 ~ 2014년 4월 15일

- 안 제10조 : 위원 위촉해제 시 전체위원 1/3 이상 동의  
⇒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의견반영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생발전방안의 성실한 이행과 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발전방안”이란 통합 전 청원·청주 통합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가 협의하여 건의한 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통합 전 청주시 및 청원군(이하 “종전시군”이라 한다)의 장이 이행을 약속한 합의사항을 말한다.
2. “이행관리”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생발전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확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생발전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행관리계획의 수립) ① 제3조의 책무에 대하여 시장은 상생발전방안 이행관리계획(이하 “이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이행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발전방안 추진현황
2. 상생발전방안 세부사업별 이행관리일정
3. 상생발전방안에 대하여 중점 점검·평가할 이행관리내용
4. 그 밖에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견수렴절차 등) 시장은 이행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 상생발전위원회 건의사항
2.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3. 그 밖의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결과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이행관리계획을 청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제안하고 심의·의결 한다.

1.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대한 점검·확인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방안 미이행시 이행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3.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및 소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2는 위촉일 당시 읍·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 의원

2. 농민단체 대표

3. 학계·경제계·문화계·언론계 등 전문가

4. 통합 전 청원·청주 통합 시·군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원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목적과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정치활동 및 개인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생발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사무국) 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비상설 사무국과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  
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청원·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감사관)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35호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청원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감사관)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조례나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



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거나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의 고발
- ③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한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의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54호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공  
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  
다.

#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감사관)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안 제4조)
-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 및 보호(안 제10조, 제11조)
- 보상금 지급(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의 신분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시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 소속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3.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라. 직무를 유기(遺棄)하거나 게을리 하는 행위

- 다.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제3조(신고대상)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신고)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신고 기한) 부조리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7조(신고 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시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부조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자가 7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부조리 신고내용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 처리)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까지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사항 및 취지 등 신고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협조 등을 거부할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조사결과 처리)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의 조사결과를 조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 제10조(신분보장) ① 누구든지 부조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전보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신고자가 요구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공직자인 신고자가 충청북도 내 다른 행정기관으로 진출 등



인사교류를 요구하는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을 접수하거나 전달 받은 기관의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널리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통보사실을 즉시 조사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한 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진술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지급대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제3조의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14조(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보상금 지급)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같은 공직부조리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고한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5조에 규정된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하거나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제17조(환수) 시장은 보상을 지급한 후에 제16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벌칙) 각 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게 자체 징계의결양정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7호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조리 신고 및 신고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신고 및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제15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제2조제3호가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li> <li>·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li> </ul>
제2조제3호나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 또는 환수 결정금액의 10퍼센트 이내</li> </ul>
제2조제3호다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li> <li>· 알선 또는 청탁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li> </ul>
제2조제3호라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li> <li>·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행위 신고 시 100만원 이하</li> </ul>
제2조제3호마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li> <li>·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시 100만원 이하</li> </ul>

※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		전화번호	
피신고인 (부조리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증 병 서 류				
비 고				
<p>「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p>				

[별지 제2호서식]

##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 의결서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함.

다            음

[보상금 지급대상자]

일련 번호	신 고 자			지급대상	보상금액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

직 위	소 속	성 명	가	부	서 명
위 원 장	부 시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감 사 관		
-----	-------	--	--

#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감사관)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등(안 제5조 ~ 제10조)
- 운영상황의 공표 등(안 제11조)
- 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안 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청주시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청주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청주시의 의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청주시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2장 위원회의 조직 등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청주시의 실·국 및 과·공보관·감사관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규칙(「청주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0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3장 보칙

제11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할 때에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상 우대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력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시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변리사·노무사·세무사·행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전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활동비의 지급 등) 제5조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 제10조에 따른 자문위원과 제14조에 따른 민원상담전문인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의에 출석하였거나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96호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의안 번호	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감사관)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조례」를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조례」로 제정함.
-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부실공사 신고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실공사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 제2장 청주시부실공사신고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부실공사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실공사 판정과 부실등급 결정
2.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와 포상금액의 결정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청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부실공사로 신고된 공사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원장이 수시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실공사 현장을 확인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관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3장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및 부실공사 신고

제9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청주시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감사관에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10조(신고 대상 및 방법) ① 부실공사의 신고는 청주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와 청주시에서 설립한 공사·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는 제외한다) 2억원 이상의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부실공사의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거나 모사전송·사진·영상 또는 우편으로 하며,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③ 부실공사 신고서에는 해당 건설공사 명과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 부실 공사임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이 확실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11조(신고기한)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실공사의 신고는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준공한 날까지로 한다.

제12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시장은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는 통보받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설계도서와의 부합성 등 부실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



계획서와 시공기록사항(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고 된 부실공사의 등급과 포상금액에 대하여 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중지 명령)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실공사 여부의 결론이 날 때까지 현장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공정의 품질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부실공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 등 그에 상응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사 수주의 제한)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1~3등급 부실로 판정된 공사의 시공업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제32조,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장 포상금 지급

제15조(지급대상)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사항 중 부실공사로 밝혀지면 그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같은 사항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먼저 신고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6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부실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등급기준으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1. 1등급: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붕괴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2. 2등급: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3등급: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4. 4등급: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②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며, 부실공사의 규모와 중과실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익명이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3.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중이거나 이미 해당 신고사항이 수사 중에 있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제18조(지급통보 등)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5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한 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37호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실공사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 기 획 경 제 실

---



#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1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조례」와 「청원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을 통합하여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함.
- 시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녹색도시 추진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공간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은 녹색도시로 전환 및 발전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도시"란 기후변화 및 인간에 의한 자연과 지역공동체 파괴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환경부문을 자연에 담긴 순환, 공생, 균형의 원리에 맞게 전환하여 현재와 미래 시민이 쾌적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를 말한다.
2. "녹색도시시책"이란 산업경제, 생활복지, 교육문화, 도시교통, 생태환경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녹색도시 청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과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포함한 시책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4. "저탄소"란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



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5.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 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모든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어메니티(Amenity)"란 인간과 환경의 교감에서 얻는 아름다움, 쾌적함, 즐거움, 여유로움, 건강함, 친근감 등 긍정적인 감흥이나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의 속성이나 유익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녹색도시시책 추진의 기본원칙) 녹색도시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는 시민 모두의 참여와 민·관·산·학의 협력을 통하여 녹색도시 청주를 실현한다.

2. 기후변화 대응 등 자연환경 회복, 지역공동체의 발전, 쾌적한 생태학적 건강도시 환경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 등 삶의 질과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3. 시는 녹색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창출, 지역 내 균형 발전, 서민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자립성 강화 등 대안적 지역경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간다.
4. 시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저소비형·자원순환형 공간 창출, 녹색 교통 확대, 도로·교통·건물·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의 친환경적 개편, 지역간 균형발전, 생태성 회복과 어메니티(Amenity) 향상 등 품격 높은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순환형 도시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5. 시는 녹색생활문화 정착,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 사회적 다양성 강화 및 사회 불평등 해소, 서민복지 실현 등 교육문화와 생활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상생의 도시공동체를 강화시켜 나간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녹색도시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인근 시·군과의 공동 발전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녹색도시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

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이용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도시 기본계획 수립·시행 절차)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도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녹색도시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의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도 및 인근 시·군과 연계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시가 녹색도시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녹색도시 추진기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우선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1. 재난·재해대책 및 긴급 구호사업
2. 사회안전망 대책사업
3. 법정경비 및 부담금
4. 긴급 재정경제 대책사업
5. 그 밖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녹색도시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정책,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 녹색도시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녹색도시와 관련된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녹색도시 추진기구의 구성) ① 시의 녹색도시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및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공동 의장은 시장, 청주시의회위원장,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3명 이내로 하며, 상임 의장은 시민사회단체대표가 맡는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민, 민간·사회단체, 기업가, 행정가,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자로 공동의장 3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공동 의장이 위촉한다.

④ 상임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⑥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과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참여와 소통, 신뢰와 존중을 기반 한 민·관·산·학 협력체계의 구축 및 강화

2.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은 녹색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 추진 및 평가

3. 녹색도시 추진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광범위한 추진 동력 확보

4.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협력 및 정책협의
5. 생활권 단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활동 지원
6. 국가차원에서 법률로 제시된 위원회 기능(「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법」의 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 21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국내·국외 협력
8.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상임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③ 시는 녹색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는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비
2. 제12조에 따른 협의회 사업비
3. 시장이 요구한 정책자문 및 협의에 필요한 수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5조(녹색도시 책임관의 지정 등) 녹색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녹색경제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녹색경제를 구현하여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의 발굴 및 육성, 보조금 지급,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건물·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환경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해당 사항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0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시장은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은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 세대 및 미래 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지역·도시공간 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시, 기업 및 시민은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포함되고 녹색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시와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21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시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기업·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기업과 시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8호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규정」과 「청원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문단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청주시장이 요청하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연구 및 제안을 위한 청주시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2.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와 제안
3.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현안 사업의 연구
4. 국책사업 공모제안 연구
5. 그 밖에 시 정책에 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과 연구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면 지역과 동(洞)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한다.

1.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전문가
2. 청주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으로 지방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자문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자문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제5조(자문단장의 직무) ①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자문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7조(회의 및 자문) ① 자문단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 및 제안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단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단의 조사·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권리) 자문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시가 갖는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정책자문단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안 번호	1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와 「청원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정함.
-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심의회, 협의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해서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한정하여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27호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청원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나 규칙에  
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청원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1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와 「청원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함.
-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17조)
- 위원회의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공청회 등의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 12조)
- 포인트 부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주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주시와 청주시민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동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평등한 입장에서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은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형성, 집행 등 시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와 시민이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시와 시민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시에서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 기초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 참여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이행사항 보고의 형식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따라 시정의 모든 과정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회의공개 원칙)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회의 개최 후 빠른 시일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시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여 선발하는 등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

(互選)으로 하며,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소속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며,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연 1회 이상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제8조(예산편성의 시민참여) 시장은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정책토론청구제) 시민은 시에 거주하는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현안 및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 및 토론결과의 정책 반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



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토론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한 후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시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 후 15일 이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대규모 투자사업 및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나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 및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물, 우편물, 전자메일, 지역 언론 등을 통해 10일 이상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중·장기적인 시민참여 제도와 방법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문가, 비영

리 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시민참여 연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연구회는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국내·국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이행사항 및 개선과제 연구 등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분석 연구한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포인트 부여 등)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 포인트 부여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대상 및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공청회, 설명회, 명예감사관, 환경감시단 등을 통한 시책참여 및 유공자
2. 제안접수, 불편신고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정참여

제17조(인센티브 지급) 시장은 시민참여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인트 지급기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포인트 부여 제외) 별도의 수당 또는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55호 청주시민참여 기본조례 및 청원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와 「청원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함.
- 상징물의 종류(안 제3조)
  - 시기 및 문장, 캐릭터(마스코트) : 기존 청주시 상징물 활용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캐릭터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및 문장: 별표 1
2. 캐릭터(마스코트): 별표 2

제4조(문장·휘장) ①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2. 시 소속공무원의 신분증
3.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 면허증, 인가증
4. 시 공공시설, 시 소유 재산 및 관리 물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시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 이미지통합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벌 및 이미지모티브, 캐릭터 등을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주시 상징물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접수처리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건본 등 제출요구) 시장은 필요할 경우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건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 소속 공무원
3.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상표권과의 관계) 그 밖에 시장이 권리등록자로 등록된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이 조례에 준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194호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조례, 청원군 상징물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 청 주 시 기(제3조제1호 관련)

### (1) 시기 모양·색상



- 바탕 : 백색
- 마크 :
  - 녹색(좌측)
  - 노란색(우측)
  -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화있게 표현
- 로고 : 엷은 검정색

#### ※ 색상기준

녹색 : C85% + Y100%의 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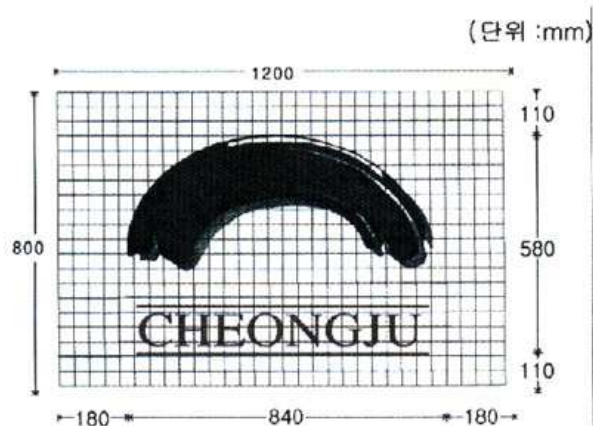
노란색 : C5% + M20% + Y100%의 혼합

색상변화 : 좌측 C85% + Y100%의 색에서

우측 C5% + M20% + Y100%로 Gradation

검정색 : K70%

### (2) 시기 규격( 가로 1200mm × 세로 800mm )



( 제작법 )

1. 깃면의 길이와 너비 3:2로 하고 도형은 비례에 따라 작도하되 다음의 예에 따른다  
예) 가로 30칸, 세로 20칸의 경우  
(가) 심볼마크의 상단여백과 로고의 하단여백은  $2\frac{3}{4}$ 칸으로 한다.  
(나) 심볼마크의 좌측여백과 우측여백은  $4\frac{3}{4}$ 칸으로 한다.  
(다) 영문로고의 가로와 세로는  $19\frac{1}{2}$ 칸과  $3\frac{1}{3}$ 칸이 되도록 한다
2. 필요에 따라 같은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제작 활용 할 수 있다.

(3) 문장



※ 문장은 필요에 따라 시기의 예에 의하여 색상과 규격을 적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단 색상과 여백 등의 조정시 칭주시 이미지 통합규정에 따라야 한다)

#### (4) 청주시기의 상징

##### **아름다운 국제문화예술의 녹색 도시 청주를 상징**

21세기 국제화시대의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고자하는 청주시민의 의지를 청주의 명물인 가로수 터널을 모티브로 하고, 우암산과 상당산성, 무심천의 형상과도 부합하도록 자유로운 붓 터치로 과감하게 표현하여

- 21세기의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희망을 무지개의 이미지로,
- 모든 시민이 함께 더불어 이루어 나간 화합과 단결을 등지의 이미지로,
- 중부권의 미래를 여는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문)의 이미지로,
- 자유스런 창작이 가능한 열려있는 문화예술의 도시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맑은 녹색에서 밝은 노란색으로 변화 있게 표현하여 희망찬 미래가 있는 활기찬 도시·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기 있는 도시의 특징을 부각시킴으로써 문화예술의 도시·아름다운 녹색도시의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하단의 로고타입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모티브로 하여 활자본의 형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활용함으로써 청주가 세계 인쇄문화의 발상지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심볼과 영문로고를 결합한 형태는 심플하면서도 국제화 시대에 잘 어울리도록 하였으며 “청주”의 이미지 전달성을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우리 자치단체만의 독창적 표현이다.

[별표 2]

## 캐릭터(마스코트)(제3조제2호 관련)

### 1. 기본형



2. 캐릭터 명칭 : **JAMODORI** (자모돌이)

### 3. 내용설명

**JAMODORI** (자모돌이)는 세계적인 문화 유산인 “직지”를 모티브로하여 “청주”의 자음과 모음을 활자의 형태로 풀어서 “직지”의 의미를 형상화한 것이다

여럿이 모여 있는 형상은 화합과 단결을 나타내며, 자유스런 각각의 동작은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자연 친화적이며 인간적인 형태의 다정한 모습은 미래의 청주를 조명한 것이다

## 청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신 청 인	기관단체 · 회사명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p>&lt;붙임 자료&gt;                  개인의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지참, 사용계획서 각 1부.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각 1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름.</p>		

[별지 제2호서식]

### 청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대장

연번	접수일자	신 청 인			처리일자	처리결과	비고
		성 명	주 소	연락처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의안 번호	1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청주시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청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청원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제정함.
-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조)
-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명칭·소재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설치와 사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22조)
- 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정원책정기준,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규정함 (안 제23조~제2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4월 15일 ~ 2014년 5월 5일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 본청 및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청주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장·국장의 직급과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읍장·면장·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재지) 시 본청 및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2장 본청

제4조(보좌기관의 설치)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공보관·상생협력담당

관을,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감사관을 둔다.

제5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 농정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을 두고 각 실장·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6조(기획경제실에 두는 과) 기획경제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를 둔다.

제7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회계과를 둔다.

제8조(복지문화국에 두는 과)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정책과, 문화관광과, 체육교육과를 둔다.

제9조(농정국에 두는 과)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제10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허가민원과, 공공디자인과, 주거정비과, 지적정보과를 둔다.

제11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건설교통국에 지역개발과, 도로시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하천방재과, 생활민원과를 둔다.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청주시보건소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에 주민의 보건의료 편의도모를 위하여 상당구보건소, 서원구보건소, 흥덕구보건소, 청원

구보건소를 설치하고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읍·면·동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편의도모를 위하여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는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는 지소장을,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별표 4의 사무를 분장한다.

## 제2절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특화사업·농촌지도사업 및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의 수행과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와 농업기계종합관리소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와 농업인상담소, 농업기계종합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별표 6의 사무를 분장한다.

#### 제4장 사업소

제16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7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한다.

#### 제5장 하부행정기관

##### 제1절 구

제18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8과 같다.

제19조(구청장) 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구청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과 읍장·면장·동장을 지휘·감독한다.

##### 제2절 읍·면·동

제20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 발급, 리·통·반 조직운영 및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읍장·면장·동장 등) ① 읍·면·동에는 읍장·면장·동장을 두며, 읍장·면장·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읍·면에는 읍장·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부읍장·부면장을 두며, 오창읍에는 총무과·개발과 및 산단관리과를 둔다.

## 제6장 공무원 정원

제23조(정원의 총수) 청주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2,709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67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4명

제24조(정원채정기준) 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지방전문경력관으

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한시기구) 건설교통국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한시정원) 본청의 정원 중 4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청주시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청원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청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청원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 소재지**(제3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청주시청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북문로3가)
청주시 상당구보건소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청주시 서원구보건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 (사직동)
청주시 흥덕구보건소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46 (비하동)
청주시 청원구보건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38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청주시평생교육원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3번길 52(복대동)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운천동)
청주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9 (사직동)
청주시공원관리사업소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61 (지북동)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2번길 77(지북동)
청주시환경관리본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43번길 49 (영동)
청주시대외협력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당산동)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71 (명암동)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857 (신봉동)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청(임시청사)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북문로 1가)
	낭성면사무소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낭성시내길 21
	미원면사무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72
	가덕면사무소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보청대로 4646
	남일면사무소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501
	문의면사무소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시내1길 8-15

기 관 명		소 재 지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주민센터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32번길 31 (북문로2가)
	성안동 주민센터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72 (서운동)
	탑대성동 주민센터	청주시 상당구 당산로 9 (대성동)
	영운동 주민센터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29 (영운동)
	금천동 주민센터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50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주민센터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149 (용담동)
	용암제1동 주민센터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29 (용암동)
	용암제2동 주민센터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47 (용암동)
청주시 서원구	서원구청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 (사직동)
	남이면사무소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길 7
	현도면사무소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1길 9
	사직제1동 주민센터	청주시 서원구 대원로 45 (사직동)
	사직제2동 주민센터	청주시 서원구 총렬로 53번길 31 (사직동)
	사창동 주민센터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08 (사창동)
	모충동 주민센터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124번길 25 (모충동)
	산남동 주민센터	청주시 서원구 안뜸로 12번길 42 (분평동)
	분평동 주민센터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35 (분평동)
	수곡제1동 주민센터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22 (수곡동)
	수곡제2동 주민센터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61 (수곡동)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센터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128 (성화동)
청주시 홍덕구	홍덕구청(임시청사)	청주시 홍덕구 대농로 88(복대동)
	오송읍사무소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가로수로 174
	강내면사무소	청주시 홍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433
	옥산면사무소	청주시 홍덕구 옥산면 옥산시내1길 43

기 관 명		소 재 지
청주시 홍덕구	운천·신봉동 주민센터	청주시 홍덕구 사운로 216 (운천동)
	복대제1동 주민센터	청주시 홍덕구 증안로 86 (복대동)
	복대제2동 주민센터	청주시 홍덕구 신율로 103번길 42 (복대동)
	가경동 주민센터	청주시 홍덕구 풍년로 180번길 25-2 (가경동)
	봉명제1동 주민센터	청주시 홍덕구 직지대로 620번길 70 (봉명동)
	봉명제2·송정동 주민센터	청주시 홍덕구 주현로 41번길 18 (봉명동)
	강서제1동 주민센터	청주시 홍덕구 가로수로 1164 (강서동)
	강서제2동 주민센터	청주시 홍덕구 내곡로 26 (내곡동)
청주시 청원구	청원구청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 (우암동)
	내수읍사무소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3길 49
	오창읍사무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137-1
	북이면사무소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석성로 10
	우암동 주민센터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34 (우암동)
	내덕1동 주민센터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71 (내덕동)
	내덕2동 주민센터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28 (내덕동)
	율량·사천동 주민센터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7번길 52 (율량동)
	오근장동 주민센터	청주시 청원구 팔결로 121 (오동동)

## 실국장별 분장사무(제5조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기획경제 실장	1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심사분석·시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창조행정에 관한 사항
	3	조직관리·무기계약근로자·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4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5	예산·법무·통계에 관한 사항
	6	지역경제·물가·전통시장 및 상점가·유통에 관한 사항
	7	미래·첨단산업·신재생에너지·가스·석유에 관한 사항
	8	기업육성·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지원·수출·노사·창업에 관한 사항
	10	국제통상·수출, 국내외 기업유치 관한 사항
	11	일자리 총괄·실업대책·공공근로·고용지원·취업정보에 관한 사항
	12	지역정보화, 개인정보보호,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 전산장비, 전화교환, 통신민원, 어린이안전·방범용 CCTV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행정 국장	1	총무·의전·복무·사기진작·인사·포상·연금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공무원교육훈련·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환경관리원 제외) 노조·공인·정보공개·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행정구역·지역갈등·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4	시민단체지원·자원봉사·새마을에 관한 사항
	5	지역안전·재난관리 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무
	6	자치지원·선거·창의실용·사무능력·제안에 관한 사항
	7	민원에 관한 사항
	8	안전문화·교육·홍보에 관한 사무
	9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복구지원·지역재난협력에 관한 사무
	10	민방위대·민방위시설·장비에 관한 사무
	11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12	세정·개별주택가격·세입·세무조사·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복지문화 국장	1	복지기획·국가보훈·재해구호·기초생활보장·서비스연계·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요양보장·장애인복지·목련공원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여성인력개발·여성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보육시설·건강가족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식품안전·음식문화·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종교단체·문화재·전통문화계승에 관한 사항
	8	문화사업·문화기반시설·관광에 관한 사항
	9	체육진흥·체육시설·생활체육·청소년·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농정국장	1	농정기획 및 농업경영 안정지원
	2	농업인 단체관리 및 도농교류지원
	3	농업기반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4	친환경농업 육성
	5	고품질 쌀 생산 지원
	6	쌀·밭 직불제
	7	농산물유통시설관리
	8	청원생명 브랜드명품화
	9	원예, 특작, 화훼 생산지원
	10	정부양곡 관리, 가공식품 산업 및 농특산물 수출 육성
	11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12	축산경쟁력 제고, 축산위생, 동물보호, 가축방역
	13	축산물 판매업,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14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5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관한 사항
	16	산불예방,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7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등산로, 둘레길, 걷기길 조성에 관한 사항
도시주택 국장	1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2	개발행위·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학교용지부담금·일반건축·공동주택·경관에 관한 사항	
	4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5	아름다운 건축물·공공건축물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광고물·공공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공공청사·시 청사·관사·부서별 사무실 배치에 관한 사항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관한 사항	
	8	농촌주택개량사업·공가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9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 부과징수	
	10	지적재조사·공시지가·개발부담금·지적·도로명주소·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11	농지전용허가(협의), 국유재산 관리	
	건설교통 국장	1	도로행정·도로계획·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 안전시설물·가로등·보안등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시설 도로관리·보행자환경에 관한 사항	
4		농어촌도로 기본(변경)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무	
5		접도구역에 관한 사무	
9		교통행정·광역교통·교통정보·교통신호·주차장·철도·공항에 관한 사항	
10		버스행정·택시·화물·자동차관리·운수지도에 관한 사항	
11		하천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시행	
12		하천관리·무심천에 관한 사항	
13		유도선·수상레저에 관한 사항	
14		생활불편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별표 3]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2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청주시 상당구보건소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낭성면 보건지소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낭성시내길 21	낭성면 일원
갈산지구 진료소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갈산 무성길 5	갈산리, 무성1·2리, 삼산1·2리, 현암리
미원면 보건지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정로 19-21	미원면 일원
금관지구 진료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 계원로 617	옥화리, 월용1·2리, 금관1·2·3리, 어암1·2리, 계원리
운교지구 진료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 운교로 585	운교1·2리, 운용리, 대덕리, 기암리, 구방1·2리
용곡지구 진료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 초정로 472	용곡1·2리, 종암1·2리, 대신1·2리, 화원리
기암지구 진료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터기암길 6-42	기암1·2리, 가양1·2리, 화창리, 수산1·2리
가덕면 보건지소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보청대로 4646	가덕면 일원
행정지구 진료소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장 인차로 295-7	청룡1·2리, 삼항1·2리, 행정리, 국전1·2리
상야지구 진료소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야길 30	상야2리, 한계1·2리, 황청리, 문주2리
병암지구 진료소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병암3길 11-6	병암1·2·3리, 금거1·2리, 내암리, 시동리, 상야1리
문의면 보건지소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시내1길 12	문의면 일원
소전지구 진료소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길 1	문덕리, 후곡리, 소전1·2리, 염터리,묘암리, 마동1·2리, 산덕리, 구룡1·2리
두모지구 진료소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두모1길 13-20	두모1·2리, 도원1·2리, 등동1·2리, 품곡리
용암보건지소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60번길 17(용암동)	용암1동, 용암2동, 금천동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월오지구 진료소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다리실로 71	월오동, 운동동, 지북동, 평촌동, 방서동 일원
청주시 서원구보건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 (사직동)	
남이면 보건지소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길 7-12	남이면 일원
구미지구 진료소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구미길 16-1	갈원리, 비룡1·2리, 구미리, 사동1·2리, 산막리, 팔봉리, 구암리, 상발리
현도면 보건지소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1길 10	현도면 일원
하석지구 진료소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하석길 7	하석1·2리, 노산1·2·3리
청주시 흥덕구보건소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72번길 21(수동)	
오송읍 보건지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가로수로 174	궁평리(향교평제외), 오송리, 동평리, 서평리, 봉산리, 정중리, 상봉리
오송생명과학단지 보건지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67	호계리, 상정리, 공북리, 쌍청리, 연제리, 만수리, 궁평리(향교평)
공북지구 진료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연제로 641	상정1·2리, 공북1·2리, 호계리
강내면 보건지소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433	강내면 일원
태성지구 진료소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2길 9-39	당곡리, 황탄리, 산단리, 궁현1·2리, 연정1·2리, 저산1·2리, 태성1·2리, 사곡1·2리
옥산면 보건지소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시내1길 45-9	옥산면 일원
금계지구 진료소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금계2길 8	금계리, 수락리, 동림리, 장동리, 사정2리
호죽지구 진료소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가좌로 432-4	호죽1·2리, 장남리, 사정1리
소로지구 진료소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1길 68	소로1·2리, 남촌1·2리, 국사1·2리
강서보건지소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46(비하동)	북대1동, 가경동, 강서1동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청주시 청원구보건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38	
내수읍 보건지소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83번길	내수읍 일원
오창읍 보건지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137-1	오창읍 일원
가좌지구 진료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 가좌1길 47	가좌1·2·3리, 두릉리, 성제1·2·3리, 백현리, 후기1·2리, 용두리, 화산리
탑리지구 진료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리길 21-4	중신리, 신평1·2리, 농소리, 기암리, 탑리, 석우리, 상평리, 각리1·2리
유리지구 진료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신길 18	유리, 화산리, 일신리, 모정1·2리, 학소리, 여천1·2리
북이면 보건지소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석성로 10	북이면 일원
석성지구 진료소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용계1길 77	석성1·2·3리, 용계1·2·3리, 내둔리, 화상1·2리, 화하1·2리
영하지구 진료소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영하길 5	영하1·2리, 선암1·2리, 호명리, 석화리, 비중리, 비상리, 우산1·2리
추학지구 진료소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용계내추로 362	내추1·2리, 추학1·2·3리, 장양1·2·3·4리
오근장지구 진료소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팔걸로 121-1	외남동, 외평동, 외하동, 오동동, 정북동, 정상동, 정하동, 주중동, 주성동 일원

[별표 4]

보건소장 분장사무(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보건소장	1	보건행정종합기획 수립 및 시행
	2	보건진료에 관한 사항
	3	의약 및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
	4	감염병에 관한 사항
	5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7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	가족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9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0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1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보건·의약·감염병·가족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별표 5]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등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4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청주시 일원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3(강서동)	청주시 일원
낭성면 농업인상담소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낭성시내길 21	낭성면 일원
미월면 농업인상담소	청주시 상당구 미월면 단재로 2472	미월면 일원
가덕면 농업인상담소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보청대로 4650	가덕면 일원
남일면 농업인상담소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501	남일면 일원
문의면 농업인상담소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시내1길 8-15	문의면 일원
남이면 농업인상담소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길 7	남이면 일원
현도면 농업인상담소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1길 9	현도면 일원
오송읍 농업인상담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가로수로 174	오송읍 일원
강내면 농업인상담소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대성탑연로 433	강내면 일원
옥산면 농업인상담소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시내1길 43	옥산면 일원
내수읍 농업인상담소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3길 49	내수읍 일원
오창읍 농업인상담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137-1	오창읍 일원
북이면 농업인상담소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석성로 10	북이면 일원
오근장 농업인상담소 및 농업기계종합관리소	청주시 청원구 팔걸로 167	오근장동 일원
동부 농업기계종합관리소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관정길 215	상당구 일원
남부 농업기계종합관리소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시목외천로 473	서원구 일원
서부 농업기계종합관리소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길 183	흥덕구 일원
강서 농업기계종합관리소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3	강서동 일원
북부 농업기계종합관리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405	청원구 일원

[별표 6]

농업기술센터소장분장사무(제15조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농업기술센터 소장	1	농촌진흥사업 종합기획 수립 및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기반 조성 및 농촌진흥조직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업관련 인력, 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농촌생활개선사업, 여성농업인 육성 및 농촌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 임대사업, 교육, 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식량작물 및 농업환경에 관한 사항
	8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고부가가치 창출 등에 관한 사항
	9	축산기술 보급 및 농업경영개선과 강소농 육성에 관한 사항
	10	특용작물 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관한 사항
	11	미래농업개발 및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대응기술 등에 관한 사항
	12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연구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3	토양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업곤충 육성 및 축제에 관한 사항
	14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농식품분야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농업 융복합사업 추진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확산에 관한 사항
	16	도시농업관 및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업무
	17	도시농업 육성 및 다각적 도농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
	18	농촌테마공원 운영과 농촌체험 및 농업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9	귀농귀촌인 종합지원, 도시민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20	농업인 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1	읍면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관한 사항
	22	그 밖의 농촌진흥사업 및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사업소소장별 분장사무**(제17조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청주시평생 교육원장	1	행정의 종합기획 수립 및 시행
	2	평생학습관, 도서관 신규건립에 관한 사무
	3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에 관한 사무
	4	평생학습관 내 도서이용·열람·대출 등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6	평생교육 강사 및 교육생 관리
	7	평생학습 홍보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9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11	전국 평생학습도시와의 연계체계 구축
	12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4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15	평생학습축제에 관한 사항
	16	평생학습인 시상에 관한 사항
	17	평생교육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평생학습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19	청주시립도서관 운영
	20	청주시립 오송도서관 운영
	21	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및 지도감독
	22	청남어린이도서관 운영
	23	도서관 이용·도서열람·대출 등에 관한 사항
청주고인쇄	1	박물관 운영·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박물관장	2	고인쇄문화의 조사·연구·자료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3	직지찾기에 관한 사항
	4	직지세계화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 직지상에 관한 사항
	6	직지문화특구 조성사업
	7	직지BI(Brand Identity) 및 상표권 관리
	8	직지홍보시설물 관리
	9	직지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고인쇄박물관·직지와 관련된 사항
	문화예술 체육회관장	1
2		시립예술단 운영 및 지원, 지도감독, 입장권의 검인 및 대표관리
3		문화예술체육회관의 시설물 및 수리 유지관리
4		기계·전기·냉방·난방·음향·통신시설·소방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문화예술체육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 사업소장	1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 유원지에 관한 사항
	2	도시녹화계획, 도시녹화, 도시숲에 관한 사항
	3	띠녹지, 수벽, 학교 숲, 시설녹지, 로원에 관한 사항
	4	걷고 싶은 거리, 담장 허물기에 관한 사항
	5	도시근린공원, 문암생태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원점용, 녹지점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시설녹지, 도시녹화사업지, 꽃묘장, 양묘장에 관한 사항
상수도사업 본부장	1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 사항
	3	상수도시설의 신설·보수·유지관리
	4	수돗물 공급관로의 개량 및 유지관리
	5	수돗물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
	6	정수장, 배수시설, 가압장의 보호 유지관리

	7	먹는 물 공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상수도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 본부장	1	청소행정·쓰레기종량제·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기획, 환경영향평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소음·진동, 악취 등 생활공해 관리
	5	폐수배출사업장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환경보전, 야생동식물보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수·소음·진동·야생동식물보호·자연보전에 관한 사항
	9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관한 사항
	10	건설폐기물배출사업장에 관한 사항
	11	하수행정의 종합기획 수립 및 시행
	12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3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14	하수도 공유재산관리(보상, 소유권이전, 양여, 용도폐지 등)
	15	하수도 일반회계, 예산, 계약, 지출에 관한 사항
	16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17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8	하수 및 분뇨처리장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하수차집관로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추진·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 계획수립 및 지원
	21	지하수에 관한 사항
	22	차집관거 보수 및 유지관리
	23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24	소각·건조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25	수질시험 분석 및 약품관리
대외협력 사무소장	1	중앙 및 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2	국비확보관련 업무추진(중앙부처 및 국회)

	3	중앙부처 및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관리
	4	신규 사업 및 정책관련 자료수집
	5	지방자치대상 공모사업 발굴
청주랜드 관 리 사업소장	1	청주랜드 운영 종합기획 수립 및 시행
	2	입장료·대관·사용료에 관한 사항
	3	전시물품 보호 및 유지관리
	4	통일관, 천문 돔 운영
	5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6	관람객 안전관리
	7	청주랜드 시설의 유지관리
	8	동물원 조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조수사육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0	동물의 구입, 교환 등에 관한 사항
	11	동물사료의 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2	동물사육, 번식 등에 관한 사항
	13	인공포육 및 동물생태 연구
	14	질병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5	사체부검 및 병성감정에 관한 사항
	16	동물원 방역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청주랜드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차량등록 사업소장	1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 신규·변경·이전·저당·말소 등록
	3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4	다. 정기검사 및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5	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체 관리
	6	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7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가. 신규·변경·이전·저당·말소 등록
9	나. 조종사면허증 발급
10	다. 정기검사
11	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12	마. 사업자 신고·관리
13	바. 주기장 보유확인 신청
1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 사건처리
16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
17	자동차·건설기계의 취득세·등록면허세 관련 사무
18	가. 신고 납부
19	나. 보통징수
20	다. 감면에 관한 사무
21	라. 구제 업무
22	마. 독촉장 발부
23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무
24	그 밖에 자동차등록 및 사업소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8]

구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제18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읍 · 면 및 법정동)
상당구청 (임시청사)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북문로 1가)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영동, 북문로 1가, 북문로 2가, 북문로 3가, 남문로 1가, 남문로 2가, 문화동, 서운동, 서문동, 남주동, 석교동, 수동, 탑동, 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동, 명암동, 산성동, 용암동, 용정동, 방서동, 평촌동, 지북동, 운동동, 월오동,
서원구청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 (사직동)	남이면, 현도면, 사직동, 사창동, 모충동, 산남동, 미평동,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수곡동, 성화동, 개신동, 죽림동,
홍덕구청 (임시청사)	청주시 홍덕구 대농로 88(북대동)	오송읍, 강내면, 옥산면, 운천동, 신봉동, 북대동, 가경동, 봉명동, 송정동, 강서동, 석곡동, 휴암동, 신전동, 현암동, 동막동, 수의동, 지동동, 서촌동, 비하동, 석소동, 정봉동, 신촌동, 신성동, 평동, 신대동, 남촌동, 내곡동, 상신동, 원평동, 문암동, 송절동, 화계동, 외북동, 향정동
청원구청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 (우암동)	내수읍, 오창읍, 복이면, 우암동, 내덕동, 울량동, 사천동, 주성동, 주중동, 정상동, 정하동, 정북동, 오동동, 외남동, 외평동, 외하동

[별표 9]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 정·정 무 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10]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24조 제2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30.5% 이내	31% 이내	23% 이내	8.4% 이상	0.1% 이내

###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 직		지도 직	
	연구 관	연구 사	지도 관	지도 사
비 율	10% 이내	90% 이상	10% 이내	90% 이상

###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50% 이상		50% 이내		

[별표 1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5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읍면동
총 계	2,709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2,635	-					
2급	1	1					
3급							
4급	19	6	1	2	6	4	
5급	145	38	4	8	20	32	43
6급 이하 계	2,470	-					
전문경력관 계	1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1	1					
6급 이하 계	1	-					
연구직 계	20	-					
연구관	2			1	1		
연구사	18	-					
지도직 계	50	-					
지도관	4			4			
지도사	46	-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사업소장,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별표 1~별표4)
- 위임 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에 규정 (안 제3조)
-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사업소장, 읍장·면장·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4월 15일 ~ 2014년 5월 5일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사업소장 및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위임 사항)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 처리의 금지)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사업소장, 읍장·면장·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할 수 없다.

제6조(준용)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1항 관련)

[시장직속]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공보관	1. 구정 홍보 공보에 관한 사무	① 구정 홍보, 공보에 관한 사무	
	2. 보도에 관한 사무	① 구정관련 보도자료 작성·배포·분석	
		② 구정 홍보 우수부서 선정	
3. 시민홍보에 관한 사무	① 시민신문 구정 홍보 및 배부실태 등 점검	청주시민신문발행에 관한규칙	

[부시장직속]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감사관	1. 읍면동 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읍·면·동의 자체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19조
		② 상급기관수감계획 및 수감실시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35조
		③ 산하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④ 비위 예방대책과 시행	
		⑤ 다수인 관련 민원통제 및 민원 서류의 검열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22조3항
		⑥ 구청 산하기관(7급 이하)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 훈계 및 경고처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⑦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읍·면·동)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기획경제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예산법무과	1. 보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관리	지방재정법제17조
정보통신과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추진	① <b>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b> 단,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위의 규모를 초과한 건축물 포함) 및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가. 검사신청서 확인 나. 현장방문 사용전검사 실시 다. 사용전검사필증 교부 라. 위반사항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마. 재검사 및 그 밖에 사용전검사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6조 같은 법 시행령제 36조
		2.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확인(6층으로서 2000㎡미만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 제35조
	2.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확인	① <b>착공전 설계 검토</b> 단,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위의 규모를 초과한 건축물 포함) 및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가. 건축허가 시 착공전 설계도 검토 나. 착공전 설계 검토 확인결과 통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역경제과	1.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및 저장소 설치와 관련된 다음의 권한	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②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변경)허가	같은 법 제6조
		③ 지위승계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
		④ 동 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사용정지 제한 명령 및 지도·단속, 점검 등	같은 법 제9조
		⑤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10조
		⑥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수리	같은 법 제11조
		⑦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 수리	같은 법 제16조
		⑧ 안전관리자 해임 요구	같은 법 제16조
		⑨ 위해방지 조치명령	같은 법 제29조
		⑩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 액화 석유가스의 폐기명령, 봉인	같은 법 제29조
		⑪ 보고·조사 등	같은 법 제38조
		⑫ 청문	같은 법 제40조
		⑬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52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지역경제과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과 관련된 권한	① 수요자 시설의 개선명령	같은 법 제11조
		② 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수리	같은 법 제16조
		③ 안전관리자 해임 요구	같은 법 제16조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 일시금지 및 사용시설의 봉인 또는 임시영치	같은 법 제27조
		⑤ 위해방지 조치명령	같은 법 제29조
		⑥ 보고·조사 등	같은 법 제38조
		⑦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52조
	3. 석유판매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석유판매업 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1항
		② 석유판매업 신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
		③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④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	같은 법 제11조제1항
		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신고	같은 법 제12조
		⑥ 석유판매업 보고 및 검사 업무	같은 법 제38조
	4.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①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같은 법 제13조
		② 석유판매업 과징금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14조
		③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같은 법 제14조의2
		④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같은 법 제30조
		⑤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같은 법 제39조의2
		⑥ 고발	같은 법 제44조 내지 제48조
		⑦ 과태료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49조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관련	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33조
		② 석유판매업 보고 및 검사 업무	같은 법 제38조
	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행정처분	① 석유대체연료판매업 행정처분	같은 법 제34조
		② 석유대체연료판매업 과징금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35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지역경제과	7. 고압가스제조(냉동) 관련사무	① 고압가스제조(냉동)허가 및 변경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② 고압가스제조(냉동)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4조제2항
		③ 동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지도단속 점검 등 사후관리	같은 법 제9조
		④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9조의2
		⑤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	같은 법 제11조제4항
		⑥ 안전관리자 신고수리 등 관리	같은 법 제15조
		⑦ 위해방지 조치명령	같은 법 제24조
		⑧ 고발	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2조
		⑨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43조
	8. 도시가스 특정 가스사용 시설 관련 사무	①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② 안전관리자 신고 등 관리	같은 법 제29조
		③ 가스사용시설 지도·감독	같은 법 제40조의3
		④ 고발	같은 법 제50조 내지 제53조
		⑤ 도시가스 시공자 및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4조
	9. 제조담배 판매에 관한 사항	① 소매인지정	담배사업법 제16조
		② 소매인지정의 취소	같은 법 제17조
		③ 소매인영업소의 위치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④ 소매인의 폐업, 휴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22조의2
	기업지원과	1. 구별 기업인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구별 기업인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일자리창출과	1. 직업소개업에 관한 사항	①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②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③ 등록 또는 신고사업의 폐지신고 ④ 사업정지, 등록취소, 폐쇄조치 ⑤ 보고, 조사, 자료의 협조요청 ⑥ 포상금 지급 ⑦ 과태료부과·징수 ⑧ 지도단속 및 보고	직업안정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37조 같은 법 제41조, 41조의2 같은 법 제45조의3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총무과	1. 구·동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6급 공무원의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
		② 7급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승진(시장 자원배정) 나. 전보(관내 전보에 한함) 다. 휴직, 직위 해제, 면직, 징계 등의 임용 ※ 신규임용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 청주시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의2
		③ 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승진(시장 자원배정),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면직, 징계 등의 임용 나. 근무성적 평정 다. 경력평정, 가점평정 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신규임용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
		④ 5급 이하 공무원의 호봉 확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⑤ 청원경찰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청원경찰의 배치요청 나. 전보, 휴직, 직위해제, 면직, 징계 등의 임용 ※ 신규임용 제외	청원경찰법 제5조
	2. 구청·동 사무에 대한 정보공개 처리	①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부서 배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청주시정보공개 조례 제6조
자치행정과	1.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프로그램운영 지원 나. 프로그램발표회, 교육 추진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청주시 통장자녀장학금
	2.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대상자 선발 나. 장학금의 지급 다. 지급의 정지	지급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3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다음 권한	①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가. 단체상해보험 가입(보험금 청구) 나. 교육(워크숍), 체육대회 추진	청주시 통·반설치조례 제14조⑤항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안전총괄과	1. 민방위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①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 급수시설의 지정관리	민방위기본법 제15조
		②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③ 대피시설 안내 및 유도 표지판 설치	
		④ 민방위 장비 수급계획 및 구입	
		⑤ 민방위 준비 명령	
	2. 민방위 편성에 관한 사항	① 기술지원대 편성	민방위기본법 제18조
		② 소규모 직장민방위대의 통합 편성 및 연합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기본법 제19조
		③ 직장민방위대 편성, 개편, 해체, 이전, 명의변경 신고	민방위기본법 제20조
	3. 직장 민방위대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① 관내 직장민방위대 지휘감독	민방위기본법 제21조
		② 민방위대 정기검열	민방위기본법 제2조
	4.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① 민방위대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민방위기본법 제23조
		② 직장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통지서의 작성전달	민방위기본법 제24조
		③ 직장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대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의 승인	
④ 직장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대의 교육 훈련 불참자 조치			
5. 직장 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의 동원 및 유예	민방위기본법 제26조		
6.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에 관한 사무	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청주시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4조	
7.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	①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에 관한 사항 가. 보험안내 및 홍보(설명회 등) 나. 가입동의서 배포·취합 및 대상자 선정 다. 가입대상자 현장 실사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세 정 과	1.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① 체납처분 가.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납세자별 1,000만원(본세) 이상 체납액 관련 사무는 제외 한다. (단, 시장·구청장은 모든 체납세 징수가능)	지방세기본법 제4조, 제6조
		② 결손처분 가.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납세자별 1,000만원(본세) 이상 결손처분 관련 사무는 제외 한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
		③ 시세감면	청주시 시세 감면조례 제1조
회 계 과	1. 일반재산(도유,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① 대부료 부과징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② 변상금 부과징수	
		③ 대부료, 변상금 체납징수	
		④ 일반재산의 실태조사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복지정책과	1.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	① 자활근로 선정 및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②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급	같은 법 제9조
		③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회수 및 사후관리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용자조례 제13조
		④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지원 및 회수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급	같은 법 제12조
		⑥ 행여 사망자 처리 및 장제비 지급	같은 법 제1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⑦ 해산·장제급여 지급	같은 법 제13조
		⑧ 자활급여 지급	같은 법 제15조
		⑨ 기초생활보장 조사 및 관리	같은 법 제22조
		⑩ 차상위계층 조사 및 관리	같은 법 제24조
		⑪ 수급자 확인조사 실시	같은 법 제23조
		⑫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회수 및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⑬ 정부양곡 할인 지원	같은 법 제9조
	2.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① 의료급여대상자 선정, 통보 및 관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② 의료급여증 발급, 변경, 재발급, 반납 및 회수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5조
		③ 의료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의료급여법 제11조
		④ 의료급여 대불금의 신청 및 상환 사무	같은 법 제20조~제22조
		⑤ 부당이익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23조
		⑥ 장애인 보장구 급여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⑦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 및 선택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⑧ 의료급여 업무 및 사례관리	같은 법 제5조의2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노인장애인과	1. 장애인에 관한 사항	① 장애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49조
		②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같은 법 제66조
		③ 장애인자립기금대여(용자)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④ 장애인 자동차표지 교부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⑤ 장애인연금대상자 조사 및 관리	장애인연금법 제9조
		⑥ 장애인연금 지급	같은 법 제13조
		⑦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무	장애인복지법제23조
		⑧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주차장법
	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①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상담·입소·이용의뢰 등의 조치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②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노인복지법 제33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7조
		③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노인복지법 제39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무	노인장기요양법 제4조
		⑥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추진 사무	노인장기요양법 제6조
		⑦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노인장기요양법 제61조 노인장기요양법시행규칙 제29조
		⑧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조사 책정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⑨ 기초노령연금 지급	같은 법 제8조
	3.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의 설치 및 신고	노인복지법 제37조
		②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의 폐지 및 휴지 신고	같은 법 제40조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의 감독	같은 법 제42조
		④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의 정지·폐지명령 및 청문	같은 법 제44조
		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에 대한 비용 보조	같은 법 제47조
	4. 장사등에 관한 사무	① 장례식장, 사설묘지 등의 신고, 관리, 행정처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여성가족과	1.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①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② 한부모가족 대상자 조사 및 관리	같은법 제10조
		③ 요보호여성 상담 및 보호조치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
	2.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① 요보호대상자의 보호·시설보호 조치	아동복지법 제10조
		② 아동 등에 대한 조사	같은 법 제30조
		③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아동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④ 결손결함가정 보호지원	결손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침
	3.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 집에 관한 사항	① 설치인가 및 설치신고 수리	영유아보육법 제13조,
		②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③ 인가증·신고증의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④ 인가의 취소 등	영유아보육법 제45조
		⑤ 폐지 또는 휴지의 인가 및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3조
		⑥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⑦ 보고와 검사	같은 법 제42조
		⑧ 구청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① 셋째자녀이상 양육비 지원	아동복지법 제10조
② 저소득층 보육료 지급대상자 관리		아동복지법제34조	
위생정책과	1. 공중위생영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조의2
		②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③ 영업의 폐쇄조치 등 행정 처분 (과징금 포함)	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제20조
		④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등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⑤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7조
		⑥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3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생정책과	2. 식품접객영업 및 식품 소분판매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제과점, 식품소분 판매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② 허가(신고)업소 위생지도	같은 법 제32조
		③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1조
		④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과징금 포함)	같은 법 제71조~제75조, 제77조~제79조, 제81조~제82조, 제93조~제98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	제101조
	3. 건강 기능식품 수입업,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영업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 지위승계 및 관리업무	① 영업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 지위승계 및 관리업무
		②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과징금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포함)	같은 법 제29조~37조, 제47조
		③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3조
		④ 신고업소 위생지도	같은 법 제20조
	4.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업무	음식문화개선 업무	식품위생법 제47조
5. 식중독 예방관리에 관한 업무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위생법 제86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문화관광과	1. 영화상영의 신고에 관한 사항	① 영화상영의 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② 영화상영의 제한	같은 법 제42조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9조
	2. 게임 산업에 관한 사항	① 게임제작업·배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②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같은 법 제26조
		③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등록	같은 법 제26조
		④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등록	같은 법 제26조
		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고)	같은 법 제26조
		⑥ 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등록, 신고)	같은 법 제26조
		⑦ 영업의 승계 신고	같은 법 제29조
		⑧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30조
		⑨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	같은 법 제31조
		⑩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같은 법 제35조
		⑪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36조
		⑫ 타. 폐쇄 및 수거 등	같은 법 제38조
		⑬ 청문	같은 법 제40조
		⑭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8조
	3.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② 등록증의 교부	같은 법 제60조
		③ 변경등록	같은 법 제61조
		④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64조
		⑤ 행정처분 등	같은 법 제67조
		⑥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68조
		⑦ 폐쇄 및 수거	같은 법 제70조
		⑧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9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문화관광과	4. 음악 산업에 관한 사항	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같은 법 제16조	
		③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같은 법 제18조	
		④ 신고증 및 등록증의 교부	같은 법 제20조	
		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1조	
		⑥ 폐업신고의 수리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24조	
		⑦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같은 법 제27조	
		⑧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28조	
		⑨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같은 법 제29조	
		⑩ 청문	같은 법 제30조	
		⑪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6조	
	5. 출판사에 관한 사항	① 출판사의 신고, 변경, 신고확인 교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② 신고필증의 반납	같은 법 제11조	
		③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 등	같은 법 제25조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8조	
	6. 인쇄사에 관한 사항	① 인쇄사의 신고, 변경, 신고필증 교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② 신고필증의 반납	같은 법 제13조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5조	
	7. 저작권에 관한 사항	①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저작권법 제133조	
	체육교육과	1.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①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②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32조
③ 청문			같은 법 제33조	
④ 신고수수료 징수			같은 법 제37조제3호	
⑤ 벌칙			같은 법 제38조제2항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0조	
2.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① 생활체육시설(동네체육시설) 설치·운영관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농업정책과	1. 농지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	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동지역)	농지법 제8조
	2. 농지전용 신고	① 농지전용 신고(동지역)	농지법 제35조
	3.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 (洞지역에 한함)	① 농업기반시설 (농로) 유지관리 (농로 및 동지역에 한함) - 처리부서 : 구청 건설교통과 ②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및 승인 (동지역에 한함) ③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및 체납처분(동지역에 한함) ④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및 승인 (동지역에 한함) - 처리부서 : 구청 농축산경제과	농어촌정비법 제13조, 제23조, 제24조
친환경농산과	1. 농약판매업 관리(등록)	① 농약판매업 등록	농약관리법 제3조
축산과	1. 동물병원 개설 신고에 관한 사항	① 동물병원 개설신고	수의사법 제17조
		②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같은 법 제18조
		③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같은 법 제17조의3
	2. 동물병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①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명령	같은 법 제30조
		② 동물진료업의 정지	같은 법 제33조
	3.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에 관한 사항	①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축산법 제17조
		② 휴업·폐업·재개 등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
	4. 축산물판매업에 관한 사항	①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 판매업 제외)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②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 판매업 제외)의 변경·휴업·재개업·폐업 신고수리	
	5. 축산물판매업 영업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	① 축산물 판매업((축산물 수입 판매업 제외) 영업과 관련한 미 검사품의 검사 및 수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①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수리	
		② 허가의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	
		③ 과징금 처분	
		④ 시설개선 명령	
⑤ 부정축산물의 압류·폐기·회수 처분			
⑥ 영업소 폐쇄조치			
⑦ 청문 및 과태료 처분			
6. 축산업 등록에 관한 사항	① 축산업 등록, 허가, 변경	축산법 제22조	
7.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①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법 제12조	
	② 동물의 구조 보호	같은법 제14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산림과	1. 농림사업 대상자 조사제출 및 사후관리	① 농림사업 대상자 조사제출 및 사후관리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2. 입목벌채	① 피해목 입목벌채	영 제42조1항, 시행규칙 46조 제1항 1호
		② 전,답 입목벌채 신고	시행규칙 46조 제1항, 4호
		③ 입목벌채신고	시행규칙 46조 제1항, 4호
	3. 입목등기	① 입목등기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4. 산림보호단속	① 산림보호단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5. 임산물 반출 및 극인관리	① 임산물 반출 및 극인관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6. 산림사법 실태조사 및 인지 보고	① 산림사법 실태조사 및 인지 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7. FGIS관리 및 운영(산림지리 정보시스템)	① FGIS관리 및 운영(산림지리 정보시스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산불방지 대책 수립	① 산불방지 대책 수립	산림보호법 제33조
	9. 입산허가 및 과태료 부과	① 입산허가 및 과태료 부과	산림보호법
	10.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	①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	산림보호법
	11. 산불진화장비 운영	① 산불진화장비 운영	산림보호법
	12. 산림인접지역 불놓기 허가	① 산림인접지역 불놓기 허가	산림보호법
	13.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④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병역법
	14. 가로수 이식 및 관리(측지 및 맹아제거), 복구, 변상금 부과 및 납부	① 가로수 이식 및 관리(측지 및 맹아제거), 복구, 변상금 부과 및 납부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16조
	15. 산지정화구역 관리	① 산지정화구역 관리	산림보호법
	16. 산사태 예방 및 피해지 조사	① 산사태 예방 및 피해지 조사	산림보호법
17. 다수민원 및 소송업무(구청)	① 다수민원 및 소송업무(구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8. 숲길(등산로)조사 및 관리	① 숲길조사 및 관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산림과	19. 산지전용신고		
	20. 산지일시사용신고		
	21.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		
	22. 대체산림조성비 부과·징수		
	23. 산지전용 위임사무에 대한 복구비 부과·징수 및 관리		
	24. 산지전용 위임사무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25. 산지전용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26. 산지전용 위임사무에 대한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준공		
	27. 산림병해충방제	① 가로수 일반방제	
28. 꽃길조성 및 관리			

[도시주택국]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도시계획과	1. 개발행위허가	① 무단개발행위 단속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제133조
		② 개발행위 허가-준공검사	같은 법 제56조, 제62조
	2. 토지이용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허가민원과	1.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협의 등	① 6층이하로써 연면적 2,000㎡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위임 규모를 초과하는 설계변경 포함)	건축법 제11조
	2. 증축허가 및 신고	① 기존건축물 연면적 10분의3 미만 범위내의 증축	건축법시행령 제117조3항
	3. 건축신고	① 건축신고(단, 건축법 제9조의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 제14조
	4. 위반건축물에 관한 사항	① 위반건축물 공사 중지 및 시정지시	건축법 제79조
		② 위반건축물 고발	
		③ 위반건축물의 추인 인가	
		④ 위반건축물의 사용 금지	
	5. 무허가 건축단속에 관한 사항물 (단,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부지의 건축물은 제외)	① 무허가건축물 예방	건축법 제11조
		② 무허가건축물 철거	제14조, 제79조
③ 무허가건축물 건축주 조치			
④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6.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단, 이행 강제금 부과는 제외)	주차장법 제19조의4	
7.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의 수리	①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및 협의	건축법 제20조	
8.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①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	건축법 제83조	
9.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본 등 발급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건축법 제38조	
	② 민원발급		
공공디자인과	1. 옥외광고물 관리	① 광고물의 허가, 신고, 협의, 기간연장 등 (수수료 징수 포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2. 광고물의 등의 안전점검	① 옥외광고시설물 안전점검	같은법 제9조
	3.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① 계고장발부, 현장정비, 고발조치	같은법 제10조, 제18조
②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공공디자인과	4. 광고물 등의 허가 표시의 취소	① 허가표시의 취소	같은법 제13조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법 제20조
	6.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③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같은법 제10조
지적정보과	1. 토지분할에 관한사무	① 토지분할(도시계획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관한사무	②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3.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① 지가조사 및 지가산정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4. 토지 등의 거래 계약허가에 관한 사항	①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② 허가신청 토지에 대한 선매자 지정 및 통지	같은 법 제122조
		③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조사	같은 법 제124조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44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지역개발과	1. 도로·교통안전 시설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도로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3조
	2.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
		②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도로법 제57조
	3.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	①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38조 제1항
		②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41조 제1항
		③ 도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도로법 제4조 제2항
		④ 도로원상회복	도로법 제43조
		⑤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허가·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도로법 제83조
		⑥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도로법 제84조
		⑦ 도로와 관련된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강제징수	도로법 제90조
		⑧ 공유 행정재산(읍·면지역)용도협의,폐지, 허가,관리등에 관한 사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4. 도로 및 교량의 유지관리 사무	① 도로 및 교량의 유지관리	도로법 제23조
		② 도로관리원의 임명	도로법 제63조
③ 도로폭 12m 미만의 도로개설 및 확장·포장 공사의 시행		도로법 제23조	
④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한 행위자에 대한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조치		도로법 제31조	
⑤ 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94조	
⑥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행허가		도로법 제34조	
5. 도로굴착에 관한 사무	①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	도로법 제38조	
6.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사무	① 불법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 징수	도로법 제41조	
7. 접도구역 관리	① 접도구역 관리	도로법 제49조	
도로 시설과	1. 가로 보안등에 관한 사무	① 가로등·보안등 시설 유지 관리	도로법 제2조, 제23조
	2. 국도,시도시설 용지 보상에 관한 사무	① 공공용지(도로)편입토지의 평가, 보상 및 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3.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	① 공유 행정재산 (동지역) 용도협의,폐지, 허가,관리등에 관한 사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교통행정과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및 부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가. 징수·부담금 경감비율 적용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접수	같은 조례 제8조
		다.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처리와 이행 여부 확인	같은 조례 제9조
		라. 통근관리인 선임 등	같은 조례 제12조
		마.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	같은 조례 제13조
		바. 부담금경감신청서 접수 및 경감신청 내역 확인 조사	같은 조례 제14조
	2.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영노외(둔치포함) 및 노상주차장 유지관리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제15조
		② 주차장(노상, 노외)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③ 민영주차장 설치·변경·폐지신고	같은 법 제12조
	1.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60조, 제161조
		②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같은 법 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3
		③ 비송사건 이첩	질서행위규제법 제21조
		④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	
		⑤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법 제6조
	4. 무단방치 차량 관리	① 무단방치 차량 신고접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②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같은 법 제26조
		③ 통고처분 및 검찰송치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 35호)
	5. 교통 신호등에 관한 사무	①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도로교통법 제3조
		②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도로교통법 제3조
대중교통과	1. 택시·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① 택시·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 계약 포함)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39조
	2. 자동차 관리사업의 자동차정비업 중 부분 정비업에 관한 사무	① 부분정비업에 관한 사무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변경,등록 포함)	같은 법 제53조
		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취소	같은 법 제54조
		다.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합병·휴업·폐업에 관한 신고의 처리	같은 법 제55조
	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명령	같은 법 제66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대중교통과	3. 자동차 관리사업의 자동차정비업 중 부분 정비업에 관한 사무	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72조
		바.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73조
		사. 단속	같은 법 제74조
		아.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75조
		자. 청문	같은 법 제84조
하천방재과	1. 소하천구역 안에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① 유지 및 토지의 점용	소하천 정비법 제14조
		②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제거	
		③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④ 토지의 굴착·성토·절토·형상변경	
		⑤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에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⑥ 소하천의 오손행위	
	2. 소하천 점용료	①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같은 법 제22조
	3.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 공유수면의 점용 및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8조
		②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3조
		③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의무의 이전 등 (이전허가, 상속신고, 점용허가 기간 연장허가)	같은 법 제16조
		④ 공유수면에서 법령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	같은 법 제21조
	4. 소하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 소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	소하천정비법 제3조
		② 비관리청 시행 소하천 공사허가 및 유지관리	같은 법 제10조
		③ 소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물건 등의 사용·수용	같은 법 제12조
		④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등	같은 법 제24조
	5. 지방하천 구역안에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① 토지의 점용	하천법 제33조
		② 하천시설의 점용	같은법 제33조
		③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같은법 제33조
		④ 토지의 굴착·성토·절토·형상변경	같은법 제33조
		⑤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에 산출물의 채취	같은법 제33조
		⑥ 하천의 오손행위	같은법 제33조
	6. 하천점용	① 지방하천, 국가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법 제38조
	7. 하천점용료	① 지방하천, 국가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등의 징수	같은법 제37조, 제50조
	8. 국가하천구역 안에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① 토지의 점용	같은법 제33조
		② 토석·모래·자갈·죽목 그밖에 산출물의 채취	같은법 제33조
		③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같은법 제33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상수도 사업본부	1.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 (읍·면장에 한함)	① 건축물기타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수도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②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③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1.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에 관한 사무	①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② 개선명령	같은 법 제15조
		③ 조업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16조
		④ 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7조
		⑤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같은 법제18조
	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사무	① 생활소음 진동과 규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②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수리 등	같은 법 제22조
		③ 공사장 소음측정기의 설치 권고	같은 법 제22조의2
		④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 초과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같은 법 제23조
		⑤ 이동소음의 규제	같은 법 제24조
		⑥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의 방지	같은 법 제25조
	3.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사무	① 보고명령 및 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② 청문	같은 법 제51조
		③ 과태료	같은 법 제 60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환경정책과	4.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사무 등	①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악취방지법 제6조
		② 배출허용기준의 운용	같은 법 제7조
		③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같은 법 제8조, 제8조의2
		④ 악취방지시설의 공동설치 등	같은 법 제8조의3
		⑤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⑥ 사용중지명령	같은 법 제11조
		⑦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12조
		⑧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제13조
		⑨ 개선권고 등	같은 법 제14조
		⑩ 악취관련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17조
	5. 악취의 방지에 관한 기타 사무	① 관계기관의 협조	악취방지법 제20조
		② 청문	같은 법 제22조
		③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30조
	6. 가축사육 제한	① 사육의 제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
	7. 가축 분뇨배출의 처리에 관한 사무	①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처리시설의 설치명령 등	같은 법 제12조
		③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④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같은 법 제17조
		⑤ 허가취소 등	같은 법 제18조, 제46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환경정책과	8. 가축분뇨의 재활용	①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수리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9. 설계·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①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관련 사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10. 보고·검사	① 보고·검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11. 가축분뇨 관련 청문 및 과태료	① 가축분뇨 관련 청문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같은법 제53조
	12. 먹는 물 수질관리	①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먹는물관리법 제8조
		②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같은 법 제8조의2
		③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42조
	13.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등에 대한 지도 감독	① 먹는물 관련 영업자, 냉·온수기 설치 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에 대한 지도와 개선 명령 등	먹는물관리법 제45조
	14. 먹는물 관련 과태료 처분	①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먹는물관리법 제61조
	15. 야생생물 보호	①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6.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 보상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관리 (신청, 준공 등) 및 피해보상 신청 접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항
	17.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 생물 보호 등	①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②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같은 법 제20조
		③ 야생동물 수출·수입 등	같은 법 제21조
		④ 야생동물 수출·수입 등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22조
		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관리 등	같은 법 제23조
		⑥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취소	같은 법 제23조의2
	18. 수렵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① 수렵면허 발급 및 갱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② 수렵면허 취소 및 정지	같은 법 제49조
		③ 수렵면허증 소지여부 등의 검사	같은 법 제56조 제2항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타 사무	① 청문 ② 과태료 처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같은 법 제73조
20. 건축물석면의 관리	①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 수리	같은 법 제23조	
	③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같은 법 제25조	
21. 석면해체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②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	같은 법 제28조	
	③ 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등	같은 법 제29조	
	④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명령 등	같은 법 제30조 제4항·제5항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환경정책과	22. 석면안전관리 관련 기타 사무	① 대집행	석면안전관리법 제39조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49조
	23. 공중화장실의 관리 등에 관한사무	①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같은 법 제9조 제2항·제 3항
		③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같은 법 제10조 제1항
		④ 간이화장실의 설치 등	같은 법 제10조의2 제1 항·제2항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신고 수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⑥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등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⑦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21조
	24.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① 토양오염의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명령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수리 등	같은 법 제12조
		③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같은 법 제14조
		④ 명령의 이행상태 확인	같은 법 제15조의2
		⑤ 오염토양의 정화 관련 사무	같은 법 제15조의3 제5 항
		⑥ 보고 및 검사 등	같은법 제26조의 2
		⑦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법 제32조
	25.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하수도법 제34조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같은 법 제37조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같은 법 제39조
		④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40조
	26. 분뇨의 재활용 등	① 분뇨의 재활용 등	하수도법 제44조
	27. 오수분뇨 관련 보고 ·검사 사무	① 오수분뇨 관련 보고·검사 사무	하수도법 제69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자원정책과	1.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폐기물관리법제14조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수리 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다. 과태료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15조
	3.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① 봉투판매소에 관한 사항 가. 봉투판매인 지정 나. 봉투판매소 위치변경 및 양도양수 다. 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라. 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청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3조
		②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같은 조례 제27조
	4.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폐기물의 투기 금지행위 단속	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분리배출 미이행, 종량제 규격 봉투미사용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
		②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매립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68조
		③ 폐기물의 투기금지 행위단속	같은 법 제8조
	5. 농촌폐비닐에 관한 사항	① 농촌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6.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① 폐기물(사업장, 건설, 지정, 의료)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7조
		② 폐기물(사업장, 건설, 지정, 의료) 배출자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7조
	7. 폐기물 처리신고에 관한 사항	① 폐기물 처리신고 ① 폐기물처리신고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③ 폐기물처리 신고 및 관리(고물상)	폐기물관리법 제46조
	8.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
② 폐기물 처리시설에 지도 점검			
9. 고형연료제품 공급 계획 신고	① 고형연료제품 공급 계획 신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10. 순환골재사용 계획서 신고	① 순환골재사용계획서 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11. 자원 재활용 및 1회용품에 관한 사항	①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업소의 관리에 관한 업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업소의 위반사항 처리(보고 및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9조, 제10조, 제40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12. 헌옷수거함 관리에 관한사항	① 헌옷수거함 관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하수시설과	1.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①하수관로 정비보수이설	하수도 법제19조
	2.배수설비의 설치신고·사용개시 (변경)·준공검사 등 (구청에서 처리하는 건축허가(협의) 규모)	②배수설비의 설치	같은 법 제27조
	3.공공하수도점용료 징수 등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같은 법 제65조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2항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총무과	1.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91조
	2. 의회 내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다음의 권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별표 3]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3항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총무과	1. 사업소 내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다음의 권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사업소 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별표 4]

**읍장 · 면장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4항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총무과	1. 소속 공무원	① 복무감독	복무조례
		② 소내 공무원 보직발령	지방공무원법제6조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사무에 대한 권한	① 다음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 -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2.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무	① 가족관계등록사무 일체 (동장 제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3조
안전총괄과	1. 민방위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	① 민방위 대원의 동원 및 지휘 통솔에 불응한 자	민방위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② 민방위 준비명령 불복자	같은 법 제37조
		③ 신고의무 불이행자	같은 법 제38조
		④ 교육훈련 불참자	같은 법 제39조
	2. 민방위 교육장 관리 (용암1동장)	① 사용허가 -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29 (용암동1589,1590번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복지정책과	1.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접수 및 상담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2. 재해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재민 응급구호 및 상황보고	재해구호법 제7조
	3.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① 자활사업대상자 추천 및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②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4.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① 의료급여증 교부 및 재사용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
		②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단,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는 제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노인장애인과	1.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변경신고, 재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경로당 변경신고 수리	노인복지법 제37조
		② 경로당 신고필증 재교부	같은법 제37조
	2. 매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	① 매장 및 개장 화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3. 장애인 등록에 관한 사항	①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② 장애인 등록증 교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③ 장애등급 조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④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노인장애인과	4. 장애수당	①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장애인복지법 제49조
	5. 장애인 자동차 표지	①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재발급, 회수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농업정책과	1.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농지법 제49조
	2.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①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같은법 제50조
	3. 자경증명	①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50조제2항
	4. 농업용 양수기 관리	① 한해대책용 양수기 관리	청주시양수기운영 관리조례
	5.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 (읍·면지역에 한함)	① 농업기반시설(구거, 수리시설물 및 농로 등) 유지관리 - 재배정에 한하며 각 읍·면 개발 담당에서 처리	농어촌정비법 제13조 제23조
산림과	1. 농림사업	①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대상자 조사제출 및 사후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
	2.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 (읍·면장에 한함)	① 산불예방, 진화 등의 조치 - 산불감시원 선발 및 운영	산림보호법 제33조
		② 입산허가 및 불 놓기 (입화) 허가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③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 허가	산림보호법 제34조
3. 숲길의 운영 및 관리 (읍·면장에 한함)	① 숲길의 운영 및 관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제23조의2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허가민원과	1. 건축신고 (읍·면장에 한함)	①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단, 건축법 제14조의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함)	같은법 제14조
	2. 건축물 사용승인 (읍·면장에 한함)	①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단, 건축법 제14조의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함)	같은법 제22조
	3.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읍·면장에 한함)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	같은법 제20조 제2항
	4. 공작물축조신고 (읍·면장에 한함)	①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	같은법 제83조
상수도 사업본부	1.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읍·면장에 한함)	①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제4조
		② 소규모수도시설 점검	같은 조례 제7조
		③ 소규모수도시설 개선 조치	같은 조례 제8조
		④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보수	같은 조례 제9조
		⑤ 소규모수도시설 긴급 복구 및 비상급수	같은 조례 제10조
		⑥ 소규모수도시설 요금 징수	같은 조례 제13조
		⑦ 소규모수도시설 계량기 설치	같은 조례 제15조
		⑧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에 따른 협의회 설치	같은 조례 제16조
환경관리본부	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관련 사무 (읍·면장에 한함)	① 피해보상신청서 접수 및 피해조사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사항 (읍·면장에 한함)	①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개방화장실 지정·관리	같은 법률 제9조
	1.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쓰레기 봉투 무상공급	폐기물관리법 제13조
		②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같은 법 제62조
		③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	같은 법률 제62조 (청원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



차량등록 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읍면장에 한함)	①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 지정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② 이륜자동차의 변경·사용 폐지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 조, 제103조
		③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	같은 법 제9조, 제52조
		④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같은 법 제18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⑤ 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교부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⑥ 이륜자동차(폐지)대장 발급	같은 법 제7조, 제52조
		⑦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같은 법 제26조, 제52조
		⑧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폐지 신고를 포함한다)의 이의신청 수리	같은 법 제28조, 제52조
		⑨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⑩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⑪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8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청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제정함.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7조)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하도록 규정
-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협약 해지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도록 함
- 처리상황을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함 (안 제14조)
- 재위임·위탁의 금지 (안 제1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5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4월 15일 ~ 2014년 5월 5일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청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청주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탁 사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면 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수탁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협약해지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시정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답변서 등 관계 서류를 붙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



기관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위임·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청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청원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통합하여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교수, 사회단체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

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단체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6조제6항에 따라 참석한 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047호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청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청주시 자치법규 사전예고에 관한 규정」, 「청원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청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입법안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1조)
-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및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6조)
-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2조)
-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6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1월 22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자치법규의 투명한 입법과정과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 "공포"란 자치법규의 입법을 시민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시 자치법규의 종류와 공포 절차 및 정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등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③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 제2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조례·규칙 심의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 제2장 입법예고 및 입법안 심사

제4조(입법예고 대상) 시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긴급하게 입법이 필요한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 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청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문·방송 또는 게시판 등을 이용한 입법예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시장이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

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개최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0조(협의 등)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다른 기관 또는 시의 관련 부서 등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협의·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입법안 심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헌법 및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통일성 및 조화성, 실효성, 경제성, 절차의 정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법제부서의 장이 심사한다.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 제3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제12조(대상) ① 시장과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또는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발의하는 의안의 시

행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도 필요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제13조(작성) ① 법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의안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붙이기가 곤란한 경우

제14조(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앞으로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의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재원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相計)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사유를 기재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⑧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안전행정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5조(제출시기)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임
2.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붙임
3. 시의원 또는 위원회 발의안은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상정안에 붙임

제16조(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 시의원 또는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업무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등 관련부서와의 간담회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비용추계 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되도록 협조한다.

#### 제4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제17조(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날짜를 기록한다.

제18조(예산 등)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20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에 따라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21조(공포일) 자치법규 공포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제20호 단서 후단에 따른 공포일은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

제22조(시행일)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제23조(자치법규의 정비)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할 경우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할 경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418호 청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제2868호 청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청원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청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3. 작성자

청주시 △△ 관(과) ○○○ 과장 ○○○  
청주시의회 △△ 의원 또는 ○○○ 위원회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작성요령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청주시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방안: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때에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부대의견: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4. 작성자

청주시 △△ 관(과) ○○○ 과장 ○○○

청주시의회 △△ 의원 또는 ○○○ 위원회



#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안

의안 번호	2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와 「청원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함.
- 고문변호사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고문변호사의 직무 및 자문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6,000천원 (통합 전 27,600천원, 통합 후 33,600천원)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1월 22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충북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6명 이내의 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이 변호사회에 고문변호사 추천을 의뢰할 경우 변호사회에서는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변호사를 공개 지원받아 성실함과 덕망을 갖춘 자중 지원자의 성별, 나이, 경력 및 이력 등에 따라 치우침 없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추천받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기피할 때
3.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을 주었을 때
  - 가. 불변기일의 경과
  -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 다.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 손상

제3조(고문변호사 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정과 관련된 법률문제 및 소송에 대한 자문과 협의
2. 시가 의뢰한 소송의 수행
3.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사·형사 사건에 관한 자문
4.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
5.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으며, 행정상·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자문 절차) 소관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률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총괄담당주사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을 받은 후에는 결과를 소송업무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 방어비용 지원)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고문변호사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사건의 경우 소제기 당시,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당시 시 소속 공무원일 것

2. 민사사건의 경우 청구포기, 각하 또는 기각으로 확정되었을 것

3. 형사사건

가. 불기소처분 될 경우에는 사유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로 확정되었을 것

나.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판결로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선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선임료 지급 증명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경우
2.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보험사 그 밖의 제3자로부터 방어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월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10만원
2. 월 10건 이상인 경우: 20만원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지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09호 청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청원군 고문변호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고문변호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동 의 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에 따라 청주시의 고문변호사 위촉제외와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변호사   ○○○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위 촉 장

변호사 ○○○

귀하를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에 따라 청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직인)

### 법률자문 의뢰서

경 유 (법무담당부서)

<b>부 서 명</b>	청주시 ○○○○국 ○○과 ○○담당 (☎ 200-0000)
<b>담 당 자</b>	담당 ○○○, 담당자 ○○○
<b>자문일시</b>	○○○○ 년 ○○월 ○○일
<b>자문내용 및 판단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li> <li>○ 내용:</li> <li>-</li> <li>-</li> <li>- 갑설:</li> <li>- 을설:</li> <li>- 병설:</li> </ul>
<b>고문변호사 자문결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b>기타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b>고문변호사</b>	지정고문                      변호사

※ 관련자료: 따로 붙임

[별지 제4호서식]

### 자 문 실 적 부

구분 종류	자 문 명	의 퇴 연월일	의 퇴 내용	회 신 연월일	회 신 내용

※ 종류란에는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으로 표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고문변호사 수당 및 자문보수료를 수혜가 높은 금액으로 양  
시·군 자치법규 통합
  - 고문변호사 수당 : 종전 청주시 월 30만원, 청원군 월 25만원  
⇒ 월 30만원
  - 자문 보수료 : 종전 청주시 월 5건 이상 ~ 10건 미만 10만원,  
월 10건 이상 20만원, 청원군 미지급 ⇒ 월 5건 이상 ~ 10건  
미만 10만원, 월 10건 이상 20만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연간 소요비용 추계액 : 6,000,000원
    - 고문변호사 수당 : 50,000원 × 2명 × 12월 = 1,200,000원
    - 자문보수료 : 200,000원 × 2명 × 12월 = 4,800,000원

청주시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장



# 청주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의안 번호	2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청원군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를 제정함.
- 증인 등의 실비변상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증인 등의 실비변상 금액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청주시장, 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주시장, 구청장이 신청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실비(實費)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實費)변상의 범위는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3조(실비변상금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實費)변상금액은 소송계속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實費)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한 것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450호 청주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청원군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2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와 「청원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4,900천원 (통합 전 5,500천원, 통합 후 10,400천원)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청주시장(그 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소사건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청주시, 청주시장, 대한민국(이하 “청주시 등” 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청주시 등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청주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 아닌 자 가운데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 공동



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청주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2조제1항 각 호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본안소송: 1명당 300,000원 이하(다만,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하)

2. 보전소송: 1명당 50,000원 이하

② 본안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에서 특별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443호 청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청원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수혜가 높은 금액으로 양 시·군 자치법규 통합
  - 본안소송 : 종전 청주시 10만원, 청원군 30만원 ⇒ 30만원
  - 보존소송 : 종전 청주시 2만원, 청원군 5만원 ⇒ 5만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연간 소요비용 추계액 : 4,900,000원
  - 본안소송 : 200,000원 × 23건 = 4,600,000원
  - 보존소송 : 30,000원 × 10건 = 300,000원

청주시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장



# 청주시 장기발전계획심의회 설치 조례안

의안 번호	2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장기발전계획심의회 설치조례」를 「청주시 장기발전계획심의회 설치 조례」로 제정함.
- 심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장기발전계획심의회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장기 종합계획에 대하여 청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그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심의를 위하여 청주시장기발전계획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청주시장기발전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조사·연구, 심의하여야 한다.

1. 장기발전계획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2.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다음 연도 재정운영계획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청주시의회 의원, 학계 전문 교수, 관계 공무원, 직능단체 전문 지식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

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심의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에서는 연간 심의내용 정리와 신규내용을 심의한 후 다음 연도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장기발전계획 기본구상과 관련된 연차별 또는 단계별 계획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의회에 부치는 사안을 회의소집 7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 심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다음 회의 시 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심의회나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과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 ① 심의회는 효율적인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및 진행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의결로 한다.

제10조(의회통보) 시장은 심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청주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나 전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004호 청주시 장기발전계획심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장기발전계획심의회 위원과 전문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청원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
-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청주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청주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30호 청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청원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청원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 용역과제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심의대상
    1. 학술용역 : 2천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 : 3천만원 이상
    3.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 : 5억원이상(보상비 제외)
  - 심의제외 대상 용역
    1.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업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3. 1차 심의를 거친 계속사업

- 4. 국·도비 보조사업
- 5.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
-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인원 : 15명 이내
  - 구성 : 시의원, 공무원(국장급), 전문가 및 시민단체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주시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함으로써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상수도·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

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기금포함)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용역비 2천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 :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5억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업
2. 재해복구 등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
3. 1차 심의를 거친 계속사업

#### 4. 국비·도비 보조사업

5.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국장급 공무원,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의안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은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하 “주관 과장”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4호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청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정함.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기능(안 제2조)
  -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청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청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청주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調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전문가,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74호 청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와 「청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
- 청주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인원 : 100명 이내
  - 구성 : 읍·면·동별 1명씩 추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15명 이내), 기타 공개모집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예산참여시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반영 (안 제10조, 제18조)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시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2장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청주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장 청주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

제10조(설치)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하여 청주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 지역공동체 형성
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정치 및 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
5. 청주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연령, 지역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동별로 1명을, 제2호에 해당 하는 자는 15명 이내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제3호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면 지역과 동(洞)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한다.

1. 각 읍장·면장·동장이 추천하는 자
2.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본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③ 시장이 위원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5일 이상 청주시보와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 지역의 다른 읍·면·동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0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수,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소, 회

의자료, 인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예산학교

제23조(운영) 시장은 매년 예산참여 이전에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교육내용)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5장 보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73호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청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목적 및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6조)
- 임직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18조)
-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 22조)
- 공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 30조)
- 공단의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위탁시설의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시장은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현금 및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규모는 정관으로 정하며,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공단체 발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청주시의회와 협의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2장 임직원

제7조(임원)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임명·해임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 ④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의 권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관련 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해임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 ③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명·해임하며,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해임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기 및 직무)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

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공단 이익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임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임기 동안 그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와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이사회에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

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명·해임)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해임한다.

### 제3장 임원추천위원회

제19조(설치·구성·운영)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장 사업

제20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업무
2. 불법 주차·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반환업무
3. 노상 방치차량의 견인 및 보관·반환업무
4. 체육시설 관리사업
5.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제2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시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수입금의 처리) 제20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 제5장 재무회계

제23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회계의 원칙)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서 정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및 시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시유재산의 사용) 공단이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여유금의 운용)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30조(단기차입금 등)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에서 예산을 지출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장 감독

제31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수 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 (명예퇴직 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33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조직과 정원) 공단의 조직과 정원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37조(공인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업무상황 등 공표) 공단은 매 사업연도 6월과 12월에 법 제46조에 따라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역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법」과 「기업회계법」을 준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97호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 조례에 따른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본다.



# 청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사업 및 기준(안 제2조)
  - 적용대상 : 직원 수 사업규모 중 기준 이상의 조건  
(별표의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참고)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평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서 열거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896호 청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제2조 관련)

사업명	구분	기 준	
	직원수	사 업 규 모	
시장사업(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포함)	5명 이상	관리건물면적 1,000㎡ 이상	
도축장 사업	5명 이상	1일평균 도축수 소4두, 돼지 50두 이상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토지개발사업	10명 이상	조성면적 33,000㎡ 이상	
통운(도선)사업	10명 이상	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 선박톤수 100톤 이상	
중기관리사업	10명 이상	보유중기 10대이상	
관광지개발사업	10명 이상	조성(관리)면적 33,000㎡ 이상	
계량기검정사업	5명 이상	보유기준 계량기 15종 이상	
체육시설사업	10명 이상	조성(관리)면적 33,000㎡ 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포함)	10명 이상	관리건물면적 1,000㎡ 이상	
공원조성사업	10명 이상	조성(관리)면적 33,000㎡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	10명 이상	조성면적 33,000㎡ 이상	
도시조성, 정비등 도시계획사업	10명 이상	조성(관리)면적 33,000㎡ 이상	
건설자재생산사업(석산개발포함)	5명 이상	1일평균 생산능력 1,000㎡	
업무시설의 건설, 관리사업(창고시설 포함)	5명 이상	시설(관리)면적 3,000㎡ 이상	
주차장 사업	10명 이상	시설(관리)면적 3,000㎡ 이상	
통합공과금 사업	10명 이상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	
지역개발기금 사업	10명 이상	연간 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지원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 청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일부 지원)
-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접수 결정(안 제7조~제10조)
  -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지원대상, 규모, 절차) ⇒ 신청 및 접수 ⇒ 심의(필요성, 타당성 심사) ⇒ 재정계획심의위원회(지원액 결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 례 안 : 붙임

##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청주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보조금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 법령·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2.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3.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4. 보조금을 재보조하는 사업
5. 구체적 사용목적이 없는 사업
6. 자본형성적인 사업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청주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및 접수)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으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청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지원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 여부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31호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에 관한 조례, 청원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3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와 「청원군 보증채무 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제정함.
- 보증채무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6조)
  - 채무보증신청(채무자) → 보증승인(의회 의결) 및 통지 → 보증서 발급 신청(채무자) → 발급
-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주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청주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가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

무보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에게 채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미리 변제에 따른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라 통지된 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

④ 청주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발급된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52호 청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청원군 보증채무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신청 중이거나 채무보증 변경 신청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청주시장 귀하

주채무자 ①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시장은 전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청주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 의결을 받아 채무보증하기로 하였기에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용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  
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 호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  
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청주시장 귀하

채권자 ①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용자재원
9. 그 밖의 사항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장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장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청주시장 인

채권자 귀하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 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용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장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주채무자	용    도	보    증 채무액	대출누계	금기말 채무액	금    기    중		금기말 채무액	금기말 연채액	금기중 이    자 발생액	금기중 이    자 상환액	금기말 미    수 이    자
					대    출	회    수					



#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청원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으로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면 지역과 동(洞)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한다.



1. 청주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실장·국장
2.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청원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3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정함.
- 기금의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목적은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에 있음.
  - 조성재원은 일반·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함
- 기금 관리·운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
  - 기금운용계획 수립, 조성·관리 및 운용, 결산 등을 심의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청주시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청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자방식에 따른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개설하여 관

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청주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 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청주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지방채상환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지방채상환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267호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된 기금으로 본다.





#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3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정함.
-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조성재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전입금, 융자금의 상환액 및 이자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
  - 사용용도는 기반시설 및 복지증진 사업, 지방채 상환 등으로 함
-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청주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며, 자금관리 경험이 있는 금융전문가 1명을 추가 위촉함.
- 융자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범위내로 하며, 융자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음.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 례 안 : 붙임

##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주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예수"란 다른 기금에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자금관리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4. "예탁"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 등에 자금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통합관리기금에서 다른 회계로 예탁하는 것은 "융자"라 한다.
5. "시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이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 기금의 여유자금
2.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액 및 이자수익금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채 상환
3.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주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금융전문가 1명을 추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
2. 통합관리기금 결산보고서
3.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의 이자율과 제11조제2항의 기간의 결정이나 변경 또는 상환방법
4. 그 밖에 위원장이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제6조 각 호의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금은 예외로 한다.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일의 시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각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탁한 자금을 상환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기금 설치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기한 전에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상환 요청을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 9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용자기간 및 이자율) ① 용자기간은 예약한 날부터 계산하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로 한다.

② 용자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용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시금고 금리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등) ① 통합관리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통합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
2. 통합관리기금운영관: 통합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
3. 통합관리기금출납원: 통합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총괄기금 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기금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3조(통합관리기금 관리) ①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관리기금운영계획 수립) ① 통합관리기금운영관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 기금운용관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통합관리기금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합관리기금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와 함께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 본다.

② 종전의 통합관리기금에 따른 용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3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청원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함.
- 보조금 관리 조례의 대상과 제외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보조금 신청 및 교부방법,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감독, 신고, 제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2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청주시의 경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과 보조사업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교부 받으려는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 받으려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2. 법령에 따라 교부하는 보조금

3. 여러 사람에게 소액을 분할하여 즉시 교부하는 보조금

4. 우수마을에 소규모 사업비를 교부하는 보조금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 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보조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2.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완료로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붙일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방법) ①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는 사업 완성 전이나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반기별(4월, 10월)로 보조금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나 사업비 정산서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 정산 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시키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시작되었거나 완료되었을 경우
2. 사업을 폐지하였을 경우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

제16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6.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58호 청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청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 청주시 정보화 조례안

의안 번호	3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정보통신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정보화조례」와 「청원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정보화 조례」를 제정함.
-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정보화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민 삶의 질 향상
2.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3.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5. 지역간 균형발전 및 정보격차해소
6.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2장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청주시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청주시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 계획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화사업의 협의조정 및 사전검토
4. 정보자원의 획득, 배분, 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5.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6.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대외협력) ①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

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이

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4호 청주시 정보화 조례, 청원군 지역정보화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정보화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정보통신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안 제3조 ~ 제8조)
-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안 제9조 ~ 제12조)
-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참여(안 제13조 ~ 제15조)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안 제17조 ~ 제1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란 인터넷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여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홈페이지 관리부서"란 홈페이지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9.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란 해당 홈페이지의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인터넷 방송"이란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 또는 TV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시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시민의 참여유도
5. 국내·국외에 시의 홍보
6.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때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 또는 제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주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제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 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종결 처리된 경우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담당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설치·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 중 수사상의 목적으로 정식절차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으로서,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행정정보 또는 행정기관간의 전산정보의 확인·조회 등으로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1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참여

제13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인터넷 방송 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을 통한 영상 시정보도와 시민들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방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료 인터넷 방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 중인 교육용 유료 콘텐츠는 해당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서비스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다른 기관 교육용 유료 콘텐츠 서비스 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제협력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제6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45호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3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지역경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 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소비자 기본조례」와 「청원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제정함.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비자 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주시장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의 용어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危害)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의 선택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



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제5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危害)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등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7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시장은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조사하고,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상품 등을 공급할 때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 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소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정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4. 소비자의 교육 및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간 합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소비자 보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하는 소비자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 절차, 방법 등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 소비자단체를 평가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소비자단체 지원 선정 대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 때문에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危害)를 입었으면 시 또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에 편지, 방문, 전화, 전신,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피해구제의 처리) ①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급·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또는 해당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에 그 처리를 의뢰하거나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④ 피해구제의 처리기간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까지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중 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16조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 요청 등)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어느 한쪽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시장은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 보호 및 지방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자문
2.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4. 소비자 피해구제 및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3. 쓰레기봉투가격

4. 정화조 요금

5. 문화재시설관람료

6. 공연예술 관람료

7.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③ 제2항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지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 물가억제 목표 미만이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

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출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4호 청주시 소비자기본조례, 청원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지역경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의뢰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실조사의뢰 관련기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실조사 관련기관에 의뢰 시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87호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청원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사실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지역경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청주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지식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함(안 제4조)
-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5조, 제6조)
- 지식재산에 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함(안 제15조, 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식재산 기본법」, 「발명진흥법」 제1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 례 안 : 붙임

##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 보호법」의 디자인, 「상표법」의 상표, 「저작권법」의 저작물, 「종자산업법」의 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이나 그 밖의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품종 보호권이나 그 밖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3. “지식재산도시”란 지식재산을 도시의 중심적 기능의 한 축으로 삼고 지식재산의 창조 및 활용, 보호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지식재산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

4.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5. “직무발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시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6.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7.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8. “처분수입금”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9. “자유발명”이란 제5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시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10. “주민발명제안”이란 발명의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가 한 발명제안을 말한다.



11. “주민특허권”이란 주민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말한다.
  12. “주민발명장려금”이란 주민발명제안 중 채택된 발명제안을 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발명제안자”란 주민발명 제안을 한 주민을 말한다.
  14. “발명자”란 직무발명이나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 및 주민발명제안이 특허등록이 되었을 때 주민발명제안을 한 주민을 말한다.
  15.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 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이거나, 법인·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16.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연구원, 그 밖의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국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와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기본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의 창출, 보호와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5조(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장은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재원의 지원) 시장은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공무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특허청,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 활동
7.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 하는 발명에 한정한다.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청주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10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대학·대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3조(지식재산의 권리와 지원)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발명, 직무발명,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 및 장려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나 업무경험이 있는 자

3.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
  4. 지역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자
  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8. 그 밖의 지식재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한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 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장 공무원의 발명

제23조(업무의 관장) 시장은 직무발명·자유발명과 공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3. 공유특허권의 처분·관리
4. 공유특허권의 활용촉진
5.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제24조(권리의 승계) ①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일 때에 시는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할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25조(발명의 신고) 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되는 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③ 제2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며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의 기능 타당성을 기재한다.

2. 발명자의 직무: 소속부서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내용을 기재한다.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를 기재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26조(직무발명 승계결정) ① 제2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를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7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26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승계발명의 출원) ① 제2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발명자의 출원)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을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특허권 등록 및 통지)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시장은 지체 없이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허등록을 마친 시장은 시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할 등록보상금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보상금) 시장은 시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권리 당 100만원 이내의 등록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처분 원칙)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 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 실시권을 받을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33조(처분 방법 등) ①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 실시권의 허락은 수의 계약에 따른다.

② 공유특허권의 매각과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유특허권의 매각과 통상 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의견청취 등) 제32조에 따른 공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특허권등록 전의 처분)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6조(처분결과 통지) 시장이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처분대금 처리) 공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38조(처분보상금) 시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보상금 등 지급) ① 제3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과 제38조에 따른 처분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2. 제38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하였을 때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었을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자유발명의 승계 및 처분과 보상) ① 제25조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에게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 사본 다만, 특허권인 때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계된 자유발명은 직무발명의 처분절차 및 보상절차를 준용한다.

제42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는 본인이 한 직무발명의 처분이나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와 보상 등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4조(직무발명 장려) ①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필요한 실험·실습·연구·제작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한 발명에 한정한다.

## 제6장 주민발명

제45조(업무의 관장) ① 시장은 주민발명 제안과 주민특허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주민발명제안의 장려
2.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에 대한 승계 및 보상

제46조(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제출) ① 모든 주민은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을 제출하려는 자는 발명이나 특허의 취지, 행정예 적용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발명에 참여한 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주민발명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 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주민발명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47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통지 등) 시장은 제46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 및 처리상황을 발명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 승계 결정) ① 시장은 제46조에 따라 제출한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독창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49조(권리 승계) 시는 승계 결정된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특허권을 승계한다.

제50조(주민발명제안 특허출원) ① 시장은 제48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 승계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특허출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발명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특허권 등록) 시장은 특허권을 시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결정되었을 때에는 제30조를 준용하여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주민발명장려금) 시장은 제51조에 따라 시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권리 당 100만원 이내의 주민발명 장려금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주민발명에 따른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처분수입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4조(발명장려금 및 보상금 등 지급) ① 제52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과 제5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2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2. 제5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② 주민발명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자가 받은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었을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6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는 주민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였을 때 상대방이 발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제안자 및 주민발명제안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주민발명제안의 출원 때까지 발명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7조(주민발명의 장려) ① 시장은 주민발명을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발명에 필요한 실험·실습·연구·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명으로 특허등록 하는 발명에 한정한다.

## 제7장 보칙

제58조(실용신안 및 디자인) ① 실용신안과 디자인 고안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제2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과 제48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은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50만원 이내, 디자인권은 30만원 이내로 한다.

제59조(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는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88호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b>주민발명제안 신고서</b>				처리기간
발 명 자	① 성명	(한글) (한자)	② 생년월일	
	③ 주소			
발 명 사 항	④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⑤ 발명의 명칭			
<p>「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46조에 따라 주민발명 제안 등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b>청주시장 귀하</b></p> <p>붙임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의 요약서 1부</p>				



#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지역경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전통시장 인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임시시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상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시설물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9조의2, 제65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청주시장이 개설하거나 또는 청주시장에게 등록된 시장을 말한다.
4.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청주시장에게 등록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5.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6.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청주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구역을 말한다.

## 제2장 전통시장의 기준 및 인정

제4조(전통시장의 기준)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5조(전통시장의 신청 및 인정) ①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동의를 받아 규칙 제2조제1항의 서류

를 갖추어 청주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장은 신청한 구역이 제1항의 기준 및 영 제2조제4항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을 발급하고 청주시보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이하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물류창고, 고객지원 및 콜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7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과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4.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8조(전통시장의 취소) ① 청주시장은 전통시장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 되거나 그 밖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 등의 사유로 제4조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시장관리자가 3개월 이상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아 전통시장의 자체적인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청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장 임시시장의 개설·관리

제9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청주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를 받아 임시시장을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제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 관리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와 고객의 안전유지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 및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1조(임시시장등록의 취소) 청주시장은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을 신고한 경우
2. 영업개시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상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4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청주시장은 청주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① 청주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청주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4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청주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농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운영할 경우 매장사용료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및 활성화추진계획 수립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전통시장,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청주시장이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신청하거나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청주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직접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상권활성화 구역·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상인회의 등록) ①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청주시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청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의 정관)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하여 청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청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청주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거나, 영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청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청주시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청주시장은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상인회가 사업을 수행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상인회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주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청주시장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 권을 붙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금으로 사업을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청주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의 비치)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일체를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임원의 성명·주소·연락번호
3. 관할구역 배치도 및 비상연락망
4. 정관
5.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6.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관리·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관할구역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실적
3. 회계연도 결산 현황

② 상인회는 청주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지출내역

2. 자산관리 현황

###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청주시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관  
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주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① 청주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게을리 하여 고객 및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과실로 화재 등 안전사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  
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

###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20조제1항(법 제11조 및 제19조의7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부 및 청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등의 밖과 안에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이  
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청주시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과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및 상인조직의 소유로 보는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

② 시설물 중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및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의 소유로 청주시장이 승인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회 및 상인조직이 설치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부담한 시설물
2. 상인회 및 상인조직이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부담한 시설물 중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청주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제2항의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은 시설물 설치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시설물의 관리) ① 청주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주차장 조례」,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전문 업체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청주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⑤ 청주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이 재산가치를 상실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시설물의 설치 기준) ① 전통시장 등의 안과 밖에 상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청주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

고, 건축·소방 및 도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여건이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내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 쪽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장 또는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가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입점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 고객 및 입점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시설물 중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및 상인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지도 및 감독) ① 청주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사행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현황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청주시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63호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안

의안 번호	4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지역경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청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함.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3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



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지역농축산물"이란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생산품이 적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내를 우선으로 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에게 지역생산제품을 30퍼센트 이상 구매하여 판매하는 등 판매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권고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 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

라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에 관한 사항
4.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관한 사항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7.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 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 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영업실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개설한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시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대표
3. 시의 슈퍼마켓, 상가 등 지역 중소유통단체 대표
4. 시의 시민단체 대표
5. 시의 소비자단체 대표
6. 청주시상공회의소 관계자
7. 시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8. 시의 유통업 관련 관계기관 관계자
9.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 시의회 의원

11. 시 소속 공무원 중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

12. 그 밖에 시에 거주하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를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협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시장은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협의회를 합의로 간주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⑤ 간사는 지역 내 대규모점포 등 입점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⑥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업무) ①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형·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과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대형·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는 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함께 수

행하며, 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조정, 조정의 효력, 조정절차 등의 세부절차는 법에 따른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 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그 밖에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려운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면적은 별표 1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별표 2부터 별표 17까지와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시민 및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4장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변경등록 포함)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중소기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과의 영업품목이 50퍼센트 이상 중복될 경우
3.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시에 개설계획서를 제출하여 시 홈페이지 게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개설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설자(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의 종류
5. 매장면적(제곱미터)

제15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이틀(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의견 들어 시장이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필요성
2. 전통시장과의 접근성 및 인근 중소기업 현황
3. 중소형점포 및 대규모점포 등의 의견
4. 대규모점포 등의 자율적인 영업시간 제한 현황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대형마트 등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같은 요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변경신청 사유가 타당할 경우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 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함에 있어 조건 등을 붙일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민 및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포상) ①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대규모점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위반 또는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30호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청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유통업상생발접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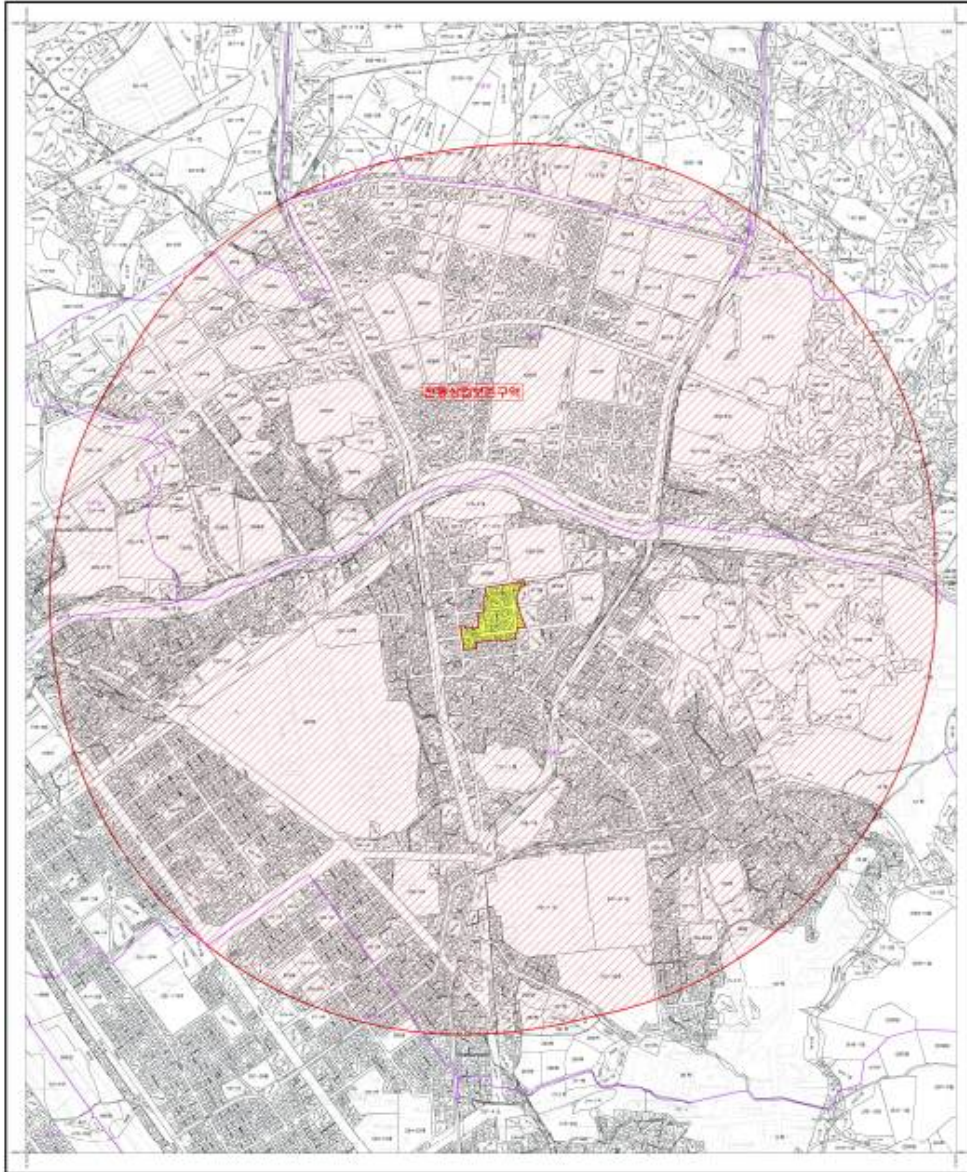
**전통시장·전통상점가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면적**(제11조 관련)

시장·상점가명	전통시장·전통상점가 면적 (m <sup>2</sup> )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 (m <sup>2</sup> )	비고
내덕자연시장	14,422.20	3,687,887.98	
북부시장	22,133.53	3,769,265.07	
서문시장	10,285.99	3,737,956.49	
육거리종합시장	86,353.89	4,440,075.64	
중앙시장	7,331.72	3,498,399.33	
대현지하상가	4,992.10	3,683,709.88	
가경터미널시장	20,656.59	4,102,875.82	
복대가경시장	11,088.94	3,782,776.81	
복대시장	22,070.56	3,749,122.49	
사직시장	9,200.71	3,590,094.00	
사창시장	18,058.82	3,835,172.16	
수곡시장	10,027.71	3,566,450.37	
운천시장	8,993.46	3,579,392.48	
내수전통시장	79,769	4,693,421	
오창전통시장	35,784	3,999,792	
원마루시장	21,517.05	3,740,279.97	
계	361,169.22	57,716,39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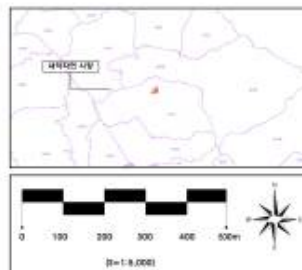
[별표 2]

### 전통상업보존구역(내덕자연시장) 지형도면(제11조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덕자연 시장)



도시계획변례	
전통시장·전통상점가	노란색
전통상업보존구역	빨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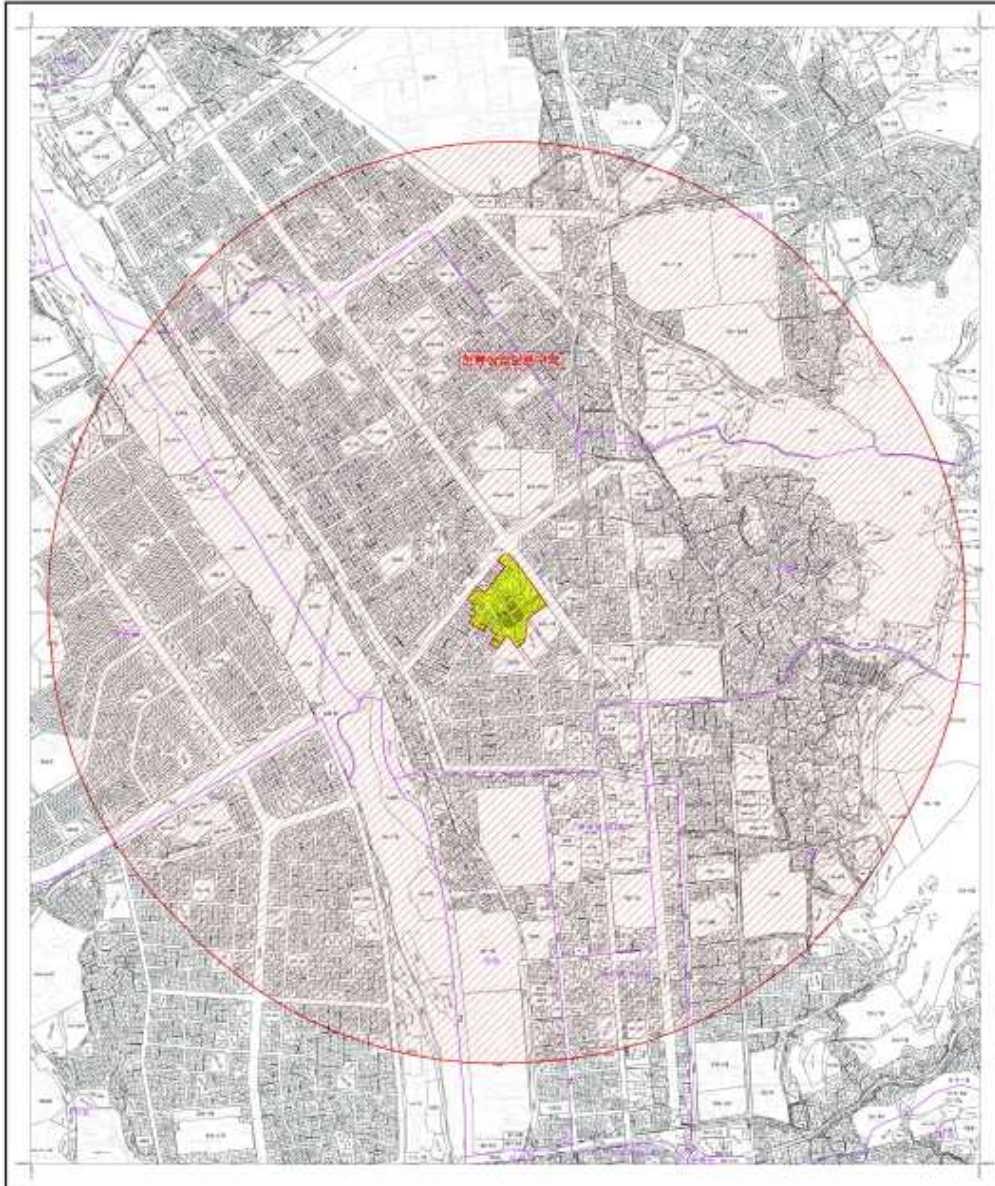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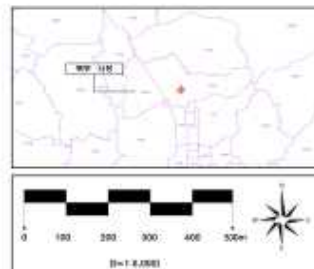
[별표 3]

**전통상업보존구역(북부시장) 지형도면**(제11조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북부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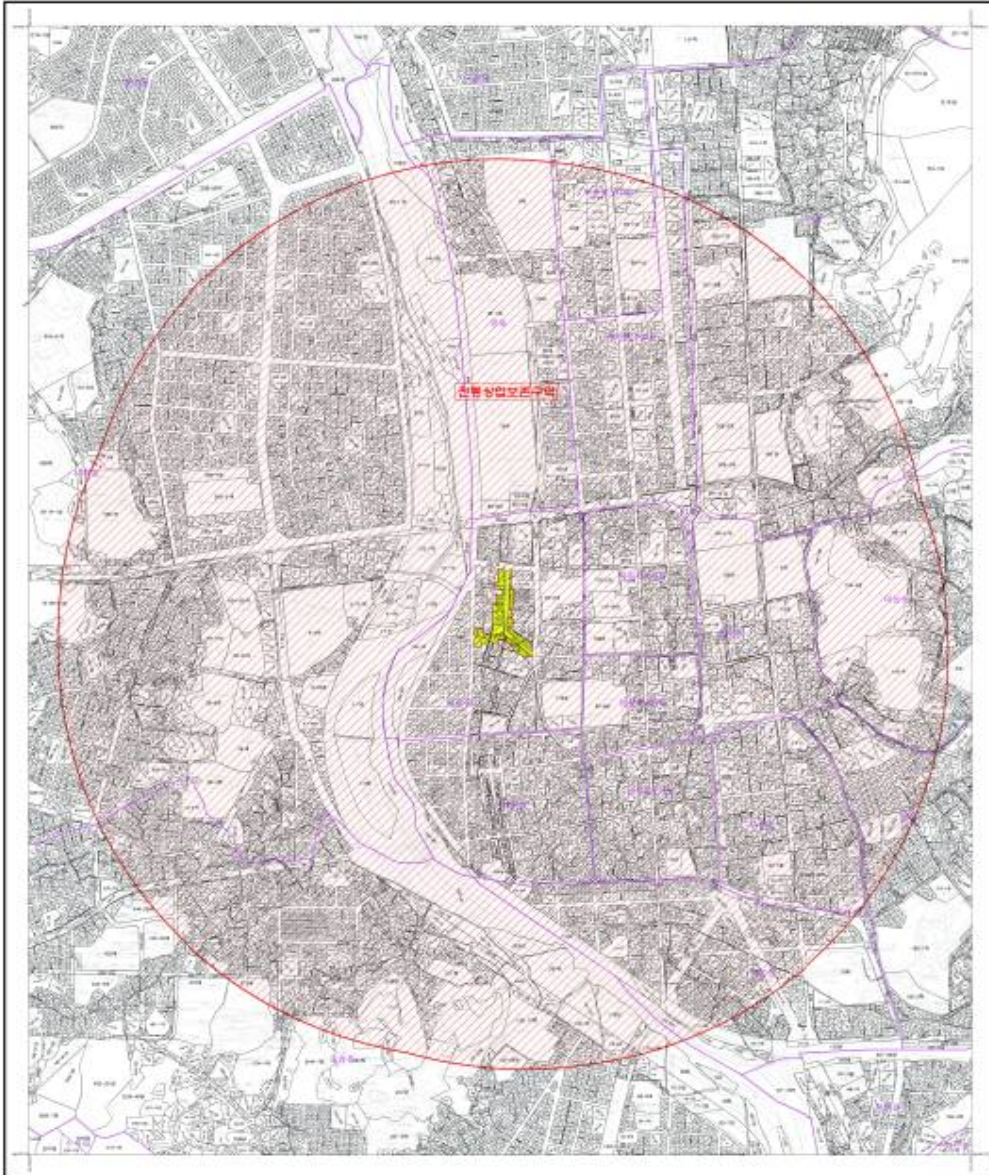
도시계획변례	
지역명	북부시장
면적	1,234.56㎡
지정일자	2023. 1. 15
제정근거	도시계획법 제11조
목적	전통상업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상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범위	북부시장 일대
지정대상	전통상업지역 내의 전통상업지역
지정기준	전통상업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지역
지정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지정효과	전통상업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상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별표 4]

### 전통상업보존구역(서문시장) 지형도면(제11조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서문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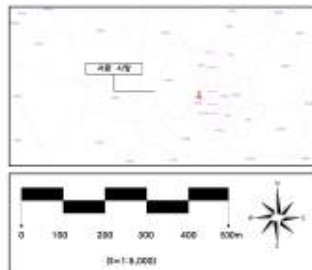


도시계획번호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32	32
33	33
34	34
35	35
36	36
37	37
38	38
39	39
40	40
41	41
42	42
43	43
44	44
45	45
46	46
47	47
48	48
49	49
50	50
51	51
52	52
53	53
54	54
55	55
56	56
57	57
58	58
59	59
60	60
61	61
62	62
63	63
64	64
65	65
66	66
67	67
68	68
69	69
70	70
71	71
72	72
73	73
74	74
75	75
76	76
77	77
78	78
79	79
80	80
81	81
82	82
83	83
84	84
85	85
86	86
87	87
88	88
89	89
90	90
91	91
92	92
93	93
94	94
95	95
96	96
97	97
98	98
99	99
100	100

도시계획번호

전통시장·전통상점가

전통상업보존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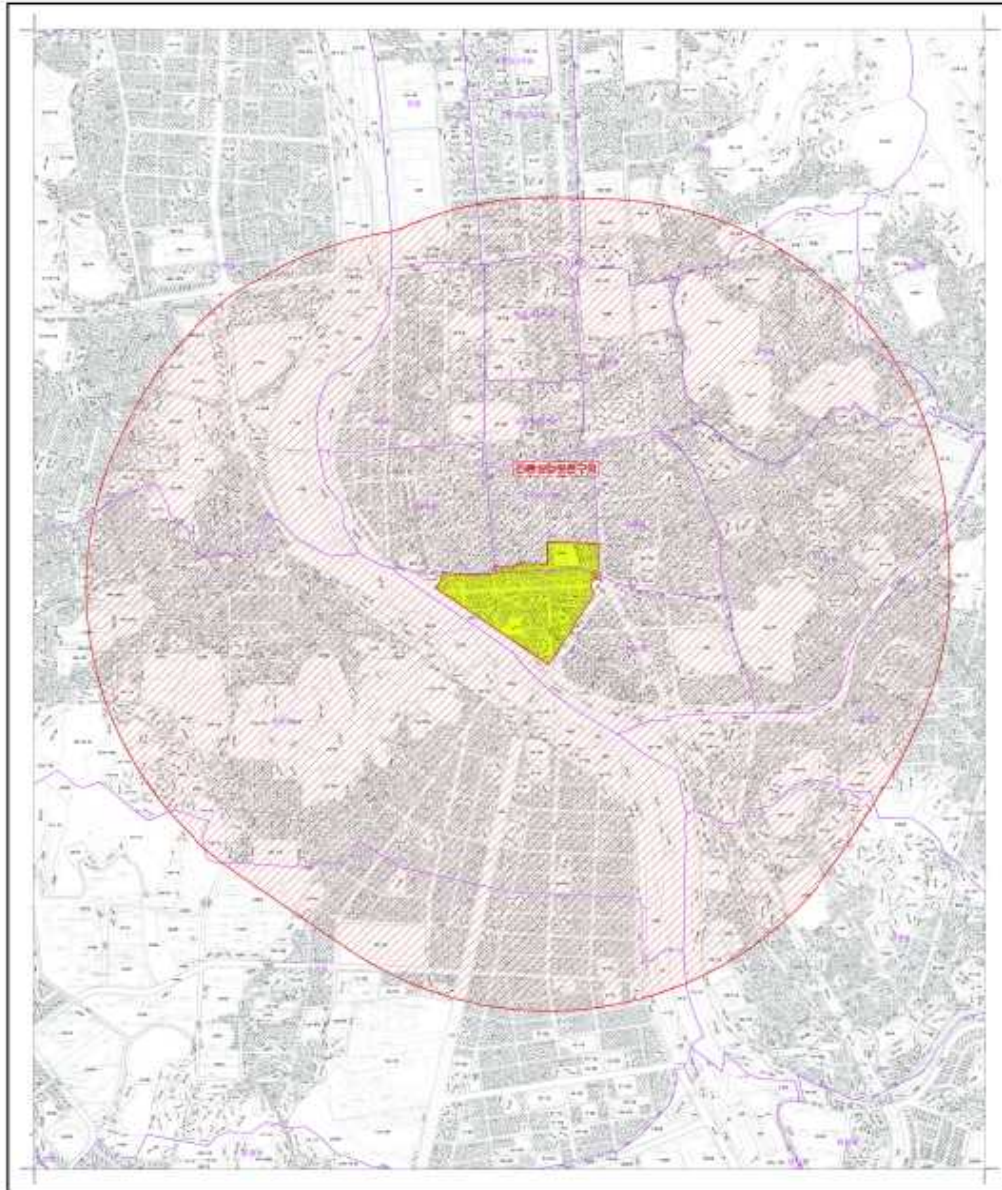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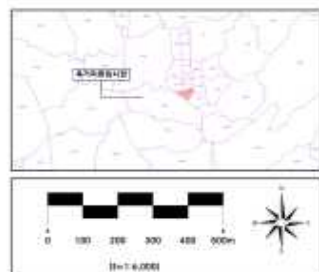
[별표 5]

**전통상업보존구역(육거리종합시장) 지형도면**(제11조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육거리종합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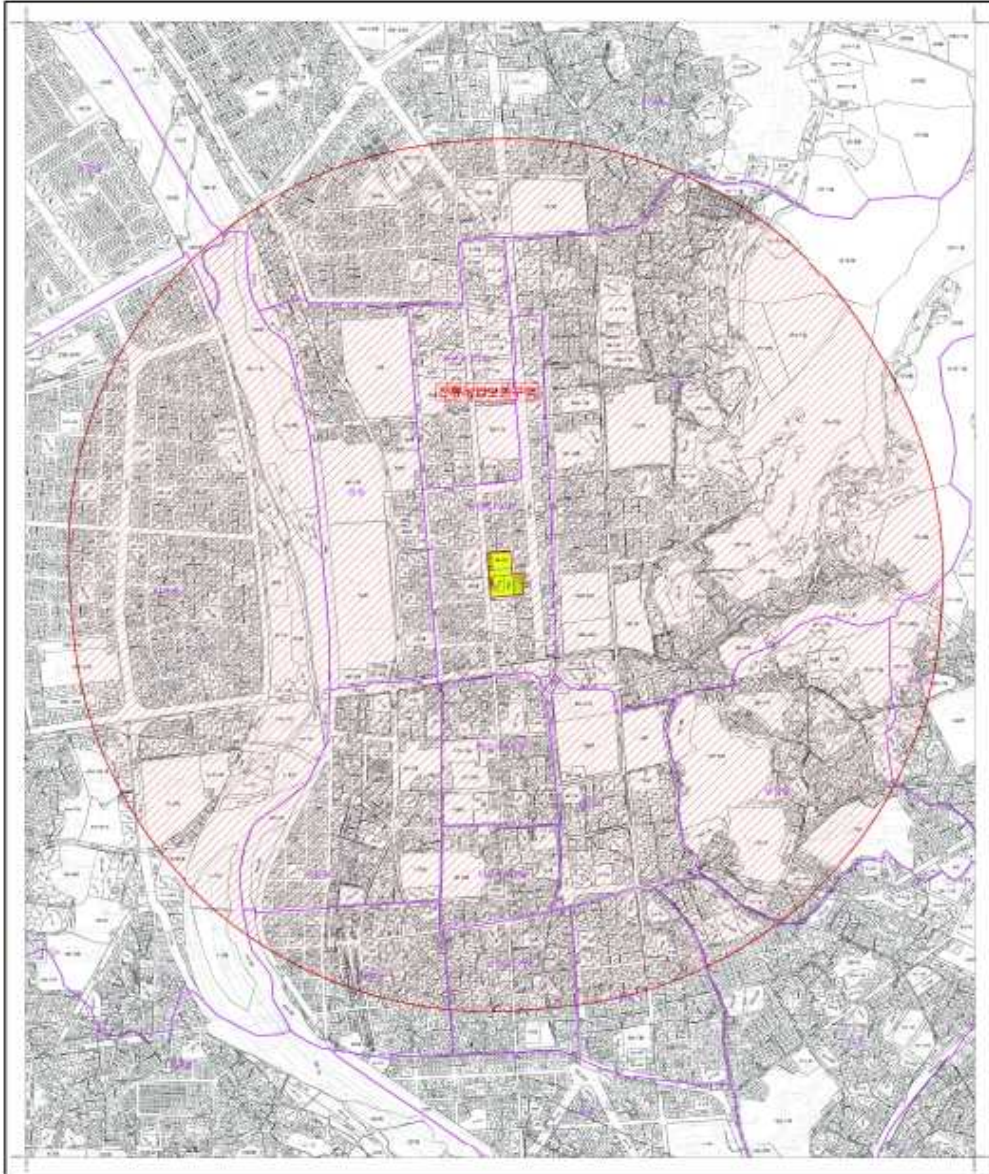
도시계획변례	
1. 목적	도시계획변례
2. 목적	도시계획변례
3. 목적	도시계획변례
4. 목적	도시계획변례
5. 목적	도시계획변례
6. 목적	도시계획변례
7. 목적	도시계획변례
8. 목적	도시계획변례
9. 목적	도시계획변례
10. 목적	도시계획변례
11. 목적	도시계획변례
12. 목적	도시계획변례
13. 목적	도시계획변례
14. 목적	도시계획변례
15. 목적	도시계획변례
16. 목적	도시계획변례
17. 목적	도시계획변례
18. 목적	도시계획변례
19. 목적	도시계획변례
20. 목적	도시계획변례
21. 목적	도시계획변례
22. 목적	도시계획변례
23. 목적	도시계획변례
24. 목적	도시계획변례
25. 목적	도시계획변례
26. 목적	도시계획변례
27. 목적	도시계획변례
28. 목적	도시계획변례
29. 목적	도시계획변례
30. 목적	도시계획변례
31. 목적	도시계획변례
32. 목적	도시계획변례
33. 목적	도시계획변례
34. 목적	도시계획변례
35. 목적	도시계획변례
36. 목적	도시계획변례
37. 목적	도시계획변례
38. 목적	도시계획변례
39. 목적	도시계획변례
40. 목적	도시계획변례
41. 목적	도시계획변례
42. 목적	도시계획변례
43. 목적	도시계획변례
44. 목적	도시계획변례
45. 목적	도시계획변례
46. 목적	도시계획변례
47. 목적	도시계획변례
48. 목적	도시계획변례
49. 목적	도시계획변례
50. 목적	도시계획변례
51. 목적	도시계획변례
52. 목적	도시계획변례
53. 목적	도시계획변례
54. 목적	도시계획변례
55. 목적	도시계획변례
56. 목적	도시계획변례
57. 목적	도시계획변례
58. 목적	도시계획변례
59. 목적	도시계획변례
60. 목적	도시계획변례
61. 목적	도시계획변례
62. 목적	도시계획변례
63. 목적	도시계획변례
64. 목적	도시계획변례
65. 목적	도시계획변례
66. 목적	도시계획변례
67. 목적	도시계획변례
68. 목적	도시계획변례
69. 목적	도시계획변례
70. 목적	도시계획변례
71. 목적	도시계획변례
72. 목적	도시계획변례
73. 목적	도시계획변례
74. 목적	도시계획변례
75. 목적	도시계획변례
76. 목적	도시계획변례
77. 목적	도시계획변례
78. 목적	도시계획변례
79. 목적	도시계획변례
80. 목적	도시계획변례
81. 목적	도시계획변례
82. 목적	도시계획변례
83. 목적	도시계획변례
84. 목적	도시계획변례
85. 목적	도시계획변례
86. 목적	도시계획변례
87. 목적	도시계획변례
88. 목적	도시계획변례
89. 목적	도시계획변례
90. 목적	도시계획변례
91. 목적	도시계획변례
92. 목적	도시계획변례
93. 목적	도시계획변례
94. 목적	도시계획변례
95. 목적	도시계획변례
96. 목적	도시계획변례
97. 목적	도시계획변례
98. 목적	도시계획변례
99. 목적	도시계획변례
100. 목적	도시계획변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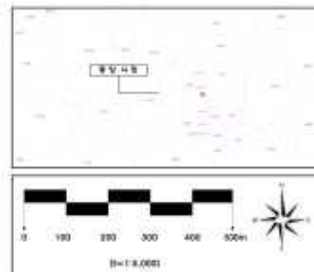
[별표 6]

**전통상업보존구역(중앙시장) 지형도면**(제11조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중앙 시장)



도시계획변경	
중앙시장·전통상업지구	황색
전통상업보존구역	분홍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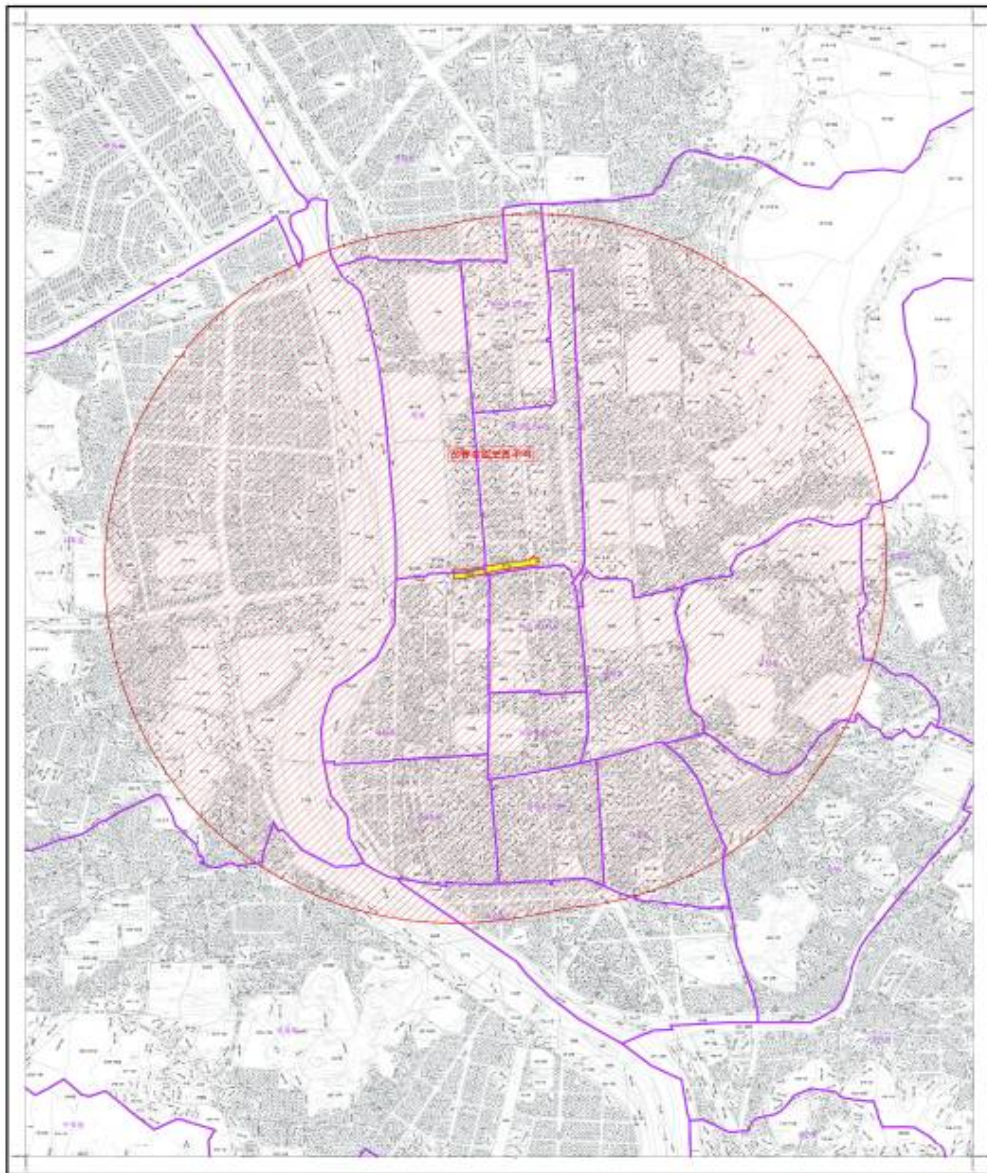




[별표 7]

### 전통상업보존구역(대현지하상가) 지형도면(제11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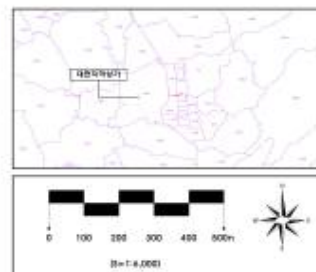
전통상업보존구역 (대현지하상가)



구분	구분명	구분번호	구분면적(㎡)	구분인구(명)
1. 도시계획법제	1.1. 도시계획법제	1.1.1. 도시계획법제	1.1.1.1. 도시계획법제	1.1.1.1. 도시계획법제
	1.2. 도시계획법제	1.2.1. 도시계획법제	1.2.1.1. 도시계획법제	1.2.1.1. 도시계획법제
	1.3. 도시계획법제	1.3.1. 도시계획법제	1.3.1.1. 도시계획법제	1.3.1.1. 도시계획법제
	1.4. 도시계획법제	1.4.1. 도시계획법제	1.4.1.1. 도시계획법제	1.4.1.1. 도시계획법제
	1.5. 도시계획법제	1.5.1. 도시계획법제	1.5.1.1. 도시계획법제	1.5.1.1. 도시계획법제
	1.6. 도시계획법제	1.6.1. 도시계획법제	1.6.1.1. 도시계획법제	1.6.1.1. 도시계획법제
	1.7. 도시계획법제	1.7.1. 도시계획법제	1.7.1.1. 도시계획법제	1.7.1.1. 도시계획법제
	1.8. 도시계획법제	1.8.1. 도시계획법제	1.8.1.1. 도시계획법제	1.8.1.1. 도시계획법제
	1.9. 도시계획법제	1.9.1. 도시계획법제	1.9.1.1. 도시계획법제	1.9.1.1. 도시계획법제
	1.10. 도시계획법제	1.10.1. 도시계획법제	1.10.1.1. 도시계획법제	1.10.1.1. 도시계획법제
2. 도시계획법제	2.1. 도시계획법제	2.1.1. 도시계획법제	2.1.1.1. 도시계획법제	2.1.1.1. 도시계획법제
	2.2. 도시계획법제	2.2.1. 도시계획법제	2.2.1.1. 도시계획법제	2.2.1.1. 도시계획법제
	2.3. 도시계획법제	2.3.1. 도시계획법제	2.3.1.1. 도시계획법제	2.3.1.1. 도시계획법제
	2.4. 도시계획법제	2.4.1. 도시계획법제	2.4.1.1. 도시계획법제	2.4.1.1. 도시계획법제
	2.5. 도시계획법제	2.5.1. 도시계획법제	2.5.1.1. 도시계획법제	2.5.1.1. 도시계획법제
	2.6. 도시계획법제	2.6.1. 도시계획법제	2.6.1.1. 도시계획법제	2.6.1.1. 도시계획법제
	2.7. 도시계획법제	2.7.1. 도시계획법제	2.7.1.1. 도시계획법제	2.7.1.1. 도시계획법제
	2.8. 도시계획법제	2.8.1. 도시계획법제	2.8.1.1. 도시계획법제	2.8.1.1. 도시계획법제
	2.9. 도시계획법제	2.9.1. 도시계획법제	2.9.1.1. 도시계획법제	2.9.1.1. 도시계획법제
	2.10. 도시계획법제	2.10.1. 도시계획법제	2.10.1.1. 도시계획법제	2.10.1.1. 도시계획법제

도시계획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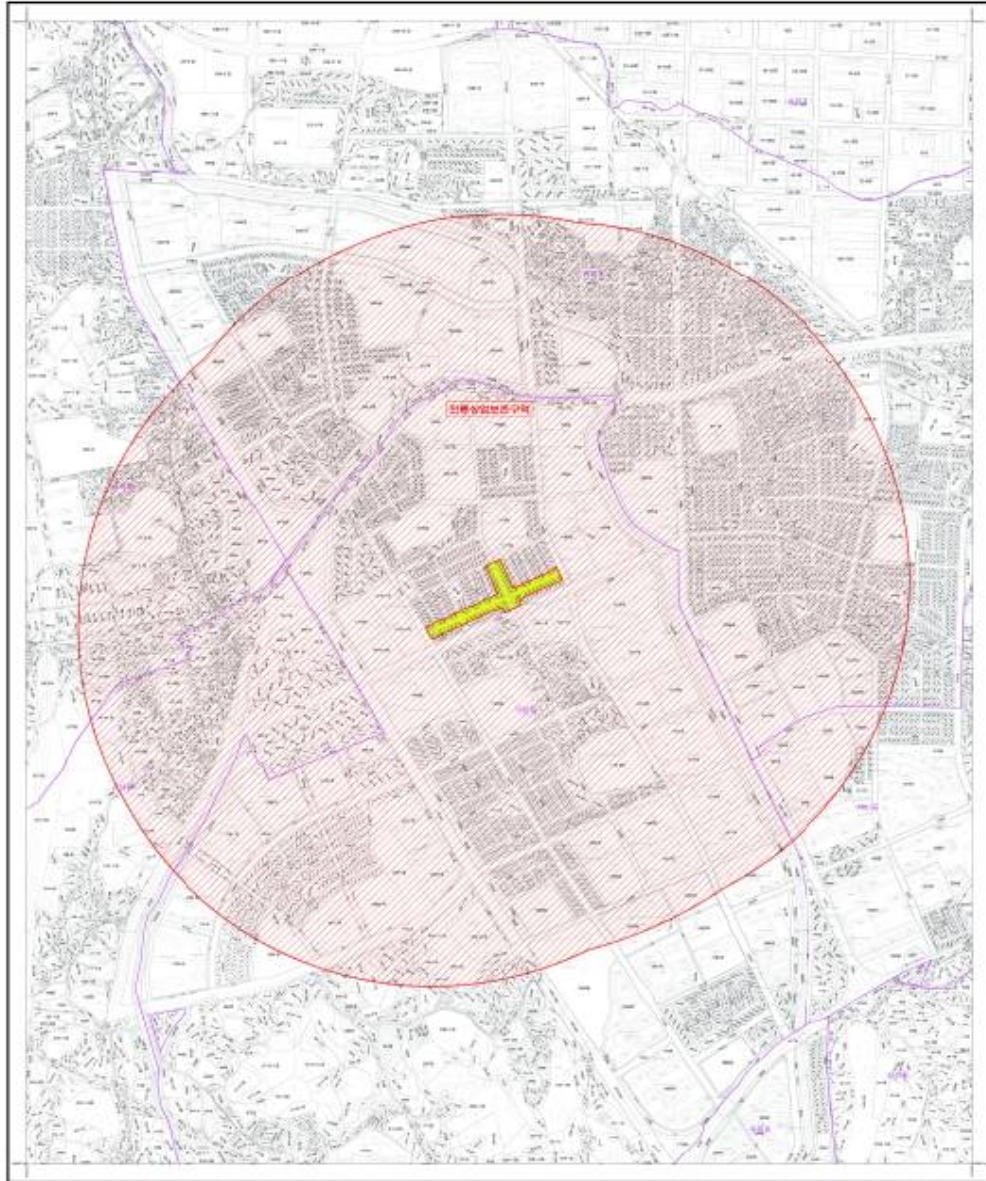
- 전통시장·전통상점가
- 전통상업보존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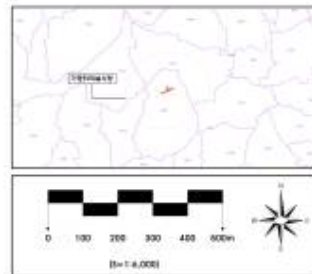
[별표 8]

### 전통상업보존구역(가경터미널시장) 지형도면(제11조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가경터미널 시장)



도시계획병례	
	인형시장·인형상화가
	전통상업보존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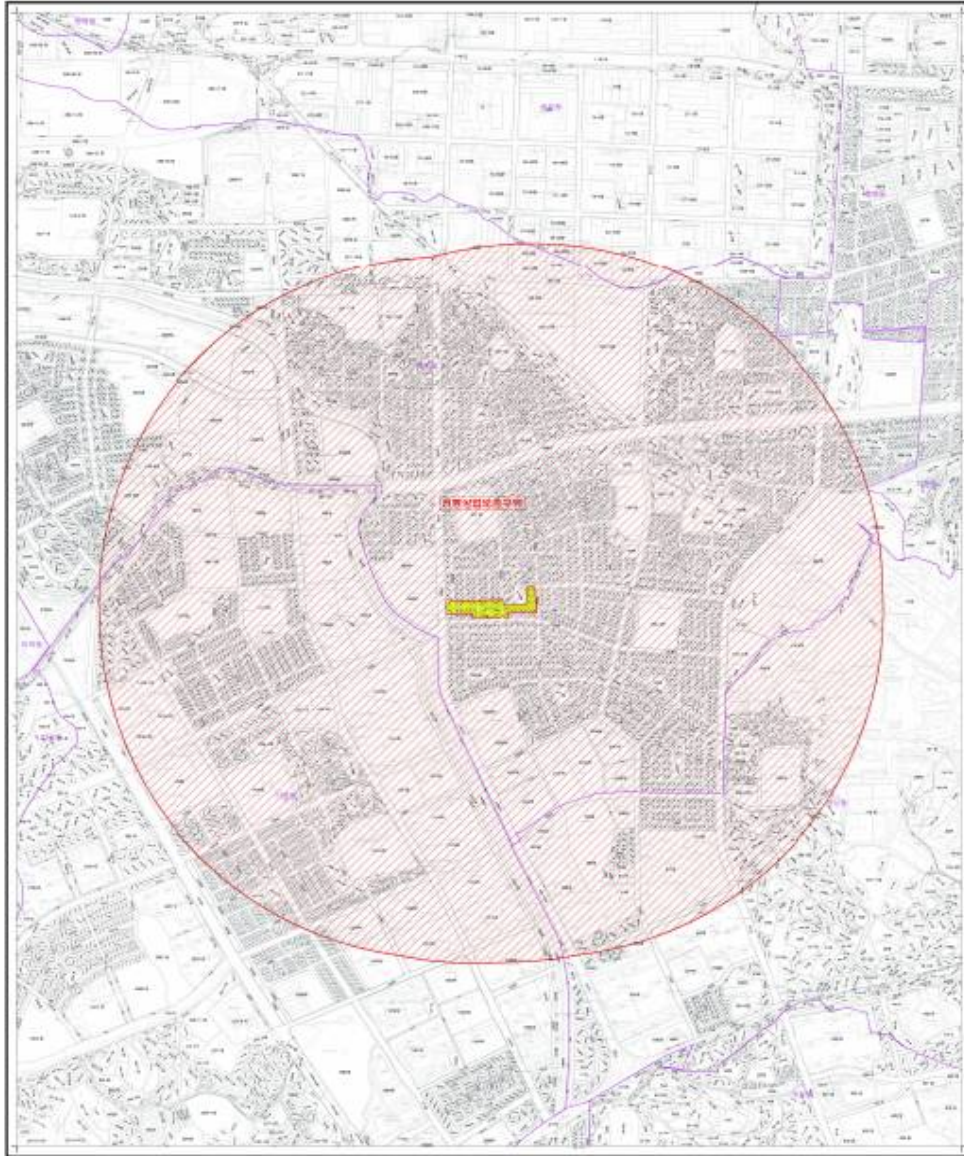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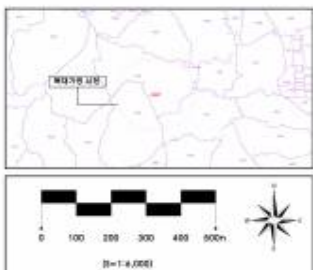
[별표 9]

**전통상업보존구역(복대가경시장) 지형도면**(제11조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복대가경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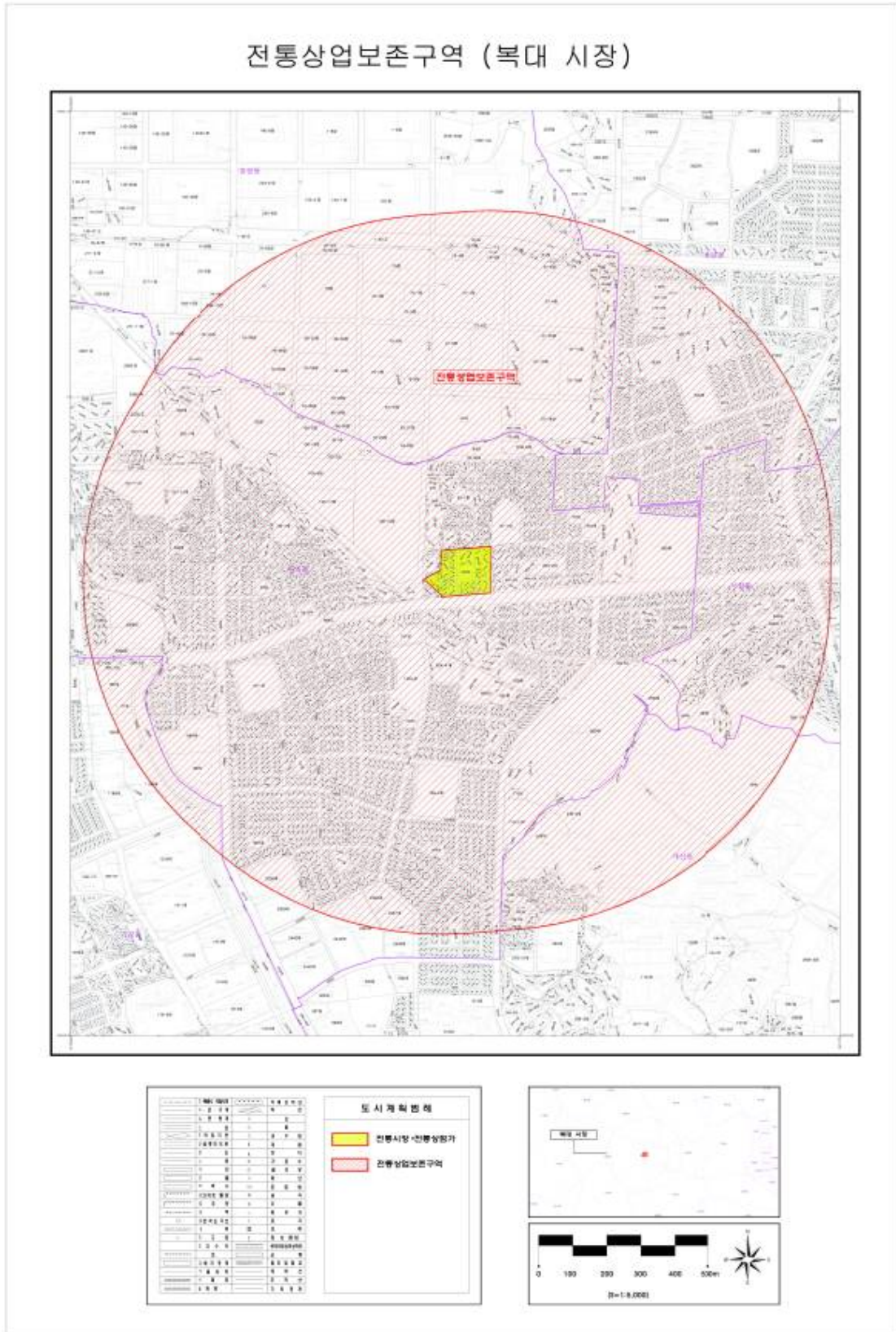


도시계획변례	
1. 목적	도시계획변례
2. 목적	도시계획변례
3. 목적	도시계획변례
4. 목적	도시계획변례
5. 목적	도시계획변례
6. 목적	도시계획변례
7. 목적	도시계획변례
8. 목적	도시계획변례
9. 목적	도시계획변례
10. 목적	도시계획변례
11. 목적	도시계획변례
12. 목적	도시계획변례
13. 목적	도시계획변례
14. 목적	도시계획변례
15. 목적	도시계획변례
16. 목적	도시계획변례
17. 목적	도시계획변례
18. 목적	도시계획변례
19. 목적	도시계획변례
20. 목적	도시계획변례
21. 목적	도시계획변례
22. 목적	도시계획변례
23. 목적	도시계획변례
24. 목적	도시계획변례
25. 목적	도시계획변례
26. 목적	도시계획변례
27. 목적	도시계획변례
28. 목적	도시계획변례
29. 목적	도시계획변례
30. 목적	도시계획변례
31. 목적	도시계획변례
32. 목적	도시계획변례
33. 목적	도시계획변례
34. 목적	도시계획변례
35. 목적	도시계획변례
36. 목적	도시계획변례
37. 목적	도시계획변례
38. 목적	도시계획변례
39. 목적	도시계획변례
40. 목적	도시계획변례
41. 목적	도시계획변례
42. 목적	도시계획변례
43. 목적	도시계획변례
44. 목적	도시계획변례
45. 목적	도시계획변례
46. 목적	도시계획변례
47. 목적	도시계획변례
48. 목적	도시계획변례
49. 목적	도시계획변례
50. 목적	도시계획변례



[별표 10]

**전통상업보존구역(복대시장) 지형도면**(제11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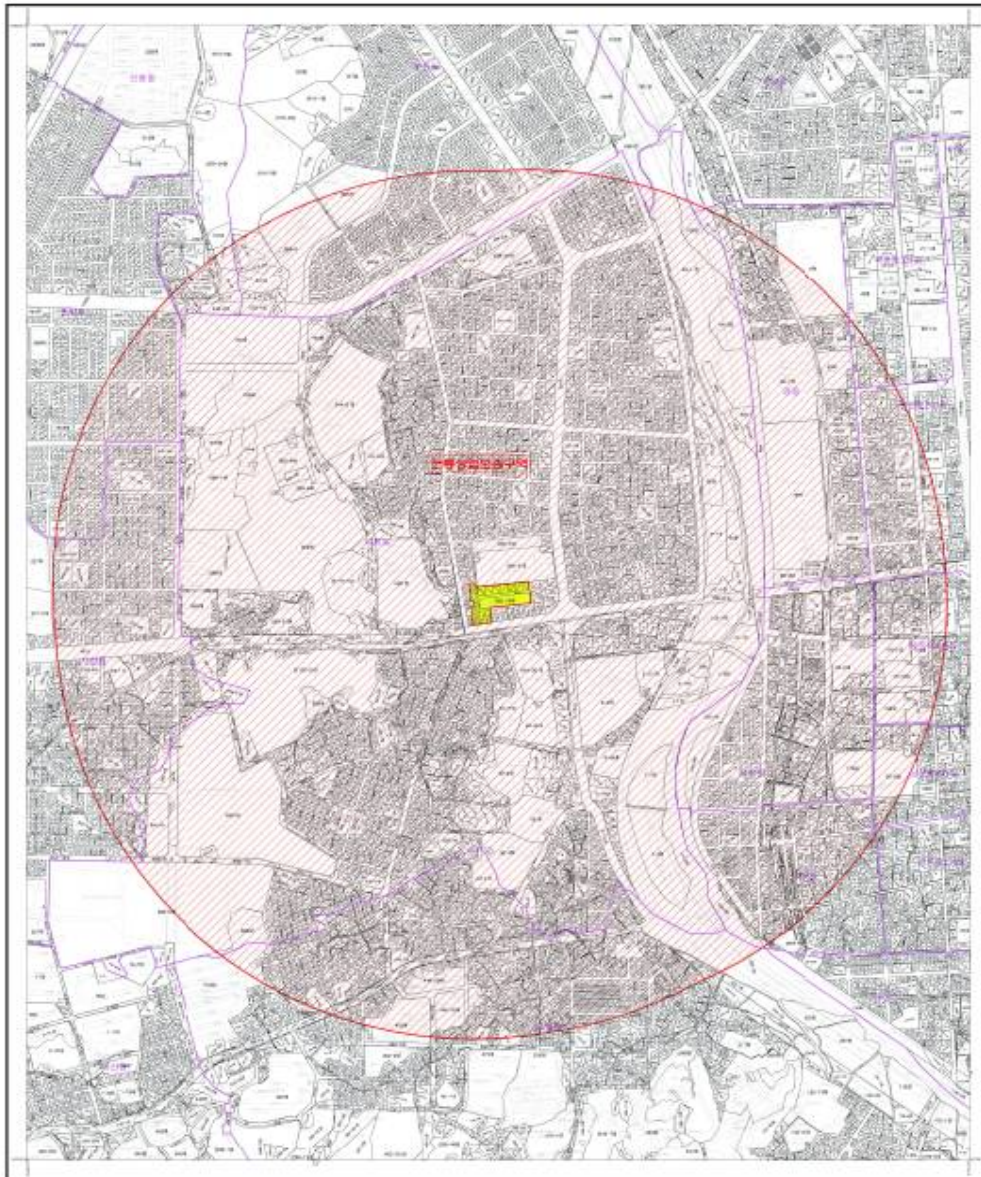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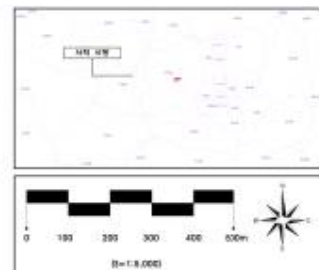
[별표 11]

### 전통상업보존구역(사직시장) 지형도면(제11조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사직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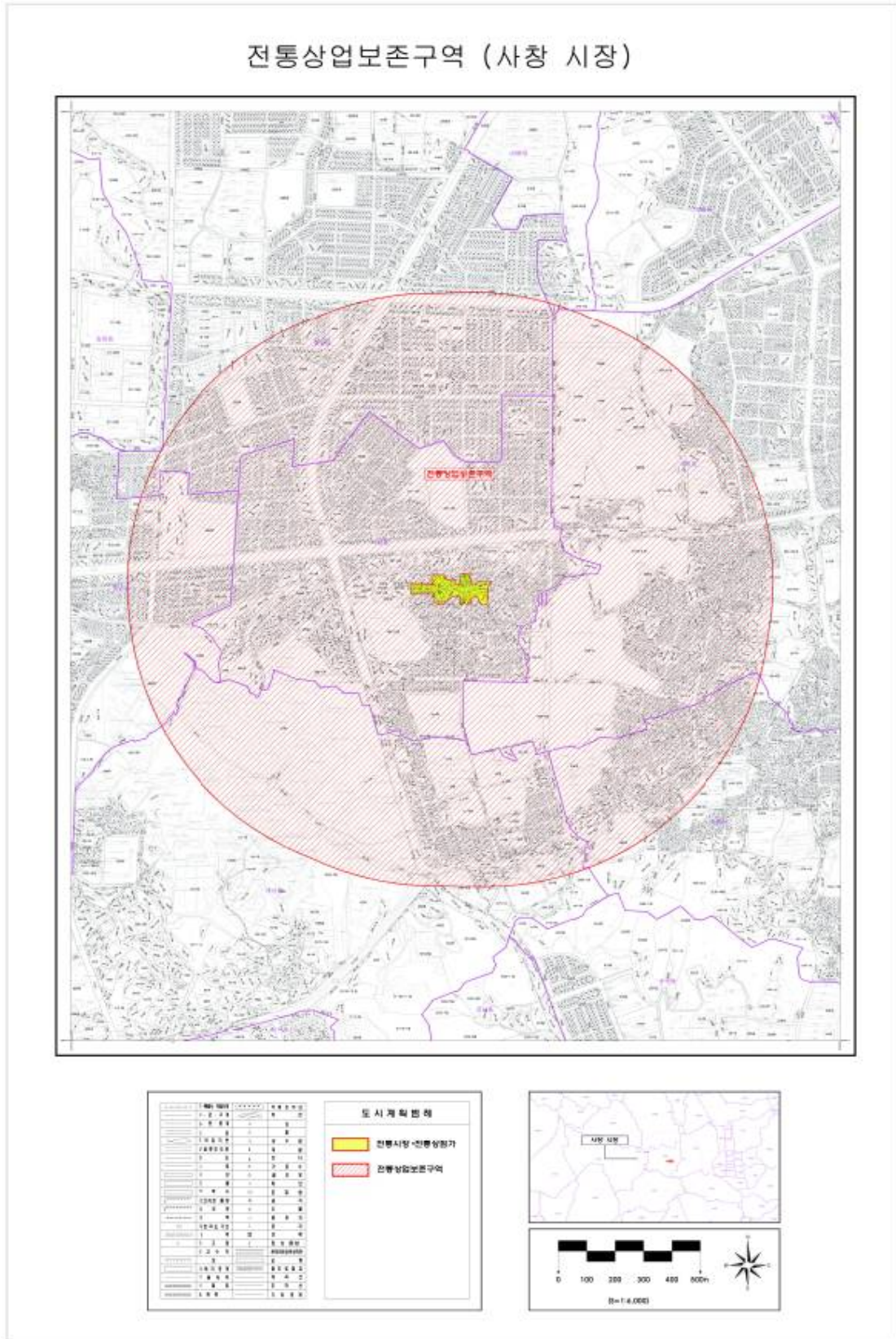


구분	구분명	구분번호	구분면적	구분인구	구분인구밀도
1	1.1	1.1.1	1.1.1.1	1.1.1.1	1.1.1.1
2	2.1	2.1.1	2.1.1.1	2.1.1.1	2.1.1.1
3	3.1	3.1.1	3.1.1.1	3.1.1.1	3.1.1.1
4	4.1	4.1.1	4.1.1.1	4.1.1.1	4.1.1.1
5	5.1	5.1.1	5.1.1.1	5.1.1.1	5.1.1.1
6	6.1	6.1.1	6.1.1.1	6.1.1.1	6.1.1.1
7	7.1	7.1.1	7.1.1.1	7.1.1.1	7.1.1.1
8	8.1	8.1.1	8.1.1.1	8.1.1.1	8.1.1.1
9	9.1	9.1.1	9.1.1.1	9.1.1.1	9.1.1.1
10	10.1	10.1.1	10.1.1.1	10.1.1.1	10.1.1.1
11	11.1	11.1.1	11.1.1.1	11.1.1.1	11.1.1.1
12	12.1	12.1.1	12.1.1.1	12.1.1.1	12.1.1.1
13	13.1	13.1.1	13.1.1.1	13.1.1.1	13.1.1.1
14	14.1	14.1.1	14.1.1.1	14.1.1.1	14.1.1.1
15	15.1	15.1.1	15.1.1.1	15.1.1.1	15.1.1.1
16	16.1	16.1.1	16.1.1.1	16.1.1.1	16.1.1.1
17	17.1	17.1.1	17.1.1.1	17.1.1.1	17.1.1.1
18	18.1	18.1.1	18.1.1.1	18.1.1.1	18.1.1.1
19	19.1	19.1.1	19.1.1.1	19.1.1.1	19.1.1.1
20	20.1	20.1.1	20.1.1.1	20.1.1.1	20.1.1.1
21	21.1	21.1.1	21.1.1.1	21.1.1.1	21.1.1.1
22	22.1	22.1.1	22.1.1.1	22.1.1.1	22.1.1.1
23	23.1	23.1.1	23.1.1.1	23.1.1.1	23.1.1.1
24	24.1	24.1.1	24.1.1.1	24.1.1.1	24.1.1.1
25	25.1	25.1.1	25.1.1.1	25.1.1.1	25.1.1.1
26	26.1	26.1.1	26.1.1.1	26.1.1.1	26.1.1.1
27	27.1	27.1.1	27.1.1.1	27.1.1.1	27.1.1.1
28	28.1	28.1.1	28.1.1.1	28.1.1.1	28.1.1.1
29	29.1	29.1.1	29.1.1.1	29.1.1.1	29.1.1.1
30	30.1	30.1.1	30.1.1.1	30.1.1.1	30.1.1.1
31	31.1	31.1.1	31.1.1.1	31.1.1.1	31.1.1.1
32	32.1	32.1.1	32.1.1.1	32.1.1.1	32.1.1.1
33	33.1	33.1.1	33.1.1.1	33.1.1.1	33.1.1.1
34	34.1	34.1.1	34.1.1.1	34.1.1.1	34.1.1.1
35	35.1	35.1.1	35.1.1.1	35.1.1.1	35.1.1.1
36	36.1	36.1.1	36.1.1.1	36.1.1.1	36.1.1.1
37	37.1	37.1.1	37.1.1.1	37.1.1.1	37.1.1.1
38	38.1	38.1.1	38.1.1.1	38.1.1.1	38.1.1.1
39	39.1	39.1.1	39.1.1.1	39.1.1.1	39.1.1.1
40	40.1	40.1.1	40.1.1.1	40.1.1.1	40.1.1.1
41	41.1	41.1.1	41.1.1.1	41.1.1.1	41.1.1.1
42	42.1	42.1.1	42.1.1.1	42.1.1.1	42.1.1.1
43	43.1	43.1.1	43.1.1.1	43.1.1.1	43.1.1.1
44	44.1	44.1.1	44.1.1.1	44.1.1.1	44.1.1.1
45	45.1	45.1.1	45.1.1.1	45.1.1.1	45.1.1.1
46	46.1	46.1.1	46.1.1.1	46.1.1.1	46.1.1.1
47	47.1	47.1.1	47.1.1.1	47.1.1.1	47.1.1.1
48	48.1	48.1.1	48.1.1.1	48.1.1.1	48.1.1.1
49	49.1	49.1.1	49.1.1.1	49.1.1.1	49.1.1.1
50	50.1	50.1.1	50.1.1.1	50.1.1.1	50.1.1.1
51	51.1	51.1.1	51.1.1.1	51.1.1.1	51.1.1.1
52	52.1	52.1.1	52.1.1.1	52.1.1.1	52.1.1.1
53	53.1	53.1.1	53.1.1.1	53.1.1.1	53.1.1.1
54	54.1	54.1.1	54.1.1.1	54.1.1.1	54.1.1.1
55	55.1	55.1.1	55.1.1.1	55.1.1.1	55.1.1.1
56	56.1	56.1.1	56.1.1.1	56.1.1.1	56.1.1.1
57	57.1	57.1.1	57.1.1.1	57.1.1.1	57.1.1.1
58	58.1	58.1.1	58.1.1.1	58.1.1.1	58.1.1.1
59	59.1	59.1.1	59.1.1.1	59.1.1.1	59.1.1.1
60	60.1	60.1.1	60.1.1.1	60.1.1.1	60.1.1.1
61	61.1	61.1.1	61.1.1.1	61.1.1.1	61.1.1.1
62	62.1	62.1.1	62.1.1.1	62.1.1.1	62.1.1.1
63	63.1	63.1.1	63.1.1.1	63.1.1.1	63.1.1.1
64	64.1	64.1.1	64.1.1.1	64.1.1.1	64.1.1.1
65	65.1	65.1.1	65.1.1.1	65.1.1.1	65.1.1.1
66	66.1	66.1.1	66.1.1.1	66.1.1.1	66.1.1.1
67	67.1	67.1.1	67.1.1.1	67.1.1.1	67.1.1.1
68	68.1	68.1.1	68.1.1.1	68.1.1.1	68.1.1.1
69	69.1	69.1.1	69.1.1.1	69.1.1.1	69.1.1.1
70	70.1	70.1.1	70.1.1.1	70.1.1.1	70.1.1.1
71	71.1	71.1.1	71.1.1.1	71.1.1.1	71.1.1.1
72	72.1	72.1.1	72.1.1.1	72.1.1.1	72.1.1.1
73	73.1	73.1.1	73.1.1.1	73.1.1.1	73.1.1.1
74	74.1	74.1.1	74.1.1.1	74.1.1.1	74.1.1.1
75	75.1	75.1.1	75.1.1.1	75.1.1.1	75.1.1.1
76	76.1	76.1.1	76.1.1.1	76.1.1.1	76.1.1.1
77	77.1	77.1.1	77.1.1.1	77.1.1.1	77.1.1.1
78	78.1	78.1.1	78.1.1.1	78.1.1.1	78.1.1.1
79	79.1	79.1.1	79.1.1.1	79.1.1.1	79.1.1.1
80	80.1	80.1.1	80.1.1.1	80.1.1.1	80.1.1.1
81	81.1	81.1.1	81.1.1.1	81.1.1.1	81.1.1.1
82	82.1	82.1.1	82.1.1.1	82.1.1.1	82.1.1.1
83	83.1	83.1.1	83.1.1.1	83.1.1.1	83.1.1.1
84	84.1	84.1.1	84.1.1.1	84.1.1.1	84.1.1.1
85	85.1	85.1.1	85.1.1.1	85.1.1.1	85.1.1.1
86	86.1	86.1.1	86.1.1.1	86.1.1.1	86.1.1.1
87	87.1	87.1.1	87.1.1.1	87.1.1.1	87.1.1.1
88	88.1	88.1.1	88.1.1.1	88.1.1.1	88.1.1.1
89	89.1	89.1.1	89.1.1.1	89.1.1.1	89.1.1.1
90	90.1	90.1.1	90.1.1.1	90.1.1.1	90.1.1.1
91	91.1	91.1.1	91.1.1.1	91.1.1.1	91.1.1.1
92	92.1	92.1.1	92.1.1.1	92.1.1.1	92.1.1.1
93	93.1	93.1.1	93.1.1.1	93.1.1.1	93.1.1.1
94	94.1	94.1.1	94.1.1.1	94.1.1.1	94.1.1.1
95	95.1	95.1.1	95.1.1.1	95.1.1.1	95.1.1.1
96	96.1	96.1.1	96.1.1.1	96.1.1.1	96.1.1.1
97	97.1	97.1.1	97.1.1.1	97.1.1.1	97.1.1.1
98	98.1	98.1.1	98.1.1.1	98.1.1.1	98.1.1.1
99	99.1	99.1.1	99.1.1.1	99.1.1.1	99.1.1.1
100	100.1	100.1.1	100.1.1.1	100.1.1.1	100.1.1.1



[별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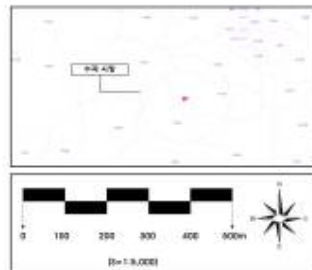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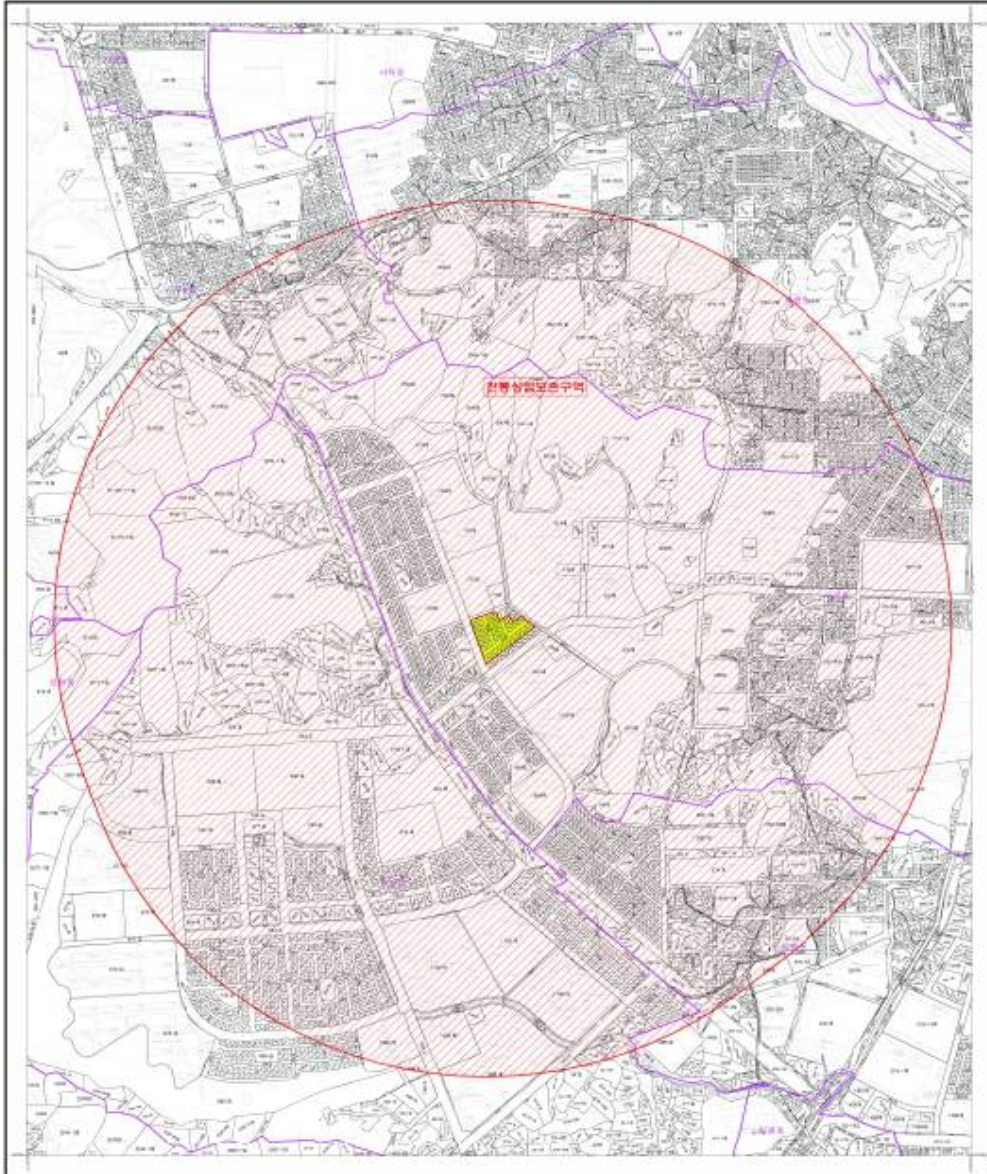
**전통상업보존구역(사창시장) 지형도면**(제11조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수곡시장) 지형도면**(제11조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수곡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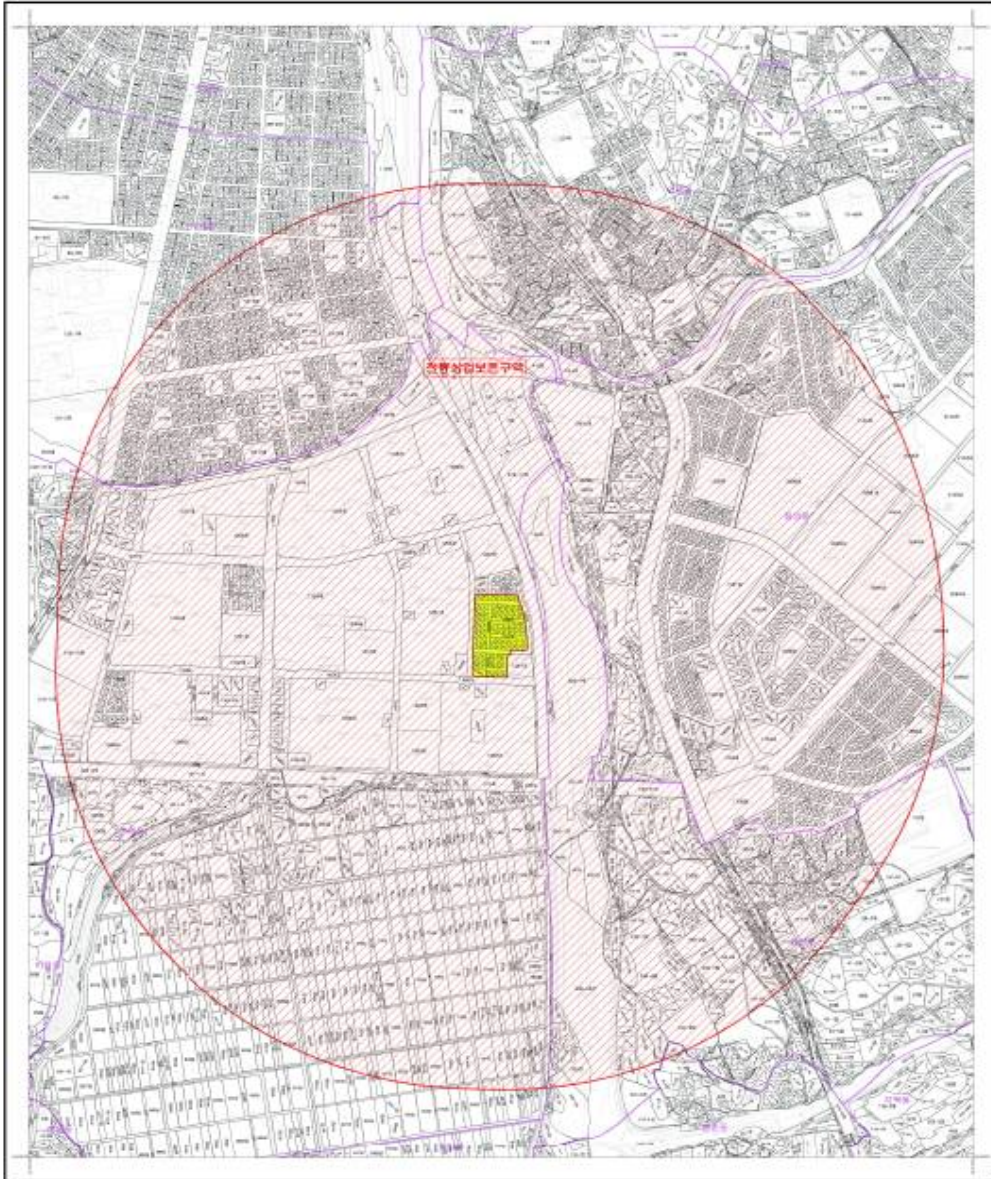




[별표 15]

### 전통상업보존구역(원마루시장) 지형도면(제11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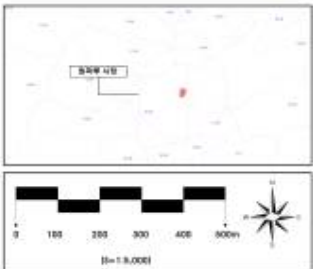
전통상업보존구역 (원마루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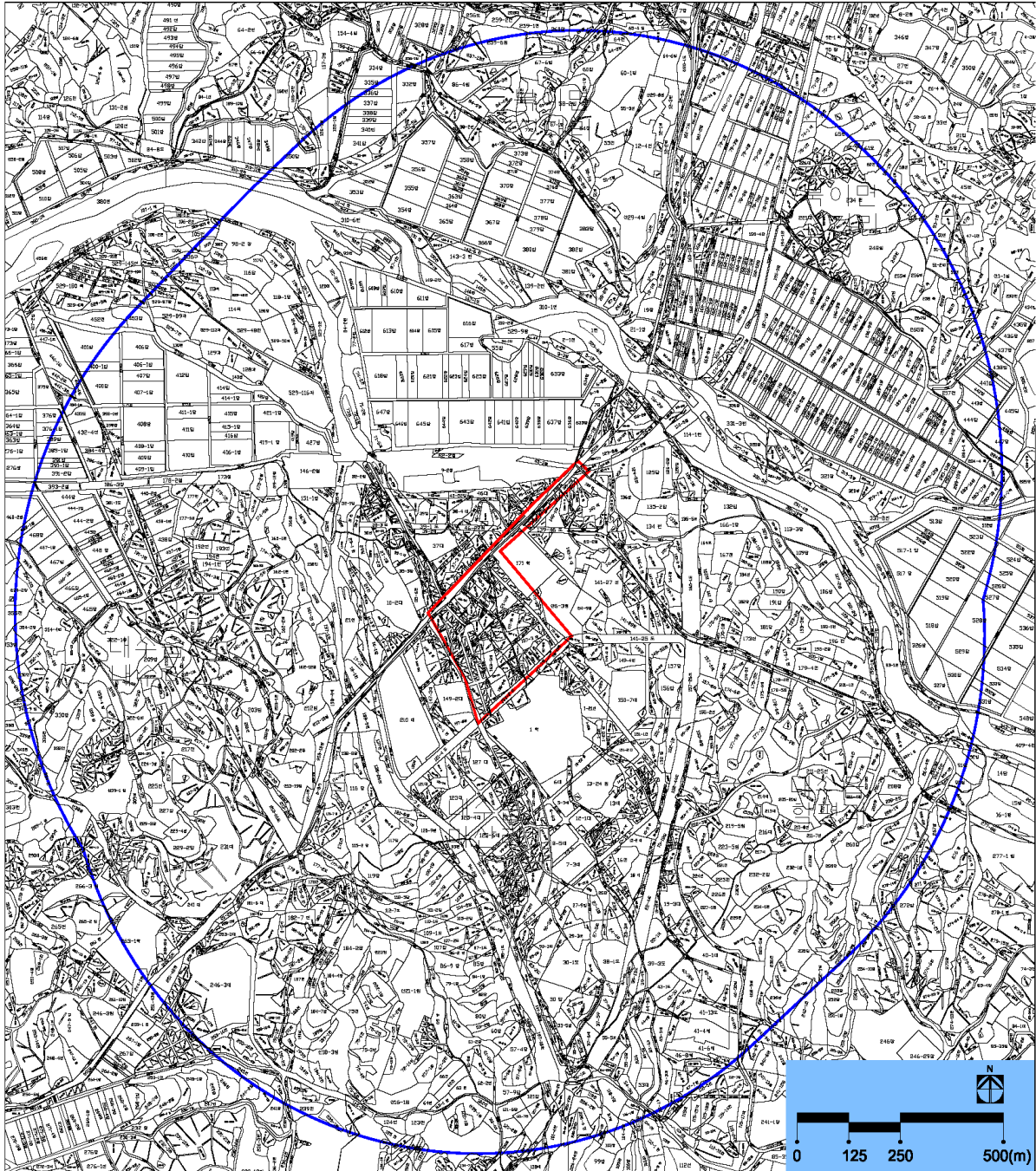
도시계획번호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32	32
33	33
34	34
35	35
36	36
37	37
38	38
39	39
40	40
41	41
42	42
43	43
44	44
45	45
46	46
47	47
48	48
49	49
50	50
51	51
52	52
53	53
54	54
55	55
56	56
57	57
58	58
59	59
60	60
61	61
62	62
63	63
64	64
65	65
66	66
67	67
68	68
69	69
70	70
71	71
72	72
73	73
74	74
75	75
76	76
77	77
78	78
79	79
80	80
81	81
82	82
83	83
84	84
85	85
86	86
87	87
88	88
89	89
90	90
91	91
92	92
93	93
94	94
95	95
96	96
97	97
98	98
99	99
100	100

도시계획번호

- 원형시장-전통상점가
- 전통상업보존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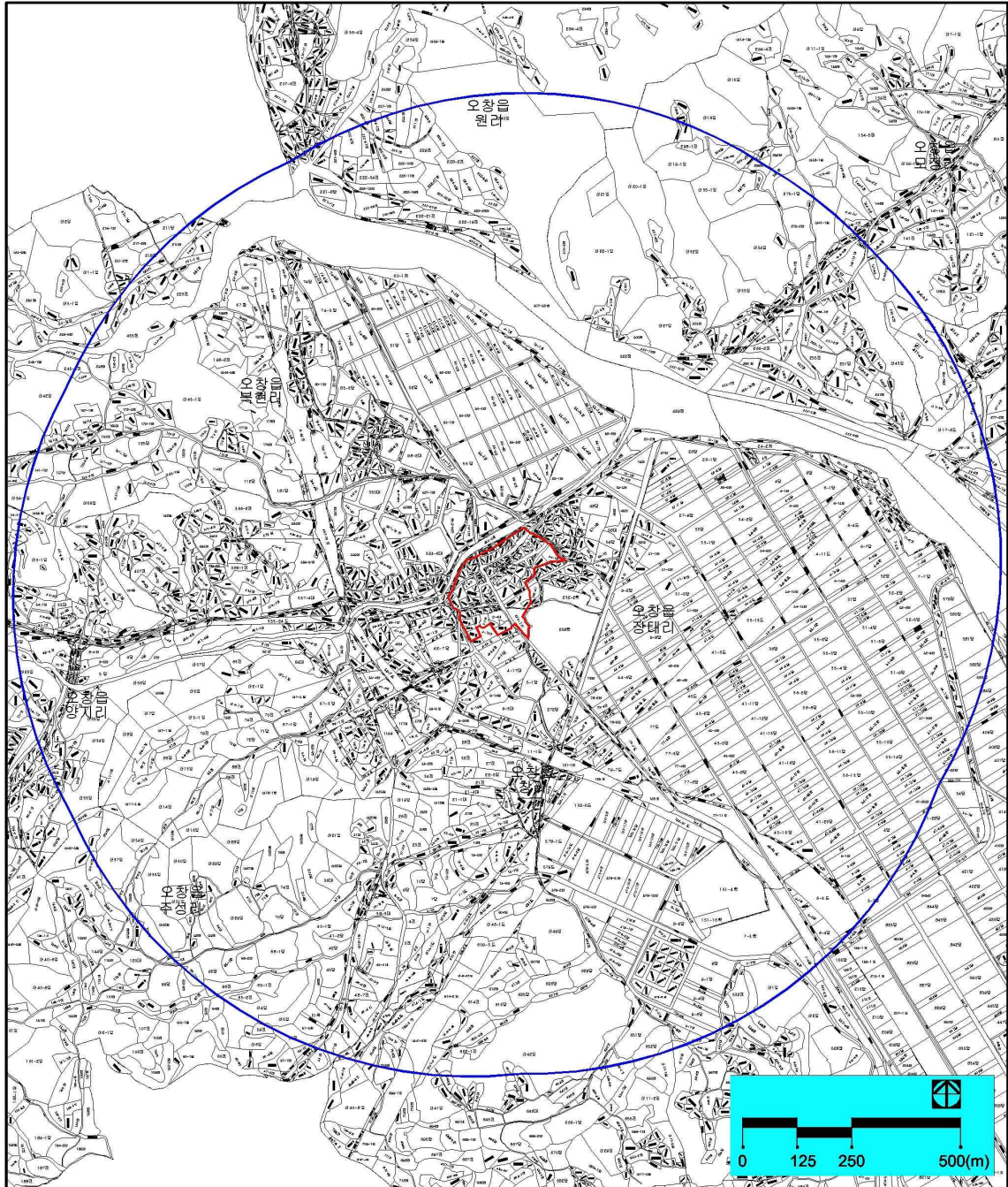
### 전통상업보존구역(내수전통시장) 지형도면(제11조 관련)



범례 ———— 전통시장 ———— 전통상업보존구역



### 전통상업보존구역(오창전통시장) 지형도면(제11조 관련)



범례      — 전통상업보존구역      — 시장부지      — 리경계

[별지 서식]

### 의무휴업일 변경신청서

상호(점포)명		개 설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신 청 사 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의 무 휴 업 일			
변경사유			
<p>「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p> <p>청주시장 귀하</p>			

#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4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지역경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보조금지원 대상(안 제5조)
- 보조금 지원 규모(안 제6조)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안 제8조)
-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2조 ~ 제1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4등급기준)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8.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사업을 신청한 세대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동시에 가스공급을 신청한 세대수가 5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경우의 수요가 시설분담금 또는 공급관 설치비
2. 읍·면지역의 경우 본관, 정압기 및 공급관 설치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50퍼센트를 지원하며,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본관, 정압기 및 공급관은 설치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7조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사업내용 및 공사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결과를 신청자, 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예정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 ①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 서류 검토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목적 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청주시도시가스공급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정한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 대상지역 및 사업의 선정,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금액 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도시가스 관계 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 업무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시민단체 대표 등
5. 도시가스 사업자의 담당부서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자와 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원활한 사

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점검 등) 시장 및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감독과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조례 및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22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는 해당 연도 보조사업 완료 후, 매년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b>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b>			
신청인	①단위 사업명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현 주소	(전화 :            )	
⑤가구수(세대수)			
⑥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 청주시    구    로(    동)    번길 공사종점 : 청주시    구    로(    동)    번길	
⑦배관연장		M	
⑧도시가스공급확인		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회사                               (인)	
<p>「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청주시장    귀하</p>			

(뒷면)

##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

연번	신청자 (세대주)	주소	건물 여	소유 부	연락처	서명

※ 여백 부족 시 별지 작성







#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4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지역경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로 제정함.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지역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업무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보조금의 결정, 지급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 경제업무담당과장 및 시의회 의원 2명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 및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의안 번호	4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기업지원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청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함.
-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7조)
-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1조)
- 국내외기업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제30조)
-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국외 기업, 국내복귀 기업, 개성공단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5.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이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개인기업인 경우 주된 사업자 등록지) 또는 연구소, 공장을 청주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0.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1.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과건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개별사업자로 등록하고 동일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서비스업 인원을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12.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보조사업"이란 수도권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시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사업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16. "건물임차료"란 타인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자가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평가받아 제출한 해당 건물의 임차료 금액을 말한다.

17. "건물임차료상당액"이란 건물을 소유하거나 신축한 자가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평가 받아 제출한 해당 건물의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설치) 국내·국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5.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국외 투자기업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투자유치 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국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청주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국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투자유치진흥기금

제1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내·국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청주시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1. 국내·국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국내·국외기업에 대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3.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및 「신탁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며,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제18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



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5장 국내·국외기업 투자지원

제22조(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별표 1의 수도권 내 대상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기업, 신설·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역에서 이전 증설하는 경우 제23조를 준용하

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3조(다른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는 3년간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비용,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시·도 이전기업의 준용) 시장은 다른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하며, 지원금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관내기업 증설투자 지원) ① 시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인

고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각각의 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신규증설의 경우: 토지매입비(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 설치비

2. 기존 공장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건축비, 시설·장비 설치비

제26조(사업서비스업 지원) ① 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이 새로 이전 또는 신설·증설하는 경우 건물임차료, 건물임차료상당액, 시설·장비 설치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 지원은 연간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400명 미만인 경우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 지원은 연간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로 5년간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상시고용인원이 400명 이상인 경우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 지원은 연간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로 5년간 최고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

위에서 최고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증설하는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투자기업은 토지·건물 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 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되 제24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물류·항공 산업 육성 지원) 시장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물류사업과 「항공법」 제2조제37호에서 정한 항공기 정비업의 육성을 위해서 1일 상시근로인원이 30명 이상이고 50억원 이상 투자하여 신설·증설하는 물류산업과 항공산업 투자기업에 토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사업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지원한도)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기업당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투자기업에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1일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20억원 이내

2. 1일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5,00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50억원 이내

제30조(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3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처음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지 못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지급대상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시장은 국내·국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투자기업지원 재원부담) 시장은 시와 인접한 자치단체와 협력하

여 투자유치가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해당 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35조(지원대상 제외)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 기업 중 시의 유치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6조(지원금의 배분) 모든 시설 지원금은 지원금산출 총액의 80퍼센트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시설을 제외한 일반 시설공사에 한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소재 업체를 선정, 시설 등의 공사를 할 경우에 20퍼센트를 추가 지원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36호 청주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청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본다.

[별표 1]

**수도권 내 대상지역**(제22조 관련)

구분	지원기준 및 지원업종
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li>   <li>○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는 특수상황지역인 관계로 제외)</li> </ul>



**다른 시도 지역구분 및 지원기준**(제23조 관련)

구 분	대 상	지원기준 및 지원업종
<p>다른 시·도</p>	<p>○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별표 1을 제외한 지역 및 시·도</p>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및 다른 시·도에서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li> </ul> <p>○ 이전기업 대상 및 규모</p> <p>&lt;본사 및 공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li> </ul> <p>&lt;기업부설연구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li> </ul> <p>&lt;문화산업 및 연구·개발기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고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li> </ul> <p>&lt;집단이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규모가 50명 미만인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2개 이상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li> <li>-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인 IT·BT·NT 등 첨단업종에 한하여 지원</li> </ul> <p>○ 지원대상 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지원을 받는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li> </ul>



#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4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기업지원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청원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
- 기금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3.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일반대출자금”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6.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저리로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자금의 이자 차액을 시장이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예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으로 설정하여 계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청주시 지정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에 대한 제13조제3항 따른 이자보전

2.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금융기관 용자 지원) ① 금융기관은 시장의 용자 대상 업체 확정 통보에 따라 지원 자금의 확보 범위에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용자 지원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는 금융기관의 저리용자에 대한 이차 차액을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제8조(지원 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된 사업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시에 있는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체
2.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3. 중소수출업체
4. 소프트웨어 업체
5.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
6. 「청주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경영하는 기업
9. 농업관련 제조업 및 수출업체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 받았을 경우 이자보전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거나 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용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용자총액, 용자대상사업, 용자한도, 용자조건, 용자신청절차 등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용자 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용자 신청서(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인·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 업체)
5. 신청하는 업체가 거래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전년도 대비)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신고서 사본
6.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7. 수출실적증명(수출업체에 한함)
8. 사업계획서
9. 그 밖에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용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용자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용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용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일 현재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일 성격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전자금을 지원받아 사용 중인 업체는 조례에 따른 용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9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면 지역과 동(洞)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한다.

1. 기금운용업무 담당 국장

2. 언론사 경제분야 인사

3. 경제분야 교수



4. 금융기관 관계자
5. 경제단체 인사
6.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
7. 신용보증기관 관계자
8. 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9.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용자조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업체당 용자한도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② 지원기간은 최고 3년으로 한다.

③ 이자보전 지원은 3억원 이하와 3억원 초과로 구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중 3퍼센트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다만,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특례지원은 1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금의 용도) 용자지원되는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용자금의 상환) 용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만기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총액 외의 지원) 시장은 연도 중 이자보전 지원이 만료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이자보전 지원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용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8조(변경사항 통보) 지원금을 받은 자는 업체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은 필요할 때에는 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용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용자상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해서 중소기업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5호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원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원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② 종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기업지원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우수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유망 중소기업"이란 장래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중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4. "기업인"이란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지역기업들이 회원기업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옴부즈만(Ombudsman)"이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 제2장 기업활동 촉진

제3조(우수기업의 육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 및 기술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국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에 참가하는 기관 및 기업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유망 중소기업 육성

제8조(선정) 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은 평상시 종업원 수 300명 미만인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기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 중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제4장 우수기업인 지원 및 예우

제10조(기업인 예우)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수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① 제10조에 규정된 예우 및 지원받을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한다.

1. 중소기업대상 등 시 또는 정부 그리고 기업관련 기관으로부터 포상



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그 밖에 고용증대, 주민다수채용, 품질경영향상,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한다.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제10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운전, 육성자금의 특례지원
2. 수출보험료, 기업인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의 참가 우선지원
3. 선정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적극 홍보
4. 그 밖에 시가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3조(제외대상)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제10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 법인전환 등으로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기업이나 기업인의 과실로 중대한 재해나 직업병 다발 등 사

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인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이나 기업인
4.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지정 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기업이나 기업인

제14조(관리) ① 시장은 기업이나 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업이나 기업인을 수시 방문하여 업체동향 및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장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제15조(옴부즈만)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옴부즈만의 자격)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업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공무원 서기관급 이상 경력이 있거나 이에 상응한 경력이 있는 자

제17조(옴부즈만의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기업경영상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기업인을 방문하여 간담회 개최나 의견수렴
2. 정부와 시의 중소기업 시책추진과 관련한 기업인 여론수렴
3.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제출
4.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제18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① 옴부즈만은 기업인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 해당 부서는 처리결과를 옴부즈만 및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시의 해당 부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의사항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애로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3. 유망 중소기업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시의원 2명,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중 시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포상 조례」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54호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청원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읍부즈만,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청원군중소기업융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기업지원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 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교류협력 도시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교류협력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후관리 및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 도시 간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류협력"이란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 도시의 선정) ①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1국가별 2개 자치단체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협력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협력의 제의) ①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여건과 정치적·외교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상 도시의 관련 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류협력을 제의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류협력을 검토·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인구 및 행정·재정규모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지역의 산업·경제의 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6조(교류협력 동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할 때에는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교류협력의 성립) 교류협력은 양 도시를 대표하는 자가 체결식을 갖고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주요사항에 합의·서명한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교류사업) 시장은 교류협력 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의 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 교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통 관심사항 등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양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시장은 교류협력 추진·체결 등과 관련한 모든 기록 및 관계서류 등을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 간 정치적·외교적인 문제로 일시 교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또는 교류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류협력 체결 후 교류의 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 적극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교류협력의 취소) 시장은 양 자치단체 간 교류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의 중단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51호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 체결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기업지원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를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로 제정함.
- 임대아파트의 위치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임대아파트의 위탁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주시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임대아파트는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40(송정동)에 둔다.

제3조(사용료) ① 청주시장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제4조(사용료 환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손해배상) 입주자가 허가 없이 임대아파트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임대아파트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아파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아파트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6조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5호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계약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계약자의 임대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임대아파트 사용료**(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요 금
임대보증금	세대당	100,000원
임대료 (1개월)	세대당	50,000원
공공요금	수도료 전기료	개인별 균등징수



#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5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기업지원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를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로 제정함.
-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관”이란 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복지시설”이란 대강당 겸 예식장, 회의실, 이용실·미용실, 취미교실, 상담실, 유아보육실, 체력단련실, 식당과 그 외 부속된 건물 및 설비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근로자”란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6.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① 복지관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자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 만료 90일 전에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지원) 시장은 복지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 한정하여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 및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 및 이용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2. 일반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제8조(사용과 이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과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중

지시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시설 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어긋날 때
5. 그 밖에 사용제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료) 복지관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자체사정으로 복지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납부액 전액을 반환해 주고, 사용일 7일 전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며, 7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강사) ① 외래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

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59호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및 사용허  
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근로자종합복지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계	3개소
북대근로자종합복지관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8-1(북대동)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46번길 20(송정동)
근로복지회관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56(북대동)

[별표 2]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대회의실 (예식장겸용)	○1회 2시간 이 내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 -20,000원 ○일반시민 -40,000원	1시간 초과 시마다 -근로자 및 저소득층시민은 10,000원을 추가 -일반시민은 20,000원을 추가한다.
폐백실	○1회 사용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 -10,000원 ○일반시민 -20,000원	오전, 오후 각 1회
소회의실	"	○근로자단체 -10,000원 ○일반단체 -20,000원	1시간초과시마다 -근로자단체는 5,000원 추가 -일반시민단체는 10,000원 추가
이용실	○조 발 ○면 도	○시중요금의 70% 이하	그 밖의 사용료는 시중요 금으로 함.
미용실	○파 마 ○컷 트 ○신부화장	○시중요금의 70% 이하	"
식당	○한 식 ○양 식	○시중요금의 70% 이하	
보육시설	○유아 1인 · 2세 미만 · 2세 · 3세 이상	근로자 일반시민 근로자자녀는 정부표준보육 정부표준보육 단가에 대한 단가의 고시 고시 금액의 금액의 80% 1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면제 (간식비 제외)

2. 부속시설사용료

구 분	이용기준	요 금	비 고
피아노	1회	10,000원	
냉난방시설	2시간	50,000원	○2시간 미만 사용은 2시간 으로 계산함.





#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일자리창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조례」와 「청원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제6조 ~ 제11조)
-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2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사

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 및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에 위탁할 때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기업업무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사회적기업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위촉은 추천 및 공모제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

회적기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결과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퇴직할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출석한 관계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4. 우선구매, 시설비 등 지원 및 시세감면 등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육성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과 평가 및 해당연도 육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

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의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 및 시유건물을

유상·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청주시 출연기관이나 민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서비스 공급 및 시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지급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적기업 등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사항을 기초로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지도  
· 감독 및 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우선구매 촉진 및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보고)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시와 시 산하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기업 제품 등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2. 물품별·용역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제1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7조(시세 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5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일자리창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직업안정법」 제4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청주시민 각자가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주 지역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하여 청주시민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업지도, 구인·구직의 개척, 직업정보 제공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업지도, 구인·구직의 개척, 직업정보 제공 등 고용서비스를 위하여 센터를 둔다.

②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업지도
2. 직업상담

3.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정리
4. 고용정보의 제공
5.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6. 구인·구직의 개척

제4조(구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 중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센터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제3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원을 3명 이상 둘 수 있다.

③ 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센터 직원의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에 센터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기관교육이수자의 취업 알선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 내에 구인자·구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구인·구직 정보 열람 안내 및 지도

2.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

3. 취업정보지 비치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때는 상담원을 보유하고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는 목적, 위탁의 범위, 위탁기간, 업무의 위임, 책임과 의무, 효력발생, 예산지원 내용, 협약의 해지, 그 밖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장비 및 공간배치) 센터에는 구인자·구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담창구: 칸막이를 하지 않은 개방형 취업상담 창구

2. 개별상담실: 개별 상담 요구 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밖에서 안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

3. 상설 만남의 장소 설치: 구인자·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교육, 회의 등 상설공간 확보 및 시설 설치
4. 구인·구직 만남의 장: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1:1 면접을 할 수 있는 장소
5. 정보검색대: 구인자·구직자가 직접 취업정보, 채용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검색 컴퓨터 설치
6. 쉼터: 구인자·구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용 공간 확보
7. 업무용 장비: 고용전산망운용 컴퓨터, 프린터기, 증명사진 촬영장비, 팩스 등의 장비
8. 편의시설: 음료수대, 필기구 및 필기대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 시설 설치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제2항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수탁자는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조사,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수탁자는 운영비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제10조,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및 평가 결과 센터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3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센터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 및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①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04호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 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계약된 기간까지로 한다.



#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5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일자리창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노사민정의 책무 및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5조)
-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 하부협의체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주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청주시의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지역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주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주시의회 의원
5.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해당 분야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하부협의체) 협의회는 노사민정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의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성실히 이행 의무) ① 시,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1호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 안 전 행 정 국

---



# 청주시 공인 조례안

의안 번호	5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공인조례」와 「청원군 공인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공인 조례」를 제정함.
- 공인의 글자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공인의 폐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및 인쇄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공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폐기, 공고방법,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이란 청주시 및 소속기관에서 공식문서에 사용하는 도장을 말한다.
2. “청인”이란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각인된 공인을 말한다.
3. “직인”이란 청주시장,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새긴 공인을 말한다.
4. “전자이미지 공인”이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5.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라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3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사

업소장, 읍장·면장·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 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놓고 사용한다.

②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 읍장·면장·동장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나 그 밖의 사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위임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갖추어 놓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 읍장·면장·동장 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③ 시장, 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갖추어 놓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④ 공인을 인증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원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민원업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

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각각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지방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 공인은 제1항에 따른 공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모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져 갱신하였을 때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공인업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 신청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심사한 후,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등록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제8조(공인대장) ①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할 공인은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공인폐기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은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공인 인영란에 날인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의 공인을 충청북도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북도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청주시보 및 충청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3조(관수자의 지정) ①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 읍장·면장·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민원사무전용공인은 해당 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 관수자가 된다.

③ 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 또는 재지정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수자를 지정하여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책임한계를 명확



히 하여야 한다.

④ 관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시장 및 소속 기관의 장, 읍장·면장·동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케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는 등 공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6조(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및 인쇄사용) 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업무담당부서에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통신관련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정보통신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로, 세로 동일한 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인쇄사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심사한 후 승인 사항을 정보통신관련부서 및 신청부서에게 통보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문서생산 담당직원이 참관·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나머지를 인수하여 파기하고, 인쇄물은 사용 부서장의 장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07호 청주시 공인조례, 청원군 공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의 공인 중 공인명칭  
과 규격이 새로운 청주시의 공인과 동일한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교  
부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다.

[별표]

## 공 인 의 규 격 (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cm)

구 분		한변의 길이	비고
청인	합의제기관(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합의제 기관)		3.6 이하
직인	기관 의 장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li> <li>○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li> <li>○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li> <li>○ 6,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li> </ul>	3.0 이하 2.7 이하 2.4 이하 2.1 이하
인	회계 관계 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li> <li>○ 출납원 및 분임자</li> </ul>	2.4 이하 2.0 이하

[별지 제1호서식]

##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청주시 공인 조례」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 예정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 방법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항( )	
	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비고				

붙 임 :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공 인 대 장

공인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관리부서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공인	(인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도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시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 기 공 인	(인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항( )
		폐기방법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항( )
		폐기자 (분실자)	소속 : 직급 :                    성명 :
		도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시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p>※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등록란에 v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p> <p>※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p>			

## 인 영 부

공인명 인영년월일		공인명 인영년월일	
년 월 일 현재	등 록 재등록	년 월 일 현재	등 록 재등록
년 월 일 현재	등 록 재등록	년 월 일 현재	등 록 재등록
년 월 일 현재	등 록 재등록	년 월 일 현재	등 록 재등록
년 월 일 현재	등 록 재등록	년 월 일 현재	등 록 재등록
년 월 일 현재	등 록 재등록	년 월 일 현재	등 록 재등록
년 월 일 현재	등 록 재등록	년 월 일 현재	등 록 재등록

##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 인 <input type="checkbox"/> 직 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전자이미지 공인인영	등록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 사용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 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 공인인영	등록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공인이미지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 기 관 명

수 신 자

제 목 공인사고 보고서

1. 사고인영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 후의 처리 전말	
5. 그 밖의 사항	

발 신 명 **적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6호서식]

#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수자 지정(재지정) 통보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관리부서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새긴사람 (새긴곳)	주소 : 상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현 관수자	소 속			
			성 명	인		
		변경관수자	소 속			
			직			
		변경일시 변경사유	성 명	인		
비고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7호서식]

## 직인 전자이미지 사용 신청서

### 신 청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 신청내역

공 인 명 :	
사용목적 :	
인 쇄 량 :	
공인의 색 :	
공인규격 :	
관련자료 :	※ 고지서 양식, 표창패(안) 등 관련 자료

[별지 제8호서식]

###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인명		인쇄공인규격	

일자	인쇄량 (매)	사용량 (매)	사용내역	잔여량 (매)	확인 (서명)

#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공개시기 및 방법(안 제3조)
- 공개범위(안 제4조)
- 지출기준(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매 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조(공개범위) 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대상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자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제5조(지출기준) ① 업무추진비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속기관 직원 가운데 공로가 많은 공무원, 현업부서 근무자, 비상근무자, 행사 참석자 등을 격려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운영업

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④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붙이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명세서를 증명서류로 붙여야 한다.

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관련 행사를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단순한 간담회비 등으로 집행할 수 없다.

⑥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명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⑦ 접대성 경비의 증명서류에는 반드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⑧ 외빈 및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지급할 수 없다.

⑨ 업무추진비를 각종 동우회 및 시민사회단체 회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⑩ 청주시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⑪ 공무원의 국내·국외 출장 시 격려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83호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5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시민명예증 수여조례」와 「청원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
- 청주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수여대상 및 대상자 추천, 수여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4조)
- 수여방법 등(안 제5조)
- 수여취소 등(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 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이 아닌 내국인·외국인 및 해외동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청주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청주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청주시 명예시민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4. 우호증진 또는 그 밖에 목적으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5.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 추천은 시의 각 실·과·단·소장 및 읍장·면장·동장이 추천한다.

② 추천은 연 1회로 하며 필요 시 수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청주시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매년 명예시민증 수여인원은 제한이 없으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는 연 1회로 하며 필요시 수시 수여할 수 있다.

④ 명예시민증 수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2호서식(내국인용) 및 별지 제3호서식(외국인 또는 해외동포용)

2. 명예시민증: 별지 제4호서식

제6조(권리 및 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및 예우를 부여할 수 있다.

1. 시유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2. 시민에 준하는 각종 행정상 혜택 부여
3. 시 단위 행사와 간담회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4. 시민신문, 시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제공
5.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
6.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7조(관리)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관리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권리 및 예우 부여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한다.

제8조(수여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시민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인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046호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청원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명예시민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명예시민증, 청원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청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 1. 인적사항

성명		국적	
생년월일		직업·직위	
가족관계		외국인만 작성	
		사용언어	한국어 구사정도 상, 중, 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 2. 주요경력

###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 ○○○ 장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 ○ ○ ○  
○ ○ ○ 님

청주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공헌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더욱 큰 사랑과 변함없는 성원을 염원하는 청주시민의 뜻을 담아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 ○ ○ 직인

※ 대상 : 내국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 명 예 시 민 증 서

국 적 :

성 명 :

대한민국 청주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귀하에게 청주시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청주시의 공인을 날인하여 이 증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청 주 시 장 ○ ○ ○ 직인

NO.

### CERTIFICATION OF HONORARY CITIZENSHIP

Nationality :

Name :

As the Mayor of Cheongju-City and on behalf of the Citizens,

I have the privilege of conferring on:

○ ○ ○

AN HONORARY CITIZENSHIP OF CHEONGJU-CITY

In Witness whereof, I have affixed  
my signature and seal of the Cheongju-City

(date and year)

시 장 사 인

시장영문이름

MAYOR OF CHEONGJU-CITY

REPUBLIC OF KOREA

대상 :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



[별지 제4호서식]

## 명 예 시 민 증

<p>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명 예 시 민 증</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진 (2.5x3.0cm)</p> <p>○ ○ ○</p> <p>생년월일</p> <p>귀하는 대한민국 청주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청 주 시 장 ○ ○ ○ 직인</p>	<p>No.</p> <p style="text-align: center;"><b>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b></p> <p style="text-align: right;">○ ○ ○</p> <p>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recognized as an Honorary Citizen of Cheongju-City, Republic of Korea, by the Mayor of Cheongju-City.</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Mayor MAYOR OF CHEONGJU-CITY REPUBLIC OF KOREA</p>
--	--

규 격	비 고
기본규격 : 가로 6cm×8.5cm ※ 변형 가능	○ 사용언어 : 한글(앞면), 뒷면(영어) ※ 내국인의 경우 뒷면 생략

[별지 제5호서식]

명예시민증 수여기록 대장

연번	수여 연월일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공적내용	분야	주소	연락처	비고

[별지 제6호서식]

### 명예시민 관리 기록부

일련 번호	연월일	대 상 자		관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 청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5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와 「청원군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
- 시험수당 지급대상 (안 제2조)
-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청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72호 청주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청원군 시험수당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적용범위(안 제2조)
- 임용권자(안 제3조)
- 임용절차 등(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청주시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

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같은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7조(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해서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청주시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당연 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3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 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출산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4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6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 경쟁 임용 등)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71호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청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용자격
3급상당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li> </ol>
4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li> </ol>
5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li> <li>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li> </ol>
6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li> <li>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li> <li>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li> </ol>



상당계급	임용자격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 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5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와 「청원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함.
- 의료업무 등의 수당(안 제2조)
-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안 제4조)
- 직급보조비 가산금(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나. 예산조치 : 46,440천원(통합 전 357,048천원, 통합 후 403,488천원)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주시 소속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른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 포함): 월 25만원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

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청주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8호 청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청원군 공무원수당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일반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구분	전 문 의	일 반 의
갑 지	월 609,000원 이하	월 518,000원 이하

※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급지구분

- 갑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구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근무연수별	등급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012,000원 이하	월 6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006,000원 이하	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000,000원 이하	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995,000원 이하	월 6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989,000원 이하	월 650,000원 이하	

※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250,000원
분뇨·폐수처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250,000원
하수 및 쓰레기처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250,000원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구 분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3급	4급	5급 이하
월 지급액	600,000원	500,000원	400,000원

[별표 5]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제5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비고 :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청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장려수당)을 수혜가 높은 금액으로 양 시·군 자치법규 통합

※ 비교표

구 분	청주시	청원군	통합안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업무전담자	250	200	250
분뇨처리업무근무자	210	250	250
쓰레기·하수처리자	170	200	200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연간 소요비용 추계액 : 46,440,000원
    - 화장, 묘지, 납골당 : 50,000원 × 2명 × 12월 = 1,200,000
    - 분뇨처리 : 40,000원 × 71명 × 12월 = 34,080,000
    - 쓰레기·하폐수 : 30,000원 × 31명 × 12월 = 11,160,000

청주시 안전행정국 총무과장



#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안 번호	6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청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함.
-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3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당직수당 명시(안 제8조제4항)  
: 5만원 ⇒ 일직 8만원, 숙직 6만원(평일)/8만원(휴일)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청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청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

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1. 일직은 8만원, 숙직은 6만원. 다만, 숙직근무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숙직 근무자에게 8만원을 지급한다.

2.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하고 재택 당직한 근무자에게는 2만원의 재택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3.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상주하며 근무하는 당직근무자에게는 2만원씩 일직·숙직에 따른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자의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공무원은 파견 근무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은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였을 때 소속기관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그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 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만 해당한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의 해당 연도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인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관련 별표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 법령에 따

라 인가된 학습시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시장은 공무원이 관할구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⑧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⑨ 시장은 「병역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입영할 경우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42호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청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받았거나 휴가 중인 공무원은 이 조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 규정한 휴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1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 **선서의 시기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시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제5조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li> <li>○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li> <li>○ 전화는 소속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li> <li>○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li> <li>○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li> <li>○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li> <li>○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li> <li>○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li> <li>○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을 엄수한다.</li> <li>○ 어려운 동료들 돕는다.</li> <li>○ 근검절약 한다.</li> <li>○ 남에게 겸손 한다.</li> <li>○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li> <li>○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li> <li>○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li> <li>○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li> <li>○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li> </ul>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제14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공무원휴양소 운영규정」, 「청주시 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지침」, 「청원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안 제5조)
-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안 제6조)
- 우수·효행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청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청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및 청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란 「청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속한 자를 말한다.
3. “예술단원”이란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제2조의 상임단원을 말한다.
4. “직장운동경기부원”이란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의 코치 및 트레이너와 선수를 말한다.
5.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6.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

로 하며, 필요시 청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청주시의회 의원, 예술단원, 직장운동경기부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

2. 해외배낭연수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생일, 명절 격려품 제공
4.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9.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안 제2조)
-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안 제6조)
- 협의회의 의무(안 제12조)
- 협의회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청주시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국·과 및 공보관·상생발전담당관·감사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제외 한다.

제3조(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 대리자와 인사명령에 따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의 인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한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무원

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과건·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1항제5호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란 실·국·과·공보관·상생발전담당관·감사관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협의회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붙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붙임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에서 협의회 규정을 따른다.

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에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원이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원서를 해당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해당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 의결 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며,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 본인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 협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 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한다.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한다.

④ 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가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이 공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할 수 있으며, 협의 시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사무 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 대리자를 포함 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또는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설립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설립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

여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 업무에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045호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회	원	
설립총회 개최현황	일 시	
	장 소	
	참석회원수	
	결의사항	
<p>「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붙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li><li>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전화번호 기재) 각1부.</li><li>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li></ol>		



[별지 제2호서식]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 완 이 유		
보 완 기 한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p>위 본인의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명 또는 날인)</p> <p>○○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하</p>			



# 청주시 포상 조례안

의안 번호	6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포상조례」와 「청원군 포상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를 제정함.
- 포상대상(안 제2조)
- 포상의 종류(안 제4조)
- 포상방법과 부상(안 제10조)
- 포상절차(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상훈법」,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시 산하 소속직원 및 부서

2. 모범시민 및 자원봉사 유공자
3. 학술·예술·체육발전 및 국제행사에 기여한 자
4. 지방세원 발굴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
5. 농업육성발전 및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자
6. 여성발전 및 사회복지에 기여한 자
7. 위생업 및 식품안전 유공자
8.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9.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및 자원보호 발전에 기여한 자
10. 각종 재난·재해예방에 기여한 자
11.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어 온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3. 일정기간 재직 후 퇴직하는 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 후 퇴직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시민이나 단체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청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① 시의 실장·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이 추천할 경우 3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국장이 된다.
- ③ 위원은 기획경제실장, 복지문화국장, 농정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과 구청장 중 1명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포상협의) 공정한 포상기회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은 포상업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14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인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중복 포상금지) 같은 공적은 중복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

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행정시스템의 포상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및 공로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포상조례, 청원군 포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b>표 창 장</b>
주소 또는 소속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청 주 시 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b>감 사 장</b>
주소 또는 소속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청 주 시 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b>상 장</b>
주소 또는 소속
성명
(상 문)
년 월 일
청 주 시 장 ○ ○ ○ 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b>공 로 패</b>
주소 또는 소속
성명
(공 로 문)
년 월 일
청 주 시 장 ○ ○ ○ 인

[별지 제5호서식]

#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 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 (직급·계급)										
													년		월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 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7)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직인</div>			

주요 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별지 제6호서식]

## 포 상 대 장

호수	포 상 연월 일	포 상 종 별	포 상 기 관	피 포 상 자				포 상 을 하 게 된 공 적 개 요	기 념 품 또 는 부 상	비 고
				주 소 또 는 소 속	직 위 또 는 직 명	성 별	성 명			

(포상대장은 표창장, 상장 등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음)

#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 1. 포상수여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직급	비고

## 2. 포상내용

포상 번호	포상연월일	포상기관	포상공적 개요	비고

위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청주시장  직인



#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 번호	6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와 「청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제정함.
- 공무원 여비지급 및 규정마련(안 제3조 ~ 제4조)
- 공무원의 여비지급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하는 청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청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

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06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청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6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청주시 상당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청원군청부설주차장관리규정」을 통합하여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를 제정함.
-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주차장 이용시간, 주차요금 감면 등 세부사항 규칙으로 규정(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징수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통 수요에 따라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청사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조(부설주차장의 운영·관리) 부설주차장은 시장이 직영 관리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준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부설주차장 이용시간, 주차요금 감면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관리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10분 초과 마다)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권
1. 시청 및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직속기관 · 사업소 · 구청	1회 주차 (1구획 30분당 500원)	200원	6,000원	
2. 상당구청	1회 주차 (1구획 30분당 500원)	400원	15,000원	
3. 농수산물 도매시장	1회 주차 (1구획 30분당 500원)	200원	5,000원	55,000원

※ 비고 : 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 기준이며,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기준요금의 1.5배
2. 25인승 초과 승합차 및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 기준요금이란 : 별표 구분의 기본요금, 초과요금, 1일 주차요금, 월정기주차권을 말한다.

#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와 「청원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정보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안 제4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안 제6조)
- 정보의 공표 등(안 제7조)
- 정보공개 방법 및 비용부담 (안 제8조~9조)
- 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내용(안 제12조~2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심의회위원 외부인사 구성, 운영상황 공표, 정보공개원칙명시 의견 반영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해당하는 기관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①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공개대상기관은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부서에 정보공개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 및 장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

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
4.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 대상 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 처리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6. 사전정보공표 상황의 점검

제7조(정보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공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가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① 시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교수(행정학 또는 법학) 등을 포함한 외부인사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심의 요구) ① 심의회 개최사유가 발생할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 여부 결정기한 7일 전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5일전까지 연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구 시에는 개최사유, 추진경위, 담당부서 의견 등을 기재한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처리부서의 장에게 의견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안제출 및 상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의안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의안명,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특히 긴급한 의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소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심의회에 상정한다.

제17조(결과 조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라 처리부서로 통보한다.

②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처리부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청구인에

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8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0조(회의록) ①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운용상황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매분기 정보공개 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표 시 분기마다 그 실적을 시 홈페이지, 청주시민신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더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청구 건수
2.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건수
3. 비공개 사유별 통계자료
4. 이의 신청건수 및 처리 상황
5. 그 밖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제22조(적용의 예외) 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서류의 발급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92호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청원군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의 안 번 호	제 호
심 의 년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청주시정보공개심의회

심  
의  
의  
결  
사  
항

안 건 명

제 출 자	실 과 장
제출년월일	년 월 일

## 청주시정보공개심의회 안전상정 요청서

수 신 : 청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 조 : 청주시 정보공개심의회 간사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 결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 장(처리부서장)

1. 심의안건		
2. 청구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4. 안전상정 사 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붙 임 : 1. 심의안건(심의대상자료)	○부	
2.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그 밖의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	

제 회 청주시정보공개심의회 <b>회 의 록</b>					
일 시					
장 소					
참석대상 위 원		참석위원		불참위원	
심의사항					
회의내용	“불임과 같음”				
청주시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였음.  년 월 일  청주시정보공개심의회  간 사 :  위원장 :					



## 청주시정보공개심의회 의결 결과

의 안 명		
의 안 번 호	제 호	
제 출 자		
의 결 내 용	공 개 ( ) 부분공개 { 비 공 개 {	
공 개 사 유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사 유		
공 개 방 법	직 접 공 개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항 ( )
	우 송 공 개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의 결 일	년 월 일	
비 고		

## 청주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의결함.

일 시	년 월 일 ( : )	장 소				
심의안건						
심의내용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공 개 <input type="checkbox"/> 부분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참석인원 정원 명 참석 명 불참 명	구 분	성 명	의 견			서 명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					
결 과						

#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청원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청원군 내수읍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청원군 오창읍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청원군 오송읍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안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과 제4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를 설치하고 그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제1조에 따라 설치한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조에 따라 설치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청원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청원군 내수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청원군 오송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청주시 구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구 명칭	관 할 구 역(읍, 법정면·동)
상당구 (上黨區)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문로1가, 남문로2가, 북문로1가, 북문로2가, 북문로3가, 영동, 문화동, 서운동, 서문동, 남주동, 석교동, 수동, 탑동, 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동, 명암동, 산성동, 용암동, 용정동, 방서동, 평촌동, 지북동, 운동동, 월오동
서원구 (西原區)	남이면, 현도면, 사직동, 사창동, 모충동, 산남동, 미평동, 분평동, 수곡동, 장암동, 장성동, 성화동, 개신동, 죽림동
흥덕구 (興德區)	오송읍, 강내면, 옥산면, 운천동, 신봉동, 북대동, 가경동, 봉명동, 송정동, 강서동, 석곡동, 휴암동, 신전동, 현암동, 동막동, 수의동, 지동동, 서촌동, 비하동, 석소동, 정봉동, 신촌동, 신성동, 평동, 신대동, 남촌동, 내곡동, 상신동, 원평동, 문암동, 송절동, 화계동, 외북동, 향정동
청원구 (淸原區)	내수읍, 오창읍, 북이면, 우암동, 내덕동, 율량동, 사천동, 주성동, 주중동, 정상동, 정하동, 정북동, 오동동, 외남동, 외평동, 외하동

[별표 2]

**청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구명	읍 · 면	동 · 리	관 할 구 역
총계	3읍, 10면	82동, 243리	
소계	5면	26동, 85리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 귀래리 추정리 호정리 이목리 문박리 인경리 지산리 갈산리 삼산리 현암리 무성리	종전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낭성면 호정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낭성면 문박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낭성면 인경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낭성면 지산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낭성면 갈산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낭성면 삼산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낭성면 무성리 일원
	미원면	미원리 쌍이리 중 리 내산리 구방리 기암(岐岩)리 운교리 대덕리 운용리 화원리 용곡리 수산리 기암(基岩)리 가양리 화창리 종암리 대신리 운암리 옥화리 월용리 금관리 어암리	종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중 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구방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기암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운교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대덕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운용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화원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용곡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수산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기암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가양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화창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종암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월용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어암리 일원

구명	읍 · 면	동 · 리	관 할 구 역
상당구	미원면	계원리 성대리	종전 청원군 미원면 계원리 일원 종전 청원군 미원면 성대리 일원
	가덕면	청용리 행정리 삼항리 국전리 상대리 노동리 인차리 계산리 수곡리 시동리 병암리 금거리 상야리 한계리 내암리	종전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일원 종전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일원 종전 청원군 가덕면 삼항리 일원 종전 청원군 가덕면 국전리 일원 종전 청원군 가덕면 상대리 일원 종전 청원군 가덕면 노동리 일원 종전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일원 종전 청원군 가덕면 계산리 일원 종전 청원군 가덕면 수곡리 일원 종전 청원군 가덕면 시동리 일원 종전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일원 종전 청원군 가덕면 금거리 일원 종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일원 종전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일원 종전 청원군 가덕면 내암리 일원
	남일면	송암리 효촌리 문주리 황청리 은행리 두산리 쌍수리 고은리 화당리 가산리 신송리 가중리	종전 청원군 남일면 송암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일면 문주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일면 은행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일면 신송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일면 가중리 일원
	문의면	문산리 미천리 남계리 상장리 산덕리 구룡리 괴곡리 문덕리 소전리 후곡리 가호리	종전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 일원 종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일원 종전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일원 종전 청원군 문의면 상장리 일원 종전 청원군 문의면 산덕리 일원 종전 청원군 문의면 구룡리 일원 종전 청원군 문의면 괴곡리 일원 종전 청원군 문의면 문덕리 일원 종전 청원군 문의면 소전리 일원 종전 청원군 문의면 후곡리 일원 종전 청원군 문의면 가호리 일원

구명	읍 · 면	동 · 리	관할구역
상당구	문의면	신대리	종전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일원
		덕유리	종전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일원
		품곡리	종전 청원군 문의면 품곡리 일원
		두모리	종전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일원
		도원리	종전 청원군 문의면 도원리 일원
		등동리	종전 청원군 문의면 등동리 일원
		묘암리	종전 청원군 문의면 묘암리 일원
		마구리	종전 청원군 문의면 마구리 일원
		마동리	종전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 일원
		염티리	종전 청원군 문의면 염티리 일원
		노현리	종전 청원군 문의면 노현리 일원
		남문로1가	종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일원
		남문로2가	종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일원
		북문로1가	종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일원
		북문로2가	종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일원
		북문로3가	종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일원
		영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영동 일원
		문화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일원
		서운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일원
		서문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일원
		남주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일원
석교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일원		
수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수동 일원		
탑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탑동 일원		
대성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일원		
영운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일원		
금천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일원		
용담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일원		
명암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일원		
산성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일원		
용암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원		
용정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원		
방서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일원		



구명	읍 · 면	동 · 리	관할구역
		평촌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일원
		지북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
		운동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일원
		월오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일원
소계	2면	12동, 34리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외천리 문동리 척북리 산막리 비룡리 구미리 사동리 갈원리 팔봉리 상발리 구암리 석실리 석판리 대련리 가좌리 양촌리 가마리 수대리 부용외천리	종전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문동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척북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비룡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구미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사동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팔봉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상발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구암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석판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양촌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수대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남이면 부용외천리 일원
	현도면	상삼리 중삼리 죽전리 우록리 시동리 선동리 시목리 중척리 하석리 노산리 달계리 매봉리 양지리	종전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일원 종전 청원군 현도면 중삼리 일원 종전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일원 종전 청원군 현도면 우록리 일원 종전 청원군 현도면 시동리 일원 종전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일원 종전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일원 종전 청원군 현도면 중척리 일원 종전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일원 종전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일원 종전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일원 종전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일원 종전 청원군 현도면 양지리 일원

구명	읍·면	동·리	관할구역
서원구	현도면	죽암리	종전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일원
		사직동	종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일원
		사창동	종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일원
		모충동	종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일원
		산남동	종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일원
		미평동	종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일원
		분평동	종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일원
		수곡동	종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일원
		장암동	종전 청주시 흥덕구 장암동 일원
		장성동	종전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일원
		성화동	종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일원
		개신동	종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일원
		죽림동	종전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일원
		소계	1읍, 2면
흥덕구	오송읍	호계리	종전 청원군 오송읍 호계리 일원
		상정리	종전 청원군 오송읍 상정리 일원
		공북리	종전 청원군 오송읍 공북리 일원
		쌍청리	종전 청원군 오송읍 쌍청리 일원
		만수리	종전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일원
		연제리	종전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일원
		궁평리	종전 청원군 오송읍 궁평리 일원
		오송리	종전 청원군 오송읍 오송리 일원
		동평리	종전 청원군 오송읍 동평리 일원
		서평리	종전 청원군 오송읍 서평리 일원
		봉산리	종전 청원군 오송읍 봉산리 일원
		정중리	종전 청원군 오송읍 정중리 일원
		상봉리	종전 청원군 오송읍 상봉리 일원
		강내면	연정리
	궁현리		종전 청원군 강내면 궁현리 일원
	저산리		종전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일원
	당곡리		종전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 일원
	산단리		종전 청원군 강내면 산단리 일원
	다락리		종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일원
	태성리	종전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일원	

구명	읍 · 면	동 · 리	관할구역	
홍덕구	강내면	사곡리	종전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 일원	
		황탄리	종전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일원	
		월탄리	종전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일원	
		탑연리	종전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일원	
		석화리	종전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일원	
		사인리	종전 청원군 강내면 사인리 일원	
		월곡리	종전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일원	
		학천리	종전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일원	
		옥산면	오산리	종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일원
			덕촌리	종전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 일원
신촌리	종전 청원군 옥산면 신촌리 일원			
환희리	종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일원			
가락리	종전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일원			
동림리	종전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일원			
금계리	종전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일원			
장동리	종전 청원군 옥산면 장동리 일원			
사정리	종전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 일원			
수락리	종전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일원			
장남리	종전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일원			
호죽리	종전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일원			
남촌리	종전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일원			
소로리	종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일원			
국사리	종전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일원			
홍덕구			운천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운천동 일원
		신봉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신봉동 일원	
		복대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복대동 일원	
		가경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가경동 일원	
		봉명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봉명동 일원	
		송정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송정동 일원	
		강서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강서동 일원	

구명	읍·면	동·리	관할구역
홍덕구		석곡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석곡동 일원
		휴암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휴암동 일원
		신전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신전동 일원
		현암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현암동 일원
		동막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동막동 일원
		수의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수의동 일원
		지동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지동동 일원
		서촌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서촌동 일원
		비하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비하동 일원
		석소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석소동 일원
		정봉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정봉동 일원
		신촌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신촌동 일원
		신성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신성동 일원
		평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평동 일원
		신대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신대동 일원
		남촌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남촌동 일원
		내곡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내곡동 일원
		상신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상신동 일원
		원평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원평동 일원
		문암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문암동 일원
		송절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송절동 일원
화계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화계동 일원		
외북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외북동 일원		
향정동	종전 청주시 홍덕구 향정동 일원		
소계	2읍, 1면	13동, 81리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마산리 풍정리 덕암리 도원리 형동리 세교리 비상리	종전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비상리 일원

구명	읍 · 면	동 · 리	관할구역
청원구	내수읍	저곡리 우산리 초정리 비중리 구성리 국동리 묵방리 은곡리 원통리 신안리 입동리 입상리 학평리	종전 청원군 내수읍 저곡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우산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비중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신안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입상리 일원 종전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일원
	오창읍	여천리 화산(華山)리 유 리 일신리 모정리 학소리 원 리 북현리 양지리 장대리 창 리 주성리 송대리 도암리 괴정리 가곡리 석우리 상평리 기암리 탑 리 농소리 신평리 중신리 각 리 양청리 구룡리	종전 청원군 오창읍 여천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유 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일신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모정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학소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원 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북현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양지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창 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송대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괴정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가곡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석우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상평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기암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탑 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농소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중신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각 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일원

구명	읍 · 면	동 · 리	관할구역
청원구	오창읍	성산리 후기리 용두리 화산(花山)리 가좌리 두릉리 성재리 백현리	종전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후기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용두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두릉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성재리 일원 종전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일원
	북이면	신기리 신대리 현암리 서당리 대길리 석화리 영하리 선암리 호명리 부연리 토성리 장재리 금암리 광암리 금대리 옥수리 내추리 추학리 장양리 용계리 대율리 석성리 내둔리 화상리 화하리 송정리	종전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신대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석화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영하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선암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호명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부연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토성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광암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금대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추학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장양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용계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대율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화상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화하리 일원 종전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 일원
		우암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일원
	내덕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일원	
	울량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울량동 일원	

구명	읍 · 면	동 · 리	관할구역
청원구		사천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일원
		주성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일원
		주중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일원
		정상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정상동 일원
		정하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정하동 일원
		정북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정북동 일원
		오동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일원
		외남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외남동 일원
		외평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외평동 일원
		외하동	종전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 일원





#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안

의안 번호	6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통·반설치조례」, 「청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청원군 반설치조례」, 「청원군 이장 정원 조례」, 「청원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이장 신원보증 조례」, 「청원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청원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청원군 이장복무 규정」을 통합하여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를 제정함.
-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동·리의 설치 운영(안 제2조)
- 행정동·리, 통·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안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예산조치 : 3,066천원 (통합 전 129,843천원, 통합 후 132,909천원)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리에는 반을 두며,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②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에는 행정동을 리에는 행정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③ 행정리는 자연 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하나의 법정동·리를 2개 이상의 행정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리를 하나의 행정동·리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획정기준) 리·통·반은 다음 각 호의 획정기준에 따라 구성하되,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농촌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리·통: 2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
2. 반: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

제4조(행정동·리,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이장 정수) ① 행

정동·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리·통·반의 폐지·설치·분리·통합과 이장·통장·반장) ①

읍장·면장·동장은 택지개발과 재건축 및 도심 공동화 등으로 리·통·반의 규모가 과대하거나 축소되어 리·통·반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리·통·반의 폐지·설치·분리·통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리의 폐지·설치·분리·통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분리 전 행정리는 100가구 이상, 인구수는 200명 이상 되어야 하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는 50가구 이상, 인구수는 100명 이상 되어야 할 것. 다만, 산업단지 조성, 공공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댐 건설 등으로 이주민이 발생하여 세대수의 과반수가 이주 정착된 마을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정리의 분리를 위해서는 가구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3. 행정리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통합되는 각 행정리 주민이 가구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붙여 시장에게 요구

② 읍장·면장·동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리·통·반의 폐지·설치·분리·통합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제4조 별표의 리·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리·통·반이 폐지·설치·분리·통합된 경우 종전의 이장·통장·반장은 그 직을 상실하며, 읍장·면장·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이장·통장·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이장·통장·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장·통장과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이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자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되어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으로 읍장·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설된 행정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2.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인 자로서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3.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통장의 추천으로 읍장·면장·동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경우 읍장·면장·동장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 2회 연임 제한자를 포함하여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읍장·면장·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전이라도 이장·통장·반장을 위촉 해제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2.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임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남용하였을 경우
4. 이장·통장·반장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장·통장·반장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각종 이권과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켜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7. 국·도·시정 시책 추진 시 주민을 선동하여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9.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의 세대 주민  
이 교체를 요구한 경우

10. 리·통·반의 폐지·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이장·통장·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7조(이장·통장의 반장 겸임) 이장·통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장·통장이 거주하는 반으로 한다.

제8조(임무) 이장·통장은 읍장·면장·동장의 지도·감독을, 반장은 이  
장·통장의 지도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반원의 지도 감독 및 통·반원의 비상연락 관리(훈련)
2. 행정 시책의 소통, 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생활민원의 신속  
한 처리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확인 및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 배부
5. 읍·면·동 관내 각종 행사 및 봉사활동 지원
6. 각종 리·통사업 추진 협조
7. 재난·재해 대비 각종 시설 점검 및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조  
치
8.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10.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11. 통·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12.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복무) ① 이장·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통장이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이장·통장이 경질되었을 경우 전임자는 7일 이내에 사무인계인 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반장 위촉)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그 반에 거주하는 저명한 인사로서 반원에게 신망을 받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통장의 의견을 들어 읍장·면장·동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2개월마다 윤번제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명예반장의 임무) 명예반장은 반장을 도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2. 반원의 반상회 참석 유도
3. 반원의 요청사항 집약 조정
4. 반장의 활동에 고문 역할



## 5. 행정시책의 홍보 매개 역할

제12조(반상회 운영) 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개최시기 및 장소를 주민자율로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의제로 한다.

1.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토의
2. 새마을 운동에 관한 사항
3. 대민 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홍보
4. 관계 기관의 새 소식 홍보
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6. 반원 요청사항 처리
7. 민방위 훈련 실시

제13조(이장·통장·반장 포상) 우수 이장·통장·반장에게는 청주시공적심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다만, 공적이 뚜렷한 장기근속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건의사항 처리) ① 읍장·면장·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최 대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

제15조(비밀유지) ①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편의제공) 이장·통장·반장은 읍·면·동의 공문서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7조(실비변상) ①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통장·반장(명예반장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이장·통장이 반장을 겸임한 경우에는 이장·통장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④ 자원봉사직 이장·통장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이장·통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상해보험가입, 직무교육, 국내·국외 연수, 견학,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신원보증) ①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위하여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원보증은 읍장·면장·동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이장·통장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보증보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이장·통장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⑥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이장·통장이 그 초과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금품징수의 금지) 이장·통장·반장은 리·통·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에게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통·반설치조례, 청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청원군 반설치 조례, 청원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이장 신원보증조례, 청원군 이장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장·통장·반장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이장·통장·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표 1]

행정동·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제4조 관련)

구	행정동	동장 정수	통	반	관할구역	
청주시	총계	30	1,022	5,096		
상당구	소계	8	238	1,138		
	중앙동	1	제1통	제1반	영동	2의1~4, 4의1~6, 6, 7의4, 7의6~7, 8, 13의1, 13의4~6, 13의8~11, 13의15~19, 13의26, 14의4~9, 15의2~4, 15의6~7, 15의9~11, 16의2
				제2반	영동	9의1~3, 10의2~3, 10의6~7, 11의1~3, 12, 13의3, 13의12~13, 13의21~23, 19의2~3, 19의5~9, 23의3, 24의1, 24의4~5, 24의7~8, 24의11~19, 25의3, 25의5, 25의7, 25의9, 25의11, 115의2, 115의6, 115의14, 115의16, 115의18~19, 115의21~23, 115의25
				제3반	영동	35의1, 35의15~16, 37의1~4, 37의7~8, 37의13, 38의1, 38의3~5, 38의8, 38의15, 39의1, 39의5~7, 41의9~14, 41의17~22, 41의25~30, 41의48
				제4반	영동	44의1~3, 45의1, 45의3, 46, 47의1, 47의3, 47의5, 47의7~11, 47의16~20, 47의23, 47의27~28, 47의30~31, 47의34, 47의36
			제2통	제1반	영동	35의6~14, 35의18, 37의11, 38의7, 38의10, 41의4, 41의6~7, 41의34~36, 41의38, 41의41~42, 41의51~52, 48
				제2반	영동	53의1~6, 53의8, 54의1~2, 55의1~2, 56의1~3, 60, 61
				제3반	영동	66, 68의1~2, 68의5~7, 70, 71, 76, 77의1, 78, 79, 93의1~5, 95의1, 95의3, 95의5~6, 96의1~3, 97의1~4, 97의6~7, 98의1, 98의3, 98의5, 99의1~4
				제4반	영동	86의3, 87의4, 87의6, 100의1~13, 101의1~6, 101의8~10, 102, 103의1~6, 103의8~10, 103의13~14, 104의1~2, 104의4~10, 104의15, 105의1~4, 105의6~7, 105
			제3통	제1반	북문로2가	53의2, 54의1~2, 55의1, 57의1, 57의4, 61의1~3, 61의5~6, 63의3~4, 64의1~8, 65의1~2, 65의4~9, 67의1~10, 79의1~9, 79의11~13, 80의1~10, 81의1~3, 83의1, 83의9, 83의13
				제2반	북문로2가	28의20, 68의2~4, 77의1, 78의2~8, 78의10, 78의12~13, 78의17~19, 78의22~24, 78의26, 78의29, 84의1, 84의3, 84의5, 90, 99의4, 99의6~7, 99의9~13, 100의1~3, 101의1~2, 101의9, 102의4, 104의1, 104의4, 105의2~3, 105의5, 105의11, 106의1, 106의3, 106의8~9, 106의11~12, 106의14, 106의17~19, 107의1~5, 107의10
				제3반	북문로2가	122의1~3, 122의5~7, 122의12, 124, 125의1~4, 125의6, 126의1, 130의2, 130의4, 130의6~7, 130의9~10, 131의2~3, 133의2, 134의2~3, 134의7, 135의2, 135의4~8, 136의2~4, 136의7, 137의2~4, 138의1~2, 139의2~3
				제4반	북문로2가	95의1, 95의4, 112의3, 113의2~5, 113의7, 113의9, 113의13, 113의15, 113의19, 113의21, 113의24~25, 113의29, 114의1~2, 114의4, 114의6, 114의8~16, 114의19, 114의21~24, 115의1, 115의4~5, 115의8, 116의7, 116의9, 116의11~13, 116의16, 116의18, 116의34~35, 116의88, 116의131, 116의135, 116의157, 116의159, 116의160~161, 116의164~167, 116의224, 116의243, 116의247, 116의249~250
			제4통	제1반	북문로2가	2의1, 2의5, 4, 4의2, 6의1~4, 7의1, 11, 12, 12의1, 13의1, 13의3~6, 14의1, 14의3~4, 15, 16의2~5, 16의7, 18의2, 19의1~4, 21의1, 21의8, 22의7, 23, 23의1, 24의1, 25, 26의1, 27의2, 116의1, 116의90, 116의93~94, 116의136~137, 116의140~143, 116의145~154, 116의168~170, 116의172~177, 116의230, 116의234, 116의244~245, 116의251, 116의254, 116의263~264, 116의279
				제2반	북문로2가	27의5~6, 27의10, 28의1, 29의4, 29의6, 29의8, 29의14, 29의17, 50의2, 50의4~5, 50의7~8, 59의2, 59의5~6, 71의2, 72의1~2, 72의4, 73, 74의1~2, 116의2, 116의19~21, 116의23~25, 116의28, 116의30, 116의42~50, 116의53, 116의60~63, 116의65, 116의71, 116의78, 116의84, 116의102~103, 116의108, 116의113, 116의117, 116의120, 116의130, 116의133, 116의183~184, 116의187~190, 116의193, 116의195, 116의197~198, 116의202~203, 116의205, 116의211, 116의217~218,
				제3반	북문로2가	116의36~40, 116의98, 116의178~179, 116의231~232
				제4반	북문로2가	92의2~10, 94
				제5반	북문로2가	95의2, 96의7~10, 96의12~13, 96의16~17

제5통	제1반	영동	50번지(평화A가,나동)
	제2반	영동	50번지(평화A다,라동), 50의1~3
	제3반	북문로3가	64, 64의1, 65의5, 66의3~11, 66의13~14, 67의1~2, 109의3, 101의1~3, 111
	제4반	북문로3가	68의1~2, 68의4, 68의6~8, 70, 71의1~5, 72, 73의2, 86의1~3, 87, 87의2~7
제6통	제1반	북문로3가	38의14, 39의1, 39의6~7, 40의3, 40의8, 75의5, 76, 76의1, 77의2, 79의1~4, 79의8~9, 89의1, 96, 97, 98, 100, 101의2, 103의1~2, 107
		북문로2가	116의69, 116의155, 116의255~258
	제2반	북문로3가	35의1~3, 41, 41의1, 42, 43, 44의1~8, 44의10~11
	제3반	북문로3가	15의1, 21의1, 21의3, 21의6~7, 24의1, 25의1, 29의1
	제4반	북문로3가	1의2, 2의4, 3의2, 3의8, 3의10, 4의4, 4의6, 5의1, 5의3~5, 5의7~10, 5의13, 5의15, 5의18, 6의2, 6의4, 6의6~9, 7의3~5, 8의5~6
제7통	제1반	수동	4의2, 5, 5의1~2, 6, 7, 8, 9, 10, 10의1~3, 11, 12, 13, 14, 14의1, 14의3, 15, 22의1, 22의3~13, 22의28, 24의1, 24의3~4, 24의7, 25, 26의2, 26의8~9, 26의11, 49의2, 50의1~3, 50의5, 50의7, 51의1, 51의3~7, 53, 54, 55, 56, 57, 73, 산2의1, 산9의1, 산9의5, 산10, 산10의1, 산10의3, 산11, 산12의1, 산12의3~4, 산12의6~7, 산12의9~10, 산12의15~16, 산13의1, 산14
	제2반	수동	16, 17, 17의1~6, 18, 18의1, 19의1~9, 20, 21의1~4, 21의7, 22의25~26, 산15의1
	제3반	수동	22의16~23, 26의3, 26의7, 27, 27의1, 29의2, 31의1, 31의5~13
	제4반	수동	32의1~3, 32의5~6, 32의8~10, 32의12~13, 34, 44의1~2, 45, 45의1~7, 45의15~16, 46, 46의1, 47의2, 48의1~6, 48의8~9, 49의1, 49의4, 58의2, 59, 산8의1, 산8의6
	제5반	수동	36의3~6, 36의8~10, 36의13~15, 36의18, 36의21, 38, 39의1, 41의2~5, 42, 43의1~4, 45의8~11, 215의1~2, 216, 217의1~2, 218의1~4, 218의6~7, 219, 220의1~2
제8통	제1반	수동	45의12, 202, 203의1~10, 203의13, 204의1~4, 204의6~7, 205의5~7, 205의9~16, 206, 206의1, 208의1~2, 208의4~6, 209의1, 213, 213의1~2, 214
	제2반	수동	188의1~5, 192의1~2, 195의1~2, 196의1~4, 197의1~4, 198의1~2, 199의1, 200의1~4, 201, 201의1, 236, 237, 238의1~2, 239, 240, 242, 243의2~6, 244
	제3반	수동	221의3~4, 222의1~4, 223의1~3, 224의2~10, 224의12, 224의14~17, 224의19~20, 228의3~4, 228의6~8, 228의12, 228의15~16, 228의18, 232, 233의3, 234의3
	제4반	수동	230의1, 230의4~6, 230의8, 230의10, 230의12~16, 257의4~8, 257의13~14, 257의16~17, 257의20, 257의22~23, 259의1, 259의3, 259의5, 259의7, 262의1, 262의7, 262의10~12, 262의17, 262의19, 262의24~25, 292의14~15, 463의2
	제5반	수동	251의1, 251의3~8, 251의11~12, 252, 288의1, 288의5~6, 288의9~10, 288의12~13, 288의16~18, 288의21~22, 288의32~33
제9통	제1반	수동	225의13, 309의2~3, 315의8, 316의4, 316의6~7, 316의10, 316의12~13, 316의16, 316의19, 316의21, 316의24, 316의26~28, 316의30, 325의1~3, 325의6, 325의9~10, 327의1~3, 327의5, 328의1, 328의3~13, 328의15~20, 328의24, 329의2, 329의4, 329의6
	제2반	수동	315, 315의3, 315의31~42, 315의44~46, 315의49~53, 315의56~58, 315의67~68, 315의70, 315의72, 315의81~85, 315의87
	제3반	수동	179의1~3, 179의6, 180, 185의1~3, 185의5, 186의2~6, 187의3~6, 202의1~2, 315의9, 315의12, 315의14~16, 315의18~19, 315의21~26, 산6의1, 산6의5, 산6의7
	제4반	수동	60, 61, 62, 63의2~3, 67의1~2, 70, 72, 74, 125의1, 126, 127의1, 159의1, 159의13, 160의1, 161의1, 162의1, 163의7, 163의10, 164의1~4, 164의9~11, 165의1~8, 166의7~16, 168의1~14, 168의16~17, 172, 172의1~3, 172의5, 172의10, 172의18, 455의1, 455의18~19, 456, 산4의2, 산5의1, 산5의8, 산6의19
제10통	제1반	수동	338의10~15, 339의7~8, 340의1~2, 340의4~10, 340의12, 340의14, 340의17, 340의19, 341의1~2, 342의1~3, 342의7, 344의3, 344의19, 344의24, 344의33

	제2반	수동	336의2~4, 336의6, 337의1, 337의3, 337의5~7, 338의1, 338의3~8, 338의18, 339의3, 339의6, 339의10, 344의2, 344의5~6, 344의8~9, 344의14, 344의21~23, 344의25, 344의28, 345의2, 345의4~6
	제3반	수동	138의4, 138의8, 138의16~20, 138의22~25, 138의27~30, 138의32, 138의35~37, 144의1, 144의8~24, 144의27~28, 144의31~35, 144의37~39
	제4반	수동	129의2, 131의7~8, 138의2, 138의9~13, 140의1~7, 140의9~10, 140의13, 140의15, 140의17, 140의20, 140의22~24, 153의2, 154의1, 154의3~4, 154의6~8, 155의5, 156의7~8, 159의10, 159의35
	제5반	수동	158의1, 158의3~9, 158의11~14, 158의19, 158의21, 159의3, 159의11, 159의18, 159의20, 159의23, 159의26~28, 159의37, 159의49, 159의58, 162의7~9, 162의12
제11통	제1반	수동	351의1, 351의3, 351의5~6, 354의2, 355, 355의2~4, 357의2~3, 372의1, 372의4~6, 379의1, 379의4, 379의7~10, 380의1, 380의4~7, 380의9~11, 380의13~15, 381의1~3, 382의1, 386의2, 386의4, 387의2~5
	제2반	수동	382의3, 384의3, 384의6, 385의1~3, 385의6, 386의6, 386의9~10, 386의12, 389의8, 390의2, 390의5, 402의11~13, 403의6~7, 403의9, 403의21, 404의3, 404의5~7, 404의13~15, 404의18~19, 405의3, 405의7, 405의10, 405의13~14, 406의3~4, 407의4~9, 436의7
	제3반	수동	133, 104의1, 104의3~4, 105의4~5, 105의7, 105의10, 393의1, 393의5~6, 393의8~9, 393의12~13, 393의15~16, 393의18, 393의22, 393의27, 393의32, 394의1, 394의4, 394의7, 394의9, 394의16, 395의2, 395의5~10, 117, 117의1~5, 117의7, 117의10, 117의12~13, 117의16, 117의19, 117의23, 121의1, 121의7, 121의9, 121의11, 121의18, 121의21, 158의1, 458의5
	제4반	수동	100의13~14, 100의17, 100의19, 100의22~23, 108의1~3, 108의5~19, 108의23, 108의25~26, 108의30, 109의1~2, 109의4, 109의6, 112의23
제12통	제1반	수동	91의1~3, 100의1, 100의10~12, 100의16, 110, 110의2~9, 110의20~21, 110의24~25, 110의27, 110의29, 112, 112의1, 112의6~10, 112의12~13, 112의25~26
	제2반	수동	75, 76, 77, 78, 111, 112의2, 112의14~19, 112의21, 112의27~28, 113, 114, 115의2~3, 115의7, 116의20, 124의13, 산4의1~2, 산4의40, 산4의49~50, 산4의54~56, 산4
	제3반	수동	115의9 (덕일파크빌라 가,나동)
	제4반	수동	116, 116의1, 116의5, 116의7, 116의9, 116의12, 116의15, 122의3, 124의7, 125의5, 159의6, 산4의8, 산4의16,
	제5반	수동	401의6~7, 401의9~10, 402의19, 402의24~27, 402의37~42, 403의1~4, 403의17, 403의20
제13통	제1반	수동	401의1~5, 401의12, 402의7~9, 402의17~20, 402의29, 402의31~33, 402의35~36, 402의43~46, 402의54, 412의11~12, 412의14, 412의16~17, 412의20~21, 412의23, 412의25~28
	제2반	수동	412의4~9, 436의38~39, 436의47, 437의2, 437의6~8, 440의1, 440의6, 440의8, 440의12, 440의14, 441의1~2, 441의4~8, 441의10~11, 441의13~14, 441의16~19, 442의5~6, 442의8, 442의12~15, 442의17, 444의4~5, 444의10, 444의12, 445의2, 445의5~10, 446의6, 446의39~41, 446의44~45, 446의48~50, 447의1, 448의1, 448의3, 449의3~4, 449의9, 450의2, 450의4
	제3반	수동	435, 436의4~6, 436의8, 436의10, 436의15~17, 436의20~23, 436의28~29, 436의34, 437의3~5, 445의1, 446의1~2, 446의4, 446의8~9, 446의13, 446의16~18, 446의21~23, 446의30, 446의36, 446
	제4반	수동	104의2, 396의1, 397의1, 398의1~5, 399의1~3, 414의1, 424의14, 426의1~4, 426의7~10, 426의12, 426의17, 427의1, 427의3, 427의6~11, 427의16~21, 427의23, 427의26~28, 427의31, 428의1, 432의1, 432의3~4, 457
제14통	제1반	수동	89의3, 89의5~7, 89의12~20, 89의24, 89의34, 90의10, 90의12~13, 90의28~29, 421, 421의4, 422, 422의1~7, 422의9~11
	제2반	수동	81의26, 81의30, 81의32, 88의2, 88의4~6, 90의1~7, 90의14~16, 90의18, 90의20, 90의23~27, 90의30~31, 90의37, 92의1, 92의3~5, 93의2~3, 96의1~2, 96의4~5
	제3반	수동	92의6~7, 94의1~4, 95의1~4, 96의3, 97의2~3, 99의1, 100의2~4, 100의6~9, 110의1, 110의12~15, 110의17~19, 110의22~23, 110의31, 112의4
	제4반	수동	81의20, 89의9~11, 89의22
제15통	제1반	수동	81의20, 89의9~11, 89의22

				제2반	수동	81의9, 81의11 ~ 12, 81의36, 81의71, 84의2, 84의10 ~ 12, 84의14 ~ 15, 84의18 ~ 20, 84의22, 84의24 ~ 27, 85의2 ~ 6, 85의8 ~ 12, 85의15, 85의17 ~ 20, 85의35, 86, 86의1 ~ 2, 87의1 ~ 2, 87의4 ~ 5, 산6의11, 산6의17
				제3반	수동	81의13, 81의39 ~ 47, 81의49 ~ 66, 81의69, 81의72 ~ 73, 83의1 ~ 2, 83의4 ~ 5, 83의8 ~ 9, 83의11 ~ 12, 83의14 ~ 16, 83의18 ~ 20, 83의22의 ~ 25, 84의23, 84의28 ~ 32, 84
				제4반	수동	79, 80, 80의2 ~ 13, 80의15 ~ 22, 81의2, 81의4 ~ 8, 산18
				제5반	수동	81의21 ~ 22, 81의24, 81의28 ~ 29, 81의38, 81의83 ~ 84, 81의86 ~ 88, 81의97, 82, 88의1, 88의7 ~ 10, 88의12, 88의17, 90의19, 90의34 ~ 36
			제16통	제1반	북문로3가	49-1번지(북문로한신휴플러스아파트 101동)
				제2반	북문로3가	49-1번지(북문로한신휴플러스아파트 102동)
				제3반	북문로3가	49-1번지(북문로한신휴플러스아파트 103동)
				제4반	북문로3가	49-1번지(북문로한신휴플러스아파트 104동)51-5
	성안동	1	제1통	제1반	문화동	2, 3, 4의1 ~ 4의7, 4의9, 4의13, 7의2 ~ 7의4, 7의5, 7의7, 7의8, 7의9, 7의11, 7의12 ~ 7의14, 9, 9의1, 9의2, 12의2, 12의3, 15, 15의5 ~ 15의9, 15의11, 15의12 ~ 15의18, 15의37, 15의42, 15의46, 15의47, 15의53, 16, 17의1, 17의2
				제2반	문화동	15의21 ~ 15의30, 15의48, 17의3, 17의4, 17의6, 19의1 ~ 19의3, 20의2, 21의2, 21의3, 21의6, 21의9 ~ 21의11, 25, 28의1, 29, 30, 31의1, 31의2, 32, 36, 42 ~ 44, 45의4
				제3반	문화동	14의2, 14의3, 14의5 ~ 14의11, 15의31 ~ 15의36, 15의49, 15의55, 45의1, 46의1, 46의2, 48의3
				제4반	문화동	67의1 ~ 67의14, 67의23, 68의1, 68의5, 68의7 ~ 68의13, 69, 69의1 ~ 69의3, 69의4, 69의8 ~ 69의14, 69의16, 69의18, 69의19, 69의20, 69의23, 69의26, 96의4, 97의1 ~ 97의5, 100, 100의1, 101의1 ~ 101의6
				제5반	문화동	50의1 ~ 50의4, 50의5, 50의7, 50의8, 50의14, 50의16, 50의19, 50의22, 54의7, 64, 64의1 ~ 64의7, 104의3, 104의6, 105의1, 105의3, 105의6, 105의15, 106, 106의2, 110의1 ~ 110의8, 111의3 ~ 111의6, 112, 112의7, 112의8
			제2통	제1반	북문로	4의1 ~ 4의4, 5의1 ~ 5의6, 5의8, 6의1 ~ 6의6, 7의1 ~ 7의3, 1가 90의1, 92의2 ~ 92의7, 95의1 ~ 95의6, 97의1 ~ 97의3, 98의3, 101, 101의1, 102의1, 102의2, 103 ~ 106
				제2반	북문로	109의1, 109의2, 110 ~ 116, 117의1 ~ 117의4, 118의1, 118의2, 1가121, 121의1 ~ 121의8, 123의1 ~ 123의10, 124의3, 124의4, 124의5, 125의1, 125의5, 128의1, 128의3, 128의5, 128의6, 128의8, 129의1, 129의3, 129의6, 129의7, 130의1, 130의3, 130의6, 130의7, 130의8, 131 ~ 133, 133의2, 134의1, 134의2, 134의3, 134의4, 135 ~ 138, 139의1 ~ 139의8, 141의1 ~ 141의3, 152의1, 152의2, 156의1, 156의3, 156의4, 158의1, 162의1, 162의7
				제3반	북문로	11의1, 11의2, 15의1, 15의2, 17, 17의3 ~ 17의6, 20, 20의1, 21, 1가21의1, 24의1 ~ 24의10, 25의1 ~ 25의18, 30의1, 31의1, 31의2, 32의1 ~ 32의3, 34, 36의14 ~ 36의17, 36의20, 68의1, 68의13, 68의17, 69의3, 70, 70의1, 70의2, 74 ~ 83, 82의2 ~ 82의5, 84의1 ~ 84의4, 86의2, 86의3, 87, 88의1, 88의2, 89의1, 89의2, 170의2, 171의2 ~ 171의8, 174의2 ~ 174의5, 175의1, 175의3, 175의9, 175의15, 175의
				제4반	북문로	27의3, 28, 38, 38의1 ~ 38의7, 41, 41의3 ~ 41의10, 41의12, 1가 41의14, 42, 45, 45의1 ~ 45의3, 45의5 ~ 45의7, 45의16, 47, 49의1, 50의4 ~ 50의10, 51의1 ~ 51의4, 53, 53의1 ~ 53의4, 54, 55, 57, 58의1, 59의1, 61, 65의1, 65의2, 66의2, 67, 188, 190 ~ 198
			제3통	제1반	남문로2가	1의1 ~ 1의3, 4의1, 6의2, 9의3 ~ 9의17, 10의1 ~ 10의6, 11의1 ~ 11의5, 15, 16, 20의1, 20의2, 21의1, 21의2, 22의1, 22의2, 23의4, 23의9, 25, 25의1, 28, 31, 32, 32의1, 32의
				제2반	남문로2가	32 ~ 42, 46, 47, 48의1 ~ 48의18, 49의2, 51 ~ 55, 55의1 ~ 55의4, 56의1, 57, 57의1, 57의2, 58 ~ 61
				제3반	남문로2가	68 ~ 73, 73의1 ~ 73의5, 76, 77의1, 77의2, 78의1 ~ 78의14, 81, 82, 82의2, 82의3, 83, 83의1, 83의3 ~ 83의7, 83의11 ~ 83의18, 85 ~ 88, 92, 92의1 ~ 92의19
				제4반	남문로2가	62 ~ 64, 94 ~ 98, 101 ~ 107, 107의1 ~ 107의5, 107의7, 109의1 ~ 109의9, 110, 111, 111의2 ~ 111의4, 112의2
			제4통	제1반	서운동	1의1, 1의3, 1의5, 2의1, 2의3, 2의5, 2의6, 3의1, 3의6 ~ 3의15, 3의19, 3의21, 3의51, 3의52, 3의58, 4의1, 4의3 ~ 4의6, 4의8, 4의9
				제2반	서운동	3의4, 3의5, 3의16, 3의24, 3의26, 3의30, 3의32 ~ 3의34, 3의36 ~ 3의39, 3의45, 3의49, 5의1, 5의5, 5의6, 6의1, 10의1, 10의4 ~ 10의7



	제3반	서운동	3의23, 3의25, 3의29, 3의41, 3의43, 3의44, 3의47, 3의55, 3의56, 5의4, 6의3~6의8, 6의10, 7, 7의1, 8의1, 8의2, 10의3, 10의11~10의13, 11의1, 11의2, 11의4~11의11, 11의13, 12의1, 12의14, 12의15~12의17, 12의19, 12의21, 12의23, 12의24, 13의1~13의4, 13의8, 12의40, 13의5~13의11, 27의1, 27의4, 27의5~27의13, 27의15, 27
	제4반	서운동	38의2, 38의5~38의12, 38의11, 38의12, 38의14, 38의16, 39의1, 39의2, 40의1, 40의2, 41의2, 41의3, 42의2, 43, 44의1~44의3, 44의5, 45의1~45의7, 45의11, 46의1.
	제5반	서운동	35의5, 36의7~36의10, 36의30, 36의37, 47의1, 47의2, 48의1, 48의7~48의10, 48의12, 49, 50의1, 36의14, 36의34, 36의37, 37의1~37의6, 37의8~37의22, 38의14, 38의15, 33의1, 33의32, 33의33, 33의47, 35의7, 36의2, 36의3.
제5통	제1반	서운동	11의3, 11의12, 12의3~12의10, 12의25, 12의26, 12의27, 12의29, 14의3, 14의9~14의11, 18의1, 19의3, 19의4~19의13, 19의16~19의18, 20의1, 20의2, 20의7, 20의8, 20의12, 20의14~20의16, 23의1, 23의15
	제2반	서운동	20의4~20의6, 20의9~20의11, 20의13, 20의17, 20의22~20의24, 20의27, 21, 21의5, 21의6, 21의14, 21의17, 21의20, 22의1, 22의31, 22의32, 22의59
	제3반	서운동	21의1, 21의2, 21의7, 21의11, 21의19, 22의3~22의6, 22의21, 22의22, 22의23
	제4반	서운동	14의4, 14의7, 23의9~23의14, 23의16, 23의17, 24의1, 24의2, 24의14, 25의1, 25의9~25의14, 26의7~26의16, 26의18, 26의3
	제5반	서운동	22의8, 22의10, 22의12~22의16, 22의24, 22의27, 22의28, 22의30, 22의33, 22의34, 22의35, 22의37, 22의49~22의51, 22의53, 22의55, 23의2~23의8, 23의18, 23의20, 24의7, 24의9~24의15, 25의3~25의4, 25의6, 25의8
제6통	제1반	서운동	33의3~33의16, 33의39, 33의45, 33의48, 34의2, 35의4, 5의8, 54의2, 55의2, 56의2, 58의1, 59의1, 60의1,
	제2반	서운동	28의8~28의10, 29의1, 29의4~29의7, 30의4, 30의7, 32의2~32의9, 33의18~33의20, 58의16, 59의3, 64의1, 65의1, 66, 67~69, 69의1~69의3, 70, 71의1, 71의2, 73의1~73의3, 74의1, 74의3, 76의1, 78의1, 79의1, 79의3, 79의5, 79의6, 81의1, 81의3, 81의4, 81의7~81의9, 82의1, 82의2, 82의3, 94의3, 94의7, 94의9, 94의12
	제3반	서운동	28의7, 28의12~28의15, 28의17~28의20, 29의9, 88의13, 88의16, 88의19, 89의18, 89의19, 89의20, 89의21, 89의22~89의24, 89의29, 90의1, 90의3, 90의4, 90의8~90의15, 90의19, 90의20, 91의4~91의8, 92의1, 92의3,
	제4반	서운동	83의2, 83의3, 84, 85의2, 85의4, 86, 87의3~87의6, 87의8, 88의1, 88의4, 88의5, 88의6~88의9, 88의12, 88의13, 88의16, 88의19, 88의24, 88의25, 88의26, 89의1~89의6, 89의8~89의12, 89의14~89의17
제7통	제1반	남문로1가	1의2, 1의6~1의10, 2, 5의1, 5의2, 7~9, 9의2, 10의2, 11의9, 11의11, 12, 13, 14의2, 53, 59의1~59의6, 60의3, 60의4, 62의2, 63의1~63의3, 64, 67의1~67의4, 67의8~67의10, 68의1, 69, 71, 73의1, 74의1, 74의3, 75의1,
	제2반	남문로1가	17의2, 18의1, 18의2, 19, 20의3, 21의2, 23의2, 27, 28, 29의1, 29의3, 29의5, 29의6, 29의8, 29의11, 30의5, 33의2, 38, 40, 41, 45~47, 48의1, 49의2, 50의2, 50의4, 51의1, 51의3, 52의1, 52의2, 52의5, 52의6, 79의1, 79의3, 80의3, 81의1~81의6, 82의1, 82의4, 82의7, 83의1, 83의2
	제3반	남문로1가	108의1, 108의2, 109의1, 109의4, 109의5, 109의6, 110의1, 110의3, 110의4, 111의1, 111의2, 112의1, 113의1~113의6, 113의8, 113의9, 113의13, 114의3, 115의1~115의4, 115의7~116의21, 124의2, 124의3, 125의2, 126의1, 127, 128의1~128의4, 129, 130의2, 131의5, 132, 133의1, 133의2, 134, 135, 136의2, 328의1, 328의3
	제4반	남문로1가	84의1, 84의3~84의6, 86, 87, 88의1, 90의1, 90의3, 91, 94의1, 94의2, 95, 96의1, 97, 98의1, 98의2, 99의3, 100, 101의1~101의3, 104의1, 104의3, 105, 106, 107의1, 107의2, 108, 109의2, 110의2, 112의3, 112의4, 112의6,
	제5반	남문로1가	137의1, 137의2, 138, 139의1, 139의5, 139의6, 140의1~140의8, 141, 141의4, 142, 143의1, 143의2, 144, 145의1~145의5, 145의8, 146의3, 147, 152, 154, 155의1~155의4, 156의2, 157의2~157의5
제8통	제1반	남문로1가	187의1, 187의3, 187의6, 190, 191의1~191의3, 192의1, 192의4~192의7, 193~195, 196의1, 196의4, 197의5~197의7, 200, 204의1, 205의1~205의3, 206의1, 207의1~207의3, 208, 209의1, 209의2, 209의4, 209의5, 211의1~211의3, 212, 257, 258, 259의2, 259의3, 260의1~260의4

	제2반	남문로1가	233의1, 233의5, 233의6, 233의12, 233의14, 233의15, 233의19, 233의20, 233의22 ~ 233의27, 233의29, 233의32, 233의38, 234의1, 234의3, 235의2, 236의1 ~ 236의5, 236의7, 237 ~ 239, 239, 240의1, 241, 242, 243의1 ~ 243의4, 244 ~ 246, 249의1 ~ 249의3, 249의5, 249의6, 252, 254, 255의1 ~ 255의8
	제3반	남문로1가	175, 177, 177의1, 177의2, 178, 179, 179의1 ~ 179의3, 180, 180의1, 181, 182의1, 183의1, 184의1, 185의1, 185의7, 185의8, 186의1, 186의2, 261, 262, 265, 266, 270, 271, 272의1 ~ 272의4, 273 ~ 280, 281의1, 281의2, 282, 282의2, 285, 286, 288의1, 289의1, 289의2, 290, 297의1, 297의2, 297의4 ~ 297의6, 299, 299의1
	제4반	남문로1가	162의1, 162의2, 163의1, 163의2, 164 ~ 168, 169의1, 169의2, 170 ~ 173, 174의1, 174의2, 175의2, 175의3, 176의1 ~ 176의3, 176의5, 176의6, 294, 298, 300의3, 300의4, 301의1, 301의7 ~ 301의11, 303의1, 303의4, 303의5, 303의7, 303의8, 304의1, 305의1, 306, 306의1, 309의1, 309의2, 309의5, 312의1 ~ 312의3, 312의5, 312의6, 328
	제5반	남문로1가	287의2, 288의2, 288의4, 289의4, 290의2, 291, 293의1, 293의2, 296, 297의9, 299의1 ~ 299의3, 300의1, 300의5, 302, 303의1, 303의4, 303의5, 303의7, 303의8, 304의1, 305의1, 315, 320, 321의2, 322 ~ 324, 324의1
제9통	제1반	서문동	2, 2의1 ~ 2의13, 3, 3의1, 3의4, 6, 6의4, 6의6 ~ 6의9, 8의2, 9의1 ~ 9의4, 9의8, 9의9, 9의11, 10의1 ~ 10의4, 14의1, 14의2, 25, 27의2, 27의5, 29의2, 31의1, 32의1 ~ 32의3, 32의5, 32의6, 39의1, 42의1, 44의1, 44의5, 45의1, 46의2, 48의1 ~ 48의3, 49의1, 49의5, 59, 153의1, 224의4, 224의5
	제2반	서문동	150의10, 157의3, 157의5 ~ 157의14, 158의3, 158의4, 158의7 ~ 158의9, 158의11, 159의1, 159의5, 159의6, 159의9, 159의16, 159의18 ~ 159의22, 159의24, 159의26 ~ 159의29, 159의31, 159의32, 159의33, 159의35, 159의37 ~ 159의48, 159의50, 159의54, 159의62, 159의65, 159의66, 159의73, 161의3 ~ 161의5
	제3반	서문동	148의2, 148의10, 148의11, 148의17, 149의1, 149의4, 149의9 ~ 149의13, 149의15 ~ 149의20, 149의22 ~ 149의26, 149의28, 149의30 ~ 149의44, 149의47, 149의49 ~ 149의51, 150의2, 150의3, 150의12, 150의13, 150의17, 150의18, 150의27, 224의19
	제4반	서문동	139의1 ~ 139의3, 140의1 ~ 140의5, 140의7, 141의1, 141의5, 141의6, 141의16, 143의1 ~ 143의3, 146의2, 147, 147의3, 147의7, 147의16, 147의19, 147의23, 147의31, 148의12 ~ 148의15, 148의19, 148의20, 148의22, 148의23, 148의25, 150의15, 224의21
	제5반	서문동	162의3, 162의6, 166의1, 166의3, 166의5, 166의10 ~ 166의12, 166의19, 166의21, 166의22, 166의43, 166의44, 166의60, 166의61, 224의13, 224의14, 224의15, 224의45, 227의1, 227의3 ~ 227의12, 227의13 ~ 227의16, 227의19, 227의20, 227의38
	제6반	서문동	165의1, 165의8, 166의2, 166의7, 166의8, 166의16, 166의17, 166의30, 166의33, 166의40, 166의42, 166의45 ~ 166의48, 166의51, 170의1, 224의17, 227의21 ~ 227의23, 227의25, 227의26, 227의28 ~ 227의30, 227의32, 227의34 ~ 227의36, 227의41, 227의45
제10통	제1반	서문동	65의2, 65의4 ~ 65의11, 67, 69의2, 71의1, 71의2, 74, 75, 76의1 ~ 76의4, 77, 78, 79의2, 80의1 ~ 80의5, 85의5, 85의7, 95의1, 95의3, 96의1, 96의3, 97의1, 97의2, 98, 99의1, 99의2, 100의1 ~ 100의5, 101의1, 101의2, 102의1, 107, 108, 109의1, 109의6, 110, 111, 116의1, 117의1, 118의3, 119, 119의4, 119의5, 224의46
	제2반	서문동	163의3, 163의4, 172의6, 172의7, 172의9, 173의2, 173의3, 174의1, 174의2, 177의2, 178의12, 178의21, 178의22, 178의27, 210의3, 210의7, 210의9, 210의11, 213의1 ~ 213의4, 214의2 ~ 214의5, 136, 137의2, 138, 163의5, 177의1, 178, 178의5, 178의10, 178의11, 178의13, 178의14, 178의16, 178의29, 178의33, 178의37, 178의40, 178의41
	제3반	서문동	180의1, 180의4, 180의6 ~ 180의8, 180의9, 180의10, 180의11, 180의12, 180의14, 180의17, 180의21, 181의1 ~ 181의3, 182의1, 182의3, 182의7, 183의1, 183의2, 183의3, 184의1, 185의1 ~ 185의3, 186, 187의1, 187의2, 190의1, 190의3 ~ 190의6, 191의3, 195의1, 195의2, 195의3 ~ 195의7, 195의9, 195의10, 195의11, 195의16, 195의23, 199의1 ~ 199의3, 199의6, 199의8 ~ 199의10, 203, 206 ~ 209, 209의3, 210의8, 214의6, 214의7, 210의5

	제4반	서문동	120의2, 120의3, 121의1, 121의3, 121의5, 121의6, 121의8, 121의11, 121의12, 121의14, 122의1, 123의1 ~ 123의3, 126, 126의1, 126의12, 130의1, 130의2, 131의1, 133의1, 133의2, 133의4, 133의7 ~ 133의10, 133의16, 190의2, 190의11, 190의13, 190의18, 191의8, 191의10, 191의11, 191의14 ~ 191의18, 191의22, 195의12 ~ 195의15, 195의18, 195의19, 195의21, 195의24, 196의2, 217의1, 217의2
제11통	제1반	서문동	197의1 ~ 197의8, 197의10 ~ 197의11, 198의1 ~ 198의18, 198의20 ~ 198의29, 198의32, 198의34, 198의36,
	제2반	서문동	218의7 ~ 218의15, 218의18 ~ 218의21, 218의23 ~ 218의24, 218의27, 218의34, 218의37 ~ 218의38
	제3반	서문동	218의1 ~ 218의4, 218의6, 218의28 ~ 218의33, 218의35 ~ 218의36,
	제4반	서문동	222의1 ~ 222의3, 222의5 ~ 222의8, 222의9 ~ 222의13, 222의15 ~ 222의33, 222의36 ~ 222의38, 222의39
제12통	제1반	남주동	1 ~ 7, 190의1, 190의3, 191의1 ~ 191의6, 192의1 ~ 192의3, 193의1 ~ 193의4, 193의5 ~ 193의7, 194의1, 195, 196의2, 197의1, 197의2, 198, 199의1 ~ 199의5, 200의1 ~ 200의3, 210의1, 210의7
	제2반	남주동	8의1 ~ 8의4, 9의1, 9의3, 10의3, 10의4, 11, 11의1, 12의1, 12의2, 12의4, 12의5, 13 ~ 15, 15의1 ~ 15의4, 17, 18, 20의1 ~ 20의4, 185, 185의1, 186, 187의1 ~ 187의6, 188의1, 188의2, 189의1, 188의2, 189의1, 189의2, 189의4 ~ 189의7
	제3반	남주동	21, 21의1, 23, 24 ~ 29, 30의1, 30의2, 31, 32의1, 32의2, 35, 36의1, 36의2, 135, 136의1, 136의2, 137의1, 139의1
	제4반	남주동	138의2 ~ 138의4, 140 ~ 142, 143의1, 143의3, 143의6, 145, 145의2, 177의1, 177의2, 178의1 ~ 178의7, 179의3, 179의5, 180 ~ 183, 184의1, 189의3, 189의2
	제5반	남주동	146, 147의1, 148의2, 148의3, 149의1, 149의2, 150의1, 150의2, 151 ~ 155, 156의1 ~ 156의3, 157, 158의1, 158의3, 158의4, 160, 161의2, 161의4, 163의1, 163의2, 164, 169의1, 169의4, 169의6 ~ 169의8, 169의10, 169의11, 172의1, 172의3, 173, 175, 176, 176의1
제13통	제1반	남주동	211의3, 211의5, 212의2, 212의4, 212의5, 212의7 ~ 212의9, 213의4, 214의2 ~ 214의9, 215의3, 215의4, 217, 218, 219, 219의1, 219의2, 222, 223, 226, 228, 229의1, 229의2, 552, 553, 556의1, 556의4, 560의1, 564의1 ~ 564의10, 566의1 ~ 566의6, 568의2, 570 ~ 588
	제2반	남주동	232 ~ 239, 242 ~ 252, 255, 258 ~ 262, 264 ~ 266, 268, 271 ~ 275, 284, 285, 285의3, 287, 287의1, 288, 289, 289의1, 290, 291의1 ~ 291의3, 293, 296, 299 ~ 302, 305, 306의1 ~ 306의3, 320, 321의1, 322의2, 322의3, 323, 324, 350, 353, 354, 359의1, 359의2, 361, 362, 364의1 ~ 373의1, 527, 530의2 ~ 530의4, 531의2, 532의2, 533의2, 533의3, 535의1, 535의2, 536, 537의3, 537의5, 537의6, 537의8, 537의10, 537의12, 538의1 ~ 538의5, 538의8 ~ 538의11, 548, 562의1, 562의2, 597의1 ~ 597의592의1 ~ 592의13, 593의1 ~ 593의14, 594의1 ~ 594의23
	제3반	남주동	592의1 ~ 592의13, 593의1 ~ 593의14, 594의1 ~ 594의23
	제4반	남주동	596의1 ~ 596의11, 595의1, 595의3 ~ 595의14, 595의16 ~ 595의24, 595의29 ~ 595의31, 595의34 ~ 595의36
	제5반	남주동	598의1 ~ 598의4, 598의6 ~ 598의14, 598의16 ~ 598의21, 598의27 ~ 598의31, 598의34
	제14통	제1반	남주동
	제2반	남주동	59 ~ 64, 64의1, 65의1, 65의2, 66의1 ~ 66의3, 67 ~ 69, 73, 74, 77의1, 78, 79의1, 79의2, 80, 81의1 ~ 81의4, 82의1, 83, 85의1, 85의2, 627의2 ~ 627의10
	제3반	남주동	48의1, 84, 86, 87, 90의1 ~ 90의3, 91의1, 92의1 ~ 92의6, 93의1 ~ 93의5, 94의1, 94의2, 95, 96의1 ~ 96의4, 97, 98, 124 ~ 131, 627의11 ~ 627의13, 627의20, 627의22
	제4반	남주동	101의1, 102 ~ 104, 105의1, 105의2, 106, 107의1 ~ 107의4, 108의2 ~ 108의4, 111, 112의1, 112의2, 113의1, 113의2, 115의1, 115의3, 115의5, 116의2 ~ 116의5, 116의7, 117, 120의1, 120의2, 121의1 ~ 121의3, 122
	제5반	남주동	379, 381, 382, 387의2, 387의3, 391 ~ 396, 398, 400, 403, 401 ~ 432, 434, 438, 440, 441, 443 ~ 448, 449(신일마트) 460 ~ 462, 465, 478, 479의3, 498 ~ 500, 503의2, 509의1 ~ 510의1, 511, 512의1, 512의2, 512의4, 512의5, 512의7, 513, 514, 515의1, 515의2, 516의2, 519의2 ~ 519의10, 601의1 ~ 601의5, 619

제15통	제1반	석교동	1의1..~1의3, 2의1, 2의3, 2의6, 3의3, 3의7, 3의8, 4의2, 4의3~4의5, 4의7, 4의8, 4의9, 4의11, 4의12, 4의13, 4의16, 5의1, 5의1(석교아파트), 5의9, 5의14, 6의1, 7의3~7의7, 7의9, 7의11~7의13, 8의1, 8의8, 8의9, 9의1, 9의6, 9의7, 9의9, 9의10, 9의12, 31의1,31의5,31의6,37의2,37
	제2반	석교동	16의5~16의8, 16의10,16의12~16의14,17의4~17의6, 17의8,17의10, 17의13, 17의15, 17의17, 17의18, 17의23, 18의5, 18의6, 19의5, 19의6, 19의11, 19의16, 20의1, 20의3, 20의4, 20의5~20의7, 20의8, 20의9, 20의10~20의15, 20의17, 20의19(석교빌라), 21의15
	제3반	석교동	17의7, 17의9, 20의24, 20의26, 21의4, 21의5, 21의7, 21의8, 21의9, 21의12, 21의13, 21의16~21의34, 22의6~22의8, 22의9, 22의11, 22의12, 24의5, 24의7, 24의8
	제4반	석교동	24의9~24의16,25의1,25의3, 27의10,27의2~27의9, 27의11, 27의12,27의13, 28의2, 28의10,28의11, 39의1~39의3,39의5, 40의1, 40의3, 42의1, 42의3, 93의1~93의3, 94의1, 94의7, 94의9, 94의10, 94의14,126의4, 126의108,
제16통	제1반	석교동	32의3~32의7, 33의1, 33의3~33의10,34, 34의1, 35의2, 38의2~38의4, 42의9, 42의17, 42의18,125의105, 126의1~126의3, 126의10~126의12, 126의14~126의16, 126의90, 126의91, 126의104, 126의129, 126의131, 126의132, 126의147, 126의174, 126의181, 126의187, 126의205~126의212, 126의233
	제2반	석교동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2, 163, 164, 165, 166, 444
	제3반	석교동	161, 171, 191,192, 193, 194, 195, 197, 198, 199, 200, 201, 202, 203,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8, 449
	제4반	석교동	167, 168, 169, 17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6, 445, 446, 447, 448, 450
제17통	제1반	석교동	237, 238, 239,240,241, 242, 243,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2, 273, 274, 275, 452, 453
	제2반	석교동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7, 348, 349, 350, 451, 454
	제3반	석교동	286, 287, 288, 289, 302, 303, 304, 305,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31, 332, 333, 334, 342, 343, 344, 345, 346, 359, 368
	제4반	석교동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제18통	제1반	석교동	48의1, 48의3, 48의5, 48의9, 49의1, 49의4, 50의2, 50의6, 126의22, 126의24, 126의25, 126의27, 126의28, 126의29, 126의31, 126의32, 126의33, 126의34, 126의35, 126의36, 126의37, 126의38, 126의39, 126의40~126의42,126의43, 126의44, 126의45, 126의46,126의47, 126의53, 126의55, 126의98, 126의99, 126의106, 126의107,126의118,126의119, 126의120, 126의137, 126의
	제2반	석교동	44의20, 46의3, 47의3, 71의1, 71의12, 78, 79의1, 80, 83의1, 83의2, 84, 85의1, 85의2, 86의1, 86의7~86의9, 86의13, 86의14, 88의5, 88의12~88의14, 88의24
	제3반	석교동	66의1, 67의1, 67의2, 68, 68의1, 68의2, 68의3~68의5, 68의7, 68의8, 68의9, 68의10, 68의11, 69의3~69의15, 125의25, 125의68, 125의70~125의72
	제4반	석교동	65의1~65의4, 65의64, 66의3, 67의5~67의10, 125의74, 125의75, 125의76~125의79, 125의81~125의84, 125의88, 125의89, 125의100, 125의110, 125의135, 125의136, 125의147, 125의175

				제5반	석교동	82의3, 116의37, 117의1 ~ 117의4, 118의1, 118의2, 120의1 ~ 120의5, 120의6 ~ 120의12, 120의13, 121의1 ~ 121의3, 121의4 ~ 121의8, 121의11, 121의29, 122의1, 122의4, 122의5, 122의10, 125의90, 125의92, 125의93, 125의191, 126의77, 126의80, 126의96, 126의158, 127의14
			제19통	제1반	석교동	52의1 ~ 52의3, 53, 55의1 ~ 55의3, 55의7, 55의8, 55의9, 55의12, 55의20, 55의21, 55의24, 57의1, 57의2, 60의1, 125의1 ~ 125의13, 125의150
				제2반	석교동	55의4, 55의11, 55의13 ~ 55의19, 55의22, 60의3, 61의1 ~ 61의3, 63의3, 63의4, 63의6, 63의7, 125의16 ~ 125의23, 125의65, 125의66, 125의134, 125의157, 125의166
				제3반	석교동	125의32 ~ 125의36, 125의41, 125의42, 125의45, 125의47, 125의48, 125의52 ~ 125의56, 125의59, 125의60 ~ 125의62, 125의85, 125의86, 125의95, 125의113, 125의137, 125의139, 125의140, 125의144, 125의145, 125의148, 125의152, 125의155, 125의159 ~ 125의165, 125의180, 125의181, 125의185
				제4반	석교동	125의37, 125의38, 125의43, 125의44, 125의49, 125의57, 125의58, 125의63, 125의103, 125의107, 125의108, 125의111, 125의112, 125의114 ~ 125의133, 125의153
				제5반	석교동	125의39, 125의40, 125의51, 125의96 ~ 125의99, 125의101, 125의102, 125의154, 125의168, 125의172
	담.대성동	1	제1통	제1반	담동	145, 146, 146의1 ~ 146의6, 147, 148의1, 148의3, 148의6, 149의1, 149의3 ~ 149의8, 149의10, 149의11, 150, 151, 152의1 ~ 152의4, 153, 153의3, 155의1, 155의4, 155의7 ~ 155의9, 158, 159의1 ~ 159의9, 185의2, 195의5, 195의36, 162, 142의38 ~ 142의65, 142의67, 143의2
제2반				담동	142의2 ~ 142의8, 142의13 ~ 142의27, 142의29 ~ 142의36, 162, 142의38 ~ 142의65, 142의67, 143의2	
제3반				담동	195의3, 199의1 ~ 199의3, 202, 210, 189, 191, 193, 193의2 ~ 193의4, 193의7, 194의1, 195의11, 196, 197의1, 197의2, 197의4	
제4반				담동	170의2, 171의1 ~ 171의3, 173, 173의1, 176의1, 176의2, 186의1, 186의2, 187, 187의4, 187의5, 131, 131의1, 131의2, 132, 133의1, 133의2, 134, 134의1, 134의3, 134의4, 172, 172의2, 172의3	
제2통			제1반	담동	44현대A 102동	
			제2반	담동	44현대A 102동(105호 ~ 1306호)	
			제3반	담동	44현대A 104동(101호 ~ 1302호)44현대A 104동(103호 ~ 1304호)	
			제4반	담동	44현대A 106동	
제3통			제1반	담동	44현대A 101동	
			제2반	담동	44현대A 103동	
			제3반	담동	44현대A 107동	
			제4반	담동	44현대A 105동	
제4통			제1반	담동	95, 101 ~ 105, 108, 109, 97 ~ 111	
			제2반	담동	123, 125, 126, 128, 129, 92의167, 담동연립주택	
			제3반	담동	81의12 ~ 81의17, 81의23, 92의165, 92의168, 92의113, 92의114, 92의119, 81의4, 81의5, 81의7, 81의8, 81의9, 81의10, 81의18 ~ 81의22, 144의1, 123, 125, 126, 128, 92의96 ~ 92의144, 212, 94의1, 94의12	
			제4반	담동	92의96 ~ 92의144, 212, 94의1, 94의12	
제5통			제1반	담동	83-1, 삼일맨션 (301동, 302동)82, 327-10, 115-1, 77	
			제2반	담동	83의1, 삼일맨션 303동, 306동	
			제3반	담동	83의1, 삼일맨션 304동, 305동, 83의11	
			제4반	담동	83의4, 83의6, 83의7, 83의13, 92의17 ~ 92의23, 92의48, 92의78, 92의80 ~ 92의83, 92의87, 92의88, 93의8, 93의9, 92의17, 92의18, 92의22, 92의116 ~ 92의120, 92의144 ~ 92의152, 93의10, 93의11, 94의11, 94의14, 94의15, 94의4 ~ 94의10, 94의17, 94의20, 94의21, 93의15 ~ 94의24, 92의154, 92의157, 92의158, 92의160	
제6통	제1반	담동	42(보성트윈힐스아파트 A동 101호 ~ 115호, 201호 ~ 215호, 301호 ~ 315호, 401호 ~ 415호, 501호 ~ 515호)			
	제2반	담동	42(보성트윈힐스아파트 A동 601호 ~ 615호, 701호 ~ 715호, 801호 ~ 815호, 901호 ~ 915호)			
	제3반	담동	42(보성트윈힐스아파트 A동 1001호 ~ 1015호, 1101호 ~ 1115호, 1201호 ~ 1215호, 1301호 ~ 1315호, 1401호 ~ 1415호, 1501호 ~ 1515호)			
	제4반	담동	42(보성트윈힐스아파트 B동 101호 ~ 115호, 201호 ~ 215호, 301호 ~ 315호) 42(보성트윈힐스아파트 B동 401호 ~ 415호, 501호 ~ 515호)			

	제5반	탐동	42(보성트윈힐스아파트 B동 601호 ~ 615호, 701호 ~ 715호, 801호 ~ 815호, 901호 ~ 915호)
	제6반	탐동	42(보성트윈힐스아파트 B동 1001호 ~ 1015호, 1101호 ~ 1115호, 1201호 ~ 1215호, 1301호 ~ 1315호, 1401호 ~ 1415호, 1501호 ~ 1515호)
제7통	제1반	탐동	213의3, 213의4, 213의8, 213의9, 213의11, 213의13 ~ 213의16, 213의18, 213의22, 213의26 ~ 213의29, 215, 217의2, 217의3, 231의32, 227의3 ~ 227의10, 230의8, 230의10 ~ 230의12
	제2반	탐동	216, 227의11 ~ 227의22, 228의46, 229의36 ~ 229의38, 230의5 ~ 230의7, 230의9, 230의13, 230의19, 217, 222, 223의1, 224, 225의2, 225의5, 225의7
	제3반	탐동	225의1, 226의1 ~ 226의4, 226의6 ~ 226의13, 228의20, 228의23, 228의27, 228의29 ~ 228의36, 233의3, 233의4, 233의7, 228의3 ~ 228의19, 228의21 ~ 228의24, 228의28, 228의42, 228의43, 228의45
	제4반	탐동	238의1, 238의2, 238의5, 240 ~ 242, 247, 248, 251 ~ 253, 257, 92의15, 92의34, 92의35, 92의89, 230, 238의6 ~ 238의15, 239, 243, 244 ~ 246
제8통	제1반	대성동	5 우성A 101동
	제2반	대성동	5 우성A 106동
	제3반	대성동	5 우성A 107동
	제4반	대성동	5 우성A 102동
제9통	제1반	대성동	5 우성A 103동
	제2반	대성동	5 우성A 105동
	제3반	대성동	5 우성A 109동
	제4반	대성동	5 우성A 108동
제10통	제1반	탐동	258, 260, 262의1, 262의3 ~ 262의7, 262의9 ~ 262의11, 264, 18, 261, 261의8, 264의1, 265, 266
	제2반	탐동	261(대창목화하이츠 임대A 101동101호 ~ 515호)
	제3반	탐동	261(대창목화하이츠 임대A 102동101호 ~ 504호), 259, 92의6, 92의47, 92의142, 92의143, 261의13, 261의14, 92의122 ~ 92의126, 92의92, 92의137, 92의42 ~ 92의45, 91, 250, 251의1, 251의3
	제4반	탐동	92의128 ~ 92의136, 92의141, 93의4 ~ 93의6, 28의6, 28의12, 28의13, 28의15, 28의18, 28의5, 28의9, 28의16, 89의5, 261의10, 261의16, 261의18, 92의46, 92의49 ~ 92의51, 92의56 ~ 92의59
	제5반	탐동	28-21, 88-1, 88-2, 92의16, 92의53, 92의54, 92의55, 92의60, 92의61, 92의63-71, 92의72
제11통	제1반	탐동	297의75(석탑A 가동)
	제2반	탐동	297의75(석탑A 나동)
	제3반	탐동	297의84(석탑A 다동)
	제4반	탐동	297의88, 305, 306, 307의7, 307의8, 307의10 307의12, 307의17, 308, 309의3, 309의4, 309의7, 310, 313, 315, 297의90(한양맨션), 297의90(서우빌라)
	제5반	탐동	
제12통	제1반	탐동	LH청주탑동아파트 101동 101호~1602호
	제2반	탐동	LH청주탑동아파트 102동 101호~1902호
	제3반	탐동	LH청주탑동아파트 103동101호 ~ 1804호, 327의1, 327의
	제4반	탐동	LH청주탑동아파트 104동 101호 ~ 1805호
	제5반	탐동	LH청주탑동아파트 105동 101호 ~ 1902호
	제6반	탐동	LH청주탑동아파트 106동 101호 ~ 1902호
제13통	제1반	대성동	159의16, 159의18, 159의21, 162의1 ~ 162의8, 162의18, 162의22, 160, 161, 162의27, 162의33
	제2반	대성동	155의1(이화A), 159의2 ~ 159의15, 159의19, 159의20
	제3반	대성동	109의9 ~ 109의11, 109의109, 109의111, 150, 174, 178, 178의1, 189, 193, 196의1, 196의3, 196의6 ~ 196의9, 196의11, 196의15, 197, 198, 199, 205의1 ~ 205의3, 205의5, 205의7, 205의8, 205의10, 205의11, 206, 207의1,
	제4반	대성동	157, 159, 162의10, 162의12 ~ 162의17, 162의20, 162의26, 162의30, 164의1, 164의3, 164의4, 164의10, 165의1, 165의6, 165의7, 165의11, 167, 169의2 ~ 169의21
	제5반	대성동	171의1(장미A 가동, 나동), 171의2 ~ 171의5, 171의8, 171의9

			제14통	제1반	대성동	1의9, 1의10, 1의13, 1의17, 4의49, 20의10, 20의17, 20의18, 20의22, 20의24, 20의25, 4의32, 4의35, 4의37, 4의42 ~ 4의45, 4의48, 18
				제2통	대성동	4의1, 4의17, 4의27, 4의31, 4의33, 4의34, 4의36, 4의47, 18의4, 18의7, 1의2, 1의7, 4의52 ~ 4의54, 4의4, 4의16, 1의23 ~ 1의24, 1의26, 1의41
				제3통	대성동	4(무지개A 가동, 나동)
				제4통	대성동	1의1, 1의6, 1의5, 1의16, 1의18, 17의1, 17의10, 20의1 ~ 20의8, 22
				제5통	대성동	22의1, 22의11(건흥빌라)
			제15통	제1반	탑동	2, 3의2, 5의2, 5의4, 5의16, 5의17, 5의19, 5의20, 34의1, 34의2, 36의1, 45, 46, 47, 48, 49, 50
				제2반	탑동	1 소망A 가동, 나동,
				제3반	탑동	51(삼덕A 104호 ~ 510호), 53, 57, 60
				제4반	탑동	5의1, 5의37, 5의39, 6의3, 6의4, 7, 6의1, 6의5 ~ 6의16, 6의24
				제5반	탑동	6의3(무궁화A 101호 ~ 507호)
			제16통	제1반	탑동	5의13, 5의21, 5의23 ~ 5의26, 27의3, 27의4, 27의10 ~ 27의12, 27의15, 27의20 ~ 27의26, 32 ~ 34, 37 ~ 39, 41
				제2반	탑동	5의7, 5의8, 5의42, 5의11(삼일연립A동, B동, C동), 5의31(삼일연립E동), 27의42(삼일연립D동), 27의34 ~ 27의46
				제3반	탑동	6의21, 6의22, 269의8, 269의11, 269의12, 269의15, 270, 269의2, 269의5 ~ 269의7, 269의10, 269의18, 273, 274,
				제4반	탑동	7의5, 7의17, 9 ~ 12, 23, 27의5, 27의6, 27의14, 27의16 ~ 27의18, 27의48
			제17통	제1반	대성동	29, 30의15, 30의23 ~ 30의26, 30의29, 30의30 ~ 30의32, 30의1 ~ 30의2, 30의4, 30의7 31, 31의3 ~ 31의4, 32, 34의7, 38의1
				제2반	대성동	15, 25, 26의4 ~ 26의8, 30의5, 30의6, 30의13, 30의18, 30의19, 30의21 ~ 30의22, 128의2 ~ 128의3, 128의8, 128의9, 128의21, 128의23, 128의24, 128의54, 128의55, 128의58, 128의59, 128의77, 128의80, 132
				제3반	대성동	121, 122, 123, 124의3, 124의6, 124의36, 175의1, 109의56, 109의59, 109의60, 113의7, 124의7 ~ 124의10, 124의14, 124의15, 124의31, 124의33, 124의37, 125의3 ~ 125
				제4반	대성동	120의1 ~ 120의11, 126의7 ~ 126의10, 128의30, 124의16 ~ 124의27, 126의2 ~ 126의6, 126의11, 138, 139, 148
			제18통	제1반	대성동	79의1 ~ 2, 110, 114의1 ~ 114의14, 114의16, 114의17, 114의18, 114의20 ~ 114의22, 109의4, 109의55, 109의97 ~ 109의99, 109의116, 109의117, 111의2 ~ 111의4, 112의1 ~ 112의4, 113의1 ~ 113의6, 113의9 ~ 113의11, 113의15, 113의19, 113의20
				제2반	대성동	98, 99, 101, 103, 105, 106, 109의6, 109의18, 109의45, 109의100, 107의2, 109의63 ~ 109의70, 109의84 ~ 109의87, 109의91, 109의102, 109의48, 109의47
제3반	대성동	92, 93, 94, 95, 59의4, 59의5, 109, 109의72, 109의77 ~ 109의83, 109의88, 109의96, 88의1(대성A 가동, 나동)				
제4반	대성동	88의1(대성A 다동, 라동, 대성연립A, 바동)				
제19통	제1반	대성동	115, 116, 118, 119, 128의11 ~ 128의13, 117의1 ~ 117의12, 128의1, 128의15, 128의18, 128의20, 128의47, 128의51, ~ 128의53, 128의61 ~ 128의64, 128의66 ~ 128의73,			
	제2반	대성동	55의1, 55의3, 56, 57, 59의1, 59의3, 63 ~ 65, 94, 95, 66, 69, 80, 81, 83, 86, 87, 114의1, 114의18,			
	제3반	대성동	69의1, 69의4 ~ 69의6, 40, 41, 44, 45, 77의1 ~ 77의3, 78,			
	제4반	대성동	산25, 42의1, 48, 49, 69의1			
제20통	제1반	탑동	235, 287, 292, 293, 294, 297의3 ~ 297의4, 297의67, 281, 282, 284, 285, 286, 288			
	제2반	탑동	277, 280의1, 280의17, 280, 289의1 ~ 289의6, 290, 297의76 ~ 297의81			
	제3반	탑동	297의13 ~ 297의22, 297의60 ~ 297의66, 297의68, 297의69, 297의11 ~ 297의12, 297의48 ~ 297의59			
	제4반	탑동	297의6, 297의8 ~ 297의10, 297의24 ~ 297의26, 297의27 ~ 297의33, 297의71, 297의72			
영운동	1	제1통	제1반	영운동	33-1(한진신세대A 901호 ~ 1120호)	
		제2반	영운동	33-1(한진신세대A 1201호 ~ 1520호)		
		제3반	영운동	33의1(한진신세대A 201호 ~ 520호)		
		제4반	영운동	33의1(한진신세대A 601호 ~ 820호)		

제2통	제1반	영운동	33의1 ~ 33의7, 35의3 ~ 35의9, 55, 36의1 ~ 33의3, 36의15 ~ 36의17, 35의28 ~ 36의30, 37의1, 37의4 ~ 37의6, 37의9, 37의11 ~ 37의17, 38 ~ 38의6, 38의10, 38의11, 38의14 ~ 38의16, 36의43
	제2반	영운동	33의16(하은A A동, B동), 34의6, 34의10, 34의21
	제3반	영운동	40의1, 40의4(영운빌라), 40의6 ~ 40의11, 40의15, 40의29, 40의32, 40의33, 40의45, 40의46, 40의53
	제4반	영운동	34의9, 34의12, 34의14, 40의13, 40의14, 40의16, 40의17, 40의31, 53의6, 53의8, 54의2, 54의4 ~ 54의13, 55의2, 56의8, 56의9, 56의11, 56의13, 56의16, 58의9, 58의, 58의17, 58의22, 40의20
	제5반	영운동	40의21, 51의2, 53의4, 55의9 ~ 53의12, 53의16, 53의19, 53의56, 54의1, 56 ~ 56의7, 59의11 ~ 59의15
제3통	제1반	영운동	41의3 삼진A 101동, 102동
	제2반	영운동	41의3 삼진A 103동, 104동
	제3반	영운동	40의5(진흥A 가동 ~ 나동 4라인)
	제4반	영운동	40의1, 40의5(진흥A나동 5라인 ~ 다동)
	제5반	영운동	52의3(삼진화량A 101동)
	제6반	영운동	52의3(삼진화량A 102동)
제4통	제1반	영운동	산60, 산62, 94, 94의4, 95, 95의3 ~ 6, 95의8 ~ 95의10, 96의2 ~ 96의8, 96의11, 96의14, 98, 98의3 ~ 98의4, 98의7 ~ 98의10, 98의12, 99, 99의2, 100의1, 100의4, 100의6, 100의9 ~ 100의15, 100의18 ~ 100의20, 100의46, 100의36, 100의37, 100의48, 101의6
	제2반	영운동	92의1, 93, 94의2, 88의1 ~ 88의2, 88의4 ~ 17, 88의17, 88의19, 88의25, 100의2, 100의7, 100의22
	제3반	영운동	산58, 45의2, 45의3, 46의1 ~ 46의4, 47의1 ~ 47의3, 47의5, 47의7, 89, 89의1, 90의3, 90의4, 91의11, 95의1, 95의2, 95의17
	제4반	영운동	41의12, 42, 43, 43의1 ~ 43의15, 44, 50의1 ~ 50의8, 50의10, 50의11, 50의13, 50의14, 51의5, 51의7, 51의12
제5통	제1반	영운동	63의1, 63의7, 70의2 ~ 70의4, 70의6 ~ 70의18, 70의20 ~ 70의23, 70의27, 71의1, 71의2, 71의5, 71의6
	제2반	영운동	66의5, 66의8, 66의9, 66의21, 66의22, 66의24 ~ 66의27, 66의30, 66의34, 66의35, 67의5, 68의1, 68의7, 68의9 ~ 68의11, 69 ~ 69의5, 70의1, 70의5
	제3반	영운동	65의7 ~ 65의12, 66의1(전원빌라 A, B동), 66의6, 66의7, 66의12 ~ 66의15, 66의17, 66의18
	제4반	영운동	50의15, 50의20 ~ 50의21, 51의3, 51의4, 51의9, 51의10, 61의5, 62의4, 62의7, 62의8, 62의10 ~ 62의13, 63의2 ~ 63의6, 63의10, 64의1 ~ 64의3, 65의1, 65의6, 65의13, 59의1, 59의3, 59의7 ~ 59의9, 59의17 ~ 59의18, 57의1 ~ 57
제6통	제1반	영운동	73의5(태암수정AA102동101호 ~ 316호,상가)
	제2반	영운동	73의5(태암수정A 102동201호 ~ 516호)
	제3반	영운동	73의5(태암수정A 102동601호 ~ 915호)
	제4반	영운동	73의5(태암수정A 101동 801호 ~ 915호)
	제5반	영운동	73의5(태암수정A 101동 1002 ~ 1413호)
	제6반	영운동	73의5(태암수정A 101동 903 ~ 1523호)
제7통	제1반	영운동	73의5(태암수정A 101동 101호 ~ 226호)
	제2반	영운동	73의5(태암수정A 101동 301호 ~ 426호)
	제3반	영운동	73의5(태암수정A 101동 501호 ~ 626호)
	제4반	영운동	73의5(태암수정A 101동 701호 ~ 726호)
제8통	제1반	영운동	73의4, 74의5, 74의11, 74의14, 74의15, 75의1, 75의2, 75의7 ~ 75의10, 75의18, 76의1, 76의3, 76의5 ~ 76의9, 76의11, 76의12, 76의16, 76의18
	제2반	영운동	80(형제A 가동, 나동, 다동), 80의4
	제3반	영운동	82의1(청주A 가동, 상가), 나동 101호 ~ 505호
	제4반	영운동	82의1(청주A 나동 106호 ~ 505호), 82의1(청주A 다동 101호 ~ 506호)
	제5반	영운동	82의1(청주A 다동 107호 ~ 511호), 82의1(청주A 라동, 마
제9통	제1반	영운동	84의8(청운연립)
	제2반	영운동	81의5, 81의13, 81의14, 83의5, 84의7, 84의9 ~ 84의13, 84의15 ~ 84의19, 84의22, 85의1, 87의2 ~ 87의4, 221의1, 81의3(청주A A동 101호 ~ 505호)
	제3반	영운동	81의3(청주A A동 101호 ~ 505호)



	제4반	영운동	81의3(청주A A동 106호 ~ 506호, 107호 ~ 507호, 108호 ~ 508호, 109호 ~ 509호)
제10통	제1반	영운동	200의1, 200의3, 209, 209의1, 209의2, 209의4 ~ 209의9, 209의13, 209의25, 209의30, 215의17, 215의18
	제2반	영운동	210의6(은하연립)
	제3반	영운동	204 삼일A 101동 101호 ~ 1304호)
	제4반	영운동	204 삼일A 101동 105호 ~ 1508호)
	제5반	영운동	204 삼일A 102동
	제6반	영운동	204 삼일A 103동 ~ 104동
제11통	제1반	영운동	104의2, 104의5, 104의17, 104의18, 105의2, 203의1, 203의3 ~ 203의10, 105의3, 106, 106의1, 173의9, 173의14, 173의24, 202의1 ~ 202의6, 202의8, 202의14 ~ 202의19
	제2반	영운동	104의13 ~ 104의16, 104의25, 203의12 ~ 203의 26, 105의3, 106, 106의1, 173의9, 173의14, 173의24
	제3반	영운동	102, 102의5, 102의6, 103, 103의2 ~ 103의5, 103의12, 103의13, 103의15, 103의16, 103의26, 103의31, 103의34, 113의5 ~ 113의7, 203의11, 203의13, 203의14, 203의16, 203의18, 203의21 ~ 203의26
	제4반	영운동	101 ~ 101의6, 102 ~ 102의14
제12통	제1반	영운동	105의1, 107의2, 107의3, 107의5 ~ 107의7, 107의10 ~ 107의13, 107의15 ~ 107의17, 107의19, 107의 24, 107의25, 108의 16, 108의17, 108의18, 108의 19, 108의 24, 108의25, 109의7, 109의8, 109의9, 109의16, 173의17 ~ 104의1, 104의4, 104의6, 104의7, 108의1 ~ 108 의15, 108의20, 108의26, 108의27, 109의5, 113의3
	제2반	영운동	104의1, 104의4, 104의6, 104의7, 108의1 ~ 108 의15, 108의20, 108의26, 108의27, 109의5, 113의3
	제3반	영운동	107의4, 107의20 ~ 107의22, 109의10, 109의15, 109의20, 109의28 ~ 109의36, 121의17, 121의 18, 121의20
	제4반	영운동	108의21, 109의1, 109의2, 109의4, 109의11 ~ 109의14, 109의21 ~ 109의26, 110의6 ~ 110의20
	제5반	영운동	113의23 (영운빌리지 A,B,C,D동)
	제6반	영운동	103(에브라임 리치빌A 101동), 103-6(에브라임 리치빌A 상가)
제13통	제1반	영운동	11의2, 112의19, 111의2, 111의4, 116의5 ~ 116 의14, 116, 116의1, 116의3
	제2반	영운동	산68의5, 산68의1, 113의13, 114, 114의1 ~ 114의5, 114의10, 114의11, 114의13, 114의22, 114의24, 114의30, 115의1 ~ 115의6, 115의16, 116의2, 116의15 ~ 116의17, 116의20, 116의23, 116의49, 135의4 ~ 135의5, 135의8
	제3반	영운동	118(정화A 가동, 나동), 118의1
	제4반	영운동	119의3, 119의7 ~ 119의9, 119의11, 119의12, 120, 120의1, 120의4 ~ 120의6, 121의9, 121의12 ~ 121 의14, 123의4 ~ 123의6, 124의2, 124의11, 124의12
	제5반	영운동	113(성화누리안아파트 101동, 102동)
	제6반	영운동	113(성화누리안아파트 103동)
	제7반	영운동	113(성화누리안아파트 104동)
제14통	제1반	영운동	139의19(두산A 101호 ~ 420호)
	제2반	영운동	139의19(두산A 501호 ~ 820호)
	제3반	영운동	139의19(두산A 901호 ~ 1220호)
	제4반	영운동	139의19(두산A 1301호 ~ 1516호)
제15통	제1반	영운동	127, 135, 135의9, 135의32, 135의33, 135의52, 135의53, 135의55, 135의57, 135의58, 135의67 ~ 135의69
	제2반	영운동	135의6, 135의10, 135의24, 135의26, 135의30, 135의36, 135의41, 135의45, 135의47, 135의48, 137 ~ 137의31, 137의5, 137의7, 137의8, 137의 10 ~ 137의12
	제3반	영운동	145의7(정화A)
	제4반	영운동	134의1, 140의1 ~ 140의5, 104의7, 140의15 (삼부빌라 A동, 101호 ~ 301호, 102호 ~ 302호, 140의18(삼부빌라 B동, 101호 ~ 301호, 102호 ~ 302호), 140의16(삼부빌라C동 101호 ~ 301호, 102호 ~ 302호), 140의19(삼부빌라 D동, 101호 ~ 301호, 102호 ~ 302호), 142의1, 142의4, 42의5, 143의2, 143의4, 143의7, 143의8, 144의6, 145, 145의1, 145의9, 145의19, 145의57, 145의62, 145의63
제16통	제1반	영운동	145의11(신라송림 A 1동 101호 ~ 1502호), 145의11(신라송림A 3동 113호 ~ 1014호)
	제2반	영운동	145의11(신라송림A 1동 103호 ~ 1506호)
	제3반	영운동	145의11(신라송림A 1동 107호 ~ 1510호)
	제4반	영운동	145의11(신라송림A 2동 101호 ~ 707호)

				제5반	영운동	145의11(신라송림A 2동 801호 ~ 1506호)
				제6반	영운동	145의11(신라송림A 3동 101호 ~ 1006호)
				제7반	영운동	145의11(신라송림A 3동 107호 ~ 1012호)
			제17통	제1반	영운동	134의1, 138의1, 138의12, 138의13, 138의30, 139의1, 145의6, 145의8, 145의13, 145의37, 145의43, 148, 148의1 ~ 148의4, 148의6, 151의3 ~ 151의7, 151의10, 151의138의1, 143의1(청남주택 B, E동)
				제2반	영운동	138의1, 143의1(청남주택 B, E동)
				제3반	영운동	138의1, 134의1(청남주택 C, D동)
				제4반	영운동	138의1, 134의1(청남주택 A동)
			제18통	제1반	영운동	160의7, 160의9 ~ 160의12, 160의17, 160의18, 161의5 ~ 161의10, 161의14, 161의15, 162의7, 162의11, 163의1, 163의3, 163의4, 163의6 ~ 163의10, 163의29, 163의30
				제2반	영운동	154의4, 154의6, 154의7, 154의9, 160의1, 160의6, 162의1, 162의3, 162의5, 162의14, 215의 11(은성A)
				제3반	영운동	126의9, 126의10, 126의12, 139, 139의5 ~ 139의 12, 145, 152의15, 152의26, 152의42, 155의9 ~ 155의15, 155의18 ~ 155의21, 156, 157의2, 158, 158의1, 158의7 ~ 158의14, 168의1, 150의20(삼우연립A동, B동), 152의30, 152의33 ~ 152의36
				제4반	영운동	152의9(대원A)
			제19통	제1반	영운동	170, 170의4, 170의12, 170의13, 170의16, 170의18, 170의20, 170의25, 170-34, 171의3, 171의6, 171의7, 171의10, 171의11, 172의2, 172의3, 172의8, 172의12, 173의7, 173의10, 173의11, 173의21, 173의22, 173의24 ~ 173의124의6, 124의10, 124의15 ~ 124의16, 124의18 ~ 124 의19, 125의3, 125의9 ~ 125의10, 168의7 ~ 168의9, 168의12 ~ 168의16, 169의3, 169의7 ~ 169의8, 169의10, 169의13 ~ 169의15, 169의17, 169의21, 170의2 ~ 170의3
				제2반	영운동	124의6, 124의10, 124의15 ~ 124의16, 124의18 ~ 124 의19, 125의3, 125의9 ~ 125의10, 168의7 ~ 168의9, 168의12 ~ 168의16, 169의3, 169의7 ~ 169의8, 169의10, 169의13 ~ 169의15, 169의17, 169의21, 170의2 ~ 170의3
				제3반	영운동	163의15 ~ 163의21, 163의24, 163의27, 163의34, 163의24, 163의27, 166의1 ~ 166의5, 166의7 ~ 166의17, 166의20 ~ 166의22, 166의24 ~ 166의27, 166의31, 166의39 ~ 166의40, 168의20, 168의23 ~ 168의24, 169의2, 169의6, 169의2, 169의5 ~ 169의6, 179의10,
				제4반	영운동	166의29, 178의1 ~ 178의2, 179의2(미림아트빌라), 167의1 ~ 167의2, 170의5 ~ 170의6, 170의8, 170의8, 170의10
			제20통	제1반	영운동	179의11 미림A 101동
				제2반	영운동	179의11 미림A 102동
				제3반	영운동	183 미림A 103동
				제4반	영운동	183 미림A 104동
				제5반	영운동	182의2 미림A 105, 106동
			제21통	제1반	영운동	173의8, 193 ~ 193의1, 188 ~ 188의16, 193의11 ~ 193의12, 193의14, 193의19, 193의22, 195의1, 199의9
				제2반	영운동	190의4 ~ 190의11, 174, 174의2, 174의3, 174의 6 ~ 174의8, 190, 190의1 ~ 190의3, 191의30
				제3반	영운동	175의17 ~ 19, 175의21 ~ 175의23, 181의3, 181의5, 189의1, 190의2, 190의3, 190의6, 190의9 ~ 190의11, 190의13, 191의5, 191의7
				제4반	영운동	190의7 ~ 190의11
				제5반	영운동	174의11 ~ 174의25
			제22통	제1반	영운동	211의5(한일아파트)
				제2반	영운동	196의4, 215의22, 215의46, 215의51, 215의52, 215의58, 215의59, 215의70, 215의74, 215의78, 215의81, 215의83, 215의85 ~ 215의87, 215의89, 215의9, 215의96, 215의98 ~ 215의100, 215의102, 215의130, 215의131
				제3반	영운동	197의5, 197의8, 197의10 ~ 197의19, 200의6, 200의13, 200의17, 213, 213의4, 213의7
				제4반	영운동	187의14(현대빌라 가동, 나동, 다동), 186의1, 186의3
	금천동	1	제1통	제1반	금천동	163의1 ~ 163의6, 163의11 ~ 163의13, 163의15 ~ 163의17, 163의19, 163의21, 163의22, 167의4, 167의8, 168의2, 261의55, 169의18, 169의5, 169의6, 169의8, 261의17, 261의67, 169의14, 162의25, 168의6, 169의9, 168의11, 168의12, 169의7, 261의57, 261의65, 261의59 ~ 261의61, 261의63, 261의107, 162의93
				제2반	금천동	169의10, 167의3 진주A 가동, 168의9, 167의23, 167의22, 162의4
				제3반	금천동	167의3 진주A 나동
				제4반	금천동	166의1 진주A A동, 166의1 진주A B동, 168의14, 168의10, 166의8, 166의9

	제5반	금천동	162의11, 162의26, 162의42, 162의43, 162의33, 162의34, 162의46, 164의1, 164의4, 164의5 ~ 164의7, 164의9, 166의6, 166의19, 166의20, 164의3, 166의2, 164의9, 164의11, 162의12, 162의35 ~ 162의40, 162의44, 163의14, 165의2, 166의17, 166의57, 166의58
	제6반	금천동	162의47, 162의48, 162의50, 162의51, 162의52, 162의53, 162의54, 162의62, 162의63, 162의64, 162의65, 162의66, 162의69, 162의70, 162의71, 162의72, 162의73, 162의56, 162의90 ~ 162의92, 석교역탑
제2통	제1반	금천동	158의2, 158의3, 158의42 ~ 158의44, 158의46, 158의47, 157의4, 157의68, 157의70, 157의72, 157의35, 157의36, 157의38, 157의39, 158의21, 158의8 ~ 158의12, 158의15 ~ 158의17, 157의33, 157의34, 157의40 ~ 157의42, 157의71, 158의22, 158의23, 158의26, 158의27, 161의14, 161의10 신흥빌라, 157의28, 157의69, 161의12, 162의157의65, 157의66, 157의84, 159의1 ~ 159의3, 161의3, 161의22, 162의16, 161의23 ~ 161의27, 157의 68, 157의47 ~ 157의50, 157의53 ~ 157의55, 157의62 ~ 157의64, 161의19, 161의20, 162의14, 162의45, 161의4 ~ 161의6, 162의19, 161의30, 161의31, 162의85, 166의20, 162의84, 162의81, 162의30
	제2반	금천동	160의28, 160의2, 160의5 ~ 160의12, 160의14 ~ 160의17, 161의7 ~ 161의9, 162의21, 160의23, 160의24, 162의22, 162의23, 152의94, 161의35, 160의29
	제3반	금천동	157의44 ~ 157의46, 157의10, 157의20, 157의56, 157의57, 157의61, 157의5, 157의82, 157의85, 153의16, 155의8, 157의6, 157의16, 159의6, 158의 29, 157의5, 157의17, 159의5, 157의19, 157의11 157의12, 155의4, 155의5, 155의7, 155의9 ~ 155의11, 157의81, 157의83, 159의9, 산48의2, 산46의4, 산46의12
	제4반	금천동	158의6, 158의7, 158의18, 158의19, 156의5, 170의1, 170의3, 170의4, 170의5, 170의9, 170의 10, 170의11, 170의12, 170의13, 170의14, 157의3, 157의23, 157의24, 157의26, 157의29, 157의31, 157의75, 157의76, 157의1, 157의8, 157의22, 156의4, 158의1, 158의50, 158의51, 158의54, 158의57, 157의58, 170의2, 170의15, 170의29, 170의18, 170의27, 170의28, 170의26, 154의8, 151의6, 151의7, 151의8, 251의115, 251의114, 251의113, 251의99, 251의98, 170의22, 156의1, 157의2, 158의55, 157의27, 157의7, 251의96, 251의112, 158의53, 158의56, 157의87, 157의88, 155의2, 155의3, 156의3, 156의8, 156의2
	제5반	금천동	153, 151의5, 151의18, 152의3, 154의4 ~ 154의7, 149의7 ~ 149의13, 149의17, 149의18, 151의9, 151의11, 151의2, 151의21, 151의22, 151의4, 149의2, 151의13, 154의12, 149의28, 149의30, 152의4, 251의101, 150의5, 153
제3통	제1반	금천동	153의3 ~ 153의5, 153의7, 153의9 ~ 153의14, 153의15, 153의17, 153의20, 154의2, 154의3, 155의1, 144의10, 149의1, 149의14 ~ 149의16, 149 의19, 149의20, 153의1, 153의2, 153의8, 산46의3, 산46의6
	제2반	금천동	143의20, 143의31, 143의33, 143의34, 147의3, 148의1 ~ 148의5, 149의3, 149의5, 150의1 ~ 150 의4, 172의16, 172의17, 172의65, 173의1, 173의 2, 149의4, 149의6, 151의10, 172의45, 172의40, 172의35, 143의122, 143의94, 143의40, 143의93, 143의19, 143의38, 143의22, 143의25, 143의35, 143의26, 143의29, 143의120, 149의27, 149의29, 149의35, 149의37
	제3반	금천동	143의47, 143의50 ~ 143의52, 143의60, 143의62, 143의98, 143의100, 143의53, 143의58, 143의59, 143의72, 143의73, 143의82, 143의85, 143의86, 143의80, 144의3, 144의9, 145의4 ~ 145의6, 146 의1 ~ 146의5, 146의7 ~ 146의10, 147의11, 149의 24, 149의25, 149의32, 149의41, 145의1, 147의7, 143의107, 143의96, 143의56, 143
	제4반	금천동	143의75 ~ 143의79, 144의1, 144의2, 144의4, 144의7, 144의11 ~ 144의15, 145의2, 145의3, 145의9, 145의11, 145의8(동헌빌라 A동), 145의10(동헌빌라 B동), 산42의2
	제5반	금천동	132의1, 132의2, 132의5, 133의1, 133의3, 133의 4 ~ 133의7, 133의9 ~ 133의12, 143의36, 172의30, 172의71, 174의13, 174의14, 174의15, 174의16, 143의23, 143의27, 143의28, 143의1, 97의6
제4통	제1반	금천동	97의12, 97의13, 97의14, 97의18, 97의19, 97의20, 97의22 ~ 97의25, 98의3, 98의11, 98의12 ~ 98의14, 98의16 ~ 98의19, 98의22 ~ 98의23, 97의 26, 98의25, 98의28, 98의26, 100의4, 100의32, 131의1, 132의17, 132의18(종점
	제2반	금천동	

	제3반	금천동	143의2 ~ 143의5, 133의13, 143의8, 143의37, 143의9, 143의10, 143의13 ~ 143의15, 143의17, 143 의18, 143의43 ~ 143의45, 143의65, 143의66, 143의68 ~ 143의70, 143의6 ~ 143의11, 132의22, 132의3, 143의123, 143의125, 143의127, 143의42, 143의16, 143의12, 143의109
	제4반	금천동	142, 142의7, 131의7 ~ 131의9, 131의16, 132의4, 132의6, 132의8, 132의12(종점빌라 가동), 132의14(종점빌라 나동), 131의5, 131의34, 131의36, 131의38 ~ 131의41, 131의42, 131의43,
		금천동	132의25, 131의35, 131의37, 132의80, 131의3, 131의62, 131의6, 131의2, 131의3, 132의15, 132의10, 132의6
	제5반	금천동	141의1, 141의4, 142의11, 142의12, 142의16 ~ 142의18, 142의20, 142의22 ~ 142의26, 131의4, 131의17, 131의23, 131의24, 131의26, 131의29, 131의31, 140, 140의5, 131의67, 140의10, 141의3, 141의2, 142의15, 140의6, 142의10, 142의14, 131의12
제5통	제1반	금천동	171의6, 171의8, 171의9, 171의12, 171의13, 171의18, 171의19, 171의10, 171의14 ~ 171의17, 171의21, 171의23, 171의28, 187의2, 187의15, 187의16, 187의17, 187의18, 187의22, 261의159, 261 의160, 187의4, 171의29, 171의30, 171의66, 171의7, 171의3, 171의5, 171의1, 171의35, 171의36, 171의37, 171의38, 171의25, 171의
	제2반	금천동	171의27, 171의31 ~ 171의34, 171의39, 171의41, 171의42, 171의45, 171의47, 171의51, 171의55, 172의8, 172의15, 172의25 ~ 172의28, 172의62, 177의18, 177의20, 177의23, 177의24, 172의39, 181의28 ~ 181의30, 181의7, 181의9, 181의10, 172의18, 172의19, 172의42, 172의48, 172의49, 172의53, 172의56, 173의23, 182의17, 171의40, 251의33, 251의34, 171의50, 172의6, 251의36, 251의38, 172의24, 251의64, 171의49, 171의57, 172의72, 172의108, 172의62, 171의43, 172의64, 171의54
	제3반	금천동	172의1, 172의11, 175의7, 174의3 ~ 174의10, 177의3, 177의15, 177의21, 177의5, 177의7, 177의8, 177의10, 177의12, 177의13, 251의43, 251의57, 251의81, 251의82, 176의19, 172의95, 172의10
	제4반	금천동	174의1, 174의38, 97의7, 174의17 ~ 174의28, 175의8, 96의37, 260의7
	제5반	금천동	191의23, 191의24, 261의4, 261의5, 261의6, 261 의8, 261의10, 261의28, 261의30 ~ 261의31, 261의3, 261의23, 191의1, 191의3 ~ 191의5, 191의7, 191의8, 191의13 ~ 191의16, 191의18, 191의20, 191의25, 191의40, 261의45 ~ 261의46, 261의134 ~ 261의141, 261의81, 261의34 ~ 261의36, 261의83, 261의39 ~ 261의43, 261의99, 261의95, 261의105, 261의106, 261의86, 191의28, 261의25, 261의116, 190의15, 190의20, 190의30
제6통	제1반	금천동	191의23, 191의24, 261의4, 261의5, 261의6, 261 의8, 261의10, 261의28, 261의30 ~ 261의31, 261의3, 261의23, 191의1, 191의3 ~ 191의5, 191의7, 191의8, 191의13 ~ 191의16, 191의18, 191의20, 191의25, 191의40, 261의45 ~ 261의46, 261의134 ~ 261의141, 261의81, 261의34 ~ 261의36, 261의83, 261의39 ~ 261의43, 261의99, 261의95, 261의105, 261의106, 261의86, 191의28, 261의25, 261의116, 190의15, 190의20, 190의30
	제2반	금천동	190의2 ~ 190의7, 261의68, 261의101, 191의31, 190의16 ~ 190의19, 191의10 ~ 191의12, 191의2, 261의47 ~ 261의51, 190의8 ~ 190의13, 261의143 ~ 261의149, 261의169
	제3반	금천동	185, 183의2, 183의5, 85의27 ~ 185의29, 185의6 ~ 185의12, 261의150 ~ 261의152, 261의154, 261의161, 261의162, 261의164, 185의15 ~ 185의20, 185의22 ~ 185의24
	제4반	금천동	186의4, 187의14, 187의20, 187의21, 185의5, 187, 261의75, 261의77, 182의14, 151의10, 187 의7 ~ 187의10, 186의11, 251의13, 261의80, 261 의165 ~ 261의167, 261의155 ~ 261의158
	제5반	금천동	183의1, 183의4, 183의7 ~ 183의13, 185의3, 186의7 ~ 186의8, 183의18, 185의31 ~ 185의33, 186의2
	제6반	금천동	182의6 ~ 182의11, 181의34 ~ 181의36, 181의38 ~ 181의43, 183의15 남양연립 가동, 나동
제7통	제1반	금천동	193의6, 181의31 ~ 181의33, 190의21, 194의8, 194의21, 194의34, 195의5, 191의19, 191의17, 191의21, 191의22, 192의31 ~ 192의33, 191의38, 193의8 ~ 193의12, 192의25 ~ 192의29, 192의1 ~ 192의7, 192의9 ~ 192의22, 193
	제2반	금천동	181의1 진흥A 가동
	제3반	금천동	181의64 진흥A 나동, 181의45 ~ 181의58, 181 의12 ~ 181의15, 181의17 ~ 181의23, 181의4, 181의5, 182의15, 182
	제4반	금천동	176의6, 177, 179의1, 179의3, 179의4, 179의8, 179의9, 179의12 ~ 179의15, 179의17, 179의22, 180의2, 180의3, 180의6, 180의9 ~ 180의22, 180의24, 180의26 ~ 180의29, 180의31 ~ 180의35

	제5반	금천동	175의3, 176의3, 176의9 ~ 176의11, 176의13, 176의14, 176의26 ~ 176의29, 178의3, 178의5, 178의7 ~ 178의10, 178의12 ~ 178의23, 178의26 ~ 178의28, 177의4, 177의11, 177의17, 179의11, 179의19, 179의23, 180의37 ~ 180의41
	제6반	금천동	181의24 ~ 181의27, 203의7 ~ 203의10, 204의3, 204의14 ~ 204의24, 204의34 ~ 204의36, 180의5, 193의14 ~ 193의16, 192의24
제8통	제1반	금천동	261의14, 261의18 ~ 261의20, 261의22, 195의1, 195의55, 199의3, 194의31, 194의32, 195의7, 195의8, 195의10 ~ 195의18, 195의20 ~ 195의24, 261의117 ~ 261의125, 261의127 ~ 261의132, 261의84, 261의69, 261의104
	제2반	금천동	195의30, 200의22 ~ 200의24, 201의22, 201의23, 195의41 ~ 195의43, 195의45 ~ 195의49, 195의52, 195의53, 195의57 ~ 195의63, 201의6, 201의7, 201의10, 201의12, 201의14, 194의11 ~ 194의16, 194의18 ~ 194의20, 194의23 ~ 194의25, 194의51
	제3반	금천동	197의1 ~ 197의4, 199의2, 261의2, 261의12 ~ 261의13, 199의5 ~ 199의14, 261의92, 198의7 ~ 198의12, 199의18
	제4반	금천동	269, 271, 272, 276 ~ 280, 284 ~ 305
제9통	제1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1동 101호 ~ 512호
	제2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1동 601호 ~ 1012호
	제3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1동 1101호 ~ 1512호
	제4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2동 101호 ~ 14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5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3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6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4동 101호 ~ 1402호, 103호 ~ 1404호
제10통	제1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5동 101호 ~ 1502호, 103호 ~ 1204호
	제2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6동 101호 ~ 1502호, 106호 ~ 1507호
	제3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6동 108호 ~ 1509호
	제4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7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5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8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6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9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11통	제1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10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2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11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3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12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4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13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5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13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109호 ~ 1510호
	제6반	금천동	199의1 현대A 14동 101호 ~ 1502호
제12통	제1반	금천동	201의18, 201의20, 201의21, 203의1, 203의11 ~ 203의16, 209의42, 257의4, 257의2, 201의15, 201의19, 203의6, 203의17, 202의1, 202의2, 202의4, 202의5, 209의1 ~
	제2반	금천동	204의10 ~ 204의12, 205의1, 205의5 ~ 205의7, 203의18, 257의5, 257의6, 204의1, 209의40, 204의27, 204의31, 204의9, 205의40, 205의41, 205의8, 205의9, 178의1, 178의4, 205의35, 205의34, 204의13, 203의19 ~ 203의22, 202의3, 209의5 ~ 209의16, 204의25, 204의8, 204의
	제3반	금천동	209의18 ~ 209의28, 211의3, 231의13, 230의7, 230의28, 230의29, 231의6 ~ 231의8, 211(세진 연립주택), 233의1, 232의1, 233의2, 231, 231의9 ~ 231의12, 230의8
	제4반	금천동	207의1, 212의12, 212의14, 212의16, 212의27, 212의29, 212의31, 212의34, 212의35, 212의37, 212의38, 212의40, 212의41, 212의43, 213의2 ~ 213의4, 214, 212의13, 231의3, 212의18, 212의19, 212의30, 229의1, 217의8, 207의6, 213의7, 212의51, 215의3, 207의17, 208의20, 212의39, 230의5, 230의30, 212의2, 231의2, 215의5, 213의5, 207의2, 207의34
	제5반	금천동	230의1, 230의2, 230의4, 230의9, 230의11, 230의12, 230의14, 230의15, 230의19, 230의22 ~ 230의26, 230의17, 242, 227의5, 230의32, 233의3, 228, 227, 228의9, 228의10, 233의4, 238의2, 238의3, 228의5, 228의7, 237의4, 229, 229의11, 228의2, 228의6, 228의8, 217의1,
제13통	제1반	금천동	209의29 ~ 209의38, 205의10, 205의12, 205의13, 205의15, 205의26, 205의27, 206, 212의3 ~ 212의7, 212의9, 212의10, 212의45, 211의2, 212의49, 251의63, 176의1, 176의6 ~ 176의8, 262의1, 262의2, 262의3, 205의22, 205의24, 205의11, 208의2 ~ 208의13, 212의8, 212의48

	제2반	금천동	97의1, 97의10, 97의16, 96의18 ~ 96의20, 96의 22 ~ 96의 24, 96의32, 96의21, 96의30, 96의17, 96의25, 101의1, 97의37, 101의27, 97의11, 96의29, 96의31, 96의33 ~ 96
	제3반	금천동	96의1, 96의5, 96의6, 96의8, 96의9, 96의11, 96의26, 215의13, 208의18, 251의3, 251의49, 96의28, 96의12, 96의10, 96의27, 207의5, 207의 9, 207의11 ~ 207의15, 207의18, 208의14 ~ 208의 17, 207의19 ~ 207의21, 207의 24, 207의27, 207의 10, 207의23, 208의9
	제4반	금천동	93의4 ~ 93의6, 93의8 ~ 93의14, 94의1, 94의2, 94의5 ~ 94 의12, 95의3, 95의6, 95의7, 95의11, 95의12, 95의13, 96 의14, 95의10, 95의2, 96의 15, 251의51, 95의8, 94의4, 251의52, 251의53 94의14, 93의15, 207의28 ~ 207의31, 215의14, 215의15, 93의7
제14통	제1반	금천동	55의1, 55의9, 43, 44의1, 46의2, 46의4, 47의1 ~ 47의5, 220의14, 227의4, 226의2, 219, 219의 17, 219의18, 219 의1 ~ 219의5, 220의2, 221, 220의6, 220, 220의12, 45, 216의30, 219의9, 산3의3, 산4의1
	제2반	금천동	57의10, 57의12, 58, 58의6, 58의7, 90, 90의2, 57의5, 57 의7 ~ 57의9, 213의1, 251의27, 91의6, 216의26, 216의 16, 56의1, 56의2, 251의29, 90의 14, 56의6, 251의105, 91의39, 91의33, 57의2, 91의38, 90의4, 56의8, 57의4, 57의11, 57의13, 54
	제3반	금천동	55의5, 57의6, 55의6, 216의15, 56의3 ~ 56의5, 56의7, 56 의10 ~ 56의12
	제4반	금천동	55의2, 56 동산아파트 102동 101호 ~ 504호, 56 동산A 101동 101호 ~ 504호
제15통	제1반	금천동	50의3(경희A 101동 101호 ~ 127호), 50의3(경희A 101동 201호 ~ 227호)
	제2반	금천동	50의3(경희A 101동 301호 ~ 327호), 50의3(경희A 101동 401호 ~ 427호)
	제3반	금천동	50의3(경희A 101동 501호 ~ 527호 , 601호 ~ 627호)
	제4반	금천동	50의3(경희A 101동 701호 ~ 727호, 801호 ~ 827호)
	제5반	금천동	50의3(경희A 101동 901호 ~ 927호, 101동 1001호 ~ 1026
제16통	제1반	금천동	50의3(경희A 101동 1101호 ~ 1124호, 1201호 ~ 1224호)
	제2반	금천동	50의3(경희A 101동 1301호 ~ 1322호
	제3반	금천동	50의3(경희A1401호 ~ 1421호), 50의3(경희A 101동 1501 호 ~ 1521호)
	제4반	금천동	50의3(경희A 102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105 호 ~ 1506호)
제17통	제1반	금천동	59의3, 58의3, 58의4, 58의8 ~ 58의10, 58의2, 54의2, 54 의3, 58의11, 251의106, 88의20, 87의 24 ~ 87의27, 88의 14, 89의1, 90의3, 90의9, 90의 10, 90의16
	제2반	금천동	87의7 ~ 87의18, 88의3, 88의4, 88의13
	제3반	금천동	92의6, 92의7, 92의11, 92의14, 92의15, 93의16, 93의17, 93의18, 93의19, 93의20, 93의21, 93의 22, 93의23, 93의 24, 87, 87의1 ~ 87의4, 88의1, 88의7, 88의8, 88의10, 88 의11, 88의15 ~ 88의17, 88의20, 89의29, 88의18, 88의 19, 92의4, 92의5, 92의8, 92의9, 92의12, 92의16, 88의2, 92의3, 92의1, 92의2, 92의10, 92, 92의13, 92의22, 93의
	제4반	금천동	89의3, 89의17, 89의18, 90의1, 90의5 ~ 90의8, 91의8, 91 의10, 91의14, 91의3, 91의13, 91의15, 91의18, 91의19, 91의21 ~ 91의23, 91의26, 91의 28, 94, 94의15 ~ 94의19, 89의19 ~ 89의27, 89의 32, 91의27, 91의31, 251의4, 251
제18통	제1반	금천동	107 금천연립 가, 나, 다동
	제2반	금천동	105의6(경희빌라), 104의1, 104의5, 105의1, 105의4, 105 의5, 105의8 ~ 105의12, 105의7, 103의1, 103의13 ~ 103
	제3반	금천동	103의2 (잠미A 가동), 108의5, 108의6, 108의3, 108의10, 108의26 ~ 108의28
	제4반	금천동	103의2(잠미A 나동 101호 ~ 505호)
제19통	제1반	금천동	97의33, 100의1, 102의3, 102의4, 102의5, 102의 8, 102 의9, 102의10, 102의11, 102의12, 102의30, 101의7, 101 의8, 101의11, 101의12, 101의13, 101의19, 101의21, 101의24, 101의25, 101의10, 101의15, 102의2, 102의20, 102의21, 108의1, 108의4, 108의8, 108의24, 108의25, 96의16, 101 의3, 101의5, 101의9, 101의14, 104의20, 102의 22, 102의23, 102의32, 102의35, 102의37, 100의5
	제2반	금천동	102의6, 102의7, 102의17, 102의18, 102의19, 101의17, 102의1, 102의26, 102의27, 102의28, 102의29, 102의33, 92의20, 92의21, 92의19, 87의6, 101의16, 102의24, 102 의14, 102의16

	제3반	금천동	109의9, 109의11 ~ 109의14, 109의30, 109의31, 109의34, 109의35, 110의5, 110의1, 110의7, 110의8, 110의11, 110의12, 108의16, 108의18, 108의19, 108의20, 108의21, 108의22, 111의1, 111의7 ~ 111의12, 108의2, 108의17, 109의45, 112, 112의1
	제4반	금천동	108의23, 111의6, 111의2, 111의3, 111의5, 111의13, 111의14, 111의15 ~ 111의27, 108의12, 103의6, 111의28 ~ 111의34
제20통	제1반	금천동	98의9, 98의10, 100의10, 100의13 ~ 100의16, 100의18, 100의22 ~ 100의25, 100의34 ~ 100의37, 100의47 ~ 100의49, 100의54, 100의51, 109의28, 109의29,
	제2반	금천동	109의21, 100의26, 131의57 ~ 131의59, 131의46 ~ 131의56, 131의81, 131의82, 130, 130의1, 126의4, 126의8, 126의26, 126의38, 131의44, 131의45
	제3반	금천동	109의5, 109의7, 109의22, 109의32, 110의4, 110의19 ~ 110의21, 119의1, 126의23, 109의49, 109의47, 109의38, 109의39, 126의1, 126의24, 109의50, 119의5, 120의1, 126의19, 129의1, 109의 20, 126의18, 126의42, 126의3, 109의15, 109의 19, 110의25, 110의26, 130의3 ~ 130의11, 121의1, 126의2, 109의24 ~ 109의26
	제4반	금천동	119의3, 118의11, 120의40 ~ 120의43, 120의45, 120의48, 110의28, 109의38, 119의8, 119의4, 118의26, 118의13, 118의14, 118의5, 118의15, 118의27, 118의22, 120의3, 121의72, 120의51, 120의20, 120의49, 120의44, 120의36, 120의35, 120의30, 120의38, 120의37, 121의4, 118의3, 118의4, 118의19
제21통	제1반	금천동	124(효성A 102동 105호 ~ 127호, 205호 ~ 227호)
	제2반	금천동	124(효성A 102동 305호 ~ 327호, 405호 ~ 427호)
	제3반	금천동	124(효성A 102동 505호 ~ 527호, 605호 ~ 627호)
	제4반	금천동	124(효성A 102동 705호 ~ 727호, 805호 ~ 827호)
	제5반	금천동	124(효성A 102동 905호 ~ 927호, 1005호 ~ 1027호)
	제6반	금천동	124(효성A 102동 1105호 ~ 1127호, 1205호 ~ 1227호)
	제7반	금천동	124(효성A 102동 1305호 ~ 1327호, 1405호 ~ 1427호, 1505호 ~ 1527호)
제22통	제1반	금천동	124(효성A 101동 101호 ~ 1502호), 124(효성A 101동 103호 ~ 1504호)
	제2반	금천동	124(효성A 101동 105호 ~ 1506호)
	제3반	금천동	124(효성A 102동 101호 ~ 1502호), 124(효성A 102동 103호 ~ 1504호)
제23통	제1반	금천동	137(효성A 201동 101호 ~ 220호)
	제2반	금천동	137(효성A 201동 301호 ~ 420호)
	제3반	금천동	137(효성A 201동 501호 ~ 620호)
	제4반	금천동	137(효성A 201동 701호 ~ 820호)
	제5반	금천동	137(효성A 201동 901호 ~ 1020호)
	제6반	금천동	137(효성A 201동 1102호 ~ 1109호, 1112호 ~ 1119호, 1202호 ~ 1209호, 1212호 ~ 1219호)
	제7반	금천동	137(효성A 201동 1303호 ~ 1308호, 1313호 ~ 1318호, 1403호 ~ 1408호, 1413호 ~ 1418호)
제24통	제1반	금천동	121의5, 120의2(금남연립 가동), 120의2(금남 연립 나동), 120의46, 121의6, 122의7
	제2반	금천동	120의8(금남연립 라동), 120의2(금남연립 다동),
	제3반	금천동	121의2, 122의5, 122의6, 123의2 ~ 123의19, 128의3, 121의7, 122, 122의7, 136, 136의2
	제4반	금천동	134의3, 134의9, 137의1, 139, 139의11, 139의27 139의36, 122의15, 122의13, 122의18, 138의1 ~ 138의13, 139의1 ~ 139의26, 260의20
제25통	제1반	금천동	122의1 삼일A 1동, 122의15 삼일A 상가
	제2반	금천동	122의1 삼일A 2동 122의13 삼일A 상가
	제3반	금천동	122의1 삼일A 3동
	제4반	금천동	122의1 삼일A 4동
	제5반	금천동	122의1 삼일A 6동
	제6반	금천동	122의1 삼일A 7동
	제7반	금천동	122의1 삼일A 8동
	제8반	금천동	122의1 삼일A 5동

제26통	제1반	금천동	110의16, 110의18, 110의29 ~ 110의33, 112의4 ~ 112의8, 113의1, 114의2, 114의18, 110의14, 110의15, 110의22, 110의34, 110의35, 110의44
	제2반	금천동	111의36 ~ 111의39, 112의9 ~ 112의28,
	제3반	금천동	115의4, 117의1 ~ 117의28, 118의7, 118의21, 118의30, 118의35, 118의36, 114의5 ~ 114의17, 113의6, 115, 115의43, 115의47, 115의48, 116의1, 116의3, 116의4, 115의66, 115의45, 117의30 ~ 117의32, 114의22, 117의29
	제4반	금천동	115의3, 115의52, 115의8 ~ 115의10, 115의12, 115의13, 115의16, 115의18 ~ 115의27, 115의30 ~ 115의35, 115의65, 115의72, 115의83 ~ 115의85, 115의93, 116의6 ~ 116의7, 110의15, 115의96
제27통	제1반	금천동	115의1 수정A 101동 101호 ~ 1402호, 103호 ~ 1404호
	제2반	금천동	115의1 수정A 101동 105호 ~ 1406호, 107호 ~ 1408호
	제3반	금천동	115의1 수정A 102동 101호 ~ 604호, 105호 ~ 608호
	제4반	금천동	115의1 수정A 102동 109호 ~ 614호
제28통	제1반	금천동	106의1 풍림A 1동 101호 ~ 1002호, 103호 ~ 1004호
	제2반	금천동	106의1 풍림A 1동 105호 ~ 1006호
	제3반	금천동	106의1 풍림A 2동 101호 ~ 1102호 103호 ~ 1104호
	제4반	금천동	106의1 풍림A 2동 105호 ~ 1106호 107호 ~ 1109호
	제5반	금천동	106의1 풍림A 3동 101호 ~ 1302호, 103호 ~ 1304호
	제6반	금천동	106의1 풍림A 3동 105호 ~ 1306호,
	제7반	금천동	106의1 풍림A 4동
	제8반	금천동	106의1 풍림A 5동, 106의1 풍림A 6동
제29통	제1반	금천동	77의7 뉴타운A 101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금천동	77의7 뉴타운A 101동 105호 ~ 1506호
	제3반	금천동	77의7 뉴타운A 101동 107호 ~ 1508호 109호 ~ 1010호
	제4반	금천동	77의7 뉴타운A 102동 101호 ~ 1402, 103호 ~ 1504호
	제5반	금천동	77의7 뉴타운A 102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6반	금천동	77의7 뉴타운A 102동 109호 ~ 1510호 77의7 뉴타운상가 A, 77의7 뉴타운상가 B
제30통	제1반	금천동	77의7 뉴타운A 104동 101호 ~ 1502호
	제2반	금천동	77의7 뉴타운A 104동 103호 ~ 1504호 105호 ~ 1506호
	제3반	금천동	77의7 뉴타운A 104동 107호 ~ 1508호 109호 ~ 1510호
	제4반	금천동	77의7 뉴타운A 105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5반	금천동	77의7 뉴타운A 105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6반	금천동	77의7 뉴타운A 105동 109호 ~ 1510호
제31통	제1반	금천동	77의7 뉴타운A 103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금천동	77의7 뉴타운A 103동 105호 ~ 1106호
	제3반	금천동	77의7 뉴타운A 106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4반	금천동	77의7 뉴타운A 106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32통	제1반	금천동	79의10, 79의11, 79의19, 79의24, 79의28, 79의 32, 79의35, 79의47, 79의48, 79의58 ~ 79의60, 80의16, 80의8, 81의8(덕성연립), 76의15, 76의 16, 76의5, 76의8, 76의9, 76의3, 77, 77의6, 산21, 산22
	제2반	금천동	77의1, 77의15, 77의18, 79의4, 79의5, 79의13, 79의14, 79의16, 79의17, 79의21 ~ 79의23, 79의 25 ~ 79의27, 79의29 ~ 79의31, 79의33, 79의34, 79의37, 79의38, 80의3, 80의4, 82의9 ~ 82의10, 82의12 ~ 82의14, 83의1, 83의70, 83의47, 83의9, 83의11 ~ 83의13, 83의51, 83의28, 83의55, 83의58, 80, 83의65, 83의66
	제3반	금천동	85의1 ~ 85의4, 85의6 ~ 85의15, 83의4, 83의48, 84의11, 84의1, 84의2, 84의3, 84의4, 85의18, 85의19, 60의16 ~ 60의18, 60의20 ~ 60의25, 61의 9, 62의1, 62의5, 62의6, 62의8, 62의10, 62의3, 82의3, 82의5 ~ 82의7, 83의49
	제4반	금천동	60의1, 63의4, 63의5, 63의9, 63의18, 63의21, 70의34, 70의35, 59의1, 59의2, 52의2, 51의4, 61의6, 60의33, 61의13, 59의9, 60의4 ~ 60의9, 60의11 ~ 60의14, 61의12, 61의8, 61의10, 63의17, 60의30, 63의28
제33통	제1반	금천동	64의4, 66의1, 70의1(양자A 가동 101호 ~ 504호, 105호 ~ 508호, 109호 ~ 512호)
	제2반	금천동	71의11, 74, 69의3, 70의1(양자A 나동 101호 ~ 504호, 105호 ~ 508호)



	제3반	금천동	81 (덕성A 101호 ~ 807호)
	제4반	금천동	81(덕성A 901호 ~ 1507호), 75의2, 산20의2, 산19의2
제34통	제1반	금천동	332 ~ 335, 340 ~ 346, 408 ~ 413
	제2반	금천동	418 ~ 434
	제3반	금천동	435 ~ 448
	제4반	금천동	77-16, 449, 451 ~ 461
제35통	제1반	금천동	317 장자마을 부영A 901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
	제2반	금천동	317 장자마을 부영A 901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
	제3반	금천동	317 장자마을 부영A 902동 101호 ~ 505호, 601호 ~ 1005호, 1101호 ~ 1502호
	제4반	금천동	317 장자마을 부영A 903동 101호 ~ 10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5반	금천동	317 장자마을 부영A 903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6반	금천동	317 장자마을 부영A 904동 101호 ~ 10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303호, 104호 ~ 1304호
	제7반	금천동	317 장자마을 부영A 904동 105호 ~ 1305호, 106호 ~ 1306호, 107호 ~ 1307호, 108호 ~ 1308호
	제8반	금천동	317 장자마을 부영A 905동 101호 ~ 1001호, 102호 ~ 1002호, 103호 ~ 1003호, 104호 ~ 1004호
	제9반	금천동	317 장자마을 부영A 905동 105호 ~ 1005호, 106호 ~ 1006호, 107호 ~ 1007호, 108호 ~ 1008호
제36통	제1반	금천동	318 장자마을 부영A 10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4호, 104호 ~ 1304호
	제2반	금천동	318 장자마을 부영A 1002동 101호 ~ 701호, 102호 ~ 702
	제3반	금천동	318 장자마을 부영A 1003동 101호 ~ 13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303호, 104호 ~ 1304호, 105호 ~ 1305호, 106호 ~ 1306호
	제4반	금천동	318 장자마을 부영A 1003동 103호 ~ 1303호, 104호 ~ 1304호, 105호 ~ 1305호, 106호 ~ 1306호
	제5반	금천동	318 장자마을 부영A 10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6반	금천동	318 장자마을 부영A 1004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7반	금천동	318 장자마을 부영A 1005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37통	제1반	금천동	320 장자마을 부영A 8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금천동	320 장자마을 부영A 802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3반	금천동	320 장자마을 부영A 8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4반	금천동	320 장자마을 부영A 805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5반	금천동	320 장자마을 부영A 806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38통	제1반	금천동	320 장자마을 부영A 803동 101호 ~ 13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404호
	제2반	금천동	320 장자마을 부영A 807동 101호 ~ 13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303호, 104호 ~ 1304호
	제3반	금천동	320 장자마을 부영A 808동 101호 ~ 12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303호, 104호 ~ 1304호
	제4반	금천동	320 장자마을 부영A 808동 105호 ~ 1305호, 106호 ~ 1306호,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제5반	금천동	320 장자마을 부영A 809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6반	금천동	320 장자마을 부영A 810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7반	금천동	320 장자마을 부영A 810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39통	제1반	금천동	275 장자마을 부영A 701동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404호
	제2반	금천동	275 장자마을 부영A 702동 101호 ~ 709호
	제3반	금천동	275 장자마을 부영A 702동 801호 ~ 1509호
	제4반	금천동	275 장자마을 부영A 703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5반	금천동	275 장자마을 부영A 7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6반	금천동	275 장자마을 부영A 707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40통	제1반	금천동	275 장자마을 부영A 705동 101호 ~ 11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303호, 104호 ~ 1304호
	제2반	금천동	275 장자마을 부영A 705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3반	금천동	275 장자마을 부영A 706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4반	금천동	275 장자마을 부영A 708동 101호 ~ 505호, 601호 ~ 1005호
	제5반	금천동	275 장자마을 부영A 708동 1101호 ~ 1505호, 709동 101호 ~ 310호
	제6반	금천동	275 장자마을 부영A 709동 401호 ~ 610호, 701호 ~ 910호
	제7반	금천동	275 장자마을 부영A 709동 1001호 ~ 1210호, 1301호 ~ 1410호
제41통	제1반	금천동	270 장자마을 현대A 2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2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금천동	270 장자마을 현대A 202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3반	금천동	270 장자마을 현대A 203동 101호 ~ 13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303호, 104호 ~ 1304호
	제4반	금천동	270 장자마을 현대A 204동 101호 ~ 13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303호, 104호 ~ 1304호
	제5반	금천동	270 장자마을 현대A 205동 101호 ~ 12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103호, 104호 ~ 1004호
제42통	제1반	금천동	270 장자마을 현대A 206동 101호 ~ 13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303호, 104호 ~ 1304호
	제2반	금천동	270 장자마을 현대A 206동 105호 ~ 1305호, 206호 ~ 1306호
	제3반	금천동	270 장자마을 현대A 207동 103호 ~ 1403호, 104호 ~ 1404호,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제4반	금천동	270 장자마을 현대A 208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5반	금천동	270 장자마을 현대A 209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206호 ~ 1506호
	제6반	금천동	270 장자마을 현대A 210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7반	금천동	270 장자마을 현대A 210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43통	제1반	금천동	312 장자마을 부영A 5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금천동	312 장자마을 부영A 502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3반	금천동	312 장자마을 부영A 503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4반	금천동	312 장자마을 부영A 5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5반	금천동	312 장자마을 부영A 504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6반	금천동	312 장자마을 부영A 505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7반	금천동	312 장자마을 부영A 506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44통	제1반	금천동	324 장자마을부영아파트 301동 101호 ~ 13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2반	금천동	324 장자마을부영아파트 302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3반	금천동	324 장자마을부영아파트 303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4반	금천동	324 장자마을부영아파트 304동 101호 ~ 13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5반	금천동	324 장자마을부영아파트 305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303호, 104호 ~ 1304호
제45통	제1반	금천동	325 장자마을부영아파트 1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금천동	325 장자마을부영아파트 102동 101호 ~ 13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404호
	제3반	금천동	325 장자마을부영아파트 103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4반	금천동	325 장자마을부영아파트 1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203호, 104호 ~ 1204호
	제5반	금천동	325 장자마을부영아파트 105동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404호

			제46통	제1반	금천동	311 장자마을부영A 601동 101호 ~ 12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203호, 104호 ~ 1204호
				제2반	금천동	311 장자마을부영A 602동 101호 ~ 12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203호, 104호 ~ 1204호
				제3반	금천동	311 장자마을부영A 603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4반	금천동	311 장자마을부영A 6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5반	금천동	311 장자마을부영A 605동 101호 ~ 12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203호, 104호 ~ 1204호
				제6반	금천동	311 장자마을부영A 606동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404호
			제47통	제1반	금천동	4-5, 7-1, 326 ~ 327-1, 329 ~ 331, 348 ~ 352, 365 ~ 372
				제2반	금천동	353 ~ 364
				제3반	금천동	373 ~ 383
				제4반	금천동	384 ~ 395
				제5반	금천동	396 ~ 407
	용담명암산성동	1	제1통	제1반	용담동	173, 173의1 ~ 173의5, 174의1 ~ 174의4, 175의1, 175의6 ~ 175의8, 177의4, 177의13, 177의8, 177의9 ~ 177의11, 178의3 ~ 178의8, 209의4, 213의3, 213의5 ~ 213의13
				제2반	용담동	146의3, 146의11, 156의3, 156의162, 158의2 ~ 158의7, 158의9, 159의1 ~ 159의3, 172의3, 172의8, 172의9, 172의12, 173의7 ~ 173의11, 173의16, 178의10 ~ 178의13, 179의2 ~ 179의6, 179의7 ~ 179의11, 179의14, 182의5
				제3반	용담동	156의15, 156의17, 156의20, 156의31, 156의33 ~ 156의35, 156의37, 156의38, 156의54, 156의62 ~ 156의64, 156의79, 156의84, 156의100 ~ 156의102, 156의105, 156의108 ~ 156의112, 156의149, 156의179, 156의197, 156의199, 156의200, 180의1, 180의7, 180의18., 180의19, 180의10(상야연립 가, 나동), 180의16, 181의2, 181의5, 181의11, 181의13, 181의17, 183의2, 183의3
				제4반	용담동	177의1, ~ 177의3, 177의5 ~ 177의7, 177의17, 180의3, 184의2, 180의29, 209의1 ~ 209의3, 209의5 ~ 209의24, 210, 211의1 ~ 211의11, 212, 212의1 ~ 212의16, 212의18, 213, 213의1, 213의4
			제2통	제1반	용담동	201의14, 201의20, 201의25, 204의1 ~ 204의3, 202의1 ~ 202의3, 204의6 ~ 204의12, 205, 205의1 ~ 205의3, 207, 207의1 ~ 207의7
				제2반	용담동	195의1 ~ 195의3, 196, 196의1 ~ 196의4, 197의1, 198의1 ~ 198의5, 199의1 ~ 199의6, 200의1 ~ 200의3, 200의7, 201의1 ~ 201의6, 201의8 ~ 201의13, 201의15 ~ 201의31, 201의36 ~ 201의38, 201의136, 201, 204의4, 204의5, 203의1 ~ 203의6.
				제3반	용담동	190의1(모드니A 101호 ~ 610호)
				제4반	용담동	186의1, 186의5, 190의1(모드니A 701호 ~ 1404호)
			제3통	제1반	용담동	141의1 ~ 141의16, 143의1, 143의5, 143의6, 143의9 ~ 143의12, 143의16, 143의17, 143의20, 145의1 ~ 145의6, 146의4 ~ 146의6, 146의8, 146의9, 147의4, 148의4, 148의6, 148의12 ~ 148의15
				제2반	용담동	105, 105의2, 105의3, 105의5, 105의30 ~ 105의37, 106의3, 108의3, 108의4, 134의2, 134의3, 134의5, 134의8, 135의3, 136, 136 의3 ~ 136의5, 136의7, 136의10 ~ 136의12, 136의14 ~ 136의15, 137의1, 144(금석빌라) 149의4.
				제3반	용담동	156(라일락연립 가동, 나동), 154, 155, 156의6, 156의43, 156의99, 156의114, 156의161, 156의168, 156의180, 156의181, 156의197, 156의199, 156의200, 156의202, 156의204, 147의1, 148의10, 148의11, 148의21, 148의
				제4반	용담동	97의11, 97의16, 131의4 ~ 131의11, 131의15, 133, 133의1 ~ 133의10, 134, 134의1, 134의4 134의6, 134의7, 135의1, 135의6, 135의7, 148의1, 148의5, 148의7, 148의16, 148의22, 148의28, 149의1
			제4통	제1반	용담동	168의2, 168의4, 171의1, 171의2, 171의4 ~ 171의7, 171의9 ~ 171의11, 171의13, 171의14, 171의19 ~ 171의26, 352의1, 352의5
				제2반	용담동	168의3, 168의5 ~ 168의7, 168의11 ~ 168의13, 168의26, 168의27, 168의29, 168의30, 168의38, 169의1 ~ 169의4, 169의7 ~ 169의12, 170의4 ~ 170의8
				제3반	용담동	165, 165의1, 165의2, 165의6, 167, 168의15, 168의18, 168의20 ~ 168의24, 168의33 ~ 168 의35, 168의39, 169의15, 169의17, 169의18, 169의25

	제4반	용담동	164(소망연립), 163의6, 163의7, 164의1, 164의5, 165의7 ~ 165의10, 166의1 ~ 166의8, 166의10 ~ 166의12, 324의32, 324의33
	제5반	용담동	136의1, 136의2, 138의1, 138의2, 138의8, 138의10, 138의12 ~ 138의15, 139의5, 140의4, 140의6, 141의1, 141의11, 141의12, 142의3, 160의2, 160의4 ~ 160의20, 161의3, 162의2 ~ 162의15, 163의1 ~ 163의5, 170의11 ~ 170의13, 170의15, 170의16, 324의8 ~ 324의10, 324의28, 324의31, 324의34 ~ 324의39
제5통	제1반	용담동	156의7 ~ 156의9, 156의10, 156의16, 156의29, 156의50, 156의52, 156의68 ~ 156의70, 156의74 ~ 156의77, 156의80, 156의82, 156의86, 156의87, 156의89, 156의91, 156의93, 156의95, 156의106, 156의118, 156의121 ~ 156의123, 156의125 ~ 156의127, 156의176 ~ 156의178, 156의184, 156의186
	제2반	용담동	156의172(제일연립 가동), 156의174(제일연립 나동), 156의16(제일연립 다동) 156의10(삼부빌라 A동), 156의186(삼부빌라 B동), 156의18(진양A 다동)
	제3반	용담동	156의18(진양A 가동), 156의18(진양A 나동), 156의24
	제4반	용담동	121, 122, 122의1, 123, 123의1, 124, 152의1, 153의1 ~ 153의6, 154의3, 154의4, 156의1, 156의5, 156의18, 156의20, 156의142, 156의144, 156의154, 156의156, 156의155, 156의158, 156의164, 156의165
제6통	제1반	용담동	125의1, 126, 126의1, 126의2, 126의7, 127, 127의1 ~ 127의5, 127의7, 128의1, 128의2, 129, 130, 131의2 ~ 131의3, 151의3(건영 빌라 가동, 다동), 154의4(건영빌라 나동) 151의6(건영빌라 라동)
	제2반	용담동	97-3(용담연립 1동 ~ 6동), 97-10
	제3반	용담동	97-3(용담연립 7동 ~ 11동)
	제4반	용담동	95-1, 95-2, 96, 97-1, 97-2, 97-7, 98-1 ~ 98-3, 99-1, 99-2, 100-6, 100-13 ~ 100-17, 100-19, 100-22, 100-
제7통	제1반	용담동	104-2 ~ 104-4, 105-1, 105-7 ~ 105-12, 105-15 ~ 105-20, 105-22, 105-23, 105의25, 105의26, 105의28, 105의
	제2반	용담동	102의5 ~ 102의8, 102의2, 102의1, 102의4, 103의1(희정연립주택), 103, 103의3, 103의5, 104
	제3반	용담동	75-6, 75-7, 75-10, 75-11, 75-12, 76-8, 76-16, 83-5, 83-6, 84-1, 84-2, 84-5, 84-15, 85-1, 86-2, 87-2, 87-4 ~ 87-7, 87-10, 88-4, 89-7, 89-13, 100-1, 100-2, 100-4, 100-7, 101, 102-3
	제4반	용담동	87-1 선광로즈힐
제8통	제1반	용담동	306의7 ~ 306의10, 308의1 ~ 308의8, 309의1 ~ 309의4
	제2반	용담동	306의1 ~ 306의6, 307의1 ~ 307의10, 360, 361 ~ 370, 371 ~ 380, 381 ~ 383, 385 ~ 400, 401 ~ 404, 407 ~ 409, 411 ~ 414, 418, 421, 422, 436 ~ 438
제9통	제1반	용담동	7, 8의1, 8의7, 21의1 ~ 21의3, 명암동 114의4, 130의2, 130의3, 157의2, 157의4, 164, 164의1, 177, 158의1, 158의2, 157의2, 156, 157의4, 193, 159, 158, 157, 157의5, 163의1, 156의1, 164의2, 164의3 ~ 164의5, 160 ~ 162
	제2반	용담동	246, 247의9 ~ 247의11, 249, 258의1, 245, 256의1, 248의1, 262, 263, 265, 266, 271, 272, 279, 281, 282, 154의
제10통	제1반	명암동	56, 61, 62, 63-1, 64, 70, 70의1, 71, 72, 73의1 ~ 73의4, 74의1, 75의1 ~ 75의3, 76의1, 75의1 76의5, 77의1, 78, 79의5, 79, 80, 80의3, 81의1, 81의2, 81의8, 82, 82의2, 82의3, 82의5, 82의9, 82의11, 83, 83의1, 83의4, 84, 85, 183의2, 191, 78, 80, 81의1, 81의2, 82, 82의2, 82의5, 79, 73의1 ~ 73의4, 74의1, 75의1 ~ 75의3, 76의1, 70, 70의1, 62, 63의1, 64, 79의5, 82의11, 183의2
	제2반	명암동	22, 23, 21의1, 21의2, 20의1, 20의2, 27의1, 7의4, 27의6, 103의2, 34 ~ 38, 42, 44의2, 43, 40, 36의1, 9, 9의1, 9의3 ~ 9의12, 10, 10의1, 31의1, 32의1, 31, 61의3, 58의1, 58의4, 57의1, 57의2, 57의4, 48, 49, 50, 51, 48의2, 49의1, 49의2, 51의1, 48의5, 47의1 ~ 47의4, 47, 30의1, 30의2, 30의4, 27의2, 27, 28의1, 28의2, 29의1
	제3반	명암동	1의16, 2의1, 4의2, 14, 14의1, 14의2, 19의2, 20의3, 28의1, 28의2, 18의1 ~ 18의3, 19의1, 19, 14의3, 14의4, 14의5, 12, 11, 13의3, 11의1, 11의2, 7의1, 7의2, 183의2, 4의1, 1의3, 18의4, 5의4, 5의9, 5의7 ~ 5의13, 3, 2, 3의2, 5의15, 3의3, 4의5, 3의1, 2의6, 1의7, 2의4, 2의3, 1의19, 1의18, 1의17, 1, 1의3

제11통	제1반	산성동	276, 281, 285, 291의2, 294, 304, 306, 307, 309, 316, 283의3, 310의1, 307의1, 302의3, 304의1, 304의2, 308, 307의3, 305, 307의2, 303의3, 302의6, 306의1, 291의1 ~ 291의3, 295, 296의1, 293의1 ~ 293의3, 297의1, 283의1, 282의1, 284의1, 293의3
	제2반	산성동	203의1, 202의3, 217의1, 217의13, 217의15, 225의1, 226, 220의6, 220의7, 222의4, 222의2, 223, 263, 268의1, 268의2, 269, 222의2, 221, 265, 220의4, 220의5, 218의2, 219의3, 218의4, 218의6, 366의1, 366의3, 365의1, 365의2, 366의4, 266, 267의1, 267의2, 363, 364, 362의1 ~ 362의3, 273의2, 350, 346, 347의1, 347의3, 347의5, 347의6, 355의1, 270의1, 270의2, 351, 272, 342의1, 340, 341의1, 353, 354, 356, 357, 359, 360, 361, 273의1, 271의1, 349, 348, 302의1, 344의1, 344의4, 335, 334, 333, 331, 330, 302-2, 301의1, 300, 329의1, 327, 329의2, 328, 333의2, 332, 324, 299의1, 317, 299의4, 298의1, 323, 322, 325, 321의1, 321의2, 320, 319, 318, 275의1, 277의2, 274, 317의1, 339의1, 338의2, 338의1, 342의8
제12통	제1반	산성동	409의3, 150의2, 152의9, 103의9, 103의10, 103의11, 103의12, 150의4, 150의3, 152의6, 103의13, 103의14, 103의15, 104의1, 104의2, 105의3 ~ 105의8, 105의1, 95의3, 95의4, 95의5, 95의7 ~ 95의10, 93의1, 93의2, 91, 92, 85의1, 87, 86의1, 86의2, 86의3, 87의3, 87의4, 87의1, 87의6, 87의5, 85의4, 85의5, 151, 152, 153, 151의2, 152의3, 153의3, 153의4, 409의1, 409의2, 152의8, 152의5, 94, 102의2, 103의6, 103의8, 105의2
	제2반	산성동	156, 156의1, 159, 160의2, 164, 168, 49의1, 163, 165, 48의1 ~ 48의3, 50의1, 50의2, 161, 158의2, 155, 153의1, 153의2, 154, 159, 161의1, 160의1, 162, 162-1, 167, 47, 48, 48의1, 48의2, 50의2, 49, 49의1
제13통	제1반	용담동	423(가좌마을 부영그린타운1차A 301동)
	제2반	용담동	423(가좌마을 부영그린타운1차A 302동)
	제3반	용담동	423(가좌마을 부영그린타운1차A 303동)
	제4반	용담동	423(가좌마을 부영그린타운1차A 304동)
	제5반	용담동	423(가좌마을 부영그린타운1차A 305동)
제14통	제1반	용담동	425(가좌마을 부영A 201동)
	제2반	용담동	425(가좌마을 부영A 202동 101호 ~ 1504호)
	제3반	용담동	425(가좌마을 부영A 202동 105호 ~ 1508호)
	제4반	용담동	425(가좌마을 부영A 207동)
제15통	제1반	용담동	425(가좌마을 부영A 206동)
	제2반	용담동	425(가좌마을 부영A 205동)
	제3반	용담동	425(가좌마을 부영A 204동)
	제4반	용담동	425(가좌마을 부영A 203동)
제16통	제1반	용담동	418(가좌마을부영A 501동)
	제2반	용담동	418(가좌마을부영A 502동)
	제3반	용담동	418(가좌마을부영A 503동)
	제4반	용담동	418(가좌마을부영A 504동)
	제5반	용담동	418(가좌마을부영A 505동)
	제6반	용담동	418(가좌마을부영A 506동)
제17통	제1반	용담동	421(세영첼시빌A 101동)
	제2반	용담동	421(세영첼시빌A 102동)
	제3반	용담동	421(세영첼시빌A 103동,104동)
	제4반	용담동	421(세영첼시빌A 105동)
	제5반	용담동	421(세영첼시빌A 106동)
	제6반	용담동	421(세영첼시빌A 107동,108동)
제18통	제1반	용담동	421(세영첼시빌A 109동)
	제2반	용담동	421(세영첼시빌A 110동)
	제3반	용담동	421(세영첼시빌A 111동)
	제4반	용담동	(금융상가) 361 ~ 368, 369 ~ 381, 382 ~ 396, 397 ~ 404, 407 ~ 409, 411 ~ 414
제19통	제1반	용담동	436(가좌마을용담 e-편한세상 101동)
	제2반	용담동	436(가좌마을용담 e-편한세상 102동)

				제3반	용담동	436(가좌마을용담 e-편한세상 103동)
				제4반	용담동	436(가좌마을용담 e-편한세상 104동)
				제5반	용담동	436(가좌마을용담 e-편한세상 105동 ~ 106동)
				제6반	용담동	436(가좌마을용담 e-편한세상 107동)
				제7반	용담동	436(가좌마을용담 e-편한세상 108동)
	용암제1동	1	제1통	제1반	용암동	7, 19, 25의1, 42, 42의3 ~ 42의6, 30의1
제2반				용암동	44의1, 45 ~ 48, 52, 54의5, 62, 89의1	
제3반				용암동	258, 258의1, 258의2, 251, 258의4, 247	
제4반				용암동	258의3, 252, 254의1, 251의4, 255의1, 249, 239-4	
제5반				용암동	254, 248, 194, 292, 258, 256의1, 249, 123	
			제2통	제1반	용암동	2540(부영3차 301동 101호 ~ 301동1504호)
제2반				용암동	2540(부영3차 302동 101호 ~ 302-1504호)	
제3반				용암동	2540(부영3차 303동 101호 ~ 303동 1306호)	
제4반				용암동	2540(부영3차 304동 101호 ~ 305동 1304호)	
제5반				용암동	2540(부영3차 305동 101호 ~ 305동 1306호)	
			제3통	제1반	용암동	254, 149, 147, 255, 148, 194, 76, 산75, 178, 178, 194의5, 151의1, 산79
제2반				용암동	149, 194, 205, 202, 256, 247의2, 197, 산12, 산84, 223, 249, 221의2	
제3반				용암동	209, 194, 190, 248, 73, 190의2, 207, 193의5, 149	
제4반				용암동	산1, 194의6, 256, 26, 190, 167의2, 93의5, 산4, 산18의1, 258의4, 190의3, 34, 179, 292, 329의2, 300, 361, 292의4, 209, 289, 345의1, 178, 255, 289의2, 369, 366,	
제5반				용암동	151의3 ~ 151의25, 157의2, 157의6, 157의8, 157의17, 157의18, 157의20, 157의21, 산33-24, 161의1, 161의9, 161의18, 161의23, 161의24, 161의25, 161의27, 161의28, 161의29, 161의30, 161의2 ~ 162의24	
			제4통	제1반	용정동	산1, 65, 73, 84, 95, 99, 100, 103, 104, 105, 144, 146, 148, 149
제2반				용정동	59의1, 61, 62, 67, 80, 88, 91, 97, 101, 116, 122, 185	
제3반				용정동	45의4, 46, 60의2, 61의5, 65, 74, 101, 103, 109	
제4반				용정동	72, 75, 76, 77, 78, 81, 82, 83, 90, 92, 107, 117	
제5반				용정동	산4, 62, 90, 92, 93, 94, 95, 107, 110, 111, 112, 115, 116, 117, 120, 148, 185	
제6반				용정동	132, 449, 451, 471, 472	
제7반				용정동	45, 산63, 64, 산69, 산71의1, 84, 262, 282, 324, 326, 337의1, 340의4, 350, 352의1, 355, 355의1, 359, 359의7, 361, 361의4, 362의4, 363	
제8반				용정동	1118 ~ 1158	
제9반				용정동	1159 ~ 1213	
제10반				용정동	1214 ~ 1234	
			제5통	제1반	용정동	921 ~ 928, 1022 ~ 1045, 1054 ~ 1055
제2반				용정동	929 ~ 940, 997 ~ 1021	
제3반				용정동	941 ~ 972	
제4반				용정동	973 ~ 996	
제5반				용정동	1046 ~ 1053, 1056 ~ 1067	
			제6통	제1반	용정동	836 ~ 857
제2반				용정동	858 ~ 881	
제3반				용정동	882 ~ 909	
제4반				용정동	911 ~ 919	
			제7통	제1반	용정동	689 ~ 693, 744 ~ 768
제2반				용정동	696 ~ 728	
제3반				용정동	729 ~ 743, 776 ~ 783	
제4반				용정동	769 ~ 775, 784 ~ 801	
제5반				용정동	802 ~ 835	
			제8통	제1반	용정동	581 ~ 586, 595 ~ 606, 617 ~ 621, 343-19, 343-40, 343-39, 344-5, 343-8, 344-7
제2반				용정동	587 ~ 594, 607 ~ 616	
제3반				용정동	622 ~ 626, 634 ~ 638, 649 ~ 653	

	제4반	용정동	627 ~ 633, 639 ~ 648
	제5반	용정동	654 ~ 658, 669 ~ 679
	제6반	용정동	659 ~ 668, 682 ~ 686
	제7반	용정동	343-19, 343-40, 344-5, 344-7, 344-4, 343-39
제9통	제1반	용암동	2727 ~ 2740
	제2반	용암동	2741 ~ 2752
	제3반	용암동	2753 ~ 2770
	제4반	용암동	2771 ~ 2794
	제5반	용암동	2795 ~ 2806
	제6반	용암동	2846 ~ 2877, 1244 ~ 1246
	제7반	용암동	2842 ~ 2844, 1235 ~ 1243-1
제10통	제1반	용암동	2807 ~ 2840
	제2반	용암동	2633 ~ 2634, 2688 ~ 2703
	제3반	용암동	2636 ~ 2638, 2640 ~ 2660
	제4반	용암동	2661 ~ 2681, 2721 ~ 2726
	제5반	용암동	2682 ~ 2687, 2704 ~ 2720
	제6반	용암동	2545 ~ 2628
제11통	제1반	용암동	2509 ~ 2535
	제2반	용암동	2492 ~ 2507
	제3반	용암동	2473 ~ 2490
	제4반	용암동	2457 ~ 2471, 2360 ~ 2666
제12통	제1반	용암동	2440 ~ 2453
	제2반	용암동	2367 ~ 2380
	제3반	용암동	2408 ~ 2419, 2420 ~ 2429
	제4반	용암동	2430 ~ 2439, 2396 ~ 2407
제13통	제1반	용암동	2172 ~ 2275, 2177 ~ 2186, 2225 ~ 2234
	제2반	용암동	2243 ~ 2268
	제3반	용암동	2237 ~ 2242, 2381 ~ 2392
	제4반	용암동	2215 ~ 2224, 2269 ~ 2282
제14통	제1반	용암동	2444(중흥마을 부영A 201동 101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444(중흥마을 부영A 203동 101호 ~ 1504호)
	제3반	용암동	2444(중흥마을 부영A 205동 101호 ~ 1106호)
	제4반	용암동	2444(중흥마을 부영A 207동 101호 ~ 1506호)
제15통	제1반	용암동	2444(중흥마을 부영A 202동 101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444(중흥마을 부영A 204동 101호 ~ 1506호)
	제3반	용암동	2444(중흥마을 부영A 206동 101호 ~ 1506호)
	제4반	용암동	2444(중흥마을 부영A 208동 101호 ~ 1406호)
제16통	제1반	용암동	2433(중흥마을 부영A 601동 101호 ~ 1502호)
	제2반	용암동	2433(중흥마을 부영A 604동 101호 ~ 1504호)
	제3반	용암동	2433(중흥마을 부영A 605동 101호 ~ 1504호)
	제4반	용암동	2433(중흥마을 부영A 606동 101호 ~ 1306호)
제17통	제1반	용암동	2433(중흥마을 부영A 602동101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433(중흥마을 부영A 603동101호 ~ 1504호)
	제3반	용암동	2433(중흥마을 부영A 607동101호 ~ 1406호)
	제4반	용암동	2433(중흥마을 부영A 608동101호 ~ 1104호)
	제5반	용암동	2433(중흥마을 부영A 609동101호 ~ 904호)
제18통	제1반	용암동	2108(주공1단지 101동 101호 ~ 710호)
	제2반	용암동	2108(주공1단지 101동 801호 ~ 1510호)
	제3반	용암동	2108(주공1단지 102동 101호 ~ 706호)
	제4반	용암동	2108(주공1단지 102동 801호 ~ 1506호)
제19통	제1반	용암동	2108(주공1단지 103동 101호 ~ 710호)
	제2반	용암동	2108(주공1단지 103동 801호 ~ 1510호)
	제3반	용암동	2108(주공1단지 104동 101호 ~ 1506호)
	제4반	용암동	2108(주공1단지 105동 101호 ~ 708호)

	제5반	용암동	2108(주공1단지 105동 801호 ~ 1508호)
제20통	제1반	용암동	2108(주공2단지 201동 101호 ~ 416호)
	제2반	용암동	2108(주공2단지 201동 501호 ~ 816호)
	제3반	용암동	2108(주공2단지 201동 901호 ~ 1216호)
	제4반	용암동	2108(주공2단지 201동1301호 ~ 1516호)
제21통	제1반	용암동	2108(주공A 202동 101호 ~ 810호)
	제2반	용암동	2108(주공A 202동 901호 ~ 1510호)
	제3반	용암동	2108(주공A 203동 101호 ~ 810호)
	제4반	용암동	2108(주공A 203동 901호 ~ 1510호)
제22통	제1반	용암동	2108(주공A 204동 101호 ~ 810호)
	제2반	용암동	2108(주공A 204동 901호 ~ 1510호)
	제3반	용암동	2108(주공A 205동 101호 ~ 810호)
	제4반	용암동	2108(주공A 205동 901호 ~ 1510호)
제23통	제1반	용암동	2108(주공A 206동 101호 ~ 810호)
	제2반	용암동	2108(주공A 206동 901호 ~ 1510호)
	제3반	용암동	2108(주공A 207동 101호 ~ 810호)
	제4반	용암동	2108(주공A 207동 901호 ~ 1510호)
제24통	제1반	용암동	594-1, 596, 597, 597-3, 607의1 ~ 607의3, 608, 608, 609, 2162, 610의1 ~ 610의2, 611의1 ~ 611 의2, 612, 613, 615, 616, 640의4, 641의1 ~ 641 의9, 641의11 ~ 641 의12, 641의15 ~ 641의16
	제2반	용암동	642의1 ~ 642의20
	제3반	용암동	637의5, 637의8, 638의2, 639의1 ~ 639의6, 640의1 ~ 640 의3, 640의5 ~ 640의24
	제4반	용암동	2154-2161, 2163-2170
제25통	제1반	용암동	1101 ~ 1109
	제2반	용암동	1108 ~ 1190
	제3반	용암동	1191 ~ 1201
	제4반	용암동	1202, 1203, 1206, 1207, 1210, 1211, 1214, 1215, 1218, 1219, 1222, 1223
	제5반	용암동	1204, 1205, 1208, 1209, 1212, 1213, 1216, 1217, 1220, 1221
제26통	제1반	용암동	1224 ~ 1234
	제2반	용암동	1235 ~ 1243
	제3반	용암동	1244 ~ 1253
	제4반	용암동	1254 ~ 1264
제27통	제1반	용암동	2104(현대2차아파트 201동 101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104(현대2차아파트 201동 105호 ~ 1509호)
	제3반	용암동	2104(현대2차아파트 202동 101호 ~ 1504호)
	제4반	용암동	2104(현대2차아파트 203동 101호 ~ 1508호)
제28통	제1반	용암동	2537(덕일마이빌아파트 501동 101호 ~ 1506호)
	제2반	용암동	2537(덕일마이빌아파트 502동 101호 ~ 1506호)
	제3반	용암동	2537(덕일마이빌아파트 503동 101호 ~ 1506호)
	제4반	용암동	2537(덕일마이빌아파트 504동 101호 ~ 1508호)
제29통	제1반	용암동	2105(한우리타운101동101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105(한우리타운101동105호 ~ 1508호)
	제3반	용암동	2105(한우리타운102동101호 ~ 1506호)
	제4반	용암동	2105(한우리타운103동101호 ~ 1508호)
제30통	제1반	용암동	2542(중흥마을부영아파트101동101호 ~ 1506호)
	제2반	용암동	2542(중흥마을부영아파트102동101호 ~ 1506호)
	제3반	용암동	2542(중흥마을부영아파트103동101호 ~ 1404호)
	제4반	용암동	2542(중흥마을부영아파트104동101호 ~ 1508호)
제31통	제1반	용암동	1110, 1113, 1114, 1117, 1118, 1121, 1122, 1125, 1126
	제2반	용암동	1111, 1112, 1115, 1116, 1119, 1120, 1123, 1124, 1127
	제3반	용암동	1128, 1131, 1132, 1135, 1136, 1139, 1140, 1143
	제4반	용암동	1129, 1130, 1133, 1134, 1137, 1138, 1141, 1142



	제5반	용암동	1145 ~ 1155
	제6반	용암동	1156 ~ 1165, 1167
	제7반	용암동	1168 ~ 1179
제32통	제1반	용암동	667의1 ~ 667의10, 668의3, 668의4, 669, 670의2, 670의4, 670의12, 1144, 144의1 ~ 1144의3
	제2반	용암동	605의2, 664의3 ~ 664의7, 670의1, 670의3 ~ 670의10, 670의15, 670의16, 671의1, 671의4 ~ 671의6
	제3반	용암동	672의4 ~ 672의6, 673의4, 673의6, 674의1, 674의5, 1272 ~ 1279
	제4반	용암동	1265 ~ 1271, 1280 ~ 1285
	제5반	용암동	1168 ~ 1179
제33통	제1반	용암동	1349 ~ 1363
	제2반	용암동	1364 ~ 1375
	제3반	용암동	1376 ~ 1387
	제4반	용암동	1390 ~ 1401
	제5반	용암동	1402 ~ 1413
제34통	제1반	용암동	1286 ~ 1295
	제2반	용암동	1296 ~ 1305
	제3반	용암동	1306, 1309, 1310, 1313, 1314, 1317, 1318, 1321, 1322, 1325, 1326
	제4반	용암동	1307, 1308, 1311, 1312, 1315, 1316, 1319, 1320, 1323, 1324, 1327
	제5반	용암동	1329 ~ 1339
	제6반	용암동	1340 ~ 1348
제35통	제1반	용암동	2099(건영아파트 101동 101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99(건영아파트 102동 101호 ~ 1504호)
	제3반	용암동	2099(건영아파트 103동 101호 ~ 1506호)
	제4반	용암동	2099(건영아파트 104동 101호 ~ 1506호)
제36통	제1반	용암동	2099(건영아파트105동101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99(건영아파트105동105호 ~ 1508호)
	제3반	용암동	2099(건영아파트106동101호 ~ 1506호)
	제4반	용암동	2099(건영아파트107동101호 ~ 1506호)
제37통	제1반	용암동	2099(건영아파트108동101호 ~ 1503호)
	제2반	용암동	2099(건영아파트108동104호 ~ 1506호)
	제3반	용암동	2099(건영아파트109동101호 ~ 1504호)
	제4반	용암동	2099(건영아파트110동101호 ~ 1504호)
제38통	제1반	용암동	2099(건영아파트111동101호 ~ 1503호)
	제2반	용암동	2099(건영아파트111동104호 ~ 1506호)
	제3반	용암동	2099(건영아파트112동101호 ~ 1504호)
	제4반	용암동	2099(건영아파트113동101호 ~ 1506호)
제39통	제1반	용암동	2096(현대3차아파트301동101호 ~ 1503호)
	제2반	용암동	2096(현대3차아파트301동104호 ~ 1507호)
	제3반	용암동	2096(현대3차아파트303동101호 ~ 1506호)
	제4반	용암동	2096(현대3차아파트305동101호 ~ 1506호)
제40통	제1반	용암동	2096(현대3차아파트302동101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96(현대3차아파트302동105호 ~ 304동1502호)
	제3반	용암동	2096(현대3차아파트304동103호 ~ 1506호)
	제4반	용암동	2096(현대3차아파트306동101호 ~ 1504호)
제41통	제1반	용암동	2094(임광아파트101동101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94(임광아파트101동105호 ~ 1508호)
	제3반	용암동	2094(임광아파트102동101호 ~ 1508호)
	제4반	용암동	2094(임광아파트103동101호 ~ 1004호)
제42통	제1반	용암동	2095(현대1차아파트101동101호 ~ 1202호)
	제2반	용암동	2095(현대1차아파트102동101호 ~ 1504호)
	제3반	용암동	2095(현대1차아파트102동105호 ~ 1508호)
	제4반	용암동	2095(현대1차아파트103동101호 ~ 1508호)

제43통	제1반	용암동	1415, 1418, 1419, 1422, 1423, 1426, 1427, 1430, 1431, 1434, 1435, 1438
	제2반	용암동	1416, 1417, 1420, 1421, 1424, 1425, 1428, 1429, 1432, 1433, 1436, 1437
	제3반	용암동	1439 ~ 1447
	제4반	용암동	1448 ~ 1456
	제5반	용암동	1457 ~ 1465
	제6반	용암동	1466 ~ 1474
제44통	제1반	용암동	1475 ~ 1481
	제2반	용암동	1482 ~ 1488
	제3반	용암동	1489 ~ 1499
	제4반	용암동	1500 ~ 1510
	제5반	용암동	1512, 1514 ~ 1521
	제6반	용암동	1522 ~ 1532
	제7반	용암동	1533 ~ 1546
제45통	제1반	용암동	1548 ~ 1557
	제2반	용암동	1588 ~ 1567
	제3반	용암동	1568 ~ 1590
	제4반	용암동	1592 ~ 1604, 1628 ~ 1638, 1654 ~ 1665
	제5반	용암동	1606 ~ 1627, 1640 ~ 1653, 1666 ~ 1703
제46통	제1반	용암동	1005, 1010 ~ 1014, 1022 ~ 1024, 1065, 1704
	제2반	용암동	1058 ~ 1062, 1064, 1069, 1070, 1072
	제3반	용암동	762의3, 1100, 1100의1 ~ 1100의117
제47통	제1반	용암동	684의5, 715의2, 696의2, 716의1, 718의3, 698, 681의3, 718의1, 696의8, 696의9, 719의2, 714의2, 721, 714의2, 760의3, 762의3, 759의1, 721, 721의 8, 700, 755의9, 722, 721의7, 762의2
	제2반	용암동	762, 768, 770, 770의4, 770의29 ~ 770의31, 770의36
	제3반	용암동	2915(뜨란채아파트 101동 101호 ~ 1506호)
	제4반	용암동	2915(뜨란채아파트 106동 101호 ~ 1302호, 107동 101호 ~ 1302호)
	제5반	용암동	2915(뜨란채아파트 108동 101호 ~ 1504호)
	제6반	용암동	2915(뜨란채아파트 109동 201호 ~ 1506호)
제48통	제1반	용암동	2915(뜨란채아파트 102동 101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915(뜨란채아파트 103동 101호 ~ 1502호, 103동 103호 ~ 1304호)
	제3반	용암동	2915(뜨란채아파트 104동 101호 ~ 1502호, 104동 103호 ~ 1304호)
	제4반	용암동	2915(뜨란채아파트 105동 101호 ~ 1502호, 105동 103호 ~ 1304호)
제49통	제1반	용암동	2537(덕일마이빌아파트 505동 101호 ~ 1506호)
	제2반	용암동	2537(덕일마이빌아파트 506동 101호 ~ 1208호)
	제3반	용암동	2537(덕일마이빌아파트 507동 101호 ~ 1504호)
	제4반	용암동	2537(덕일마이빌아파트 508동 101호 ~ 1504호)
	제5반	용암동	2537(덕일마이빌아파트 509동 101호 ~ 1504호)
	제6반	용암동	2537(덕일마이빌아파트 510동 101호 ~ 1504호)
	제7반	용암동	2537(덕일마이빌아파트 511동 101호 ~ 1504호)
제50통	제1반	용암동	2542(중흥마을부영아파트 105동 101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542(중흥마을부영아파트 106동 101호 ~ 1506호)
	제3반	용암동	2542(중흥마을부영아파트 107동 101호 ~ 1406호)
	제4반	용암동	2542(중흥마을부영아파트 108동 101호 ~ 1506호)
	제5반	용암동	2542(중흥마을부영아파트 109동 101호 ~ 1206호)
제51통	제1반	용암동	2187 ~ 2195, 2200 ~ 2214
	제2반	용암동	2283 ~ 2296, 2302 ~ 2317
	제3반	용암동	2318 ~ 2333, 2340 ~ 2353
	제4반	용암동	2140 ~ 2153, 2299 ~ 2301, 2334 ~ 2338, 2354 ~ 2359
제52통	제1반	용정동	1116(한라비발디 103동 101 ~ 2501호, 302 ~ 2502호)
	제2반	용정동	1116(한라비발디 103동 303 ~ 2503호, 104 ~ 2504호)

				제3반	용정동	1116(한라비발디 104동 101 ~ 2501호, 302 ~ 2502호, 103 ~ 2503호)
				제4반	용정동	1116(한라비발디 105동 301 ~ 2501호, 102 ~ 2502호, 103 ~ 2503호)
				제5반	용정동	1116(한라비발디 106동 101 ~ 2501호, 102 ~ 2502호)
				제6반	용정동	1116(한라비발디 106동 103 ~ 2503호, 104 ~ 2504호)
			제53통	제1반	용정동	1116(한라비발디 101동 301 ~ 2201호, 102 ~ 2202호)
				제2반	용정동	1116(한라비발디 101동 103 ~ 2403호, 104 ~ 2404호)
				제3반	용정동	1116(한라비발디 102동 301 ~ 2301호, 102 ~ 2302호)
				제4반	용정동	1116(한라비발디 102동 103 ~ 2403호, 104 ~ 2404호)
				제5반	용정동	1116(한라비발디 107동 101 ~ 2101호, 102 ~ 2102호)
				제6반	용정동	1116(한라비발디 107동 103 ~ 2403호, 104 ~ 2404호)
			제54통	제1반	용정동	1117(한라비발디 201동 301 ~ 2501호, 102 ~ 2502호)
				제2반	용정동	1117(한라비발디 201동 103 ~ 2503호, 104 ~ 2304호)
				제3반	용정동	1117(한라비발디 202동 301 ~ 2501호, 302 ~ 2502호)
				제4반	용정동	1117(한라비발디 202동 303 ~ 2303호, 304 ~ 2304호)
				제5반	용정동	1117(한라비발디 203동 301 ~ 2501호, 102 ~ 2502호)
				제6반	용정동	1117(한라비발디 203동 103 ~ 2503호, 304 ~ 2304호)
				제7반	용정동	1117(한라비발디 204동 301 ~ 2501호, 102 ~ 2502호, 103 ~ 2503호)
				제8반	용정동	1117(한라비발디 209동 301 ~ 2101호, 302 ~ 2402호, 303 ~ 2403호)
			제55통	제1반	용정동	1117(한라비발디 205동 301 ~ 2401호, 102 ~ 2402호)
				제2반	용정동	1117(한라비발디 205동 103 ~ 2503호, 304 ~ 2504호)
				제3반	용정동	1117(한라비발디 206동 301 ~ 2501호, 102 ~ 2502호)
				제4반	용정동	1117(한라비발디 206동 103 ~ 2503호, 104 ~ 2504호)
				제5반	용정동	1117(한라비발디 207동 301 ~ 2401호, 102 ~ 2402호)
				제6반	용정동	1117(한라비발디 207동 103 ~ 2403호, 104 ~ 2404호)
				제7반	용정동	1117(한라비발디 208동 301 ~ 2201호, 302 ~ 2202호)
				제8반	용정동	1117(한라비발디 208동 103 ~ 2403호, 104 ~ 2404호)
	용암제2동	1	제1통	제1반	월오동	16, 17, 120, 154, 162, 163, 169, 237, 290, 445, 500
				제2반	월오동	71의1
			제2통	제1반	월오동	237, 244, 254, 444, 445, 459, 463, 488, 504
				제2반	월오동	130, 220, 237, 244, 420, 441, 447, 452, 453, 520
			제3통	제1반	월오동	109, 145, 152, 154, 163, 237, 297, 304, 335, 381, 389, 398, 404, 410, 411, 419, 455, 479, 513
				제2반	월오동	50, 59, 163, 375, 382, 419, 429, 499, 504, 517, 521
			제4통	제1반	운동동	60, 65, 67, 68, 69
				제2반	운동동	61, 68, 70, 71, 218
				제3반	운동동	100, 115, 130, 135, 138
				제4반	운동동	107의2 ~ 107의11, 206의3 ~ 206의11, 170의1 ~ 11, 168 ~ 168의4, 171의3 ~ 171의16, 184의1 ~ 185
			제5통	제1반	운동동	358, 359, 360, 362
				제2반	운동동	364, 365, 366, 367
				제3반	운동동	369, 370, 375, 376, 380
				제4반	운동동	362, 363, 364
				제5반	운동동	365, 369, 370
				제6반	운동동	352의2, 352의3, 352의5, 353의2, 357, 354의3, 354의5, 375의3 ~ 375의5, 375의8, 376, 379, 380, 380의1 ~ 380의4, 381, 382, 400의1, 401 402의1, 402의2, 403, 404, 508의1, 508의6 508의47 ~ 508의56, 508의59 ~ 508의76, 508의79 ~ 508의97, 508의144, 508의145, 508의154, 508의155, 508의208 ~ 508의210, 508의227 ~ 508의229, 508의232, 508의252 ~ 508의258, 532

	제7반	운동동	7, 7의1, 8, 9의1, 10, 11, 12의5 ~ 12의12, 166의3, 170의4 ~ 170의7, 182의1, 183, 184, 184의1 ~ 184의11, 185, 185의1, 185의2, 186, 186의1, 186의2, 187, 187의1, 188, 188의1, 188의2, 189의1 ~ 189의6, 190, 190의1, 190의2, 191, 191의1, 192, 193, 194의1 ~ 194의2, 195, 196, 196의1 ~ 196의4, 383 의1 ~ 383의2, 384의1 ~ 384의9, 385의1 ~ 385의3, 386, 387, 387의4 ~ 387의6, 388, 389의1, 390의1 ~ 390의5, 391의3, 392 ~ 395, 395의1, 396의1 ~ 396의3, 397, 98의1 ~ 398의3, 399, 508의98 ~ 105, 508의110 ~ 8의123, 508의146, 508의156, 508 의214 ~ 508의216, 508의223, 508의234 ~ 508의240, 521, 521
	제8반	운동동	351의1 ~ 351의11, 413의1 ~ 413의13, 413, 414, 414 의2, 414의9, 415, 415의2, 416의1 ~ 416의4, 418의1, 419, 419의1 ~ 419의4, 420, 421의1 ~ 421의4, 422의1 ~ 422의2, 423의1, 424의1, 423, 424, 425, 426, 427, 428, 428의1 ~ 428의3, 429, 429의1 ~ 429의7, 430, 430의2 ~ 430의15, 431의2 ~ 431의3, 437의2, 438의1 ~ 438의2, 439, 439 의2, 440, 441, 441의1 ~ 441의2, 442, 442의1 ~ 442의19, 444, 444의1 ~ 444의9, 445의1 ~ 445의10, 446, 447, 448의1 ~ 448의6, 449의1 ~ 449의12, 450의1 ~ 450의6, 451, 451의1 ~ 451의3, 452의1 ~ 452의6, 454의1 ~ 454의13, 455의1 ~ 455의2, 456의1 ~ 456의3, 457, 457의1, 458, 458의1 ~ 458의2, 460의1 ~ 460의4, 461의1 ~ 461의6, 462의1 ~ 462의7, 463의1 ~ 463의5, 464의1 ~ 464의11, 485, 485의2 ~ 485의8, 486, 486의1 ~ 486의6, 487의1 ~ 487의5, 488의1 ~ 488의10, 489의1 ~ 489의2, 490, 491의1 ~ 491의2, 492의2 ~ 492의4, 508의152, 508의211 ~ 508 의212, 508의243 ~ 508의246, 508의260 ~ 508의263, 508 의30 ~ 508의38, 508의41 ~ 508의45, 534의2 ~ 534의4
	제9반	운동동	54, 54의1 ~ 54의5, 55의1 ~ 55의4, 64의1 ~ 64의7, 197의1 ~ 197의6, 198, 198의1 ~ 198의3, 201, 201의1 ~ 201 의3, 202, 215, 216, 249의1 ~ 249의2, 250, 250의1, 251, 252, 252의1 ~ 252의7, 253, 267의4, 268, 269, 269의1 ~ 269의2, 270, 271의2, 283, 284, 285, 286, 286의1, 287, 289, 290, 292, 293, 294, 294의2, 295, 296의1 ~ 296의4,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5의1 ~ 305의9, 306, 307, 307의2, 308의1 ~ 308의6, 309, 309의1 ~ 309의2, 310, 311, 311의1, 312, 312의1 ~ 312의2, 313의1 ~ 313의9, 314의1 ~ 314의3, 315, 315의1 ~ 315의3, 316의1 ~ 316의2, 316, 316의1 ~ 316 의2, 317, 317의2 ~ 317의5, 318의2, 319, 319의1 ~ 319의6, 320, 320의1 ~ 320의5, 321, 322, 322의1, 323, 324, 324의1, 325, 326, 327의1, 327의6, 328, 328의1 ~ 328의5, 329의1 ~ 329의5, 330, 330의1, 331의1, 332, 333, 333의1 ~ 333의2, 334, 338, 338의1,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5 의1, 346의1, 347의3 ~ 347의5, 348, 348의1 ~ 348의2, 349, 350, 350의1 ~ 350의4, 466, 466의1, 468, 469, 470, 470 의1 ~ 470의2, 471의1 ~ 471의4, 472의1 ~ 472의2, 473, 474의1 ~ 474의5, 475의1 ~ 475의3, 476의1 ~ 476의4, 477, 478의1 ~ 478의18, 479, 479의1 ~ 479의2, 480, 480 의1, 481의1 ~ 481 의7, 482, 482의1 ~ 482의2, 483, 484, 508의2 ~ 508의21, 508의25 ~ 508의29, 508의151, 508의164 ~ 508의165, 508의170 ~ 508의173, 508의184 ~ 508 의189, 508의194 ~ 508의199, 508의200, 508의225, 508 의200, 524, 528, 529, 529의1 ~ 529의8, 530, 530의2 ~ 530의5, 539, 539, 539의1 ~ 539의2, 541, 546, 547, 547
제6통	제1반	용암동	2076 태산A 101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76 태산A 101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3반	용암동	2076 태산A 101동 109호 ~ 1510호, 111호 ~ 1512호
제7통	제1반	용암동	2076 태산A 102동 101호 ~ 601호, 102호 ~ 1402호 2076 태 산A 102동 103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76 태산A 102동 105호 ~ 1506호 2076 태산A 103동 101 호 ~ 1502호
	제3반	용암동	2076 태산A 103동 103호 ~ 1504호, 105호 ~ 1506호
	제4반	용암동	2076 태산A 104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8통	제1반	용암동	2076 태산A 105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76 태산A 105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3반	용암동	2076 태산A 105동 109호 ~ 1510호
	제4반	용암동	2076 태산A 105동 111호 ~ 1512호

제9통	제1반	용암동	2082 소라A 101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82 소라A 101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3반	용암동	2082 소라A 102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4반	용암동	2082 소라A 102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10통	제1반	용암동	2082 소라A 103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82 소라A 103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3반	용암동	2082 소라A 104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11통	제1반	용암동	2082 소라A 105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82 소라A 105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3반	용암동	2082 소라A 106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4반	용암동	2082 소라A 106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12통	제1반	용암동	2083 무지개삼일A 101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83 무지개삼일A 102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3반	용암동	2083 무지개삼일A 103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4반	용암동	2083 무지개삼일A 103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5반	용암동	2083 무지개삼일A 106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6반	용암동	2083 무지개삼일A 106동 105호 ~ 1506호
제13통	제1반	용암동	2083 무지개삼일A 104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83 무지개삼일A 104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3반	용암동	2083 무지개삼일A 105동 101호 ~ 1502호, 103호 ~ 1304호
	제4반	용암동	2083 무지개삼일A 105동 105호 ~ 1206호, 107호 ~ 1008호
	제5반	용암동	2083 무지개삼일A 107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6반	용암동	2083 무지개삼일A 107동 105호 ~ 1506호
제14통	제1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아파트 101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아파트 101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3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아파트 102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4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아파트 102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15통	제1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03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03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3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04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4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04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16통	제1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05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05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3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06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4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06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17통	제1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07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07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3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08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4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09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18통	제1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10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10동 105호 ~ 1506호, 2064 세원한아름A 112동 101호 ~ 313호
	제3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12동 401호 ~ 613호, 701호 ~ 913호
	제4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12동 1001호 ~ 1213호, 1301호 ~ 1513호
제19통	제1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11동 101호 ~ 219호, 301호 ~ 419호
	제2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11동 501호 ~ 619호, 701호 ~ 819호
	제3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11동 901호 ~ 1019호, 1101호 ~ 1219호
	제4반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A 111동 1301호 ~ 1419호, 1501호 ~ 1519호
제20통	제1반	용암동	429의2(동산빌리지 101동 101호 ~ 402, 102동 101 ~ 402호, 103동 101호 ~ 402, 104동 101호 ~ 402, 105동 101 ~ 404
	제2반	용암동	429의2(동산빌리지 201동 101호 ~ 404, 202동 101 ~ 404
	제3반	용암동	492의2(동산빌리지 203동 101호 ~ 404, 204동 101 ~ 404
	제4반	용암동	492의2(동산빌리지 205동 101호 ~ 404, 206동 101 ~ 406

제21통	제1반	용암동	2089 용암현대A 1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89 용암현대A 101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2089 용암현대A 105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제3반	용암동	2089 용암현대A 105동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4반	용암동	2089 용암현대A 106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2통	제1반	용암동	2089 용암현대A 102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89 용암현대A 103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3반	용암동	2089 용암현대A 1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4반	용암동	2089 용암현대A 107동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2089 용암현대A 108동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제23통	제1반	용암동	2085(덕성그린타운) 1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85(덕성그린타운) 101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3반	용암동	2085(덕성그린타운) 102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4반	용암동	2085(덕성그린타운) 105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5반	용암동	2085(덕성그린타운) 105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24통	제1반	용암동	2085(덕성그린타운) 103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85(덕성그린타운) 103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3반	용암동	2085(덕성그린타운) 103동 109호 ~ 1509호, 110호 ~ 1510호, 2085(덕성그린타운) 1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제4반	용암동	2085(덕성그린타운) 104동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제25통	제1반	용암동	2063 대원칸타빌 101동 101호 ~ 1502호, 103 ~ 1504
	제2반	용암동	2063 대원칸타빌 101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3반	용암동	2063 대원칸타빌 102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4반	용암동	2063 대원칸타빌 102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26통	제1반	용암동	2088 형석1차A 101동 101호 ~ 1004호
	제2반	용암동	2088 형석1차A 102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3반	용암동	2088 형석1차A 103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4반	용암동	2088 형석2차A 1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5반	용암동	2088 형석2차A 104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2088 형석2차A 105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제6반	용암동	2088 형석2차A 105동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7반	용암동	2088 형석2차A 106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8반	용암동	2088 형석2차A 106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27통	제1반	용암동	2086 효성A 101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86 효성A 101동 105호 ~ 1506호 2086 효성A 102동 101호 ~ 1502호
	제3반	용암동	2086 효성A 102동 103호 ~ 1504호, 105호 ~ 1506호
	제4반	용암동	2086 효성A 102동 107호 ~ 1508호
제28통	제1반	용암동	2086 효성A 103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용암동	2086 효성A 103동 105호 ~ 1206호, 107호 ~ 1208호
	제3반	용암동	2086 효성A 103동 109호 ~ 1210호, 111호 ~ 1212호
	제4반	용암동	2086 효성A 104동 101호 ~ 1004호, 105호 ~ 1008호
	제5반	용암동	2086 효성A 104동 109호 ~ 1012호
제29통	제1반	용암동	2060 부영A 101동 101호 ~ 114호, 201호 ~ 214호, 301호 ~ 314호, 401호 ~ 414호, 501호 ~ 514호, 601호 ~ 614호
	제2반	용암동	2060 부영A 101동 701호 ~ 714호, 801호 ~ 814호, 901호 ~ 914호
	제3반	용암동	2060 부영A 101동 1001호 ~ 1014호, 1101호 ~ 1114호, 1201호 ~ 1214호
	제4반	용암동	2060 부영A 101동 1301호 ~ 1314호, 1401호 ~ 1414호, 1501호 ~ 1514호

	제5반	용암동	2060 부영A 102동 101호 ~ 111호, 201호 ~ 211호, 301호 ~ 311호, 401호 ~ 411호, 501호 ~ 511호, 601호 ~ 611호
	제6반	용암동	2060 부영A 102동 701호 ~ 711호, 801호 ~ 811호, 901호 ~ 911호, 1001호 ~ 1011호, 1101호 ~ 1111호, 1201호 ~ 1211호
	제7반	용암동	2060 부영A 102동 1301호 ~ 1311호, 1401호 ~ 1411호, 1501호 ~ 1511호
제30통	제1반	용암동	2060 부영A 103동 101호 ~ 114호, 201호 ~ 214호, 301호 ~ 314호
	제2반	용암동	2060 부영A 103동 401호 ~ 414호, 501호 ~ 514호, 601호 ~ 614호
	제3반	용암동	2060 부영A 103동 701호 ~ 714호, 801호 ~ 814호, 901호 ~ 914호
	제4반	용암동	2060 부영A 103동 1001호 ~ 1014호, 1101호 ~ 1114호, 1201호 ~ 1214호
	제5반	용암동	2060 부영A 103동 1301호 ~ 1314호 1401호 ~ 1414호, 1501호 ~ 1514호
	제6반	용암동	2060 부영A 104동 101호 ~ 111호, 201호 ~ 211호 301호 ~ 311호, 401호 ~ 411호, 501호 ~ 511호, 601호 ~ 611호
	제7반	용암동	2060 부영A 104동 701호 ~ 711호, 801호 ~ 811호 901호 ~ 911호, 1001호 ~ 1011호, 1101호 ~ 1111호, 1201호 ~ 1211호 2060 부영A 104동 1301호 ~ 1311호,
	제8반	용암동	1401호 ~ 1411호, 1501호 ~ 1511호
제31통	제1반	용암동	2060 부영A 105동 101호 ~ 112호, 201호 ~ 212호 301호 ~ 312호, 401호 ~ 412호, 501호 ~ 512호, 601호 ~ 612호
	제2반	용암동	2060 부영A 105동 701호 ~ 712호, 801호 ~ 812호 901호 ~ 912호, 1001호 ~ 1011호
	제3반	용암동	2060 부영A 106동 101호 ~ 111호, 201호 ~ 211호, 301호 ~ 311호
	제4반	용암동	2060 부영A 106동 401호 ~ 411호, 501호 ~ 511호, 601호 ~ 611호
	제5반	용암동	2060 부영A 106동 701호 ~ 711호, 801호 ~ 811호 901호 ~ 911호, 1001호 ~ 1011호
제32통	제1반	용암동	1912 ~ 1920, 1921 ~ 1929
	제2반	용암동	1880 ~ 1887
	제3반	용암동	1888 ~ 1895
	제4반	용암동	1896, 1899, 1900, 1903, 1904, 1907, 1908, 1911
	제5반	용암동	1897, 1898, 1901, 1902, 1905, 1906, 1909, 1910
	제6반	용암동	1828 ~ 1838, 1840, 1843, 1844, 1847, 1848, 1851, 1852, 1855, 1856, 1859, 1860, 1863
	제7반	용암동	1841, 1842, 1845, 1846, 1849, 1850, 1853, 1854, 1857, 1858, 1861, 1862
제33통	제1반	용암동	1864 ~ 1871, 1872 ~ 1879
	제2반	용암동	1987 ~ 1995
	제3반	용암동	1996 ~ 2004, 2006 ~ 2016
	제4반	용암동	2017 ~ 2032
	제5반	용암동	427의2, 427의3, 428의2, 431, 432, 2065 ~ 2074, 2077
	제6반	용암동	2034 ~ 2045
	제7반	용암동	2046 ~ 2056
제34통	제1반	용암동	1797 ~ 1809
	제2반	용암동	1955 ~ 1965
	제3반	용암동	1930 ~ 1943
	제4반	용암동	1811 ~ 1826
제35통	제1반	용암동	1944 ~ 1954
	제2반	용암동	1967, 1968, 1971, 1972, 1975, 1976, 1979, 1982, 1983
	제3반	용암동	1966, 1969, 1970, 1973, 1974, 1977, 1978, 1980, 1981, 1984
	제4반	용암동	1777, 1778, 1781, 1782, 1785, 1787, 1789, 1792, 1793, 1796
	제5반	용암동	1776, 1779, 1780, 1783, 1784, 1786, 1788, 1790, 1791, 1794, 1795
제36통	제1반	용암동	1707 ~ 1717
	제2반	용암동	1718 ~ 1729
	제3반	용암동	1733 ~ 1744
	제4반	용암동	1745 ~ 1755
	제5반	용암동	1756 ~ 1766

				제6반	용암동	1730 ~ 1732, 1767 ~ 1773
			제37통	제1반	방서동	10, 20, 67, 87, 106, 195, 197, 206, 211, 220
				제2반	방서동	67, 68, 91, 92, 95, 98, 99, 197, 206, 207
				제3반	방서동	53, 68, 99, 106, 185, 195, 210, 210의6, 53, 211, 68
				제4반	방서동	251의9, 251의7, 279의6, 279의3, 297의7, 279의8, 279의12, 281의13, 283의9, 283의3
			제38통	제1반	방서동	69의2, 70, 87 ~ 98
				제2반	방서동	산11, 12, 75 ~ 78, 81 ~ 86, 151 ~ 154
				제3반	방서동	산5, 62, 64의1, 65 ~ 68, 83, 85, 92, 99, 106, 197, 198의1, 198의3, 199, 200
				제4반	방서동	100 (세종참사랑A 101동, 102동)
				제5반	방서동	55-17, 55-6
			제39통	제1반	지북동	120, 157의1, 190, 200, 206의3, 207, 207의10, 209, 211의2, 212, 213, 213의1, 214, 215, 222, 235, 255
				제2반	지북동	46, 215의2, 216, 217, 217의1, 217의4, 219의1, 226의1,
				제3반	지북동	산20의1, 산21, 7, 45의1, 47, 100의1, 101, 211, 221, 211
				제4반	용암동	66, 79의3, 241, 241의1, 241의6, 243의4, 251, 252, 252의1, 253의1, 255의1, 257의1, 259의4, 263, 269, 270의1,
				제5반	용암동	3, 47, 62, 62의2, 69 ~ 72, 74, 74의4 ~ 74의6, 76 ~ 79, 79의1, 219, 229, 254
			제40통	제1반	평촌동	5, 27의3
				제2반	평촌동	36, 37, 39 ~ 45, 47, 54, 302, 329, 345, 349, 354, 357,
				제3반	평촌동	345, 349, 354, 357, 358
				제4반	평촌동	8, 9, 12 ~ 15, 36, 37, 39 ~ 45, 47, 54
서원구	소계	9	317	1564		
	사직제1동	1	제1통	제1반	사직동	579의9, 583 ~ 583의31, 584, 584의1, 584의61 ~ 584의
				제2반	사직동	584의4, 584의8, 584의10, 584의15, 584의19, 584의21, 584의32, 584의36 ~ 584의46, 584의48
				제3반	사직동	584의23 ~ 584의28, 584의33 ~ 584의35, 584의40, 584의49, 584의51, 584의52, 584의55, 827 ~ 830
				제4반	사직동	755, 808, 831 ~ 855, 888, 921 ~ 924, 산119의1
			제2통	제1반	사직동	560, 560의7, 560의8, 560의47, 567 ~ 569, 571, 574의1 ~ 574의11, 183의1 ~ 183의4, 184, 188의4,
				제2반	사직동	558의5 ~ 558의8, 558의26, 558의28, 558의30, 558의33 ~ 558의37, 560의23 ~ 560의30, 588의1, 588의5 ~ 588의6,
				제3반	사직동	558(장미A 101호 ~ 505호)
				제4반	사직동	558의11 ~ 558의20, 559의3 ~ 559의9, 560의2
			제3통	제1반	사직동	556의2, 556의30 ~ 556의34, 557의3 ~ 557의13
				제2반	사직동	553의27, 555의1 ~ 555의3, 555의6 ~ 555의25, 555의35 ~ 555의37, 555의42 ~ 555의47,
				제3반	사직동	552의38 ~ 552의46, 552의60 ~ 552의68, 552의77, 556의1, 556의3, 556의5, 556의17 ~ 556의20, 556의22 ~ 556의27, 556의37, 556의49, 556의81,
				제4반	사직동	553의2 ~ 553의5, 553의11 ~ 553의18
				제5반	사직동	552의13 ~ 552의15, 553의1, 553의7 ~ 553의10, 553의21 ~ 553의24
				제6반	사직동	552의20 ~ 552의37, 554의14 ~ 554의16, 554의7, 554의20, 554의26, 554의52
				제7반	사직동	556의4, 556의8, 554의52, 762, 763, 782 ~ 784, 801 ~ 806, 813 ~ 824
				제8반	사직동	552의47 ~ 552의59, 554의12, 554의18, 554의56 ~ 57, 556의9 ~ 556의16
			제4통	제1반	사직동	547의19 ~ 547의21, 551의1 ~ 551의26, 552, 552의16, 554의48, 554의51
				제2반	사직동	547의1, 547의2, 547의8 ~ 547의18, 547의22 ~ 547의26, 547의32, 547의42, 547의46, 547의48, 550의1~9
				제3반	사직동	545의1 ~ 545의17, 546의2 ~ 546의13, 548의2 ~ 548의13, 549의1 ~ 549의11
				제4반	사직동	543의3 ~ 543의9, 543의37 ~ 543의52, 547, 547의3 ~ 547의7, 547의28 ~ 547의31,
				제5반	사직동	543의13 ~ 543의28
				제6반	사직동	554의13, 554의27 ~ 554의43, 554의48 ~ 554의50
			제5통	제1반	사직동	537의1 ~ 537의6, 537의60, 542의1, 542의4, 543의1, 544의1 ~ 544의20, 537의25, 537의26 ~ 537의40, 537의47,
				제2반	사직동	537의55 ~ 537의56, 537의62 ~ 537의64



	제3반	사직동	537의8 ~ 537의24, 537의43, 537의48, 537의51, 537의58.
	제4반	사직동	503의9, 534의17, 534의21, 537, 538의2, 539의1 ~ 539의36, 539의19 ~ 539의24, 539의28 ~ 31, 554의6, 721, 735 ~ 743, 761, 764 ~ 781, 785 ~ 800, 807 ~ 812, 825, 산160
제6통	제1반	사직동	237의1 ~ 237의44
	제2반	사직동	238의1 ~ 238의44, 238의46 ~ 238의75
	제3반	사직동	238의45(평화A 1동)
	제4반	사직동	238의45(평화A 2동), 238의45(평화A 상가)
제7통	제1반	사직동	239의1 ~ 239의43
	제2반	사직동	240의1 ~ 240의44
	제3반	사직동	241의1 ~ 241의21
	제4반	사직동	242의1 ~ 242의26
	제5반	사직동	243의1 ~ 243의30
	제6반	사직동	244의1 ~ 244의31
제8통	제1반	사직동	245의1 ~ 245의29
	제2반	사직동	246의1 ~ 246의29
	제3반	사직동	247의1(부강A)
	제4반	사직동	247의2 ~ 247의33
	제5반	사직동	248의1 ~ 248의31
	제6반	사직동	249의1 ~ 249의32
제9통	제1반	사직동	250의1 ~ 250의16
	제2반	사직동	251의1 ~ 251의36
	제3반	사직동	252의1 ~ 252의34
	제4반	사직동	253의1 ~ 253의27
	제5반	사직동	254의1 ~ 254의18
제10통	제1반	사직동	255의1 ~ 255의20
	제2반	사직동	207의1 ~ 207의14, 209의1 ~ 209의35, 256의1 ~ 256의26
	제3반	사직동	257의1 ~ 257의24
	제4반	사직동	258의1 ~ 258의33
	제5반	사직동	259의1 ~ 259의33
제11통	제1반	사직동	260의1 ~ 260의19
	제2반	사직동	261의1 ~ 261의32
	제3반	사직동	262의1 ~ 262의13, 262의16, 262의17, 262의40
	제4반	사직동	262의14, 262의15, 262의18 ~ 262의39
	제5반	사직동	263의1 ~ 263의6, 263의8 ~ 263의54
	제6반	사직동	263의7(사직연립)
	제7반	사직동	264의1 ~ 264의32
제12통	제1반	사직동	265의7 미호A상가, 265의7 미호A 201호 ~ 222호
	제2반	사직동	265의7 미호A 301호 ~ 322호, 265의7 미호A 401호 ~ 422호
	제3반	사직동	265의7 미호A 501호 ~ 522호, 265의7 미호A 601호 ~ 622호
	제4반	사직동	265의1 ~ 265의6, 265의8 ~ 265의42
	제5반	사직동	266의1(서울주택), 266의2 ~ 16
	제6반	사직동	267의1 ~ 267의16
제13통	제1반	사직동	233의1 ~ 233의23, 233의29, 233의51
	제2반	사직동	233의25 ~ 233의48, 234의1 ~ 234의17, 234의44
	제3반	사직동	231의1 ~ 231의38
	제4반	사직동	234의18 ~ 234의43
제14통	제1반	사직동	236의1 ~ 236의4, 236의30 ~ 236의53, 236의74, 236의75, 236의77 ~ 236의79, 236의85
	제2반	사직동	236의5 ~ 236의29, 236의54 ~ 236의73, 236의76, 236의80, 236의81, 236의86 ~ 236의89
	제3반	사직동	235의1 ~ 235의3, 235의35 ~ 235의57, 235의60, 235의62, 235의66, 235의67
	제4반	사직동	235의4 ~ 235의17, 235의20 ~ 235의34, 235의61, 235의63 ~ 235의65, 235의69
제15통	제1반	사직동	222의1 ~ 222의28, 230의1 ~ 230의22
	제2반	사직동	223의1 ~ 223의33

				제3반	사직동	224의1 ~ 224의21
				제4반	사직동	229의1 ~ 229의21
				제5반	사직동	229의23 ~ 229의38
			제16통	제1반	사직동	225의1 ~ 225의40
				제2반	사직동	226의1 ~ 226의24
				제3반	사직동	227의1, 227의5, 227의6, 227의7, 227의10, 227의22 ~ 227의27, 227의30, 227의32 ~ 227의43, 227의50 ~ 227의52, 227의57, 227의58
				제4반	사직동	227의11 ~ 227의20, 227의44 ~ 227의49, 227의54 ~ 227의
				제5반	사직동	133의1, 133의3 ~ 133의8, 228의1 ~ 228의9, 228의22 ~ 228의25, 228의27 ~ 228의29, 228의31 ~ 228의44
				제6반	사직동	133의10 ~ 133의22, 228의13 ~ 228의21, 228의30
			제17통	제1반	사직동	217의1 ~ 217의44
				제2반	사직동	218의1 ~ 218의32
				제3반	사직동	219의1 ~ 219의24
				제4반	사직동	220의1 ~ 220의19
				제5반	사직동	221의1 ~ 221의26
			제18통	제1반	사직동	212의1 ~ 212의17, 213의1 ~ 213의29
				제2반	사직동	214의1 ~ 214의28
				제3반	사직동	215의1(사직연립)
				제4반	사직동	215의2 ~ 215의19
				제5반	사직동	216의1 ~ 216의19
			제19통	제1반	사직동	205의1 ~ 205의3, 205의6 ~ 205의14, 205의16 ~ 205의20
				제2반	사직동	205의5(현대△)
				제3반	사직동	206의1 ~ 206의3, 206의15 ~ 206의18, 206의23, 206의24, 206의26, 206의31 ~ 206의39
				제4반	사직동	206의5 ~ 206의14, 206의19 ~ 206의22, 206의25, 206의28 ~ 206의30, 206의40 ~ 206의46
				제5반	사직동	210의1 ~ 210의31, 211의1 ~ 211의20
			제20통	제1반	사직동	200의1 ~ 200의16, 201의1 ~ 201의15
				제2반	사직동	202의1 ~ 202의27
				제3반	사직동	203의1 ~ 203의23
				제4반	사직동	204의1 ~ 204의33
			제21통	제1반	사직동	139의1 ~ 139의26, 144의1 ~ 144의31
				제2반	사직동	140의1 ~ 140의28
				제3반	사직동	141의1 ~ 141의22
				제4반	사직동	142의1(삼원A)
				제5반	사직동	142의2 ~ 142의14, 143의1 ~ 143의21
			제22통	제1반	사직동	265-5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A타워 301호~808호)
				제2반	사직동	265-5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A타워 901호~1408호)
				제3반	사직동	265-5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A타워 1501호~2008호)
				제4반	사직동	265-5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A타워 2101호~2608호)
				제5반	사직동	265-5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A타워 2701호~3208호)
				제6반	사직동	265-5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A타워 3301호~4108호)
			제23통	제1반	사직동	265-5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B타워 301호~808호)
				제2반	사직동	265-5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B타워 901호~1408호)
				제3반	사직동	265-5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B타워 1501호~2008호)
				제4반	사직동	265-5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B타워 2101호~2608호)
				제5반	사직동	265-5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B타워 2701호~3208호)
				제6반	사직동	265-5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B타워 3301호~4108호)
1	사직제2동	1	제1통	제1반	사직동	5의4, 5의7-5의9, 6의4, 6의35, 6의72, 6의16, 6의34, 6의35, 6의93, 123의5, 123의6, 124, 124의6, 124의10, 124의12, 124의3-124의5, 125, 126의9, 126의14, 126의18, 126의19, 126의27
				제2반	사직동	6의18, 6의19, 6의21, 6의23, 6의25, 6의31, 6의35의36, 6의44, 6의90, 6의91, 166의29, 167의2, 168의2, 169, 169의19-169의27, 170의26-170의36
				제3반	사직동	6의15-6의17, 6의57-6의60, 6의74-6의82, 6의88, 6의96-6의107, 6의110

	제4반	사직동	9의1, 9의3, 9의5 ~ 9의7, 6의84, 6의114, 6의122, 6의125, 6의116, 710의13, 710의44, 710의2, 710의21, 710의16, 710의18 ~ 710의19, 710의22, 710의47 ~ 710의52, 710의54, 9의14 ~ 9의18, 9의20, 9의23, 10의1 ~ 10의5, 12의3, 11의1 ~ 11의7, 38의3, 38, 43, 42의5, 39, 40의3, 40
	제5반	사직동	12의6 ~ 12의17, 12의22 ~ 12의25, 12의31 ~ 12의35, 12의40, 13의1, 13의3, 13의6 ~ 13의15, 13의17, 13의19, 15의6 ~ 15의7, 604의1 ~ 604의3, 604의7, 604의33, 604의26, 산111의5, 산111의10
제2통	제1반	사직동	40의1 ~ 40의16, 39, 42의1 ~ 42의3, 43, 43의6 ~ 43의8, 44, 45, 45의1 ~ 45의4
	제2반	사직동	40의17, 40의18, 41의1 ~ 41의16, 710의31 ~ 710의37, 47의1, 47의6 ~ 47의8, 47의11 ~ 47의18, 47의27, 47의36, 47의57, 47의66
	제3반	사직동	47의23, 47의31 ~ 47의35, 47의40 ~ 47의56, 47의60 ~ 47의64, 358의6, 359의9, 359의10
	제4반	사직동	43의24, 46의1 ~ 46의2, 48, 48의3 ~ 48의20
	제5반	사직동	732의12 ~ 732의17, 732의21 ~ 732의29, 733의1 ~ 733의
	제6반	사직동	732의1 ~ 732의11, 732의18 ~ 732의20, 732의30 ~ 732의37, 710의52
	제7반	사직동	731의2, 731의3, 731의5, 731의6, 731의9, 731의10, 731의14, 731의15, 731의20, 731의21, 731의1, 731의4, 731의7, 731의8, 731의11 ~ 731의13, 731의16 ~ 731의19, 731의23, 710의14
제3통	제1반	사직동	43의9 ~ 43의19, 43의1, 43의22, 43의23, 43의32, 358의4, 358의6 ~ 358의12, 360의2 ~ 360의7, 360의9, 360의11, 358의1 ~ 358의3, 358의13, 358의15, 358의16, 359의24, 359의31, 359의42 ~ 359의44, 359의47
	제2반	사직동	354의2 ~ 354의4, 354의11, 354의13, 354의14, 355의3, 356의1, 356의4, 357의1 ~ 357의11, 359의18, 353의2, 354의1, 354의5 ~ 354의6, 354의9, 354의10, 355의5, 355의6, 355의8
	제3반	사직동	352의13, 352의24, 352의25, 352의34, 355의4, 355의7, 359의2 ~ 359의8, 359의15 ~ 359의17, 359의19, 359의23, 359의39, 359의45 ~ 359의46, 359의26
	제4반	사직동	358의5(덕희A 101호 ~ 217호), 358의5(덕희A 301호 ~ 417호)
	제5반	사직동	358의5(덕희A 501호 ~ 617호) 358의5(덕희A 701호 ~ 817호)
	제6반	사직동	358의5(덕희A 901호 ~ 1017호) 358의5(덕희A 1101호 ~ 1217호)
제4통	제1반	사직동	599의3, 599의5, 599의6, 600의4, 600의5, 600의8, 600의9, 600의11 ~ 600의15, 600의20 ~ 600의26, 604, 604의10 ~ 604의13, 604의51 ~ 604의56, 604의66
	제2반	사직동	601의1 ~ 601의13, 602의1, 602의8 ~ 602의14, 603의15, 603의18, 602의2 ~ 602의7, 602의15 ~ 602의25
	제3반	사직동	604의24, 604의25, 604의47, 604의48, 604의67 ~ 604의69, 605의1, 605의3, 605의4, 605의7 ~ 605의12, 605의15 ~ 605의19
	제4반	사직동	603의1, 603의6, 603의8 ~ 603의13, 603의16, 603의19 ~ 603의23, 605의2, 605의5 ~ 605의6, 605의13, 605의14
	제5반	사직동	604의14 ~ 604의23, 604의29, 604의37 ~ 604의46, 604의57, 604의60, 604의63, 604의65
제5통	제1반	사직동	606의19 ~ 606의35, 610의4, 610의5, 610의7, 610의8, 645의3, 645의7, 645의9 ~ 645의11, 645의13, 645의14, 722의6, 606의1-606의10, 606의14 ~ 606의18, 605의21,
	제2반	사직동	607의12, 607의16, 607의19 ~ 607의24, 607의28 ~ 607의31, 609의1 ~ 609의3, 608의5, 606의9, 607의5, 607의6, 607의8, 607의9, 607의11, 608의2 ~ 608의4, 606의41, 607의1, 607의2, 607의26, 607의27, 609의4, 609의5, 610의2, 610의3, 610의6, 610의7, 610의10 ~ 610의14,
	제3반	사직동	610의1, 607의3, 607의4, 607, 607의34 ~ 607의37
	제4반	사직동	613, 613의1 ~ 613의6, 615의1 ~ 615의3, 617 ~ 620, 621의1, 621의10
	제5반	사직동	642의1 ~ 642의2, 642의5 ~ 642의7, 642의16 ~ 642의19, 642의53, 643의1, 643의4 ~ 643의6, 644의19, 644의33 ~ 644의36, 644의44
제6통	제1반	사직동	614의1, 614의2, 626의3, 626의1, 산147의7, 산147의23(쌍용A 1동 101호 ~ 807호)
	제2반	사직동	614의1, 614의2, 626의3, 626의14, 산147의7, 산147의23(쌍용A 1동 108호 ~ 811호)
	제3반	사직동	615의1, 615의2, 614의1, 산147의23(쌍용A 1동 108호 ~ 707호)

	제4반	사직동	614의1, 615의1, 615의2, 산147의23(쌍용A 2동 108호 ~ 711호)
	제5반	사직동	613의1(쌍용아파트 3동), 38의2(형제주택)
제7통	제1반	사직동	623의1 ~ 623의8, 624의1, 624의2, 626의1 ~ 626의12, 628, 628의9
	제2반	사직동	640의1 ~ 640의3, 640의10 ~ 640의15, 640의28 ~ 640의35, 640의38 ~ 640의41, 642의37 ~ 642의39 642의31 ~ 642의35, 642의52, 643의8 ~ 643의11
	제3반	사직동	625의3 ~ 625의16, 628의16, 628의18, 628의19, 629의2, 629의6 ~ 629의8, 629의10, 629의11
	제4반	사직동	625, 625의1, 628의11, 궁전발라 가, 나, 다동
	제5반	사직동	628의1(낙원주택A동, B동 낙원주택상가)
	제6반	사직동	628(백두A A동, B동)
제8통	제1반	사직동	631의2, 631의3, 631의55 ~ 631의58, 631의76, 631의77, 631의81 ~ 631의83, 631의87, 632의2, 633의3, 633의7, 633의8, 633의10, 636의5, 631의 61, 631의62, 631의64, 631의98 ~ 631의101, 631의 103 ~ 631의107, 631의114,
	제2반	사직동	631의67 ~ 631의69, 631의71, 631의108, 631의109, 631의111, 631의128, 631의141, 631의146 ~ 631의148, 631
	제3반	사직동	631의109, 631의120 ~ 631의125, 631의132, 631의 157 ~ 631의163, 631의166, 631의167, 631의171, 631의172
	제4반	사직동	631의11, 631의13, 631의14, 631의17, 631의18, 631의20 ~ 631의25, 631의29, 631의39, 631의45, 631의46, 631의54, 631의91 ~ 631의97, 631의134, 631의135, 631의138, 631의139
	제5반	사직동	630의11, 630의13, 630의21, 631, 631의4 ~ 631의9, 631의30, 631의32 ~ 631의38, 631의41~631의43, 631의50, 631의53, 631의186
제9통	제1반	사직동	640의20(동원맨션 A동), 640의9(동원맨션 B동, C동)
	제2반	사직동	638의9 ~ 638의11, 639의2 ~ 639의4, 639의6, 639의20, 640의23, 640의24, 640의43 ~ 640의51, 640의53 ~ 640의60, 640의71 ~ 640의77
	제3반	사직동	638, 638의1, 638의6 ~ 638의9, 638의41 ~ 638의44, 638의46, 639의8, 639의47, 641의7, 641의40, 641의55, 641의58, 641의63, 641의66
	제4반	사직동	641의41, 638의32 ~ 638의38, 638의62, 638의63, 638의58, 630의76 ~ 630의79, 639의1, 639의5, 639의10 ~ 639
제10통	제1반	사직동	641의43, 641의44, 687의4, 687의8, 688의35 ~ 688의44, 688의47 ~ 688의52
	제2반	사직동	641의 2, 641의10, 641의29 ~ 641의31, 641의36, 641의37, 641의51, 642의50, 642의51, 644, 688의57, 688의59, 688의108
	제3반	사직동	640의17, 641의19, 642의10 ~ 642의12, 642의15, 642의21, 642의30, 642의42, 642의45 ~ 642의49, 643의3, 643의12, 644의21 ~ 644의29, 644의37, 644의48, 649의48,
	제4반	사직동	6649의7, 649의14, 649의15, 649의72, 649의75, 687의7, 687의29, 649의74
제11통	제1반	사직동	549의8, 549의16, 549의22, 648의9 ~ 648의11, 648의20 ~ 648의23, 648의25 ~ 648의30, 649의1, 649의3, 649의5, 649의27
	제2반	사직동	594의1 ~ 594의7, 594의10 ~ 594의12, 595의6, 595의13, 648의2 ~ 648의9
	제3반	사직동	595의1 ~ 595의5, 595의7 ~ 595의12, 595의18, 595의19, 597의2 ~ 597의12, 597의14, 597의15, 597의29, 597의35, 597의36, 598의7 ~ 598의11
	제4반	사직동	596의2 ~ 596의13, 596의16 ~ 596의19, 597의38, 592의1 ~ 592의8, 593의1 ~ 593의7, 594의17 ~ 594의20, 694의13, 652의1 ~ 652의5,
	제5반	사직동	590, 590의1~590의7, 590의9, 590의10, 590의12~590의18, 590의21, 590의22, 653, 653 의1, 653의2, 654, 720의4, 720의14, 720의 20, 720의31, 720의33 ~ 720의37, 720의39, 584의11, 584의20, 584의89 ~ 584의104
제12통	제1반	사직동	681의3 ~ 681의4, 684의2, 685, 685의3, 685의12 ~ 685의14, 687의1, 687의9 ~ 687의21
	제2반	사직동	681의12 ~ 681의14, 684의3, 684의5 ~ 684의7, 689의4, 689의26, 689의27, 690, 689의5 ~ 689의9, 685의5 ~ 685의9, 689의11, 689의13, 685의16, 689의 24, 685의7, 689

	제3반	사직동	691의11 ~ 691의12, 691의23, 689, 689의1, 689의 21, 689의29, 690의2 ~ 690의5, 690의7, 684의12 ~ 684의14, 680의1, 680의3, 680의4, 594의15, 692, 692의30, 693의 2, 693의3, 693의15 ~ 693의16, 691, 691의1 ~ 691의7, 691의15, 691의16, 691의11, 691의18, 684의15, 680의5, 678의2, 678의3, 678의6, 678의8, 678의11
	제4반	사직동	656, 656의1, 657, 681의1, 681의5 ~ 681의10, 682, 683, 653의3, 655의2
제13통	제1반	사직동	688, 688의3, 688의7, 688의8, 688의62 ~ 688의64, 688의 67 ~ 688의72, 688의83, 688의88, 688의92, 688의93, 688 의 95, 688의3, 692의3, 687의22, 688 의14 ~ 688의18, 688의24 ~ 688의29, 688의75 ~ 688의77, 688의80, 688의 81, 688의 97, 688의111
	제2반	사직동	688의19, 638의27 ~ 638의30, 638의57, 638의58, 638의 54, 637의5, 688의9, 638의2, 638의20 ~ 638 의24, 631의 132, 638의83, 638의84, 638의87, 638의45, 637의10, 637의11, 693의28, 693의60, 693의61
	제3반	사직동	692의2, 692의21, 692의27, 692의16, 692의22, 692의31, 693의1, 693의25, 693의26, 693의30, 693의31 ~ 693의 41, 693의43 ~ 693의54, 693의5 5 ~ 693의59, 693의29, 693의64, 638의81, 638의13
	제4반	사직동	688의1, 688의2, 692의18(삼영아파트 101호 806호)
제14통	제1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01동 101호 ~ 2403호
	제2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01동 104호 ~ 2406호
	제3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02동
	제4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03동
	제5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04동 101호 ~ 2203호
	제6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04동 104호 ~ 2306호
제15통	제1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05동
	제2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06동
	제3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07동
	제4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08동 101호 ~ 2503호
	제5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08동 104호 ~ 2206호
제16통	제1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09동
	제2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10동
	제3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11동
	제4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12동 101호 ~ 2203호
	제5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12동 104호 ~ 2006호
제17통	제1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13동
	제2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14동
	제3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15동
	제4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16동
	제5반	사직동	931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17동
제18통	제1반	사직동	92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201동, 666-27, 666-14,
	제2반	사직동	928 푸르지오캐슬아파트 301동 201호 ~ 2003호
	제3반	사직동	928 푸르지오캐슬아파트 301동 204호 ~ 2006호
	제4반	사직동	928 푸르지오캐슬아파트 302동
제19통	제1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01동 201호 ~ 2503호
	제2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01동 204호 ~ 1806호
	제3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02동 101호 ~ 2303호
	제4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02동 104호 ~ 2306호
	제5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03동
	제6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04동
제20통	제1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05동
	제2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06동 101호 ~ 1903호
	제3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06동 104호 ~ 1706호
	제4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07동 101호 ~ 2303호
	제5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07동 104호 ~ 2306호
	제6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08동

			제21통	제1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09동
				제2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10동
				제3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11동
				제4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12동 101호 ~ 2203호
				제5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12동 104호 ~ 1806호
				제6반	사직동	937 푸르지오캐슬아파트 413동
			제22통	제1반	사직동	934 푸르지오캐슬아파트 501동
				제2반	사직동	934 푸르지오캐슬아파트 502동
				제3반	사직동	934 푸르지오캐슬아파트 503동
				제4반	사직동	934 푸르지오캐슬아파트 504동
			제23통	제1반	사직동	934 푸르지오캐슬아파트 505동
				제2반	사직동	934 푸르지오캐슬아파트 506동
				제3반	사직동	934 푸르지오캐슬아파트 507동
				제4반	사직동	934 푸르지오캐슬아파트 508동
1	사창동	1	제1통	제1반	사창동	240의1 ~ 240의6, 240의10 ~ 240의30, 240의7(서원연립 가동 101 ~ 306호)
				제2반	사창동	241의3 ~ 241의6, 241의8, 241의13, 241의1(서원연립 나동 101 ~ 306호)
				제3반	사창동	사창동 241의2(로얄A 가동 101 ~ 508호)
				제4반	사창동	사창동 241의2(로얄A 나동 101 ~ 506호)
			제2통	제1반	사창동	242의3, 242의4, 242의6 ~ 242의13, 242의17, 242의20 ~ 242의32
				제2반	사창동	244의1 ~ 244의4, 244의6, 244의8 ~ 244의25
				제3반	사창동	245의1 ~ 245의6, 245의9 ~ 245의16, 245의20 ~ 245의27, 245의30 ~ 245의36
				제4반	사창동	243의1 ~ 243의3, 243의5 ~ 243의32
			제3통	제1반	사창동	247의1, 247의2, 247의4, 247의6 ~ 247의9, 247의11, 247의14 ~ 247의21, 247의23 ~ 247의29, 247의31 ~ 247의36, 247의38 ~ 247의41, 247의43 ~ 247의47
				제2반	사창동	254의1 ~ 254의7, 254의9 ~ 254의26
				제3반	사창동	251의1 ~ 251의5, 251의7, 251의8, 251의12 ~ 251의24, 251의27, 251의29, 251의30, 251의32 ~ 251의40
				제4반	사창동	255의1 ~ 255의8, 255의10 ~ 255의12, 255의15 ~ 255의27
			제4통	제1반	사창동	248의10(동신연립 A.B.C동 101 ~ 208호)
				제2반	사창동	248의1 ~ 248의4, 248의6 ~ 248의17, 248의19 ~ 248의21
				제3반	사창동	246의1 ~ 246의15, 246의18, 246의20, 246의 22, 246의 23, 246의25 ~ 246의29
				제4반	사창동	249의6(중앙A 가동 101 ~ 508호), 249의1, 249의3, 249의 5, 249의13, 249의14, 249의19, 249의20, 249의22
				제5반	사창동	249의 6(중앙A 나동 101 ~ 508호), 249의9 ~ 249의12, 249의15, 249의18, 249의21, 249의24 ~ 294의26, 249의29, 249의30
			제5통	제1반	사창동	250의1 ~ 250의22, 250의24, 250의26 ~ 250의37, 250의
				제2반	사창동	252의2 동남주택 101 ~ 502호, 252의3 서원연립 A.B동 101 ~ 205호, 252의1, 252의2, 252의4 ~ 252의14, 252의 16 ~ 252의23, 252의25
				제3반	사창동	253의1, 253의2, 253의6, 253의11, 253의15, 53의16, 253의18 ~ 253의20
				제4반	사창동	253의4(평화A A동 101 ~ 508호, B동 101 ~ 506호)
			제6통	제1반	사창동	227의2(현대A 101동 101 ~ 1402호, 103 ~ 1404호)
				제2반	사창동	227의2(현대A 101동 105 ~ 1406호, 107 ~ 1408호, 109 ~ 1109호, 110 ~ 710호)
				제3반	사창동	227의2(현대A 102동 101 ~ 1402호, 103 ~ 1404호)
				제4반	사창동	227의2(현대A 102동 105 ~ 1406호, 107 ~ 1407호, 108 ~ 808호)
			제7통	제1반	사창동	232의1 ~ 232의23
				제2반	사창동	234의1 동구주택 101 ~ 404호, 234의2 ~ 234의8, 234의11, 234의12
				제3반	사창동	236의2 ~ 236의19
				제4반	사창동	238의1 ~ 238의10, 239의1 ~ 239의8
			제8통	제1반	사창동	228의1 ~ 228의8, 229의1, 229의2, 229의4 ~ 229의10, 229의12 ~ 229의14, 229의16 ~ 229의18, 229의20, 229의
				제2반	사창동	230의15 초원연립 101 ~ 205호, 230의1 ~ 230의18, 230의

	제3반	사창동	231의1 ~ 231의32
제9통	제1반	사창동	208의1 ~ 208의7, 209의1 ~ 209의6, 209의8 ~ 209의12, 211의1 ~ 211의7, 211의9, 211의11, 211의13 ~ 211의15
	제2반	사창동	221의1 ~ 221의10, 221의12 ~ 221의17, 221의19, 221의20, 221의22 ~ 221의26, 221의28 ~ 221의33
	제3반	사창동	403의1 ~ 8, 222의1 ~ 31
제10통	제1반	사창동	188의1, 188의2, 188의4 ~ 13, 188의15 ~ 19, 188의21 ~ 23, 188의25 ~ 28
	제2반	사창동	189의1 ~ 18
	제3반	사창동	190의1 ~ 24, 190의26 ~ 30, 190의12(동성빌라 101 ~ 202
제11통	제1반	사창동	186의1 ~ 23
	제2반	사창동	187의7(동남주택 가.나동 101 ~ 402호),187의1 ~ 6, 187의8 ~ 30
	제3반	사창동	225의1 ~ 19, 226의2, 226의3
제12통	제1반	사창동	159의1 ~ 14, 160의1 ~ 5, 180의1 ~ 9,180의11 ~ 13, 180의15, 180의16
	제2반	사창동	157의1 ~ 26, 158의1 ~ 6
	제3반	사창동	181의1 ~ 181의27
	제4반	사창동	183의1 ~ 3, 183의5 ~ 7, 183의9 ~ 12
제13통	제1반	사창동	185의1 ~ 13, 185의15 ~ 18
	제2반	사창동	184의1, 184의6, 184의8, 184의9, 184의1, 2, 3(동신A 가동 101 ~ 304호), 184의1, 2, 3, 5(동신A 나.다동 101 ~ 306호), 184의7(동신A 라동 101 ~ 303호)
	제3반	사창동	207의1(동신A 마동 101 ~ 306호, 지하 1 ~ 6호), 207의2 ~
	제4반	사창동	191의2 ~ 12, 191의1(조양연립 101 ~ 302호), 183(조양연립 지하 1호), 191의2(조양연립 지하 2호), 198의1 ~ 12
제14통	제1반	사창동	130의1 ~ 130의20, 130의14 대한빌라 A동 101 ~ 302호, 130의3 대한빌라 B동 101 ~ 302호
	제2반	사창동	131의1, 131의3 ~ 131의16, 131의2 제일빌라 101 ~ 303호, 131의 2 서부연립 101 ~ 309호
	제3반	사창동	132의1 ~ 32, 144의1 ~ 4, 145의1, 145의2, 145의 7
제15통	제1반	사창동	129의1 ~ 3, 129의5, 129의6, 129의8 ~ 10,129의7(동구주택 가동 101 ~ 404호),129의4(동구주택 나동 101 ~ 404호),129의11(태산빌라 101 ~ 308호)
	제2반	사창동	133의1 ~ 6, 133의8 ~ 18, 134의1 ~ 15
	제3반	사창동	135의1 ~ 135의17
제16통	제1반	사창동	136의1(청우A A동 101 ~ 508호, B동 101 ~ 509호), 136의3, 136의4, 136의7
	제2반	사창동	137의1 ~ 22, 137의2(동남주택 101 ~ 302호)
	제3반	사창동	138의1 ~ 30
	제4반	사창동	141의1 ~ 6, 141의9 ~ 14, 141의19 ~ 28,141의32 ~ 34, 141의7(금호연립 A동 101 ~ 202호, B동 101 ~ 102호), 143의1 ~ 10, 148의1 ~ 7, 171의1 ~ 20
제17통	제1반	사창동	146의1 ~ 26
	제2반	사창동	139의1 ~ 30
	제3반	사창동	147의1 ~ 19
	제4반	사창동	140의1 ~ 12, 140의14 ~ 20
제18통	제1반	사창동	149의1 ~ 12, 150의2 ~ 35,150의1(현대A 3동 101 ~ 506호)
	제2반	사창동	151의1 ~ 11, 152의1 ~ 19
	제3반	사창동	154의1(현대A 4동 101 ~ 609호),154의8(현대A 5동 101 ~ 301호, 지하호),153의1, 153의2, 153의4 ~ 8, 153의10,154의5 ~ 7, 155의1 ~ 10, 156의1 ~ 8,156의10 ~ 15
제19통	제1반	사창동	산54의5, 산54의11, 산54의12, 446 ~ 474, 213의1, 217의7, 217의9 ~ 217의11, 217의21, 217의22, 217의27, 380의1(총북대 기숙사), 385의11, 385의15, 385의19 386의4, 386의8, 386의9, 386의11, 386의15, 386의16, 386의18 ~ 386의20, 386의22
	제2반	사창동	405 ~ 445
	제3반	사창동	475, 507 ~ 519, 508(동구주택 101 ~ 404호)
	제4반	사창동	476 ~ 479, 496 ~ 506, 503(청구오피스텔),503, 503의1(청주오피스텔 101 ~ 306호), 504의1, 505(캠퍼스빌 101 ~
	제5반	사창동	480 ~ 495, 520 ~ 532
제20통	제1반	사창동	257의1 ~ 15, 257의20 ~ 22, 258의 1 ~ 5,259의1 ~ 7, 259의10 ~ 12, 259의17, 259의 18

	제2반	사창동	261의1~8, 261의11~16, 296의3~10, 302의1~7, 303의1~8
	제3반	사창동	304의1~12, 305의1~4, 305의6, 305의8~10, 305의12, 305의13, 305의15, 305의17~20, 305의23~25, 305의32
	제4반	사창동	306의1~4, 308의1~19, 310의1~5, 310의7, 310의9~11, 312
제21통	제1반	사창동	316의3~34
	제2반	사창동	316의35~46, 316의60~62, 316의70, 316의74, 316의82, 319의2, 319의15, 319의16~19, 320의1, 320의2, 320의4, 320의5, 320의7, 320의5(세종오피스텔 101~505호), 321의1, 321의3~9, 321의13
	제3반	사창동	316의47~58, 316의77, 316의107, 316의123, 316의127, 316의129, 317의8, 290의75316의48(은석빌딩 101~506호), 316의51(광성빌딩 101~305호), 316의56(동영빌딩 101~505호), 317의8, 290의75
제22통	제1반	사창동	292의5, 292의6, 292의8~10, 295의1, 295의2, 297의1~3, 297의6~8, 298의2, 298의3, 298의10~12, 298의14, 298의16~18, 298의22, 298의30
	제2반	사창동	299의1~3, 299의6~18, 300의1, 300의3~6, 300의8, 300의12, 300의16, 300의10(삼덕빌라 101~402호), 301의1, 301의51, 301의53~58, 301의61~63, 301의67
	제3반	사창동	290, 290의9, 290의21, 290의31, 290의32, 290의55, 290의56, 290의71, 291의2~291의8, 292의2, 298의7 오양연립 A·B동 101~205호, 357
	제4반	사창동	290의1, 290의4, 290의7, 290의10, 290의48, 290의112, 290의113, 290의115, 290의121, 290의122, 291의3~291의8, 291의11, 291의14, 291의21, 301의3~27, 323의1~3, 323의30, 323의49
제23통	제1반	사창동	290의34~290의43, 290의57~290의64, 290의68, 290의75, 290의94, 290의98
	제2반	사창동	290의5, 290의49, 290의51~290의54, 290의72~290의74, 290의102, 290의106, 301의28~301의33, 301의36~301의47, 290의15 늘봄연립 가·나동 101~304호
	제3반	사창동	289의3, 290의20, 290의23, 290의24, 290의26, 290의45, 290의47, 290의67, 290의70, 290의96, 290의110, 290의119, 290의134, 357의26~357의29, 357의103
	제4반	사창동	290의2, 290의22, 290의29, 290의78, 290의79, 290의83~290의86, 290의100, 290의111, 290의120, 290의128, 290의130, 290의135, 301의34, 301의35, 301의65, 301의68, 301의69, 357의68, 357의69, 357의71~357의73, 357의98, 357의99, 357의115, 357의117, 357의118
	제5반	사창동	357의43, 357의45~48, 357의74, 357의80~93, 357의121, 357의151
제24통	제1반	사창동	357의31(통경목련A 101~608호)
	제2반	사창동	357의37, 357의38, 357의40, 357의41, 357의66, 357의139, 357의150, 359의44~46, 360의2, 360의5, 360의29~32, 360의59
	제3반	사창동	359의51~359의54, 359의57, 360의1, 360의36, 360의42, 360의44, 360의47, 360의48, 360의50, 360의51, 360의53, 360의57, 361의4, 361의74~361의80, 361의82, 361의85, 361의87~361의89, 361의91, 361의94
	제4반	사창동	360의6~360의28, 360의35, 356의1~356의7, 356의10~356의12, 356의14, 356의15, 356의21, 356의31~356의33, 357의8, 357의114
	제5반	사창동	357의2(덕성빌라 A·B동 101~402호), 357의4, 357의6, 357의49~357의65, 357의122, 357의132~357의134, 357의149, 357의152
제25통	제1반	사창동	369의30~369의50, 369의66~369의73, 369의75~369의
	제2반	사창동	369의2, 369의7, 369의8, 369의10~369의12, 369의14~369의23, 369의27, 369의28, 369의55, 369의60~369의63, 산 54, 산62의3
	제3반	사창동	363의14, 363의15, 363의54~363의56, 363의73, 366의13~363의24, 366의26, 366의31, 366의33, 366의34, 366의36, 366의37, 366의40, 366의42, 366의44~366의47, 368의3~368의10
	제4반	사창동	353의2, 353의3, 353의5, 353의7, 353의8, 354의8~354의13, 366의4, 366의28~366의30, 366의65, 366의66
제26통	제1반	사창동	359의2, 359의6~11, 359의13, 359의14~19, 359의21~24, 359의41, 359의42
	제2반	사창동	359의30, 359의32~359의35, 359의37, 359의38, 359의47, 359의48, 359의50, 361의3, 361의5~361의10, 361의13, 361의15, 361의19, 361의22, 361의25, 361의26, 361



			제3반	사창동	355의2, 355의3, 355의5, 355의8 ~ 355의10, 355의14 ~ 355의16, 355의26, 355의27, 355의29, 361의37, 361의39, 361의40, 361의44, 361의45	
			제4반	사창동	287의44, 287의63, 287의64, 287의66, 364의6 ~ 364의12, 364의34, 364의49, 364의51 ~ 364의54, 364의56, 364의58, 364의59, 364의60, 364의63, 361의48, 361의49, 361의51 ~ 361의56, 361의58 ~ 361의60, 361의63, 361의64	
			제5반	사창동	362의2, 362의9, 362의15, 364의1, 364의13 ~ 364의15, 364의17 ~ 364의25, 364의27, 364의31, 364의36	
		제27통	제1반	사창동	262의10, 262의15, 286의6 ~ 286의8, 286의10, 286의11, 286의13 ~ 286의16, 286의19, 287의5 ~ 287의11	
			제2반	사창동	286의20, 286의33 ~ 286의37, 286의39, 286의41, 286의46, 286의48, 289의16, 357의13 ~ 357의18	
			제3반	사창동	287의12 ~ 287의27, 287의29, 287의30 ~ 287의33, 287의47, 287의50, 287의53, 287의54, 287의57, 359의3, 359의8, 357의19 ~ 357의25	
			제4반	사창동	359의1, 287의35, 287의46, 288, 288의6, 289의5, 289의8, 357의19 ~ 357의25	
		제28통	제1반	사창동	270(신라@ 2동 101 ~ 608호), 270의2, 270의7, 271의1 ~ 271의4, 266의31, 269의6 ~ 269의10, 269의12, 263의4	
			제2반	사창동	270의1(신라@ 1동 101 ~ 607호), 269의11	
			제3반	사창동	283(신라@ 3동 101 ~ 509호), 285의1	
			제4반	사창동	237의9, 262의5, 262의6, 262의32, 263의1, 263의2, 263의5, 265, 265의1 ~ 265의3, 265의21, 266의1, 266의6, 266의8, 266의10, 267의1, 267의3 ~ 267의7, 267의9, 267의14, 267의17, 268의8	
			제5반	사창동	262의1 ~ 262의3, 262의14, 262의23, 262의24, 293의4, 293의5, 293의9, 293의11, 293의12, 292, 294, 295의3, 295의5, 295의6, 295의7	
			제6반	사창동	262의12, 265의5 ~ 265의9, 265의11, 265의12, 266의12, 266의14 ~ 266의16, 266의17 ~ 266의25, 267의11 ~ 267의18	
			제7반	사창동	262의18 ~ 262의20, 286의2, 286의22, 286의23, 286의28, 286의30, 286의31, 286의52, 293(무궁화연립 가동 101 ~ 206호, 501 ~ 602호, 나동 101 ~ 206호), 286-26 (무궁화연립 다동 101 ~ 102호)	
		제29통	제1반	사창동	285-12(주성@ 1동 101 ~ 506호, 2동 101 ~ 504호), 285-3	
			제2반	사창동	285의12(주성@ 3동 101 ~ 504호, 상가 2호, 4동 101 ~ 506	
			제3반	사창동	281-3, 279의6(주성@ 7동 101 ~ 511호)	
			제4반	사창동	280-1(주성@ 9동 101 ~ 511호)	
			제5반	사창동	272-2(평화@ 101 ~ 509호), 272의2, 272의5, 272의7	
		제30통	제1반	사창동	371-4(조양@ 1동 101 ~ 507호), 370의1	
			제2반	사창동	368의1 부흥@ 101 ~ 503호, 105 ~ 509호	
			제3반	사창동	372의3 서울@ 가동 101 ~ 608호	
			제4반	사창동	369의1 서울@ 나동 101 ~ 606호	
			제5반	사창동	369의5 서울@ 다동 101 ~ 609호	
		31통	제1반	사창동	285-3 대원칸타빌 @ 101동 101호 ~ 2104호, 상가	
			제2반	사창동	285-3 대원칸타빌 @102동 101호 ~ 2504	
			제3반	사창동	285-3 대원칸타빌 @103동 101호 ~ 2102호, 104동 101호 ~ 2502호	
			제4반	사창동	285-3 대원칸타빌 @104동 103호 ~ 2504호 105동 101호 ~ 2102호	
			제5반	사창동	285-3 대원칸타빌 @106동 101호 ~ 1904호	
		32통	제1반	사창동	285-3 대원칸타빌 @107동 101호 ~ 1904호	
			제2반	사창동	285-3 대원칸타빌 @108동 101호 ~ 2504호	
			제3반	사창동	285-3 대원칸타빌 @109동 101호 ~ 1804호	
			제4반	사창동	285-3 대원칸타빌 @110동 101호 ~ 2204호	
			제5반	사창동	285-3 대원칸타빌 @111동 101호 ~ 1804호	
1	모충동	1	제1통	제1반	모충동	94의2 ~ 94의3, 94의5, 94의9 ~ 94의15, 94의17 ~ 94의31
				제2반	모충동	94의7(덕일맨션)
				제3반	모충동	95의1 ~ 95의6, 95의8 ~ 95의17, 95의19 ~ 95의25, 95의27 ~ 95의37, 95의39 ~ 95의47
				제4반	모충동	93의1 ~ 93의18, 93의20 ~ 93의22, 93의24 ~ 93의28, 93의
			제2통	제1반	모충동	92의10 ~ 92의14, 92의17 ~ 92의27, 92 의29 ~ 92의33, 92 의38 ~ 92의45, 92의 36, 92의48 ~ 92의49
				제2반	모충동	83의1 ~ 83의4, 83의6 ~ 83의16, 92의1 ~ 92의6, 92의8 ~ 92 의9, 92의15, 92의16

	제3반	모충동	91의1 ~ 91의6, 91의8, 91의10, 91의12 ~ 91의36, 91의38 ~ 91의4
	제4반	모충동	84의1 ~ 84의5, 84의8 ~ 84의13, 84의15 ~ 84의18, 84의20 ~ 84의29
제3통	제1반	모충동	117의1, 117의2, 117의4 ~ 117의6, 117의8 ~ 117의11, 117의13 ~ 117의14, 117의16 ~ 117의18 ~ 117의20
	제2반	모충동	96의1, 96의3 ~ 15, 96의17 ~ 96의22
	제3반	모충동	97의1 ~ 97의2, 97의4 ~ 97의13, 97의15 ~ 97의17, 97의19 ~ 97의23, 97의25, 97의27 ~ 97의29
	제4반	모충동	101의1 ~ 101의2, 101의4 ~ 101의5, 101의7 ~ 101의8, 101의10 ~ 101의15, 101의17, 101의20 ~ 101의25, 101의27, 101의28, 101의31 ~ 101의32, 101의34, 101의37 ~ 101의38, 101의43
제4통	제1반	모충동	90의1, 90의3 ~ 90의5, 90의7 ~ 90의9, 90의11 ~ 90의15, 90의17 ~ 90의24, 90의26 ~ 90의30, 90의32, 90의34 ~ 90의41, 90의43 ~ 90의47
	제2반	모충동	85의1 ~ 85의22, 85의24 ~ 85의26, 85의28, 85의30 ~ 85의38, 85의40 ~ 85의42, 85의44
	제3반	모충동	86의1 ~ 86의5, 86의7 ~ 86의14, 86의16 ~ 86의19, 86의21 ~ 86의30, 86의32 ~ 86의40, 86의42 ~ 86의43
	제4반	모충동	89의1 ~ 89의3, 89의5 ~ 89의8, 89의10 ~ 89의12, 89의15 ~ 89의16, 89의18 ~ 89의20, 89의24 ~ 89의25, 89의28, 89의30, 89의31 ~ 89의33, 89의36 ~ 89의37, 89의39
	제5반	모충동	89의4(해주A)
제5통	제1반	모충동	98의1 ~ 98의4, 98의7 ~ 98의22, 98의24 ~ 98의27
	제2반	모충동	99의1 ~ 99의3, 99의6 ~ 99의14, 99의16 ~ 99의24, 99의26 ~ 99의30, 99의32 ~ 99의33
	제3반	모충동	88-4(남부상가)
	제4반	모충동	88의1 ~ 88의3, 88의5, 88의9 ~ 88의21
	제5반	모충동	87의1 ~ 87의4, 87의6, 87의7, 87의9, 87의11 ~ 87의22, 87의25, 87의28 ~ 87의35, 87의37 ~ 87의42
제6통	제1반	모충동	118의1, 118의3, 118의5, 118의7 ~ 118의8, 118의20 ~ 118의21, 118의23 ~ 118의27, 118의29 ~ 118의31, 118의33 ~ 118의35
	제2반	모충동	119의1 ~ 119의2, 119의5 ~ 119의23, 119의25 ~ 119의27, 119의29 ~ 119의34, 119의36 ~ 119의38, 119의42 ~ 119의43, 119의47, 119의49, 119의51, 119의53 ~ 119의56, 119의58 ~ 119의61, 119의64 ~ 119의65
	제3반	모충동	120의1 ~ 120의3, 120의5 ~ 120의8, 120의10, 120의12, 120의15 ~ 120의28, 120의35
	제4반	모충동	125의1 ~ 125의14, 125의16, 125의19 ~ 125의20, 125의23 ~ 125의35, 125의37 ~ 125의40, 125의42
제7통	제1반	모충동	121의1 ~ 121의2, 121의4 ~ 121의17, 121의19 ~ 121의26, 121의28 ~ 121의29
	제2반	모충동	122의1 ~ 122의9, 122의11 ~ 122의18, 122의20 ~ 122의25, 122의27 ~ 122의28, 122의31 ~ 122의38
	제3반	모충동	123의1 ~ 123의13, 123의15 ~ 123의17, 123의21 ~ 123의24, 123의26 ~ 123의28, 123의30 ~ 123의34, 123의36
	제4반	모충동	124의1 ~ 124의14, 124의16 ~ 124의26, 124의28 ~ 124의30, 124의32, 124의34 ~ 124의35, 124의41
제8통	제1반	모충동	293의1 ~ 293의3, 522의5, 294의3, 132의1 ~ 132의4, 132의6, 132의8 ~ 132의10, 132의13, 132의57 ~ 132의68, 132의72, 132의70, 132의17 ~ 132의20, 132의28, 132의30 ~ 132의31, 220
	제2반	모충동	133의1, 133의3 ~ 133의4, 133의6 ~ 133의9, 133의11, 133의13 ~ 133의21, 133의23 ~ 133의25, 133의56 ~ 133의59, 133의63, 133의66
	제3반	모충동	133의26, 133의28 ~ 133의38, 133의40 ~ 133의44, 133의46 ~ 133의54, 133의60 ~ 133의62, 133의68
	제4반	모충동	131, 130의1 ~ 130의2, 130의4 ~ 130의25
	제5반	모충동	134의1 ~ 134의8, 134의11 ~ 134의15, 134의17 ~ 134의24, 134의26 ~ 134의27, 134의29 ~ 134의34, 134의36 ~ 135의47, 134의49 ~ 134의50, 134의52
제9통	제1반	모충동	129의1 ~ 129의2, 129의5 ~ 129의18, 129의21 ~ 129의23, 129의42 ~ 129의43, 129의45 ~ 129의47
	제2반	모충동	126, 126의1, 126의3, 126의10 ~ 126의17, 126의19 ~ 126의21, 129의3, 129의24 ~ 129의29, 129의32 ~ 129의40
	제3반	모충동	127의1 ~ 127의6, 127의8 ~ 127의16, 127의18 ~ 127의29, 127의31 ~ 127의41, 127의43 ~ 127의47
	제4반	모충동	128의1 ~ 128의21, 128의25 ~ 128의34

	제5반	모충동	135의1 ~ 135의11, 135의16 ~ 135의17, 135의30, 135의48, 135의51,
	제6반	모충동	135의12 ~ 135의15, 135의19 ~ 135의28, 135의35, 135의33, 135의38, 135의43 ~ 135의44, 135의53, 135의56
제10통	제1반	모충동	222의1 ~ 222의2, 222의5 ~ 222의9, 223의1, 223의3 ~ 223의4, 223의8 ~ 223의10, 223의12 ~ 223의15
	제2반	모충동	132의33 ~ 132의42, 132의45, 132의54 ~ 132의55, 223의5 ~ 223의7, 223의11, 224, 224의1 ~ 224의8, 226의3 ~ 226
	제3반	모충동	228의1 ~ 228의5, 227의2 ~ 227의3, 227의5 ~ 227의13, 227의32, 227의17, 132의46, 132의48 ~ 132의49, 132의51 ~ 132의52, 227의29
	제4반	모충동	228, 228의6 ~ 228의10, 228의22 ~ 228의27, 228의20, 228의29 ~ 228의30, 228의32, 228의57 ~ 228의61, 228의63 ~ 228의64, 227의4, 227의20 ~ 227의25, 227의28, 227의30, 230의1, 229의1 ~ 229의4
제11통	제1반	모충동	230의8 ~ 230의10, 230의4, 230의14, 230의16 ~ 230의27, 230의30, 228의41 ~ 228의42, 228의44 ~ 228의46, 228의48, 228의65, 228의69 ~ 228의72, 231의61
	제2반	모충동	132의53, 244의2, 244의6 ~ 244의7, 245의12 ~ 245의17, 245의22 ~ 245의30, 245의32 ~ 245의35, 245의38, 246의
	제3반	모충동	246의10, 246의12 ~ 246의15, 246의18, 246의1 ~ 246의5, 246의27, 245의6 ~ 245의10, 245의22, 248의1 ~ 248의2, 248의4 ~ 248의10, 248의12, 248의16, 248의20 ~ 248의22, 248의25 ~ 248의26, 248의28, 248의31, 248의34, 248
	제4반	모충동	136의2 ~ 136의3, 247의21 ~ 247의24, 247의3 ~ 247의7, 247의11 ~ 247의18, 247의28, 247의25 ~ 247의26, 247의30 ~ 247의32, 247의35 ~ 247의36, 247의40, 247의43, 246의16 ~ 246의17, 246의20 ~ 246의21, 248의45, 249의11, 249의14 ~ 249의17, 248의45, 249의21 ~ 249의23
제12통	제1반	모충동	233의24 ~ 233의27, 233의22, 233의35, 233의40 ~ 233의41, 233의50 ~ 233의55, 233의58, 231의41 ~ 231의42, 239, 239의2239의6, 239의8 ~ 239의10, 239의16 ~ 239의17, 239의22 ~ 239의25, 239의29
	제2반	모충동	233의8, 233의15 ~ 233의17, 233의19 ~ 233의21, 233의33, 233의42 ~ 233의49, 236의1 ~ 236의2, 237의16 ~ 237의17, 237의2, 237의6, 237의9, 238의2, 238의5, 238의9
	제3반	모충동	250의5 ~ 250의8, 250의10, 250의18 ~ 250의19, 251의18 ~ 251의20, 251의10 ~ 251의13, 252의3 ~ 252의4, 252의14, 252의16 ~ 252의23, 252의41, 253의7
	제4반	모충동	230의33 ~ 230의38, 231의4, 231의19, 231, 231의28 ~ 231의29, 231의32, 231의36, 231의49, 231의54 ~ 231의58, 239의12 ~ 239의13, 240, 240의1, 241의1, 248의14 ~ 248의15, 249의1 ~ 249의2, 249의6 ~ 249의7, 249의9 ~ 249의10, 249의12, 250의4, 250의15 ~ 250의17, 250의24
제13통	제1반	모충동	251의1 (형석A 가동)
	제2반	모충동	251의1 (형석A 나동)
	제3반	모충동	251의1 (형석A 다동)
	제4반	모충동	251의1 (형석A 라동)
	제5반	모충동	251의1 (형석A 마동)
	제6반	모충동	251의1 (형석A 바동)
	제7반	모충동	249의19 (형석독신자A)
제14통	제1반	모충동	256의28 ~ 256의44, 256의51 ~ 256의53
	제2반	모충동	256의11 ~ 256의24, 256, 256의5, 256의1 ~ 256의2, 256의48 ~ 256의50, 256의58 ~ 256의59, 258의10, 257의1 ~ 257의3, 258의7 ~ 258의8
	제3반	모충동	235의1 ~ 235의5, 235의7 ~ 235의8, 235의24 ~ 235의27, 236의5 ~ 236의11, 236의13, 237의4, 254의1, 255의21, 254의4 ~ 254의7, 255의1 ~ 255의2, 255의4 ~ 255의8, 255의10 ~ 255의11, 255의13 ~ 255의14, 255의16, 255의18
	제4반	모충동	252, 252의1 ~ 252의3, 252의5, 252의7 ~ 252의8, 252의10 ~ 252의12, 252의26 ~ 252의27, 253의1253의2 ~ 253의5, 산59의1, 산60의7
제15통	제1반	모충동	323의6 ~ 323의10, 323의2 ~ 323의3, 324의1 ~ 324의3, 322의4, 304의2, 318의1 ~ 318의2, 305의1 ~ 305의2, 306의1 ~ 306의28, 307의2 ~ 307의7, 307의10 ~ 307의20, 308의1 ~ 308의4, 309, 310, 316의1, 316의3 ~ 316의13, 316의15, 317의1 ~ 317의2, 319의1, 319의3, 319의5 ~ 319의6, 320의1 ~ 320의3, 321, 303의2 ~ 303의3

	제2반	모충동	277의5 ~ 277의10, 277, 산50-11, 277의12 ~ 277의13, 278의1, 278의3 ~ 278의15, 279의1, 279의3 ~ 279의4, 280의5, 280의7, 280의11 ~ 280의13, 280의15, 280의19, 276, 274의1 ~ 274의2, 274의9 ~ 274의11, 275의1 ~ 275의2
	제3반	모충동	327의1, 325의1 ~ 325의5, 322, 322의3, 322의5, 329의2 ~ 329의21, 330의1 ~ 330의5, 331의1, 336의1, 336의3 ~ 336의4, 336의7, 337의3
	제4반	모충동	327의2 ~ 327의6, 326의1 ~ 326의3, 338의6 ~ 338의8, 338의10 ~ 338의11, 338의13 ~ 338의16, 338의18 ~ 338의22, 338의26, 338의57 ~ 338의63, 335의45 ~ 335의47, 335의6, 335의8 ~ 335의10, 335의56, 335의80, 335의135, 335의137 ~ 335의140, 335의146, 335의167, 335의203
제16통	제1반	모충동	331의2 ~ 331의3, 331의7, 332의1, 332의8, 333의1 ~ 333의2, 334의1 ~ 334의4, 335의1 ~ 335의2, 335의5 ~ 335의6, 335의12, 335의15 ~ 335의16, 335의18, 335의39, 335의26 ~ 335의30, 335의43 ~ 335의44, 335의130 ~ 335의134, 335의156 ~ 335의162
	제2반	모충동	266의1 ~ 266의2, 266의4, 267의4, 266의12 ~ 266의18, 266의30, 266의23, 266의33 ~ 266의43, 266의27, 266의69, 277의1, 277의11, 277의14, 267의2
	제3반	모충동	264, 264의3 ~ 264의10, 264의12 ~ 264의13, 265의4 ~ 265의11, 265의14, 265의20, 265의22, 263의10 ~ 263의13, 266의3, 266의32, 266의44 ~ 266의45, 266의47 ~ 266의50, 269의19 ~ 269의20, 269의41, 374의10, 산48의44
	제4반	모충동	269, 269의2, 269의6, 269의4 ~ 269의5, 269의12 ~ 269의17, 269의23 ~ 269의29, 269의48, 374의5, 374의14, 374의33, 374의31, 375의2 ~ 375의5, 375의7, 375의9, 375의12, 375의15, 375의26, 375의28, 375의30, 375의35, 375의40, 375의43, 375의46, 375의48, 375의53, 375의59 ~ 375의61, 256의67, 372, 372의9, 338의36, 369의7, 338의
17통	제1반	모충동	327의7, 327의10 ~ 327의12, 338, 338의5, 339의1 ~ 339의5, 339의8 ~ 339의12, 339의15 ~ 339의16, 339의22, 335의48 ~ 335의62, 335의81 ~ 335의84, 340의1 ~ 340의3, 340의5 ~ 340의10, 340의13 ~ 340의15, 341의1 ~ 341의2,
	제2반	모충동	342(청송A)
	제3반	모충동	341의5, 341의7, 341의9 ~ 341의11, 346의1, 346의2 ~ 346의5, 346의7 ~ 346의9, 346의17 ~ 346의18, 343의9 ~ 343의10, 335의63 ~ 335의65, 335의77, 335의87, 335의96 ~ 335의98, 335의100 ~ 335의102, 335의168, 344, 345, 345의1 ~ 345의4
	제4반	모충동	551의1 ~ 551의8, 551의10 ~ 551의11, 551의13 ~ 551의16, 551의19 ~ 551의21, 551의24 ~ 551의25
	제5반	모충동	361의21 ~ 361의27, 361의3, 361의5, 361의7 ~ 361의8, 361의30, 361의28, 362, 362의2 ~ 362의11, 362의20, 362의24, 363의9 ~ 363의11
	제6반	모충동	361의9 ~ 361의14, 363의1, 363의7, 363의12 ~ 363의15, 364의2, 364의11 ~ 364의14, 364의5 ~ 364의9, 366의3, 366의7, 366의9 ~ 366의11
제18통	제1반	모충동	335의69 ~ 335의76, 335의144, 335의17, 335의104 ~ 335의105, 335의107 ~ 335의108, 335의110 ~ 335의113, 335의118 ~ 335의122, 335의149 ~ 335의150, 338의41, 338의4
	제2반	모충동	335의67 ~ 335의68, 335의95, 335의174 ~ 335의175, 335의202, 335의178, 335의147, 335의172, 370의64 ~ 370의67, 370의69 ~ 370의84, 370의18 ~ 370의19, 370의13, 370의16 ~ 370의17, 370의121 ~ 370의122
	제3반	모충동	370의20 ~ 370의31, 370의87 ~ 370의100, 370의32 ~ 370의34, 370의103 ~ 370의107, 370의109, 370의123 ~ 370의
	제4반	모충동	370의42 ~ 370의44, 370의47 ~ 370의51, 370의46, 370의53 ~ 370의57, 370의110 ~ 370의112, 370의40, 370의114 ~ 370의118,
	제5반	모충동	335의20, 335의22 ~ 335의23, 335의25, 335의32, 335의34, 370의59 ~ 370의62, 335의123 ~ 335의129, 335의145, 335의148, 335의166, 335의197, 335의199, 338의28, 370의59 ~ 370의62
	제6반	모충동	265의1, 265의18, 265의21, 265의26, 268의3, 271, 271의2 ~ 271의3, 272, 270, 270의1 ~ 270의6, 270의8 ~ 270의9, 338의22, 338의30, 338의32, 338의34, 338의78, 375의1
	제7반	모충동	335의173, 335의212, 338의49 ~ 338의51,

	제8반	모충동	369의1 ~ 369의4, 369의6 ~ 369의7, 369의13, 369의16 ~ 369의17, 369의10 ~ 369의11, 370의149 ~ 370의157, 370의4 ~ 370의5, 370의126 ~ 370의128, 370의130 ~ 370의132, 370의161, 370의141, 370의144 ~ 370의145, 370의147 ~ 370의148, 371의2, 371의23 ~ 371의28, 371의11, 371의31 ~ 371의38, 375, 389의4, 388의4
제19통	제1반	모충동	374의1(삼익세라믹A101동101호 ~ 1102호)
	제2반	모충동	374의1(삼익세라믹A101동103호 ~ 1304호)
	제3반	모충동	374의1(삼익세라믹A101동105호 ~ 1506호)
	제4반	모충동	374의1(삼익세라믹A101동107호 ~ 1508호)
	제5반	모충동	374의1(삼익세라믹A101동109호 ~ 912호)
	제6반	모충동	374의1(삼익세라믹A102동101호 ~ 1502호)
	제7반	모충동	374의1(삼익세라믹A102동103호 ~ 1504호)
	제8반	모충동	374의1(삼익세라믹A102동105호 ~ 1506호, 상가)
제20통	제1반	모충동	473(두산한솔A101동101호 ~ 1502호, 상가)
	제2반	모충동	473(두산한솔A101동103호 ~ 1504호)
	제3반	모충동	473(두산한솔A101동105호 ~ 1506호)
	제4반	모충동	473(두산한솔A101동107호 ~ 1508호)
	제5반	모충동	473(두산한솔A102동101호 ~ 1202호)
	제6반	모충동	473(두산한솔A102동103호 ~ 1204호)
	제7반	모충동	473(두산한솔A102동105호 ~ 1206호)
	제8반	모충동	473(두산한솔A102동107호 ~ 1208호)
제21통	제1반	모충동	473(두산한솔A103동101호 ~ 1001호, 102호 ~ 1202호)
	제2반	모충동	473(두산한솔A103동103호 ~ 1203호, 104호 ~ 1204호)
	제3반	모충동	473(두산한솔A103동105호 ~ 1205호, 106호 ~ 1206호)
	제4반	모충동	473(두산한솔A103동107호 ~ 1207호, 108호 ~ 1208호)
	제5반	모충동	473(두산한솔A104동101호 ~ 801호, 102호 ~ 802호, 103 ~ 1003호, 104호 ~ 1004호)
	제6반	모충동	473(두산한솔A104동105호 ~ 1205호, 106호 ~ 1206호)
	제7반	모충동	473(두산한솔A104동107호 ~ 1207호, 108호 ~ 1208호)
제22통	제1반	모충동	365의4 ~ 351의7, 366의1, 367의1 ~ 367의2, 367의4 ~ 367의6, 367의8 ~ 367의9, 388의10, 405의1, 405의4 ~ 405의5, 405의8 ~ 405의10, 405의12 ~ 405의13, 405의15, 405의23, 406의2, 446의22, 410의1 ~ 410의2, 410의5 ~ 410의9, 411의1, 411의4 ~ 411의14, 412의1, 412의5, 412의7, 413의1, 414의3, 414의21, 414의12 ~ 414의13, 414의15 ~ 414의18, 414의21
	제2반	모충동	366의12, 366의6, 368의1, 368의5, 368의7 ~ 368의9, 408의1 ~ 408의7, 409의1, 409의4 ~ 409의5, 407의1 ~ 407의6, 389의1, 389의6 ~ 389의10, 388의5, 392의2, 392의7, 401의1, 401의3, 403의1 ~ 403의2, 402, 404, 404의1 ~ 404의3, 405의2 ~ 405의3, 405의7, 405의16, 405의18, 405의26, 405의28, 446의23 ~ 446의24, 410의1
	제3반	모충동	388의1, 388의7 ~ 388의10, 388의12 ~ 388의14, 387의3 ~ 387의6, 387의8, 392의3, 393의1 ~ 393의2, 394, 394의1, 395, 396, 386의1, 386의4 ~ 386의10, 401의2, 400, 399의1 ~ 399의3, 386의2 ~ 386의3, 386의24 ~ 386의26, 402의2, 398의1, 397의3, 371의8, 371의10, 371의15, 371의17 ~ 371의18, 371의20 ~ 371의22, 371의29 ~ 371의30
	제4반	모충동	387의1(세진A)
제23통	제1반	모충동	446의20(삼호A201동 101호 ~ 1002호)
	제2반	모충동	446의20(삼호A201동 103호 ~ 1004호)
	제3반	모충동	446의20(삼호A201동 105호 ~ 1506호)
	제4반	모충동	446의20(삼호A202동 101호 ~ 1302호)
	제5반	모충동	446의20(삼호A202동 103호 ~ 1303호, 104호 ~ 904호)
	제6반	모충동	446의1, 446의3, 446의5, 446의8, 446의11 ~ 446의15, 446의10, 446의30, 446의21, 448의1, 448의3 ~ 448의4, 448의6, 448의11 ~ 448의13, 448의15, 448의23
제24통	제1반	모충동	446의35(삼호A101동101호 ~ 1001호, 102호 ~ 1202호)
	제2반	모충동	446의35(삼호A101동103호 ~ 1203호, 104호 ~ 1204호)
	제3반	모충동	446의35(삼호A101동105호 ~ 1205호, 106호 ~ 1006호)
	제4반	모충동	446의35(삼호A102동101호 ~ 1001호, 102호 ~ 1202호)

	제5반	모충동	446의35(삼호A102동103호 ~ 1203호,104호 ~ 1204호)
	제6반	모충동	446의35(삼호A102동105호 ~ 1205호,106호 ~ 1006호)
제25통	제1반	모충동	주공A 101동
	제2반	모충동	주공A 102동
	제3반	모충동	주공A 103동
	제4반	모충동	주공A 104동
제26통	제1반	모충동	주공A 105동
	제2반	모충동	주공A 106동
	제3반	모충동	주공A 107동
	제4반	모충동	주공A 108동
	제5반	모충동	448의18, 449의2, 449의4 ~ 449의13, 449의15 ~ 449의16, 449의20 ~ 449의21, 450, 451의6 ~ 451의8, 451의10, 451의13 ~ 451의16, 452의2
제27통	제1반	모충동	397, 385의1 ~ 385의2, 469의1, 470의1, 386의28 ~ 386의31, 470의3 ~ 470의5, 469의3 ~ 469의5, 469의7 ~ 469의8, 469의16, 471의1, 471의3 ~ 471의4, 471의7, 472, 472의1, 476의1 ~ 476의2, 474의2, 475의1, 477의1 ~ 477의2, 478의1 ~ 478의2, 478의7, 478의10 ~ 478의12, 482의1 ~ 482의6, 483의1 ~ 483의2, 483의4
	제2반	모충동	467의6 ~ 467의15, 461의2, 461의5, 461의6,461의9, 462의1, 462의11, 463의1, 463의3, 464,465, 465의2, 466의1 ~ 466의2, 468의5 ~ 468의6,484의.1 484의6, 484의8 ~ 461의3 ~ 461의4, 461의11, 461의14, 461의19, 462의2, 462의9, 462의14, 463의2, 463의5 ~ 463의6, 473의4, 478의4, 478의8 ~ 478의9, 479의2, 480의1 ~ 480의3, 480의6, 480의8 ~ 480의9, 481, 481의4, 481의2, 483의3, 484의2, 484의5, 484의7, 484의20, 484의16, 485의1 ~ 485의5, 487의1 ~ 487의3, 487의6 ~ 487의8,487의10 ~ 487의12,
	제3반	모충동	460의3 ~ 460의4, 460의11, 487의12, 487의20, 487의22 ~ 487의23, 487의28, 487의30, 487의33, 488의2 ~ 488의4, 488, 488의7 ~ 488의8, 488의10, 489의1 ~ 489의5, 489의9 ~ 489의10, 489의13 ~ 489의14
	제4반	모충동	451의1, 451의3 ~ 451의5, 453의3, 453의6 ~ 453의7, 453의9 ~ 453의11, 453의13 ~ 453의14, 453의21, 455, 455의3 ~ 455의10, 455의12 ~ 455의13, 456의1 ~ 456의2, 500의3, 501의3, 501의5, 501의7 ~ 501의16, 501의18 ~ 501의24, 501의27 ~ 501의28
제28통	제1반	모충동	451의1, 451의3 ~ 451의5, 453의3, 453의6 ~ 453의7, 453의9 ~ 453의11, 453의13 ~ 453의14, 453의21, 455, 455의3 ~ 455의10, 455의12 ~ 455의13, 456의1 ~ 456의2, 500의3, 501의3, 501의5, 501의7 ~ 501의16, 501의18 ~ 501의24, 501의27 ~ 501의28
	제2반	모충동	455의15 ~ 455의20, 456, 457의2 ~ 457의7, 457의10, 458, 459의1 ~ 459의2, 459의4 ~ 459의6, 459의8 ~ 459의12, 460의5, 460의6 ~ 490의8, 491,500의8
	제3반	모충동	457의1(삼우A)
	제4반	모충동	490의1(삼덕A)
	제5반	모충동	498의1, 498의5 ~ 498의9, 496의5 ~ 496의6, 496의15, 496의1 ~ 496의3, 497의1 ~ 497의3, 497의5 ~ 497의7, 499의3 ~ 499의4, 500의11, 520의13, 520의31, 520의19, 520의20, 520의29
제29통	제1반	모충동	487의35(그린맨션 101호 ~ 601호, 102호 ~ 602호, 103호 ~ 603호, 105호 ~ 605호, 106호 ~ 606호, 107호 ~ 607호)
	제2반	모충동	487의35(그린맨션 108호 ~ 608호, 109호 ~ 609호, 110호 ~ 610호, 111호 ~ 611호, 112호 ~ 612호, 113호 ~ 613호)
	제3반	모충동	487의35(그린맨션 114호 ~ 614호,115호 ~ 615호, 116호 ~ 616호, 117호 ~ 617호)
	제4반	모충동	487의4(원당맨션)
제30통	제1반	모충동	492(금호타운 1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제2반	모충동	492(금호타운 101동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3반	모충동	492(금호타운 101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4반	모충동	492(금호타운 102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제5반	모충동	492(금호타운 103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제6반	모충동	492(금호타운 103동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7반	모충동	492(금호타운 1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제8반	모충동	492(금호타운 104동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31통	제1반	모충동	492(금호타운 105동 101호 ~ 1301호, 102호 ~ 1302호)
	제2반	모충동	492(금호타운 105동 103호 ~ 1303호, 104호 ~ 1304호)
	제3반	모충동	492(금호타운 105동 105호 ~ 1305호, 106호 ~ 1306호)

	제4반	모충동	492(금호타운 106동 101호 ~ 1001호, 102호 ~ 1002호, 103호 ~ 1003호, 104호 ~ 1004호)
	제5반	모충동	492(금호타운 107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제6반	모충동	492(금호타운 107동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32통	제1반	모충동	420의38, 424의1 ~ 424의2, 424의4, 424의6 ~ 424의8, 423의1 ~ 423의7, 423, 423의17 ~ 423의18, 423의24 ~ 423의25, 423의28, 423의12, 425의7 ~ 425의10, 425의3, 425의31 ~ 425의34, 425의60 ~ 425의68, 425의76 ~ 425의77, 425의96, 425의116 ~ 425의121, 425의126
	제2반	모충동	425의12 ~ 425의14, 425의25, 425의37 ~ 425의38, 425의46 ~ 425의50, 425의69 ~ 425의74, 425의78 ~ 425의79, 425의81 ~ 425의87, 425의90, 425의112 ~ 425의114, 425의101 ~ 425의102, 425의123, 425의125, 425의155, 425의
	제3반	모충동	419의1, 420, 420의1 ~ 420의2, 420의5 ~ 420의6, 420의8, 420의28 ~ 420의30, 420의15 ~ 420의16, 420의13, 420의20 ~ 420의21, 420의23, 420의39 ~ 420의42, 420의35, 420의44, 420의66, 420의56, 442의1 ~ 442의2, 442의5, 423의8423의20 ~ 423의21, 425의16 ~ 425의17, 425의21, 425의36, 425의40 ~ 425의45, 425의51, 425의54, 425의56, 425
	제4반	모충동	414의1, 414의5 ~ 414의10, 361의4, 365의1, 415, 415의1 ~ 415의6, 415의9 ~ 415의10, 415의12, 415의15 ~ 415의18, 415의21 ~ 415의22, 420의31, 420의43, 420의54 ~ 420의55, 417의1, 417, 418의4, 416, 416의1, 338의13, 538의14, 419의2, 427의1, 427의5 ~ 427의8, 427의11 ~ 427의12, 427의17, 428의1 ~ 428의2, 430의1 ~ 430의2, 446, 447의1, 447의3 ~ 447의4
제33통	제1반	모충동	431의2, 431의4 ~ 431의5, 431의7, 431의25 ~ 431의27, 431의11 ~ 431의18, 431의20 ~ 431의24, 431의28, 432의11 ~ 432의14
	제2반	모충동	432의3 ~ 432의9, 432의18, 433의1 ~ 433의4, 433의6 ~ 433의8, 433의10 ~ 433의11, 434의16, 434의1, 445의1, 445의27, 445의29
	제3반	모충동	425의27, 425의93 ~ 425의94, 425의128 ~ 425의129, 425의138 ~ 425의139, 425의141 ~ 425의142, 425의144 ~ 425의145, 425의150, 425의152, 425의148, 425의157, 425의160 ~ 425의162, 431, 431의1, 산19의1, 산19의4, 436의1, 436의130, 436의48, 435의6, 434의3, 435의9
	제4반	모충동	436의2, 436의10 ~ 436의11, 436의13 ~ 436의17, 436의39, 436의49, 436의69, 436의19 ~ 436의22, 436, 436의 ~ 436의5, 436의7 ~ 436의8, 436의51, 436의41, 436의56, 435의1, 435의11 ~ 435의13, 437의1, 437의16
	제5반	모충동	436의24 ~ 436의26, 436의59 ~ 436의62, 437의2 ~ 437의7, 437의12 ~ 437의13, 437의15, 437의18, 438, 438의1, 439의1 ~ 439의2, 439의7 ~ 439의8, 439의13, 439의15, 439의21, 439의67, 439의80, 440의1, 441의1, 441의6 ~
	제6반	모충동	434의4, 434의10, 435의15 ~ 435의17, 441의5, 441의10 ~ 441의15, 440의49 ~ 440의56, 440의67, 442의2, 442의7 ~ 442의10, 442의12, 442의14 ~ 442의17, 442의21 ~ 442의24, 442의26, 442의30 ~ 442의34, 443의15, 443의1, 443의18, 443의20, 444의1, 444의4
	제7반	모충동	440의66, 440의71 ~ 440의75, 443, 443의2 ~ 443의3, 443의5, 443의7 ~ 443의11, 443의14, 443의16 ~ 443의17, 443의19, 443의23, 445의2, 445의5, 445의12 ~ 445의18
제34통	제1반	모충동	498, 498의10 ~ 498의11, 449의1, 500의6, 503의2 ~ 503의4, 503의7, 504, 502의2, 505의3, 505의5, 505의1, 505의21 ~ 505의22, 507, 508의1 ~ 508의2, 509, 509의1, 510, 511, 511의1 ~ 511의2, 514의1 ~ 514의2, 515의1 ~ 515의2, 산11의4, 516의5, 518의1 ~ 518의6, 519의1 ~ 519의5, 519의8, 520의1 ~ 520의2, 520의15 ~ 520의16
	제2반	모충동	439의23 ~ 439의27, 439의72 ~ 439의74, 440의8 ~ 440의19, 440의82, 512의1, 512의13 ~ 512의14, 516의3, 513
	제3반	모충동	512의2 ~ 512의3, 512의11 ~ 512의12, 512의15, 512의6 ~ 512의8, 512의10, 512, 505의6 ~ 505의8, 440의21 ~ 440의30, 440의32 ~ 440의37, 440의40 ~ 440의44, 440의46 ~ 440의48, 440의76 ~ 440의77, 440의4, 440의86, 440의94,
	제4반	모충동	440의57 ~ 440의64, 440의78, 440의88, 440의92, 505의4, 505의12 ~ 505의18, 505의20, 505의24 ~ 505의26, 503의1, 503의5, 500의1, 501의17, 산13의6, 501의2
	제5반	모충동	502(우석연립)
	제35통	제1반	모충동
	제2반	모충동	516(주공2단지아파트 202동)
	제3반	모충동	516(주공2단지아파트 203동)

				제4반	모충동	516(주공2단지아파트 204동)
			제36통	제1반	모충동	516(주공2단지A 205동)
				제2반	모충동	516(주공2단지A 206동)
				제3반	모충동	516(주공2단지A 207동)
				제4반	모충동	516(주공2단지A 212동)
			제37통	제1반	모충동	516(주공2단지A 208동)
				제2반	모충동	516(주공2단지A 209동)
				제3반	모충동	516(주공2단지A 210동)
				제4반	모충동	516(주공2단지A 211동)
			제38통	제1반	모충동	516(주공2단지A 213동)
				제2반	모충동	516(주공2단지A 214동)
				제3반	모충동	516(주공2단지A 215동)
				제4반	모충동	516(주공2단지A 216동)
1	산남동	1	제1통	제1반	산남동	666 ~ 668, 670, 669 유승한내들A 101동 101호 ~ 1504호
				제2반	산남동	유승한내들A 102동 101호 ~ 1504호
				제3반	산남동	유승한내들A 103동 101호 ~ 1504호
				제4반	산남동	유승한내들A 103동 105호 ~ 1506호
				제5반	산남동	유승한내들A 104동 101호 ~ 1504호
			제2통	제1반	산남동	669 유승한내들A 105동 101호 ~ 1502호
				제2반	산남동	유승한내들A 106동 101호 ~ 1504호
				제3반	산남동	유승한내들A 106동 105호 ~ 1506호
				제4반	산남동	유승한내들A 107동 101호 ~ 1504호
				제5반	산남동	유승한내들A 107동 105호 ~ 1506호
			제3통	제1반	산남동	672 ~ 677, 671 영조산남권덤A 101동 101호 ~ 1504호
				제2반	산남동	영조산남권덤A 102동 101호 ~ 1404호
				제3반	산남동	영조산남권덤A 103동 101호 ~ 1302호
				제4반	산남동	영조산남권덤A 104동 101호 ~ 1504호
				제5반	산남동	영조산남권덤A 104동 105호 ~ 1506호
			제4통	제1반	산남동	671 영조산남권덤A 105동 101호 ~ 1504호
				제2반	산남동	영조산남권덤A 105동 105호 ~ 1506호
				제3반	산남동	영조산남권덤A 106동 101호 ~ 1504호
				제4반	산남동	영조산남권덤A 107동 101호 ~ 1504호
				제5반	산남동	영조산남권덤A 108동 101호 ~ 1504호
				제6반	산남동	영조산남권덤A 109동 101호 ~ 1504호
				제7반	산남동	영조산남권덤A 109동 105호 ~ 1506호
			제5통	제1반	산남동	678 대원칸타빌1단지A 101동 101호 ~ 1504호
				제2반	산남동	대원칸타빌1단지A 101동 105호 ~ 1506호
				제3반	산남동	대원칸타빌1단지A 102동 101호 ~ 1504호
				제4반	산남동	대원칸타빌1단지A 102동 105호 ~ 1506호
			제6통	제1반	산남동	678 대원칸타빌1단지A 103동 101호 ~ 1504호
				제2반	산남동	대원칸타빌1단지A 103동 105호 ~ 1506호
				제3반	산남동	대원칸타빌1단지A 104동 101호 ~ 1203호
				제4반	산남동	대원칸타빌1단지A 105동 101호 ~ 1202호
			제7통	제1반	산남동	678 대원칸타빌1단지A 106동 101호 ~ 1504호
				제2반	산남동	대원칸타빌1단지A 106동 105호 ~ 1506호
				제3반	산남동	대원칸타빌1단지A 107동 101호 ~ 1504호
				제4반	산남동	대원칸타빌1단지A 107동 105호 ~ 1506호
				제5반	산남동	대원칸타빌1단지A 108동 101호 ~ 1504호
				제6반	산남동	대원칸타빌1단지A 108동 105호 ~ 1506호
			제8통	제1반	산남동	679 대우프르지오A 101동 101호 ~ 1404호
				제2반	산남동	대우프르지오A 101동 105호 ~ 1506호
				제3반	산남동	대우프르지오A 102동 101호 ~ 1504호
				제4반	산남동	대우프르지오A 103동 101호 ~ 1302호
제5반	산남동	대우프르지오A 104동 101호 ~ 1504호				



제9통	제1반	산남동	679 대우프르지오A 105동 101호 ~ 1504호
	제2반	산남동	대우프르지오A 106동 101호 ~ 1504호
	제3반	산남동	대우프르지오A 106동 105호 ~ 1506호
	제4반	산남동	대우프르지오A 107동 101호 ~ 1504호
	제5반	산남동	대우프르지오A 108동 101호 ~ 1504호
제10통	제1반	산남동	679 대우프르지오A 109동 101호 ~ 1404호
	제2반	산남동	대우프르지오A 110동 101호 ~ 1504호
	제3반	산남동	대우프르지오A 111동 101호 ~ 1302호
	제4반	산남동	대우프르지오A 112동 101호 ~ 1504호
	제5반	산남동	대우프르지오A 113동 101호 ~ 1504호
제11통	제1반	산남동	1102 계룡리슈빌A 101동 101호 ~ 1502호, 103호 ~ 1304호
	제2반	산남동	계룡리슈빌A 102동 101호 ~ 1504호
	제3반	산남동	계룡리슈빌A 103동 101호 ~ 1302호
	제4반	산남동	계룡리슈빌A 104동 101호 ~ 1404호
	제5반	산남동	계룡리슈빌A 105동 101호 ~ 1504호
	제6반	산남동	계룡리슈빌A 106동 101호 ~ 1502호
제12통	제1반	산남동	1102 계룡리슈빌A 107동 101호 ~ 1502호
	제2반	산남동	계룡리슈빌A 108동 101호 ~ 1504호
	제3반	산남동	계룡리슈빌A 109동 101호 ~ 1404호
	제4반	산남동	계룡리슈빌A 110동 101호 ~ 1404호
	제5반	산남동	계룡리슈빌A 111동 101호 ~ 1504호
	제6반	산남동	계룡리슈빌A 112동 101호 ~ 1502호
제13통	제1반	산남동	1103 현진에버빌A 101동 101호 ~ 1505호
	제2반	산남동	현진에버빌A 102동 101호 ~ 1402호
	제3반	산남동	현진에버빌A 103동 101호 ~ 1505호
	제4반	산남동	현진에버빌A 104동 101호 ~ 1305호
제14통	제1반	산남동	1103 현진에버빌A 105동 101호 ~ 1507호
	제2반	산남동	현진에버빌A 106동 101호 ~ 1305호
	제3반	산남동	현진에버빌A 107동 101호 ~ 1504호
	제4반	산남동	현진에버빌A 107동 105호 ~ 1507호
	제5반	산남동	현진에버빌A 108동 101호 ~ 1507호
제15통	제1반	산남동	1100 대원칸타빌2단지A 201동 101호 ~ 1402호 103호 ~ 1105호
	제2반	산남동	대원칸타빌2단지A 202동 101호 ~ 1404호
	제3반	산남동	대원칸타빌2단지A 202동 105호 ~ 1406호
	제4반	산남동	대원칸타빌2단지A 203동 101호 ~ 1402호 103호 ~ 1205호
	제5반	산남동	대원칸타빌2단지A 204동 101호 ~ 1404호
	제6반	산남동	대원칸타빌2단지A 204동 105호 ~ 1406
제16통	제1반	산남동	1100 대원칸타빌2단지A 205동 101호 ~ 1202호, 103호 ~ 1105호
	제2반	산남동	대원칸타빌2단지A 206동 101호 ~ 1206호
	제3반	산남동	대원칸타빌2단지A 207동 101호 ~ 1204호
	제4반	산남동	대원칸타빌2단지A 208동 101호 ~ 1204호
제17통	제1반	산남동	1095, 1096, 1094 부영A 101동 101호 ~ 1404호
	제2반	산남동	부영A 101동 105호 ~ 1408호
	제3반	산남동	부영A 102동 101호 ~ 1404호
	제4반	산남동	부영A 102동 105호 ~ 1408호
	제5반	산남동	부영A 103동 101호 ~ 1404호
	제6반	산남동	부영A 103동 105호 ~ 1408호
제18통	제1반	산남동	1094 부영A 104동 101호 ~ 1404호
	제2반	산남동	부영A 104동 105호 ~ 1406호
	제3반	산남동	부영A 105동 101호 ~ 1404호
	제4반	산남동	부영A 105동 105호 ~ 1408호
	제5반	산남동	부영A 106동 101호 ~ 1404호
	제6반	산남동	부영A 106동 105호 ~ 1408호

제19통	제1반	산남동	1094 부영A 107동 101호 ~ 1504호
	제2반	산남동	부영A 107동 105호 ~ 1506호
	제3반	산남동	부영A 108동 101호 ~ 1504호
	제4반	산남동	부영A 109동 101호 ~ 1504호
제20통	제1반	산남동	1094 부영A 110동 101호 ~ 1504호
	제2반	산남동	부영A 110동 105호 ~ 1506호
	제3반	산남동	부영A 111동 101호 ~ 1404호
	제4반	산남동	부영A 112동 101호 ~ 1304호
제21통	제1반	산남동	505~516, 522~535
	제2반	산남동	518~520, 537~550, 663~664
	제3반	산남동	552~575, 660~661
	제4반	산남동	577~592, 601~621, 655~659
	제5반	산남동	593~595, 624~645, 650~654
제22통	제1반	산남동	687~690, 698~724
	제2반	산남동	684~685, 693~696, 726~735
	제3반	산남동	745~749, 757~765
	제4반	산남동	739~743, 751~756, 767~772
	제5반	산남동	773~774, 778~800
	제6반	산남동	807~815, 823~827, 829~832
	제7반	산남동	775~776, 801~806, 817~821
제23통	제1반	산남동	833~853, 964~965
	제2반	산남동	874~899
	제3반	산남동	854~873
	제4반	산남동	900~903, 912~921
	제5반	산남동	904~911, 922~925
	제6반	산남동	926~942, 974~976
	제7반	산남동	943~963, 966~973
제24통	제1반	산남동	1108 ~ 1117, 1148 ~ 1156, 1190 ~ 1199
	제2반	산남동	1118 ~ 1124, 1142 ~ 1147, 1157 ~ 1163, 1183 ~ 1189,
	제3반	산남동	1125 ~ 1141, 1164 ~ 1182, 1200 ~ 1215
	제4반	산남동	1, 1-1 ~ 1-5, 33-7, 42-6, 42-27, 1216 ~ 1256
제25통	제1반	미평동	125, 205, 204의4, 209의4, 210의1 ~ 210의3, 211, 211의1, 212의1 ~ 212의3, 215, 217, 220의1, 220의2,
	제2반	미평동	산46의5, 산66의3, 169, 170, 170의1, 171의1, 223의2 ~ 223의6, 224의1, 224의2, 224의7, 225의1, 226, 226의1, 226의2, 227, 228의1 ~ 228의3, 234, 234의1, 234의2, 242의1, 244의1, 244의4, 247, 253의1, 254, 255의1, 255의2, 258, 258의1, 258의3, 259의1, 273, 276, 276의2, 277, 283, 285의2, 288의1, 289의1, 319의1, 320의1, 321의2, 349, 349의1, 349의2, 349의4, 249의5
	제3반	미평동	산25의4, 산25의6, 172, 177의1, 177의4, 183, 184의1, 184의4 ~ 184의6, 185의6, 185의3, 186의1, 186의4, 187,
	제4반	미평동	158의1, 158의3 ~ 158의5, 158의9, 160, 162, 162의2, 163의2, 164의3, 166의7, 166의8
		산남동	산21의9, 18 교정A(A동), 교정A(B동), 교정A(C동)
	제5반	미평동	125, 123의1, 127, 128, 131의1, 133, 136의1, 134의2, 134의3, 135의1, 136의1, 146의1, 146의2, 146의15, 146의12, 147의8, 147, 147의5, 147의9, 147의11, 147의18, 147의23, 147의26 ~ 147의28
제6반	미평동	1, 1의1, 2의1, 2의4, 2의14, 3, 3의1 ~ 3의10, 4의2, 4의3, 5의3, 6의11, 8의2, 8의5, 10, 10의3, 10의5, 11의1, 19, 116, 117, 125, 127, 128, 128의6 ~ 7, 134의2, 146의1 ~ 12, 147, 147의5 ~ 27	
제26통	제1반	분평동	233의2, 238의6, 241의9, 241의17, 242의1, 244의8 ~ 244의10, 246의1, 246의4, 246의5, 246의9 ~ 10, 246의12, 246의15 ~ 246의17, 246의19, 246의23 ~ 246의27, 246의33, 313의3 326의1, 328의1, 328의5, 329의1,
	제2반	분평동	247(남들연립)

	제3반	분평동	247의2 ~ 247의10, 248의1 ~ 248의5, 248의15, 249의4, 305의40, 307의3, 307의4, 308, 308의9, 308의10, 310의1, 310의2, 310의7, 310의9, 310의11, 310의14, 312의2, 312의3, 312의6, 312의7, 312의8, 312의10 ~ 312의12, 312의26, 312의38 ~ 39, 312의43, 349의3, 349의10, 349
	제4반	분평동	305의1 ~ 305의23, 305의25, 305의28, 305의29, 305의37, 306의6, 312의23, 312의25
	제5반	분평동	244의6, 248, 248의2, 248의7, 248의10, 249의5, 249의16, 250의1 ~ 250의4, 250의6 ~ 250의8, 251의2, 251의9, 251의12, 252의5, 252의7 ~ 8, 252의16, 252의17, 252의11, 252의21, 252의32, 252의36 ~ 37, 252의41, 252의49, 252의51, 253의1, 253의2, 253의12, 253의13, 253의15
제27통	제1반	분평동	252의9, 252의13 ~ 252의15, 252의34, 252의52 ~ 252의56, 253의3 ~ 253의6, 254의3, 255의1 ~ 255의3, 255의9, 255의111
	제2반	분평동	254의2, 254의4, 254의5, 255의5, 257의1 ~ 257의3, 258의8, 259의1, 259의2, 297의1, 299의3 ~ 5, 300의2
	제3반	분평동	290, 320의5, 330의1, 330의6, 330의7, 337의6, 338의1, 340의4 ~ 340의10, 341의1, 341의2, 341의5, 341의6, 343의1, 343의2, 343의8, 343의23, 385의1, 385의3
	제4반	분평동	202의2, 276의5, 279의8, 280, 281의2 ~ 281의5, 291의2, 291의7, 293의8, 294의7, 294의9, 296의8, 297의3, 297의4, 297의9, 283의1, 288의1 ~ 288의5, 288의8, 288의9, 288의22, 289의2, 289의5, 289의13, 289의16, 289의20, 289의23, 290의5 ~ 290의9, 292의1 ~ 292의12, 292의15, 293의2, 293의7, 294의3, 295의2, 295의4, 295의12, 296
	제5반	분평동	249의16, 252의15, 260, 261의1, 262의4, 274의2, 274의7, 275의7, 276의1, 276의2, 276의3, 276의23, 277의1, 278, 278의1, 278의7, 279, 280의1, 282
제28통	제1반	분평동	257의1 대승스카이빌 201호 ~ 324호
	제2반	분평동	257의1 대승스카이빌 401호 ~ 524호
	제3반	분평동	257의1 대승스카이빌 601호 ~ 724호
	제4반	분평동	257의1 대승스카이빌 801호 ~ 924호
	제5반	분평동	257의1 대승스카이빌 1001호 ~ 1124호
	제6반	분평동	257의1 대승스카이빌 1201호 ~ 1314호
	제7반	분평동	257의1 대승스카이빌 1401호 ~ 1514호
제29통	제1반	분평동	252의42 럭키A 101호 ~ 601호, 102호 ~ 8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분평동	럭키A 105호 ~ 1508호
	제3반	분평동	럭키A 109호 ~ 1312호
제30통	제1반	분평동	301의2 보성A 101동 101호 ~ 801호, 102호 ~ 1102호, 103호 ~ 1005호
	제2반	분평동	보성A 102동 101호 ~ 1007호
	제3반	분평동	보성A 103동 101호 ~ 1405호
제31통	제1반	분평동	320(우성1차A) 상가동 지하1 ~ 7호, 우성1차A 101동 101호 ~ 12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303호, 105호 ~
	제2반	분평동	우성1차A 103동 101호 ~ 1303호, 105호 ~ 1307호
	제3반	분평동	우성1차A 103동 108호 ~ 1511호
	제4반	분평동	우성1차A 102동 101호 ~ 1303호, 105호 ~ 1307호
	제5반	분평동	우성1차A 105동 101호 ~ 1503호, 105호 ~ 1505호
	제6반	분평동	우성1차A 105동 106호 ~ 1509호
제32통	제1반	분평동	237 우성2차A 상가동 지하1호, 101호 ~ 107호, 201호 ~ 205호, 우성2차A 201동 101호 ~ 1203호, 105호 ~ 1207호
	제2반	분평동	우성2차A 203동 101호 ~ 1203호, 105호 ~ 1207호
	제3반	분평동	우성2차A 203동 108호 ~ 1211호
	제4반	분평동	우성2차A 202동 101호 ~ 1203호, 105호 ~ 1205호
	제5반	분평동	우성2차A 205동 101호 ~ 1203호, 105호 ~ 1205호
	제6반	분평동	우성2차A 206동 101호 ~ 15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503호, 105호 ~ 1505호
	제7반	분평동	우성2차A 206동 106호 ~ 1009호
제33통	제1반	분평동	1170 ~ 1182
	제2반	분평동	1158 ~ 1169
	제3반	분평동	1127 ~ 1145
	제4반	분평동	1114 ~ 1126

				제5반	분평동	1105 ~ 1113
			제34통	제1반	분평동	1146 ~ 1157
				제2반	분평동	1060 ~ 1071
				제3반	분평동	1039 ~ 1058
				제4반	분평동	1019 ~ 1038
			제35통	제1반	분평동	999 ~ 1018
				제2반	분평동	985 ~ 998
				제3반	분평동	1072 ~ 1085
				제4반	분평동	1095 ~ 1103
				제5반	분평동	1086 ~ 1094
			제36통	제1반	분평동	274 (계룡리슈빌A 101동 101호 ~ 1502호, 102동 101호 ~ 1504호)
				제2반	분평동	274 (계룡리슈빌A 103동 101호 ~ 1504호, 104동 101호 ~ 1502호)
				제3반	분평동	262 (계룡리슈빌A 201동 101호 ~ 1502호, 202동 101호 ~ 1504호)
				제4반	분평동	262 (계룡리슈빌A 203동 101호 ~ 1504호)
			제37통	제1반	산남동	217,323,327,327-5~327-6,328-5,354~385
				제2반	산남동	386~407, 501~503
				제3반	산남동	408~438, 497~500
				제4반	산남동	439~465, 492~496
				제5반	산남동	466~491, 1105~1107
			제38통	제1반	산남동	980~986, 996~1005, 1010
				제2반	산남동	987~995, 1006~1007
				제3반	산남동	1008~1009, 1011~1018, 1030~1036
				제4반	산남동	1019~1029, 1037~1041
				제5반	산남동	1050~1054, 1065~1075
				제6반	산남동	1042~1049, 1055~1064, 1076~1093, 47~52-3
1	분평동	1	제1통	제1반	분평동	1211(1단지) 주공A 101동 101호 ~ 1504
				제2반	분평동	주공A 101동105호 ~ 1506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102동101호 ~ 1504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102동105호 ~ 1506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103동101호 ~ 706호
				제6반	분평동	주공A 103동801호 ~ 1406호
				제7반	분평동	주공A 104동101호 ~ 1504호
			제2통	제1반	분평동	1211(1단지) 주공A 105동 101호 ~ 2004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106동 101 ~ 1804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113동 101 ~ 2004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107동 101 ~ 2004호
			제3통	제1반	분평동	1211(2단지) 주공A 108동 101 ~ 1804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109동 101호 ~ 2004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110동 101 ~ 1802호 주공A 110동 103 ~ 2004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111동 101 ~ 1802호, 주공A 111동 103 ~ 1704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112동 101 ~ 1802호, 주공A 112동 103 ~ 1704호
			제4통	제1반	분평동	1202-1, 1202-2, 1202(2단지) 주공A 201동 101호 ~ 2004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202동 101호 ~ 2004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203동 101호 ~ 2004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203동 105호 ~ 2006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204동 101호 ~ 2004호
			제5통	제1반	분평동	1202(2단지) 주공A 205동 101호 ~ 2004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206동 101호 ~ 2004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206동 105호 ~ 2006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207동 101호 ~ 2004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207동 105호 ~ 2006호
			제6통	제1반	분평동	1202 (2단지) 주공A 208동 101호 ~ 1504호

	제2반	분평동	1261번지 주공A 209동 101호 ~ 1506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210동 101호 ~ 1504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211동 101호 ~ 1504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215동 101호 ~ 1504호
제7통	제1반	분평동	1202(2단지) 주공A 212동 101호 ~ 1504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212동 105호 ~ 1508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213동 101호 ~ 1504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213동 105호 ~ 1508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214동 101호 ~ 1504호
제8통	제1반	분평동	1200-1,1200(3단지) 주공A 301동 101호 ~ 2004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301동 105호 ~ 2006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302동 101호 ~ 2004호
	제4반	분평동	1198, 1201, 1200(3단지) 주공A 303동 101호 ~ 2004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303동 105호 ~ 2006호
제9통	제1반	분평동	1200(3단지) 주공A 304동 101호 ~ 2004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305동 101호 ~ 2004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305동 105호 ~ 2006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306동 101호 ~ 1504호
제10통	제1반	분평동	1200(3단지) 주공A 307동 101호 ~ 1506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308동 101호 ~ 1506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309동 101호 ~ 1506호
제11통	제1반	분평동	1196, 1197, 1200(3단지) 주공A 321동 101호 ~ 1504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321동 105호 ~ 1508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323동 101호 ~ 1504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323동 105호 ~ 1508호
제12통	제1반	분평동	1200(3단지) 주공A 322동 101호 ~ 1506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324동 101호 ~ 1504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325동 101호 ~ 1506호
제13통	제1반	분평동	1261(4단지) 주공A 401동 101호 ~ 2003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401동 104호 ~ 2006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401동 107호 ~ 1809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402동 101호 ~ 2003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402동 104호 ~ 2006호
	제6반	분평동	주공A 402동 107호 ~ 1809호
제14통	제1반	분평동	1261번지(4단지)주공A 403동 101호 ~ 2003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403동 104호 ~ 2006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404동 101호 ~ 1803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404동 104호 ~ 1806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405동 101호 ~ 2003호
	제6반	분평동	주공A 405동 104호 ~ 2006호
제15통	제1반	분평동	1261번지(4단지)주공A 411동 101호 ~ 510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411동 601호 ~ 1010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411동 1101호 ~ 1510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412동 101호 ~ 808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412동 901호 ~ 1518호
제16통	제1반	분평동	1261번지(4단지)주공A 413동 101호 ~ 808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413동 901호 ~ 1508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414동 101호 ~ 808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414동 901호 ~ 1508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415동 101호 ~ 808호
	제6반	분평동	주공A 415동 901호 ~ 1508호
제17통	제1반	분평동	1360번지(5단지)주공A 501동 101호 ~ 1504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502동 101호 ~ 1508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503동 101호 ~ 1504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504동 101호 ~ 1506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505동 101호 ~ 1506호
제18통	제1반	분평동	1360(5단지)주공A 506동 101호 ~ 1504호
	제2반	분평동	1360번지(5단지)주공A 507동 101호 ~ 1504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507동 105호 ~ 1508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508동 101호 ~ 1504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509동 101호 ~ 1504호
제19통	제1반	분평동	1360(5단지)주공A 510동 101호 ~ 1506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511동 101호 ~ 1506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512동 101호 ~ 1506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513동 101호 ~ 1506호
제20통	제1반	분평동	1360(5단지)주공A 514동 101호 ~ 906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514동 1001호 ~ 1806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515동 101호 ~ 1506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516동 101호 ~ 708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516동 801호 ~ 1508호
제21통	제1반	분평동	1366(6단지)주공A 601동 101호 ~ 1504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602동 101호 ~ 1504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603동 101호 ~ 1504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605동 101호 ~ 1506호
제22통	제1반	분평동	1366(6단지)주공A 604동 101호 ~ 1506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606동 101호 ~ 2004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607동 101호 ~ 2004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608동 101호 ~ 2004호
제23통	제1반	분평동	1366(6단지)주공A 609동 101호 ~ 2004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610동 101호 ~ 2004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612동 101호 ~ 1506호
제24통	제1반	분평동	1366(6단지)주공A 611동 101호 ~ 1506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613동 101호 ~ 1504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614동 101호 ~ 1504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615동 101호 ~ 1504호
제25통	제1반	분평동	1386번지(7단지)주공A 701동 101호 ~ 1504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701동 105호 ~ 1506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702동 101호 ~ 1504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703동 101호 ~ 1504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704동 101호 ~ 1504호
	제6반	분평동	주공A 704동 105호 ~ 1506호
제26통	제1반	분평동	1386(7단지)주공A 705동 101호 ~ 1506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706동 101호 ~ 1504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707동 101호 ~ 1504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708동 101호 ~ 1504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709동 101호 ~ 1504호
제27통	제1반	분평동	1386(7단지)주공A 710동 101호 ~ 1504호
	제2반	분평동	주공A 711동 101호 ~ 1504호
	제3반	분평동	주공A 712동 101호 ~ 1504호
	제4반	분평동	주공A 713동 101호 ~ 1504호
	제5반	분평동	주공A 714동 101호 ~ 1504호
제28통	제1반	분평동	1249(8단지)현대·대우A 801동 101호 ~ 2304호
	제2반	분평동	현대·대우A 801동 105호 ~ 2306호
	제3반	분평동	현대·대우A 802동 101호 ~ 2302호
	제4반	분평동	현대·대우A 802동 103호 ~ 2304호
	제5반	분평동	현대·대우A 803동 101호 ~ 2502호
	제6반	분평동	현대·대우A 803동 103호 ~ 2504호
제29통	제1반	분평동	1249(8단지) 현대·대우A 804동 101호 ~ 2104호

	제2반	분평동	현대·대우A 804동 105호 ~ 2106호
	제3반	분평동	현대·대우A 805동 101호 ~ 2002호
	제4반	분평동	현대·대우A 806동 101호 ~ 2504호
제30통	제1반	분평동	1249(8단지) 현대·대우A 807동 101호 ~ 2004호
	제2반	분평동	현대·대우A 808동 101호 ~ 2002호
	제3반	분평동	현대·대우A 809동 101호 ~ 2504호
	제4반	분평동	현대·대우A 809동 105호 ~ 2506호
제31통	제1반	분평동	1249(8단지)현대·대우A 810동 101호 ~ 1804호
	제2반	분평동	현대·대우A 810동 105호 ~ 1806호
	제3반	분평동	현대·대우A 811동 101호 ~ 1804호
	제4반	분평동	현대·대우A 811동 105호 ~ 1806호
	제5반	분평동	현대·대우A 812동 101호 ~ 2502호
	제6반	분평동	현대·대우A 812동 103호 ~ 2504호
제32통	제1반	분평동	1255(9단지) 대원A 901동 101호 ~ 1504호
	제2반	분평동	대원A 901동 105호 ~ 1508호
	제3반	분평동	대원A 902동 101호 ~ 1504호
	제4반	분평동	대원A 902동 105호 ~ 1107호
	제5반	분평동	대원A 903동 101호 ~ 1504호
	제6반	분평동	대원A 903동 105호 ~ 1506호
제33통	제1반	분평동	1255(9단지) 대원A 904동 101호 ~ 1504호
	제2반	분평동	대원A 904동 105호 ~ 1508호
	제3반	분평동	대원A 905동 101호 ~ 1504호
	제4반	분평동	대원A 905동 105호 ~ 1508호
	제5반	분평동	대원A 906동 101호 ~ 1506호
	제6반	분평동	대원A 907동 101호 ~ 1506호
제34통	제1반	분평동	1255(9단지) 주은프레지던트A 908동 101호 ~ 2502호
	제2반	분평동	주은프레지던트A 908동 103호 ~ 2504호
	제3반	분평동	주은프레지던트A 909동 101호 ~ 2502호
	제4반	분평동	주은프레지던트A 909동 103호 ~ 2504호
	제5반	분평동	주은프레지던트A 912동 101호 ~ 1506호
	제6반	분평동	주은프레지던트A 913동 101호 ~ 1504호
제35통	제1반	분평동	1255(9단지) 주은프레지던트A 910동 101호 ~ 1504호
	제2반	분평동	주은프레지던트A 911동 101호 ~ 1504호
	제3반	분평동	주은프레지던트A 911동 105호 ~ 1506호
	제4반	분평동	주은프레지던트A 914동 101호 ~ 1504호
	제5반	분평동	주은프레지던트A 915동 101호 ~ 1504호
제36통	제1반	분평동	1263 ~ 1286
	제2반	분평동	1287 ~ 1298
	제3반	분평동	1299 ~ 1314
	제4반	분평동	1315 ~ 1326
	제5반	분평동	1327 ~ 1340
	제6반	분평동	1341 ~ 1358
제37통	제1반	분평동	1250의1 ~ 1250의3
	제2반	분평동	1250의4 ~ 1250의6
	제3반	분평동	1250의7 ~ 1250의9
	제4반	분평동	1250의10 ~ 1250의12
	제5반	분평동	1250의13 ~ 1250의15
	제6반	분평동	1250의16 ~ 1250의18
	제7반	분평동	1250의20 ~ 1250의22
	제8반	분평동	1250의24 ~ 1250의28
제38통	제1반	분평동	1252 ~ 1254, 1368 ~ 1387
	제2반	분평동	1390 ~ 1424, 1425 ~ 1431
	제3반	분평동	1225 ~ 1247의1
	제4반	분평동	1215 ~ 1224

			제39통	제1반	미평동	96의1, 97의4, 97의5, 101의1~3, 102의1~102의3, 103의1~3, 104의1, 104의2, 105의1, 105의2, 106의1~2, 107, 110~112, 113의1, 114의1, 115의1, 115의3, 115의4, 116, 118, 119, 120, 120의1, 120의3, 359의11, 359의18, 359의20, 359의25, 373
				제2반	미평동	19의1, 19의2, 20의2, 21의1~7, 22의7, 27, 31의9, 31의11, 35의3~4, 35의6, 35의7, 35의17, 35의30, 35의31, 43, 50의4, 60, 78의1~2, 78의6, 79, 79의1~2, 80, 80의1, 80의2, 93, 95의1~95의13, 94의2, 94의5, 98, 359의4, 16의3, 16의6~16의9
			제40통	제1반	장성동	5~8, 9의1, 9의2, 11, 11의1, 12의6~12의10, 16, 16의1~16의3, 16의6~16의9
				제2반	장성동	1의2~1의11, 2의1~2의4, 4의7, 150, 155의1, 155의3, 155의4, 155의6, 155의8
				제3반	장성동	154, 157, 158의3, 158의4, 159의3, 160~163, 164의1~164의3, 166의2, 166의3, 167의1, 167의5, 168의2~168의6, 169~175, 177의1, 177의2, 186, 198, 207의4, 211
				제4반	장성동	4의2 보람A 101동 101호~804호
				제5반	장성동	4의2 보람A 102동 101호~414호
			제41통	제1반	장성동	산2의4, 산4의2, 산4의3, 산4의6, 15의1, 15의8, 19, 20의3, 22~24, 26, 27, 29, 32의1, 33, 33의2, 35의1, 35의3, 36~39, 39의10, 38의3, 40의2, 50의4
				제2반	장성동	42의2, 46의1, 48, 49의1, 49의2, 50의1~50의3, 51, 51의2, 53의1~53의3, 54의1, 54의2
				제3반	장성동	60, 62~66, 66의1, 67, 68의1, 69~74, 82, 85의1, 89, 92, 103의1, 121
			제42통	제1반	장암동	62의3, 101의3, 107, 238의1, 238의9, 239~239의7, 244, 245의1, 247의1, 247의3, 249의1, 255의2, 326의1, 323의1, 323의3, 324의1, 324의3, 328의2, 347의4, 347의6, 348의4, 348의7, 352, 352의1~352의9
				제2반	장암동	산9의1, 351, 352의10~352의14, 353~353의4, 354의1~354의4, 355의2, 355의4, 356~356의4, 360의8, 370의3, 381의4~6, 381의10, 381의20
			제43통	제1반	장암동	360, 379, 380의10, 381~385, 405, 406의2, 408의6,
				제2반	장암동	386, 386의1, 397의1, 408, 408의1, 414의2, 415, 415의1~415의3, 417, 418, 420, 420의1, 422의1, 422의2, 423, 423의1, 424, 437의1, 490의1, 520의2
				제3반	장암동	115의1, 173의1, 234의2, 427의1, 418의2, 418의3, 445, 447, 447의1, 447의2, 448, 449의1~449의7, 456, 456의1, 457, 460의1
			제44통	제1반	장암동	196의1, 196의2, 196의4, 200의1, 200의3, 201, 202의1, 202의3, 203의1, 204의1, 204의2, 205의1, 207의1, 207의4, 207의6, 208, 275, 278
				제2반	장암동	63의1, 73의1, 74의1, 95의2, 141, 142, 142의3, 142의4, 145, 185의2, 189, 200의1, 200의3~200의6, 209의1, 209의3~209의5, 209의7, 228, 278의2, 688, 778, 786
			제45통	제1반	분평동	85의1, 87, 88의2, 483, 496, 520, 534, 555, 557, 557의1, 561, 567, 567의2, 568, 571, 582, 584, 588, 594, 595~597, 754, 756, 967
				제2반	분평동	155, 156의3, 156의4, 159의6, 212의1, 213, 684, 690, 695, 695의1
				제3반	분평동	, 160의7, 161의2, 202의4, 204, 212의3, 212의4, 233의2, 615, 617~619, 621, 621의2, 621의3, 626, 631, 631의1, 662, 668, 673, 673의1, 674, 674의1, 674의2
1	수곡제1동	1	제1통	제1반	수곡동	14의1~14의38
				제2반	수곡동	47의1~47의35
				제3반	수곡동	17의1~17의44
				제4반	수곡동	18의1~18의52
			제2통	제1반	수곡동	46의1~46의35
				제2반	수곡동	45의1~45의39
				제3반	수곡동	44의1~44의46
				제4반	수곡동	50의1~50의40
				제5반	수곡동	51의1~51의47
			제3통	제1반	수곡동	48의1~48의29
				제2반	수곡동	49의1~49의36
				제3반	수곡동	81의1~81의38
제4반	수곡동	80의1~80의36				
제4통	제1반	수곡동	19의1~19의3, 19의5~19의24			



	제2반	수곡동	19의4 (목화맨션 A 1동 전체)
	제3반	수곡동	19의4 (목화맨션 A 2동 전체)
	제4반	수곡동	20의3 (목화맨션 A 3동 전체)
	제5반	수곡동	20의3 (목화맨션 A 5,6동 전체)
	제6반	수곡동	20의1 ~ 20의2, 20의4 ~ 20의40
제5통	제1반	수곡동	43의 1 ~ 43의 13
	제2반	수곡동	52의 1 ~ 52의 42
	제3반	수곡동	54의 1 ~ 54의 38
	제4반	수곡동	55의 1 ~ 55의 27
제6통	제1반	수곡동	53의 1 ~ 53의 40
	제2반	수곡동	79의 1 ~ 79의 43
	제3반	수곡동	56의 1 ~ 56의 37
	제4반	수곡동	78의 1 ~ 78의 30, 77의 1 ~ 77의 16
제7통	제1반	수곡동	21의 1 ~ 21의 62
	제2반	수곡동	23의 1 ~ 23의 45
	제3반	수곡동	25의 1 ~ 25의 34
	제4반	수곡동	24의 1 ~ 24의 2, 24의 4 ~ 24의 14
제8통	제1반	수곡동	42의 1 ~ 42의 43
	제2반	수곡동	41의 1 ~ 41의 38
	제3반	수곡동	40의 1 (세원 1차 A 가동 전체)
	제4반	수곡동	40의 1 (세원 1차 A 나동 전체), 40의 3 ~ 40의 8
	제5반	수곡동	58의 1 ~ 58의 37
제9통	제1반	수곡동	57의1 ~ 57의40
	제2반	수곡동	68의1 ~ 68의42
	제3반	수곡동	59의1 ~ 59의39, 39의1 ~ 39의15
	제4반	수곡동	24의3(수곡연립 전체)
제10통	제1반	수곡동	30의1 ~ 30의36, 27, 110
	제2반	수곡동	31의2 ~ 31의7, 31의9 ~ 31의13, 31의15 ~ 31의17, 31의19
	제3반	수곡동	32의1(진흥아파트 1, 2동 전체)
	제4반	수곡동	32의2 ~ 32의4, 32의7 ~ 32의10
	제5반	수곡동	33의1 ~ 33의8, 33의10 ~ 33의12, 33의14 ~ 33의35
제11통	제1반	수곡동	38의3(수정아파트 가동)
	제2반	수곡동	38의3(수정아파트 나동)
	제3반	수곡동	37의1~37의40, 38의1, 38의2, 38의8~38의11, 38의13~38의16, 38의 18
	제4반	수곡동	36의1~36의43
	제5반	수곡동	61의1~61~18
제12통	제1반	수곡동	60의1(세원 2차 아파트 101동)
	제2반	수곡동	60의1(세원 2차 아파트 102동)
	제3반	수곡동	67의1 ~ 67의24
	제4반	수곡동	70의1 ~ 70의18, 71의1, 71의13 ~ 71의24
	제5반	수곡동	66의1 ~ 66의36
제13통	제1반	수곡동	62의1 ~ 62의24, 63의1, 63의6 ~ 63의12
	제2반	수곡동	63의2 (두진한라 가동)
	제3반	수곡동	63의2 (두진한라 나동)
	제4반	수곡동	34의1 ~ 34의22
제14통	제1반	수곡동	65의1 ~ 65의16
	제2반	수곡동	64의2(삼덕A 101동)
	제3반	수곡동	64의1, 64의4 ~ 64의31
	제4반	수곡동	73의1 ~ 73의48
제15통	제1반	수곡동	71의3(수곡A 전체)
	제2반	수곡동	72의1 ~ 72의40
	제3반	수곡동	76의1 ~ 76의20
	제4반	수곡동	74의1 ~ 74의43

제16통	제1반	수곡동	82의1 ~ 82의35
	제2반	수곡동	83의1 ~ 83의51
	제3반	수곡동	94의1, 94의2, 94의5 ~ 94의7, 94의9, 94의10, 94의12 ~ 94의16, 94의22, 94의26 ~ 94의37, 94의42 ~ 94의46, 94의 64, 94의 65, 94의 66
	제4반	수곡동	94의19 ~ 94의21, 94의23 ~ 94의25, 94의39 ~ 94의41, 94의49 ~ 94의62, 94의69 ~ 94의77, 94의 80
	제5반	수곡동	95의1 ~ 95의28, 96의1 ~ 96의40
제17통	제1반	수곡동	84의1 ~ 84의26
	제2반	수곡동	87의1 ~ 87의36
	제3반	수곡동	85의1 ~ 85의85
	제4반	수곡동	93의1, 86의1 ~ 86의41
제18통	제1반	수곡동	88의1 ~ 88의47
	제2반	수곡동	91의1 ~ 91의52
	제3반	수곡동	90, 151, 151의1 ~ 151의54, 153의10 ~ 153의16, 153의30 ~ 153의31
	제4반	수곡동	153의3 (삼일맨션A 가동 전체)
	제5반	수곡동	153의3 (삼일맨션A 나동 전체)
제19통	제1반	수곡동	154 (대림 1차 A 가동 전체), 153의5, 153의8, 153의25, 153의27 ~ 153의29, 154의 18, 155, 155의1 ~ 155의5,
	제2반	수곡동	154의19 (대림1차A 다동 전체)
	제3반	수곡동	154의19 (대림1차A 나동 전체), 157의5, 157의6, 156의1, 156의3 ~ 156의5, 153의 9, 155의6 ~ 155의8, 155의11
	제4반	수곡동	92의1, 92의2, 92의12, 92의21, 92의22, 92의30, 92의31, 92의33 ~ 92의35, 92의67 ~ 92의73
	제5반	수곡동	92의4, 92의6, 92의7, 92의9 ~ 92의11, 92의13 ~ 92의20, 92의23 ~ 92의28, 92의36 ~ 92의38, 92의41 ~ 92의57, 92의58, 92의66, 92의75 ~ 92의77, 178의1, 178의3 ~ 178의 5, 178의7 ~ 178의9, 178의12, 178의13
제20통	제1반	수곡동	197(모란A 1동 전체)
	제2반	수곡동	197의9 (모란A 2동 전체)
	제3반	수곡동	197의9 (모란A 3동 전체)
	제4반	수곡동	98의1 ~ 98의48
제21통	제1반	수곡동	171의13 (명분연합)
	제2반	수곡동	166의1, 170의3 ~ 170의15, 173의1 ~ 173의18, 173의19
	제3반	수곡동	174, 175의2, 175의7, 201, 201의40 ~ 201의47, 201의49, 301의22
	제4반	수곡동	171의15, 175의6, 175의3, 176의1, 176의3 ~ 176의8, 176의10, 176의11, 171의2, 175의1, 171의16, 177의5, 178의 10, 177의4, 177, 178의2, 178의16
	제5반	수곡동	198의2 ~ 198의5, 199의6, 199의7, 201의2 ~ 201의18, 201의20 ~ 201의22, 201의51
제22통	제1반	수곡동	328(주공A 101동), 330 ~ 334
	제2반	수곡동	328 (주공A 102동)
	제3반	수곡동	328 (주공A 103동)
	제4반	수곡동	328 (주공A 104, 105동 전부)
	제5반	수곡동	328 (주공A 124, 125동 전부)
	제6반	수곡동	328 (주공A 123동)
제23통	제1반	수곡동	328 (주공A 106동)
	제2반	수곡동	328 (주공A 107동)
	제3반	수곡동	328 (주공A 108, 109동)
	제4반	수곡동	328 (주공A 110, 111동)
	제5반	수곡동	328 (주공A 112동)
	제6반	수곡동	328 (주공A 113, 114동)
제24통	제1반	수곡동	328 (주공A 115동)
	제2반	수곡동	328 (주공A 116동)
	제3반	수곡동	328 (주공A 117동)
	제4반	수곡동	328 (주공A 118동)
	제5반	수곡동	328 (주공A 119동)
	제6반	수곡동	328 (주공A 120, 121동)

			제7반	수곡동	328 (주공 122동)	
		제25통	제1반	수곡동	324 (주공 6차, 7동)	
			제2반	수곡동	324 (주공A 128동)	
			제3반	수곡동	324 (주공A 129동)	
			제4반	수곡동	324 (주공A 130동)	
			제5반	수곡동	324 (주공A 131동), 326, 327	
		제26통	제1반	수곡동	337 (산남주공 3차 A301동) 101 ~ 112호, 201 ~ 212호, 301 ~ 312호, 401 ~ 412호, 501 ~ 512호	
			제2반	수곡동	337 (산남주공 3차 A301동), 601 ~ 612호, 701 ~ 712호, 801 ~ 812호, 901 ~ 912호, 1001 ~ 1012호	
			제3반	수곡동	337(산남주공 3차 A301동) 1101 ~ 1112호, 1201 ~ 1212호, 1301 ~ 1312호, 1401 ~ 1412호, 1501 ~ 1512호	
			제4반	수곡동	337(산남주공 3차 A302동) 101 ~ 112호, 201 ~ 212호, 301 ~ 312호, 401 ~ 412호, 501 ~ 512호, 338, 339, 340 (상가)	
			제5반	수곡동	337(산남주공 3차 A302동), 601 ~ 612호, 701 ~ 712호, 801 ~ 812호, 901 ~ 912호, 1001 ~ 1012호	
			제6반	수곡동	337(산남주공 3차 A302동) 1101 ~ 1112호, 1201 ~ 1212호, 1301 ~ 1312호, 1401 ~ 1412호, 1501 ~ 1512호	
		제27통	제1반	수곡동	239 (대림 2차 201동 전부)	
			제2반	수곡동	239 (대림 2차 202동 전부)	
			제3반	수곡동	239 (대림 2차 203동 전부) 301의23, 341 ~ 349	
			제4반	수곡동	199의9 ~ 199의14, 200, 201의53 ~ 201의58, 201의28 ~ 201의30, 201의31,	
			제5반	수곡동	201의1, 201의24, 201의33 ~ 201의39, 202, 203, 206의	
		제28통	제1반	수곡동	350 (산남주공3차아파트 303동), 348, 349 (상가), 237의1, 237의9	
			제2반	수곡동	350 (산남주공3차아파트 304동)	
			제3반	수곡동	350 (산남주공3차아파트 305동)	
			제4반	수곡동	350 (산남주공3차아파트 306동)	
			제5반	수곡동	200의1, 202의1, 203의1, 204의1 ~ 204의6, 205의1, 205의2, 226의1 ~ 226의9, 227, 228, 229의1 ~ 229의10, 218의6, 218의8, 224의10	
		제29통	제1반	수곡동	231의2 (선광임대아파트 101동)101호 ~ 121호, 201호 ~ 226호, 301호 ~ 326호	
			제2반	수곡동	231의2 (선광임대A101동)401호 ~ 426호, 501호 ~ 526호, 601호 ~ 626호	
			제3반	수곡동	231의2 (선광임대A101동)701호 ~ 726호, 801호 ~ 826호, 901호 ~ 926호	
			제4반	수곡동	231의2 (선광임대A101동)1001호 ~ 1026호, 1101호 ~ 1126호, 1201호 ~ 1213호, 1215호 ~ 1226호	
			제5반	수곡동	231의 2 (선광임대A101동)1301호 ~ 1313호, 1315호 ~ 1326호, 1402호 ~ 1413호, 1416호 ~ 1426호, 1502호 ~ 1513호, 1516호 ~ 1526호	
		제30통	제1반	수곡동	75의1, 75의3, 75의4, 75의7, 97의2, 97의7, 124의3, 124의6, 135의1, 193의3, 193의6, 193의7, 197의11, 197의12, 206의3 ~ 206의6, 206의13, 206의14, 206의15, 207의1 ~ 207의14, 210의1, 210의2, 211의2, 211의3, 211의14, 211의32, 211의33, 212의5	
			제2반	수곡동	205의3 ~ 205의11, 211의1 ~ 211의31, 212의2 ~ 212	
			제3반	수곡동	213의1 ~ 213의5, 214, 214의1 ~ 214의17, 215의1 ~ 215의3, 215의5, 215의6, 215의21 ~ 215의23, 215의26 ~ 215의30, 216, 산 20-2, 산 21-2, 산 22	
			제4반	수곡동	215의4, 215의7 ~ 215의9, 215의19, 215의32, 215의33, 217, 217의1, 217의2, 218의1 ~ 218의5, 218의7, 218의9, 219의1 ~ 219의3, 220의1 ~ 220의4, 222, 222의1 ~ 222의12, 224의1, 226의11	
1	수곡제2동	1	제1통	제1반	수곡동	335 (산남주공영구임대A 201동 101 ~ 316호)
				제2반	수곡동	335 (산남주공영구임대A 201동 401 ~ 616호)
				제3반	수곡동	335 (산남주공영구임대A 201동 701 ~ 916호)
				제4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1동 1001 ~ 1216호)
				제5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1동 1301 ~ 1516호)
			제2통	제1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2동 101 ~ 320호)
				제2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2동 401 ~ 620호)
				제3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2동 701 ~ 920호)
				제4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2동 1001 ~ 1220호)

	제5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2동 1301 ~ 1520호)
제3통	제1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3동 101 ~ 320호)
	제2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3동 401 ~ 620호)
	제3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3동 701 ~ 920호)
	제4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3동 1001 ~ 1220호)
	제5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3동 1301 ~ 1520호)
제4통	제1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4동 101 ~ 316호)
	제2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4동 401 ~ 616호)
	제3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4동 701 ~ 916호)
	제4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4동 1001 ~ 1216호)
제5통	제1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5동 101 ~ 316호)
	제2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5동 416 ~ 616호)
	제3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5동 701 ~ 916호)
	제4반	수곡동	335(산남주공영구임대A 205동 1016 ~ 1216호)
제6통	제1반	수곡동	314(산남주공영구임대A 206동 101 ~ 510호, 영구임대상
	제2반	수곡동	314(산남주공영구임대A 206동 601 ~ 1010호)
	제3반	수곡동	314(산남주공영구임대A 206동 1101 ~ 1510호)
	제4반	수곡동	314(산남주공영구임대A 207동 101 ~ 510호)
	제5반	수곡동	314(산남주공영구임대A 207동 601 ~ 1010호)
	제6반	수곡동	314(산남주공영구임대A 207동 1101 ~ 1510호)
제7통	제1반	수곡동	314(산남주공영구임대A 208동 101 ~ 316호)
	제2반	수곡동	314(산남주공영구임대A 208동 401 ~ 616호)
	제3반	수곡동	314(산남주공영구임대A 208동 701 ~ 916호)
	제4반	수곡동	314(산남주공영구임대A 208동 1001 ~ 1216호)
	제5반	수곡동	314(산남주공영구임대A 208동 1301 ~ 1516호)
제8통	제1반	수곡동	314(산남주공영구임대A 209동 101 ~ 316호)
	제2반	수곡동	314(산남주공영구임대A 209동 401 ~ 616호)
	제3반	수곡동	314(산남주공영구임대A 209동 701 ~ 916호)
	제4반	수곡동	314(산남주공영구임대A 209동 1001 ~ 1216호)
	제5반	수곡동	314(산남주공영구임대A 209동 1301 ~ 1516호)
제9통	제1반	수곡동	314(산남주공A 401동101 ~ 807호)
	제2반	수곡동	314(산남주공A 401동901 ~ 1507호)
	제3반	수곡동	314(산남주공A 402동101 ~ 806호)
	제4반	수곡동	314(산남주공A 402동901 ~ 1506호)
	제5반	수곡동	314(산남주공A 403동101 ~ 808호)
	제6반	수곡동	314(산남주공A 403동901 ~ 1508호)
제10통	제1반	수곡동	314(산남주공A 404동101 ~ 808호 315 분양상가)
	제2반	수곡동	314(산남주공A 404동901 ~ 1508호)
	제3반	수곡동	314(산남주공A 405동101 ~ 806호)
	제4반	수곡동	314(산남주공A 405동901 ~ 1506호)
	제5반	수곡동	321(산남주공A 406동101 ~ 1504호)
	제6반	수곡동	321(산남주공A 406동105 ~ 1506호)
	제7반	수곡동	321(산남주공A 407동101 ~ 1504호)
	제8반	수곡동	321(산남주공A 407동105 ~ 1506호)
제11통	제1반	수곡동	314(산남주공A 408동101 ~ 1504호)
	제2반	수곡동	314(산남주공A 408동105 ~ 1506호)
	제3반	수곡동	314(산남주공A 409동101 ~ 1504호)
	제4반	수곡동	314(산남주공A 409동105 ~ 1506호)
	제5반	수곡동	314(산남주공A 410동101 ~ 1504호)
	제6반	수곡동	314(산남주공A 411동101 ~ 1504호)
제12통	제1반	수곡동	수곡동1002(두진백로A 101동101 ~ 1504호)
	제2반	수곡동	1002(두진백로A 101동 105 ~ 1506호, 107호 ~ 1208호), 상가1동 101 ~ 109호, 201 ~ 204호, 지하1호, 지하2호, 지하3호, 상가2동 101 ~ 108호, 201 ~ 204호, 지하1호, 지하2호, 지하3호 235 ~ 1, 242 ~ 1, 243

	제3반	수곡동	1002(두진백로A102동101 ~ 1504호)
	제4반	수곡동	1002(두진백로A102동105 ~ 1508호)
	제5반	수곡동	1002(두진백로A102동109 ~ 1512호)
제13통	제1반	수곡동	1002(두진백로A103동101 ~ 1504호)
	제2반	수곡동	1002(두진백로A103동105 ~ 1508호)
	제3반	수곡동	1002(두진백로A103동109 ~ 1512호)
	제4반	수곡동	1002(두진백로A104동101 ~ 1504호)
	제5반	수곡동	1002(두진백로A104동105 ~ 1508호)
	제6반	수곡동	1002(두진백로A104동109 ~ 1512호)
	제14통	제1반	수곡동
제2반		수곡동	1002(두진백로A105동105 ~ 1508호)
제3반		수곡동	1002(두진백로A106동101 ~ 1001호, 102 ~ 1304호)
제4반		수곡동	1002(두진백로A106동105 ~ 1508호)
제5반		수곡동	1002(두진백로A106동109 ~ 1312호)
제15통	제1반	수곡동	1001(세원청실A101동101 ~ 1504호)
	제2반	수곡동	1001(세원청실A101동105 ~ 1508호)
	제3반	수곡동	1001(세원청실A102동101 ~ 1504호)
	제4반	수곡동	1001(세원청실A102동105 ~ 1507호 108 ~ 1208호)
	제5반	수곡동	1001(세원청실A103동101 ~ 1504호)
	제6반	수곡동	1001(세원청실A103동105 ~ 1508호)
	제7반	수곡동	1001(세원청실A104동101 ~ 1504호) 상가1동 101 ~ 104호, 201 ~ 204호, 상가2동, 상가3동, 상가4동)
제16통	제1반	수곡동	777(한마음1차A101동 101 ~ 1503호, 105 ~ 1505호)
	제2반	수곡동	777(한마음1차A101동106 ~ 1509호)
	제3반	수곡동	777(한마음1차A101동110 ~ 1511호)
	제4반	수곡동	777(한마음1차A101동112 ~ 1514호)
	제5반	수곡동	777(한마음1차A102동 101 ~ 1503호, 105 ~ 1505호)
	제6반	수곡동	777(한마음1차A102동106 ~ 1509호)
	제7반	수곡동	777(한마음1차A102동110 ~ 1511호)
	제8반	수곡동	777(한마음1차A103동 101 ~ 1503호, 105 ~ 1505호)
	제9반	수곡동	777(한마음1차A103동 106 ~ 1507호, 상가1동 101 ~ 111호, 201 ~ 207호, 301 ~ 302호, 상가2동 101 ~ 115호)
	제17통	제1반	수곡동
제2반		수곡동	775(한마음2차A201동105 ~ 1307호)
제3반		수곡동	775(한마음2차A202동101 ~ 1303호)
제4반		수곡동	775(한마음2차A202동105 ~ 1307호)
제5반		수곡동	775(한마음2차A203동 101 ~ 1203호, 105 ~ 1205호)
제6반		수곡동	775(한마음2차A203동 106 ~ 1207호 상가1동 101 ~ 106호, 201 ~ 202호, 지하1호, 지하2호, 상가2동 101 ~ 106호, 201 ~ 202호 지하1호, 지하2호)
제7반		수곡동	776(세원홍실A101동101 ~ 1504호)
제8반		수곡동	776(세원홍실A101동105 ~ 1508호)
제9반		수곡동	776(세원홍실A102동101 ~ 1304호, 상가 101 ~ 103호, 201 ~ 204호)
제10반		수곡동	776(세원홍실A102동105 ~ 1308호)
제18통	제1반	수곡동	578 ~ 591
	제2반	수곡동	592 ~ 605
	제3반	수곡동	606 ~ 619
	제4반	수곡동	620 ~ 638
제19통	제1반	수곡동	706 ~ 719
	제2반	수곡동	690 ~ 705
	제3반	수곡동	674 ~ 689
	제4반	수곡동	659 ~ 673
	제5반	수곡동	640 ~ 658
제20통	제1반	수곡동	721 ~ 739
	제2반	수곡동	741 ~ 758

				제3반	수곡동	759 ~ 774
				제4반	수곡동	779 ~ 793
			제21통	제1반	수곡동	848 ~ 857
				제2반	수곡동	858 ~ 866
				제3반	수곡동	867 ~ 874
				제4반	수곡동	875 ~ 893
				제5반	수곡동	796 ~ 804
				제6반	수곡동	814 ~ 831
				제7반	수곡동	832 ~ 847
				제8반	수곡동	805 ~ 813, 894 ~ 901
			제22통	제1반	수곡동	946 ~ 957
				제2반	수곡동	932 ~ 945
				제3반	수곡동	902 ~ 909, 923 ~ 931
				제4반	수곡동	910 ~ 922
				제5반	수곡동	1003 ~ 1021
				제6반	수곡동	959 ~ 970
				제7반	수곡동	971 ~ 986
				제8반	수곡동	987 ~ 999
1	성화개신죽림동	1	1통	제1반	성화동	155, 156의2, 157, 164, 165, 274의2
				제2반	성화동	171, 172, 174, 174의2, 175, 235
				제3반	성화동	172의2, 217
				제4반	성화동	314, 315, 334, 335, 337, 337의12
			2통	제1반	개신동	16의1, 69의3, 70, 70의1, 70의2, 70의11, 75, 78, 90의2, 90의11, 94의2, 97, 428의1, 469, 469의1, 474-1, 474-5, 474의7 ~ 474의9, 474의11, 477의3, 482의1, 478의2, 484, 484의1
				제2반	개신동	산79의1, 312, 318, 320, 321, 454, 454의5, 456, 463의1
				제3반	개신동	37의5, 37의2, 36
			3통	제1반	개신동	83의4, 294의4, 294의11, 295의2, 296의1, 299의2, 299의3, 299의6, 300, 307, 316의4, 316의6
				제2반	개신동	산84의15, 산84의24, 280의1, 280의2, 280의16, 281의1
				제3반	개신동	279의1, 279의11, 280의6 ~ 280의14, 280의3, 280의5, 280의17
			4통	제1반	성화동	439 ~ 493
				제2반	성화동	494 ~ 551
				제3반	성화동	552 ~ 613
			5통	제1반	개신동	산70, 250, 276, 280의5, 280의8, 324, 326의2
				제2반	개신동	280의3, 280의5, 280의2
				제3반	개신동	280의2, 280의4
			6통	제1반	개신동	1의13, 2의7 ~ 2의13, 2의15 ~ 2의19, 2의21, 2의22, 2의57, 442의3, 442의4
				제2반	개신동	438의1, 438의3 ~ 438의5, 438의7, 438의8, 438의11, 438의14 ~ 438의17, 438의46 ~ 438의61, 438의77 ~ 438의83, 438의85, 438의87, 438의101 ~ 438의102, 산99의2
				제3반	개신동	산95의2, 437의12, 437의14, 438의62 ~ 438의76, 438의88 ~ 438의97
				제4반	개신동	438의20 ~ 438의45, 438의94
			7통	제1반	죽림동	산27, 산28의2, 산28의39, 98의4, 134의3, 135의1, 136의2, 136, 137, 138의2, 139의1, 140, 140의3, 153~163, 177의1, 179, 182~188, 192, 198의1, 199의1, 201, 202의1~202의9, 203, 209의1, 210, 211, 212, 213
				제2반	죽림동	산33의2~산40, 31의1, 33의2, 40의1~40의4, 89의1, 90의1, 91~98, 100~119, 120의1, 121의1~124의3, 141의2, 142의1 ~ 142의5, 143, 144의1, 146의2, 147, 151, 152, 164의1~166의1
				제3반	죽림동	366의2, 67의1, 69, 69의1, 71~77의9, 80, 82, 87의2, 86의7, 125의1, 126의2, 128의1, 129, 129의2, 131의2~134, 209의1, 210의1, 211의1, 214, 214의1~220의1, 232의3, 233의1, 235의4 ~ 240의1, 241 ~ 248의1, 250의1
				제4반	죽림동	산3의2~산11, 산81의7, 산84의2, 264, 296, 323의3, 323의4
			8통	제1반	개신동	443-2 (서우A A동)
				제2반	개신동	443-2 (서우A B동)

	제3반	개신동	443-2 (서우A C동)
	제4반	개신동	443-35 (창대아트빌라 101 ~ 408호)
9통	제1반	개신동	10 (삼익A 101동 101 ~ 1501호, 102 ~ 1502호, 103 ~ 1503호, 104 ~ 1504호)
	제2반	개신동	10 (삼익A 102동 101 ~ 1501호, 102 ~ 1502호, 103 ~ 1503호, 104 ~ 1504호)
	제3반	개신동	10 (삼익A 102동 105 ~ 1505호, 106 ~ 1506호, 107 ~ 1507호, 108 ~ 1508호)
	제4반	개신동	10 (삼익A 102동 109 ~ 1509호, 110 ~ 1510호)
10통	제1반	개신동	10 (삼익A 103동 101 ~ 1501호, 102 ~ 1502호, 103 ~ 1503호, 104 ~ 1504호)
	제2반	개신동	10 (삼익A 103동 105 ~ 1505호, 106 ~ 1506호, 107 ~ 1507호, 108 ~ 1508호)
	제3반	개신동	10-7(삼익A 104동 101 ~ 1501호, 102 ~ 1502호, 103 ~ 1503호, 104 ~ 1504호)
	제4반	개신동	10-7 (삼익A 104동 103 ~ 1503호, 105 ~ 1506호, 106 ~ 1506호)
11통	제1반	개신동	10 (삼익A 105동 101 ~ 1501호, 102 ~ 1502호, 103 ~ 1503호, 104 ~ 1504호, 105 ~ 1505호, 106 ~ 1506호)
	제2반	개신동	10 (삼익A 106동 101 ~ 1501호, 102 ~ 1502호, 103 ~ 1503호, 104 ~ 1504호, 105 ~ 1505호, 106 ~ 1506호)
	제3반	개신동	10 (삼익A 107동 101 ~ 1501호, 102 ~ 1502호, 103 ~ 1503호, 104 ~ 1504호)
	제4반	개신동	10 (삼익A 107동 105 ~ 1505호, 106 ~ 1506호, 107 ~ 1507호, 108 ~ 1508호)
	제5반	개신동	10 (삼익A 107동 109 ~ 1509호, 110 ~ 1510호, 삼익A 상)
12통	제1반	개신동	1의16 (우정A 113 ~ 119호, 201 ~ 205호, 207 ~ 221호, 301 ~ 321호, 401 ~ 421호, 501 ~ 521호, 601 ~ 621호, 701 ~ 711호, 714 ~ 721호, 801 ~ 811호, 814 ~ 821호, 901 ~ 910호, 915 ~ 921호, 1001 ~ 1010호, 1015 ~ 1021호)
	제2반	개신동	1의16 (우정A 1101 ~ 1109호, 1116 ~ 1121호, 1201 ~ 1209호, 1216 ~ 1221호, 1301 ~ 1308호, 1317 ~ 1321호, 1404 ~ 1408호, 1417 ~ 1421호)
	제3반	개신동	1의19 (광영A 101 ~ 110호, 201 ~ 211호, 301 ~ 311호, 401 ~ 411호, 501 ~ 511호)
	제4반	개신동	1의19 (광영A 601 ~ 611호, 701 ~ 711호, 801 ~ 811호, 901 ~ 911호, 1001 ~ 1008호, 1101 ~ 1104호)
13통	제1반	개신동	443 (두진A 101동 101 ~ 1502호, 103 ~ 1504호)
	제2반	개신동	443 (두진A 101동 105 ~ 1506호, 107 ~ 1508호)
	제3반	개신동	443 (두진A 102동 101 ~ 1502호, 103 ~ 1504호)
	제4반	개신동	443 (두진A 102동 105 ~ 1506호, 107 ~ 1508호, 108 ~ 1008호)
	제5반	개신동	445-1 (두진백로2차A 103동 101 ~ 1001호, 102 ~ 1002호, 103 ~ 1003호, 104 ~ 1004호, 105 ~ 905호, 106 ~ 906호)
	제6반	개신동	445-1 (두진백로2차A 104동 101 ~ 601호, 102 ~ 602호, 103 ~ 603호, 104 ~ 604호, 105 ~ 705호, 106 ~ 706호, 107 ~ 707호, 108 ~ 708호)
14통	제1반	개신동	447의15 (두산한솔A 101동 101 ~ 1502호, 103 ~ 1504호)
	제2반	개신동	447의15 (두산한솔A 101동 105 ~ 1506호, 107 ~ 1508호)
	제3반	개신동	447의15 (두산한솔A 102동 101 ~ 1402호, 103 ~ 1404호, 105 ~ 1506호)
	제4반	개신동	442-2 (두산한솔2차A 201동 101 ~ 1501호, 102 ~ 1502호, 103 ~ 1503호, 104 ~ 1504호)
	제5반	개신동	442-2(두산한솔2차A 202동 101 ~ 1501호, 102 ~ 1502호, 103 ~ 1503호, 104 ~ 1504호)
	제6반	개신동	442-2 (두산한솔2차A 202동 105 ~ 1505호, 106 ~ 1506호, 107 ~ 1507호, 108 ~ 1508호)
15통	제1반	개신동	446의2 (송학삼익맨션A 101동 101 ~ 1502호, 103 ~ 1505호, 106 ~ 1507호)
	제2반	개신동	446의2 (송학삼익맨션A 102동 101 ~ 1502호, 103 ~ 1505호, 106 ~ 1507호)
	제3반	개신동	446의2 (송학삼익맨션A 103동 101 ~ 1502호, 103 ~ 1505호)
	제4반	개신동	446의2 (송학삼익맨션A 105동 101 ~ 1502호, 103 ~ 1505호)
	제5반	개신동	446의2 (송학삼익맨션A 105동 106 ~ 1507호, 108 ~ 1509호)
16통	제1반	개신동	447-39 (한사랑A 101 ~ 104호, 상가, 107호 ~ 114호, 201호 ~ 214호, 301 ~ 314호, 401 ~ 414호, 501 ~ 514호, 601 ~ 1001 ~ 1014호)
	제2반	개신동	447-39 (한사랑A 701 ~ 714호, 801 ~ 814호, 901 ~ 914호, 1001 ~ 1014호)
	제3반	개신동	447-3 (재원A 101 ~ 118호, 201 ~ 218호, 301 ~ 318호, 401 ~ 418호)

	제4반	개신동	447-3 (재원A 501 ~ 518호, 601 ~ 618호, 701 ~ 718호)
	제5반	개신동	447-3 (재원A 801 ~ 818호, 901 ~ 918호, 1001 ~ 1018호)
	제6반	개신동	447-1, 447-60, 447-32
17통	제1반	개신동	2의26, 2의29, 2의30, 3의3, 3의5, 3의20 ~ 3의21, 3의27, 4의4 ~ 4의7, 4의9 ~ 4의11, 4의15 ~ 4의18
	제2반	개신동	2의32 ~ 2의37, 2의41, 2의42, 2의47, 4의19 ~ 4의22, 4의24 ~ 4의27, 4의29 ~ 4의32
	제3반	개신동	4의35, 4의40 ~ 4의46, 4의55, 4의57, 51의3, 51의7, 51의11, 51의12
	제4반	개신동	51, 51의8 ~ 51의10, 51의18 ~ 51의20
	제5반	개신동	50의1, 50의9, 51의13 ~ 51의17, 51의21, 52의3, 52의8, 52의23
18통	제1반	개신동	8(베스트윙아파트)
	제2반	개신동	42의2, 42의5, 42의12, 42의14, 42의16, 43의4, 43의17, 43의18, 48, 48의1
	제3반	개신동	47의19, 47의20 ~ 47의24, 47의41, 49의14, 50, 50의11, 50의12, 52의15
	제4반	개신동	3의14, 3의33, 3의36, 3의40, 9의50, 9의52, 9의53, 47의1, 47의3, 47의4, 47의12, 47의26 ~ 47의28, 50의4, 51의23, 51의24
19통	제1반	개신동	11 (삼익A 201동 101 ~ 1202호, 103 ~ 1204호, 105 ~ 1206호)
	제2반	개신동	11 (삼익A 203동 101 ~ 901호, 102 ~ 1302호, 103 ~ 1304호, 105 ~ 1306호)
	제3반	개신동	11 (삼익A 205동 101 ~ 1202호, 205동 103 ~ 1204호)
	제4반	개신동	11 (삼익A 202동 101 ~ 1202호, 103 ~ 1204호, 105 ~ 1206호)
	제5반	개신동	11 (삼익A 204동 101 ~ 1202호, 103 ~ 1204호, 105 ~ 1305호, 106 ~ 1106호)
	제6반	개신동	11 (삼익A 206동 101 ~ 1202호, 103 ~ 1204호)
20통	제1반	개신동	41-5 (한진신세대A 201호 ~ 212호, 301호 ~ 312호, 401호 ~ 412호, 501호 ~ 512호, 601호 ~ 612호, 701호 ~ 712호)
	제2반	개신동	41-5 (한진신세대A 801호 ~ 812호, 901호 ~ 912호, 1001호 ~ 1012호, 1101호 ~ 1112호)
	제3반	개신동	41-5 (한진신세대A 1201 ~ 1212호, 1301 ~ 1312호, 1401 ~ 1412호, 1501 ~ 1512호)
	제4반	개신동	41-5 (한진신세대A 213 ~ 224호, 313 ~ 324호, 413 ~ 424호, 513 ~ 524호, 613 ~ 624호, 713 ~ 724호)
	제5반	개신동	41-5 (한진신세대A 813 ~ 824호, 913 ~ 924호, 1013 ~ 1024호, 1113 ~ 1124호)
	제6반	개신동	41-5 (한진신세대A 1213 ~ 1224호, 1313 ~ 1324호, 1413 ~ 1424호, 1513 ~ 1524호)
	제7반	개신동	9의4, 41의39 ~ 41의40, 43의9 ~ 43의14, 44, 44의4 ~ 44의
제21통	제1반	개신동	283 (현대A 104동 101 ~ 1501호, 102 ~ 1502호, 103 ~ 1503호, 104 ~ 1504호)
	제2반	개신동	283 (현대A 104동 105 ~ 1505호, 106 ~ 1506호, 107 ~ 1507호, 108 ~ 1508호)
	제3반	개신동	283 (현대A 103동 101 ~ 901호, 102 ~ 1502호, 103 ~ 1504호)
	제4반	개신동	283 (현대A 103동 105 ~ 1506호, 107 ~ 1508호)
	제5반	개신동	283 (현대A 103동 109 ~ 1510호, 111 ~ 1512호)
제22통	제1반	개신동	283 (현대A 102동 101 ~ 1201호, 102 ~ 1502호, 103 ~ 1504호, 105 ~ 1506호)
	제2반	개신동	283 (현대A 102동 107 ~ 1508호, 109 ~ 1510호)
	제3반	개신동	283 (현대A 101동 101 ~ 901호, 102 ~ 1502호, 103 ~ 1503호, 104 ~ 1504호, 105 ~ 1305호, 106 ~ 1006호)
	제4반	개신동	283 (현대상가), 226의8, 226의12, 278의2 ~ 278의38
제23통	제1반	개신동	566 ~ 582
	제2반	개신동	550 ~ 565
	제3반	개신동	526 ~ 549
	제4반	개신동	507 ~ 525
제24통	제1반	개신동	506 (시영A 101동)
	제2반	개신동	506 (시영A 102동)
	제3반	개신동	506 (시영A 103동)
제25통	제1반	개신동	504 (해주빌라 A동 101 ~ 110호, 201 ~ 210호, 301 ~ 310호)
	제2반	개신동	504 (해주빌라 A동 111 ~ 120호, 211 ~ 220호, 311 ~ 310호)
	제3반	개신동	504 (해주빌라 B동 101 ~ 110호, 201 ~ 210호, 301 ~ 310호)



제26통	제1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01동 401 ~ 2202호, 203 ~ 1604호)
	제2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01동 105 ~ 1206호)
	제3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12동 201 ~ 1202호, 103 ~ 1604호)
	제4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12동 105 ~ 2006호)
	제5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11동 102 ~ 412호, 501 ~ 812호)
	제6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11동 901 ~ 1212호, 1301 ~ 1512호)
	제7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11동 1601 ~ 1907호, 2001 ~ 2505호)
제27통	제1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02동 101 ~ 410호, 501 ~ 810호)
	제2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02동 901 ~ 1210호, 1301 ~ 1510호)
	제3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02동 1603 ~ 2308호)
	제4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03동 201 ~ 1502호, 103 ~ 1504호)
	제5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03동 205 ~ 2006호)
	제6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04동 201 ~ 1402호, 103 ~ 1504호)
제28통	제1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09동 101 ~ 1502호, 103 ~ 1504호, 105 ~ 1506호)
	제2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10동 101 ~ 1302호, 103 ~ 1304호)
	제3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10동 205 ~ 1606호, 107 ~ 1908호)
	제4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08동 101 ~ 410호)
	제5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08동 501 ~ 810호)
	제6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08동 903 ~ 1209호, 1304 ~ 1809호)
제29통	제1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05동 101 ~ 804호, 105 ~ 908호)
	제2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06동 201 ~ 2002호, 403호 ~ 2004호)
	제3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07동 101 ~ 310호, 401 ~ 610호)
	제4반	개신동	613 (개신주공1단지A 107동 701 ~ 910호, 1001 ~ 1210호, 1301 ~ 1510호)
제30통	제1반	개신동	591 ~ 598
	제2반	개신동	599 ~ 610
	제3반	개신동	615, 619 ~ 632
	제4반	개신동	691 ~ 717
제31통	제1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02동 101 ~ 2002호)
	제2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01동 103 ~ 2004호)
	제3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01동 105 ~ 1506호, 단지내 상가)
	제4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08동 101 ~ 2002호)
	제5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08동 103 ~ 2004호, 105 ~ 1506호)
	제6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09동 101 ~ 1502호, 103 ~ 2004호)
	제7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09동 105 ~ 2006호)
제32통	제1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02동 101 ~ 1802호, 103 ~ 1803호)
	제2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03동 101 ~ 1502호, 103 ~ 1504호, 105 ~ 1506호)
	제3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04동 101 ~ 1502호, 103 ~ 1504호, 105 ~ 1506호)
	제4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05동 101 ~ 1502호, 103 ~ 1504호)
	제5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02동 104 ~ 1804호 105 ~ 1806호)
제33통	제1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06동 101 ~ 2003호)
	제2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07동 101 ~ 2302호)
	제3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07동 103 ~ 2304호)
	제4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10동 101 ~ 2302호)
	제5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10동 103 ~ 2304호)
	제6반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A 211동 101 ~ 2003호)
제34통	제1반	개신동	590 (개신주공3단지A 301동 101 ~ 2002호)
	제2반	개신동	590 (개신주공3단지A 301동 103 ~ 2004호, 105 ~ 1806호)
	제3반	개신동	590 (개신주공3단지A 302동 101 ~ 2002호)
	제4반	개신동	590 (개신주공3단지A 302동 103 ~ 2004호, 105 ~ 1806호)
	제5반	개신동	590 (개신주공3단지A 305동 101 ~ 2004호)
제35통	제1반	개신동	590 (개신주공3단지A 303동 101 ~ 2002호)
	제2반	개신동	590 (개신주공3단지A 303동 103 ~ 2004호, 105 ~ 1806호)

	제3반	개신동	590 (개신주공3단지A 304동 101 ~ 2002호)
	제4반	개신동	590 (개신주공3단지A 304동 103 ~ 2004호, 105 ~ 1806호)
	제5반	개신동	590 (개신주공3단지A 306동 101 ~ 1506호)
제36통	제1반	죽림동	295 (가경3단지A 301동 101 ~ 1302호, 103 ~ 1504호)
	제2반	죽림동	295 (가경3단지A 301동 105 ~ 1506호, 107 ~ 1508호)
	제3반	죽림동	295 (가경3단지A 302동 101 ~ 1506호)
	제4반	죽림동	295 (가경3단지A 303동 101 ~ 1506호)
	제5반	죽림동	295 (가경3단지A 307동 101 ~ 1506호)
	제37통	제1반	죽림동
제2반		죽림동	295 (가경3단지A 304동 105 ~ 1508호)
제3반		죽림동	295 (가경3단지A 305동 101 ~ 1302호, 103 ~ 1506호)
제4반		죽림동	295 (가경3단지A 306동 101 ~ 1504호)
제5반		죽림동	295 (가경3단지A 306동 105 ~ 1506호, 107 ~ 1308)
제38통	제1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1동 101호 - 1801호, 102호 - 1802호
	제2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1동 103호 - 1903호, 104호 - 1904호
	제3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6동 101호 - 1801호, 102호 - 2202호
	제4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6동 103호 - 2503호, 104호 - 2504호
	제5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7동 101호 - 2501호, 102호 - 2502호
	제6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7동 103호 - 2203호, 104호 - 2204호
제39통	제1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2동 101호 - 1801호, 102호 - 2202호,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동
	제2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2동 103호 - 2503호, 104호 - 2504호
	제3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5동 101호 - 2501호, 102호 - 2502호
	제4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5동 103호 - 2503호, 104호 - 2504호
	제5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8동 301호 - 2501호, 102호 - 2502호
	제6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8동 103호 - 2503호, 104호 - 2504호
	제7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8동 105호 - 2205호, 106호 - 2206호
제40통	제1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3동 201호 - 2501호, 102호 - 2502호
	제2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3동 103호 - 2203호, 204호 - 1804호
	제3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4동 101호 - 2501호, 102호 - 2502호
	제4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4동 103호 - 2503호, 104호 - 2504호
	제5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9동 301호 - 2501호, 102호 - 2502호
	제6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9동 103호 - 2503호, 104호 - 2504호
	제7반	개신동	6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409동 105호 - 2205호, 106호 - 2206호
제41통	제1반	죽림동	292번지 가경주공4단지아파트401동 101호 - 14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406호
	제2반	죽림동	292번지 가경주공4단지아파트402동 101호 - 14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406호
	제3반	죽림동	292번지 가경주공4단지아파트408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406호
	제4반	죽림동	292번지 가경주공4단지아파트409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406호
	제5반	죽림동	292번지 가경주공4단지아파트410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406호

제42통	제1반	죽림동	292번지 가경주공4단지아파트403동 101호 - 13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303호, 104호 - 1304호 105호 -
	제2반	죽림동	292번지 가경주공4단지아파트4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제3반	죽림동	292번지 가경주공4단지아파트405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제4반	죽림동	292번지 가경주공4단지아파트406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304호, 105호 -
	제5반	죽림동	292번지 가경주공4단지아파트407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406호
제43통	제1반	성화동	634번지 성화주공아파트 101동 101호-106호, 201호-206호, 301호-306호, 401호-406호, 501호-506호, 601호-606호, 701호-706호, 801호-806호, 901호-906호, 1001호-1006호, 1101호-1106호, 1201호-1206호, 1301호-1306호, 1401호-1406호, 1501호-1506호
	제2반	성화동	634번지 성화주공아파트 102동 201호-205호, 301호-305호, 401호-405호, 501호-505호, 601호-605호, 701호-705호, 801호-805호, 901호-905호, 1001호-1005호, 1101호-1105호, 1201호-1205호, 1301호-1305호, 1401호-1405호, 1501호-1505호
	제3반	성화동	634번지 성화주공아파트 103동 101호-105호, 201호-205호, 301호-305호, 401호-405호, 501호-505호, 601호-605호, 701호-705호, 801호-805호, 901호-905호, 1001호-1005호
	제4반	성화동	634번지 성화주공아파트 104동 101호-108호, 201호-208호, 301호-308호, 401호-408호, 501호-508호, 601호-608호, 701호-708호, 801호-808호, 901호-908호, 1001호-1001호
제44통	제1반	성화동	634번지 성화주공아파트 105동 101호-106호, 201호-206호, 301호-306호, 401호-406호, 501호-506호, 601호-606호, 701호-706호, 801호-806호, 901호-906호, 1001호-1006호, 1101호-1106호, 1201호-1206호, 1301호-1306호, 1401호-1406호, 1501호-1506호
	제2반	성화동	634번지 성화주공아파트 106동 101호-106호, 201호-206호, 301호-306호, 401호-406호, 501호-506호, 601호-606호, 701호-706호, 801호-806호, 901호-906호, 1001호-1006호, 1101호-1106호, 1201호-1206호, 1301호-1306호, 1401호-1406호, 1501호-1506호
	제3반	성화동	634번지 성화주공아파트 107동 101호-107호, 201호-207호, 301호-307호, 401호-407호, 501호-507호, 601호-607호 701호-707호, 801호-807호, 901호-907호, 1001호-1007호, 1101호-1107호, 1201호-1207호 1301호-1307호, 1401호-1407호, 1501호-1507호
	제4반	성화동	634번지 성화주공아파트 108동 101호 - 105호, 201호 - 205호, 301호 - 305호, 401호 - 405호, 501호 - 505호, 601호 - 605호, 701호 - 705호, 801호 - 805호, 901호 - 905호, 1001호 - 1005호, 1101호 - 1105호, 1201호 - 1205호, 1301호 - 1305호, 1401호-1405호, 1501호 -
제45통	제1반	성화동	619번지 성화주공아파트 201동 101호 - 106호, 201호 - 206호, 301호 - 306호, 401호 - 406호, 501호 - 506호, 601호 - 606호, 701호 - 706호, 801호 - 806호, 901호 - 906호, 1001호 - 1006호, 1101호 - 1106호, 1201호 -
	제2반	성화동	619번지 성화주공아파트 202동 101호 - 103호, 201호 - 206호, 301호 - 306호, 401호 - 406호, 501호 - 506호, 601호 - 606호, 701호 - 706호, 801호 - 806호, 901호 - 906호, 1001호 - 1006호, 1101호 - 1106호, 1201호 - 1206호, 1301호 - 1306호, 1401호 - 1406호, 1501호 -
	제3반	성화동	619번지 성화주공아파트 203동 101호 - 106호, 201호 - 206호, 301호 - 306호, 401호 - 406호, 501호 - 506호, 601호 - 606호, 701호 - 706호, 801호 - 806호, 901호 - 906호, 1001호 - 1006호, 1101호 - 1106호, 1201호 -
	제4반	성화동	619번지 성화주공아파트 204동 101호 - 106호, 201호 - 206호, 301호 - 306호, 401호 - 406호, 501호 - 506호, 601호 - 606호, 701호 - 706호, 801호 - 806호, 901호 - 906호, 1001호 - 1006호, 1101호 - 1106호, 1201호 - 1206호, 1301호 - 1306호, 1401호 - 1406호, 1501호 -
제46통	제1반	성화동	619번지 성화주공아파트 205동 101호 - 106호, 201호 - 206호, 301호 - 306호, 401호 - 406호, 501호 - 506호, 601호 - 606호, 701호 - 706호, 801호 - 806호, 901호 - 906호, 1001호 - 1006호, 1101호 - 1106호, 1201호 -
	제2반	성화동	619번지 성화주공아파트 206동 101호 - 106호, 201호 - 206호, 301호 - 306호, 401호 - 406호, 501호 - 506호, 601호 - 606호, 701호 - 706호, 801호 - 806호, 901호 - 906호, 1001호 - 1006호, 1101호 - 1106호, 1201호 - 1206호, 1301호 - 1306호, 1401호 - 1406호, 1501호 -

	제3반	성화동	619번지 성화주공아파트 207동 101호 - 106호, 201호 - 206호, 301호 - 306호, 401호 - 406호, 501호 - 506호, 601호 - 606호, 701호 - 706호, 801호 - 806호, 901호 - 906호, 1001호 - 1006호, 1101호 - 1106호, 1201호 - 1206호, 1301호 - 1306호, 1401호 - 1406호, 1501호 -
	제4반	성화동	619번지 성화주공아파트 208동 101호 - 106호, 201호 - 206호, 301호 - 306호, 401호 - 406호, 501호 - 506호, 601호 - 606호, 701호 - 706호, 801호 - 806호, 901호 - 906호, 1001호 - 1006호, 1101호 - 1106호, 1201호 - 1206호, 1301호 - 1306호, 1401호 - 1406호, 1501호 -
47통	제1반	성화동	619번지 성화주공아파트 209동 101호 - 106호, 201호 - 206호, 301호 - 306호, 401호 - 406호, 501호 - 506호, 601호 - 606호, 701호 - 706호, 801호 - 806호, 901호 - 906호, 1001호 - 1006호, 1101호 - 1106호, 1201호 - 1206호, 1301호 - 1306호, 1401호 - 1406호, 1501호 -
	제2반	성화동	619번지 성화주공아파트 210동 101호 - 105호, 201호 - 205호, 301호 - 305호, 401호 - 405호, 501호 - 505호, 601호 - 605호, 701호 - 705호, 801호 - 805호, 901호 - 905호, 1001호 - 1005호, 1101호 - 1105호, 1201호 - 1205호, 1301호 - 1305호, 1401호 - 1405호, 1501호 -
	제3반	성화동	619번지 성화주공아파트 211동 101호 - 106호, 201호 - 206호, 301호 - 306호, 401호 - 406호, 501호 - 506호, 601호 - 606호, 701호 - 706호, 801호 - 806호, 901호 - 906호, 1001호 - 1006호, 1101호 - 1106호, 1201호 - 1206호, 1301호 - 1306호, 1401호 - 1406호, 1501호 -
	제4반	성화동	619번지 성화주공아파트 212동 102호 - 106호, 201호 - 206호, 301호 - 306호, 401호 - 406호, 501호 - 506호, 601호 - 606호, 701호 - 706호, 801호 - 806호, 901호 - 906호, 1001호 - 1006호, 1101호 - 1106호, 1201호 - 1206호, 1301호 - 1306호, 1401호 - 1406호, 1501호 -
제48통	제1반	성화동	619번지 성화주공아파트 213동 101호 - 1001호, 102호 - 1002호, 103호 - 1003호, 104호 - 1004호, 105호 - 1005호, 106호 - 1006호
	제2반	성화동	619번지 성화주공아파트 214동 101호 - 1001호, 102호 - 1002호, 103호 - 1003호, 104호 - 1004호
	제3반	성화동	619번지 성화주공아파트 215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4반	성화동	619번지 성화주공아파트 216 101호 - 12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203호, 104호 - 1204호
제49통	제1반	성화동	436(남양휴튼아파트 101동)
	제2반	성화동	436(남양휴튼아파트 102동)
	제3반	성화동	436(남양휴튼아파트 103동)
	제4반	성화동	436(남양휴튼아파트 104동)
	제5반	성화동	436(남양휴튼아파트 105동)
제50통	제1반	성화동	436(남양휴튼아파트 106동)
	제2반	성화동	436(남양휴튼아파트 107동)
	제3반	성화동	436(남양휴튼아파트 108동)
	제4반	성화동	436(남양휴튼아파트 109동)
	제5반	성화동	436(남양휴튼아파트 110동)
51통	제1반	죽림동	296 ~ 334
	제2반	죽림동	335 ~ 378
	제3반	죽림동	379 ~ 415
	제4반	죽림동	61의1, 64의15, 65의10, 65의1, 65의10, 77의2, 78, 79, 81의2, 82의3, 83의1
52통	제1반	성화동	616 (구룡산 휴먼시아 3단지@ 301동 101호 ~ 1304호)
	제2반	성화동	616 (구룡산 휴먼시아 3단지@ 302동 101호 ~ 1006호)
	제3반	성화동	616 (구룡산 휴먼시아 3단지@ 303동 101호 ~ 1506호)
	제4반	성화동	616 (구룡산 휴먼시아 3단지@ 304동 101호 ~ 1204호)
53통	제1반	성화동	616 (구룡산 휴먼시아 3단지@ 305동 101호 ~ 1504호)
	제2반	성화동	616 (구룡산 휴먼시아 3단지@ 306동 101호 ~ 1304호)
	제3반	성화동	616 (구룡산 휴먼시아 3단지@ 307동 101호 ~ 1504호)
	제4반	성화동	616 (구룡산 휴먼시아 3단지@ 308동 101호 ~ 1504호)
54통	제1반	성화동	708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401동 101호-1001호, 102호-1002호, 103호-1003호, 304호-1004호, 105호-1005호, 106호-1006호, 107호-1007호

	제2반	성화동	708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402동 101호-1001호,102호-1002호,103호-1003호, 304호-1004호,105호-1005호,106호-1006호, 107호-1007호
	제3반	성화동	708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403동 101호-1501호,102호-1502호,103호-1503호, 104호-1504호
	제4반	성화동	708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403동 105호-1505호,306호-1506호,107호-1507호, 108호-1508호
	제5반	성화동	708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404동 101호-1501호,102호-1502호,103호-1503호, 104호-1504호
	제6반	성화동	708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404동 105호-1505호,306호-1506호,107호-1507호, 108호-1508호
제55통	제1반	성화동	708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405동 101호-1501호,102호-1502호,103호-1503호 104호-1504호
	제2반	성화동	708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405동 105호-1505호,106호-1506호,107호-1507호 108호-1508호
	제3반	성화동	708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406동 101호-1501호,102호-1502호,103호-1503호 104호-1504호
	제4반	성화동	708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406동 105호-1505호,106호-1506호,107호-1507호 108호-1308호
	제5반	성화동	708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407동 101호-1201호,102호-1202호,103호-1203호 104호-1204호,105호-1205호
	제6반	성화동	708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407동 306호-1406호,107호-1407호,108호-1408호 109호-1409호,110호-1410호
	제7반	성화동	708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408동 101호-1201호,102호-1202호,103호-1203호 104호-1204호,105호-1205호
	제8반	성화동	708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408동 306호-1406호,107호-1407호,108호-1408호 109호-1409호,110호-1410호
제56통	제1반	성화동	897 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501동 101호-1001호, 102호-1002호, 103호-1003호, 304-1004호, 105호-1005호, 106호-1006호, 107호-1007호, 108호-1008호
	제2반	성화동	897 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502동 101호-1301호, 102호-1302호, 103호-1303호, 104호-1304호
	제3반	성화동	897 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502동 105호-1305호, 106호-1306호, 107호-1307호, 108호-1308호
	제4반	성화동	897 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503동 101호-1001호, 102호-1002호, 103호-1003호, 304호-1004호, 105호-1005호, 106호-806호, 107호-807호
	제5반	성화동	897 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504동 101호-1301호, 102호-1302호, 103호-1303호, 104호-1304호, 305호-1305호, 106호-1106호, 107호-1107호
	제6반	성화동	897 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505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 103호-1303호, 104호-1304호
제57통	제1반	성화동	897 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506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제2반	성화동	897 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506동 105호-1505호, 106호-1506호, 107호-1507호, 108호-1508호
	제3반	성화동	897 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507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제4반	성화동	897 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507동 105호-1505호, 106호-1506호, 107호-1507호, 108호-1508호
	제5반	성화동	897 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508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 303호-1503호, 104호-1504호
	제6반	성화동	897 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508동 105호-1505호, 106호-1506호, 107호-1507호, 108호-1508호
제58통	제1반	개신동	638 ~ 652
	제2반	개신동	653 ~ 661
	제3반	개신동	662 ~ 672
	제4반	개신동	673 ~ 688
제59통	제1반	성화동	711 ~ 760
	제2반	성화동	764 ~ 770
	제3반	성화동	772 ~ 777
	제4반	성화동	779 ~ 781, 787 ~ 790
	제5반	성화동	791 ~ 800
	제6반	성화동	801 ~ 810
	제7반	성화동	811 ~ 820
제60통	제1반	성화동	823 ~ 828, 832 ~ 838
	제2반	성화동	839 ~ 853
	제3반	성화동	854 ~ 868

				제4반	성화동	869 ~ 880
				제5반	성화동	881 ~ 889
				제6반	성화동	898 ~ 920
				제7반	성화동	921 ~ 928
				제8반	성화동	929 ~ 935
			제61통	제1반	성화동	943 ~ 954
				제2반	성화동	956 ~ 970
				제3반	성화동	973 ~ 984
				제4반	성화동	985 ~ 994
				제5반	성화동	995 ~ 1003
				제6반	성화동	1004 ~ 1010, 1013 ~ 1018
				제7반	성화동	1019 ~ 1032
			제62통	제1반	성화동	939 호반베르디움 101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제2반	성화동	939 호반베르디움 102동 201호-2001호, 202호-2002호, 203호-2003호
				제3반	성화동	939 호반베르디움 103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203호-2003호, 204호-2004호
				제4반	성화동	939 호반베르디움 104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제5반	성화동	939 호반베르디움 105동 101호-1701호, 102호-1702호, 103호-1703호
			제63통	제1반	성화동	939 호반베르디움 106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103호-2003호, 104호-2004호
				제2반	성화동	939 호반베르디움 107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103호-2003호, 104호-2004호
				제3반	성화동	939 호반베르디움 112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103호-2003호, 104호-2004호
				제4반	성화동	939 호반베르디움 113동 101호-1001호, 102호-1002호 203호-2003호, 204호-2004호
			제64통	제1반	성화동	939 호반베르디움 108동 201호-2001호, 202호-2002호 203호-2003호, 204호-2004호
				제2반	성화동	939 호반베르디움 109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제3반	성화동	939 호반베르디움 110동 101호-2001호, 202호-2002호 103호-2003호, 104호-2004호
				제4반	성화동	939 호반베르디움 111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103호-2003호, 104호-2004호
			제65통	제1반	성화동	1034 청주성화2 다안채6단지아파트 601동
				제2반	성화동	1034 청주성화2 다안채6단지아파트 602동
				제3반	성화동	1034 청주성화2 다안채6단지아파트 603동
				제4반	성화동	1034 청주성화2 다안채6단지아파트 604동
			제66통	제1반	성화동	1034 청주성화2 다안채6단지아파트 605동
				제2반	성화동	1034 청주성화2 다안채6단지아파트 606동
				제3반	성화동	1034 청주성화2 다안채6단지아파트 607동
				제4반	성화동	1034 청주성화2 다안채6단지아파트 608동
				제5반	성화동	1034 청주성화2 다안채6단지아파트 609동
흥덕구	소 계	8	315	1639		
	운천신봉동	1	제1통	제1반	운천동	537의1 ~ 537의17, 541의1 ~ 541의22
				제2반	운천동	536-1 (일심A 101-503호)
				제3반	운천동	536-1 (일심A 104-507호)
				제4반	운천동	536-1 (일심A 108-511호)
				제5반	운천동	536-1 (일심A 112-515호)
				제6반	운천동	540 ~ 540의12, 542의1, 543의1, 543의27, 546 547의1, 547의5, 555의2 ~ 555의17, 556의2, 557의10 ~ 557의13, 559의2, 559의11, 559의12
				제7반	운천동	422의29 ~ 422의97, 560의2, 568의1, 576의3, 596의1
			제2통	제1반	운천동	577 (삼일무지개A 101동 101 ~ 1101호, 102 ~ 1102호)
				제2반	운천동	577 (삼일무지개A 101동 103 ~ 1103호, 104 ~ 1104호)
				제3반	운천동	577 (삼일무지개A 101동 105 ~ 1105호, 106 ~ 1106호)
				제4반	운천동	577 (삼일무지개A 102동 101 ~ 1101호, 102 ~ 1102호, 103호 ~ 1103호)
				제5반	운천동	577 (삼일무지개A 102동 104 ~ 1104호, 105 ~ 1105호)

	제6반	운천동	577 (삼일무지개A 102동 106 ~ 1106호, 107 ~ 1107호)
	제7반	운천동	577 (삼일무지개A 102동 108 ~ 1108호, 109 ~ 1109호)
	제8반	운천동	577 (삼일무지개A 103동 101 ~ 1301호, 102 ~ 1502호, 103호 ~ 1503호)
	제9반	운천동	577 (삼일무지개A 103동 104 ~ 1504호, 105 ~ 1505호)
	제10반	운천동	577 (삼일무지개A 103동 106 ~ 1506호, 107 ~ 1507호)
제3통	제1반	운천동	577 (삼일무지개A 104동 101 ~ 1501호, 102 ~ 1502호, 103호 ~ 1503호)
	제2반	운천동	577 (삼일무지개A 104동 104 ~ 1504호, 105 ~ 1505호)
	제3반	운천동	577 (삼일무지개A 104동 106 ~ 1506호, 107 ~ 1507호)
	제4반	운천동	577 (삼일무지개A 104동 108 ~ 1508호, 109 ~ 1509호)
	제5반	운천동	580의1 (삼일무지개A 105동 101 ~ 216호, 상가), 580의1 (삼일무지개A 105동 301 ~ 416호)
	제6반	운천동	580의1 (삼일무지개A 105동 501 ~ 616호)
	제7반	운천동	580의1 (삼일무지개A 105동 701 ~ 816호)
	제8반	운천동	580의1 (삼일무지개A 105동 901 ~ 1016호)
	제9반	운천동	580의1 (삼일무지개A 105동 1101 ~ 1216호)
	제10반	운천동	580의1 (삼일무지개A 105동 1301 ~ 1515호)
제4통	제1반	운천동	1210 ~ 1237
	제2반	운천동	1238 ~ 1253
	제3반	운천동	1254 ~ 1261
	제4반	운천동	1324 ~ 1335
	제5반	운천동	1336 ~ 1347, 1435
	제6반	운천동	1348 ~ 1363
	제7반	운천동	1364 ~ 1368
제5통	제1반	운천동	1280~1291
	제2반	운천동	1292~1307
	제3반	운천동	1308 ~ 1323
	제4반	운천동	1262~1279
	제5반	운천동	1445~1462
	제6반	운천동	1463~1476
	제7반	운천동	1477~1486
제6통	제1반	운천동	1369 ~ 1393, 1487
	제2반	운천동	1394 ~ 1409
	제3반	운천동	1410 ~ 1425
	제4반	운천동	1426 ~ 1444
제7통	제1반	운천동	1569 ~ 1606
	제2반	운천동	1672 ~ 1685
	제3반	운천동	1686 ~ 1702
	제4반	운천동	1648 ~ 1656
	제5반	운천동	1657 ~ 1671
제8통	제1반	운천동	965 ~ 986
	제2반	운천동	987 ~ 1006
	제3반	운천동	1007 ~ 1019
	제4반	운천동	1020 ~ 1030
	제5반	운천동	1067 ~ 1081
제9통	제1반	운천동	867~889
	제2반	운천동	890~906
	제3반	운천동	907~919
	제4반	운천동	920~937
	제5반	운천동	938~964
제10통	제1반	운천동	813 ~ 813의6
	제2반	운천동	814 ~ 822
	제3반	운천동	823 ~ 835
	제4반	운천동	836 ~ 852

	제5반	운천동	853 ~ 866
제11통	제1반	운천동	1031 ~ 1054
	제2반	운천동	1055 ~ 1066, 1160 ~ 1164
	제3반	운천동	1125 ~ 1134
	제4반	운천동	1135 ~ 1144
	제5반	운천동	1145 ~ 1159, 1121 ~ 1124
제12통	제1반	운천동	678 ~ 682
	제2반	운천동	683 ~ 698
	제3반	운천동	699 ~ 714
	제4반	운천동	753 ~ 768
	제5반	운천동	769 ~ 787
제13통	제1반	운천동	677 ~ 1 (진양A 1동 )
	제2반	운천동	677 ~ 1 (진양A 2동 )
	제3반	운천동	677 ~ 1 (진양A 3동 )
	제4반	운천동	677 ~ 1 (진양A 5동 )
	제5반	운천동	677 ~ 1 (진양A 6동 )
제14통	제1반	운천동	677 ~ 1 (진양A 7동 )
	제2반	운천동	677 ~ 1 (진양A 8동 )
	제3반	운천동	677 ~ 1 (진양A 9동 )
	제4반	운천동	677 ~ 1 (진양A 10동 ),677 ~ 1 (진양A상가 101 ~ 220호)
제15통	제1반	운천동	677 (세원A 101동)
	제2반	운천동	677 (세원A 102동)
	제3반	운천동	677 (세원A 103동)
	제4반	운천동	677 (세원A 104동)
	제5반	운천동	677 (세원A 105동)
	제6반	운천동	677 (세원A 106동)
	제7반	운천동	677 (세원A 107동)
	제8반	운천동	677 (세원A 108동)
제16통	제1반	운천동	676 (형석A 1동 )
	제2반	운천동	676 (형석A 2동 )
	제3반	운천동	676 (형석A 3동 )
	제4반	운천동	676 (형석A 4동 )
	제5반	운천동	676 (형석A 5동 )
	제6반	운천동	676 (형석A 6동 ),676 (형석A 상가 )
제17통	제1반	신봉동	529 (한성A 1동)
	제2반	신봉동	529 (한성A 2동)
	제3반	신봉동	529 (한성A 3동)
	제4반	신봉동	529 (한성A 5동)
	제5반	신봉동	529 (한성A 6동)
	제6반	신봉동	529 (한성A 7동)
제18통	제1반	신봉동	528 (주공A 101동)
	제2반	신봉동	528 (주공A 102동)
	제3반	신봉동	528 (주공A 103동)
	제4반	신봉동	528 (주공A 104동)
	제5반	신봉동	528 (주공A 105동)
	제6반	신봉동	528 (주공A 106동)
	제7반	신봉동	528 (주공A 107동)
제19통	제1반	신봉동	528 (주공A 108동)
	제2반	신봉동	528 (주공A 109동)
	제3반	신봉동	528 (주공A 110동)
	제4반	신봉동	528 (주공A 111동)
	제5반	신봉동	528 (주공A 112동)
	제6반	신봉동	528 (주공A 113동)
제20통	제1반	신봉동	528 (주공A 114동)



	제2반	신봉동	528 (주공A 115동)
	제3반	신봉동	528 (주공A 116동)
	제4반	신봉동	528 (주공A 117동)
	제5반	신봉동	528 (주공A 118동)
	제6반	신봉동	528 (주공A 119동)
제21통	제1반	신봉동	528 (주공A 127동)
	제2반	신봉동	528 (주공A 128동)
	제3반	신봉동	528 (주공A 129동)
	제4반	신봉동	528 (주공A 130동)
	제5반	신봉동	528 (주공A 131동)
	제6반	신봉동	528 (주공A 132동)
	제7반	신봉동	528 (주공A 133동)
제22통	제1반	신봉동	310 (삼정백조A 101동 101 ~ 1101호, 102 ~ 1102호),310 (삼정백조A 101동 103 ~ 1103호, 104 ~ 1104호)
	제2반	신봉동	310 (삼정백조A 101동 105 ~ 1105호, 106 ~ 1106호),310 (삼정백조A 101동 107 ~ 1107호, 108 ~ 1108호)
	제3반	신봉동	310 (삼정백조A 102동 101 ~ 1101호, 102 ~ 1102호),310 (삼정백조A 102동 103 ~ 1103호, 104 ~ 1104호)
	제4반	신봉동	310 (삼정백조A 102동 105 ~ 1105호, 106 ~ 1106호),310 (삼정백조A 102동 107 ~ 1107호, 108 ~ 1108호)
	제5반	신봉동	310 (삼정백조A 102동 109 ~ 1109호, 110 ~ 1110호)
	제6반	신봉동	310 (삼정백조A 103동 101 ~ 1101호, 102 ~ 1102호),310 (삼정백조A 103동 103 ~ 1103호, 104 ~ 1104호)
	제7반	신봉동	310 (삼정백조A 103동 105 ~ 1105호, 106 ~ 1106호),310 (삼정백조A 103동 107 ~ 1107호, 108 ~ 1108호)
	제8반	신봉동	310 (삼정백조A 103동 109 ~ 1109호, 110 ~ 1110호)
제23통	제1반	신봉동	310 (삼정백조A 104동 101 ~ 1101호, 102 ~ 1102호),310 (삼정백조A 104동 103 ~ 1103호, 104 ~ 1104호)
	제2반	신봉동	310 (삼정백조A 104동 105 ~ 1105호, 106 ~ 1106호),310 (삼정백조A 104동 107 ~ 1107호, 108 ~ 1108호)
	제3반	신봉동	310 (삼정백조A 105동101 ~ 1101호, 102 ~ 1102호),310 (삼정백조A 105동103 ~ 1103호, 104 ~ 1104호)
	제4반	신봉동	310 (삼정백조A 105동105 ~ 1105호, 106 ~ 1106호),310 (삼정백조A 105동107 ~ 1107호, 108 ~ 1108호)
	제5반	신봉동	310 (삼정백조A 106동101 ~ 1001호, 102 ~ 1002호),310 (삼정백조A 106동103 ~ 1003호, 104 ~ 1004호)
	제6반	신봉동	310 (삼정백조A 106동105 ~ 1005호, 106 ~ 1006호)
	제7반	신봉동	310 (삼정백조A 107동101 ~ 1001호, 102 ~ 1002호),상가1층 101 ~ 105호, 2층 201 ~ 204호, 상가3층301 ~ 309호
제24통	제1반	신봉동	328-1, 338, 336 ~ 340의1, 342, 342의3
	제2반	신봉동	340의3 ~ 340의4, 341, 342의2, 342의7,343 ~ 348의12, 430의4
제25통	제1반	신봉동	22의3 ~ 22의15, 23의5, 24, 25의2,25의8, 26의2, 26의5, 26의12 ~ 26의19, 26의39, 28의11, 28의31, 35의2, 35의5 ~ 35의7, 35의18, 36 ~ 37, 40 ~ 44, 45, 45의3,48 ~ 50, 153, 168의1, 168의2, 170의5,170의8, 171의6, 171의38, 172의1,173의4,173의12
	제2반	신봉동	26의6, 28의3, 28의13, 28의15, 28의20, 28의21, 32의1 ~ 32의4, 33 ~ 34, 35의3, 35의4, 35의14
	제3반	신봉동	167(삼성A 가동)
	제4반	신봉동	167(삼성A 나동)
제26통	제1반	신봉동	35-1 (두진백로A 101동 101 ~ 1101호, 102 ~ 1102호)
	제2반	신봉동	35-1 (두진백로A 101동 103 ~ 1103호, 104 ~ 1104호, 105 ~ 805호)
	제3반	신봉동	35-1 (두진백로A 102동 101 ~ 309호, 상가)
	제4반	신봉동	35-1 (두진백로A 102동 401 ~ 609호)
	제5반	신봉동	35-1 (두진백로A 102동 701 ~ 909호)
	제6반	신봉동	35-1 (두진백로A 102동 1001 ~ 1209호)
	제7반	신봉동	35-1 (두진백로A 102동 1301 ~ 1509호)
	제8반	신봉동	35-1 (두진백로A 103동 101 ~ 405호)
	제9반	신봉동	35-1 (두진백로A 103동 501 ~ 805호)
	제10반	신봉동	35-1 (두진백로A 103동 901 ~ 1205호)

제27통	제1반	신봉동	212, 213의1, 213의6, 226의12, 226의13, 226의17, 233 ~ 243, 244의4, 244의7, 252, 253, 254의1, 254의7, 255의1, 256, 257의2, 257의11, 257의13, 257의16, 258 ~ 266, 463, 500 ~ 527
	제2반	신봉동	14 ~ 16의1, 16의3, 170의7, 173의1, 173의3, 173의5, 173의6, 173의10, 213의9, 220 ~ 226의11, 226의15, 227 ~ 229의3, 244의2, 244의3, 244의5
	제3반	신봉동	16의2, 16의4, 17 ~ 21, 22의1, 26의1, 26의8, 26의34, 28
제28통	제1반	신봉동	159 (삼성A 1동 101 ~ 1502호)
	제2반	신봉동	159 (삼성A 1동 103 ~ 1504호)
	제3반	신봉동	159 (삼성A 2동 101 ~ 1502호)
	제4반	신봉동	159 (삼성A 2동 103 ~ 1504호, 상가)
	제5반	신봉동	159 (삼성A 3동 101 ~ 1302호)
	제6반	신봉동	159 (삼성A 3동 103 ~ 1304호)
	제7반	신봉동	159 (삼성A 3동 105 ~ 1306호)
	제8반	신봉동	159 (삼성A 4동 101 ~ 1202호)
	제9반	신봉동	159 (삼성A 4동 103 ~ 1204호)
	제10반	신봉동	159 (삼성A 4동 105 ~ 1206호)
제29통	제1반	신봉동	159 (삼성A 5동 101 ~ 1502호)
	제2반	신봉동	159 (삼성A 5동 103 ~ 1504호)
	제3반	신봉동	159 (삼성A 5동 105 ~ 1506호)
	제4반	신봉동	159 (삼성A 5동 107 ~ 1508호)
	제5반	신봉동	159 (삼성A 6동 101 ~ 1502호)
	제6반	신봉동	159 (삼성A 6동 103 ~ 1504호)
	제7반	신봉동	159 (삼성A 6동 105 ~ 1506호)
	제8반	신봉동	159 (삼성A 7동 101 ~ 1502호)
	제9반	신봉동	159 (삼성A 7동 103 ~ 1504호)
	제10반	신봉동	159 (삼성A 7동 105 ~ 1506호)
제30통	제1반	신봉동	산7의7, 산8의1, 산10의1, 45의2, 51 ~ 51의5, 53, 146의7, 147, 150의1, 152 ~ 152의4, 156의1, 163
	제2반	신봉동	190의1 ~ 190의3, 192 ~ 192의2, 195 ~ 195의3, 196 ~ 196의2, 200 ~ 200의3, 208의1 ~ 208의3, 209의1, 211의1, 214의3, 215의2, 216의3, 216의4
	제3반	신봉동	93, 93의1, 94 ~ 94의6, 97의1
제31통	제1반	운천동	1488 ~ 1499
	제2반	운천동	1500 ~ 1518
	제3반	운천동	1519 ~ 1534
	제4반	운천동	1535 ~ 1550
	제5반	운천동	1551 ~ 1568
	제6반	운천동	1607 ~ 1628
	제7반	운천동	1629 ~ 1647
제32통	제1반	운천동	1117 ~ 1120, 1199 ~ 1209
	제2반	운천동	1165 ~ 1198
	제3반	운천동	1082 ~ 1092, 1109 ~ 1111
	제4반	운천동	1093 ~ 1108, 1112 ~ 1116
제33통	제1반	운천동	715 ~ 722
	제2반	운천동	737 ~ 752
	제3반	운천동	723 ~ 736
	제4반	운천동	800 ~ 812
	제5반	운천동	788 ~ 799
제34통	제1반	신봉동	528 (주공A 120동)
	제2반	신봉동	528 (주공A 121동)
	제3반	신봉동	528 (주공A 122동)
	제4반	신봉동	528 (주공A 123동)
	제5반	신봉동	528 (주공A 124동)
	제6반	신봉동	528 (주공A 125동)
	제7반	신봉동	528 (주공A 126동)

		제35통	제1반	신봉동	177(우림필유A 101동)
			제2반	신봉동	177(우림필유A 102동)
			제3반	신봉동	177(우림필유A 103동)
			제4반	신봉동	177(우림필유A 104동)
		제36통	제1반	신봉동	177(우림필유A 105동)
			제2반	신봉동	177(우림필유A 106동)
			제3반	신봉동	177(우림필유A 107동)
			제4반	신봉동	177(우림필유A 108동)
복대제1동	1	제1통	제1반	복대동	834의1, 834의2~13, 834의16~18
			제2반	복대동	848의1~848의11, 839의1, 839의3~839의10, 839의13, 839의15~839의17, 841의3~841의6, 841의8, 841의12, 841의13, 841의15, 841의18
			제3반	복대동	845의1~845의9, 847의1~847의7, 869
			제4반	복대동	833의1(청송A 1동)
			제5반	복대동	833의1(청송A 2동)
			제6반	복대동	833의1(청송A 3동, 5동)
		제2통	제1반	복대동	836의1~6, 836의8, 836의9, 843, 843의1~3, 844
			제2반	복대동	831의1, 831의2, 831의4, 831의5, 831의7~20
			제3반	복대동	829의1~13, 829의15~17
			제4반	복대동	830의1~13, 830의15, 830의16, 830의18~10
			제5반	복대동	832의4~6, 832의8, 832의9, 832의14, 832의15, 832의19~22, 832의24
			제6반	복대동	832의1~3, 832의10~13, 832의16, 832의23
		제3통	제1반	복대동	60의1, 60의22~24, 66의1, 66의4, 66의5, 66의7, 66의8, 67의4, 67의22, 67의23, 67의25, 67의34, 67의39, 68의18, 68의20
			제2반	복대동	67의2, 67의42~44, 68, 71의61, 71의62, 71의83, 71의84, 71의91
			제3반	복대동	65의1, 65의17, 67의5~8, 67의38
			제4반	복대동	71의1, 71의5, 71의12, 71의16, 71의17, 71의55, 71의56, 71의58, 71의59, 71의79~81, 71의85, 73의25
			제5반	복대동	71의26~28, 71의32~34, 71의38, 71의40, 71의41
			제6반	복대동	1의13, 71의23~25, 71의29~31, 71의36, 71의76, 71의86, 72의1, 72의2, 73의1, 73의7, 73의24, 73의26
		제4통	제1반	복대동	56, 56의13, 57의1, 57의4, 58, 59의1~5, 59의9~11, 60의3, 60의8, 60의13, 60의29, 60의32, 61의3, 61의4, 61의9, 61의13, 61의14, 64의17, 78의37, 82의15
			제2반	복대동	60의2, 60의5, 60의6, 60의7, 61의1, 63, 64의1, 64의2, 64의9, 64의12, 64의21, 65의2, 65의5, 65의14, 73의11,
			제3반	복대동	64의6, 64의16, 64의19, 74의2, 74의8, 75의6, 75의8, 75의11, 76의4, 76의8, 76의14, 77, 77의1, 78, 78의1, 78의2, 78의5, 78의53, 79의1, 79의3, 79의5, 80의1, 81의1, 81
			제4반	복대동	73, 73의5, 73의14, 73의17~21, 74의1, 75의1~75의3, 78의7, 78의19, 78의20, 78의22, 78의24, 78의25, 78의56
		제5통	제1반	복대동	78의8, 78의18, 84의5, 84의11, 84의13, 84의17~23, 84의25~28, 84의39, 85
			제2반	복대동	83의9~13, 83의15, 83의17, 83의30, 83의31, 83의35~38, 84의6, 84의15, 84의16, 84의30, 84의31, 84의42, 85의4, 87, 88, 76의2, 76의12, 76의48, 78의12, 78의16, 78의28, 78의29, 78의31~78의33, 78의40, 83의1, 83의4
			제3반	복대동	58의1, 58의5, 58의9, 58의12, 58의13, 58의19, 58의26, 58의27, 58의29~34, 58의42~47, 83의19, 83의21, 83의29, 88의2~88의4, 88의6, 88의8, 103의1, 104의1
			제4반	복대동	58의6, 58의7, 58의21, 58의36, 58의39, 58의41, 58의50, 58의52, 58의53, 58의55, 78의41, 82의1~4, 82의11, 82의12, 104의7
		제6통	제1반	복대동	105의1, 106의1, 106의2, 106의8, 107의1, 107의5~7, 107의9, 107의11, 108의1, 625의1~8, 625의10, 630의1~8, 630의10, 630의11
			제2반	복대동	633의1~5, 634
			제3반	복대동	636의1~5, 637의1~5, 781의1~14
			제4반	복대동	826의1, 826의3~12, 827의1~6, 827의8, 827의9, 827의11, 828의1~7
		제7통	제1반	복대동	45의1~9, 47의1~13, 112의6, 115의2

	제2반	북대동	38의2, 38의3, 38의6, 38의8, 38의9, 38의13, 38의15, 38의17, 38의18, 44의1~3, 44의5, 44의7~13, 44의15, 44의17, 44의18
	제3반	북대동	39의1~17, 110의1, 118, 625의14
	제4반	북대동	38의1, 38의4, 38의7, 38의10~12, 38의14, 38의15, 38의19, 38의20, 38의22, 38의24
	제5반	북대동	26의1~14, 116의2, 117
제8통	제1반	북대동	981의1~981의16, 42의1~42의3
	제2반	북대동	37의1~10, 37의12~20
	제3반	북대동	22의1~10, 22의12, 23, 24의1~3, 24의5~7
	제4반	북대동	34의1~13, 35의1~8, 35의10, 35의12, 35의13, 36의1~
제9통	제1반	북대동	20의1~9, 21의1~10
	제2반	북대동	17의1~7, 17의9, 17의10, 18의1~7, 19의1~3
	제3반	북대동	144, 145의4, 146, 146의1, 146의3, 146의5~7, 147, 147의2, 148, 151, 154의1, 155, 227의13, 228의2
	제4반	북대동	95의7, 141, 142의1~12, 142의15~17, 143의1~4, 145의1~4, 149의1, 149의2, 149의5~7, 229의2, 229의3, 229의25~27, 229의32, 229의34
	제5반	북대동	140의1(재원A101~701)
제10통	제1반	북대동	99의4, 99의5, 99의8~13, 134의1, 124의3, 134의4, 134의9~12, 134의18
	제2반	북대동	136의1~3, 136의10, 137, 137의3~7, 137의11~14
	제3반	북대동	132, 132의2~7, 134의13~17, 134의19, 135의1~6, 135의8, 135의9, 135의11~14, 135의19, 138, 138의6
	제4반	북대동	101의2, 132의9~12, 133, 133의1~4, 134의2, 134의5, 134의7, 134의8
	제5반	북대동	25의1, 25의10, 25의17~23, 25의25
	제6반	북대동	25의3~8, 25의4~8, 25의11~16
제11통	제1반	북대동	95의1(덕성A, B동 101호~801호, 201호~208호, 301호~308호, 401호~408호, 501호~508호, 601호~608호)
	제2반	북대동	95의1(덕성A, B동 701호~708호, 801호~808호, 901호~908호, 1001호~1008호, 1201호~1208호)
	제3반	북대동	95의1(덕성A, B동 109호~112호, 209호~212호, 309호~312호, 409호~412호, 509호~512호, 609호~612호, 709호~712호, 809호~812호, 909호~912호, 1009호~1012호, 501호~508호, 601호~608호)
	제4반	북대동	95의1(덕성A, A동 101호~112호, 201호~212호, 301호~312호, 401호~412호)
	제5반	북대동	95의1(덕성A, A동 501호~512호, 601호~612호, 701호~712호, 801호~812호)
	제6반	북대동	95의1(덕성A, A동 901호~912호, 1001호~1012호, 1101호~1112호, 1201호~1212호)
	제7반	북대동	95의1(덕성A, A동 1301호~1312호, 1401호~1412호, 1501호~1512호)
	제8반	북대동	95의1(덕성A, A동 113호~124호, 213호~224호, 313호~324호, 413호~424호)
	제9반	북대동	95의1(덕성A, A동 513호~524호, 613호~624호, 713호~724호, 401호~412호)
	제10반	북대동	95의1(덕성A, A동 913호~924호, 1013호~1024호, 1113호~1124호, 1213호~1224호, 1313호~1324호, 1413호~1424호, 1513호~1524호)
제12통	제1반	북대동	23의2(임), 93의3, 93의5, 93의9, 93의12~93의16, 93의18, 93의22, 93의24~93의27, 94, 94의1, 94의4, 95의14, 95의15, 229, 229의1, 229의8~229의10, 229의12~229의17, 229의29~229의31, 230의3, 230의45, 230의46, 230의64, 266의10, 266의40, 266의41, 266의44, 266의45
	제2반	북대동	228의3, 229의5~229의7, 229의19, 229의20, 229의22, 230의6~230의8, 230의13, 230의15, 230의48~230의50, 230의55, 230의56, 231의8, 231의30, 231의31
	제3반	북대동	227의1, 228의1, 230의11, 230의14, 230의39, 230의60, 230의61, 231의9, 231의26, 231의28, 231의33, 231의34, 7의10(임), 9의1(임), 230의18~230의20, 230의22~230의26, 230의28~230의33, 230의47, 230의51, 230의52, 230의59, 266의13, 266의20, 266의56, 266의61, 266의68
	제4반	북대동	230의1, 230의4, 230의5, 230의34~230의38, 30의58, 230의71, 230의72, 266의17~266의19, 266의39, 266의46, 266의48~266의54, 266의57
제13통	제1반	북대동	40의1~40의10, 40의12, 40의14~40의18, 31의1~31의15, 31의17

	제2반	북대동	27의1 ~ 27의6, 28, 28의1 ~ 28의9
	제3반	북대동	29의1 ~ 29의6, 30의1 ~ 30의7
	제4반	북대동	12의1 ~ 12의4, 12의6 ~ 12의10, 13의1 ~ 13의7
	제5반	북대동	14의1 ~ 14의8, 15의1, 15의2, 15의4, 15의5, 15의7
제14통	제1반	북대동	10의3, 10의11 ~ 10의13, 11의2, 11의4, 11의11, 11의13
	제2반	북대동	10의1, 10의2, 10의4 ~ 10의6, 10의8, 10의9, 10의10, 11의1, 11의5, 11의7 ~ 11의10
	제3반	북대동	7의1 ~ 7의7, 9의1 ~ 9의9
	제4반	북대동	196의6, 196의8, 196의9, 196의10, 196의12, 196의14, 196의30, 196의32 ~ 196의36, 197의7, 197의9, 197의14 ~ 197의16, 198의4 ~ 198의7, 203의10, 203의11, 203의23, 203의24, 203의27, 203의28, 203의83, 203의84, 626
제15통	제1반	북대동	196의15, 196의19, 196의23 ~ 196의27, 196의28, 203의66 ~ 203의68
	제2반	북대동	203의39, 203의45, 203의47, 203의48, 203의54, 203의55, 203의57, 203의58, 215, 216의3, 216의6, 216의7, 216의28, 216의38, 216의29, 219의1, 262의4
	제3반	북대동	196의3, 203의4, 216의17, 350의40, 350의42 ~ 350의45, 350의50
	제4반	북대동	216의1, 216의8, 216의31 ~ 216의37, 218의3, 350의36 ~ 350의39
	제5반	북대동	350의15, 350의16, 350의18 ~ 350의20, 350의22, 350의23, 350의25 ~ 350의28, 350의31, 350의52
	제6반	북대동	216의9, 216의10, 216의14, 216의15, 216의16, 216의20, 216의22, 218의6, 221의9, 241의6, 241의10, 242의2, 248의2, 349,
	제7반	북대동	216의11, 221의8, 312의15, 345의4, 346의1, 346의4, 346의8, 347의1 ~ 347의3, 348, 350의1, 350의6, 350의7, 350의18, 352, 352의1, 353, 354의1
제16통	제1반	북대동	203의2, 203의85, 203의86, 210, 210의1 ~ 210의6, 210의32, 212, 212의4 ~ 212의6, 212의11, 214, 214의1, 220의2, 221의10, 221의11, 221의23, 221의24, 222의3 ~ 222의
	제2반	북대동	203의40 ~ 203의43, 203의49 ~ 203의53, 203의59, 203의60, 203의62, 203의63, 203의65, 210의8 ~ 210의16, 217
	제3반	북대동	203의1, 203의6, 203의13 ~ 203의22, 203의30 ~ 203의32, 203의35, 203의37, 203의74, 203의75, 203의80, 203의81, 210의17 ~ 210의21
	제4반	북대동	209의4 ~ 209의9, 209의11, 209의12, 209의14, 209의15, 209의19, 210의23 ~ 210의26
	제5반	북대동	203의34, 204의2, 204의3, 204의8, 204의11, 204의14, 205의1, 205의5, 205의6, 205의7, 207, 207의2, 208, 208
	제6반	북대동	153, 156, 157, 158의3, 158의5, 158의6, 158의8 ~ 158의13, 158의16, 206의1, 206의2, 206의3, 206의6, 220의4, 226의1, 227의3, 227의17, 227의19, 635의6
제17통	제1반	북대동	221의7(대원A 1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북대동	221의7(대원A 101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3반	북대동	221의7(대원A 101동 109호 ~ 1509호, 110호 ~ 1510호, 102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제4반	북대동	221의7(대원A 102동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5반	북대동	221의7(대원A 102동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109호 ~ 1509호, 110호 ~ 1510호)
	제6반	북대동	221의7(대원A 104동 101호 ~ 12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803호, 104호 ~ 804호)
	제7반	북대동	221의7(대원A 105동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404호)
	제8반	북대동	221의7(대원A 105동 105호 ~ 1405호, 106호 ~ 1406호, 107호 ~ 1407호, 108호 ~ 1408호)
제18통	제1반	북대동	221의15(대원A 103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북대동	221의15(대원A 103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608호)
	제3반	북대동	221의15(대원A 106동 101호 ~ 12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403호, 상가 지하1층 4동지상1층 9동, 지상2층 4동, 지상3층 2동)
	제4반	북대동	221의15(대원A 106동 104호 ~ 1404호, 105호 ~ 1405호, 106호 ~ 1406호)
	제5반	북대동	221의15(대원A 108동 101호 ~ 5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404호, 109동 101호 ~ 601호, 102호 ~ 602호)

	제6반	북대동	221의7(대원A 107동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404호)
	제7반	북대동	221의7(대원A 107동 105호 ~ 1405호, 106호 ~ 1406호, 107호 ~ 1407호, 108호 ~ 1408호)
제19통	제1반	북대동	226의8, 227의2, 227의6, 227의7, 231의5 ~ 231의7, 231의12, 231의17 ~ 231의19, 231의27, 231의36, 232, 232의1, 232의3, 233의2, 233의1, 233의5, 233의6, 233의9, 233의14, 233의19, 234, 234의1, 234의3, 234의4, 235의5 ~ 235의8, 235의13, 235의14, 260의2, 260의7 ~ 260의11, 260의13 ~ 260의17
	제2반	북대동	222의8, 225의1, 225의3, 225의5 ~ 225의8, 225의10 ~ 225의13, 225의15, 225의16, 226, 226의2 ~ 226의4, 233의7, 233의10, 233의12, 235의10, 235의11
	제3반	북대동	221의12 (주은아파트 102동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403호, 105호 ~ 1405호, 106호 ~ 1406호), 231의1, 262의1, 266의16
	제4반	북대동	221의12 (주은아파트 101동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109호 ~ 1509호, 110호 ~ 1110호), 221의26, 221의33 ~ 221의41
	제5반	북대동	221의12 (주은아파트 101동 101호 ~ 9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221의29
제20통	제1반	북대동	292의14, 292의18 ~ 292의19, 331, 332의1 ~ 332의2, 334의4, 336, 336의2, 336의4, 336의6, 337의1, 384, 489의1, 489의3, 489의5, 490, 491, 492의7, 495의3, 495의6, 495의12, 497의6, 497의20, 498의1, 499의1, 499의5, 499의
	제2반	북대동	290의1, 290의4, 290의6, 290의8 ~ 290의12, 290의17, 290의25 ~ 290의26, 290의29, 292의17, 293의1, 294의1, 295, 296의1 ~ 296의2
	제3반	북대동	3236 ~ 3264
	제4반	북대동	3201 ~ 3235
제21통	제1반	북대동	3038 ~ 3064
	제2반	북대동	328의14, 329의1, 329의5 ~ 329의7, 331의4 ~ 331의9, 337의9, 341의1, 341의7, 341의12, 341의15, 341의19, 3321 ~ 3322
	제3반	북대동	3284 ~ 3304
	제4반	북대동	3305 ~ 3320, 3265 ~ 3283
	제5반	북대동	3323 ~ 3343
제22통	제1반	북대동	3098(현대1차A 101동 101호 ~ 1501호, 202호 ~ 1502호, 203호 ~ 1503호, 104호 ~ 1104호)
	제2반	북대동	3098(현대1차A 102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104호)
	제3반	북대동	3098(현대1차A 103동 101호 ~ 1501호, 202호 ~ 1502호)
	제4반	북대동	3098(현대1차A 104동 101호 ~ 11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제5반	북대동	3098(현대1차A 104동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6반	북대동	3098(현대1차A 105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7반	북대동	3098(현대1차A 106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상가 지상1층 6동)
	제8반	북대동	3098(현대1차A 106동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9반	북대동	3065 ~ 3097
제23통	제1반	북대동	4의2(삼일A 1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제2반	북대동	4의2(삼일A 101동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3반	북대동	4의2(삼일A 102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제4반	북대동	4의2(삼일A 102동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5반	북대동	4의2(삼일A 103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제6반	북대동	4의2(삼일A 103동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7반	북대동	4의2(삼일A 1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제8반	북대동	4의2(삼일A 104동 103호 ~ 1403호, 104호 ~ 1404호)
제24통	제1반	북대동	4의2(삼일A 105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제2반	북대동	4의2(삼일A 105동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3반	북대동	4의2(삼일A 106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제4반	북대동	4의2(삼일A 106동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5반	북대동	4의2(삼일A 107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제6반	북대동	4의2(삼일A 107동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상가지하1층, 지상1층11동, 지상2층19동, 지상3층7동
제25통	제1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3031(초등학교), 3030, 3031초등학교
	제2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01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3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 ~ 1504호
	제4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04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5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06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6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06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26통	제1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02동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103호 ~ 1403호
	제2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02동 104호 ~ 1404호, 105호 ~ 1405호, 106호 ~ 1406호
	제3반	북대동	북대동 3029현대2차A 203동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103호 ~ 1403호
	제4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03동 104호 ~ 1404호, 105호 ~ 1405호, 106호 ~ 1406호
	제5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05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제6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05동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7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07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8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07동 205G호,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27통	제1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08 201호 ~ 1501호, 202호 ~ 1502호, 203호 ~ 1503호, 204호 ~ 1504호
	제2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09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3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09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4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10동 101호 ~ 13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303호, 104호 ~ 1304호
	제5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10동 105호 ~ 1305호, 106호 ~ 1306호, 상가지상 1층8동, 지상2층5동, 지상3층5동
	제6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1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7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11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28통	제1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12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12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3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13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4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13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5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1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6반	북대동	3029현대2차A 214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29통	제1반	북대동	2461세원A 1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북대동	2461세원A 103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3반	북대동	2461세원A 103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4반	북대동	2461세원A 105동 101호 ~ 1001호, 102호 ~ 1002호, 103호 ~ 1003호, 104호 ~ 1004호
	제5반	북대동	2461세원A 105동 105호 ~ 1005호, 106호 ~ 1006호, 107호 ~ 1007호, 108호 ~ 1008호
제30통	제1반	북대동	2461세원A 102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북대동	2461세원A 102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3반	북대동	2461세원A 104동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103호 ~ 1403호
	제4반	북대동	2461세원A 104동 104호 ~ 1404호, 105호 ~ 1405호, 106호 ~ 1406호
	제5반	북대동	2461세원A 106동 101호 ~ 1101호, 102호 ~ 1102호, 103호 ~ 1103호, 104호 ~ 1104호
	제6반	북대동	2461세원A 106동 105호 ~ 1105호, 106호 ~ 1106호, 상가1층6동, 2층7동, 3층4동
제31통	제1반	북대동	2459두진백로A 101동 101호 ~ 12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203호, 104호 ~ 1204호
	제2반	북대동	2459두진백로A 102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제3반	북대동	2459두진백로A 102동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4반	북대동	2459두진백로A 103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5반	북대동	2459두진백로A 103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32통	제1반	북대동	2459두진백로A 1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상가 지하1층1동, 지상1층6동, 지상2층7
	제2반	북대동	2459두진백로A 104동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3반	북대동	2459두진백로A 105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제4반	북대동	2459두진백로A 105동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5반	북대동	2459두진백로A 106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제6반	북대동	2459두진백로A 106동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33통	제1반	북대동	2606벽산A 1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204호
	제2반	북대동	2606벽산A 102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3반	북대동	2606벽산A 103동 101호 ~ 13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203호, 104호 ~ 1204호
	제4반	북대동	2606벽산A 104동 101호 ~ 12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203호, 104호 ~ 1204호, 상가 지상1층6동, 지상2층1동
	제5반	북대동	2606벽산A 105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34통	제1반	북대동	2607세원테마빌A 201동 101호 ~ 1208호
	제2반	북대동	2607세원테마빌A 202동 101호 ~ 1204호
	제3반	북대동	2607세원테마빌A 203동 101호 ~ 1208호
	제4반	북대동	2607세원테마빌A 204동 101호 ~ 1204호
	제5반	북대동	2607세원테마빌A 205동 101호 ~ 1006호
	제6반	북대동	2607세원테마빌A 206동 101호 ~ 1004호, 상가
제35통	제1반	북대동	2608(북대중학교), 2755 ~ 2770
	제2반	북대동	2771 ~ 2786
	제3반	북대동	2787 ~ 2802
	제4반	북대동	2803 ~ 2818
	제5반	북대동	2747 ~ 2754, 2819 ~ 2832
제36통	제1반	북대동	2834 ~ 2847, 2847의1, 2847의2 2848 ~ 2851, 2851의1, 2851의2, 2852 ~ 2855, 2855의1, 2856 ~ 2858, 2858의1, 2859 ~ 2864, 2865 ~ 2875, 2917 ~ 2924
	제2반	북대동	2905 ~ 2916
	제3반	북대동	2876 ~ 2879, 2895 ~ 2904
	제4반	북대동	2880 ~ 2894
제37통	제1반	북대동	2571 ~ 2587
	제2반	북대동	2560 ~ 2570
	제3반	북대동	2542 ~ 2549
	제4반	북대동	2550 ~ 2559
	제5반	북대동	2588 ~ 2604
	제6반	북대동	2532 ~ 2541
	제7반	북대동	2522 ~ 2531, 2610



제38통	제1반	북대동	2666 ~ 2681, 2700 ~ 2719
	제2반	북대동	2682 ~ 2699
	제3반	북대동	2649 ~ 2665
	제4반	북대동	2720 ~ 2746
제39통	제1반	북대동	2470 ~ 2473, 2486 ~ 2501
	제2반	북대동	2502 ~ 2514
	제3반	북대동	2515 ~ 2521
	제4반	북대동	2462 ~ 2469, 2474 ~ 2485
	제5반	북대동	2611 ~ 2623, 2644 ~ 2648
	제6반	북대동	2624 ~ 2634
	제7반	북대동	2635 ~ 2643
제40통	제1반	북대동	2926 ~ 2933, 2955 ~ 2959, 3025 ~ 3028
	제2반	북대동	2946 ~ 2954
	제3반	북대동	2934 ~ 2945
	제4반	북대동	2960 ~ 2972
	제5반	북대동	2973 ~ 2982
제41통	제1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02동 101호 ~ 14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제3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03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4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제5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05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6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06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42통	제1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07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제2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07동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3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08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제4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08동 104호 ~ 1504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5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09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6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09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43통	제1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10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10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3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11동 101호 ~ 12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203호, 104호 ~ 1204호, 105호 ~ 1205호, 106호 ~ 1206호)
	제4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12동 101호 ~ 12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203호, 104호 ~ 1204호, 105호 ~ 1205호, 106호 ~ 1206호)
	제5반	북대동	2456(아름다운나날A 113동 101호 ~ 12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203호, 104호 ~ 1204호, 105호 ~ 1205호, 106호 ~ 1206호)
제44통	제1반	북대동	3033(아름다운나날2차A 201동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202동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제2반	북대동	3033(아름다운나날2차A 201동 103호 ~ 1403호, 104호 ~ 1404호, 105호 ~ 1405호, 106호 ~ 1406호)
	제3반	북대동	3033(아름다운나날2차A 203동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404호, 105호 ~ 1405호, 106호 ~ 1406호)
	제4반	북대동	3033(아름다운나날2차A 205동 101호 ~ 1101호, 102호 ~ 1102호, 103호 ~ 1003호, 104호 ~ 1404호, 105호 ~ 1405호, 106호 ~ 1406호)
제45통	제1반	북대동	3033(아름다운나날2차A 2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북대동	3033(아름다운나날2차A 206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2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제3반	북대동	3033(아름다운나날2차A 207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 208동 105호~1505호, 105호~1505호)
	제4반	북대동	3033(아름다운나날2차A 208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제46통	제1반	북대동	3012 ~ 3019, 3020 ~ 3023
	제2반	북대동	2999 ~ 3011
	제3반	북대동	2983 ~ 2990, 2996 ~ 2998
	제4반	북대동	417, 418의1, 418의5 ~ 418의7, 418의16, 418의17, 449의5, 2991 ~ 2995, 3024
제47통	제1반	북대동	3366 (금호어울림@ 101동)
	제2반	북대동	3366 (금호어울림@ 102동)
	제3반	북대동	3366 (금호어울림@ 103동 201호 ~ 2001호, 202호 ~ 2002호)
	제4반	북대동	3366 (금호어울림@103동 203호 ~ 1903호, 204호 ~ 1904호)
	제5반	북대동	3366 (금호어울림@ 104동)
	제6반	북대동	3366 (금호어울림@ 105동)
	제7반	북대동	3366 (금호어울림@ 106동 101호 ~ 2001호, 102호 ~ 2002호)
	제8반	북대동	3366 (금호어울림@ 106동 103호 ~ 1803호, 204호 ~ 804호)
제48통	제1반	북대동	3366 (금호어울림@ 107동)
	제2반	북대동	3366 (금호어울림@ 108동)
	제3반	북대동	3366 (금호어울림@ 109동 201호 ~ 1801호, 202호 ~ 1802호)
	제4반	북대동	3366 (금호어울림@ 109동 203호 ~ 1703호, 204호 ~ 1704호)
	제5반	북대동	3366 (금호어울림아파트 110동)
	제6반	북대동	3366 (금호어울림아파트 111동)
	제7반	북대동	3366 (금호어울림아파트 112동 101호 ~ 1701호, 112동 102호 ~ 1702호)
	제8반	북대동	3366 (금호어울림아파트 112동 103호 ~ 1703호, 112동 204호 ~ 1704호)
제49통	제1반	북대동	3367 (금호어울림아파트 201동)
	제2반	북대동	3367 (금호어울림아파트 202동 101호 ~ 1901호, 102호 ~ 1902호)
	제3반	북대동	3367 (금호어울림아파트 202동 103호 ~ 1803호, 104호 ~ 1804호)
	제4반	북대동	3367 (금호어울림아파트 203동)
	제5반	북대동	3367 (금호어울림아파트 204동)
	제6반	북대동	3367 (금호어울림아파트 205동 101호 ~ 1701호, 102호 ~ 1702호)
	제7반	북대동	3367 (금호어울림아파트 205동 103호 ~ 1703호, 104호 ~ 1704호)
	제8반	북대동	3367 (금호어울림아파트 206동)
제50통	제1반	북대동	3367 (금호어울림아파트 207동)
	제2반	북대동	3367 (금호어울림아파트 208동 201호 ~ 1701호, 102호 ~ 1702호)
	제3반	북대동	3367 (금호어울림아파트 208동 103호 ~ 1703호, 204호 ~ 1704호)
	제4반	북대동	3367 (금호어울림아파트 209동)
	제5반	북대동	3367 (금호어울림아파트 210동)
	제6반	북대동	3367 (금호어울림아파트 211동 101호 ~ 1601호, 202호 ~ 1602호)
	제7반	북대동	3367 (금호어울림아파트 211동 203호 ~ 1703호, 104호 ~ 1704호)
제51통	제1반	북대동	3377번지 신영지웰아파트 101동
	제2반	북대동	3377번지 신영지웰아파트 102동
	제3반	북대동	3377번지 신영지웰아파트 103동
	제4반	북대동	3377번지 신영지웰아파트 104동
	제5반	북대동	3377번지 신영지웰아파트 105동
	제6반	북대동	3377번지 신영지웰아파트 106동
제52통	제1반	북대동	3377번지 신영지웰아파트 107동
	제2반	북대동	3377번지 신영지웰아파트 108동
	제3반	북대동	3377번지 신영지웰아파트 109동
	제4반	북대동	3377번지 신영지웰아파트 110동

		제5반	북대동	3377번지 신영지웰아파트 111동북대동 515-6, 3236~3238, 292-24, 495-19	
제53통	제1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1동 301호 ~ 1006호	
	제2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1동 1101호 ~ 1806호	
	제3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1동 1901호 ~ 2706호	
	제4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1동 2801호 ~ 3706호	
제54통	제1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2동 301호 ~ 1006호	
	제2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2동 1101호 ~ 1806호	
	제3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2동 1901호 ~ 2706호	
	제4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2동 2801호 ~ 3706호	
제55통	제1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3동 401호 ~ 1306호	
	제2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3동 1401호 ~ 2306호	
	제3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3동 2401호 ~ 3306호	
	제4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3동 3401호 ~ 4206호	
제56통	제1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4동 201호 ~ 1206호	
	제2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4동 1301호 ~ 2306호	
	제3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4동 2401호 ~ 3406호	
	제4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4동 3501호 ~ 4504호	
제57통	제1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5동 201호 ~ 1206호	
	제2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5동 1301호 ~ 2306호	
	제3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5동 2401호 ~ 3406호	
	제4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5동 3501호 ~ 4504호	
제58통	제1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6동 201호 ~ 1206호	
	제2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6동 1301호 ~ 2306호	
	제3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6동 2401호 ~ 3406호	
	제4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6동 3501호 ~ 4504호	
제59통	제1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7동 201호 ~ 1206호	
	제2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7동 1301호 ~ 2306호	
	제3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7동 2401호 ~ 3406호	
	제4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7동 3501호 ~ 4504호	
제60통	제1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8동 201호 ~ 1206호	
	제2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8동 1301호 ~ 2306호	
	제3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8동 2401호 ~ 3406호	
	제4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8동 3501호 ~ 4504호	
제61통	제1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9동 201호 ~ 1106호	
	제2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9동 1201호 ~ 2106호	
	제3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9동 2201호 ~ 3106호	
	제4반	북대동		3379번지 신영지웰시티아파트 109동 3201호 ~ 4206호	
북대제2동	1	제1통	제1반	북대동	48의1 ~ 48의10, 50의1 ~ 50의13
			제2반	북대동	49의1 ~ 49의16, 975의1 ~ 975의11
			제3반	북대동	51의1 ~ 51의16, 982 ~ 991
			제4반	북대동	52의1 ~ 52의16, 53의1 ~ 53의7
			제5반	북대동	54의1 ~ 54의13, 974의의1 ~ 974의3
	제2통	제1반	북대동	992(형석A1.2동)	
		제2반	북대동	992(형석A3동)	
		제3반	북대동	992(형석A4동)	
		제4반	북대동	992(형석A5.6동), 가 가동	
		제5반	북대동	992(형석A7동), 상가 나동	
	제3통	제1반	북대동	993(덕일A1동101 ~ 511호)	
		제2반	북대동	993(덕일A1동112 ~ 521호),상가106 ~ 111,202호	
		제3반	북대동	993(덕일A2동101 ~ 511호)	
		제4반	북대동	993(덕일A2동112 ~ 521호),상가101 ~ 105,201호	
		제5반	북대동	993(덕일A3동 전체)	
		제6반	북대동	993(덕일A4동 전체)	

제4통	제1반	북대동	976의1 ~ 976의18
	제2반	북대동	119의1, 119의2, 121의1 ~ 121의13, 977, 978의1 ~ 978의16, 124의1 ~ 124의12
	제3반	북대동	121의14 ~ 121의28, 123의1 ~ 123의4
	제4반	북대동	125의1 ~ 125의17, 125의19
	제5반	북대동	126의1 ~ 126의29
	제6반	북대동	788의2, 788의3, 789의1, 790, 790의3 ~ 790의4, 793의1 ~ 793의12, 794의1 ~ 794의14, 808의9, 808의10
제5통	제1반	북대동	127의1 ~ 127의9(한보주택), 128의1 ~ 128의19
	제2반	북대동	129의1 ~ 129의20
	제3반	북대동	796, 796의1 ~ 796의5, 797의1 ~ 797의4, 798의7, 798의2, 798의3, 803, 803의20, 803의21, 1316 ~ 1325
	제4반	북대동	1301 ~ 1315
	제5반	북대동	1326 ~ 1335
제6통	제1반	북대동	160의1 ~ 160의13, 161, 130의1 ~ 130의11, 139의1 ~ 139의10
	제2반	북대동	131의1 ~ 131의9, 150의1 ~ 150의12
	제3반	북대동	980의1 ~ 980의28
	제4반	북대동	837의2 ~ 837의11, 840의1, 840의8, 798의3 ~ 798의6
	제5반	북대동	798의8, 799, 799의1 ~ 799의4, 799의6 ~ 799의12, 837의12 ~ 837의27, 1353
제7통	제1반	북대동	1336 ~ 1355
	제2반	북대동	1392 ~ 1403
	제3반	북대동	1380 ~ 1391
	제4반	북대동	1356 ~ 1379
	제5반	북대동	1404 ~ 1417
제8통	제1반	북대동	1292 ~ 1300, 808, 808의27, 808의30, 808의49, 808의50, 798의4, 769의34 ~ 769의36
	제2반	북대동	1283 ~ 1291, 769의39, 769의40, 769의42, 769의43, 769의47, 769의48
	제3반	북대동	1271 ~ 1282
	제4반	북대동	1240 ~ 1257
	제5반	북대동	1258 ~ 1270
	제6반	북대동	1222 ~ 1239
제9통	제1반	북대동	777, 777의3, 808의24 ~ 808의26, 778의2 ~ 778의5, 778의7, 776의1 ~ 776의10, 776의18 ~ 776의21, 776의33, 776의34, 791의1, 791의2
	제2반	북대동	771의1, 771의4, 771의12 ~ 771의14, 769의3, 769의13 ~ 769의15, 769의18 ~ 769의21, 1080 ~ 1087
	제3반	북대동	1097 ~ 1100, 769의5 ~ 769의10, 769의22 ~ 769의27, 769의29
	제4반	북대동	1088 ~ 1096, 1101 ~ 1107
	제5반	북대동	1108 ~ 1121
제10통	제1반	북대동	913의3 ~ 913의17, 917, 999 ~ 1003, 1078 ~ 1080
	제2반	북대동	1005 ~ 1018, 774의2, 774의4, 774의5, 774의7, 913의18 ~ 913의20, 1075 ~ 1077
	제3반	북대동	994 ~ 998, 1019 ~ 1032
	제4반	북대동	1033 ~ 1046, 1126 ~ 1137
	제5반	북대동	1047 ~ 1060, 1124 ~ 1125
	제6반	북대동	1061 ~ 1074, 1122 ~ 1123
제11통	제1반	북대동	1138 ~ 1146의1, 1926 ~ 1928, 1952 ~ 1955
	제2반	북대동	1148 ~ 1168
	제3반	북대동	1959 ~ 1970
	제4반	북대동	1929 ~ 1951
	제5반	북대동	1971 ~ 1986
	제6반	북대동	1987 ~ 2007
제12통	제1반	북대동	1169 ~ 1188
	제2반	북대동	1209 ~ 1221
	제3반	북대동	1189 ~ 1195의7
	제4반	북대동	1197 ~ 1208

	제5반	북대동	2075 ~ 2088
	제6반	북대동	2060 ~ 2074
제13통	제1반	북대동	1418 ~ 1435
	제2반	북대동	1462 ~ 1469, 1452 ~ 1461
	제3반	북대동	1436 ~ 1451
	제4반	북대동	1470 ~ 1481
	제5반	북대동	1482 ~ 1492, 1494 ~ 1499, 2184, 2195
제14통	제1반	북대동	2090 ~ 2100, 2101 ~ 2110
	제2반	북대동	2184 ~ 2191의6
	제3반	북대동	2173 ~ 2183, 2196 ~ 2197, 2195의1
	제4반	북대동	2153 ~ 2172
	제5반	북대동	2136 ~ 2152
제15통	제1반	북대동	2043 ~ 2059
	제2반	북대동	2111 ~ 2124
	제3반	북대동	2021 ~ 2034
	제4반	북대동	2010 ~ 2020, 2035 ~ 2042
	제5반	북대동	2129 ~ 2135
제16통	제1반	북대동	2008(삼일A1동), (삼일아파트2동), 상가1동
	제2반	북대동	2008(삼일A3동), (삼일아파트4동)
	제3반	북대동	2008(삼일A5동), (삼일A6동), 상가2, 3동
	제4반	북대동	2008(삼일A7동), (삼일A8동)
제17통	제1반	북대동	2009 세원A101동
	제2반	북대동	2009 세원A102동
	제3반	북대동	2009 세원A103동, 101 ~ 508호
	제4반	북대동	2009 세원A103동, 109 ~ 516호
제18통	제1반	북대동	2442(형석A 자비동101 ~ 510호), 상가
	제2반	북대동	2442(형석A 자비동111 ~ 520호)
	제3반	북대동	2442(형석A 사랑동101 ~ 510호)
	제4반	북대동	2442(형석A 사랑동111 ~ 520호)
	제5반	북대동	2442(형석A 진실동101 ~ 514호), 2443, 2444, 2445
제19통	제1반	북대동	2448(보성A 전체)
	제2반	북대동	2290 ~ 2302
	제3반	북대동	2327 ~ 2340
	제4반	북대동	2315 ~ 2320, 2303 ~ 2314
	제5반	북대동	2321 ~ 2326, 2399 ~ 2410
제20통	제1반	북대동	2277 ~ 2289
	제2반	북대동	2347 ~ 2359
	제3반	북대동	2360 ~ 2370
	제4반	북대동	2341 ~ 2346, 2391 ~ 2398
	제5반	북대동	2371 ~ 2390
제21통	제1반	북대동	2447(신라A 101 ~ 513호)
	제2반	북대동	2447(신라A 115 ~ 526호), 상가
	제3반	북대동	2261 ~ 2276
	제4반	북대동	2220 ~ 2225, 2255 ~ 2260
	제5반	북대동	2209 ~ 2219, 2201의7 ~ 2201의12
제22통	제1반	북대동	2198 ~ 2207, 2201 ~ 2201의5
	제2반	북대동	2232 ~ 2248
	제3반	북대동	2226 ~ 2231, 2249 ~ 2254
	제4반	북대동	2446(청주A 1동), (청주A 2동), 상가
제23통	제1반	북대동	1507 ~ 1521의1, 709의4
	제2반	북대동	1502 ~ 1506, 1789 ~ 1799
	제3반	북대동	1782 ~ 1788, 1800 ~ 1806
	제4반	북대동	1807 ~ 1817, 1818 ~ 1829
제24통	제1반	북대동	1770 ~ 1781

	제2반	북대동	1844 ~ 1855, 1856 ~ 1868
	제3반	북대동	1869 ~ 1882
	제4반	북대동	1832 ~ 1843, 1883 ~ 1896
제25통	제1반	북대동	1672 ~ 1699
	제2반	북대동	1700 ~ 1715
	제3반	북대동	1746 ~ 1757
	제4반	북대동	1734 ~ 1745
	제5반	북대동	1716 ~ 1733
	제6반	북대동	1758 ~ 1769
제26통	제1반	북대동	1585 ~ 1607
	제2반	북대동	1637 ~ 1660
	제3반	북대동	1567 ~ 1579의1, 1558 ~ 1563
	제4반	북대동	1580 ~ 1584, 1661 ~ 1671
제27통	제1반	북대동	1542 ~ 1554
	제2반	북대동	694의4 ~ 694의10, 694의13 ~ 694의23, 695, 695의2 ~ 695의6, 695의28, 696, 696의17 ~ 696의21, 824의8 ~ 824의10, 693, 691, 691의1, 690, 690의2, 668의4,
	제3반	북대동	1530 ~ 1541
	제4반	북대동	696의25, 697의1, 697의3, 697의6, 822의4 ~ 822의6, 820의1, 820의5, 699, 699의6, 699의29, 698의2 ~ 698의8, 699의1 ~ 699의13, 699의6, 699의10 ~ 699의12, 707의1
	제5반	북대동	695의8 ~ 695의11, 702의15, 707의20, 707의10 ~ 707의35, 1555 ~ 1557, 1564 ~ 1566
	제6반	북대동	1522 ~ 1529
제28통	제1반	북대동	162의1 ~ 162의3, 166의1 ~ 166의21
	제2반	북대동	162-4(효성A A, B동 전체), 효성아파트상가
	제3반	북대동	167-3(명성A A동 전체), 167의1 ~ 167의2, 167의4
	제4반	북대동	167-3(명성A B동 전체), 168
	제5반	북대동	824의4(성광A 가동)
	제6반	북대동	824의4(성광A 나동), (성광아파트 다동)
	제7반	북대동	824의4(성광A 라동), 824의4,
제29통	제1반	북대동	169의5(현대A 가동), (현대A 나동), 169의4 ~ 169의7, 169의2, 169의3, 170의3
	제2반	북대동	171의1(덕성그린A), 171의2, 172의1, 172의2
	제3반	북대동	177의1 ~ 177의23, 200, 202, 202의1
	제4반	북대동	1608 ~ 1636
제30통	제1반	북대동	850의1 ~ 850의14, 849의1 ~ 849의23, 852의1 ~ 852의29
	제2반	북대동	854의1 ~ 854의8, 855의1 ~ 855의11, 853의1 ~ 853의21
	제3반	북대동	860의1 ~ 860의3, 863의1 ~ 863의17, 856의1 ~ 856의17
	제4반	북대동	857의1 ~ 857의21
	제5반	북대동	858의1 ~ 853의11, 864의1 ~ 864의9, 865의1 ~ 865의13
제31통	제1반	북대동	870의1 ~ 870의6, 871의1 ~ 871의7, 872의1 ~ 872의17, 873의1 ~ 873의12
	제2반	북대동	874의1 ~ 874의10, 876의1 ~ 876의10
	제3반	북대동	883, 883의1 ~ 883의13, 884의1 ~ 884의8
	제4반	북대동	885의1 ~ 885의29, 888, 888의1 ~ 888의5
제32통	제1반	북대동	879의1 ~ 879의7, 880의1 ~ 880의6, 903의1 ~ 903의9, 904의1 ~ 904의8
	제2반	북대동	881의1 ~ 881의5, 881(현대A 1동), 882의1 ~ 882의4, 현대빌라
	제3반	북대동	905의1 ~ 905의15, 906의2 ~ 906의10
	제4반	북대동	908의1, 908의4, 908의6, 908의7, 909의1 ~ 909의16, 908의2(현대A 2동)

가경동	1	제1통	제1반	가경동	127의1, 127의5, 127의9 ~ 127의14, 130의1, 130의3, 130의4, 170의1, 170의3, 170의6, 171의2 ~ 172의4, 171의9, 171의10, 171의12, 171의13, 171의15, 171의17, 171의41, 171의47 ~ 171의49, 171의54, 171의55, 171의57, 171의58, 171의65, 171의66, 171의72, 171의74, 171의75, 171의77, 171의86, 171의88, 172, 173의1, 173의7, 173의8, 174의1, 412의1, 415, 415의1, 415의6, 415의7, 415의12, 415의27, 415의48, 415의49, 415의51, 415의53, 1508의1, 1508의2
			제2반	가경동	130의11, 163의1, 164의2, 164의3, 164의5 ~ 164의7, 164의13 ~ 164의18, 164의20, 165, 166의1 ~ 166의3, 166의5 ~ 166의7, 166의9, 166의15, 166의16, 166의19, 167, 168의3, 168의4, 174의4, 174의5, 174의24, 176의9
			제3반	가경동	171의28, 174의2, 174의6, 174의8 ~ 174의11, 174의16, 174의34, 175의1 ~ 175의3, 175의5, 175의13, 412의3, 412의6, 412의7, 412의9, 412의10
			제4반	가경동	171의5, 171의7, 171의8, 171의18, 171의19, 171의24 ~ 171의27, 171의42, 171의43, 412의2, 412의4, 414, 414의3, 415의2, 415의4, 415의9, 415의11, 415의14, 415의18, 1450의1 ~ 1450의4, 1451의1 ~ 1451의8, 1452의1 ~ 1452의8, 1453의1 ~ 1453의6, 1454의7, 1459
		제2통	제1반	가경동	762 (벽산A 101동 101 ~ 1402호)
			제2반	가경동	762 (벽산A 101동 103 ~ 1404호)
			제3반	가경동	762 (벽산A 101동 105 ~ 1406호)
			제4반	가경동	762 (벽산A 102동 101 ~ 1302호)
			제5반	가경동	762 (벽산A 102동 103 ~ 1304호)
			제6반	가경동	762 (벽산A 102동 105 ~ 1306호)
			제7반	가경동	762 (벽산A 103동 101 ~ 1302호)
			제8반	가경동	762 (벽산A 103동 103 ~ 1304호)
			제9반	가경동	762 (벽산A 103동 105 ~ 1306호)
		제3통	제1반	가경동	(벽산A 104동 101 ~ 1402호)
			제2반	가경동	(벽산A 104동 103 ~ 1404호)
			제3반	가경동	(벽산A 105동 101 ~ 1402호)
			제4반	가경동	(벽산A 105동 103 ~ 1404호), 상가동
			제5반	가경동	(벽산A 106동 101 ~ 1402호)
		제4통	제1반	가경동	764 (대림A 101동 101 ~ 1202호)
			제2반	가경동	764 (대림A 101동 103 ~ 1204호)
			제3반	가경동	764 (대림A 102동 101 ~ 1202호)
			제4반	가경동	764 (대림A 102동 103 ~ 1204호)
			제5반	가경동	764 (대림A 103동 101 ~ 1402호)
			제6반	가경동	764 (대림A 103동 103 ~ 1404호)
		제5통	제1반	가경동	764 (대림A 104동 101 ~ 1502호)
			제2반	가경동	764 (대림A 104동 103 ~ 1504호)
			제3반	가경동	764 (대림A 104동 105 ~ 1606호)
			제4반	가경동	764 (대림A 105동 101 ~ 1502호)
			제5반	가경동	764 (대림A 105동 103 ~ 1504호), 상가동
			제6반	가경동	764 (대림A 106동 101 ~ 1402호)
			제7반	가경동	764 (대림A 106동 103 ~ 1404호)
			제8반	가경동	764 (대림A 106동 105 ~ 1406호)
		제6통	제1반	가경동	766 (형석2차A 1동 101 ~ 1402호), 상가동
			제2반	가경동	766 (형석2차A 1동 103 ~ 1404호)
			제3반	가경동	766 (형석2차A 1동 105 ~ 1406호)
			제4반	가경동	766 (형석2차A 2동 101 ~ 1402호)
			제5반	가경동	766 (형석2차A 2동 103 ~ 1404호)
			제6반	가경동	766 (형석2차A 2동 105 ~ 1406호)
		제7통	제1반	가경동	766 (형석2차A 3동 101 ~ 1302호)
			제2반	가경동	766 (형석2차A 3동 103 ~ 1304호)
			제3반	가경동	766 (형석2차A 4동 101 ~ 1202호)
			제4반	가경동	766 (형석2차A 4동 104 ~ 1204호)

	제5반	가경동	766 (형석2차A 4동 105 ~ 1206호), 유치원동
	제6반	가경동	766 (형석2차A 5동 101 ~ 1302호)
	제7반	가경동	766 (형석2차A 5동 103 ~ 1304호)
	제8반	가경동	766 (형석2차A 5동 105 ~ 1306호)
제8통	제1반	가경동	768 (신라A 1동 101 ~ 1504호), 상가1동
	제2반	가경동	768 (신라A 1동 105 ~ 1508호)
	제3반	가경동	768 (신라A 1동 109 ~ 1512호)
	제4반	가경동	768 (신라A 2동 101 ~ 1204호), 상가2동
	제5반	가경동	768 (신라A 2동 105 ~ 1208호)
	제6반	가경동	768 (신라A 2동 109 ~ 1212호)
제9통	제1반	가경동	769 ~ 792
	제2반	가경동	793 ~ 807
	제3반	가경동	808 ~ 823
	제4반	가경동	824 ~ 830
	제5반	가경동	831 ~ 846
	제6반	가경동	486의3, 847 ~ 862
제10통	제1반	가경동	863 ~ 883
	제2반	가경동	884 ~ 909
	제3반	가경동	910 ~ 917
	제4반	가경동	918 ~ 930
	제5반	가경동	931 ~ 940
	제6반	가경동	941 ~ 955
제11통	제1반	가경동	956 ~ 969
	제2반	가경동	970 ~ 981
	제3반	가경동	982 ~ 1042, 1416 ~ 1416의3
	제4반	가경동	1043 ~ 1074
제12통	제1반	가경동	1075 ~ 1090
	제2반	가경동	1091 ~ 1103
	제3반	가경동	1104 ~ 1123
	제4반	가경동	1151 ~ 1170
제13통	제1반	가경동	1189(형석1차A 101동 101 ~ 1504호)
	제2반	가경동	1189(형석1차A 101동 105 ~ 1508호)
	제3반	가경동	1189(형석1차A 102동 101 ~ 1504호), 상가15동
	제4반	가경동	1189(형석1차A 102동 105 ~ 1508호), 유치원동
제14통	제1반	가경동	1189(형석1차A 103동 101 ~ 1504호) 상가14동
	제2반	가경동	1189(형석1차A 103동 105 ~ 1508호)
	제3반	가경동	1189(형석1차A 104동 101 ~ 1504호)
	제4반	가경동	1189(형석1차A 104동 101 ~ 1508호)
	제5반	가경동	1189(형석1차A 105동 101 ~ 1504호)
	제6반	가경동	1189(형석1차A 105동 105 ~ 1508호), 상가13동
제15통	제1반	가경동	1190(세원A 101동 101 ~ 1502호)
	제2반	가경동	1190(세원A 101동 103 ~ 1504호)
	제3반	가경동	1190(세원A 101동 105 ~ 1506호)
	제4반	가경동	1190(세원A 102동 101 ~ 1502호)
	제5반	가경동	1190(세원A 102동 103 ~ 1504호)
	제6반	가경동	1190(세원A 102동 105 ~ 1506호)
	제7반	가경동	1190(세원A 102동 107 ~ 1508호)
제16통	제1반	가경동	1190(세원A 103동 101 ~ 313호)
	제2반	가경동	1190(세원A 103동 401 ~ 613호)
	제3반	가경동	1190(세원A 103동 701 ~ 913호)
	제4반	가경동	1190(세원A 103동 1001 ~ 1213호)
	제5반	가경동	1190(세원A 103동 1301 ~ 1513호)
제17통	제1반	가경동	1190(세원A 104동 101 ~ 315호)
	제2반	가경동	1190(세원A 104동 401 ~ 615호)



	제3반	가경동	1190(세원A 104동 701 ~ 915호)
	제4반	가경동	1190(세원A 104동 1001 ~ 1215호)
	제5반	가경동	1190(세원A 104동 1301 ~ 1515호)
제18통	제1반	가경동	1193 ~ 1213
	제2반	가경동	1214 ~ 1229
	제3반	가경동	1230 ~ 1247
	제4반	가경동	1248 ~ 1265
	제5반	가경동	1266 ~ 1283
	제6반	가경동	1171 ~ 1188
제19통	제1반	가경동	1284 ~ 1297
	제2반	가경동	1298 ~ 1311
	제3반	가경동	1312 ~ 1327
	제4반	가경동	1328 ~ 1334
	제5반	가경동	1335 ~ 1352
제20통	제1반	가경동	1124 ~ 1137
	제2반	가경동	1138 ~ 1150
	제3반	가경동	1362 ~ 1377
	제4반	가경동	1378 ~ 1395
	제5반	가경동	1353 ~ 1361, 1396 ~ 1415
제21통	제1반	가경동	1449, 1455의1 ~ 144510, 1456의1 ~ 1456의10, 1457의1 ~ 1457의10, 1458의1 ~ 1458의9, 1462의1 ~ 1462의14
	제2반	가경동	1461의1 ~ 1461의14
	제3반	가경동	1463의1 ~ 1463의9
	제4반	가경동	1464의1 ~ 1464의9
	제5반	가경동	1465의1 ~ 1465의9
	제6반	가경동	1466의1 ~ 1466의10
	제7반	가경동	1467의1 ~ 1467의15
제22통	제1반	가경동	1468의1 ~ 1468의20
	제2반	가경동	1470의1 ~ 1470의13
	제3반	가경동	1471의1 ~ 1471의9
	제4반	가경동	1472의1 ~ 1472의9
	제5반	가경동	1473의1 ~ 1473의9
	제6반	가경동	1474의1 ~ 1474의9, 1475의1 ~ 1475의9
제23통	제1반	가경동	1476의1 ~ 1476의14, 1477의1 ~ 1477의10
	제2반	가경동	1492의1 ~ 1492의14, 1493의1 ~ 1493의10
	제3반	가경동	1494의1 ~ 1494의6, 1495의1 ~ 1495의6
	제4반	가경동	1496의1 ~ 1496의7, 1497의1 ~ 1497의7, 1500
제24통	제1반	가경동	1479의1 ~ 1479의18
	제2반	가경동	1480의1 ~ 1480의16
	제3반	가경동	1481의1 ~ 1481의14
	제4반	가경동	1482의1 ~ 1482의12
	제5반	가경동	1478의1 ~ 1478의22
제25통	제1반	가경동	1483의1, 3, 5, 7, 9, 11, 13, 15, 17
	제2반	가경동	1483의2, 4, 6, 8, 10, 12, 14, 16, 18
	제3반	가경동	1484의1, 3, 5, 7, 9, 11, 13, 15, 17
	제4반	가경동	1484의2, 4, 6, 8, 10, 12, 14, 16, 18
	제5반	가경동	1485의1, 3, 5, 7, 9, 11, 13, 15, 17
	제6반	가경동	1485의2, 4, 6, 8, 10, 12, 14, 16, 18
제26통	제1반	가경동	1487의1 ~ 1487의12
	제2반	가경동	1488의1 ~ 1488의17
	제3반	가경동	1489의1 ~ 1489의16
	제4반	가경동	181의1, 181의11, 1490의1 ~ 1490의10
제27통	제1반	가경동	1498의1 ~ 1498의8
	제2반	가경동	1501의1, 3, 5, 7, 9, 11, 13, 15, 17, 19, 21

	제3반	가경동	1501의2, 4, 6, 8, 10, 12, 14, 16, 18, 20, 22
	제4반	가경동	1502의1 ~ 1502의16, 1504
	제5반	가경동	1503의1, 3, 5, 7, 9, 11, 13, 15, 17, 19, 21
	제6반	가경동	1503의2, 4, 6, 8, 10, 12, 14, 16, 18, 22, 1505
제28통	제1반	가경동	1506(진로A 101동 101 ~ 1404호), 상가동
	제2반	가경동	1506(진로A 102동 101 ~ 1404호)
	제3반	가경동	1506(진로A 103동 101 ~ 1504호)
	제4반	가경동	1506(진로A 104동 101 ~ 1504호)
	제5반	가경동	1506(진로A 105동 101 ~ 1404호)
	제6반	가경동	1506(진로A 106동 101 ~ 1504호)
	제29통	제1반	가경동
제2반		가경동	1507(효성A 101동 105 ~ 1506호), 상가동
제3반		가경동	1507(효성A 102동 101 ~ 1504호)
제4반		가경동	1507(효성A 103동 101 ~ 1502호)
제5반		가경동	1507(효성A 104동 101 ~ 1504호)
제6반		가경동	1507(효성A 105동 101 ~ 1504호)
제7반		가경동	1507(효성A 105동 105 ~ 1506호)
제30통	제1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1동 101 ~ 1504호), 상가동
	제2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1동 105 ~ 1506호)
	제3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2동 101 ~ 1504호)
	제4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2동 105 ~ 1506호)
	제5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3동 101 ~ 1504호)
	제6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3동 105 ~ 1508호)
제31통	제1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4동 101 ~ 1504호)
	제2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4동 105 ~ 1508호)
	제3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5동 101 ~ 1504호)
	제4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5동 105 ~ 1508호)
	제5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6동 101 ~ 1504호)
	제6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6동 105 ~ 1506호)
제32통	제1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7동 101 ~ 1404호) 유치원,보육시설
	제2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7동 105 ~ 1406호)
	제3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8동 101 ~ 1404호)
	제4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8동 105 ~ 1408호)
	제5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9동 101 ~ 509호)
	제6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9동 601 ~ 1009호)
	제7반	가경동	1510(세원가경골A 109동 1101 ~ 1409호)
제33통	제1반	가경동	1511(대원A 101동 101 ~ 1504호),상가1동
	제2반	가경동	1511(대원A 101동 105 ~ 1508호)
	제3반	가경동	1511(대원A 101동 109 ~ 1512호)
	제4반	가경동	1511(대원A 102동 101 ~ 1504호)
	제5반	가경동	1511(대원A 102동 105 ~ 1508호)
	제6반	가경동	1511(대원A 102동 109 ~ 1510호), 관리동
제34통	제1반	가경동	1511(대원A 103동 101 ~ 1504호)
	제2반	가경동	1511(대원A 103동 105 ~ 1508호)
	제3반	가경동	1511(대원A 103동 109 ~ 1512호)
	제4반	가경동	1511(대원A 104동 107 ~ 1504호)
	제5반	가경동	1511(대원A 104동 105 ~ 1508호)
	제6반	가경동	1511(대원A 104동 109 ~ 1510호)
제35통	제1반	가경동	1511(대원A 105동 101 ~ 1404호)
	제2반	가경동	1511(대원A 105동 105 ~ 1408호)
	제3반	가경동	1511(대원A 105동 109 ~ 1410호),상가2동
	제4반	가경동	1511(대원A 106동 101 ~ 1404호)
	제5반	가경동	1511(대원A 106동 105 ~ 1408호)
	제6반	가경동	1511(대원A 106동 109 ~ 1410호)

제36통	제1반	가경동	1514(삼일원앙A 101동 101 ~ 1502호)
	제2반	가경동	1514(삼일원앙A 101동 103 ~ 1504호)
	제3반	가경동	1514(삼일원앙A 101동 105 ~ 1506호)
	제4반	가경동	1514(삼일원앙A 101동 107 ~ 1508호)
	제5반	가경동	1514(삼일원앙A 102동 101 ~ 1502호), 관리110동 상가
	제6반	가경동	1514(삼일원앙A 102동 103 ~ 1504호)
	제7반	가경동	1514(삼일원앙A 102동 105 ~ 1506호)
	제8반	가경동	1514(삼일원앙A 102동 107 ~ 1508호)
	제9반	가경동	1514(삼일원앙A 102동 109 ~ 1510호)
제37통	제1반	가경동	1512,1514(삼일원앙A103동 101 ~ 1502호) 상가111동
	제2반	가경동	1514(삼일원앙A 103동 103 ~ 1504호)
	제3반	가경동	1514(삼일원앙A 103동 105 ~ 1506호)
	제4반	가경동	1514(삼일원앙A 103동 107 ~ 1508호)
	제5반	가경동	1513,1514(삼일원앙A104동 101 ~ 1502호)
	제6반	가경동	1514(삼일원앙A 104동 103 ~ 1504호)
	제7반	가경동	1514(삼일원앙A 104동 105 ~ 1506호)
	제8반	가경동	1514(삼일원앙A 104동 107 ~ 1508호)
	제9반	가경동	1514(삼일원앙A 104동 109 ~ 1510호)
제38통	제1반	가경동	1515(덕일한마음A101동 101 ~ 1502호), 상가13동
	제2반	가경동	1515(덕일한마음A101동 103 ~ 1504호)
	제3반	가경동	1515(덕일한마음A101동 105 ~ 1506호)
	제4반	가경동	1515(덕일한마음A101동 107 ~ 1508호)
	제5반	가경동	1515(덕일한마음A102동 101 ~ 1502호)
	제6반	가경동	1515(덕일한마음A102동 103 ~ 1504호)
	제7반	가경동	1515(덕일한마음A102동 105 ~ 1506호)
	제8반	가경동	1515(덕일한마음A102동 107 ~ 1508호)
제39통	제1반	가경동	1515(덕일한마음A103동 101 ~ 1302호), 상가14동
	제2반	가경동	1515(덕일한마음A103동 103 ~ 1304호)
	제3반	가경동	1515(덕일한마음A103동 105 ~ 1306호)
	제4반	가경동	1515(덕일한마음A103동 107 ~ 1308호)
	제5반	가경동	1515(덕일한마음A104동 101 ~ 1302호), 상가15동
	제6반	가경동	1515(덕일한마음A104동 103 ~ 1304호)
	제7반	가경동	1515(덕일한마음A104동 105 ~ 1306호)
	제8반	가경동	1515(덕일한마음A104동 107 ~ 1308호)
제40통	제1반	가경동	1516(태암수정A 101동 101 ~ 1502호)
	제2반	가경동	1516(태암수정A 101동 103 ~ 1504호)
	제3반	가경동	1516(태암수정A 101동 105 ~ 1506호)
	제4반	가경동	1516(태암수정A 101동107 ~ 1508호), 상가동
	제5반	가경동	1516(태암수정A 103동 101 ~ 1502호)
	제6반	가경동	1516(태암수정A 103동 103 ~ 1504호)
	제7반	가경동	1516(태암수정A 103동 105 ~ 1506호)
	제8반	가경동	1516(태암수정A 103동 107 ~ 1508호)
제41통	제1반	가경동	1516(태암수정A 102동 101 ~ 1502호)
	제2반	가경동	1516(태암수정A 102동 103 ~ 1504호)
	제3반	가경동	1516(태암수정A 104동 101 ~ 1502호)
	제4반	가경동	1516(태암수정A 104동 103 ~ 1504호)
	제5반	가경동	1516(태암수정A 105동 101 ~ 1502호)
	제6반	가경동	1516(태암수정A 105동 103 ~ 1504호)
	제7반	가경동	1516(태암수정A 105동 105 ~ 1506호)
제42통	제1반	가경동	1517(동부A 101동 101 ~ 1502호)
	제2반	가경동	1517(동부A 101동 103 ~ 1504호)
	제3반	가경동	1517(동부A 102동 101 ~ 1502호)
	제4반	가경동	1517(동부A 102동 103 ~ 1504호)
	제5반	가경동	1517(동부A 103동 101 ~ 1402호)

	제6반	가경동	1517(동부A 103동 103 ~ 1404호)
	제7반	가경동	1517(동부A 104동 101 ~ 1402호)
	제8반	가경동	1517(동부A 104동 103 ~ 1404호)
제43통	제1반	가경동	1517(동부A 105동 101 ~ 1402호)
	제2반	가경동	1517(동부A 105동 103 ~ 1404호)
	제3반	가경동	1517(동부A 106동 101 ~ 1402호)
	제4반	가경동	1517(동부A 106동 103 ~ 1404호), 상가동
	제5반	가경동	1517(동부A 107동 101 ~ 1402호)
	제6반	가경동	1517(동부A 107동 103 ~ 1404호)
	제7반	가경동	1517(동부A 108동 101 ~ 1402호)
	제8반	가경동	1517(동부A 108동 103 ~ 1404호)
	제44통	제1반	가경동
제2반		가경동	1549(가경주공1단지A 101동104 ~ 2006호)
제3반		가경동	1549(가경주공1단지A 101동107 ~ 2009호)
제4반		가경동	1549(가경주공1단지A 105동101 ~ 2003호)
제5반		가경동	1549(가경주공1단지A 105동101 ~ 2006호)
제45통	제1반	가경동	1549(가경주공1단지A 102동101 ~ 1503호) 상가동
	제2반	가경동	1549(가경주공1단지A 102동104 ~ 1506호)
	제3반	가경동	1549(가경주공1단지A 102동107 ~ 1509호)
	제4반	가경동	1549(가경주공1단지A 103동101 ~ 1504호)
	제5반	가경동	1549(가경주공1단지A 104동101 ~ 1503호)
	제6반	가경동	1549(가경주공1단지A 104동104 ~ 1506호)
제46통	제1반	가경동	1550(가경주공2단지A202동101 ~ 1504호)
	제2반	가경동	1550(가경주공2단지A202동105 ~ 1506호)
	제3반	가경동	1550(가경주공2단지A201동101 ~ 2004호)
	제4반	가경동	1550(가경주공2단지A201동105 ~ 2008호)
	제5반	가경동	1550(가경주공2단지A203동101 ~ 2303호)
	제6반	가경동	1550(가경주공2단지A204동101 ~ 2303호)
제47통	제1반	가경동	1550(가경주공2단지A 207동 101 ~ 2003호), 상가동
	제2반	가경동	1550 (가경주공2단지A 207동 104 ~ 2005호)
	제3반	가경동	1550 (가경주공2단지A 207동 106 ~ 2008호)
	제4반	가경동	1550 (가경주공2단지A 205동 101 ~ 2004호)
	제5반	가경동	1550 (가경주공2단지A 206동 101 ~ 2004호)
제48통	제1반	가경동	1693번지(가경주공 6단지아파트 601동 101 ~ 512호), 상가
	제2반	가경동	1693번지(가경주공 6단지아파트 601동 601 ~ 1012호)
	제3반	가경동	1693번지(가경주공 6단지아파트 601동 1101 ~ 1510호)
	제4반	가경동	1693번지(가경주공 6단지아파트 602동 101 ~ 1504호)
	제5반	가경동	1693번지(가경주공 6단지아파트 607동 101 ~ 512호)
	제6반	가경동	1693번지(가경주공 6단지아파트 607동 601 ~ 1012호)
	제7반	가경동	1693번지(가경주공 6단지아파트 607동 1101 ~ 1503호)
제49통	제1반	가경동	1693번지(가경주공 6단지아파트 606동 101 ~ 709호)
	제2반	가경동	1693번지(가경주공 6단지아파트 606동 801 ~ 1509호)
	제3반	가경동	1693번지(가경주공 6단지아파트 605동 101 ~ 709호)
	제4반	가경동	1693번지(가경주공 6단지아파트 605동 801 ~ 1509호)
	제5반	가경동	1693번지(가경주공 6단지아파트 604동 101 ~ 1505호)
	제6반	가경동	1693번지(가경주공 6단지아파트 603동 101 ~ 1505호)
제50통	제1반	가경동	1581번지(가경주공 7단지아파트 701동 101 ~ 1504호), 상가동, 1584번지(서경초등학교)
	제2반	가경동	1581번지(가경주공 7단지아파트 702동 101 ~ 1504호)
	제3반	가경동	1581번지(가경주공 7단지아파트 703동 101 ~ 1504호)
	제4반	가경동	1581번지(가경주공 7단지아파트 706동 101 ~ 1504호)
	제5반	가경동	1581번지(가경주공 7단지아파트 704동 101 ~ 1504호)
	제6반	가경동	1581번지(가경주공 7단지아파트 705동 101 ~ 1506호)
제51통	제1반	가경동	1579번지(가경주공 8단지아파트 801동 101 ~ 1504호), 상가동, 1583번지(서경중고등학교)

	제2반	가경동	1579번지(가경주공 8단지아파트 802동 101 ~ 1504호)
	제3반	가경동	1579번지(가경주공 8단지아파트 803동 101 ~ 1302호), (가경주공 8단지아파트 804동 101 ~ 1302호)
	제4반	가경동	1579번지(가경주공 8단지아파트 804동 103 ~ 1506호)
	제5반	가경동	1579번지(가경주공 8단지아파트 805동 101 ~ 1503호)
	제6반	가경동	1579번지(가경주공 8단지아파트 805동 104 ~ 1506호)
제52통	제1반	가경동	1594번지(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1동 101 ~ 1702호)
	제2반	가경동	1594번지(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1동 103 ~ 2004호)
	제3반	가경동	1594번지(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2동 101 ~ 2002호)
	제4반	가경동	1594번지(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2동 103 ~ 2004호)
	제5반	가경동	1594번지(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5동 101 ~ 2002호)
	제6반	가경동	1594번지(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6동 101 ~ 1902호)
	제7반	가경동	1594번지(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7동 101 ~ 2003호)
제53통	제1반	가경동	1594번지(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8동 102 ~ 2002호)
	제2반	가경동	1594번지(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8동 103 ~ 1604호)
	제3반	가경동	1594번지(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3동 101 ~ 2002호)
	제4반	가경동	1594번지(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3동 103 ~ 2004호)
	제5반	가경동	1594번지(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4동 101 ~ 2003호)
	제6반	가경동	1594번지(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9동 101 ~ 2002호), 상가
	제7반	가경동	1594번지(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9동 103 ~ 1604호)
제54통	제1반	가경동	산84의1, 산93의13, 277의1, 277의2, 326의1, 328, 328의2, 328의7, 328의8, 330 ~ 336
	제2반	가경동	336의38, 336의60, 336의62, 342의1, 339의1, 340의1, 341의3 ~ 341의10, 342의1
	제3반	가경동	324의1 ~ 324의5, 342의4 ~ 342의11, 379, 383의7, 529의
	제4반	가경동	301, 302, 305의2, 305의3, 310의25, 311의1, 315의1, 316, 316의1, 316의2, 322의3, 323, 346의3
	제5반	가경동	산118의12, 346의3, 648의1, 648의9, 648의10, 656, 657, 659의2, 659의3,
제55통	제1반	가경동	산115의2, 630, 632의6, 632의7, 634, 634의3, 634의4, 635, 635의1, 635의2, 637, 638, 638의1, 638의2, 641, 641의3, 641의4, 646의4, 648의15, 674, 674의1, 674의3, 674의4, 676
	제2반	가경동	673의1, 673의2, 673의4, 673의5, 673의7, 673의8, 673의9, 673의10, 673의11, 673의12, 673의13, 673의17, 673의21, 673의22, 673의40, 673의46, 673의53, 673의56, 673의57, 673의58, 673의59, 673의66
	제3반	가경동	310의16, 310의23, 310의36, 310의37, 310의38, 666, 668의5 ~ 668의8, 669, 669의1, 669의3, 669의7, 670, 671, 672 ~ 672의3, 672의10, 672의11
	제4반	가경동	303의1, 303의2, 303의7, 303의13, 310의19, 310의23, 633의9, 633의14, 669의3, 675, 676, 678의5 ~ 678의6, 681의3, 684, 685의2, 686의2, 686의3, 702의5, 703
제56통	제1반	가경동	1599 ~ 1610, 1611 ~ 1622, 1648 ~ 1691
	제2반	가경동	1593 ~ 1598, 1623 ~ 1634, 1635 ~ 1644
	제3반	가경동	1587 ~ 1592, 1645 ~ 1664
	제4반	가경동	1552 ~ 1556, 1665 ~ 1683, 1696 ~ 1704
제57통	제1반	가경동	2077 (가로수마을 휴먼시아 101동)
	제2반	가경동	2077 (가로수마을 휴먼시아 102동)
	제3반	가경동	2077 (가로수마을 휴먼시아 103동)
	제4반	가경동	2077 (가로수마을 휴먼시아 104동)
	제5반	가경동	2077 (가로수마을 휴먼시아 109동)
제58통	제1반	가경동	2078 (가로수마을 휴먼시아 105동)
	제2반	가경동	2078 (가로수마을 휴먼시아 106동)
	제3반	가경동	2078 (가로수마을 휴먼시아 107동)
	제4반	가경동	2078 (가로수마을 휴먼시아 108동)
제59통	제1반	가경동	1758 (선광로즈웰 101동)
	제2반	가경동	1758 (선광로즈웰 102동)
	제3반	가경동	1758 (선광로즈웰 103동)
	제4반	가경동	1758 (선광로즈웰 104동)

		제5반	가경동	1758 (선광로즈웰 105동)	
		제6반	가경동	1758 (선광로즈웰 106동)	
제60통	제1반	가경동	1759 (호반베르디움 201동)		
	제2반	가경동	1759 (호반베르디움 202동)		
	제3반	가경동	1759 (호반베르디움 203동)		
	제4반	가경동	1759 (호반베르디움 204동)		
제61통	제1반	가경동	1759 (호반베르디움 205동)		
	제2반	가경동	1759 (호반베르디움 206동)		
	제3반	가경동	1759 (호반베르디움 207동)		
	제4반	가경동	1759 (호반베르디움 208동, 209동, 210동)		
제62통	제1반	가경동	1761 (한라비발디 301동)		
	제2반	가경동	1761 (한라비발디 302동)		
	제3반	가경동	1761 (한라비발디 303동)		
	제4반	가경동	1761 (한라비발디 304동)		
제63통	제1반	가경동	1761 (한라비발디 305동)		
	제2반	가경동	1761 (한라비발디 306동)		
	제3반	가경동	1761 (한라비발디 307동)		
	제4반	가경동	1761 (한라비발디 308동)		
제64통	제1반	가경동	1762 (대원칸타빌 401동)		
	제2반	가경동	1762 (대원칸타빌 402동)		
	제3반	가경동	1762 (대원칸타빌 403동, 404동)		
	제4반	가경동	1762 (대원칸타빌 405동, 406동)		
	제5반	가경동	1762 (대원칸타빌 407동)		
	제6반	가경동	1762 (대원칸타빌 408동)		
제65통	제1반	가경동	1764 (e-편한세상 501동)		
	제2반	가경동	1764 (e-편한세상 502동, 505동)		
	제3반	가경동	1764 (e-편한세상 503동)		
	제4반	가경동	1764 (e-편한세상 504동)		
제66통	제1반	가경동	1764 (e-편한세상 506동)		
	제2반	가경동	1764 (e-편한세상 507동)		
	제3반	가경동	1764 (e-편한세상 508동)		
	제4반	가경동	1764 (e-편한세상 509동)		
제67통	제1반	가경동	1765 ~ 1789		
	제2반	가경동	1790 ~ 1806		
	제3반	가경동	1807 ~ 1822		
	제4반	가경동	1823 ~ 1847		
제68통	제1반	가경동	1848 ~ 1869		
	제2반	가경동	1870 ~ 1885		
	제3반	가경동	1886 ~ 1899		
	제4반	가경동	1900 ~ 1917		
	제5반		폐지		
	제6반		폐지		
	제7반		폐지		
	제8반		폐지		
제69통	제1반	가경동	1741~1757, 1987~2019, 2068~2076, 566		
	제2반	가경동	2020 ~ 2036		
	제3반	가경동	2037 ~ 2050		
	제4반	가경동	2051 ~ 2067		
제70통	제1반	가경동	1918 ~ 1934		
	제2반	가경동	1935 ~ 1948		
	제3반	가경동	1949 ~ 1964		
	제4반	가경동	1965 ~ 1986		
봉명제1동	1	제1통	제1반	봉명동	1025 ~ 1029
		제2반	봉명동	1030 ~ 1040	

	제3반	봉명동	1041 ~ 1047
	제4반	봉명동	1048 ~ 1056
	제5반	봉명동	780 ~ 792, 884 ~ 890, 865 ~ 873의2
	제6반	봉명동	875 ~ 877의8
	제7반	봉명동	878-883의1
제2통	제1반	봉명동	762, 763, 763의1, 764 ~ 770, 770의1 ~ 770의6, 820 ~ 823, 825, 825의1, 825의2, 827, 827의1, 828 ~ 830, 830의1, 826(봉명상가A)
	제2반	봉명동	842 ~ 848, 841의1 ~ 848의5, 849, 850, 850의1 ~ 850의3, 851, 851의1
	제3반	봉명동	771, 771의1 ~ 771의3, 772, 773, 773의1, 774, 774, 775, 775의1 ~ 775의3, 776 ~ 779, 852, 853, 853의1, 853의2, 854, 854의1, 854의2, 855, 855의1, 856 ~ 864
	제4반	봉명동	831 ~ 835, 835의1, 836, 837, 837의1 ~ 837의5, 838, 839, 839의1, 840, 841, 841의1, 841의2
제3통	제1반	봉명동	997, 997의1, 978, 978의1 ~ 978의5, 979, 979의1 ~ 979의3, 980 ~ 983, 983의1 ~ 983의3, 984 ~ 995, 995의1, 996 ~
	제2반	봉명동	1018, 1019, 1019의1, 1020 ~ 1022, 1023, 1023의1, 1024, 1024의1 ~ 1024의5
	제3반	봉명동	1006, 1006의1 ~ 1006의3, 1007, 1007의1 ~ 1007의3, 1008, 1008의1 ~ 1008의4, 1009, 1009의1, 1009의2, 1010, 1010의1, 1011, 1011의1
	제4반	봉명동	1012, 1012의1, 1013, 1013의1, 1014, 1014의1, 1015, 1016, 1016의1, 1016의2, 1017, 1017의1 ~ 1017의6
	제5반	봉명동	999, 999의1, 999의5, 1000, 1000의1, 1000의2, 1001, 1001의1, 1002 ~ 1005, 1005의1
제4통	제1반	봉명동	1181 ~ 1184, 1184의1, 1185 ~ 1187, 1187의1, 1188, 1188의1 ~ 1188의5, 1189, 1189의1 ~ 1189의3, 1201, 1202, 1202의1, 1203 ~ 1205, 1205의1, 1206, 1206의1 ~
	제2반	봉명동	1197 ~ 1200, 1200의1 ~ 1200의16,
	제3반	봉명동	1190, 1190의1, 1191, 1191의1, 1192, 1192의1 ~ 1192의3, 1193, 1193의1 ~ 1193의5, 1194 ~ 1196, 1196의1, 1207, 1207의1 ~ 1207의3, 1028, 1208의1, 1209 ~ 1211
	제4반	봉명동	1212, 1212의1, 1213, 1214의1 ~ 1214의5, 1215, 1215의1 ~ 1215의4, 1216 ~ 1220, 1220의1, 1220의2, 1221 ~ 1227, 1227의1, 1227의2
제5통	제1반	봉명동	1109 ~ 1112, 1112의1, 1113 ~ 1118, 1118의1 ~ 1118의3, 1136, 1136의1, 1137 ~ 1141, 1141의1, 1142, 1142의1, 1142의2, 1143 ~ 1145, 1145의1, 1145의2
	제2반	봉명동	1119 ~ 1123, 1124의1, 1124 ~ 1127, 1129, 1128, 1128의1, 1130 ~ 1132, 1132의1, 1133, 1133의1 ~ 1133의6, 1134, 1135
	제3반	봉명동	1146, 1146의1, 1147 ~ 1150, 1150의1, 1150의4, 1151 ~ 1153, 1153의1 ~ 1153의3
	제4반	봉명동	1164 ~ 1167, 1167의1, 1167의2, 1168, 1168의1, 1169, 1168의2, 1100, 1170, 1170의1, 1170의7, 1171, 1171의1, 1171의5, 1172 ~ 1174, 1174의1, 1175 ~ 1177, 1177의1, 1172의2, 1178, 1178의1, 1178의2, 1179, 1180
	제5반	봉명동	1154, 1154의1 ~ 1154의6, 1155 ~ 1158, 1158의1 ~ 1158의6, 1159 ~ 1161, 1161의1, 1162, 1163, 1163의1
제6통	제1반	봉명동	1057, 1057의1, 1058, 1058의1, 1059, 1060, 1060의1, 1061, 1062, 1062의1 ~ 1062의3, 1063, 1064, 1080(신사)
	제2반	봉명동	1065, 1065의1, 1066, 1066의1, 1067 ~ 1071, 1071의1, 1072 ~ 1074, 1074의1, 1074의2, 1075, 1075의1, 1076, 1076의1, 1077 ~ 1079, 1081, 1081의1, 1085, 1085의1 ~
	제3반	봉명동	939, 939의1 ~ 939의4, 940, 940의1, 940의2, 941, 941의1, 941의2, 942, 942의1 ~ 942의4, 943, 944, 944의1, 944의2, 945, 945의1, 946, 946의1, 947 ~ 950, 950의1, 951 ~
	제4반	봉명동	1082, 1082의1, 1082의2, 1083, 1086 ~ 1088, 1088의1, 1089 ~ 1093, 1093의1, 1094 ~ 1104, 1104의1 ~ 1104의3, 1105, 1105의1, 1106 ~ 1108, 1108의1, 1108의2
제7통	제1반	봉명동	793, 793의1, 794, 795, 795의1, 796, 796의1, 798 ~ 802, 802의1, 802의2, 803, 891, 892, 892의1, 893, 894, 894의1, 894의2, 895, 895의1, 896 ~ 898, 898의1, 900, 901, 901의1, 902, 902의1 ~ 902의3, 903, 903의1, 904 ~ 909
	제2반	봉명동	804, 804의1 ~ 804의14, 805, 806, 806의1 ~ 806의6
	제3반	봉명동	910, 910의1, 910의2, 921, 912, 912의1, 912의8, 913, 913의1, 913의2, 914, 915의1, 916, 917, 917의1, 918 ~
	제4반	봉명동	922 ~ 925, 925의1 ~ 925의3, 927, 927의1, 927의2, 928, 929, 929의1, 930, 930의1, 930의2, 933, 933의1, 933의2, 934 ~ 938, 938의1

제8통	제1반	봉명동	169, 169의1 ~ 169의13, 176, 176의1 ~ 176의8, 176의18 ~ 176의21, 176의23, 176의30, 176의31
	제2반	봉명동	176의9, 176의10, 176의12 ~ 176의14, 176의16, 176의17, 176의24 ~ 176의29
	제3반	봉명동	186, 186의1 ~ 186의24
	제4반	봉명동	170, 170의1 ~ 170의17, 170의19, 170의24, 170의27 ~ 170의29, 171, 171의1 ~ 171의3, 189, 189의1 ~ 189의4, 189의15, 189의16, 189의34 ~ 189의37
	제5반	봉명동	187, 187의1 ~ 187의35
	제6반	봉명동	188, 188의1, 188의12, 188의13, 188의15 ~ 188의24
제9통	제1반	봉명동	193(주공연립주택 1, 2, 3, 5동), 193(주공연립주택 6, 7, 8, 9동)
	제2반	봉명동	193의3(주공연립주택 10, 11동), 193의3(주공연립주택 12, 14동), 193의4(주공연립주택 13, 15동), 193의3(주공연립주택 16, 18, 19동), 193의4(주공연립주택 17, 20동)
	제3반	봉명동	193의5(주공연립주택 21, 23동), 193의6(주공연립주택 22동), 193의5(주공연립주택 25동), 193의6(주공연립주택 24, 26동)
	제4반	봉명동	193의5(주공연립주택 27, 29동), 193의6(주공연립주택 28동), 172의8(주공연립주택 30, 31, 32동)
	제5반	봉명동	172의8(주공연립주택 33, 34, 35동), 172의7(주공연립주택 37, 39, 41동), 172의7(주공연립주택 38, 40, 42동)
	제6반	봉명동	172의5(주공연립주택 36동 101 ~ 104호, 201 ~ 204호, 301 ~ 304호, 401 ~ 404호, 501 ~ 504호), 172의5(주공연립주택 36동 105 ~ 108호, 205 ~ 208호, 305 ~ 308호, 405 ~ 408호, 505 ~ 508호)
제10통	제1반	봉명동	172 (주공A 43동) 172 (주공A 44동)
	제2반	봉명동	172의1 (주공A 45동), 172의1 (주공A 46동)
	제3반	봉명동	172의1 (주공A 47동), 172의1 (주공A 48동)
	제4반	봉명동	172의3 (주공A 49동), 172의3 (주공A 50동)
	제5반	봉명동	172의4 (주공A 51동), 172의4 (주공A 52동)
제11통	제1반	봉명동	191, 191의1 ~ 191의3, 191의5 ~ 191의14
	제2반	봉명동	192, 192의1 ~ 192의12, 192의14, 192의15, 192의17, 193의1, 193의2, 193의7 ~ 193의9
	제3반	봉명동	190, 190의1 ~ 190의19, 190의21 ~ 190의25, 166, 166의1 ~ 166의14, 166의16 ~ 166의19
	제4반	봉명동	167, 167의1 ~ 167의11, 167의13, 167의14, 168, 168의1 ~ 168의21
제12통	제1반	봉명동	198, 198의1 ~ 198의15, 198의16 ~ 198의32
	제2반	봉명동	200, 200의1 ~ 200의17
	제3반	봉명동	201, 201의1 ~ 201의15
	제4반	봉명동	202, 202의1 ~ 202의26
	제5반	봉명동	203, 203의1 ~ 203의12, 203의13 ~ 203의25
제13통	제1반	봉명동	212, 212의1 ~ 212의6, 212의7 ~ 212의19, 212의20, 212의21, 212의24 ~ 212의27
	제2반	봉명동	213, 213의1 ~ 213의19
	제3반	봉명동	214, 214의1 ~ 214의22
	제4반	봉명동	215, 215의1 ~ 215의21
제14통	제1반	봉명동	218, 218의1 ~ 218의24,
	제2반	봉명동	219, 219의1 ~ 219의14, 224, 224의1, 224의3 ~ 224의6, 224의10 ~ 224의13, 224의2, 224의7 ~ 224의9, (홍덕빌라)
	제3반	봉명동	216, 216의1 ~ 216의17, 216의24 ~ 216의26, 216의19 ~ 216의33, 216의27 ~ 216의31
	제4반	봉명동	223, 223의1 ~ 223의15
제15통	제1반	봉명동	232, 232의1 ~ 232의21
	제2반	봉명동	233, 233의1 ~ 233의4, 233의25 ~ 233의32, 233의39 ~ 233의42, 233의5 ~ 233의24, 233의33 ~ 233의37
	제3반	봉명동	1248 ~ 1274, 1277, 1277의1, 1278 ~ 1285
	제4반	봉명동	230, 230의1 ~ 230의17
제16통	제1반	봉명동	204, 204의1 ~ 204의6, 204의11 ~ 203의18, 206의43 ~ 206의49
	제2반	봉명동	204의7, 204의8, 204의10, 204의19 ~ 204의25, 204의27, 204의29 ~ 204의42, 205
	제3반	봉명동	206, 206의1 ~ 206의4, 206의13, 206의14, 206의16 ~ 206의24, 206의2, 206의27, 206의33, 206의39, 206의40



			제4반	봉명동	206의5, 206의12, 206의28, 206의29, 206의31, 206의32, 206의34 ~ 206의38, 206의41
			제5반	봉명동	207, 207의1 ~ 207의11
		제17통	제1반	봉명동	220, 220의1 ~ 220의10, 225, 225의1 ~ 225의9
			제2반	봉명동	221, 221의1 ~ 221의16, 222, 222의1 ~ 222의14
			제3반	봉명동	227, 227의1 ~ 227의22
			제4반	봉명동	229, 229의1 ~ 229의5, 229의7 ~ 229의12, 229의15, 228(주연맨션), 228의1 ~ 228의8
		제18통	제1반	봉명동	194, 194의1 ~ 194의15
			제2반	봉명동	208, 208의1 ~ 208의7, 208의17 ~ 208의21, 208의29 ~ 208의35
			제3반	봉명동	208의9 ~ 208의16, 208의36, 208의37, 208의22 ~ 208의
			제4반	봉명동	195, 195의1, 195의2, 195의4 ~ 195의16, 197, 197의1 ~ 197의15, 197의19 ~ 197의21, 209, 209의1 ~ 209의 8, 210, 210의1, 211, 211의1 ~ 211의8
		제19통	제1반	봉명동	754, 756, 756의1, 757 ~ 760, 760의1, 760의2, 761, 807, 807의1 ~ 807의9, 808
			제2반	봉명동	809, 809의1 ~ 809의9, 810, 810의1 ~ 810의9
			제3반	봉명동	812, 813, 813의1, 814의1, 815, 815의1 ~ 815의5, 816,
			제4반	봉명동	954, 954의1, 955 ~ 960, 960의1, 961, 961의1 ~ 961의5, 962, 962의1 ~ 962의4, 962의6, 962의7, 963, 964, 964의 1, 965, 965의1 ~ 965의3, 966, 967, 967의1 ~ 967의5,
			제5반	봉명동	969, 969의1, 969의3 ~ 969의6, 970, 970의1, 970의2, 972, 973, 973의1, 974 ~ 976, 976의1, 969의2(제일연립)
봉명제2송정동	1	제1통	제1반	봉명동	686 ~ 709, 748, 748의1 ~ 748의3, 749, 749의1, 750, 751, 751의1 ~ 751의3, 752, 753
			제2반	봉명동	560, 560의1, 560의10 ~ 560의17, 560의2 ~ 560의9, 560 의18, 561 ~ 564, 565 ~ 591
			제3반	봉명동	544 ~ 559, 592 ~ 617
			제4반	봉명동	618 ~ 639, 639의1 ~ 639의4, 710 ~ 724,
			제5반	봉명동	516 ~ 521, 521의1 ~ 521의5, 522 ~ 527, 527의1 ~ 11
		제2통	제1반	봉명동	685, 685의1 ~ 685의21, 742, 742의1 ~ 742의4, 743, 743 의1 ~ 743의2, 744, 744의1, 745, 745의1, 746, 746의1,
			제2반	봉명동	725의1, 726의1, 726의2, 725 ~ 730, 730의1, 731 ~ 735, 735의1, 735의2, 736, 736의1 ~ 736의2, 737 ~ 740, 740의 1 ~ 740의2, 741, 741의1
			제3반	봉명동	668, 668의1 ~ 668의5, 669, 670, 670의1, 671, 671의1 ~ 671의8, 672 ~ 684, 672의1 ~ 672의10,
			제4반	봉명동	665, 666, 666의1 ~ 666의6, 667, 667의1 ~ 667의3
			제5반	봉명동	640, 641, 641의1, 642, 642의1 ~ 642의2, 643, 643의2, 644 ~ 655, 655의1 ~ 655의3, 645 ~ 657, 657의1, 658, 659, 659의1, 660, 661, 661의1 ~ 661의2, 662 ~ 664
		제3통	제1반	봉명동	459, 460, 460의1, 461, 461의1, 462, 462의1 ~ 462의2, 463 ~ 464, 464의1 ~ 464의7, 465, 465의1 ~ 465의2, 466 ~ 469, 469의1 ~ 469의3, 470, 470의1, 470의2, 471
			제2반	봉명동	472, 472의1 ~ 472의19, 473 ~ 488
			제3반	봉명동	489, 489의1 ~ 489의7, 490, 490의1 ~ 490의3, 491, 492, 492의1 ~ 492의4, 493, 493의1 ~ 493의3, 494, 495, 496, 496의1 ~ 496의2, 497, 497의1, 497의2
			제4반	봉명동	498, 498의1 ~ 498의19, 499 ~ 515
			제5반	봉명동	528, 528의1, 529 ~ 537, 537의1 ~ 537의6, 538, 538의1 ~ 538의2, 539 ~ 542, 540의1
			제6반	봉명동	543, 543의1 ~ 543의19
		제4통	제1반	봉명동	1430 ~ 1453
			제2반	봉명동	1412 ~ 1429
			제3반	봉명동	1791 ~ 1813
			제4반	봉명동	1779 ~ 1815, 1815의1, 1816 ~ 1818, 1818의1, 1819 ~ 1822, 1822의1, 1823 ~ 1824, 1824의1 ~ 1824의2, 1825,
		제5통	제1반	봉명동	1326 ~ 1350
			제2반	봉명동	1351 ~ 1373
			제3반	봉명동	1374 ~ 1394
			제4반	봉명동	1395 ~ 1407, 1407의1 ~ 1407의2, 1408 ~ 1410, 1410의1 ~ 1410의2, 1411
		제6통	제1반	봉명동	90의4(삼정A 101동), 90의69, 90의71 ~ 91, 91의5 ~ 91의6
			제2반	봉명동	90의4(삼정A 102동)

	제3반	봉명동	2211 ~ 2248, 2247의2, 2248 ~ 2252, 90의8(삼정맨션3동), 90의18, 90의39, 90의81, 90의84, 산131 ~ 산134
	제4반	봉명동	90의8(삼정맨션4동)
	제5반	봉명동	90의8(삼정맨션5동)
	제6반	봉명동	90의8(삼정맨션6동),
제7통	제1반	봉명동	90의44(삼정맨션1동)
	제2반	봉명동	90의44(삼정맨션2동)
	제3반	봉명동	87(삼정백조A 7동)
	제4반	봉명동	87(삼정백조A 8동)
	제5반	봉명동	87(삼정백조A 9동), 89의9, 2208 ~ 2210
제8통	제1반	봉명동	2043(백봉A 101동)
	제2반	봉명동	2043(백봉A 102동)
	제3반	봉명동	2043(백봉A 103동)
	제4반	봉명동	2044(초원A 101동 101 ~ 415)
	제5반	봉명동	2044(초원A 101동 501 ~ 815)
	제6반	봉명동	2044(초원A 102동 101 ~ 414), 상가
	제7반	봉명동	2044(초원A 102동 501 ~ 814)
제9통	제1반	봉명동	2029 ~ 2042
	제2반	봉명동	2098 ~ 2112
	제3반	봉명동	2086 ~ 2097
	제4반	봉명동	2071 ~ 2085
	제5반	봉명동	2062 ~ 2070
	제6반	봉명동	2045 ~ 2061
제10통	제1반	봉명동	1286 ~ 1305
	제2반	봉명동	1560 ~ 1588
	제3반	봉명동	1464 ~ 1483
	제4반	봉명동	1306 ~ 1325, 1454 ~ 1463
제11통	제1반	봉명동	1759 ~ 1778, 1827 ~ 1829, 1830의1, 1831
	제2반	봉명동	1739, 1739의1, 1740, 1740의1, 1741 ~ 1758
	제3반	봉명동	1719 ~ 1738
	제4반	봉명동	1504 ~ 1523
	제5반	봉명동	1484 ~ 1503
제12통	제1반	봉명동	1703 ~ 1718, 1832 ~ 1835, 1835의1, 1836, 1837, 1837의1, 1838, 1839
	제2반	봉명동	1687 ~ 1702
	제3반	봉명동	1524 ~ 1536, 1677 ~ 1686
	제4반	봉명동	1537 ~ 1559
제13통	제1반	봉명동	1589 ~ 1601
	제2반	봉명동	1652 ~ 1676
	제3반	봉명동	1630 ~ 1651
	제4반	봉명동	1605 ~ 1629, 1606의1, 1606의2, 1607의1, 1610의1, 1611의1 ~ 1611의3, 1613의1, 1618의1, 1621의1
제14통	제1반	봉명동	1976 ~ 2028
	제2반	봉명동	1985 ~ 2001
	제3반	봉명동	2002 ~ 2017
	제4반	봉명동	2126 ~ 2140
	제5반	봉명동	2113 ~ 2125
제15통	제1반	봉명동	1877 ~ 1885, 1922 ~ 1925, 1966 ~ 1975
	제2반	봉명동	1946 ~ 1965
	제3반	봉명동	1936 ~ 1945, 1926 ~ 1935
	제4반	봉명동	1910 ~ 1921
	제5반	봉명동	1898 ~ 1909
제16통	제1반	봉명동	1858 ~ 1876
	제2반	봉명동	1886 ~ 1897
	제3반	봉명동	2141 ~ 2150, 2171 ~ 2178

	제4반	봉명동	2151 ~ 2170
	제5반	봉명동	2171 ~ 2192
제17통	제1반	봉명동	1602(봉명주공2단지A 108동)
	제2반	봉명동	1602(봉명주공2단지A 109동)
	제3반	봉명동	1602(봉명주공2단지A 110동, 111동)
	제4반	봉명동	1602(봉명주공2단지A 112동 ~ 114동)
	제5반	봉명동	1602(봉명주공2단지A 115동 ~ 119동), 1602의1
제18통	제1반	봉명동	1602(봉명주공2단지A 101동, 103동, 상가)
	제2반	봉명동	1602(봉명주공2단지A 102동)
	제3반	봉명동	1602(봉명주공2단지A 104동, 105동)
	제4반	봉명동	1602(봉명주공2단지A 106동, 107동)
제19통	제1반	봉명동	1603(신라A 1동 101 ~ 613호), 1603의5(상가), 1603의13(상가)
	제2반	봉명동	1603(신라A 2동)
	제3반	봉명동	1603(신라A 3동)
	제4반	봉명동	1603(신라A 5동, 6동)
	제5반	봉명동	1603(신라A 1동 115 ~ 618, 7동)
	제6반	봉명동	1604(LG화학사원A A동, B동)
	제7반	봉명동	1604(LG화학사원A C동)
제20통	제1반	봉명동	2193(세원A 101동 101 ~ 1204, 상가)
	제2반	봉명동	2193(세원A 101동 105 ~ 1208)
	제3반	봉명동	2193(세원A 102동 103 ~ 1506)
	제4반	봉명동	2193(세원A 102동 101 ~ 1502), 2193(세원A 103동 105 ~ 1506)
	제5반	봉명동	3193(세원A 103동 101 ~ 1504)
제21통	제1반	봉명동	1855(푸른A 101동)
	제2반	봉명동	1855(푸른A 102동, 상가)
	제3반	봉명동	1855(푸른A 103동)
	제4반	봉명동	1855(푸른A 104동)
제22통	제1반	봉명동	1855(푸른A 105동 101 ~ 810호)
	제2반	봉명동	1855(푸른A 105동 901 ~ 1510호)
	제3반	봉명동	1855(푸른A 106동)
	제4반	봉명동	1857(동양도자기사원A, 상가)
제23통	제1반	봉명동	237의20(LG화학사원A 101동)
	제2반	봉명동	236의29, 237의20(LG화학사원A 102동)
	제3반	봉명동	237의20(LG화학기숙사), 239의20(코스모사원A)
	제4반	봉명동	239의9(신흥A 가동), 239의19(쌍신A)
	제5반	봉명동	239의9(신흥A 나동, 상가)
	제6반	봉명동	353의5(하이닉스반도체기숙사)
	제7반	봉명동	353의5(LG전자기숙사)
제24통	제1반	봉명동	353의5(하이닉스, LG산전사원A 가동)
	제2반	봉명동	353의5(하이닉스, LG산전사원A 나동)
	제3반	봉명동	353의5(하이닉스, LG산전사원A 다동)
	제4반	봉명동	353의5(하이닉스, LG산전사원A 라동)
	제5반	봉명동	353의5(하이닉스, LG산전사원A 아동)

	제6반	봉명동	71의2, 71의6, 237의6, 238, 239의1, 239의3, 239의4(동양제과기숙사), 239의11, 239의24 ~ 239의25, 351, 351의1 ~ 351의6, 352, 352의1 ~ 352의2, 353의14(LG기숙사), 353의2 ~ 353의4, 356, 356의3, 356의12, 357, 357의1, 359, 360, 360의1, 361의3, 361의4, 361의8, 361의13, 361의15, 361의17, 361의19, 361의22, 361의25, 362의10, 362의5, 365의1, 371의18, 37의21, 379의2, 379의9, 391의10, 404, 404의1, 417의6, 417의13, 417의14, 417의24, 417의26, 417의38, 417의45, 417의59 ~ 417의60, 417의65, 417의66, 419, 425, 450, 산7, 산10의1, 산10의6, 산11의1, 산11의6, 산18의13, 산18의15, 산19의5, 산20의1, 산20의9 ~ 산20의10, 산20의12, 산20의20, 산20의21 ~ 산20의22, 산21, 산21의1 ~ 산21의3, 산22의1, 산22의2, 산22의6, 산22의10, 산24의1, 산25의1, 산26, 산28의1, 산30의1, 산31의2 ~ 산31의4, 산32의1, 산33, 산356의3, 353의14(LG산전기숙사)
	제7반	봉명동	
제25통	제1반	송정동	산61의9(기능대A 1동), 산61의19, 산73의1, 산73의5, 73
	제2반	송정동	산61의9(기능대A 2동), 45의4
	제3반	송정동	19의3 ~ 19의34, 19의9, 27, 27의1 ~ 27의27, 27의128, 28, 28의6, 36의1 ~ 36의3, 36의138, 36의141, 36의142, 36의7, 36의9, 37의4, 37의6 ~ 37의7, 38의1, 42, 43의2 ~ 43의3, 44의1, 46의8, 46의10, 47, 53 ~ 56, 70, 70의39, 75의7, 277의1, 292의3, 292의6, 292의9, 314, 400, 403, 405, 407, 409, 411, 414, 417, 417의65, 420, 산54의1, 산57의1, 산58의1, 산74, 산76 ~ 산79
	제4반	송정동	53의8, 53의16, 53의31, 66의26, 66의29, 66의30, 70의7, 70의8, 70의10, 70의18, 70의25, 70의26, 70의30, 70의32, 70의35, 70의38, 70의40 ~ 70의75, 75, 75의1, 75의3, 75의4, 78, 85, 85의12, 85의14, 103의5, 106의4, 109의5, 109의7, 109의10, 211의2, 211의5, 211의6, 216의2, 217의4, 248의2, 248의6, 248의16 ~ 248의18, 277의1, 279의5, 291의6, 294, 302의1, 302의5, 321의5, 321의6, 358, 365의1, 368의1, 379의4, 379의23, 379의24
제26통	제1반	송정동	140의41(근로자복지A 가동, 나동),
	제2반	송정동	140의41(근로자복지A 다동), 140의14, 329의1
	제3반	송정동	140의13, 140의16, 140의28, 140의34, 140의38, 140의39, 140의50, 140의51, 140의54, 140의56, 140의57, 140의59, 140의60, 224의8, 312의1, 312의4, 313, 313의2, 315, 316, 317, 318의1, 319, 320의1, 320의3, 321의2, 321의4, 321의5, 329의4, 329의5, 334의3, 341의3, 341의4, 342, 343, 344, 산10의1, 산8의4, 산8의5, 산8의6, 산9
	제4반	송정동	1, 1의6, 1의8, 1의25, 2의1, 4의1, 5의1, 5의6, 5의7, 16의1, 16의5, 17의1 ~ 17의3, 29의1, 29의10, 123, 140의4 ~ 140의6, 140의15, 140의20, 140의22, 140의26, 140의32, 140의33, 140의34, 140의40, 140의55, 150, 155의10, 155의17, 155의21, 155의27, 155의29, 156의30, 161의3, 161의7, 161의10, 162의5, 190의3, 224의5, 417의6, 산34의1, 산34의24, 산34의28, 산35, 산35의1, 산45의14, 산46의1, 산46의9, 산46의14, 산49의4, 산50의1, 산51, 산56
제27통	제1반	봉명동	2257, 2260, 2261, 2264, 2266, 2267, 2271, 2272, 2289, 2298 ~ 2383, 2410 ~ 2443, 산52의8, 산54의1, 산55, 산62의10, 산63의1, 산63의2, 산64의9
	제2반	봉명동	2454 ~ 2480, 2498 ~ 2506
	제3반	봉명동	2396 ~ 2409
	제4반	봉명동	2384 ~ 2386, 2387 ~ 2395
	제5반	봉명동	2481 ~ 2497
제28통	제1반	봉명동	14의1, 14의11 ~ 14의12, 2274, 2275, 2292, 2296, 2297,
	제2반	봉명동	2808 ~ 2845
	제3반	봉명동	335의18, 2296의1, 2846 ~ 2890, 2892, 2866의1,
	제4반	봉명동	2713 ~ 2751
제29통	제1반	봉명동	2758(두진메인빌A 101동), 328의3, 328의5, 328의7, 2752 ~ 2757
	제2반	봉명동	2758(두진메인빌A 102동)
	제3반	봉명동	2758(두진메인빌A 103동)
	제4반	봉명동	2758(두진메인빌A 104동)
제30통	제1반	봉명동	2546 ~ 2553
	제2반	봉명동	2559 ~ 2580

			제3반	봉명동	79의17(대우꿈동산A) 79의16, 79의19, 79의22, 2554 ~
			제4반	봉명동	2641 ~ 2712, 2669의1, 2700의1
		제31통	제1반	봉명동	2752 현대'Park 101동(101호-1506호)
			제2반	봉명동	2752 현대'Park 102동(101호-1506호)
			제3반	봉명동	2752 현대'Park 103동(101호-1506호)
			제4반	봉명동	2752 현대'Park 104동(101호-1506호)
			제5반	봉명동	2752 현대'Park 105동(101호-1504호)
		제32통	제1반	봉명동	2752 현대'Park 106동(101호-1504호), 107동(101호-1502호)
			제2반	봉명동	2752 현대'Park 108동(101호-1506호)
			제3반	봉명동	2752 현대'Park 109동(101호-1506호)
			제4반	봉명동	2752 현대'Park 110동(101호-1506호)
			제5반	봉명동	2752 현대'Park 111동(101호-1504호)
		제33통	제1반	봉명동	2752 현대'Park 112동(101호-1502호), 119동(101호-1005호)
			제2반	봉명동	2752 현대'Park 113동(101호-1502호), 118동(101호-1005호)
			제3반	봉명동	2752 현대'Park 114동(101호-1502호), 117동(101호-1005호)
			제4반	봉명동	2752 현대'Park 115동(101호-1505호), 116동(101호-1003호)
		제34통	제1반	봉명동	2581 ~ 2591
			제2반	봉명동	2592 ~ 2602
			제3반	봉명동	2603 ~ 2613
			제4반	봉명동	2615 ~ 2625
			제5반	봉명동	2626 ~ 2640
		제35통	제1반	봉명동	2507 ~ 2515
			제2반	봉명동	2516 ~ 2521
			제3반	봉명동	1의1 ~ 1의5, 1의13 ~ 1의18, 1의26, 산59의5, 2522 ~ 2531
			제4반	봉명동	2532 ~ 2538
			제5반	봉명동	2539 ~ 2544, 75의1, 75의2
강서제1동	1	제1통	제1반	강서동	2의3, 4의3, 5의4, 6의4, 7의1 ~ 7의8, 8의6 ~ 8의9, 9의2, 9의10, 10, 11, 34의1 ~ 34의3, 14의1, 14의9 ~ 14의11, 14의12(강호연립), 15의3
			제2반	강서동	8, 11, 12의1 ~ 12의5, 17의1 ~ 17의12, 26의1 ~ 26의5, 27의2 ~ 27의8, 28의11, 92의1 ~ 92의9
			제3반	강서동	30, 30의1 ~ 30의5, 31의1, 32의1 ~ 32의3, 3의3 ~ 33의5, 35의3 ~ 35의10, 35의17, 35의21, 87의1 ~ 87의15, 88, 89의1 ~ 89의6
			제4반	강서동	33의7(우정A101 ~ 108호, 201 ~ 218호, 301 ~ 318호, 401 ~ 418호)
			제5반	강서동	33의7(우정A501 ~ 518호, 601 ~ 618호, 701 ~ 718호, 801 ~ 818호)
			제6반	강서동	33의7(우정A901 ~ 918호, 1001 ~ 1018호, 1101 ~ 1118호, 1201 ~ 1218호, 1301 ~ 1318호)
		제2통	제1반	강서동	36, 36의1, 36의2, 37, 39의1, 48, 48의2, 51의2, 83의1, 83의2, 83의6, 84, 86의1, 86의3, 98의2
			제2반	강서동	49, 50의4 ~ 50의7, 51의7 ~ 51의13, 52의1 ~ 52의8, 53의10, 81의1, 81의6 ~ 81의17, 81의22, 산4의5, 산4의6, 산4
			제3반	강서동	53, 53의2 ~ 53의4, 53의14, 55 ~ 58, 63 ~ 71, 55의1, 55의2, 72의1 ~ 72의7, 73, 74의1 ~ 74의3, 75의1, 76, 76의1, 77의1, 77의2, 105의11, 123의1 ~ 123의9, 124, 125의1 ~ 125의3, 126, 126의1, 126의2, 127
			제4반	강서동	50의1(낙원A 101 ~ 111호, 201 ~ 217호, 301 ~ 317호, 401 ~ 417호, 501 ~ 517호, 601 ~ 607호, 614 ~ 616호)
			제5반	강서동	53의11(삼덕A)
			제6반	강서동	458, 459, 460, 462, 463,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제3통	제1반	강서동	59 ~ 62, 140, 148, 166
			제2반	강서동	134 ~ 137, 140, 168
			제3반	강서동	148, 151, 154, 156, 158, 161 ~ 163, 198, 360

제4통	제1반	강서동	324, 326, 326의2, 327의2, 327의3, 304의1, 306의2, 330, 331, 332의4, 334의1, 334의2, 350
	제2반	강서동	221, 222, 223의4, 225의2, 273의5, 349, 350, 261의1, 265의3, 291의2, 227의2, 227의3
제5통	제1반	석곡동	산51의3, 283의1, 286의1, 287의2, 287의3, 288, 289의1, 293의1, 300의5, 300의6
	제2반	석곡동	201의1, 201의4, 202의1, 202의2, 202의5, 210의1, 210의4, 211의1 ~ 211의4, 212의1, 215의1
제6통	제1반	석곡동	246, 249
	제2반	석곡동	22, 27, 30의2, 34, 35, 37, 38, 40, 41, 53, 54
제7통	제1반	휴암동	265, 265의1 ~ 265의3, 265의5, 284의1, 294, 294의1,
	제2반	휴암동	111, 117, 200, 201, 201의1, 201의2, 210의3, 211, 217
	제3반	휴암동	316, 331 ~ 336, 354, 378
	제4반	휴암동	332
제8통	제1반	신전동	140, 170의1, 178, 180의1, 180의2, 180의7, 180의8, 242, 323
	제2반	신전동	120, 168, 179 ~ 181, 192, 238 ~ 240, 320
	제3반	신전동	24, 168, 179의2, 180, 186의16, 245
	제4반	신전동	215, 215의2, 216, 222, 222의2, 241의2, 241의3
	제5반	신전동	319, 320, 320의2, 320의3, 325의11, 325의2 ~ 325의4
제9통	제1반	현암동	77, 79, 87의1, 88, 89의1, 90의2,
	제2반	현암동	94의1, 95의1, 96의2, 100
	제3반	현암동	100
제10통	제1반	현암동	251의1, 252의2, 252, 252의1, 253, 253의2, 255, 255의1, 255의2, 257, 258의2, 259의1, 260, 260의1, 260의4, 260의6 ~ 260의8
	제2반	현암동	25, 33, 165, 167, 168, 169, 170, 171
	제3반	현암동	215의1, 215의2, 255의2, 273의5, 349, 350, 360의1, 265의3, 291의2, 277의2, 277의3
제11통	제1반	동막동	76, 109, 216
	제2반	동막동	185, 224, 227, 478
제12통	제1반	동막동	1, 109, 367, 372, 471, 479
	제2반	동막동	38, 471, 479, 480, 513
	제3반	동막동	283, 512
제13통	제1반	수의동	76, 78, 435
	제2반	수의동	331 ~ 339
	제3반	수의동	379, 402의2, 405의4, 400
	제4반	수의동	449의1, 449의2, 449의5
제14통	제1반	수의동	160의2, 161, 162, 170의2, 177의1 ~ 177의11
	제2반	수의동	3, 17, 148의6 ~ 148의8, 150의1 ~ 150의3, 151의1, 151의2, 178, 178의1 ~ 178의6, 180의1 ~ 180의4, 181의1 ~ 181의6, 185의1, 185의6, 185의7, 185의10
	제3반	수의동	95, 96, 97의2, 97의3, 98, 99, 99의1, 101, 102, 222, 223, 224의1, 233의1 ~ 233의3, 234, 234의1, 234의2, 235, 236, 237
제15통	제1반	지동동	209의4, 237의4, 238, 239의1, 239의4, 240, 241, 244의1 ~ 244의6, 245, 246의1, 247의1, 247의2, 247의5
	제2반	지동동	192, 194의1, 196의1 ~ 196의8, 197, 197의1, 198, 198의1, 198의2, 200의1, 248의1 ~ 248의3, 249의1 ~ 249의3, 264의1, 267의5, 267의6, 268, 269, 269의1, 270, 270의1, 272의3, 282의1
제16통	제1반	지동동	100, 696, 719의1 ~ 719의3
	제2반	지동동	718, 179, 719의1 ~ 719의4, 719의18
	제3반	지동동	695, 719의9
	제4반	지동동	100, 730, 733, 735
제17통	제1반	서촌동	493의1 ~ 493의6, 494, 494의1 ~ 494의6, 495, 496, 497의4 ~ 497의9
	제2반	서촌동	497, 497의1, 497의2, 498, 498의1, 499의1 ~ 499의6, 500, 501의1, 501의2, 502의1, 502의2, 503, 504의1 ~ 504의5, 506의1 ~ 506의9
	제3반	서촌동	508의1 ~ 508의3, 509의1 ~ 509의4, 510의1 ~ 510의10, 511의1 ~ 511의3, 514, 515, 518

	제4반	서촌동	516의1 ~ 516의4, 517의1 ~ 517의4, 519의1, 519의2, 520의1 ~ 520의8, 523의10, 534의2, 535의1
	제5반	서촌동	135의1, 137의1, 149의3, 176, 177, 177의1, 178의1 ~ 178의9, 179, 179의1
제18통	제1반	서촌동	535, 536, 536의1, 536의2, 536의4, 538, 539, 576의2
	제2반	서촌동	595의4, 644, 645, 646, 650의2, 산49
	제3반	서촌동	635의1 ~ 635의7, 636, 638, 640의1
제19통	제1반	서촌동	75의1, 75의2, 74, 74의1, 74의2, 78, 81, 81의1, 79, 60,
	제2반	서촌동	62, 74의2, 74의4, 77, 82, 81의5, 83, 83의4
제20통	제1반	비하동	305-1, 306의2, 306의3, 307, 307의1 ~ 307의3, 308의1 ~ 308의4, 309의1, 310의2, 311의2, 311의3, 312의1, 321의2, 322의1, 349의3, 349의4, 349의9, 349의11, 350의3, 351, 351의5, 351의6, 351의12
	제2반	비하동	293의5 ~ 293의8, 294, 295의3 ~ 295의4, 295의15, 295의20, 295의26, 295의42, 296의2, 296의4, 297의2, 297의7, 298의5, 298의6, 298의9, 314의3, 314의7, 315의1, 315의3, 317의7, 317의11, 317의14, 318의3, 365의1, 365의2, 366의1 ~ 366의3, 367의1, 368의5, 370의8
	제3반	비하동	262, 287, 288, 289, 290의1, 290의2, 291의1, 291의4, 291의5, 319의1 ~ 319의20, 320의3 ~ 320의25, 343, 345의1, 345의2, 346의1 ~ 346의3, 347의1 ~ 347의3, 352의1, 352의2, 353의1, 353의2, 354의1
	제4반	비하동	311-4 송곡그린A(101동 101 ~ 102호, 201 ~ 202호, 301 ~ 302호, 401 ~ 402호, 501 ~ 502호, 601 ~ 602호, 701 ~ 702호, 801 ~ 802호, 901 ~ 902호, 1001 ~ 1002호, 1101 ~ 1102, 1201 ~ 1202호, 1301 ~ 1302호, 1401 ~ 1402호, 1501 ~ 1502호, 103 ~ 104호, 203 ~ 204호, 303 ~ 304호, 403 ~ 404호, 503 ~ 504호, 603 ~ 604호, 703 ~ 704호, 803 ~ 804호, 903 ~ 904호, 1003 ~ 1004호, 1103 ~ 1104호, 1203 ~ 1204호, 1303 ~ 1304호, 1403 ~ 1404호, 1503 ~ 1504호)
	제5반	비하동	311-4 송곡그린A (101동 105 ~ 106호, 205 ~ 206호, 305 ~ 306호, 405 ~ 406호, 505 ~ 506호, 605 ~ 606호, 705 ~ 706호, 805 ~ 806호, 905 ~ 906호, 1005 ~ 1006호, 1105 ~ 1106호, 1205 ~ 1206호, 1305 ~ 1306호, 1405 ~ 1406호, 1505 ~ 1506호, 107 ~ 108호, 207 ~ 208호, 307 ~ 308호, 407 ~ 408호, 507 ~ 508호, 607 ~ 608호, 707 ~ 708호, 807 ~ 808호, 907 ~ 908호, 1007 ~ 1008호, 1107 ~ 1108호, 1207 ~ 1208호, 1307 ~ 1308호, 1407 ~ 1408호, 1507 ~ 1508호)
	제6반	비하동	311-4 송곡그린A(101동 109 ~ 110호, 209 ~ 210호, 309 ~ 310호, 409 ~ 410호, 509 ~ 510호, 609 ~ 610호, 709 ~ 710호, 809 ~ 810호, 909 ~ 910호, 1009 ~ 1010호, 1109 ~ 1110호, 1209 ~ 1210, 1309 ~ 1310호, 1409 ~ 1410호, 1509 ~ 1510호, 102동 및 상가지역, 102동 101 ~ 102호, 201 ~ 202호, 301 ~ 302호, 103 ~ 104호, 203 ~ 204호, 303
제21통	제1반	비하동	374의5, 380의1 ~ 380의5, 385의9, 388, 389의1, 389의2, 389의4, 390의1, 390의2
	제2반	비하동	384의1 ~ 384의3, 384의5, 384의6, 385의6 ~ 385의8, 395, 395의12, 395의14, 395의20, 395의21, 395의24, 395의25, 산10
제22통	제1반	지동동	296 ~ 299, 302, 294의4
	제2반	지동동	292, 294의1 ~ 294의3, 293, 300, 301, 488의3, 489, 491 ~ 493, 495의4
제23통	제1반	비하동	159, 160, 160의1, 161, 161의1, 162의1, 162의3, 163, 164의3, 166, 166의2, 166의5 ~ 166의13, 167, 240, 241
	제2반	비하동	165의2, 165의11, 165의14, 165의17 ~ 165의29, 197의3
	제3반	비하동	195의3, 196, 197의1, 197의2, 198의2, 198의3, 198의5, 198의7, 199, 199의3, 200, 201의1 ~ 201의7, 236의35,
	제4반	비하동	204의3, 204의5, 205, 220의1, 220의5, 220의12, 224의3, 225의3, 225의7, 226, 227, 228의1 ~ 228의3, 229, 230, 231, 232, 232의1, 233, 235의1 ~ 235의3, 236의2, 236의8, 236의10 ~ 236의14, 236의28, 236의33, 236의39 ~ 236의41, 236의48, 236의58, 236의59
	제5반	비하동	218, 218의1, 219, 244, 245의1, 245의3, 245의5, 245의7, 245의9, 246의1, 247의1, 247의2, 248, 249, 399의1, 420, 421, 422, 425, 426의5
제24통	제1반	비하동	138의9 ~ 138의12, 163, 163의1, 163의2, 164의5, 164의8, 165의1, 170의5 ~ 170의13, 172의2, 173의2, 173의6, 174의1, 174의3, 174의1, 174의4, 175의1 ~ 175의25,
	제2반	비하동	136의1, 136의2, 136의8, 138, 138의1 ~ 138의8, 140, 140의21, 140의22, 140의28, 140의29, 141 ~ 144, 156의3

	제3반	비하동	125, 132의1, 132의8, 136의4, 136의5, 136의10 ~ 136의19, 137의2, 140의5, 140의10 ~ 140의16, 140의18, 140의20, 177의1
	제4반	비하동	713 ~ 734
제25통	제1반	비하동	526, 520, 527, 526의3
	제2반	비하동	561, 561의6, 526, 563의3, 575, 575의4, 575의5, 576의4, 576의8, 77의3, 596
	제3반	비하동	467, 491의1, 526의1, 561의3, 570의3, 579의1
	제4반	비하동	478, 475의3, 475의5, 475의16, 475의20
제26통	제1반	석소동	석소동 20, 95의1, 201, 204의4, 213, 210의6
	제2반	석소동	석소동 210, 202, 206, 210의5, 210의79, 213의1, 205, 287, 210의3
제27통	제1반	비하동	668의1 ~ 668의15, 669의1 ~ 669의16
	제2반	비하동	666의1 ~ 666의12, 667의1 ~ 667의15
	제3반	비하동	665의1 ~ 665의14
	제4반	비하동	260의45(미림A 101호 ~ 312호, 401호 ~ 612호)
	제5반	비하동	670의10 ~ 670의14, 670의18 ~ 670의26670의10(국도빌라), 670의20(유진빌라 A동), 670의14(유진빌라 B동), 670의18(유진빌라 C동)
	제6반	비하동	670의1 ~ 670의9, 670의15 ~ 670의17, 670의15(동서빌라 다동), 670의17(동서빌라 나동) 671의1 ~ 671의17
제28통	제1반	정봉동	1의2, 1의5, 2의1, 5, 5의2, 5의4, 5의8, 6의1, 6의3, 6의9, 8, 8의4, 8의6 ~ 8의9, 10의3, 10의15, 14
	제2반	정봉동	23의3, 23의7, 24, 27, 27의1, 27의3 ~ 27의6, 27의10, 29의1, 29의8, 29의9
	제3반	정봉동	30, 30의4, 30의6, 30의7, 30의12, 30의14, 30의15, 30의18, 30의19, 32, 33, 33의1, 33의5, 33의6, 33의10, 33의11, 33의14, 33의18, 33의19, 34, 34의1, 34의13, 34의
	제4반	정봉동	41의4, 45, 45의1, 46, 47, 47의1, 48의1 ~ 48의6
	제5반	정봉동	50, 50의2-3, 52, 52의1, 52의3-4, 53, 53의1, 55, 55의1, 55의5, 56, 56의1, 56의2, 55의15, 57, 57의1, 59, 61의1, 567의1, 567의6, 588의1, 592
	제6반	정봉동	105의8, 254, 261의1, 264의1, 273의5, 308, 369의3, 413, 417의3, 417의7, 417의27, 453의2, 473, 473의2, 477, 439의3, 453, 449
제29통	제1반	신촌동	64의2, 65의1, 65의2, 65의3, 65의5, 66, 66의1, 67의1, 67의2, 67의3, 67의4, 68의1, 68의2, 69의1, 70의1, 70의2, 71의11, 71의16, 71의5, 71의8, 122의1, 123, 123의1, 124의1, 124의2, 125의1
	제2반	신촌동	31의1, 31의2, 31의3, 31의4, 31의5, 32의1, 32의2, 32의3, 33, 37의1, 38의2, 39의1, 50, 51, 52의1, 52의2, 52의3, 53, 54, 55, 55의1, 55의2, 84, 84의1, 85, 86, 87, 88, 89의2, 89의3, 90, 90의1, 110, 110의3, 112, 113, 113의4, 117의1, 220, 220의3, 220의6
	제3반	신촌동	177의1~177의14, 179의1~178, 179의8, 180의1~180의26, 181의7~181의13, 186의1~186의8, 187의5, 187의6, 288의38, 288의46, 288의47, 308의24, 308의48, 308의6, 308의71, 308의72, 308의74, 308의76, 308의77, 308의84, 358의7, 358의13, 358의14, 401의7, 418의1, 418의7,
제30통	제1반	강서동	45의1, 45의3(우림A 101 ~ 117호, 201 ~ 217호, 301 ~ 317호, 401 ~ 417호)
	제2반	강서동	45의1, 45의3(우림A 501 ~ 517호, 601 ~ 617호, 701 ~ 717호, 801 ~ 817호)
	제3반	강서동	45의4, 45의8(청도주택101동 107 ~ 108호, 207 ~ 208호, 307 ~ 308호, 407 ~ 408호, 507 ~ 508호, 607 ~ 608호, 707 ~ 708호, 807 ~ 808호, 907 ~ 908호, 1007 ~ 1008호, 1107 ~ 1108호, 1207 ~ 1208호, 1307 ~ 1308호, 1407 ~ 1408호, 1507 ~ 1508호, 109 ~ 110호, 209 ~ 210호, 309 ~ 310호, 409 ~ 410호, 509 ~ 510호, 609 ~ 610호, 709 ~ 710호, 809 ~ 810호, 909호, 1009호, 1109호, 1209호)
	제4반	강서동	45의4, 45의8(청도주택 101동 101 ~ 102호, 201 ~ 202호, 301 ~ 302호, 401 ~ 402호, 501 ~ 502호, 601 ~ 602호, 701 ~ 702호, 802호, 902호, 1002호, 1102호, 1202호, 103 ~ 104호, 203 ~ 204호, 303 ~ 304호, 403 ~ 404호, 503 ~ 504호, 603 ~ 604호, 703 ~ 704호, 803 ~ 804호, 903 ~ 904호, 1003 ~ 1004호, 1103 ~ 1104호, 1203 ~ 1204호, 1303 ~ 1304호, 1403 ~ 1404호, 1503 ~ 1504호, 105 ~ 106호, 205 ~ 206호, 305 ~ 306호, 405 ~ 406호, 505 ~ 506호, 605 ~ 606호, 705 ~ 706호, 805 ~ 806호, 905 ~ 906호, 1005 ~ 1006호, 1105 ~ 1106호, 1205 ~ 1206호, 1305 ~ 1306호, 1405 ~



	제5반	강서동	45의4, 45의8 (청도주택 102동 101 ~ 104호, 201 ~ 204호, 301 ~ 304호, 401 ~ 404호, 501 ~ 504호, 601 ~ 604호, 701 ~ 704호, 802 ~ 804호, 902 ~ 904호, 105 ~ 108호, 205 ~ 208호, 305 ~ 308호, 405 ~ 408호, 505 ~ 508호, 605 ~ 608호, 705 ~ 708호, 805호, 905호, 109 ~ 110호, 209 ~ 210호, 309 ~ 310호, 409 ~ 410호, 509 ~ 510호, 609 ~ 610호, 709
제31통	제1반	강서동	37의1(대림A 1동 101 ~ 710호)
	제2반	강서동	37의1(대림A 1동 801 ~ 910호, 1002 ~ 1009호, 1102 ~ 1109호, 1202 ~ 1209호, 1302 ~ 1309호, 1403 ~ 1408호, 1503 ~ 1508호)
	제3반	강서동	37의1(대림A 2동)
	제4반	강서동	37의1(대림A 3동)
제32통	제1반	강서동	40의3 ~ 40의33, 40의37, 40의40
	제2반	강서동	40(덕흥A)
	제3반	비하동	75의1 ~ 75의6, 75의26 ~ 75의28, 75의30, 75의31, 75의33 ~ 75의37, 75의39 ~ 75의47, 75의50 ~ 75의68, 76, 76의1, 76의8, 76의10, 77의2 ~ 77의4, 73의6
	제4반	비하동	75의7 ~ 75의25, 75의29, 75의48, 75의49
제33통	제1반	비하동	75의32, 75의38(평화A 1동)
	제2반	비하동	75의38(평화A 2동 101 ~ 120호, 201 ~ 220호, 301 ~ 320
	제3반	비하동	75의38(평화A 2동 401 ~ 420호, 501 ~ 520호)
	제4반	비하동	75의38(평화A 2동 601 ~ 620호, 701 ~ 720호)
	제5반	비하동	64의4(재원A)
제34통	제1반	비하동	35의2 ~ 35의9, 35의11, 35의16 ~ 35의19, 35의21, 35의23, 58의1, 58의10 ~ 58의14, 59의1, 59의4, 59의5, 60의1, 60의8, 797, 798, 41의1 ~ 41의5, 42의1 ~ 42의3, 42의5 ~ 42의10, 58의3, 58의8, 58의9, 59의3, 60의3, 60의5, 60의7, 60의20, 113
	제2반	비하동	735 ~ 757
	제3반	비하동	33의8, 36의1 ~ 36의10, 37의1 ~ 37의4, 37의8 ~ 37의21, 120의7, 121, 121의4 ~ 121의7, 178, 179, 180의3, 180의
	제4반	비하동	758 ~ 796, 799
제35통	제1반	비하동	238의1(삼일A 1동 101 ~ 1202호, 103 ~ 1204호)
	제2반	비하동	238의1(삼일A 1동 105 ~ 1106호, 107 ~ 1107호, 108 ~ 708
	제3반	비하동	238의1(삼일A 2동 101 ~ 311호, 401 ~ 611호)
	제4반	비하동	238의1(삼일A 2동 701 ~ 811호, 901 ~ 910호, 1001호 ~ 1210호)
	제5반	비하동	238의1(삼일A 3동 101 ~ 701호, 102 ~ 1202호, 103 ~ 1404호, 105 ~ 1405호, 106 ~ 1406호)
	제6반	비하동	238의1(삼일A 3동 107 ~ 1407호, 108 ~ 1408호, 109 ~ 1409호, 110 ~ 1410호, 111 ~ 1111호, 112 ~ 712호)
제36통	제1반	비하동	688의1 ~ 688의13, 689의1 ~ 689의13
	제2반	비하동	674의1 ~ 674의15
	제3반	비하동	398의94, 687의1 ~ 687의13
	제4반	비하동	672의1 ~ 672의16, 673의1 ~ 673의21
제37통	제1반	비하동	675의1 ~ 675의15
	제2반	비하동	676의1 ~ 676의15
	제3반	비하동	677의1 ~ 677의14
	제4반	비하동	686의1 ~ 686의10
	제5반	비하동	684의1 ~ 684의7, 685의1 ~ 685의10
제38통	제1반	비하동	662의1, 662의2, 663의1 ~ 663의18
	제2반	비하동	664의1 ~ 664의18
	제3반	비하동	678의1 ~ 678의11, 683의1 ~ 683의4
	제4반	비하동	679의1 ~ 679의17, 682의1, 682의2
	제5반	비하동	680의1 ~ 680의12, 681의1 ~ 681의3
제39통	제1반	비하동	300(효성A 101동 101 ~ 116호, 201 ~ 216호, 301 ~ 316호)
	제2반	비하동	300(효성A 101동 401 ~ 416호, 501 ~ 516호, 601 ~ 616호)
	제3반	비하동	300(효성A 101동 701 ~ 716호, 801 ~ 816호, 901 ~ 916호)
	제4반	비하동	300(효성A 101동 1001 ~ 1016호, 1101 ~ 1116호, 1201 ~ 1216호)
	제5반	비하동	300(효성A 101동 1301 ~ 1316호, 1401 ~ 1416호, 1501 ~ 1516호)

	제6반	비하동	300(효성A 102동 101 ~ 116호, 201 ~ 216호, 301 ~ 316호, 401 ~ 416호)
	제7반	비하동	300(효성A 102동 501 ~ 516호, 601 ~ 616호, 701 ~ 716호, 801 ~ 816호)
	제8반	비하동	300(효성A 102동 901 ~ 916호, 1001 ~ 1016호, 1101 ~ 1116호, 1203 ~ 1216호)
	제9반	비하동	300(효성A 102동 1305 ~ 1316호, 1405 ~ 1416호, 1508 ~ 1515호)
제40통	제1반	비하동	369(효성A 201동 101 ~ 108호, 201 ~ 208호, 301 ~ 308호, 401 ~ 408호, 501 ~ 508호)
	제2반	비하동	369(효성A 201동 601 ~ 608호, 701 ~ 708호, 801 ~ 808호, 901 ~ 908호, 1001 ~ 1008호)
	제3반	비하동	369(효성A 201동 1101 ~ 1108호, 1201 ~ 1208호, 1301 ~ 1308호, 1401 ~ 1408호, 1501 ~ 1508호)
	제4반	비하동	369(효성A 202동 101 ~ 108호, 201 ~ 208호, 301 ~ 308호, 401 ~ 408호, 501 ~ 508호)
	제5반	비하동	369(효성A 202동 601 ~ 608호, 701 ~ 708호, 801 ~ 808호, 901 ~ 908호, 1001 ~ 1008호)
	제6반	비하동	369(효성A 202동 1101 ~ 1108호, 1201 ~ 1208호, 1301 ~ 1308호, 1401 ~ 1408호, 1501 ~ 1508호)
	제7반	비하동	369(효성A 203동 101 ~ 114호, 201 ~ 214호, 301 ~ 314호, 401 ~ 414호, 501 ~ 514호)
	제8반	비하동	369(효성A 203동 601 ~ 614호, 701 ~ 714호, 801 ~ 814호, 902 ~ 914호, 1002 ~ 1014호)
	제9반	비하동	369(효성A 203동 1102 ~ 1114호, 1204 ~ 1214호, 1304 ~ 1414호, 1404 ~ 1414호, 1504 ~ 1514호)
제41통	제1반	비하동	362(효성A 301동 101 ~ 111호, 201 ~ 211호, 301 ~ 311호, 401호 ~ 411호, 501호 ~ 511호)
	제2반	비하동	362(효성A 301동 601 ~ 611호, 701 ~ 711호, 801 ~ 811호, 901 ~ 911호, 1001 ~ 1011호)
	제3반	비하동	362(효성A 301동 1101 ~ 1111호, 1201 ~ 1211호, 1301 ~ 1311호, 1402 ~ 1411호, 1502 ~ 1511호)
	제4반	비하동	362(효성A 302동 101 ~ 110호, 201 ~ 210호, 301 ~ 310호, 401 ~ 410호, 501 ~ 510호)
	제5반	비하동	362(효성A 302동 601 ~ 610호, 701 ~ 710호, 801 ~ 810호, 901 ~ 910호, 1001 ~ 1010호)
	제6반	비하동	362(효성A 302동 1101 ~ 1110호, 1201 ~ 1210호, 1301 ~ 1310호, 1401 ~ 1410호, 1501 ~ 1510호)
	제7반	비하동	362(효성A 303동 101 ~ 111호, 201 ~ 211호, 301 ~ 311호, 401 ~ 411호, 501 ~ 511호)
	제8반	비하동	362(효성A 303동 601 ~ 611호, 701 ~ 711호, 801 ~ 811호, 901 ~ 911호, 1001 ~ 1011)
	제9반	비하동	362(효성A 303동 1101 ~ 1111호, 1201 ~ 1211호, 1301 ~ 1311호, 1401 ~ 1411호, 1501 ~ 1511호)
제42통	제1반	비하동	125 (계룡리슈빌A 101동 101 ~ 1501호, 102 ~ 1502호, 103 ~ 1503호)
	제2반	비하동	125 (계룡리슈빌A 101동 104 ~ 1504호, 105 ~ 1505호, 106 ~ 1506호)
	제3반	비하동	125 (계룡리슈빌A 102동)
	제4반	비하동	125 (계룡리슈빌A 103동)
제43통	제1반	비하동	295의40 (대주피오레아파트 101동)
	제2반	비하동	295의40 (대주피오레아파트 102동)
	제3반	비하동	295의40 (대주피오레아파트 103동)
	제4반	비하동	367 (대주피오레아파트 201동)
	제5반	비하동	367 (대주피오레아파트 202동)
	제6반	비하동	367 (대주피오레아파트 203동), 367의1
	제7반	비하동	367 (대주피오레아파트 204동)
제44통	제1반	비하동	809 (계룡리슈빌아파트 201동)
	제2반	비하동	809 (계룡리슈빌아파트 202동)
	제3반	비하동	809 (계룡리슈빌아파트 203동)
	제4반	비하동	809 (계룡리슈빌아파트 204동)
	제5반	비하동	809 (계룡리슈빌아파트 205동)
	제6반	비하동	809 (계룡리슈빌아파트 206동)
제45통	제1반	비하동	809 (계룡리슈빌아파트 207동)
	제2반	비하동	809 (계룡리슈빌아파트 208동)
	제3반	비하동	809 (계룡리슈빌아파트 209동)
	제4반	비하동	809 (계룡리슈빌아파트 210동)

			제5반	비하동	809 (계룡리슈빌아파트 211동)
			제6반	비하동	809 (계룡리슈빌아파트 212동)
		제46통	제1반	비하동	125 (계룡리슈빌A 104동 101 ~ 1501호, 102 ~ 1502호, 103 ~ 1503호)
			제2반	비하동	125 (계룡리슈빌A 104동 104 ~ 1504호, 105 ~ 1505호, 106 ~ 1506호)
			제3반	비하동	125 (계룡리슈빌A 105동)
			제4반	비하동	125 (계룡리슈빌A 106동)
강서제2동	1	제1통	제1반	신성동	90, 92, 116, 119
			제2반	신성동	19, 18의1, 18의3, 68의7, 99의5, 114, 121,
			제3반	신성동	53, 167, 178의7, 179, 181의1, 182의5
		제2통	제1반	평동	15, 16, 20, 22, 24, 25, 77의5, 185의1, 186, 208
			제2반	평동	13, 17, 18, 17의2, 73의2, 90, 185
			제3반	평동	9, 13, 68, 69, 69의2, 78, 187, 190의4
			제4반	평동	8, 70, 72, 74, 75, 76, 77, 180, 206,
			제5반	평동	10, 55, 60, 189, 190, 190의3, 190의4, 207
		제3통	제1반	신대동	65, 149의4, 269, 303, 314, 376, 390, 392, 376의2, 361의1, 396, 396의2, 399, 343, 356, 391, 409의1, 416, 410,
			제2반	신대동	350, 358, 350의3, 354의13, 370의6, 375, 394, 395, 404, 404의1, 407, 415, 419, 419의1, 421, 425, 406, 428,
			제3반	신대동	19, 177, 225, 398, 398의3, 400, 411의1, 427, 426, 453, 453의2, 454의6
		제4통	제1반	신대동	241의3, 251, 261의2, 263, 264, 265, 265의5, 294, 295
			제2반	신대동	293, 294의 2, 297의 2, 299, 411
			제3반	신대동	243, 244, 245, 249의1, 252, 252의1, 252의2, 257, 257의2, 264의3, 291, 294,
		제5통	제1반	남촌동	23, 30, 32, 55, 56의1, 58, 59, 83의2
			제2반	남촌동	30, 55, 56, 58, 59, 60, 176
		제6통	제1반	내곡동	12의2, 2의1, 18, 20, 27, 18의2, 34, 37, 38, 43, 46, 46의1, 47, 45의1, 56, 56의2, 62, 62의3, 96
			제2반	내곡동	3, 18의2, 20, 30, 30의2, 38, 41, 42, 42의2, 47의2, 62의2, 62의4, 78, 100
			제3반	내곡동	26의3, 27, 28, 30, 27의3, 34의1, 34의4, 35, 38, 35의1, 44, 47, 67
			제4반	내곡동	2, 2의1, 58, 61, 95, 96, 96의4, 96의9, 97의2, 98, 99, 100, 101, 101의8, 114, 126, 126의1, 245
		제7통	제1반	상신동	산10, 19, 24, 40, 41, 42, 42의1, 42의2, 42의3, 44, 45,
			제2반	상신동	40, 42, 42의9, 44, 44의1
			제3반	상신동	29, 42, 44, 44의1, 45, 52, 53, 54
		제8통	제1반	원평동	4의1, 468, 468의6, 497, 505, 505의1, 508, 525, 233, 234, 535, 537, 538, 490, 491, 491의7, 54의1
			제2반	원평동	253, 450, 491, 491의2, 491의6, 497, 486의1, 503, 505, 505의6, 513, 534, 535
			제3반	원평동	6, 491, 491의5, 491의6, 505, 505의8, 519, 520, 521의2, 521의3, 523, 525, 533, 535, 537
		제9통	제1반	원평동	105, 212, 345, 346, 350, 375, 488, 520, 525, 523, 373, 583, 584, 573, 576, 577, 579, 579의2, 581, 584
			제2반	원평동	105, 119, 50, 375, 505의8, 568, 571, 572, 577, 578, 581, 582, 583, 568의5, 520
		제10통	제1반	문암동	72의2, 72의3, 37, 12, 25, 74, 79의1, 80, 89의1, 102, 166, 168, 171, 167, 167의4, 180, 186, 522
			제2반	문암동	72의9, 74, 78, 79, 79의3, 84, 89의2, 167, 187의2
			제3반	문암동	72, 72의1, 72의2, 72의4, 73, 76, 78, 79, 79의1, 79의3, 79의11, 80, 84, 89, 81의1, 167, 167의1, 70
		제11통	제1반	송절동	39의1, 36의2, 37, 64, 산100, 105, 123, 143, 136, 155의1, 115의2, 155의3, 156, 159, 250, 293, 315의1, 316의4, 367, 369, 369의2, 369의3, 379
			제2반	송절동	293, 293의1, 307, 308, 311, 312, 312의2, 312의3, 312의5, 315, 316, 317
			제3반	송절동	89, 89의1, 508, 508의4, 513의1, 513의3
		제12통	제1반	송절동	37, 62의3, 64, 67, 77, 83의2, 141, 142, 156, 158, 255, 370, 376
			제2반	송절동	12, 135, 143의1, 255, 208, 361, 369, 370, 376
			제3반	송절동	90, 95의1, 142, 143, 136, 143의1, 155, 361, 376

				제13통	제1반	화계동	3, 3의14, 6의1, 7, 146, 147, 147의1,147의3, 147의4, 148, 149, 156, 158									
				제2반	화계동	3, 3의13, 3의14, 3의15, 5, 5의16,6의1, 7, 7의3, 145										
				제3반	화계동	3, 3의6, 3의10, 17, 17의1, 19, 19의2, 20의1										
				제4반	화계동	22, 23, 23의2, 25의2, 산25의6,29의5, 53의1, 50의3, 69, 70, 71의1, 72의1, 72, 73										
				제14통	제1반	외북동	32, 32의2, 33, 34, 38, 53의6									
					제2반	외북동	52의2, 56, 121의9, 128의1, 290									
					제3반	외북동	32, 51, 53, 55, 56, 55의5, 56의1									
					제4반	외북동	51, 52, 53, 55, 55의6, 56, 56의1, 53의1,53의3, 66, 125,									
					제5반	외북동	47의4, 47의8, 47의9, 47의14, 47의15, 47의17, 47의18, 47의22, 47의23, 49의1, 49의3 ~ 49의5, 49의8, 121의9,									
					제6반	외북동	45, 46, 47의1 ~ 47의3, 47의5, 47의6,47의10, 47의16, 48, 50의1, 121의7,128, 128의2, 135의2, 137의1, 157, 158의1 ~ 158의4									
				제15통	제1반	향정동	공업단지3공단6,7,8,9,15,16,17,18,24,25,26,33,34브럭, 공업단지 4공단 1,2,3브럭50(하이닉스반도체 남자기숙사 A동101 ~ 108호, 201 ~ 233호)									
					제2반	향정동	50(하이닉스반도체 남자기숙사 A동 301 ~ 333호, 401 ~ 433호, 501 ~ 532호)									
					제3반	향정동	1(하이닉스반도체 남자기숙사 B동 101 ~ 112호, 201 ~ 238호)									
					제4반	향정동	301 ~ 338호, 401 ~ 438호)									
					제5반	향정동	501 ~ 538호, 601 ~ 638호)									
					제6반	향정동	701 ~ 738호, 801 ~ 838호)									
					제7반	향정동	901 ~ 938호, 1001 ~ 1038호)									
				제16통	제1반	향정동	125 하이닉스반도체 A동 여자기숙사 201호~254호, 301호~354호, 401호~454호									
					제2반	향정동	125 하이닉스반도체 A동 여자기숙사 501호~554호,601호~654호, 701호~754호									
					제3반	향정동	125 하이닉스반도체 A동 여자기숙사 801~854호,901호~954호, 1001호~1054호									
					제4반	향정동	125 하이닉스반도체 B동 여자기숙사 201~224호,301호~324호, 401호~424호, 501호~524호, 601호~624호,701호~724호									
					제5반	향정동	125 하이닉스반도체 B동 여자기숙사 801호~824호,901호~924호, 1001호~1024호, 1101호~1124호, 1201호									
				청원구	소 계	5	152	755								
											우암동	1	제1통	제1반	우암동	5의10(진원신세대A101호 ~ 111호,201호 ~ 211호,301호 ~ 311호),5의10(진원신세대A401호 ~ 411호,501호 ~ 511호,601호 ~ 611호),산16의3, 산17의3, 산18, 산19의3, 4의1 ~ 4의2, 5의7, 5의12, 6의1 ~ 6의2, 6의5,12의1 ~ 12의5, 20의3, 20의7, 20의16, 20의21, 20의26, 26의3, 26의4, 26의8, 27의14 ~ 27의16, 29의1 ~ 29의7, 29의14 ~ 29의16, 29의23, 29의26 ~ 29의28, 29의30, 30의2 ~ 30의4, 31의1 ~ 31의3, 31의5 ~ 31의7, 32의1 ~ 32의8, 32의10 ~ 32의13, 32의15 ~ 32의17, 32의19, 32의20, 33의1 ~ 33의3, 34, 39의2 ~ 39의4, 39의6, 39의8 ~ 39의9, 39의11,303의9 ~ 303의10, 303의62 ~ 303의65, 303의79, 303의82
											제2반	우암동	17의3, 17의4, 19,19의3 ~ 19의5, 20의1, 20의2,20의4 ~ 20의6, 20의8 ~ 20의15,20의17 ~ 20의20, 20의22, 20의25, 20의27,20의28,21의2 ~ 20의4,21의13 ~ 21의16, 21의19,21의21, 21의23, 21의29 ~ 21의32, 21의34, 21의			
제3반	우암동	21의26, 21의36, 21의37, 24의28, 24의88, 26의2, 27의2, 27의3 ~ 27의8,27의10, 27의13, 27의14, 27의16, 28의1 ~ 28의3, 29의8 ~ 29의13, 29의17, 29의18, 29의20, 29의25, 29의27, 29의34, 29의35, 39의10, 40의2, 40의3, 40의5, 40의6, 40의8, 40의10, 40의13, 40의25, 41의1, 41의2, 43의1, 43의3 ~ 43의8, 45의28, 45의36, 45의46 ~ 45의														
제4반		폐지														
제2통	제1반	우암동	54의1(삼일아파트 가동101호 ~ 505호,마동101호 ~ 302호, 바동101호 ~ 505호)													
	제2반	우암동	54의1(삼일아파트 나동101호 ~ 304호,다동101호 ~ 304호, 라동101호 ~ 302호													

	제3반	우암동	산4-1, 산5, 산7-4, 산8-1, 산8-5, 산9-1, 산14-3, 5의1, 38, 38의1, 44, 45의1, 45의41 ~ 45의43, 50, 50의1, 50의4 ~ 50의7, 50의9, 50의10 ~ 50의15, 50의30, 50의35, 50의47 ~ 50의49, 50의51, 50의56 ~ 50의58, 50의61, 51의1 ~ 51의3, 51의5 ~ 51의10, 51의13, 51의15, 52, 52의2, 52의3, 53, 54, 54의2, 54의5 ~ 54의8, 54의11 ~ 54의15, 54의34, 56, 56의1, 56의2, 57, 57의1 ~ 57의3, 57의5, 303의39, 303의59, 303의80, 303의88, 306의8
	제4반	우암동	48, 48의1, 48의3, 49의1, 49의14 ~ 49의17, 49의27, 49의32 ~ 49의35, 49의39 ~ 41, 50의3, 50의17, 50의18, 50의20, 50의21, 50의23, 50의25, 50의26, 50의28, 50의29, 50의31, 50의33, 50의36, 50의37, 50의39, 50의42, 50의58 ~ 50의60, 147의13, 147의44, 148의16, 303의66, 306의9, 306의10
	제5반		폐지
제3통	제1반	우암동	149의1 ~ 149의17, 149의20, 149의21, 149의25 ~ 149의27, 150의1 ~ 150의8, 150의12, 150의16, 165의1, 165의2, 165의5 ~ 165의9, 165의11, 165의12, 165의14, 165의17 ~ 165의19, 166의2, 166의3, 167의2
	제2반	우암동	45의14, 45의46, 45의47, 45의49, 45의51, 45의52, 48의5, 152의1 ~ 152의4, 153의1, 153의2, 147의10, 154의1, 154의3 ~ 154의9, 154의11, 154의14, 155의2, 155의3, 155의6, 155의7, 164의3 ~ 164의7, 164의10, 164의13, 164의14, 164의16 ~ 164의20, 164의23, 164의26, 307의6
	제3반	우암동	147의1, 147의3 ~ 147의8, 147의13, 147의16, 148의1 ~ 148의10, 148의12, 148의13, 148의16, 151의1 ~ 151의6, 151의10, 303의23, 303의29, 303의31, 303의49, 303의51, 303의52, 303의96
	제4반	우암동	143의1, 143의4 ~ 143의6, 143의8, 143의9, 143의11 ~ 143의13, 144의2, 144의3, 144의5 ~ 144의11, 144의14 ~ 144의24, 144의27, 144의28, 144의30, 144의31, 144의35, 144의37 ~ 144의40, 144의44, 144의45, 144의47, 144의48, 144의50, 144의51 ~ 144의54, 144의62, 144의63, 144의66, 144의68, 144의69, 146의1, 146의4 ~ 146의8, 146의12 ~ 146의14, 146의24, 146의46, 306의2 ~ 306의5
	제5반	우암동	48의7, 48의9, 49의3, 49의4, 49의6, 49의7, 49의8, 49의10 ~ 49의13, 49의18, 49의26, 49의31, 145의1 ~ 145의5, 145의6 ~ 1145의13, 145의15 ~ 145의18, 145의20 ~ 145의25, 145의27 ~ 145의30
	제4통	제1반	우암동
제2반		우암동	163의1, 163의3, 163의5 ~ 163의8, 168, 168의1, 169의1, 169의2, 169의4, 172, 173, 174의1 ~ 174의4, 175, 175의1, 176, 176의1, 177, 178, 180, 180의1, 181, 181의1, 181의2, 182, 183, 183의1, 184의4 ~ 184의8, 185, 185의1, 185의2, 187, 188의1 ~ 188의6, 189의2, 196, 196의1, 197의2 ~ 197의4, 304의23
제3반		우암동	23의9 ~ 23의13, 23의19 ~ 23의22, 24의2, 24의4 ~ 24의6, 165의22 ~ 165의24, 170의3 ~ 170의6, 171, 190의2 ~ 190의4, 191 ~ 194, 195의1 ~ 195의6, 196의1, 204의1, 204의2, 205의1, 206의5 ~ 206의11, 207의1, 207의3 ~ 207의5, 209의3, 209의23, 209의25, 209의26, 304의38
제4반		우암동	17의1, 17의5, 17의6, 18의1, 18의3 ~ 18의6, 18의8 ~ 18의16, 18의19, 18의20, 21의5 ~ 21의12, 21의25, 21의27, 21의31, 21의32, 21의35, 21의37, 22의1, 23, 23의1 ~ 23의5, 23의7, 23의8, 24의1, 24의3, 24의7, 25의1 ~ 25의4, 28의3, 206의1, 206의2, 206의12, 209의17, 209의18, 209의31
제5반		우암동	208의2, 208의4, 208의20, 208의26, 208의28, 209의1, 209의2, 209의4, 209의5, 209의8, 209의11, 209의12, 209의14 ~ 209의16, 209의27, 210의4 ~ 210의14, 209의17, 209의25, 209의29, 209의30, 209의35, 214의6, 217의1, 217의5 ~ 217의8, 217의11 ~ 217의17, 303의97, 303의98, 309의1 ~ 309의3, 309의5
제5통		제1반	우암동
	제2반	우암동	111의13(평화A2동101호 ~ 511호, 3동101호 ~ 502호)

	제3반	우암동	111의1, 111의19, 111의25, 111의28, 111의32, 111의34, 111의36, 111의41, 223의3 ~ 223의5, 223의8, 223의11, 223의19 ~ 223의24, 223의27, 223의33, 223의34, 223의36, 223의40, 223의41, 223의43 ~ 223의47, 224의2, 224의4 ~ 224의6, 224의8, 224의9, 229의6, 303의3, 303
	제4반	우암동	226의3, 226의7 ~ 226의14, 226의18, 226의19, 227의2, 227의4 ~ 227의6, 227의8, 227의15, 228의6, 230의1, 231의4, 231의7, 231의13, 232의5, 232의6, 232의17, 232의23, 232의24, 232의49, 233의4, 233의15, 233의20, 233의31 ~ 233의33, 303의19, 303의70, 303의90, 303의91,
제6통	제1반	우암동	111의3, 111의4, 111의31, 114의1, 115의3, 115의6 ~ 115의10, 116, 116의1 ~ 116의3, 116의5, 116의6, 116의9 ~ 116의15, 116의18, 116의20, 116의21, 116의27, 118의1, 118의18, 118의20, 118의23, 118의24, 118의26 ~ 118의28, 160의3, 162의1, 162의2, 162의6 ~ 162
			111의24, 116의17, 116의22, 116의23, 116의25, 116의26, 118, 118의8, 118의11 ~ 118의17, 118의29 ~ 118의32, 118의35, 121의1, 122, 122의33, 123의41 ~ 123의45, 123의48 ~ 123의50, 123의58 ~ 123의60, 123의66 ~ 123의69, 123의77, 123의83, 158의27, 158의28, 158의37, 158의45, 159의2, 159의4, 159의6 ~ 159의10, 160의7, 160의9, 161, 161의1, 162의5
	제3반	우암동	123의12, 123의14 ~ 123의24, 123의26 ~ 123의31, 123의34, 123의35, 123의53, 123의65, 123의72 ~ 123의76, 123의80 ~ 123의82, 123의84
	제4반	우암동	123의51, 156의10 ~ 156의14, 156의16 ~ 156의22, 156의31, 157의3 ~ 157의11, 158의7 ~ 158의9, 158의11 ~ 158의15, 158의17, 158의26, 158의31, 158의32, 304의4
제7통	제1반	우암동	108의2, 108의5, 109의1, 109의7 ~ 109의10, 110의1, 110의2, 110의4, 110의6 ~ 110의22, 110의25, 110의36, 111의3, 111의9, 111의22, 111의23, 119의1 ~ 119의3, 119의5 ~ 119의7, 119의9, 119의13 ~ 119의19, 120의1, 120의6, 235의12, 235의15, 235의21, 236의3, 236의5, 236의7, 236의8, 236의10 ~ 236의15, 237의1 ~ 237의8, 237의12, 237의13, 303의13, 303의15, 303의41, 303의84 ~ 303의87, 304의
	제2반	우암동	120의8, 120의9, 120의20 ~ 120의26, 120의29 ~ 120의33, 121의14, 121의16, 121의17, 121의22, 121의25, 121의26, 124의6 ~ 124의10, 124의12, 124의13, 124의16, 124의26, 125의7 ~ 125의13, 125의28, 303의36
	제3반	우암동	323의1 ~ 323의3, 323의5, 323의7 ~ 323의9, 323의12, 323의13, 323의17 ~ 323의27, 323의29 ~ 323의31, 323의33, 323의34, 349의1, 349의3 ~ 349의11
	제4반	우암동	348의1 ~ 348의6, 348의11 ~ 348의13, 348의15 ~ 348의21, 348의23 ~ 348의27, 348의29, 348의31, 348의32, 348의35, 348의38, 348의41, 348의45
	제5반	우암동	324의1 ~ 324의6, 324의8 ~ 324의27, 324의29, 348의7 ~ 348의10, 348의30
제8통	제1반	우암동	120의2, 120의3, 120의5, 120의12 ~ 120의16, 120의19, 120의27, 120의28, 121의19, 124의18, 124의19, 124의21 ~ 124의23, 124의25, 125의15, 125의16, 125의19, 125의21 ~ 125의23, 125의29, 126의3, 126의10, 127의2, 131의1, 134의5, 136의3, 303의27, 303의34, 303의73, 310의3, 310의4, 310의6, 310의7
	제2반	우암동	325의1 ~ 325의13, 325의16, 325의19, 325의20, 325의28 ~ 325의31, 325의34, 325의35
	제3반	우암동	343의1, 343의5 ~ 343의11, 343의16 ~ 343의18, 343의20 ~ 343의22, 344의1, 344의4, 344의5, 344의10 ~ 344의12, 344의15 ~ 344의20, 1202의2
	제4반	우암동	128의4, 129의7, 129의8, 129의14, 129의16, 129의17, 129의19, 130의2, 130의7, 130의9, 131의3 ~ 131의9, 131의12, 132의2, 132의5, 132의6, 132의8, 132의9, 326의1 ~ 326의14, 326의16, 326의18 ~ 326의30
제9통	제1반	우암동	328의12(세원임대A 101호 ~ 519호)
	제2반	우암동	328의12(세원임대A 601호 ~ 919호)
	제3반	우암동	328의12(세원임대A 1001호 ~ 1319호)
	제4반	우암동	327의1 ~ 327의7, 327의9 ~ 327의11, 327의14 ~ 327의22, 327의27, 328의1 ~ 328의3, 328의5 ~ 328의10, 328의13, 328의14, 329의45 ~ 329의58, 329의70, 329의72 ~ 329의
제10통	제1반	우암동	332의9 ~ 332의15, 332의19, 332의32 ~ 332의34, 332의51 ~ 332의67
	제2반	우암동	332의1, 332의2, 332의4, 332의17, 332의18, 332의20 ~ 332의30, 332의35 ~ 332의45, 332의47 ~ 332의49

	제3반	우암동	329의1, 329의17 ~ 329의21, 329의23, 329의24, 329의26 ~ 329의43, 329의60 ~ 329의63, 329의65 ~ 329의69
	제4반	우암동	330의1, 330의2, 330의4 ~ 330의12, 330의14 ~ 330의20, 330의22 ~ 330의26, 341의1 ~ 341의7, 341의9 ~ 341의18, 341의20, 341의23 ~ 341의27, 341의29 ~ 341의31, 345
	제5반	우암동	342의1 ~ 342의7, 342의9 ~ 342의15, 342의17 ~ 342의27
제11통	제1반	우암동	347의1 ~ 347의3, 347의5 ~ 347의10, 347의13 ~ 347의15, 347의17, 347의18, 350의1, 350의2, 350의4 ~ 350의16, 350의20 ~ 350의24
	제2반	우암동	337의1, 337의2, 337의4, 337의6 ~ 337의28, 337의30, 337의31, 337의34 ~ 337의41, 337의44 ~ 337의49
	제3반	우암동	338의1, 338의3 ~ 338의16, 338의20, 338의21, 338의23 ~ 338의31, 338의34, 338의36, 338의38, 338의39
	제4반	우암동	346의1 ~ 346의3, 346의5 ~ 346의67
제12통	제1반	우암동	335의1 ~ 335의12, 335의14 ~ 335의20, 335의22, 335의24 ~ 335의29, 335의32 ~ 335의40
	제2반	우암동	261의2, 261의4, 261의19, 261의20, 261의25, 261의223 ~ 261의225, 268의4, 268의8 ~ 268의11, 268의14, 292의4, 293의2, 293의4, 293의7, 294의5, 294의7 ~ 294의9, 294의12, 294의17, 294의20 ~ 294의23, 294의25, 294의28, 294의32, 294의34, 294의37 ~ 294의40, 294의42 ~ 294의47, 294의49 ~ 294의58, 295의1, 295의4 ~ 295의12, 295의15, 295의17, 295의19 ~ 295의26, 295의30, 295의31, 295의33, 296의2 ~ 296의5, 296의8, 296의9, 296의28, 302의2 ~ 302의4, 302의6, 312의2 ~ 312의6, 312의9, 312의12, 312의15, 312의17 ~ 312의21, 333의1 ~ 333의13, 333
	제3반	우암동	331의1 ~ 331의11, 331의13, 331의14, 331의16 ~ 331의19, 331의21 ~ 331의29, 331의31 ~ 331의34
	제4반	우암동	340의1 ~ 340의21, 340의23 ~ 340의26,
	제5반	우암동	334의1, 334의3 ~ 334의14, 339의1 ~ 339의8, 339의13, 339의14, 339의16 ~ 339의22
제13통	제1반	우암동	396의1 ~ 396의6, 396의8 ~ 396의19, 396의21 ~ 396의23, 396의25 ~ 396의27, 396의33, 396의34, 744의1, 744의7, 744의8, 746의2, 746의3, 746의6 ~ 746의8, 764의4 ~ 764의6, 764의8, 766의4, 766의6, 767의5, 767의7, 771, 773의1, 776의1, 776의2, 784의2, 786의2, 786의5, 787의3, 787의4, 788의2, 788의4, 788의8, 789의4 ~ 789의6, 789의11, 790의5, 792의8, 792의15, 807의5 ~ 807의7
	제2반	우암동	395의1 ~ 395의14, 395의16, 395의17
	제3반	우암동	391의1, 391의2, 391의4 ~ 391의9, 391의11 ~ 391의15, 391의17 ~ 391의25, 394의1 ~ 394의11
	제4반	우암동	336의1 ~ 336의6, 336의8 ~ 336의13, 336의15 ~ 336의23, 336의25 ~ 336의27, 336의29 ~ 336의31, 336의33
	제5반	우암동	261의48 ~ 261의51, 261의88, 261의90, 261의93 ~ 261의97, 261의115 ~ 261의122, 392의1 ~ 392의5, 392의7, 392의10, 393의1, 393의3 ~ 393의9, 393의11, 393의12, 393의14 ~ 393의16, 631, 631의1, 631의2, 1191, 1192의5, 1192의22, 1193의18, 1193의20, 1193의22
제14통	제1반	우암동	261의43 ~ 261의45, 261의63 ~ 261의77, 390의1 ~ 390의6, 390의8, 390의10 ~ 390의19, 390의21 ~ 390의23, 390의25 ~ 390의27, 1192의1, 1192의11, 1192의13, 1193의
	제2반	우암동	382의1 ~ 382의11, 382의13 ~ 382의20, 382의23 ~ 382의24, 382의27 ~ 382의28, 382의31 ~ 382의33, 382의35 ~ 382의37, 382의39 ~ 382의42, 382의46, 382의48 ~ 382의
	제3반	우암동	352의1, 352의28, 352의31 ~ 352의37, 352의40, 352의45, 352의46
	제4반	우암동	352의3 ~ 352의20, 352의22 ~ 352의27, 352의30, 352의41, 352의43, 352의44
	제5반	우암동	261의46, 261의79 ~ 261의88, 351의1 ~ 351의5, 351의7 ~ 351의16, 351의19 ~ 351의22, 351의24 ~ 351의27, 351의29, 351의30, 351의32 ~ 351의36, 351의38, 351의44, 351
제15통	제1반	우암동	398의1 ~ 398의4, 398의6 ~ 398의14, 398의16, 398의17, 398의19 ~ 398의21, 398의21, 398의23, 398의26 ~ 398의28, 398의30, 398의31, 792의6, 792의14, 802의4, 802의5, 803의4, 803의5, 803의8 ~ 803의17, 807의3, 807의4, 807의8 ~ 807의10, 816의3 ~ 816의5, 816의7, 818의2, 818의3, 818의5, 818의6, 818의10, 823의2, 823의3, 824의4, 825의6, 836의4, 836의6, 836의7, 837의2, 838의2
	제2반	우암동	387의1, 387의2, 387의4 ~ 387의7, 387의9 ~ 387의12, 387의14, 387의15, 387의17 ~ 387의20, 387의22 ~ 387의24, 387의28, 387의30 ~ 387의43

	제3반	우암동	383의1 ~ 383의4,383의6 ~ 383의14,383의16 ~ 383의32,383의34 ~ 383의36
	제4반	우암동	388의1 ~ 388의14,388의16 ~ 388의19, 388의21 ~ 388의25, 388의27 ~ 388의29, 388의32, 388의34 ~ 388의36.
	제5반	우암동	397의1 ~ 397의3,397의5 ~ 397의14, 397의16,397의18 ~ 397의21, 397의24,397의26, 397의27
제16통	제1반	우암동	385의1,385의6 ~ 385의8,385의13 ~ 385의19,385의25 ~ 385의27, 385의29,400의1 ~ 400의8, 400의10 ~ 400의19, 400의30
	제2반	우암동	384의1 ~ 384의22,385의2 ~ 385의5,385의9 ~ 385의12, 385의20 ~ 385의24,385의30 ~ 385의32
	제3반	우암동	261의27 ~ 261의28, 261의52 ~ 261의62, 381의1 ~ 381의3, 381의5, 381의9 ~ 381의12, 381의14 ~ 381의21, 381의24 ~ 381의29
	제4반	우암동	386의1 ~ 386의3,386의5 ~ 386의10,386의12 ~ 386의22, 386의24 ~ 386의25,386의27 ~ 386의38
	제5반	우암동	399의1 ~ 399의7,399의9 ~ 399의20,399의22 ~ 399의23, 399의25 ~ 399의30
	제17통	제1반	우암동
제2반		우암동	402의1(우정A 101호 ~ 206호), 402의4, 402의6, 402의7, 402의9, 402의11 ~ 402의17,402의19 ~ 402의31
제3반		우암동	403의1 ~ 403의3, 403의6 ~ 403의14, 403의16 ~ 403의18, 403의21, 403의23, 403의24, 403의27 ~ 403의32, 403의34 ~ 403의38, 403의40
제4반		우암동	404의1 ~ 404의2, 404의4 ~ 404의12, 404의14 ~ 404의20, 404의22, 404의24, 404의26
제5반		우암동	401의1, 401의2, 401의5, 401의7 ~ 401의9, 401의12, 401의13, 401의16 ~ 401의20, 401의22 ~ 401의23, 401의25 ~ 401의29, 401의32
제18통	제1반	우암동	410의1 ~ 410의6,410의8 ~ 410의13,410의15 ~ 410의17, 410의19, 410의21 ~ 410의22, 410의24, 410의26 ~ 410의29, 410의31 ~ 410의35, 410의37 ~ 410의39, 410의41 ~ 409의1 ~ 409의3, 409의5 ~ 409의10, 409의12 ~ 409의17, 409의20 ~ 409의21, 409의23 ~ 409의25, 409의28 ~ 409의32, 409의34, 409의36 ~ 409의42, 409의44
	제2반	우암동	409의1 ~ 409의3, 409의5 ~ 409의10, 409의12 ~ 409의17, 409의20 ~ 409의21, 409의23 ~ 409의25, 409의28 ~ 409의32, 409의34, 409의36 ~ 409의42, 409의44
	제3반	우암동	405의1 ~ 405의11, 405의13 ~ 405의15, 405의17, 405의21, 405의21, 405의23, 405의24, 405의26, 405의27, 405의29, 405의31
	제4반	우암동	406의1 ~ 406의3, 406의5, 406의7 ~ 406의11, 406의13, 406의14, 406의17, 406의20 ~ 406의33, 408의1 ~ 408의5, 408의7 ~ 408의11
	제5반	우암동	407의1 ~ 407의10,407의12 ~ 407의14,407의16 ~ 407의20, 407의22 ~ 407의24, 407의26, 407의28 ~ 407의31, 407의33, 407의34
제19통	제1반	우암동	411의3(목화A1동 101호 ~ 506호, 2동 101호 ~ 506호), 411의11, 411의12, 411의14
	제2반	우암동	261의10, 411의3, 411의4,412의1 ~ 412의7, 412의9, 412의12, 412의13,412의15 ~ 412의21, 412의23, 412의24, 412의31, 412의33 ~ 412의36
	제3반	우암동	411의1 ~ 411의2, 411의7 ~ 411의9, 411의15 ~ 411의27,411의29 ~ 411의31, 411의34 ~ 411의35, 412의10, 412의25 ~ 412의30
	제4반	우암동	792의4, 792의12,792의13,803의3, 803의8, 803의10, 838의2, 843의3, 843의7,843의10, 844의3 ~ 844의8, 844의10, 844의11, 844의13, 852의1, 854의2, 856의1, 856의3, 870의7 ~ 870의10, 870의12 ~ 870의14, 927의1, 927의4, 927의9, 927의10, 927의14, 928의6, 930의3 ~ 930의6, 930의9, 930의19, 931의3, 939의1, 940의1, 943의5 ~ 943의12, 945의4, 1182의1, 1182의2, 1183의5, 1187의1, 1188의1, 1188의3 ~ 1188의7, 1188의9, 1118의10, 1189
제20통	제1반	우암동	261의34(문화A A동 101호 ~ 503호,A동 104호 ~ 506호, B동101호 ~ 505호, B동105호 ~ 508호)
	제2반	우암동	261의35, 261의37, 261의123 ~ 261의129, 261의131 ~ 261의138, 261의175 ~ 261의181, 261의185 ~ 261의197
	제3반	우암동	261의111, 261의140 ~ 261의152, 261의154 ~ 261의165, 261의199 ~ 261의210
	제4반	우암동	261의30, 261의112, 261의 113, 261의139, 261의172, 261의173, 261의211 ~ 261의218, 373의1 ~ 373의8, 373의10 ~ 373의13, 373의15, 373의18, 373의19, 1067의1.
	제5반	우암동	261의36, 261의38, 261의100 ~ 261의104, 261의106 ~ 261의110, 261의166 ~ 261의170, 261의219, 261의220, 379의1 ~ 379의17, 561,561의2, 564, 564의1, 564의3.
제21통	제1반	우암동	375(우성상가A 101호 ~ 118호, 210호 ~ 218호,301호 ~ 318호)



			제2반	우암동	375의1(평화상가A 1동 101호 ~ 505호, 1동 106호 ~ 511호, 2동 101호 ~ 505호, 2동 106호 ~ 511호, 3동 101호 ~ 502호)
			제3반	우암동	370의1, 370의2, 370의7, 370의9 ~ 370의18, 370의20 ~ 370의25, 370의29, 370의30, 372의1, 372의3 ~ 372의10, 372의12 ~ 372의17, 374의1 ~ 374의4, 374의7 ~ 374의10, 374의10, 374의14, 374의17, 374의19, 374의20, 374의21, 374
			제4반	우암동	368의1, 368의2, 368의7 ~ 368의10, 368의12 ~ 368의21, 369의1, 369의2, 369의4 ~ 369의6, 369의8 ~ 369의14, 369의16 ~ 369의20, 371의1 ~ 371의13, 371의17 ~ 371의24, 371의26 ~ 371의28
		제22통	제1반	우암동	376의1, 376의2, 376의13, 376의14, 376의18, 376의3(우암빌라)
			제2반	우암동	376의5, 376의6, 376의10, 376의15 ~ 376의17, 376의19 ~ 376의22, 377의1 ~ 377의15
			제3반	우암동	365의1 ~ 365의25
			제4반	우암동	366의1, 366의2, 366의4, 366의5, 366의6, 366의8 ~ 366의18, 366의20 ~ 366의23, 366의25 ~ 366의27
			제5반	우암동	367의1, 367의2, 367의4, 367의5, 367의6, 367의9 ~ 367의19, 367의21 ~ 367의35, 367의37, 367의38
		제23반	제1반	우암동	380의1 ~ 380의7, 380의9 ~ 380의13, 380의18 ~ 380의26, 380의29 ~ 380의31
			제2반	우암동	362의1 ~ 362의4, 362의8 ~ 362의26, 378의1 ~ 378의7, 378의10 ~ 378의16, 378의19
			제3반	우암동	363의1 ~ 363의8, 363의10, 363의12, 363의13, 363의16 ~ 363의21, 363의24 ~ 363의27, 363의29 ~ 363의36
			제4반	우암동	364의1 ~ 364의8, 364의11 ~ 364의14, 364의16 ~ 364의28
			제5반	우암동	361의1 ~ 361의4, 361의6 ~ 361의11, 361의13 ~ 361의21
		제24통	제1반	우암동	359의1 ~ 359의15, 359의18 ~ 359의21, 359의24 ~ 359의27, 358의1, 358의2, 358의4, 358의5, 358의14, 358의15, 358의21, 358의22, 358의24
			제2반	우암동	357의1 ~ 357의22, 357의24 ~ 357의26, 357의28, 360
			제3반	우암동	356의1 ~ 356의20, 356의24 ~ 356의30, 356의32, 356의35 ~ 356의39
			제4반	우암동	321의1, 321의3, 321의10, 321의11, 321의12, 321의14, 321의15, 321의16, 321의20, 321의23, 321의26 ~ 321의31, 321의36, 321의37
			제5반	우암동	231의2, 231의3, 231의6, 231의14, 231의15, 232의2, 232의8 ~ 232의12, 232의18, 232의19, 232의22, 233의3, 233의5, 233의6, 233의11, 233의12, 233의18, 233의21 ~ 233의28, 233의37, 233의41, 233의42, 233의44 ~ 233의47, 234의1, 234의2, 234의5, 234의7 ~ 234의10, 234의12, 235의1, 235의3 ~ 235의7, 235의17, 235의18, 235의22, 236의1, 236의19, 293의17, 303의5, 303의12, 303의23, 303의37, 303의39, 303의40, 303의72, 303의92, 303의93, 303의94, 303의99, 303의100, 321의2, 321의4 ~ 321의8, 321의17, 321의24, 321의25, 321의32, 321의35, 321의38, 322의1 ~ 322의3, 322의9, 322의10
		제25통	제1반	우암동	353의2(덕일한마음A 101동)
			제2반	우암동	353의2(덕일한마음A 102동)
			제3반	우암동	353의1, 353-2(덕일한마음A 103동 1층 ~ 3층), 353의5 ~ 353의12, 353의15, 353의16, 353의18, 354의10, 354의11, 354의13, 354의14, 354의16 ~ 354의18, 354의21 ~ 354의23, 354의27 ~ 354의29, 1200의9
			제4반	우암동	353의2(덕일한마음A 103동 4층 ~ 9층)
			제5반	우암동	353의2(덕일한마음A 103동 10층 ~ 15층)
내덕제1동	1	제1통	제1반	내덕동	218의2 ~ 3, 218의9 ~ 11, 218의15 ~ 16, 219의2, 219의8 ~ 9, 219의14 ~ 15, 219의17, 225의1 ~ 2, 226의6 ~ 10, 226의12 ~ 15, 226의18 ~ 31, 227의3, 227의22, 273의5, 275의10 ~ 17, 275의19, 275의21 ~ 22, 276의5 ~ 6, 276의9, 276의11, 277의3 ~ 4, 281의1 ~ 2
			제2반	내덕동	280의1 ~ 2, 280의4, 279, 279의1, 272의1 ~ 11, 272의14 ~ 19, 272의21 ~ 26, 272의32, 272의34, 272의37 ~ 39, 272의41, 278의1, 278의4, 284의7, 813의11, 813의13, 822의3, 822의5, 822의12 ~ 14, 822의16
			제3반	내덕동	271의1 ~ 4, 271의7 ~ 9, 272의40, 272의42, 269의15 ~ 16, 269의19, 269의23 ~ 25, 269의28 ~ 29, 269의31 ~ 33, 269의34 ~ 36, 269의39, 269의44, 284의3 ~ 4, 284의10, 285의4 ~ 5, 285의8, 285의10 ~ 11
			제4반	내덕동	294의1 ~ 23, 294의25 ~ 27, 294의31 ~ 34, 294의37 ~ 40, 294의44 ~ 45, 294의49 ~ 54, 294의56, 294의58 ~ 60,

	제5반	내덕동	296의1~2, 296의5~14, 296의17~20, 296의22, 296의24~30
	제6반	내덕동	295의1~38
제2통	제1반	내덕동	194의5~6, 201의2, 213의2~3, 213의8, 213의10, 215의3, 216의2, 216의11~13, 216의22~24, 217의1~6, 217의9~10, 217의17, 218의1, 218의4~7, 218의12, 218의17, 219의12, 226의1, 227의5, 228의12, 813의15, 821의1~3
	제2반	내덕동	292의1~10, 292의16, 293의1, 293의5~9, 293의11~13, 300의1~8, 839의3, 851
	제3반	내덕동	291의1~4, 291의6~11, 291의13~19, 291의21, 291의23~24, 291의27~29, 305의1~4, 305의6~12, 305의15~18, 306의1~3, 839의1, 840
	제4반	내덕동	304의1~34
제3통	제1반	내덕동	297의1~4, 297의6, 297의8~12, 297의14, 297의16~18, 298의1~7, 298의9, 298의11~13, 298의15~18, 298의20~24, 845
	제2반	내덕동	299의1~14, 299의16~20, 299의21~27
	제3반	내덕동	301의1~5, 301의6, 301의8~12, 301의14, 301의16, 301의18, 301의20~26, 301의28~41, 301의44
	제4반	내덕동	302의4(세원발리지)
	제5반	내덕동	302의1, 302의3, 302의5~21
	제6반	내덕동	303의1~3, 303의6~7, 303의10~20, 303의22, 303의24~31, 303의34~37
제4통	제1반	내덕동	175의6~14, 307의1~3, 307의5~8, 308의1~3, 308의5, 308의7, 309의1~2, 310의1, 310의5, 316의1, 316의4~6, 316의7~8, 316의13, 317의2, 317의5~9, 317의15~16, 318의1, 318의4, 319의3~4, 319의15~21, 319의23, 319의25, 321의2, 322, 322의2, 322의5, 322의8, 354, 577의4, 580의3~4, 620의1, 620의3, 624의1, 624의3, 817의13, 828의51, 828의61, 831의4~5, 841, 842, 843
	제2반	내덕동	174의6, 174의9~10, 175의1, 175의5, 175의28, 177의3, 177의5, 177의8, 179의4~5, 179의7~11, 179의18~19, 182의1, 183의1, 290의1~9, 319의1, 319의5~6, 319의8~14, 319의25~27
	제3반	내덕동	173의3, 173의5~6, 173의27~29, 173의34~38, 173의44~54, 173의91~92, 173의135~136, 173의141, 173의145, 174의1~5, 174의7~8, 320의1, 320의3~9, 320의11~15, 320의17~21, 322의9~12, 322의13~17
	제4반	내덕동	173의9, 173의30, 173의32~33, 173의39~43, 173의55~61, 173의66, 173의80, 173의82~90, 173의93, 173의96, 173의99~101, 173의125, 173의140, 173의142, 322의6~7, 322의65, 322의67~70, 344의68~69, 352의4,
제5통	제1반	내덕동	344의4~7, 344의34, 344의36, 344의53, 344의54, 344의65~66, 371의1, 371의4, 372의2, 372의4, 372의7, 373의1~3, 373의5, 373의7~17, 374, 375의1, 376의1~3, 376의10, 827의4, 852의1~2, 825, 산70의3
	제2반	내덕동	344의18, 344의34~35, 344의29, 344의45, 357의23~25, 357의29, 363의2, 363의7~9, 363의13, 365, 366의1~5, 367의1~8, 368의1~5, 370의1~2, 370의4~5, 370의7~8, 370의12~13, 370의15, 372의3, 372의5, 377의46, 866의1825의1
	제3반	내덕동	344의9, 344의19~20, 344의22~23, 344의27~30, 344의36~43, 344의45~48, 344의51, 344의72, 357의3~7, 357의9~14, 357의18~22, 357의26~28, 357의30~39, 357의42~43, 370의1, 370의3, 370의10
	제4반	내덕동	344의11, 344의13~17, 344의24~25, 344의49, 357의46, 361의1~7, 361의9~12, 361의14, 361의16~18, 362의2~4, 362의5~9, 363의1, 363의3~5, 547, 548, 549의3, 550의1~2, 550의4, 551, 552, 552의5, 552의8~9, 553, 553의4~7, 554의1~2, 554의4~7, 555, 556, 558, 558의1, 558의7, 566, 557의1~6, 565의24, 567의1~3, 568의1, 568의7, 568의11, 569의1~3, 569의6~8, 570의4~6, 570의8, 570의11~13, 570의19~20, 571의3, 828의
제6통	제1반	내덕동	557의7, 560의1~7, 561, 563의1~4, 564의1~3, 565의1, 565의3~5, 565의7, 565의11~12, 565의14, 565의16~17, 565의19, 565의21~23, 565의25~32, 565의35~36, 565의42, 565의44~45, 570의1, 572의3~4, 573의2~8, 574의1~2, 574의6~7, 574의9, 574의13, 778의5, 788의10, 788의103, 788의108~110, 826, 828의6, 828의26, 828의37, 828의41~46, 828의48~49, 828의60

	제2반	내덕동	565의43, 576의3, 576의6~7, 575의12~13, 577의1~3, 581의1, 581의2~6, 581의16, 581의24~25, 582의2, 582의47~48, 583의1~3, 583의5, 583의7, 583의9, 583의11~14, 583의16~17, 583의23~24, 583의29, 583의32~34, 583의36, 583의39, 584의3~4, 584의11~12, 584의14~19, 620의8, 828의38~39, 828의62, 828의71~72
	제3반	내덕동	574의4~5, 574의8, 574의10~12, 574의14~15, 574의17, 575의1, 575의2, 575의4~5, 575의7~11, 576의1~2, 582의1~11, 582의13~15, 582의18~20, 582의23~29, 583의28, 582의31~32, 582의36, 582의38~40, 582의42~43, 582의49, 582의52, 582의54, 582의56~57, 588의1, 588의3~8, 589의1~2, 589의5, 589의8~9, 589의15~16, 259의19, 788의9, 788의49, 788의97~98, 788의100~101, 788의117, 788의120
	제4반	내덕동	582의16~17, 582의22, 582의35~36, 582의44~45, 582의50~51, 582의53, 582의60, 582의62, 583의6~22, 584의6~8, 589의3~4, 589의6~7, 589의10~12, 589의17, 589의22~24, 589의27, 828의55, 828의59
제7통	제1반	내덕동	589의13, 589의20, 590의2~3, 590의12~20, 609의1, 609의6, 609의10~13, 609의19~23, 609의38~39, 609의42, 609의47, 609의49, 609의51~52, 609의58, 593의19, 620의5, 620의7, 828의12~14, 828의22, 828의56~
	제2반	내덕동	588의2, 588의10~11, 588의14~16, 588의18, 590의1, 590의4~6, 590의8~11, 591의2, 591의4~6, 591의12~13, 592의1~6, 592의12~13, 594의1, 594의8, 594의10, 595의1, 788의27, 788의102, 788의114, 788의119
	제3반	내덕동	592의10, 593의1, 593의15~17, 593의20~23, 593의26~28, 593의31~33, 593의37, 593의39, 594의2, 594의7,
	제4반	내덕동	609의2~5, 609의7, 609의14~15, 609의17, 609의24~31, 609의33~36, 609의41, 609의43~44, 609의46, 609의48, 609의50, 609의53~57, 609의59~61, 610의8~12, 610의14~16, 610의18~22, 610의25, 610의27~35, 610의39, 610의41~42, 610의44, 610의47~48, 610의50~55, 610의57, 613, 615의3~6, 615의9~12, 615의14~19, 620, 620의4, 620의9, 622, 828의10, 828의16, 828의58, 828의73, 831의2, 831의6
제8통	제1반	내덕동	591의7~8, 591의11, 593의4, 593의6, 593의8~10, 593의12~13, 593의24~25, 593의29, 593의33, 593의36, 594의5, 594의11, 594의13, 594의15, 595의3~10, 595의13~21, 595의25, 607의2, 607의18, 608의1, 608의12, 608의15, 610의15, 788의115, 788의118
	제2반	내덕동	591의1, 595의12, 595의22~23, 596의1~10, 597의35~36, 597의47~48, 597의71, 597의74~78, 597의97, 597의99~100, 597의102, 607의1~8, 607의10~11, 607의15, 607의17, 607의20~22, 607의24~25, 608의1, 608의3, 608의5, 608의8~9, 608의13~14, 608의16, 608의19, 610의45~46, 649의1
	제3반	내덕동	597의3~4, 597의6~15, 597의17, 597의19, 597의28~30, 597의37~39, 597의44~46, 597의49~51, 597의60, 597의72~73, 597의87~89, 597의91~92, 606의1~2, 606의4~5, 607, 607의12, 607의23, 608의6, 608의17~18, 610의3, 610의6~8
	제4반	내덕동	597의2, 597의5~6, 597의16, 597의18, 597의21~27, 597의31~34, 597의42, 597의52~55, 597의59, 597의62~70, 597의79, 597의86, 597의90, 597의93~96, 597의98, 598의2, 598의4~11, 598의13~31, 600의1~5, 600의7, 601, 833, 833의19, 883의1
제9통	제1반	내덕동	320의16, 328의2, 642의1~13, 642의15~16, 642의18, 642의20~25, 642의27, 643의1~4, 644의1~9, 644의11~13, 644의16~17, 644의21, 644의26~27, 644의29, 644의31~40, 644의33~40
	제2반	내덕동	645의1, 645의7~8, 645의14~24, 645의29, 645의36, 659의35~63, 659의79~86
	제3반	내덕동	645의3~6, 645의10~12, 645의25, 645의28, 645의30~35, 645의37~39, 646의1~19, 846
	제4반	내덕동	647의1~27
제10통	제1반	내덕동	648의1, 648의3~18
	제2반	내덕동	649의1~3, 649의6~29, 650의1~8, 650의10~14, 650의16~20
	제3반	내덕동	656의1~7, 656의9~27, 656의29~38
	제4반	내덕동	657의1~4, 657의6~16, 657의19~30, 846
제11통	제1반	내덕동	638, 659의6~35, 659의90~96, 817의22, 828의51

	제2반	내덕동	659의1, 659의3~4, 659의66~68, 659의72~78, 659의87~89, 659의98~111, 669의2, 669의64~65, 669의69~71, 828의52
	제3반	내덕동	630, 663의1~2, 663의5~10, 664의1, 664의3~13, 665의1, 665의8~18, 702의1, 828의59, 846
	제4반	내덕동	666의1~4, 666의6~23, 666의26~32, 666의34~35, 667의1~4, 666의6~26, 704의1, 706의9, 846, 850
제12통	제1반	내덕동	658의1~2, 658의4~6, 658의8~34, 658의36
	제2반	내덕동	660의1~6, 660의8~12, 660의15~32
	제3반	내덕동	61의1, 661의3~4, 661의6~7, 661의10, 661의12~26, 661의28~46, 661의48~52
	제4반	내덕동	662의1~5, 662의7~14, 662의16~39, 662의45~46,
제13통	제1반	내덕동	651의1~2, 651의6, 652의1~3, 652의5, 652의7~26, 653의1~18
	제2반	내덕동	654의1, 654의3, 654의8~9, 654의11~28, 655의1~6, 655의8~18
	제3반	내덕동	669의1~15, 670의1, 670의3, 670의7, 670의9~20, 670의22~23, 847
	제4반	내덕동	668의1, 668의3~15, 671의1, 671의6~29, 714의1, 719의14, 850
제14통	제1반	내덕동	672의1, 672의4~9, 672의11, 672의13~16, 672의18~22, 672의24~25, 672의27, 672의31, 672의37~40, 710의2, 710의4, 710의7, 715의2, 716의7~8, 716의12, 848
	제2반	내덕동	673의2, 673의9~34
	제3반	내덕동	694의1, 694의5, 694의8~9, 694의12~16, 694의18, 694의20~39, 694의41~44
	제4반	내덕동	683의3, 683의5~7, 683의22~26, 683의29~30, 695의1~2, 695의7, 695의9~10, 695의13~14, 695의16~18, 695의20~24, 695의27, 695의29~30, 695의36~39, 695의41~44, 710의5~6, 710의8, 828의29
제15통	제1반	내덕동	697의1(삼일A 가동)
	제2반	내덕동	697의1(삼일A 나동)
	제3반	내덕동	698의1(삼일A 다동), 698의11
	제4반	내덕동	698의1(삼일A 라동), 698의10
	제5반	내덕동	683의10 (우성A A동, B동), 676의5, 676의29, 683의32~33, 788의32, 788의82~87, 788의90
	제6반	내덕동	683-11(우성A C동) 683의12, 683의34, 788의85
	제7반	내덕동	683의7~8, 683의13, 683의18~21
제16통	제1반	내덕동	674의1~2, 674의8~31, 768의4, 772의14, 774의1~2, 774의4, 775의1, 775의8~9, 775의12~14, 778의1, 778의4~5, 780의7, 848, 849
	제2반	내덕동	693의1~2, 693의4~5, 693의7~20, 696의1~3, 696의5, 696의7~16, 777의2, 780, 780의4, 780의8~10, 780의13~15, 781의3~5, 781의7~10, 781의12~14
	제3반	내덕동	669의1~6, 669의8~30, 669의32~33, 848
	제4반	내덕동	677의2, 678의4~7, 679의2, 679의4~5, 679의7~8, 700의1~16, 700의18~21, 700의23~24, 777의3, 788의52~54, 788의59~61, 788의63, 788의65, 788의121~123
제17통	제1반	내덕동	703의1, 703의4~12, 703의15~16, 703의20~21, 704의2~12, 704의14, 705의1, 706의1, 706의3, 706의5~7, 707의1, 719의6, 721, 721의3~9, 721의12, 721의14~16, 721의19, 721의21, 722의5~6, 723의9, 723의12, 724의30, 727의18~19, 728의14~20, 731의4, 731의18, 731의21~22, 828의16, 828의34, 828의63, 828의65~613의2, 725의13~14, 725의16, 725의18~22, 725의24~27, 725의72, 727의2, 728의1, 728의4~10, 731, 731의1, 731의3, 731의5, 731의7~12, 731의15~16, 731의20, 731의23, 733의1~15, 733의17, 734의2~7, 734의9, 734의11, 735의17, 737의2, 737의4~6, 737의8~10, 833의7, 833의9, 833의18
	제2반	내덕동	613의2, 725의13~14, 725의16, 725의18~22, 725의24~27, 725의72, 727의2, 728의1, 728의4~10, 731, 731의1, 731의3, 731의5, 731의7~12, 731의15~16, 731의20, 731의23, 733의1~15, 733의17, 734의2~7, 734의9, 734의11, 735의17, 737의2, 737의4~6, 737의8~10, 833의7, 833의9, 833의18
	제3반	내덕동	724의21, 724의29, 725의1, 752의41~43, 752의45~46, 752의48~52, 752의54, 752의63, 752의71, 752의73, 726의4, 726의20~23, 727의1, 727의4~12, 727의14~17, 727의20, 728의11~12, 729의3~16, 729의19, 735의19,

			제4반	내덕동	723의4, 723의6~8, 723의13, 724의13~20, 724의28, 724의31, 725의4, 725의8~10, 725의29~34, 725의38, 725의55, 725의57, 725의62, 725의69, 725의70, 726의1~2, 26의5~7, 726의10~17, 726의24~25, 726의29, 726의32, 729의17~18, 735의6~7, 740의2, 740의16, 740의28, 740의31, 740의33, 740의37
			제5반	내덕동	604, 725의40, 735의2, 735의4, 735의8~10, 735의12~16, 735의20~23, 737의1~2, 738, 738의1~4, 739, 739의2~3, 739의5~7, 740의1, 740의3~9, 740의11~13, 740의15, 740의17~18, 740의20~21, 740의27~28, 740의32, 740의35~36, 741, 741의2~5, 742, 742의2~4, 883의2, 883의18, 883의21
		제18통	제1반	내덕동	713의1, 715의1, 715의6, 716의1~2, 716의6, 716의9, 717의2, 717의4, 717의6~8, 717의11, 718의1~2, 719의1, 719의6~9, 722(시영아파트1동, 2동의101호~504호), 722의3, 828의19~20, 835의3
			제2반	내덕동	722(시영A 2동의105호~508호, 3동) 747의2, 747의7, 828의24
			제3반	내덕동	746의3, 746의5(시영A 4동)
			제4반	내덕동	746의5(시영A 5동), 749의3
			제5반	내덕동	725의2, 725의28, 725의36(시영A 6동), 725의39, 725의64~67, 745의3~5, 746의2, 746의8, 749의2, 749의5, 749의8, 749의11~13, 750의3, 751의10, 759의1, 834의4
		제19통	제1반	내덕동	716의3~4, 716의11, 717의5~6, 717의9, 746의6, 747의6, 762의4, 762의6, 764의6~8, 766의3, 766의6, 767의3, 767의8, 768의2, 768의4, 768의7, 768의9, 769의3, 769의5, 769의7, 770의2, 770의4, 771(보성A 1동, 2동), 771의1~4, 772의4, 772의6, 772의9~13, 828의78~79
			제2반	내덕동	746의7, 748의9, 749의6, 749의10, 749의15, 750의2, 750의5, 750의11, 771(보성A 3동, 5동, 10동)
			제3반	내덕동	748의2(보성A 6동), 750의6~9, 750의12~13, 751의3, 762의1, 762의5~6, 777의4~6, 828의76~77
			제4반	내덕동	748의2(보성A 7동)748의6, 762의2, 762의7, 763의2, 763의5~6, 764의4,
			제5반	내덕동	748의8(보성A 8동), 763의7, 763의10, 769의1, 828의31, 828의33
			제6반	내덕동	748의8(보성A 9동), 764, 764의1~3, 766의5, 767의4, 768의5, 768의8, 770의3
내덕제2동	1	제1통	제1반	내덕동	227의1, 227의6, 227의10, 261, 269의6~269의10, 269의12~269의14, 270의3, 270의4, 270의6~270의8, 273의1, 273의6, 273의7, 274의2~274의4, 274의6, 275의6
			제2반	내덕동	215의1, 216의1, 216의4~216의7, 230의1, 227의8~227의9, 227의20, 228의1, 228의5, 228의6, 228의8~228의10, 228의15, 229의1, 229의4~229의8, 229의10, 275의1, 275의23, 275의24, 230의1, 230의3~230의8, 231의1, 813의28, 813의40~813의42
			제3반	내덕동	233의1~233의5, 234의2~234의7, 234의10~234의14, 234의16~234의18, 235의4~235의6, 813의29, 813의31, 813의32, 813의43~813의58, 236의3, 236의6
			제4반	내덕동	188의4, 194의3, 204, 209의4, 212의1~212의3, 212의5, 212의7, 212의8, 212의11, 212의12, 214의1~214의9, 813의22, 813의25, 813의33, 813의36
		제2통	제1반	내덕동	106의10 롯데삼성A A동
			제2반	내덕동	106의10 롯데삼성A B동
			제3반	내덕동	60의1 롯데삼성A C동, 60의33 롯데삼성A D동
			제4반	내덕동	60의33 롯데삼성A E동
		제3통	제1반	내덕동	109의4~109의13, 109의15~109의17, 109의19~109의
			제2반	내덕동	100의1, 103의2, 105의1, 105의2(대영빌라), 105의3, 105의7, 105의8, 105의14, 106, 106의1~106의4, 106의7, 106의12, 106의17, 111의1~111의12, 산32의12, 산32의109의1(대우주택 A, B동)
			제3반	내덕동	109의1(대우주택 A, B동)
			제4반	내덕동	107, 107의3~107의5, 107의7, 107의9, 107의30, 108의1, 108의3~108의5, 108의7~108의9, 108의12, 109의23
			제5반	내덕동	107의1, 107의6, 107의10, 107의16, 107의18, 107의20, 107의22~107의25, 107의19(채성빌라)
		제4통	제1반	내덕동	60의2(삼부빌라), 60의5~60의19, 60의22~60의25, 60의47~60의52
			제2반	내덕동	산 32, 33, 33의1, 56의2, 56의3, 56의5, 57, 58, 58의1, 59, 59의2~59의13, 68의4~68의7, 68의12~68의14, 68

	제3반	내덕동	50의1, 50의3, 50의4, 50의6, 50의8 ~ 50의14, 50의16 ~ 50의22, 50의27, 52, 52의1, 52의2, 54의1 ~ 54의5, 57의1, 57의3 ~ 57의5, 57의8, 57의10 ~ 57의12, 201의29.
	제4반	내덕동	41, 41의1, 41의3, 42, 42의4, 42의6, 44, 44의1, 45, 46, 46의3, 46의4, 50의23, 50의25
	제5반	내덕동	47의1, 47의2, 47의5, 47의7 ~ 47의9, 47의11 ~ 47의14, 47의16, 47의17, 55의1 ~ 55의5, 55의7, 56의11, 56의1,
	제6반	내덕동	60의17(삼덕A)
	제7반	내덕동	107의11, 107의29(수진빌), 107의34,(나이스 빌라), 107의36(싸이버빌), 107의39(아름다운 집), 107의42(테크빌), 107의44(신세기빌라), 107의50(하이빌), 107의51(교수회관), 107의52(베스트빌), 107의58(명륜빌라), 107의59(성빌라), 108의50(하니빌)
제5통	제1반	내덕동	94의8, 94의19, 94의20, 94의21, 94의22, 94의23, 95, 96의1, 96의2, 96의4 ~ 96의8
	제2반	내덕동	92의1 ~ 92의6, 92의8, 93의1 ~ 93의3, 94의1 ~ 94의7, 94의9 ~ 94의18, 94의26, 94의28, 94의125, 125의1, 25, 27, 97의1, 97의2 ~ 97의11, 97의19
	제3반	내덕동	121의1 ~ 5, 121의7, 122의16 ~ 20, 122의22, 122의23, 122의28 ~ 30, 122의38 ~ 41, 122의44, 122의45, 123의1, 123의2 ~ 123의9
	제4반	내덕동	115의129 ~ 115의135, 122의2 ~ 122의9, 122의12 ~ 122의15, 122의34, 122의35, 123의10
제6통	제1반	내덕동	63의1 ~ 63의5, 64의1 ~ 64의4, 64의7, 65의1 ~ 65의3, 65의6, 84, 73, 73의2, 83의2 ~ 83의6, 83의8, 83의16, 84의1 ~ 84의8
	제2반	내덕동	77, 77의1 ~ 77의2, 77의4 ~ 77의5, 82의23 ~ 82의25, 83의1, 83의11 ~ 83의14, 83의22 ~ 83의23
	제3반	내덕동	82, 82의2 ~ 82의8, 82의10, 82의12 ~ 82의14, 82의16 ~ 82의20, 82의28, 83의19 ~ 83의21, 85의3 ~ 85의4, 85의13, 85의15
	제4반	내덕동	85의1 ~ 85의2, 85의6 ~ 85의8, 85의11, 86의1 ~ 86의4, 87의1 ~ 87의2, 87의4, 88의9 ~ 88의11, 88의13 ~ 88의18
제7통	제1반	내덕동	90의3 ~ 90의5, 90의7 ~ 90의8, 90의10 ~ 90의15, 90의21, 90의39, 90의41, 89, 89의1 ~ 89의2, 90, 90의1, 90의9
	제2반	내덕동	19의8, 19의9, 23의1, 23의2, 23의4 ~ 23의12, 23의52, 23의53, 23의58, 23의61, 16, 23의57, 23의41, 23의42, 23
	제3반	내덕동	129, 130, 130의51, 130의52, 130의35, 130의36, 130의50, 128의45, 130의37 ~ 130의49, 130의64,
	제4반	내덕동	23의16, 23의17, 23의19, 23의20, 23의22 ~ 23의24, 23의31 ~ 23의35, 23의37, 23의39 ~ 23의41, 23의44, 23의45, 23의46, 23의50, 23의74, 23의27 ~ 23의29
	제5반	내덕동	82의30, 82의31(그린타운1동), 82의32(그린타운6동), 82의34(그린타운2동), 82의35(그린타운3동), 82의36(그린타운5동), 82의37(그린타운4동), 82의38, 82의39, 82의40
제8통	제1반	내덕동	124의1, 124의3, 124의8, 124의9, 124의13, 124의15, 124의16, 133의1 ~ 133의6, 148의2, 148의3, 149의1, 150의1, 134의1 ~ 134의4
	제2반	내덕동	124의4, 124의5, 124의7, 124의11, 124의18, 128의3 ~ 128의6, 128의30, 128의32, 131의1 ~ 131의3, 132, 132의
	제3반	내덕동	91의1 ~ 91의4, 127의1 ~ 127의3, 128, 128의1, 128의7 ~ 128의14, 128의16 ~ 128의18, 128의21, 128의23, 128의25, 128의36, 128의50
	제4반	내덕동	130의2 ~ 130의17, 130의55, 130의56, 130의63, 130의18 ~ 130의34
제9통	제1반	내덕동	25, 135, 136의1, 136의4, 141의2, 144 ~ 144의2, 144의4 ~ 144의44, 159의4
	제2반	내덕동	119의9, 120의4 ~ 120의6, 121, 121의8 ~ 121의14, 121의16 ~ 121의21, 135, 119의5, 119의17, 119의18
	제3반	내덕동	136의2, 136의3, 137의1, 141, 141의5 ~ 141의8, 141의11, 141의12, 142, 142의4 ~ 142의12, 142의19 ~ 142의22, 143의1 ~ 143의4
	제4반	내덕동	135의2 (삼일연립 다동), 135의4 (삼일연립 마동), 135의6 (삼일연립 라동)
	제5반	내덕동	135의2 (삼일연립 가, 나동)
제10통	제1반	내덕동	110의1, 114, 115, 115의41 ~ 115의55, 115의100, 165, 165의42, 165의43, 795의3
	제2반	내덕동	115의102 ~ 115의119, 115의120 ~ 115의127, 115의144 ~ 115의150, 119의8 ~ 119의11
	제3반	내덕동	138의14(진흥A 101호 ~ 507호)

	제4반	내덕동	115의27, 115의28, 115의40, 115의97, 115의98, 115의168, 163의8 ~ 163의12, 163의81, 165의3, 165의8 ~ 165의20, 165의22 ~ 165의27, 165의57, 165의58, 165의64, 165의65, 795의1
제11통	제1반	내덕동	164의2, 164의4, 164의5, 164의9, 164의10, 164의13 ~ 164의17, 164의19 ~ 164의21, 164의 60, 164의61, 164의165의1, 165의7, 165의31 ~ 165의33, 165의35 ~ 165의38, 165의43, 165의44, 167, 167의9, 167의10, 167의23 ~ 165의25, 167의27, 167의 35, 167의36, 167의42, 167의57
	제2반	내덕동	163의3, 163의62, 164, 164의1, 164의3, 164의 22 ~ 164의39, 164의43, 164의44, 164의48, 164의49, 164의521, 164의59, 165의37
	제3반	내덕동	110의5, 110의7, 110의8 165, 165의25, 165의 28, 165의29, 165의39, 165의46, 165의47, 165의50, 165의51, 165의61, 166의3, 166의5, 166의8 ~ 166의14, 166의17, 166의19, 167의22, 167의34, 169의1, 169의14, 169의20, 197의9, 197의10, 197의32
	제4반	내덕동	162의11, 167의1 ~ 167의8, 167의17, 167의28 ~ 167의33, 167의38, 167의40, 167의44, 168의 12
	제5반	내덕동	162의2, 162의6, 162의9, 162의13, 162의17 ~ 162의22, 163의17, 163의19, 163의21, 163의 22, 163의23, 163의25, 163의27~163의29, 163 의34, 163의41, 163의43, 163의46, 163의51 ~ 163의55, 163의57, 163의58, 163의60, 163의67, 163의79, 163의83, 164의7, 164의57, 163의18, 163의40, 163의37, 163의30, 163의32, 163의68
제12통	제1반	내덕동	115의13, 115의12, 162의26, 162의27, 162의 42, 162의43, 162의29, 162의44, 162의45, 162, 162의34, 162의36, 162의35, 115의15, 115의14, 115의166, 115의16, 115의8, 162의37, 162의5, 162의30, 162의33, 162의4, 115의10, 115의20, 115의169, 162의3, 162의32, 163의48
	제2반	내덕동	115의167, 115의37, 115의32, 115의29, 115의 30, 115의31, 115의94, 115의95, 115의96, 115의 74, 115의93, 115의33, 115의34, 115의35, 115의36, 115의26, 115의17, 163의14, 163의33, 163의4, 163의1, 163의6, 163의5, 163의7, 163의2, 163의94, 163, 163의35, 163의38, 163
	제3반	내덕동	407의23 ,407의41, 407의228, 407의39, 407의31, 407의235, 161의1, 161의3, 161의4, 161의9, 161의5, 161의20, 161의19, 162의24, 162의16, 162의15, 162의12, 162의14, 161의8, 161의7, 162의8, 162의55, 162의7, 162, 162의47, 162의 21, 162의10, 162의23, 162의22, 162의54, 162의25, 161의6, 407의223, 407의34
	제4반	내덕동	520의2(신화A 1동) 101호 ~ 1204호
제13통	제1반	내덕동	520의2(신화A 1동) 105호 ~ 1208호
	제2반	내덕동	520의2(신화A 1동) 109호 ~ 1212호
	제3반	내덕동	520 (신화A 5동)
	제4반	내덕동	520의2(신화A 2동)
제14통	제1반	내덕동	520의2(신화A 3동)
	제2반	내덕동	520의2(신화A 4동) 101호 ~ 1204호
	제3반	내덕동	520의2(신화A 4동) 105호 ~ 1210호
	제4반	내덕동	422(신라A 1동), 422(신라A 2동)
제15통	제1반	내덕동	422(신라A 3동), 422(신라A 5동)
	제2반	내덕동	499의 4(덕일연립 A, B동), 499의13(덕일연립 C, D동)
	제3반	내덕동	499의14(덕일연립 가,나동)
	제4반	내덕동	399의16, 399의17, 399의27, 400의13, 400의 14, 401의1, 401의2, 401의4, 401의5, 402의8, 402의11, 402의78, 402의84, 402의85, 402의 93, 402의113 ~ 402의120, 392의3, 392의4, 392의11 ~ 392의14, 402의21, 402의28, 402의 35, 402의38, 402의41, 402의42, 402의45, 402의61, 402의62, 402의75, 402의87, 402의 126, 402의127
제16통	제1반	내덕동	378의1, 402의16 ~ 402의18, 402의28, 402의29, 402의44, 402의45 ~ 402의51, 402의53 ~ 402의56, 402의58, 402의64, 402의65, 402의 68, 402의69, 402의72, 402의88, 402의102, 402의103, 402의9 ~ 402의15, 402의27, 402의 36, 402의39, 402의40, 402의81 ~ 402의83, 402의122 ~ 402의125, 402의129, 402의175
	제2반	내덕동	

	제3반	내덕동	377의6, 403, 403의1, 403의2, 403의6 ~ 403의 9, 403의12 ~ 403의15, 403의18 ~ 403의23, 403의25, 172의53, 172의54, 172의66, 403의4, 403의5, 403의11, 403의16, 404의1, 404의2, 404의6, 404의7, 404의9, 404의15, 404의17 ~ 404의21, 404의23, 404의25, 404의26, 404의30.
	제4반	내덕동	172의11, 172의47 ~ 172의52, 172의65, 173의173의1, 173의12, 173의14 ~ 173의16, 173의18, 173의70, 173의129, 173의137, 173의148404의3, 404의4, 404의5, 404의27, 404의28, 404의30, 404의31, 171의1 ~ 171의5, 172, 172의1 ~ 172의3, 172의5, 172의6, 172의7, 172의9, 172의10, 172의22, 172의64, 172의92, 172의93, 172의97, 101, 172의114, 173의2, 177의1, 178의1, 178의2, 817의14, 817의15, 817의17, 817의18, 836의7
	제5반	내덕동	380의1, 380의2, 380의4, 380의5, 380의10, 381의2, 381의5, 382의2, 383의1, 384의24, 387의1 ~ 387의6, 392의6 ~ 392의8, 392의15, 383
제17통	제1반	내덕동	402의22 ~ 402의24, 402의26, 402의73, 402의 94, 402의97 ~ 402의99, 402의132, 402의141, 402의146, 402의153, 409의1, 409의2, 409의4, 409의5, 414의8, 798의19,
	제2반	내덕동	402의3 ~ 402의7, 402의30, 402의33, 402의37, 402의63, 402의136, 406의2 ~ 406의4, 406의8 ~ 406의19
	제3반	내덕동	172의16, 172의43 ~ 172의46, 172의104, 404의 10 ~ 404의12, 405의1, 405의4 ~ 405의7
	제4반	내덕동	172의13, 172의67, 172의68, 172의70 ~ 172의72, 172의76 ~ 172의78, 172의81 ~ 172의88, 405의2, 405의17, 405의28, 405의29
	제5반	내덕동	414의7(금풍주택), 414의13, 414의14, 414의17, 415, 415의4, 415의5, 415의9, 416, 416의1, 416의2, 416의4 ~ 416의15, 417의15, 417의16, 419의5
제18통	제1반	내덕동	417의9(내덕A 가, 나, 다동), 417(형제A 가, 나동)
	제2반	내덕동	417의11, 419의15 ~ 419의17, 420의17 ~ 420의 22, 421의4 ~ 421의6, 421의8, 421의10 ~ 421의 16
	제3반	내덕동	419의1 ~ 419의10, 420의1 ~ 420의4, 420의8, 420의12, 420의14, 420의16, 422의1 ~ 422의5, 422의8, 422의11, 419의12, 420의5 ~ 420의9, 422의7
	제4반	내덕동	413의2~413의7, 414의2, 414의9 ~ 414의11, 11 ,414의21, 414의29, 414의30, 415의3
	제5반	내덕동	417의9(내덕A 라동), 417의12(내덕A마동), 417의12(내덕A 바동), 417의14(내덕A 사동)
제19통	제1반	내덕동	386의1 ~ 386의4, 387의15, 387의17, 388의2 ~ 388의5, 388의7, 388의8, 393, 393의1 ~ 393의3, 393의30, 394의7, 394의8, 395의6, 395의7, 396의7, 396의8, 396의10 ~ 396의15, 396의23, 398의4, 398의6, 398의7, 399의2,
	제2반	내덕동	387의8 ~ 387의11, 387의13, 387의22, 387의25, 388의11, 393의5, 393의10, 393의15, 393의16, 393의19 ~ 393의22, 384의2, 384의3, 384의8, 384의9, 384의16, 384의20, 384의22, 384의23, 384의26, 384의27, 386의5, 386의8, 386의9, 386의11, 388의10, 530의2, 530의4, 530의7, 531의13, 531의62
	제3반	내덕동	129의12, 393의7, 393의8, 393의11, 393의17, 393의18, 393의23, 393의24, 399의5 ~ 399의8, 399의10 ~ 399의12, 400의6 ~ 400의9
	제4반	내덕동	394, 394의1 ~ 394의3, 394의5, 395, 395의1, 395의2, 395의8, 396, 396의1 ~ 396의3, 396의5, 398, 398의1, 398의2, 398의5, 521의2, 521의5 ~ 521의7, 522의1, 522의3, 528의4 ~ 528의8, 530의1, 530의8, 530의10
	제5반	내덕동	425의1 ~ 9, 426의5, 426의10, 426의14, 426의 16, 426의17, 426의19, 426의20, 426의23, 427의12, 493의2 ~ 493의5, 496의8, 427의2, 427의10, 427의11
제20통	제1반	내덕동	425의1 ~ 9, 426의5, 426의10, 426의14, 426의 16, 426의17, 426의19, 426의20, 426의23, 427의12, 493의2 ~ 493의5, 496의8, 427의2, 427의10, 427의11
	제2반	내덕동	495(형제A)
	제3반	내덕동	496의6, 496의7, 496의9, 496의10, 496의11, 496의12, 496의13, 499, 499의12, 499의15, 499의17, 508의1, 508의2, 508의4, 508의5, 509의1, 509의2, 510의1, 510의4, 510의5, 511의3, 512의1 ~ 512의6, 513, 516의8 ~ 516의11, 517의1, 517의4, 517의5, 517의10, 583, 788의33
	제4반	내덕동	531의41 ~ 531의43, 531의48, 531의52, 531의55, 531의59, 534의1, 537의1, 542의1, 542의5, 542의7, 542의8, 542의10 ~ 542의14, 523, 523의1 ~ 523의4, 526, 526의1, 526의2, 531의39, 531의64, 531의65, 531의67, 531의69 ~ 531의77, 531의86, 531의90, 788의46
	제5반	내덕동	519 (대진A 가, 나동)



	제6반	내덕동	528, 528의1, 528의2, 528의11, 528의12, 531의11, 531의30, 531의45, 531의46, 531의49, 531의50, 531의53, 531의54, 531의56, 531의57, 531의60, 531의78, 531의80 ~ 531의83, 531의86
제21통	제1반	내덕동	412의81, 412의82, 412의103, 412의109, 412의96, 412의7, 412의26 412의27 ~ 29, 412의70, 412의108, 412의31 ~ 412의42, 412의71, 412의97, 412의14, 412의75, 412의73, 412의98, 412의76 ~ 78, 412의40 ~ 44, 412의107, 411의17, 410의8, 410의2, 410의4, 410의3
	제2반	내덕동	407의85, 407의87, 407의88, 407의89, 407의90, 407의18, 407의16, 407의20, 407의210, 407의142, 407의144, 407의145, 407의139, 407의138, 407의51, 407의120, 407의121, 407의123, 407의122, 407의53, 407의52
	제3반	내덕동	407의106, 407의109, 407의112, 407의114, 407의115, 410의7, 407의61, 407의71, 407의43, 407의72, 411의1, 407의73, 407의44, 407의140, 407의40, 407의6, 407의74, 407의5, 407의7, 407의75, 407의22, 407의76, 407, 407의25, 407의23, 407의26, 407의24, 407의32, 407의33, 407의2, 407의3, 410의16
	제4반	내덕동	412의29, 412의93, 407의67, 411의, 407의68, 407의118, 407의70, 407의56, 407의57, 407의58, 407의93, 407의94, 407의55, 407의95, 407의97, 407의98, 407의99, 407의100, 407의167, 407의168, 407의102, 407의103, 407의104, 411의9(송림빌라)
	제5반	내덕동	407의219, 407의193, 407의14, 407의171, 407의46, 407의86, 407의16, 407의137, 407의78, 407의48, 407의45, 407의46, 407의49, 407의21, 412의91, 412의90, 412, 412의48, 412의47, 412의46, 412의45
제22통	제1반	내덕동	412의1 (금성계전A 1동), 412의1 (금성계전A 2동)
	제2반	내덕동	407의125 ~ 407의128, 407의130 ~ 407의136, 407의147 ~ 407의150, 407의153, 407의157 ~ 407의163, 407의181, 407의183, 407의185 ~ 407의187, 407의205, 407의
	제3반	내덕동	407의9, 407의11 ~ 13, 407의15, 407의17, 407의35 ~ 36, 408의81 ~ 407의84, 407의66, 407의174, 407의214, 407의166, 412의3, 412의9, 412의21 ~ 412의25, 412의67, 412의94, 412의95, 412의100
	제4반	내덕동	412의51, 412의53 ~ 412의58, 412의60 ~ 412의65, 12의74, 429의5, 429의10 ~ 429의12, 429의1, 429의15, 430의1, 430의10, 430의8
제23통	제1반	내덕동	431-1, 431-4 ~ 431-6, 431-8, 437-1, 439-4, 439-6 ~ 439-10, 439-16, 440, 442, 442-2 ~ 442-6, 445-1, 445-2, 484-4, 484-8 ~ 484-12, 484-14, 441, 442-1, 442-2, 442-7 ~ 442-11, 443-1, 443-3 ~ 443-7, 444, 444-1, 446-4, 446-5, 446-8, 446-9, 446-11 ~ 446-16, 451-3, 452, 453-1 ~ 453-7, 462-1, 480-1, 480-5 ~ 480-7,
	제2반		폐지
	제3반		폐지
	제4반		폐지
제24통	제1반	내덕동	141의1(영우A 101동 106 ~ 117호, 210 ~ 217호, 301 ~ 317
	제2반	내덕동	141의1(영우A 101동 401 ~ 417호, 501 ~ 517호, 601 ~ 617
	제3반	내덕동	141의1(영우A 101동 701 ~ 717호, 801 ~ 817호, 901 ~ 917
	제4반	내덕동	141의1(영우A 101동 1001 ~ 1017호, 1101 ~ 1117호, 1201 ~ 1217호)
	제5반	내덕동	141의1(영우A 101동 1301 ~ 1317호, 1401 ~ 1417호, 1501 ~ 1517호)
	제6반	내덕동	141의1(영우A 102동)
제25통	제1반	내덕동	21의4, 115의57 ~ 115의67, 115의71 ~ 115의73, 115의82 ~ 115의92, 140의1, 140의4 ~ 140의7, 140의9 ~ 140의11, 140의13 ~ 140의17, 140의19, 141의1, 138의7, 407의189 ~ 407의192
	제2반	내덕동	115의39, 115의67, 115의69, 115의75 ~ 115의81, 115의93 ~ 115의96, 115의151, 115의159 ~ 115의161
	제3반	내덕동	139의2, 139의6, 139의7, 139의10 ~ 139의16, 139의21 ~ 139의23, 139의25 ~ 139의27, 139의29, 138의1, 138의2, 138의4, 138의5, 138의6, 138의8, 138의9, 138의16, 138의22, 138의24, 138의25, 139의19, 139의20
	제4반	내덕동	115의5 (경희주택 가동, 나동)
제26통	제1반	내덕동	516-2(해가든 A 101동)
	제2반	내덕동	516-2(해가든 A 102동)

울량사천동	1	제1통	제3반	내덕동	516-2(해가든 A 103동)	
			제4반	내덕동	516-2(해가든 A 104동)	
			제1반	울량동	58, 65, 72, 73, 75, 76, 80의4, 82의1, 82의4, 82의6, 83, 84의1, 85, 85의3, 136, 산86의2, 85의 4, 85의7, 101, 106의6, 136의1, 산106의3	
			제2반	울량동	83, 99, 104, 105, 107, 109 ~ 113, 116, 117, 119	
			제3반	울량동	9, 17의1, 27의1, 117의4, 116, 52, 12의1, 15의3, 24의2, 25, 131의1, 131의2, 143, 산126의3, 131의5, 141의1, 150의1, 155의1, 164의1, 193의 1, 143의1, 149의1	
			제4반	울량동	20, 25, 34, 38, 45, 46, 49, 55, 55의1, 56, 57, 59, 67, 69, 98, 116의8, 117, 123, 136, 139의4, 164, 166, 190, 199, 202, 235, 238, 258의2, 273, 275, 277의7, 280의3, 208의 4, 282의5, 280의8, 286의1, 287의1, 293, 300, 300의1, 300의6, 300의8, 300의12, 302의1, 302의4, 302의5, 302 의6, 302의7, 303의1, 303의2, 303의5, 304, 304의2, 305 의2, 306의1, 306의2~306의6, 306의7, 306의8, 306의12, 306의15, 306의17, 306의18, 306의35, 307의1, 307의3, 307의5, 307의14, 308, 309, 311, 314의1, 314의2, 316, 317, 338의2, 340의5, 341, 342의6, 342의13, 345의2, 345의4, 345의5, 346의7, 347의1, 348의1, 348의5, 348의 3, 350의1, 353의6 ~ 353의26, 354의3, 358의2, 358의3, 359의1, 359의2, 361의3, 362의4, 362의10, 362의15, 363의2, 363의4, 366, 369의1, 369의4, 369의5, 373, 374 의2, 375의2, 375의4, 376, 377, 379, 381의1 ~ 381의4, 381의6, 382, 382의2, 382의8, 382의9, 383, 383의1, 384, 392, 393의1, 416, 433의3, 413의5, 484의2, 419의 10, 481, 481의1, 481의2, 481의3, 483의1, 485의1, 485 의2, 487의30, 487의34, 487의52, 487의54, 488의1, 488 의3, 489의4, 489의5, 489의 6, 490, 490의1, 490의5, 495, 515, 647의10, 647의12, 674의7, 674의9, 산56의5, 산	
			제2통	제1반	울량동	861 (두진백로그린타운 102동 101호 ~ 10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울량동	861 (두진백로그린타운 102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407호, 108호 ~ 908호)
				제3반	울량동	861 (두진백로그린타운 103동 101호 ~ 1101호, 102호 ~ 1102호, 103호 ~ 1103호, 104호 ~ 1104호, 105호 ~ 1105호)
				제4반	울량동	861 (두진백로그린타운 104동 101호 ~ 12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304호)
		제3통	제1반	울량동	895 ~ 904, 922 ~ 927, 910 ~ 915, 975 ~ 979	
			제2반	울량동	916 ~ 921, 928 ~ 936	
			제3반	울량동	961 ~ 974	
			제4반	울량동	937 ~ 946, 947 ~ 960	
		제4통	제1반	울량동	1299 ~ 1301, 1302 (대창3차아파트 101호 ~ 118호, 201호 ~ 218호)	
			제2반	울량동	1302 (대창3차아파트 301호 ~ 318호, 401호 ~ 418호)	
			제3반	울량동	1302 (대창3차아파트 501호 ~ 518호, 601호 ~ 618호)	
			제4반	울량동	1302 (대창3차아파트 701호 ~ 718호, 801호 ~ 818호)	
			제5반	울량동	1302 (대창3차아파트 901호 ~ 918호, 1001호 ~ 1018호)	
			제6반	울량동	1302 (대창3차아파트 1101호 ~ 1118호, 1201호 ~ 1218호)	
			제7반	울량동	1302 (대창3차아파트 1301호 ~ 1318호, 1401호 ~ 1418호, 1501호 ~ 1518호)	
		제5통	제1반	울량동	1367 (대창4차아파트 101동 101호 ~ 115호, 201호 ~ 215호, 삼가) 1403~1406호, 1409~1415호)	
			제2반	울량동	1367 (대창4차아파트 101동 301호 ~ 315호, 401호 ~ 415호)	
			제3반	울량동	1367 (대창4차아파트 101동, 501호 ~ 515호, 601호 ~ 615호)	
			제4반	울량동	1367 (대창4차아파트 101동 701호 ~ 715호, 801호 ~ 815호)	
			제5반	울량동	1367 (대창4차아파트 101동, 901호 ~ 915호, 1001호 ~ 1015호)	
			제6반	울량동	1367 (대창4차아파트 101동 1101호 ~ 1115호, 1201호 ~ 1215호)	
			제7반	울량동	1367 (대창4차아파트 101동 1301호 ~ 1315호, 1401호 ~ 1415호, 1501호 ~ 1515호)	
제8반	울량동		1367 (대창4차아파트 102동 101호 ~ 801호, 102호 ~ 802호, 103호 ~ 703호, 104호 ~ 704호, 105호 ~ 605호)			
제6통	제1반	울량동	804 (목화APT 101동 101호 ~ 1101호, 102호 ~ 1102호), 804 (목화APT 101동 103호 ~ 1103호, 104호 ~ 1104호)			
	제2반	울량동	804 (목화APT 101동 105호 ~ 1105호, 106호 ~ 1106호), 804 (목화APT 101동 107호 ~ 1107호, 108호 ~ 1108호)			

	제3반	울랑동	803 (목화APT 102동 101호 ~ 1101호, 102호 ~ 1102호), 803 (목화 APT 102동 103호 ~ 1103호, 104호 ~ 1104호)
	제4반	울랑동	803 (목화 APT 102동 105호 ~ 1105호, 106호 ~ 1106호), 803 (목화 APT 102동 107호 ~ 1107호, 108호 ~ 1108호)
	제5반	울랑동	746 (목화아파트 103동 101호 ~ 107호, 201호 ~ 207호, 301호 ~ 307호, 401호 ~ 407호), 746 (목화아파트 103동 501호 ~ 507호, 601호 ~ 606호, 701호 ~ 706호, 801호 ~ 805호, 903호 ~ 905호)
	제6반	울랑동	747 (두진아파트 101동 101호 ~ 605호), 747 (두진아파트 101동 106호 ~ 610호)
	제7반	울랑동	747 (두진아파트 102동 101호 ~ 605호, 상가), 747 (두진아파트 102동 106호 ~ 610호)
제7통	제1반	울랑동	1578 ~ 1613
	제2반	울랑동	1617 ~ 1651
	제3반	울랑동	1708 ~ 1711, 1715, 1717 ~ 1734, 1735 ~ 1777
	제4반	울랑동	1831 ~ 1867, 1870
	제5반	울랑동	1868 (신라맨션아파트 1동 101호 ~ 507호, 상가, 108호 ~ 512호)
	제6반	울랑동	1868 (신라맨션아파트 2동 101호 ~ 507호, 108호 ~ 513호, 115호 ~ 519호)
제8통	제1반	사천동	229의2 (대창아파트 101동 101호 ~ 111호, 201호 ~ 211호, 301호 ~ 311호, 상가), 229의22, 412의1, 413의3, 229의2 (대창아파트 101동 401호 ~ 411호, 501호 ~ 511호, 601호 ~ 611호)
	제2반	사천동	229의2 (대창아파트 101동 701호 ~ 711호, 801호 ~ 811호, 901호 ~ 911호), 229의2 (대창아파트 101동 1001호 ~ 1011호, 1102호 ~ 1111호, 1202호 ~ 1210호) 229의2 (대창아파트 101동 1301호 ~ 1310호, 1402호 ~ 1410호, 1502호 ~ 1510호)
	제3반	사천동	229의2 (대창아파트 102동 101호 ~ 109호, 201호 ~ 209호, 301호 ~ 309호), 229의2 (대창아파트 102동 401호 ~ 409호, 501호 ~ 509호, 601호 ~ 609호)
	제4반	사천동	229의2 (대창아파트 102동 701호 ~ 709호, 801호 ~ 809호, 901호 ~ 909호), 229의2 (대창아파트 102동 1001호 ~ 1009호, 1101호 ~ 1109호, 1202호 ~ 1209호)
	제5반	사천동	229의2 (대창아파트 102동 1302호 ~ 1309호, 1402호 ~ 1409호, 1503호 ~ 1509호), 229의2 (대창아파트 103동 101호 ~ 105호, 201호 ~ 205호, 301호 ~ 305호, 401호 ~ 405호, 501호 ~ 505호)
	제6반	사천동	229의2 (대창아파트 103동 601호 ~ 605호, 701호 ~ 705호, 801호 ~ 805호, 901호 ~ 905호, 1001호 ~ 1005호) 229의2 (대창아파트 103동 1101호 ~ 1105호, 1201호 ~ 1204호, 1301호 ~ 1304호, 1401호 ~ 1404호, 1501호 ~ 1503호)
제9통	제1반	사천동	25의2 (정도드림빌아파트 북향 1층 ~ 4층, 짝수 호수)
	제2반	사천동	25의2 (정도드림빌아파트 북향 5층 ~ 8층, 짝수 호수)
	제3반	사천동	25의2(정도드림빌아파트 북향 9층 ~ 12층, 짝수 호수)
	제4반	사천동	25의2(정도드림빌아파트 북향 13층 ~ 15층, 짝수 호수)
	제5반	사천동	25의2 (정도드림빌아파트 남향 1층 ~ 3층, 홀수 호수)
	제6반	사천동	25의2 (정도드림빌아파트 남향 4층 ~ 6층, 홀수 호수)
	제7반	사천동	25의2 (정도드림빌아파트 남향 7층 ~ 9층, 홀수 호수)
	제8반	사천동	25의2 (정도드림빌아파트 남향 10층 ~ 15층, 홀수 호수)
제10통	제1반	사천동	405의1, 407의2 ~ 407의11, 247의3, 247의8 ~ 247의 10, 408의6, 233의52 ~ 233의93, 254의8, 254의9
	제2반	사천동	233의65 ~ 233의89, 254의1 ~ 254의12, 233의95 ~ 233의 123, 248의1
	제3반	사천동	242의7, 242의8, 243의1 ~ 243의9, 245의2 ~ 245의 13, 246의6 ~ 246의9, 247의13 ~ 247의15, 630의42 ~ 630의 54, 229의5, 236의1
제11통	제1반	사천동	418, 418의1, 418의2, 424의1 ~ 424의3, 426, 427의 1, 427의2, 428의1, 428의2, 437의14, 437의15, 437의8
	제2반	사천동	419의1 ~ 419의9, 420의2 ~ 420의10
	제3반	사천동	233의72 ~ 233의74, 254의10, 408의1 ~ 408의4, 409의1 ~ 409의6, 410의1 ~ 410의8, 411의15, 411의 6 ~ 411의18, 412의2 ~ 412의4, 413의5, 산208, 413의8, 233의197
제12통	제1반	사천동	404의3, 404의4 ~ 404의8, 408, 420, 427의1, 406, 403, 405, 420의4, 421의5, 421의7, 422, 432, 421의1, 422의 408, 420의1, 422의12, 422의5, 422의8, 422의13 ~ 422의25, 423의3, 424, 435, 532
	제2반	사천동	

	제3반	사천동	432의3 ~ 432의16, 440의1, 436의4 ~ 436의15, 440의3, 439의1, 439의4, 483의3, 446의1, 445의1, 444의1, 443의1, 441, 441의1, 441의2
제13통	제1반	사천동	1121, 26의7, 26의10, 174의7, 174의9, 175의1, 181, 180의1 ~ 180의3, 183의1, 185의1, 186, 194, 196의1, 179, 179의1 ~ 179의9
	제2반	사천동	213의6, 214의2, 214의7, 215의1, 219의1, 219의4 220의1, 224, 산23
	제3반	사천동	산27, 산37, 176의2, 176의3, 176의4, 176의5, 177, 177의1, 178의1 ~ 178의4, 204의3, 205의1, 206의3, 207의1, 453, 462 ~ 466, 497의1 ~ 497의3, 496의3, 516 ~ 519, 520, 597의1, 598, 624의12, 624의21 ~ 624의24, 624의3,
제14통	제1반	사천동	120, 120의4, 120의5, 120의9, 114의4, 122의3, 122의4, 116의1, 146의1, 607의1, 619, 114의2, 114의1, 66, 68, 98의2, 99의2, 109의2 ~ 109의8
	제2반	사천동	110의1, 110의2, 113, 113의1, 108의4, 108의6, 산7의1, 산7의3, 산8, 산9, 산24, 22의2, 22의13, 22의15, 25의17, 25의44, 25의51, 25의36, 25의52, 28의2, 29의8, 31의3, 34의1, 36, 40의1, 48의9, 19의2, 19의3
	제3반	사천동	29의10(성가모자원 가, 나동)
	제4반	사천동	26의54
	제5반	사천동	26의56
	제6반	사천동	22의27, 25의123
제15통	제1반	사천동	62의4, 73의2, 81의10, 81의11, 81, 82의1, 86의1, 86의2, 86의3, 86, 88의5
	제2반	사천동	79의2, 79의4, 79의8, 79의9, 79의11, 79의12, 79의14, 79의17, 80의1, 80의2, 80의3, 80의11
	제3반	사천동	4의9, 5, 5의2, 5의3, 10의2, 10의4, 12의4, 15, 15의1, 15의2, 15의3, 17의1 17의6, 17의7, 53, 53의1, 53의6, 58
제16통	제1반	울량동	1804 ~ 1816, 1799, 1800, 1790 ~ 1798
	제2반	울량동	1779 ~ 1789, 1224 ~ 1227, 1232 ~ 1235, 1245 ~ 1249, 1317 ~ 1335, 1872 ~ 1894
	제3반	울량동	1238 (서우아파트 A, B동)
	제4반	울량동	1238 (서우아파트 C, D동), 1209 ~ 1212
	제5반	울량동	1877 (덕성맨션 가동 101호 ~ 706호) 1871 (덕성맨션 나동 101호 ~ 704호)
	제6반	울량동	1871 (덕성맨션 나동 105호 ~ 708호) 1871 (덕성맨션 나동 109호 ~ 710호) (덕성맨션 다동 101호 ~ 503호)
제17통	제1반	울량동	1502 (신라타운 1, 2동), 1513, 1515, 1517 ~ 1519
	제2반	울량동	1502 (신라타운 3, 5동)
	제3반	울량동	1502 (신라타운 6, 7동)
	제4반	울량동	1502 (신라타운 8동), 1483 (신라타운 16동)
	제5반	울량동	1483 (신라타운 17, 18동)
	제6반	울량동	1542 (신라타운 9, 10, 11동), 상가
	제7반	울량동	1542 (신라타운 12, 13, 15동)
제18통	제1반	울량동	1144 (한울3차아파트 301동 101호 ~ 228호 301호 ~ 428호)
	제2반	울량동	1144 (한울3차아파트 301동 501호 ~ 628호 702호 ~ 828호)
	제3반	울량동	1144 (한울3차아파트 301동 902호 ~ 1028호, 1102호 ~ 1214호)
	제4반	울량동	1135 ~ 1143, 1145 (한울3차아파트 302동 101호 ~ 215호), 1135 ~ 1143, 1145 (한울3차아파트 302동 301호 ~ 415호)
	제5반	울량동	1135 ~ 1143, 1145 (한울3차아파트 302동 501호 ~ 615호), 1135 ~ 1143, 1145 (한울3차아파트 302동 701호 ~ 815호)
	제6반	울량동	1135 ~ 1143, 1145 (한울3차아파트 302동 901호 ~ 1015호), 1135 ~ 1143, 1145 (한울3차아파트 302동 1101호 ~ 1215호)
	제7반	울량동	1135 ~ 1143, 1145 (한울3차아파트 302동 1301호 ~ 1515호)
제19통	제1반	사천동	392의11, 400의5, 401의2, 401의9, 401의11, 401의16, 401의18 ~ 401의25, 401의27, 401-29 401의30, 401의32 ~ 401의34, 401의36, 401의38 ~ 401의40, 401의42, 401의43, 403의8, 403의9, 403의11, 403의12
	제2반	사천동	403의16, 정원연립 가동, 나동
	제3반	사천동	391의2, 391의6 ~ 391의9, 391의11 ~ 391의14, 391의17 ~ 391의21, 391의23, 391의24, 403의6, 403의13, 403의16, 645의9

	제4반	사천동	392의19, 393의2, 393의8, 393의12 ~ 393의14, 394의2, 394의4, 394의9, 394의 14, 394의16 ~ 394의19, 394의21 ~ 394의26, 394의29, 394의30, 394의33, 394의34, 395의15, 396의3, 630의2, 669, 671, 675 ~ 681
제20통	제1반	사천동	449의3 (덕성그린아파트 201호 ~ 230호, 301호 ~ 330호, 상가)
	제2반	사천동	449의3 (덕성그린아파트 401호 ~ 430호, 501호 ~ 530호)
	제3반	사천동	449의3 (덕성그린아파트 601호 ~ 630호, 701호 ~ 730호)
	제4반	사천동	449의3 (덕성그린아파트 801호 ~ 830호, 901호 ~ 930호)
	제5반	사천동	449의3 (덕성그린아파트 1001호 ~ 1030호, 1101호 ~ 1130호)
	제6반	사천동	449의3 (덕성그린아파트 1201호 ~ 1230호, 1301호 ~ 1330호)
	제7반	사천동	449의3 (덕성그린아파트 1401호 ~ 1430호, 1501호 ~ 1530호)
제21통	제1반	울량동	1265 (효성아파트 101동 101호 ~ 108호, 201호 ~ 208호, 301호 ~ 308호) 1265 (효성아파트 101동 401호 ~ 408호, 501호 ~ 508호, 601호 ~ 608호)
	제2반	울량동	1265 (효성아파트 101동 701호 ~ 708호, 801호 ~ 808호, 901호 ~ 908호) 1265 (효성아파트 101동 1001호 ~ 1008호, 1101호 ~ 1108호, 1201호 ~ 1208호, 1301호 ~ 1308호) 1159, 1178, 1266, 1269, 1271 ~ 1277, 1279 ~ 1284,
	제3반	울량동	1264 (효성아파트 102동 101호 ~ 112호, 201호 ~ 212호)
			1264 (효성아파트 102동 301호 ~ 312호, 401호 ~ 412호)
	제4반	울량동	1264 (효성아파트 102동 501호 ~ 512호, 601호 ~ 612호), 1264 (효성아파트 102동 701호 ~ 712호 801호 ~ 812호)
	제5반	울량동	1264 (효성아파트 102동 901호 ~ 912호, 1001호 ~ 1012호), 1264 (효성아파트 102동 1101호 ~ 1112호, 1201호 ~ 1212호, 1301호 ~ 1309호, 1401호 ~ 1405호)
	제6반	울량동	1264 (효성아파트 103동 101호 ~ 114호, 201호 ~ 214호, 상가), 1264 (효성아파트 103동 301호 ~ 314호, 401호 ~
	제7반	울량동	1264 (효성아파트 103동 501호 ~ 514호, 601호 ~ 614호), 1264 (효성아파트 103동 701호 ~ 714호, 801호 ~ 814호)
제8반	울량동	1264 (효성아파트 103동 901호 ~ 914호, 1001호 ~ 1014호), 1264 (효성아파트 103동 1101호 ~ 1113호, 1201호 ~ 1213호, 1301호 ~ 1312호)	
제22통	제1반	사천동	231의4 (보성아파트 1동 101 ~ 501호, 102호 ~ 502호, 103호 ~ 503호, 105호 ~ 505호, 106호 ~ 506호, 107호 ~ 507호, 108호 ~ 508호, 109호 ~ 509호, 110호 ~ 510호, 111호 ~
	제2반	사천동	231의4 (보성아파트 2동 101 ~ 501호, 102호 ~ 502호, 103호 ~ 503호, 105호 ~ 505호, 106호 ~ 506호, 107호 ~ 507호, 108호 ~ 508호, 109호 ~ 509호, 110호 ~ 510호, 111호 ~ 511호)
	제3반	사천동	231의4 (보성아파트 3동 101 ~ 501호, 102호 ~ 502호, 103호 ~ 503호, 105호 ~ 505호, 106호 ~ 506호, 107호 ~ 507호, 108호 ~ 508호, 109호 ~ 509호, 110호 ~ 510호, 111호 ~
	제4반	사천동	231의4 (보성아파트 5동 101 ~ 507호, 상가, 7동 101호 ~ 507호), 233의11
	제5반	사천동	231의4 (보성아파트 6동 101 ~ 501호, 102호 ~ 502호, 103호 ~ 503호, 105호 ~ 505호, 106호 ~ 506호, 107호 ~ 507호, 108호 ~ 508호, 109호 ~ 509호, 110호 ~ 510호, 111호 ~
제23통	제1반	울량동	745 (한울아파트 101호 ~ 609호)
	제2반	울량동	745 (한울아파트 701호 ~ 1008호)
	제3반	울량동	716 ~ 724, 743, 748, 749, 750
	제4반	울량동	724의1 (한울2차아파트 101호 ~ 1204호)
	제5반	울량동	724의1 (한울2차아파트 105호 ~ 1208호)
제24통	제1반	사천동	444의1 (대창2차아파트 101호 ~ 110호, 201호 ~ 210호, 301호 ~ 310호)
	제2반	사천동	444의1 (대창2차아파트 401호 ~ 410호, 501호 ~ 510호, 601호 ~ 610호)
	제3반	사천동	444의1 (대창2차아파트 701호 ~ 710호, 801호 ~ 810호, 901호 ~ 909호)
	제4반	사천동	444의1 (대창2차아파트 1001호 ~ 1109호, 1101호 ~ 1109호, 1201호 ~ 1209호)
	제5반	사천동	444의1 (대창2차아파트 1301호 ~ 1309호, 1401호 ~ 1409호, 1501호 ~ 1508호)
제25통	제1반	사천동	437 (동아아파트 101동)
	제2반	사천동	437 (동아아파트 102동)
	제3반	사천동	437 (동아아파트 103동 101호 ~ 1504호)

	제4반	사천동	437 (동아아파트 103동 105호 ~ 1100호)
	제5반	사천동	437 (동아아파트 104동)
	제6반	사천동	437 (동아아파트 105동, 상가)
제26통	제1반	사천동	413의2 (동아2차아파트 201동) 413의1 (동아2차아파트 202동)
	제2반	사천동	228 (동아2차아파트 203동)
	제3반	사천동	228 (동아2차아파트 207동)
	제4반	사천동	228 (동아2차아파트 204동 101호 ~ 1504호)
	제5반	사천동	228 (동아2차아파트 204동 105호 ~ 1508호)
	제6반	사천동	228 (동아2차아파트 205동, 206동)
제27통	제1반	울량동	1466, 1552, 1553, 1555, 1563 ~ 1566, 1456 ~ 1465
	제2반	울량동	1418 ~ 1421, 1439 ~ 1454
	제3반	울량동	1422 ~ 1431, 1433 ~ 1436, 1437, 1438, 1473, 1474, 1477, 1480
	제4반	울량동	1292 (신라임대독신자아파트 가동 206호 ~ 211호, 301호 ~ 311호, 401호 ~ 411호, 501호 ~ 511호, 601호 ~ 611호)
	제5반	울량동	1292 (신라임대독신자아파트 가동 701호 ~ 711호, 상가, 801호 ~ 811호, 901호 ~ 910호, 1001호 ~ 1009호, 1101호 ~ 1109호, 1201호 ~ 1209호, 1301호 ~ 1308호, 1401호 ~ 1409호)
	제6반	울량동	1292 (신라임대독신자아파트 나동 201호 ~ 209호, 301호 ~ 311호, 401호 ~ 411호, 501호 ~ 511호, 601호 ~ 611호, 701호 ~ 711호)
	제7반	울량동	1292 (신라임대독신자아파트 나동 801호 ~ 811호, 901호 ~ 911호, 1001호 ~ 1010호, 1101호 ~ 1110호, 1201호 ~ 1210호, 1301호 ~ 1310호, 1401호 ~ 1405호)
제28통	제1반	울량동	1569(동아아파트 1동 101호 ~ 1504호)
	제2반	울량동	1569(동아아파트 1동 105호 ~ 1508호)
	제3반	울량동	1569(동아아파트 1동 109호 ~ 1510호)
	제4반	울량동	1569(동아아파트 2동 101호 ~ 1504호)
	제5반	울량동	1569(동아아파트 2동 105호 ~ 1508호)
	제6반	울량동	1569(동아아파트 3동 101호 ~ 1504호)
제29통	제1반	울량동	867(진화아파트101호 ~ 1201호, 102호 ~ 1202호) 진화아파트상가, 867의1, 867의2, 868
	제2반	울량동	867(진화아파트 103호 ~ 1403호, 104호 ~ 1404호)
	제3반	울량동	867(진화아파트 105호 ~ 1405호, 106호 ~ 1406호)
	제4반	울량동	867(진화아파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5반	울량동	867(진화아파트 109호 ~ 1409호, 110호 ~ 1210호)
제30통	제1반	울량동	863 (럭키아파트 1동 101호 ~ 1504호)
	제2반	울량동	863 (럭키아파트 1동 105호 ~ 1508호)
	제3반	울량동	863 (럭키아파트 2동 101호 ~ 1504호)
	제4반	울량동	863 (럭키아파트 2동 105호 ~ 1508호)
제31통	제1반	울량동	863 (럭키아파트 3동 101호 ~ 1504호)
	제2반	울량동	863 (럭키아파트 3동 105호 ~ 1508호) 519의3, 864
	제3반	울량동	863 (럭키아파트 4동 101호 ~ 1504호)
	제4반	울량동	863 (럭키아파트 4동 105호 ~ 1508호)
제32통	제1반	울량동	863 (럭키아파트 5동 101호 ~ 1504호)
	제2반	울량동	863 (럭키아파트 5동 105호 ~ 1508호)
	제3반	울량동	863 (럭키아파트 6동 101호 ~ 1504호)
	제4반	울량동	863 (럭키아파트 6동 105호 ~ 1506호,상가)
	제5반	울량동	869 (럭키4차아파트 7동 101호 ~ 11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303호, 104호 ~ 1104호)
	제6반	울량동	869 (럭키3차아파트 8동 101호 ~ 901호, 102호 ~ 902호, 103호 ~ 903호, 104호 ~ 904호), 870상가, 871상가
제33통	제1반	울량동	862 (삼정아파트 101동 101호 ~ 13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울량동	862 (삼정아파트 101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제3반	울량동	862 (삼정아파트 101동 109호 ~ 1509호, 110호 ~ 1310호)
	제4반	울량동	862 (삼정아파트 102동 101호 ~ 908호)
제34통	제1반	울량동	744 (부강아파트 101호 ~ 124호, 210호 ~ 226호)
	제2반	울량동	744 (부강아파트 301호 ~ 326호, 401호 ~ 426호)

	제3반	울랑동	744 (부강아파트 501호 ~ 526호, 601호 ~ 626호)
	제4반	울랑동	744 (부강아파트 701호 ~ 726호, 801호 ~ 826호)
	제5반	울랑동	744 (부강아파트 901호 ~ 926호, 1001호 ~ 1012호)
제35통	제1반	사천동	683 하우스토리 101동 101호~1701호, 102호~1602호, 103호~1803호, 104호~1704호
	제2반	사천동	683 하우스토리 102동 101호~1701호, 102호~1802호, 103호~1803호, 104호~1704호
	제3반	사천동	683 하우스토리 103동 101호~1801호, 102호~1802호
	제4반	사천동	683 하우스토리 104동 101호~1801호, 102호~1402호, 103호~1803호
	제5반	사천동	683 하우스토리 105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제6반	사천동	683 하우스토리 106동 101호~1501호, 102호~2002호, 103호~2003호, 204호~1504호, 443의3, 444의3, 446의4, 446의27, 446의28, 447, 456의6, 456의34
제36통	제1반	울랑동	742 (삼정아파트 201동 101호 ~ 901호, 102호 ~ 1005호)
	제2반	울랑동	742 (삼정아파트 201동 106호 ~ 1009호, 110호 ~ 910호)
	제3반	울랑동	742 (삼정아파트 202동 101호 ~ 901호, 102호 ~ 1005호)
	제4반	울랑동	742 (삼정아파트 202동 106호 ~ 1009호, 110호 ~ 910호)
	제5반	울랑동	742 (삼정아파트 203동 101호 ~ 901호, 102호 ~ 1004호)
	제6반	울랑동	742 (삼정아파트 203동 105호 ~ 1008호)
제37통	제1반	울랑동	1205 (성원아파트 101동 101호 ~ 1504호)
	제2반	울랑동	1205 (성원아파트 101동 105호 ~ 1508호)
	제3반	울랑동	1205 (성원아파트 103동 101호 ~ 1504호, 상가), 1198 ~
	제4반	울랑동	1204 (성원아파트 102동 101호 ~ 1504호)
	제5반	울랑동	1204 (성원아파트 102동 105호 ~ 1507호)
	제6반	울랑동	1203 (성원아파트 104동 101호 ~ 1004호, 105호 ~ 1008호)
제38통	제1반	울랑동	905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 ~ 11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204호, 105호 ~ 1205호, 106호 ~ 1106호)
	제2반	울랑동	905 (현대아파트 102동 101호 ~ 1104호)
	제3반	울랑동	905 (현대아파트 103동 101호 ~ 1004호)
	제4반	울랑동	908 (현대아파트 201동 101호 ~ 10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204호, 105호 ~ 1205호, 106호 ~ 1006호)
	제5반	울랑동	908 (현대아파트 202동 101호 ~ 1004호)
	제6반	울랑동	908 (현대아파트 203동 101호 ~ 1004호)
제39통	제1반	울랑동	890 (현대아파트 3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402호, 103호 ~ 1404호)
	제2반	울랑동	890 (현대아파트 302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204호)
	제3반	울랑동	890 (현대아파트 303동 101호 ~ 1302호, 103호 ~ 1304호, 105호 ~ 1306호)
	제4반	울랑동	890 (현대아파트 304동 101호 ~ 11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203호, 104 ~ 1204호, 현대상가)
제40통	제1반	울랑동	891 (현대아파트 401동 101호 ~ 13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울랑동	891 (현대아파트 401동 105호 ~ 1505호, 106호 ~ 1306호)
	제3반	울랑동	891 (현대아파트 402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204호)
	제4반	울랑동	891 (현대아파트 403호 101호 ~ 10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5반	울랑동	891 (현대아파트 403호 105호 ~ 1505호, 106호 ~ 1006호)
제41통	제1반	울랑동	1184 (삼성아파트 101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울랑동	1184 (삼성아파트 101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3반	울랑동	1184 (삼성아파트 102동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404호)
	제4반	울랑동	1184 (삼성아파트 102동 105호 ~ 1405호, 106호 ~ 1406호, 107호 ~ 1407호, 108호 ~ 1408호)
	제5반	울랑동	1186 (삼성아파트 103동 101호 ~ 1301호, 102호 ~ 1302호, 상가, 103호 ~ 1303호, 104호 ~ 1304호)
	제6반	울랑동	1186 (삼성아파트 103동 105호 ~ 1305호, 106호 ~ 1306호, 107호 ~ 1307호, 108호 ~ 1308호)
	제7반	울랑동	1186 (삼성아파트 104동 101호 ~ 12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203호, 104호 ~ 1204호, 105호 ~ 1205호, 106호 ~ 1206호)

제42통	제1반	울량동	1180 (삼성아파트 105동 101호 ~ 1201호, 102호 ~ 1202호, 103호 ~ 1203호, 104호 ~ 1204호)
	제2반	울량동	1180 (삼성아파트 105동 105호 ~ 1205호, 106호 ~ 1206호, 107호 ~ 1207호, 108호 ~ 1208호)
	제3반	울량동	1180 (삼성아파트 106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유치원, 유원장)
	제4반	울량동	1180 (삼성아파트 106동 103호 ~ 1504호, 105호 ~ 1506호)
	제5반	울량동	1182 (삼성아파트 107동 101호 ~ 1401호, 102호 ~ 1402호, 103호 ~ 1403호, 104호 ~ 1404호, 105호 ~ 1405호, 106호 ~ 1406호)
	제6반	울량동	1182 (삼성아파트 108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7반	울량동	1182 (삼성아파트 108동 105호 ~ 1505호, 106호 ~ 1506호, 107호 ~ 1507호, 108호 ~ 1508호)
제43통	제1반	울량동	1206 (현대아파트 11동 101호 ~ 11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2반	울량동	1206 (현대아파트 11동 105호 ~ 1505호, 106호 ~ 1406호)
	제3반	울량동	1206 (현대아파트 12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4반	울량동	1206 (현대아파트 13동 101호 ~ 15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4호 ~ 1004호), 1195
제44통	제1반	울량동	1260 (현대아파트 14동 101호 ~ 1401호, 102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2반	울량동	1260 (현대아파트 14동 105호 ~ 1506호, 107호 ~ 1308호)
	제3반	울량동	1260 (현대아파트 15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4호)
	제4반	울량동	1260 (현대아파트 16동 101호 ~ 1101호, 102호 ~ 1302호, 103호 ~ 1504호)
	제5반	울량동	1260 (현대아파트 16동 105호 ~ 1506호, 107호 ~ 1508호, 상가), 1261
제45통	제1반	울량동	1052 (효성아파트 101호 ~ 309호)
	제2반	울량동	1052 (효성아파트 401호 ~ 609호)
	제3반	울량동	1052 (효성아파트 701호 ~ 909호)
	제4반	울량동	1052 (효성아파트 1004호 ~ 1509호)
	제5반	울량동	1034 ~ 1048
제46통	제1반	울량동	990 ~ 997
	제2반	울량동	998 ~ 1010
	제3반	울량동	1011 ~ 1012의2
	제4반	울량동	1013 ~ 1022
	제5반	울량동	1023~1033-5
제47통	제1반	울량동	725 ~ 741
	제2반	울량동	822 ~ 836
	제3반	울량동	837 ~ 850
	제4반	울량동	851 ~ 860, 872, 873
	제5반	울량동	874 ~ 882, 980 ~ 989
	제6반	울량동	752의4 (재원아파트)
제48통	제1반	울량동	710 (대창아파트 101호 ~ 505호)
	제2반	울량동	710 (대창아파트 601호 ~ 1005호)
	제3반	울량동	710 (대창아파트 1101호 ~ 1505호)
	제4반	울량동	707, 708, 709, 712, 713, 714, 715 (대창아파트 205호 ~ 1505호, 206호 ~ 1506호)
	제5반	울량동	715(대창아파트 201호 ~ 1501호, 202호 ~ 1502호)
	제6반	울량동	715(대창아파트 203호 ~ 1503호, 204호 ~ 1504호)
제49통	제1반	울량동	763 ~ 770, 771 ~ 788, 893, 894
	제2반	울량동	752 ~ 762
	제3반	울량동	789 ~ 802, 805
	제4반	울량동	806 ~ 821, 883 ~ 889
제50통	제1반	울량동	1656 ~ 1658, 1661 ~ 1665, 1667 ~ 1674, 1712 ~ 1714,
	제2반	울량동	1678, 1680, 1682 ~ 1688, 1690 ~ 1692, 1694, 1695, 1701 ~ 1706
	제3반	울량동	1306, 1341, 1345 ~ 1347, 1349 ~ 1361, 1363 ~ 1392, 1394~1414, 1652, 1655, 1667 ~ 1675, 1677 ~ 1692, 1697, 1699, 1713, 1722, 1723, 1889, 1901



	제4반	울량동	1362 (대창5차아파트 101호 ~ 410호)
	제5반	울량동	1362 (대창5차아파트 501호 ~ 809호)
	제6반	울량동	1362 (대창5차아파트 901호 ~ 1207호)
	제7반	울량동	1393 (통일신세대아파트 101호 ~ 1001호, 102호 ~ 1402호, 상가, 103호 ~ 1503호, 104호 ~ 1504호)
	제8반	울량동	1393 (통일신세대아파트 105호 ~ 1405호, 106호 ~ 1406호, 107호 ~ 1407호, 108호 ~ 1208호, 109호 ~ 1109호, 110호 ~ 810호)
제51통	제1반	사천동	231의1 (신동아아파트 1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5호)
	제2반	사천동	231의1 (신동아아파트 1동 106호 ~ 1507호, 108호 ~ 1509호)
	제3반	사천동	231의1 (신동아아파트 2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5호)
	제4반	사천동	229의1 (신동아아파트 3동 101호 ~ 1107호)
	제5반	사천동	229의1 (신동아아파트 5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3호, 105호 ~ 1505호, 106호 ~ 1507호)
	제6반	사천동	229의1 (신동아아파트 6동 101호 ~ 1302호, 103호 ~ 1305호, 106호 ~ 1007호)
제52통	제1반	사천동	231의1 (신동아아파트 7동 101호 ~ 1502호)
	제2반	사천동	231의1 (신동아아파트 7동 103호 ~ 1505호)
	제3반	사천동	231의1 (신동아아파트 7동 106호 ~ 1507호)
	제4반	사천동	231의1 (신동아아파트 8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5호)
	제5반	사천동	231의1 (신동아아파트 8동 106호 ~ 1507호, 108호 ~ 1509호)
	제6반	사천동	231의1 (신동아아파트 9동 101호 ~ 1402호, 103호 ~ 1505호)
제53통	제1반	사천동	231의1 (신동아아파트 10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5호)
	제2반	사천동	231의1 (신동아아파트 10동 106호 ~ 1507호, 108호 ~ 1509호)
	제3반	사천동	231의1(신동아아파트 10동 110호 ~ 1511호)
	제4반	사천동	231의1 (신동아아파트 11동 101호 ~ 1302호, 103호 ~ 1505호)
	제5반	사천동	231의1 (신동아아파트 12동 101호 ~ 1502호, 103호 ~ 1505호)
	제6반	사천동	231의1 (신동아아파트 12동 106호 ~ 1507호), 233의49
제54통	제1반	울량동	861 (두진백로그린타운 101동 112호 ~ 129호, 212호 ~ 229호, 312호 ~ 329호, 412호 ~ 429호)
	제2반	울량동	861 (두진백로그린타운 101동 512호 ~ 529호, 612호 ~ 629호, 712호 ~ 729호, 813호 ~ 829호)
	제3반	울량동	861 (두진백로그린타운 101동 913호 ~ 929호, 1014호 ~ 1029호, 1114호 ~ 1128호, 1214호 ~ 1228호, 1315호 ~ 1327호, 1415호 ~ 1427호, 1516호 ~ 1526호)
	제4반	울량동	861 (두진백로그린타운 101동 101호 ~ 111호, 201호 ~ 211호, 301호 ~ 311호, 401호 ~ 411호, 501호 ~ 511호)
	제5반	울량동	861 (두진백로그린타운 101동 601호 ~ 611호, 701호 ~ 711호, 801호 ~ 811호, 901호 ~ 910호, 1001호 ~ 1010호, 1102호 ~ 1110호)
	제6반	울량동	861 (두진백로그린타운 101동 1202호 ~ 1209호, 1302호 ~ 1309호, 1402호 ~ 1409호, 1503호 ~ 1509호)
제55통	제1반	사천동	684 하우스토리 201동 201호 ~ 1601호, 102호 ~ 1802호, 103호 ~ 1803호, 104호 ~ 1404호
	제2반	사천동	684 하우스토리 202동 201호 ~ 1601호, 102호 ~ 1802호, 103호 ~ 1803호, 104호 ~ 1704호
	제3반	사천동	684 하우스토리 203동 101호 ~ 1601호, 102호 ~ 1802호, 103호 ~ 1803호, 104호 ~ 1704호
	제4반	사천동	684 하우스토리 204동 101호 ~ 1501호, 102호 ~ 1402호, 103호 ~ 1703호
	제5반	사천동	684 하우스토리 205동 101호 ~ 1701호, 102호 ~ 1802호, 103호 ~ 1803호
	제6반	사천동	684 하우스토리 206동 101호 ~ 1701호, 102호 ~ 1702호, 103호 ~ 1703호, 446의9, 446의 13, 446의19, 456의33
	제7반	사천동	684 하우스토리 207동 101호 ~ 1701호, 102호 ~ 1802호, 103호 ~ 1803호, 204호 ~ 1204호
	제8반	사천동	684 하우스토리 208동 101호 ~ 1401호, 102호 ~ 1802호, 103호 ~ 1803호, 204호 ~ 1304호
제56통	제1반	울량동	1053~1062의2
	제2반	울량동	1063~1075의1
	제3반	울량동	1076~1089
	제4반	울량동	1090~1099

오근장동	1	제1통	제1반	외남동	167의1 ~ 167의8, 168, 169의1 ~ 169의12, 170, 170의1, 170의2, 175의2
			제2반	외남동	141, 143, 145의1 ~ 145의4, 262의2
			제3반	외남동	121의2, 133의2, 133의3, 276의1
		제2통	제1반	외남동	179, 179의1, 180 ~ 182
			제2반	외남동	185 ~ 187, 190, 192, 192의1, 193, 194
			제3반	외남동	105의1, 112의1, 113, 113의2, 114의2, 115, 116, 118,
			제4반	외남동	85의2, 85의4, 85의5, 86, 87의1 ~ 87의6, 88, 90, 92
		제3통	제1반	외평동	58, 60의1 ~ 60의3, 61, 72 ~ 76, 79의1, 83의1, 84, 85, 86의1, 101, 101의1, 102의1, 102의2
			제2반	외평동	236의1, 245, 249, 251, 259의3, 259의4, 260의1 ~ 260의3, 260의5, 261의1, 261의2, 262의1, 262의2, 262의3,
			제3반	외평동	217, 262, 4, 262의6, 263, 265, 266, 282, 285
			제4반	외평동	280의1, 280의2, 296, 297의1, 297의2, 297의4, 299 ~ 303, 306
			제5반	외평동	265의7 ~ 265의10, 291의1, 297의3, 297의4, 297의7, 298, 305의2, 305의3, 308, 309, 311
			제6반	외평동	290의2, 291, 291의10, 294의2 ~ 294의8, 295의1 ~ 295의
			제7반	외평동	312의1 ~ 312의4, 314 ~ 316, 317의1 ~ 317의3, 319의1 ~ 310의3, 342 ~ 326
		제4통	제1반	외하동	75, 76, 130, 131, 131의1, 132 ~ 134, 162의1 ~ 162의5
			제2반	외하동	124의3, 129, 139 ~ 141, 141의1, 143의1
			제3반	외하동	135, 137 ~ 139, 144의1, 146, 147, 157, 158, 160의1,
			제4반	외하동	144의2 ~ 144의5, 150, 152, 151의1, 152, 152의1, 152의2, 153 ~ 155, 438의6, 439의7
		제5통	제1반	오동동	산7, 17, 19, 23, 6, 8, 29, 30, 33, 34, 36 ~ 38, 40, 44, 47, 52, 66
			제2반	오동동	204, 205, 20 ~ 210, 2197
			제3반	오동동	19, 25, 27, 32, 35, 39, 41 ~ 43, 45, 50
			제4반	오동동	258
			제5반	오동동	247 ~ 253
		제6통	제1반	오동동	5, 312, 313, 317, 383, 384
			제2반	오동동	308 ~ 312, 314, 325, 336, 375, 380
		제7통	제1반	정북동	57의1, 75, 75의1, 75의2, 76, 80, 81의1 ~ 81의6, 82의1 ~ 82의5, 91의1, 91의6, 92
			제2반	정북동	85의2 ~ 85의7, 86, 87, 88의3 ~ 88의7, 89, 90의1, 90의5, 91의7 ~ 91의9, 91의11, 91의12, 93, 93의1, 123, 124, 124의1 ~ 124의4, 125, 126
			제3반	정북동	119의1, 121의1 ~ 121의4, 122, 127의1, 127의2, 128 ~ 130, 130의1, 131, 132, 133의1 ~ 133의5, 134의1 ~ 134의
		제8통	제1반	정상동	120, 148, 154, 161
			제2반	정상동	120, 148, 154, 161
		제9통	제1반	정상동	5, 112, 117, 118, 123, 155, 518
			제2반	정상동	5, 112, 115, 118, 125, 513
		제10통	제1반	정하동	1, 15, 16, 39, 40, 98, 103
			제2반	정하동	15, 16, 39, 40, 71, 98, 103
			제3반	정하동	16, 17, 36, 39, 40, 99, 100
			제4반	정하동	15 ~ 17, 40, 96, 98, 100 ~ 102
			제5반	정하동	15, 16, 36, 96, 100, 101, 103
			제6반	정하동	15 ~ 17, 98, 101, 104, 135의1
		제11통	제1반	주중동	138 ~ 138의7
			제2반	주중동	산79의7 ~ 산79의10, 128 ~ 128의4, 129의1, 129의2
			제3반	주중동	산79의2, 130의1 ~ 135의17
			제4반	주중동	산79의1, 156의9, 156의13 ~ 156의16, 156의18, 158의2, 158의21, 158의22, 158의24 ~ 158의26, 161의20 ~ 166의22, 178의2, 178의3, 181의2 ~ 182의5
		제12통	제1반	주중동	319
제2반	주중동		478, 479		
제3반	주중동		454, 457		
제4반	주중동		425		
제13통	제1반	주중동	92, 125, 126의2, 129, 130, 132		

	제2반	주중동	265
	제3반	주중동	263, 278, 279, 284
	제4반	주중동	581의4(화인연립 A동 101호 ~ 412호)
	제5반	주중동	581의4(화인연립 B동 101호 ~ 414호)
	제6반	주중동	581의4(화인연립 C동 101호 ~ 412호)
제14통	제1반	주성동	262의4, 279의3, 279의4, 281의1 ~ 281의13
	제2반	주성동	47, 52의2, 52의3, 53의2, 56의1, 56의2, 57의2, 58 ~ 61, 62의2, 63의1, 62의4, 63의9, 65, 68, 69의3, 70의2
	제3반	주성동	170, 226, 229, 230의2, 230의3, 234의1, 234의3 ~ 234의5, 236, 236의2, 241의2, 242, 243, 244의2 ~ 224의4
	제4반	주성동	163의4, 164의18, 245, 246의1, 246의2, 247의2, 247의3, 247의5, 291, 293의1, 293의2, 293의4
제15통	제1반	외남동	228의1 ~ 228의4, 233의1., 233의3, 233의4, 237의3, 237의4, 238의1, 238의6, 238의8, 238의9, 239의3, 239의4, 239의7, 240의1 ~ 240의3
	제2반	외남동	28의5 ~ 228의8, 251의4, 253의1, 253의3 ~ 253의7, 254의1, 254의2, 261의3, 261의4
	제3반	외남동	228의11 ~ 228의30
제16통	제1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01동 201호 ~ 2501호, 202호 ~ 2502호, 203호 ~ 2503호
	제2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02동 201호 ~ 2501호, 202호 ~ 2502호, 203호 ~ 2503호
	제3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03동 201호 ~ 2501호, 202호 ~ 2502호
	제4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03동 103호 ~ 2503호, 104호 ~ 2504호
	제5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04동 101호 ~ 2501호, 102호 ~ 2502호
	제6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04동 103호 ~ 2503호, 104호 ~ 2504호
제17통	제1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05동 101호 ~ 2201호, 102호 ~ 2202호
	제2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05동 103호 ~ 2203호, 104호 ~ 2204호
	제3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06동 101호 ~ 2301호, 102호 ~ 2302호
	제4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06동 103호 ~ 2303호, 104호 ~ 2304호
	제5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07동 101호 ~ 2501호, 102호 ~ 2502호
	제6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07동 103호 ~ 2503호, 104호 ~ 2504호
제18통	제1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08동 101호 ~ 2401호, 102호 ~ 2402호
	제2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08동 103호 ~ 2403호, 204호 ~ 2404호
	제3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09동 101호 ~ 2401호, 102호 ~ 2402호
	제4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09동 103호 ~ 2403호, 104호 ~ 2404호
	제5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10동 101호 ~ 2301호, 102호 ~ 2302호
	제6반	주성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4블럭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410동 103호 ~ 2203호, 104호 ~ 2204호
제19통	제1반	주중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1블럭 청주율량2 LH 1단지 아파트 101
	제2반	주중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1블럭 청주율량2 LH 1단지 아파트 102동 101호~2003호
	제3반	주중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1블럭 청주율량2 LH 1단지 아파트 102동 104호~2005호
	제4반	주중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1블럭 청주율량2 LH 1단지 아파트 102동 106호~2007호
	제5반	주중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1블럭 청주율량2 LH 1단지 아파트 103동 201호~2003호
	제6반	주중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1블럭 청주율량2 LH 1단지 아파트 103동 204호~2005호
	제7반	주중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1블럭 청주율량2 LH 1단지 아파트 103동 206호~2007호
제20통	제1반	주중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1블럭 청주율량2 LH 1단지 아파트 104동 101호~2003호
	제2반	주중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1블럭 청주율량2 LH 1단지 아파트 104동 104호~2005호

	제3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1블록 청주율량2 LH 1단지 아파트 104동 106호~2007호
	제4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1블록 청주율량2 LH 1단지 아파트 105동 101호~1303호
	제5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1블록 청주율량2 LH 1단지 아파트 105동 104호~1306호
제21통	제1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1동 101호~1404호
	제2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1동 105호~1408호
	제3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2동 101호~2003호
	제4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2동 104호~2005호
	제5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2동 106호~2007호
	제6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3동 101호~2003호
	제7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3동 104호~2005호
	제8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3동 106호~2007호
제22통	제1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4동 101호~2002호
	제2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4동 303호~2004호
	제3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4동 105호~2006호
	제4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4동 107호~2009호
	제5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5동 101호~2002호
	제6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5동 203호~2004호
	제7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5동 105호~2006호
	제8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5동 307호~2009호
제23통	제1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6동 101호~2003호
	제2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6동 104호~2005호
	제3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6동 106호~2007호
	제4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7동 101호~1303호
	제5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7동 104호~1306호
	제6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8동 101호~2003호
	제7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8동 104호~2005호
	제8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2블록 청주율량2 LH 2단지 아파트 208동 106호~2007호
제24통	제1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3블록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301동 201호~2502호
	제2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3블록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301동 203호~2504호
	제3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3블록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302동 201호~2502호
	제4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3블록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302동 203호~2504호
	제5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3블록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303동 201호~2502호
	제6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3블록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303동 203호~2504호
제25통	제1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3블록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304동 201호~2302호
	제2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3블록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304동 203호~2304호
	제3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3블록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305동
	제4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3블록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306동 201호~2202호

			제5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3블록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306동 203호~2204호
		제26통	제1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3블록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307동 201호~2302호
			제2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3블록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307동 203호~2304호
			제3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3블록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308동 201호~2302호
			제4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3블록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308동 203호~2304호
			제5반	주중동	울량2택지개발지구 3블록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309동

[별표 2]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총계	3읍10면	578	578	1747	
소계	5면	166	166	453	
상당구	낭성면	관정1리	1	제1반	(221 ~ 227)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24,
				제2반	(36 ~ 211) 36, 146, 211
				제3반	(153, 205) 135, 137, 138, 144, 204, 205
				제4반	(172 ~ 221) 172, 175, 190, 202, 211
		관정2리	1	제1반	(44 ~ 441) 44, 49, 51, 57, 441
				제2반	(229 ~ 441) 229, 430, 438, 441
				제3반	(417 ~ 420) 417, 418, 428
				제4반	(337 ~ 417) 337, 536, 359, 418
		귀래리	1	제1반	(187 ~ 216) 187, 206, 212, 216
				제2반	(281 ~ 303) 281, 282, 283, 284, 287, 299, 303
				제3반	(12 ~ 118) 12, 29, 41, 76, 98, 106, 107, 110, 115,
		추정1리	1	제1반	(276, 491) 276, 489, 491
				제2반	(279, 745) 279, 489, 491, 745
				제3반	(7 ~ 817) 7, 79, 279, 789, 817
		추정2리	1	제1반	(22 ~ 756) 22, 622, 669, 671, 248, 754, 756
		추정3리	1	제1반	(99 ~ 135) 99, 132, 133, 135
				제2반	(18 ~ 187) 18, 34, 37, 83, 92, 102, 186, 187
		호정1리	1	제1반	(6 ~ 331) 6, 45, 46, 56, 58, 64, 260, 317, 320, 321,
				제2반	(27 ~ 63) 27, 28, 30, 33, 36, 37, 39, 54
				제3반	(37, 239) 37, 195, 230, 235, 236, 238, 239
		호정2리	1	제1반	(467 ~ 479) 467, 468, 469, 470, 475, 476, 469, 470,
				제2반	(53 ~ 521) 53, 510, 511, 512, 513, 517, 518, 519,
		이목1리	1	제1반	(3 ~ 174) 3, 5, 11, 13, 15, 17, 25, 50, 75, 120, 147,
				제2반	(120 ~ 470) 120, 142, 147, 430, 470
				제3반	(3 ~ 146) 3, 32, 84, 120, 142, 146
				제4반	(32 ~ 174) 32, 49, 84, 108, 117, 120, 123, 125, 134,
		이목2리	1	제1반	(95 ~ 470) 95, 99, 109, 112, 120, 151, 153, 169, 173,
		문박리	1	제1반	(263 ~ 334) 236, 298, 222, 322, 330, 332, 333
				제2반	(3 ~ 327) 3, 23, 76, 200, 238, 260, 263, 264, 265,
				제3반	(7 ~ 242) 7, 76, 242
				제4반	(18 ~ 154) 18, 124, 137, 151, 152, 153, 154
		인경리	1	제1반	(6 ~ 188) 6, 9, 14, 21, 45, 94, 113, 114, 123, 188
제2반	(22 ~ 188) 22, 66, 118, 180, 183, 186, 188				
제3반	(6 ~ 323) 6, 18, 205, 304, 318, 320, 323				
지산1리	1	제1반	(2 ~ 228) 2, 19, 142, 163, 173, 193, 228		
		제2반	(209 ~ 378) 209, 308, 316, 324, 326, 341, 345, 370,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지산2리	1	제1반	(80 ~ 580) 80, 95, 145, 343, 407, 410, 411, 412, 415, 418, 450, 580
		지산3리	1	제1반	(228 ~ 370) 228, 241, 395, 306, 308, 316, 342, 370
		갈산리	1	제1반	(3 ~ 148) 3, 22, 23, 24, 25, 35, 36, 38, 40, 45, 54, 80, 148
				제2반	(206 ~ 348) 206, 224, 234, 236, 249, 262, 295, 296, 302, 306, 348
				제3반	(226 ~ 454) 226, 233, 234, 264, 305, 377, 353, 354
		삼산1리	1	제1반	(169 ~ 383) 169, 173, 175, 188, 213, 218, 233, 234, 241, 249, 251, 253, 263, 379, 383
				제2반	(15 ~ 395) 15, 80, 153, 163, 164, 165, 169, 190, 213, 233, 283, 395
				제3반	(39 ~ 449) 69, 213, 215, 218, 213, 234, 329, 383,
		삼산2리	1	제1반	(23 ~ 99) 23, 26, 85, 88, 96, 97, 98, 99
		현암리	1	제1반	(5 ~ 217) 5, 6, 161, 170, 173, 174, 176, 205, 210, 212, 215, 217
				제2반	(5 ~ 259) 5, 15, 36, 55, 56, 105, 124, 143, 145, 240,
		무성1리	1	제1반	(19 ~ 124) 19, 22, 25, 27, 29, 30, 32, 35, 36, 124
				제2반	(18 ~ 32) 18, 22, 29, 30, 32
				제3반	(22 ~ 385) 22, 30, 35, 51, 53, 125, 310, 345, 346, 349, 371, 383, 384, 385
		무성2리	1	제1반	(24 ~ 384) 24, 56, 102, 117, 124, 125, 127, 346, 382
	제2반			(16 ~ 142) 16, 102, 117, 124, 125, 127, 129, 142	
	소 계	47	47	125	
	미원면	미원1리	1	제1반	(279 ~ 560-12) 279, 280-1, 280-2, 283-1, 289-1, 560, 560-11, 560-12
				제2반	(555-11 ~ 572-13) 555, 556, 557, 558, 559, 570, 571, 572
				제3반	(255 ~ 307-4) 255, 294, 303, 304, 307, 307-4
제4반				(214 ~ 228) 214, 217, 218, 227, 228	
제5반				(506-13 ~ 14) 560-13, 560-14	
제6반				(572-12 ~ 15) 572-12, 572-15	
제7반				(572-4 ~ 572-12) 572-4, 572-9, 572-12	
미원2리		1	제1반	(520-1 ~ 530-10) 520-1, 522-1, 522-3, 524, 528, 525-3, 525-10, 530-1, 530-4, 530-6, 530-10	
			제2반	(427-4 ~ 536-1) 427-4, 535-1, 535-2, 535-7, 535-13, 536-1	
			제3반	(523 ~ 560) 523, 526, 529, 560, 563	
			제4반	(530 ~ 590) 503 ~ 540, 505, 506, 528, 529, 540, 590	
			제5반	(481-1 ~ 509-2) 484-1, 485-1, 485-2, 486, 486-1, 487-1, 488, 489, 490-1, 490-2, 490-3, 490-4, 504-2, 504-7, 505-1, 505-2, 506, 507, 508, 509-1, 509-	
			제6반	(534-1) 534-1	
미원3리		1	제1반	(45 ~ 205) 45, 47, 48, 69, 104, 114, 115, 135, 139,	
			제2반	(116 ~ 356) 116, 133, 138, 200, 225, 262, 356	
	제3반		(128 ~ 382) 128, 132, 135, 182, 197, 224, 270, 356,		
미원5리	1	제1반	(508 ~ 608) 508, 514, 605, 606, 608		
		제2반	(508 ~ 608) 508, 514, 605, 606, 608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3반	(590-608) 590, 592, 604, 606, 608
		미원6리	1	제1반	(182 ~ 343-1) 182, 183, 184, 185, 186, 188, 189,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9, 199-1, 200, 202, 203, 205-1, 205-2, 205-3, 205-4, 205-5, 206,
		쌍이리	1	제1반	(62 ~ 351) 62, 244, 263, 279, 351
	제2반			(244 ~ 279) 244, 250, 251, 257, 263, 279	
	제3반			(산39 ~ 279) 산39, 120, 266, 278, 279	
	제4반			(58 ~ 94) 58, 59, 62, 63, 69, 81, 92, 94	
		중1리	1	제1반	(148-1 ~ 153-2) 148-1, 152, 150-1, 151, 151-1, 151-2, 151-4, 153-2
	제2반			(158 ~ 220-2) 158, 159, 160-1, 220, 220-1, 220-2	
	제3반			(172-1 ~ 178-3) 172-1, 173, 174-1, 174-2, 178-1, 178-2, 178-3	
	제4반			(214-2 ~ 216-2) 214-2, 216-1, 216-2	
	제5반			(449 ~ 466) 449, 450-1, 450-2, 450-3, 450-4, 450-5, 463, 466	
		중2리	1	제1반	(402-1 ~ 407) 402-1, 402-4, 402-7, 403-2, 404, 407
		내산1리	1	제1반	(118-1 ~ 218) 118-1, 118-2, 119, 120, 122, 123-1, 123-9, 217, 218
	제2반			(87 ~ 127) 87-2, 87-5, 90, 91, 98, 124-1, 125-1, 126-1, 127	
	제3반			(92-1 ~ 104) 92-1 ~ 92-4, 93-1 ~ 93-3, 94-1 ~ 94-6,	
		내산2리	1	제1반	(308 ~ 328) 308, 312, 317, 319, 320, 321, 323, 328
	제2반			(40 ~ 411) 40, 169, 406, 409, 411	
		내산3리	1	제1반	(70 ~ 76-2) 70, 71-1, 71-2, 72-1 ~ 72-8, 76-1, 76-2
	제2반			(176-3 ~ 291-7) 176-3, 278-6, 283-1, 284-8, 285-1 ~ 285-5, 286-3, 291-2 ~ 291-7	
	제3반			(169 ~ 171-10) 169, 170, 171-1 ~ 171-10	
		구방1리	1	제1반	(258~286)258, 263, 266, 268,273, 275, 278, 286
	제2반			(250~257)250, 254, 255, 257	
		구방2리	1	제1반	(45 ~ 149) 45, 46, 47, 49, 50, 149
	제2반			(45 ~ 157) 45, 69, 123, 157	
	제3반			(179, 221) 179, 180, 181, 183, 207, 208, 221	
		구방3리	1	제1반	(14~105)14, 24, 27, 70, 75,76, 79, 80, 91, 93, 105
	제2반			(359-377)359, 364, 369, 372, 산38, 377	
		기암리(岐岩)	1	제1반	(18 ~ 30) 18, 25, 26, 30
	제2반			(100 ~ 210) 100, 101, 102, 206-1, 209, 210	
		운교1리	1	제1반	(245 ~ 265) 245, 246, 251, 254, 264, 265
	제2반			(122 ~ 250) 122, 153, 156, 159, 185, 203, 225, 250	
	제3반			(224 ~ 297) 224, 225, 243, 245, 297	
		운교2리	1	제1반	(100 ~ 120) 100, 102, 108, 120
	제2반			(27 ~ 32) 27, 29, 30, 32	
	제3반			(59 ~ 168) 59, 151, 155, 165, 168	
		대덕리	1	제1반	(7 ~ 56) 7, 40, 41, 45, 50, 53, 56
	제2반			(194 ~ 211) 194, 195, 196, 211	
		운용리	1	제1반	(205 ~ 278) 205, 268, 270, 272, 275, 277, 278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회원리	1	제2반	(122 ~ 277) 122, 125, 155, 157, 158, 162, 165, 277
				제1반	(129 ~ 207) 129, 131, 132, 136, 147, 149, 151, 152, 153, 155, 207
				제2반	(100 ~ 309) 100, 120, 135, 140, 207, 250, 265, 267,
		용곡1리	1	제3반	(331 ~ 448) 331, 335, 350, 355, 374, 375, 376, 378, 392, 447, 448
				제1반	(141 ~ 298) 241, 246, 253, 254-9, 254, 254-2, 258, 259, 265, 267, 268, 269, 270, 285, 291, 293, 297,
		용곡2리	1	제2반	(208 ~ 507) 372, 429, 430, 432, 432-2, 436, 499, 500, 504, 505, 507
				제1반	(129, 207) 129, 131, 132, 136, 147, 149, 151, 152, 153, 155, 207
		수산1리	1	제2반	(100 ~ 309) 100, 120, 135, 140, 207, 250, 265, 267,
				제3반	(331 ~ 148) 331, 335, 350, 355, 374, 375, 376, 378, 392, 447, 448
				제1반	(166 ~ 400) 166, 239, 329, 332, 390, 392, 393, 400
		수산2리	1	제2반	(239 ~ 393) 239, 250, 272, 273, 274, 275, 335, 393
				제1반	(3 ~ 166) 3, 7, 9, 33, 46, 165, 166
		기암1리(基岩)	1	제1반	(400 ~ 425) 400, 402, 407, 413, 414, 422, 425
				제2반	(332 ~ 333) 332, 333
		기암2리(基岩)	1	제1반	(143 ~ 242) 143, 185, 204, 205, 207, 214, 215, 242
				제2반	(46 ~ 84) 46, 49, 52, 53, 70, 84
		가양1리	1	제1반	(272 ~ 353) 272, 271-3, 274, 275-1, 275-2, 276-2, 276-4, 276-5, 276-6, 288-4, 290, 291, 292-2, 298-2, 334, 348-2, 349, 353
				제2반	(394 ~ 448-3) 394, 418-3, 418, 419-1, 420, 421-2, 429, 430-1, 431-3, 448-3
		가양2리	1	제1반	(11 ~ 262-2) 11, 27, 28, 33-2, 34-2, 41, 42, 43-2, 44-1, 44-4, 45-3, 45-6, 51, 259-2, 261, 262-2
				제2반	(76-3 ~ 199) 76-3, 78, 79, 87, 89, 91, 92-1, 95-1, 96-4, 123, 125, 189
		화창리	1	제1반	(16 ~ 394) 16, 19, 22, 42, 49, 373, 379, 385, 394
				제2반	(42 ~ 86) 42, 53, 54, 62, 86
				제3반	(167 ~ 225) 167, 209, 223, 225
				제4반	(228 ~ 297) 228, 289, 294, 297
		종암1리	1	제1반	(251 ~ 313-1) 251, 281-3, 267, 290, 292-1, 305, 311, 313-1
				제2반	(509 ~ 529-1) 509, 510, 514-1, 526, 527-1, 528-1, 529-1
				제3반	(368-1 ~ 426-8) 268-1, 368-2, 368-3, 368-4, 368-8, 426-7, 426-8
		종암2리	1	제1반	(225 ~ 229) 225, 226, 227, 229
				제2반	(62 ~ 100-1) 62, 81, 83, 86-1, 91, 92, 93, 94, 95, 96, 97, 100-1
		대신1리	1	제1반	(349 ~ 479) 349, 465, 466, 471, 472, 474, 475, 476, 478, 479
제2반	(55 ~ 465) 55, 270, 349, 350, 465				
대신2리	1	제1반	(25 ~ 250) 25, 36, 88, 156, 158, 227, 246, 248, 250		
		제2반	(27 ~ 881) 27, 55, 57, 75, 76, 85, 87, 88		
운암1리	1	제1반	(513 ~ 572) 513, 526, 552, 556, 566, 569, 571, 572		
		제2반	(523 ~ 543) 523, 525, 526, 527, 529, 541, 543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3반	(300 ~ 367) 300, 303, 305, 310, 315, 356, 363, 365,
				제4반	(336 ~ 375) 336, 338, 356, 361, 363, 365, 366, 375
		운암2리	1	제1반	(170 ~ 225) 170, 171, 172, 215, 217, 218, 221, 222, 223, 225
				제2반	(301 ~ 306) 301, 302, 305, 310, 315, 316
				제3반	(90 ~ 316) 90, 110, 303, 304, 305, 316
		옥화리	1	제1반	(215, 285) 215, 219, 258, 268, 269, 278, 283, 284,
				제2반	(130 ~ 215) 130, 133, 134, 167, 212, 213, 215
				제3반	(90 ~ 146) 90, 92, 93, 94, 146
				제4반	(145 ~ 155) 145, 146, 147, 149, 150, 151, 154, 155
		월용1리	1	제1반	(100 ~ 368) 100, 165, 172, 267, 288, 368
				제2반	(240 ~ 433) 240, 267, 357, 373, 431, 433
				제3반	(산63) 산63
		월용2리	1	제1반	(342 ~ 509) 342, 343, 372, 373, 400, 501, 507, 509
				제2반	(412 ~ 455) 412, 417, 425, 431, 455
		금관1리	1	제1반	(284-2 ~ 322-2) 284-2, 286-1, 306-1, 307-1, 308-1, 390-1, 311, 312, 313-1, 322-2, 327-1
				제2반	(292 ~ 320-3) 292, 293, 295, 296, 297, 298, 298-1, 299, 300, 301, 303-3, 304-1, 317, 318, 319-1, 319-3, 319-4, 320-2, 320-3
		금관2리	1	제1반	(27 ~ 160) 27, 38, 132, 138, 156, 158, 159, 160
				제2반	(19 ~ 218) 19, 20, 23, 24, 27, 37, 81, 100, 138, 218
		금관3리	1	제1반	(414 ~ 603) 414, 582-2, 584, 586, 586-2, 589, 566-1, 603
				제2반	(501 ~ 517) 501, 509-1, 509-2, 517
		어암1리	1	제1반	(100 ~ 503) 100, 130, 464, 475, 476, 478-5, 485, 490, 490-1, 495, 495-1, 495-2, 495-6, 495-8, 496, 497, 500, 503, 507
				제2반	(262 ~ 429) 262,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6, 277, 279, 395, 426, 429, 430
				제3반	(100 ~ 385) 100, 374, 380, 383, 385
		어암2리	1	제1반	(161 ~ 485) 161, 162, 165, 172, 174, 176, 177, 219, 227, 262, 265, 267, 272, 485
				제2반	(19 ~ 353) 19, 20, 23, 24, 27, 28, 29, 30-1, 31, 32, 33, 37, 38, 40, 41, 45, 49, 52, 176, 315, 353
		계원리	1	제1반	(226 ~ 391) 226, 230, 235, 239, 340, 341, 355, 391
				제2반	(405 ~ 461) 405, 435, 442, 443, 445, 446, 448, 450,
				제3반	(510 ~ 653) 510, 535, 574, 575, 621, 622, 631, 633, 634, 653
		성대1리	1	제1반	(31 ~ 508) 31, 225, 228, 253, 354, 357, 506, 508
				제2반	(104 ~ 563) 104, 150, 300, 335, 353, 354, 357, 358, 360, 361, 375, 541
		성대2리	1	제1반	(150 ~ 225) 150, 152, 178, 174, 175, 225
제2반	(25 ~ 548) 25, 30, 32, 62, 66, 150, 152, 171, 225, 226, 541, 548				
성대3리	1	제1반	(56 ~ 563) 56, 354, 361, 503, 541, 546, 563		
소 계	31	31	76		
가덕면	청용1리	1	제1반	(373 ~ 668) 373, 557, 558, 559, 560, 561, 600, 668	
			제2반	(229 ~ 668) 229, 600, 668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청용2리	1	제1반	(202 ~ 226) 202, 221, 222, 223, 224, 225, 226
				제2반	(63 ~ 218) 63, 64, 65, 68, 124, 125, 216, 217, 218
				제3반	(30 ~ 378) 30, 304, 305, 306, 375, 376, 378
		청용3리	1	제1반	(262 ~ 308) 262, 269, 298, 307, 308
				제2반	(198 ~ 225) 198, 217, 218, 219, 221, 225
		행정리	1	제1반	(29-1 ~ 89) 29-1, 30, 31, 32-1, 33-1, 34, 35, 36, 37, 61, 89
				제2반	(130 ~ 140)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제3반	(141 ~ 149)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삼항1리	1	제1반	(60 ~ 204) 60, 74, 109, 204
				제2반	(179 ~ 229) 179, 188, 191, 219, 224, 229
				제3반	(231 ~ 232) 231, 232
				제4반	(230 ~ 235) 230, 235
		삼항2리	1	제1반	(270 ~ 291) 270, 271, 273, 275, 277, 279, 280, 283, 284, 287, 289, 291
				제2반	(311 ~ 328) 311, 315, 317, 320, 321, 325, 327, 328
				제3반	(330 ~ 504) 330, 349, 504
		국전1리	1	제1반	(293-1 ~ 301-9) 293-1, 294-1, 294-2, 294-5, 294-6, 294-7, 294-8, 294-10, 295, 295-1, 295-2, 295-3, 296-1, 296-2, 296-3, 296-5, 297, 298, 298-1, 301-1, 301-4, 301-5, 301-6, 301-7, 301-8, 301-9
				제2반	(256-2 ~ 364) 256-2, 257-1, 257-2, 257-3, 257-4, 257-5, 304-1, 304-2, 305-1, 306-1, 306-3, 307-1, 307-2, 307-6, 307-7, 307-8, 308, 309-1, 314-1, 348, 348-1, 357-3, 361, 364
				제3반	(349),
		국전2리	1	제1반	(207 ~ 219) 207, 208, 209, 219
				제2반	(100 ~ 141) 100, 141
		상대1리	1	제1반	(260 ~ 268) 260, 261, 262, 263-1, 268
제2반	(251-1 ~ 290-1) 251-1, 261-1, 270-1, 278, 284, 287-2, 288-1, 290-1				
상대2리	1	제1반	(172-2 ~ 184-1) 172-2, 174, 180-1, 180-2, 180-3, 180-4, 180-6, 187-1, 181-2, 181-4, 184-1		
		제2반	(94 ~ 477-5) 94, 155, 158, 173-2, 173-3, 173-4, 175, 175-5, 176-1, 177-1, 177-2, 177-4, 476-3,		
		제3반	(17 ~ 216) 17, 18, 19, 23-2, 24, 146, 147, 211, 213-1, 213-2, 213-3, 216		
노동1리	1	제1반	(430 ~ 451) 430, 432, 433, 439, 440, 441, 445, 448, 450, 451		
		제2반	(279 ~ 485) 275, 280, 283, 457, 458		
		제3반	(287 ~ 292) 287, 290, 291, 292		
노동2리	1	제1반	(301 ~ 390) 301, 302, 303, 313, 320, 321, 323, 324, 325, 326, 327, 328, 332, 334, 390		
노동3리	1	제1반	(104 ~ 126) 104, 125, 126		
		제2반	(130 ~ 166) 130, 132, 136, 160, 164, 166		
		제3반	(48 ~ 80) 48, 51, 52, 76, 77, 80		
인차1리	1	제1반	(219 ~ 237) 219, 220, 222, 226, 227, 228, 230, 231, 232, 233, 234, 237		
		제2반	(213 ~ 403) 213, 214, 293, 326, 330, 331, 393, 394, 395, 396, 398, 400, 401, 403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3반	(370 ~ 374) 370, 373, 374		
				제4반	(377 ~ 379) 377, 378, 379		
				인차2리	1	제1반	(3 ~ 46-1) 3, 6, 7-1, 7-2, 8-1, 8-2, 13-1, 15-2, 15-3, 15-4, 15-5, 15-6, 15-8, 16-2, 46-1
						제2반	(18-4 ~ 67-3) 18-4, 22, 23, -1, 25-1, 25-2, 33, 67-1, 67-3
						제3반	(145 ~ 166) 145, 147-1, 147-2, 147-3, 148-1, 148-2, 148-3, 151-2, 154-1, 154-2, 155-3, 155-4, 165,
						제4반	(130 ~ 173-2) 130, 131, 171-3, 173-2
				계산1리	1	제1반	(77-1 ~ 112-4) 77-1, 77-2, 79-1, 101, 112-1, 112-3, 112-4
						제2반	(53 ~ 65-1) 53, 54, 55, 56, 56-1, 56-2, 59-1, 59-2, 60-1, 60-2, 60-3, 60-4, 61-1, 61-2, 61-3, 65-1
				계산2리	1	제1반	(179-3 ~ 186-7) 179-3, 180-2, 180-3, 180-4, 180-5, 185-2, 185-4, 186-1, 186-2, 186-3, 186-5, 186-6, 186-7
						제2반	(115-1 ~ 129-2) 115-1, 116-1, 117-1, 118, 122, 123, 125, 126, 129-2
				계산3리	1	제1반	(130-1 ~ 165-5) 130-1, 130-2, 130-3, 130-4, 131-1, 131-2, 131-3, 135-1, 135-2, 135-3, 135-5, 135-6, 135-7, 135-8, 135-9, 135-10, 135-11, 136, 138, 139-1, 139-2, 139-3, 140, 141-1, 141-2, 142-1, 142-2, 142-3, 142-4, 142-5, 164-1, 164-3, 164-4, 164-5, 165, 165-2, 165-4, 165-5
				수곡1리	1	제1반	(258 ~ 353) 258, 264, 266, 263, 319, 320, 321, 322, 323, 324, 353
						제2반	(350 ~ 363) 350, 353, 352, 354, 355, 363
				수곡2리	1	제1반	(66 ~ 97) 66, 85, 87, 89, 97
				시동리	1	제1반	(5-3 ~ 125) 5-3, 6, 96-2, 101-1, 109-6, 111-1, 111-3, 111-6, 113-4, 114-1, 115-1, 116, 117-9,
						제2반	(7 ~ 167-1) 7, 40, 151-2, 153, 154, 155, 156, 159, 160, 163, 167-1
				병암1리	1	제1반	(68-1 ~ 170) 68-1, 88-2, 433-3, 144-3, 152, 153, 154, -5, 156, 157-5, 158, 164, 170
						제2반	(115-3 ~ 150-2) 115-3, 127-2, 137-1, 137-3, 137-4, 138-1, 138-2, 140, 141-5, 145-2, 146, 148-2, 149-3, 150-2
						제3반	(산18 ~ 131) 산18, 93-2, 98-2, 98-3, 99-2, 99-3, 113, 114, 118-8, 128, 129, 130, 131
				병암2리	1	제1반	(93-1 ~ 236-2) 93-1, 94-3, 99-3, 202, 204, 233,
						제2반	(205 ~ 232) 205, 206, 218, 218-2, 224-3, 229-1, 229-2, 231-1, 232
						제3반	(18 ~ 266-2) 18, 86, 89, 241, 243, 247, 248, 250, 251, 254-1, 257-1, 258, 261-1, 263-2
						제4반	273 ~ 282, 284-6 ~ 286, 288 ~ 298, 산24-1 ~ 산27-1
				병암3리	1	제1반	(16 ~ 35-3) 16, 27, 33-1, 34, 35-3
						제2반	(41-4 ~ 44-7) 41-4, 42, 43-2, 43-4, 43-6, 44-2, 44-6, 44-7
				금거1리	1	제1반	(26 ~ 81) 26, 27, 28, 75, 80, 81
						제2반	(57 ~ 112) 57, 59, 63, 65, 66, 112
				금거2리	1	제1반	(167 ~ 281) 167, 169, 170, 171, 173, 281
제2반	(217 ~ 254) 217, 228, 229, 230, 231, 232, 234, 244, 246, 252, 253, 254						
상야1리	1	제1반	(35-5 ~ 40-6) 35-5, 37-1, 38, 39, 40-6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상야2리	1	제2반	(19-1 ~ 163-2) 19-1, 28, 159-1, 163-1, 163-2	
				제1반	(338 ~ 348)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제2반	(278 ~ 302) 278, 279, 302	
		한계1리	1	제1반	(119 ~ 126) 119, 120, 121, 123, 124, 125-1, 125-2, 125-3, 126	
				제2반	(113 ~ 181) 113, 142, 146, 154, 161, 165, 171, 172, 173, 181	
				제3반	(58 ~ 172) 58, 65, 90, 134, 146, 147, 150, 172	
		한계2리	1	제1반	(263-1 ~ 359) 263-1, 285, 307, 359	
				제2반	(5 ~ 299) 5, 7, 69, 71, 295, 299	
		내암리	1	제1반	(81-1 ~ 181-1) 81-1, 81-2, 87, 91-1, 91-3, 92, 93-2, 96, 98-6, 146, 146-1 ~ 2, 147, 147-1, 154, 181,	
				제2반	(2-4 ~ 58) 2-4, 14, 20-1, 33, 33-1, 33-2, 34, 34-1, 35, 36-4, 41, 41-1, 43, 44, 48-4 ~ 5, 55, 57, 58	
		소 계	33	33	100	
		남일면	송암1리	1	제1반	(176 ~ 186) 176, 177, 181, 184, 185, 186, 166, 168, 169, 170, 180
					제2반	(154 ~ 228) 154, 167, 163, 173, 196, 226, 227, 228
			송암2리	1	제1반	(154 ~ 456) 154, 163, 323, 324, 441, 442, 412, 438, 444, 446, 448, 445, 450, 453, 456, 451
					제2반	(97 ~ 455) 97, 226, 243, 412, 421, 413, 438, 445, 455, 451
효촌1리	1		제1반	(2-1 ~ 8-3) 2-1 ~ 2, 2, 3, 4-1 ~ 4, 5-1 ~ 4, 5-7, 6, 7-1 ~ 3, 8-1 ~ 3		
			제2반	(11-2 ~ 15-5) 11-2 ~ 5, 12, 13, 14, 15-2 ~ 5		
			제3반	(9 ~ 253) 9, 9-1 ~ 2, 251-1 ~ 4, 240, 239-2, 245-4, 245-10, 246-1 ~ 3, 247-1, 252-1 ~ 7, 253		
			제4반	(241 ~ 249) 241, 245-1 ~ 8, 243, 242, 244-1 ~ 4, 249-1, 249-2, 249-3, 241-1, 249		
			제5반	(89 ~ 251-36) 89, 245-10, 251-9 ~ 14, 251-18 ~ 36		
			제6반	(251 ~ 24) 251-24		
효촌2리	1		제1반	(11 ~ 227-1) 11, 246-1 ~ 3, 247-1, 228, 239-6, 238-4, 235-2 ~ 3, 234-2, 229-3, 227-1		
			제2반	(63 ~ 79-3) 63, 65-1 ~ 3, 66-1 ~ 2, 70-1 ~ 5, 72, 74-1 ~ 2, 75, 77-2 ~ 3, 79-3		
효촌3리	1		제1반	(6-1 ~ 189-2) 6-1 ~ 2, 188-2, 188-4, 37-1 ~ 3, 188-1, 188-5 ~ 6, 188-3, 189-2, 113-1 ~ 2		
			제2반	(60-1 ~ 79) 60-1, 60-2, 60-3, 60-4, 62, 65, 71, 72, 74, 66-1 ~ 4, 73-1 ~ 2, 79		
효촌4리	1		제1반	(49-2 ~ 7) 49-2, 49-6, 49-7		
			제1반	(38-1 ~ 43-11) 38-1 ~ 17, 43-1 ~ 11		
			제2반	(32 ~ 196-7) 32, 33, 191, 196-1 ~ 7		
효촌5리	1		제3반	(34-1 ~ 194) 34-1 ~ 7, 193-7, 194		
			제1반	(17-4) 17-4		
효촌6리	1		제2반	(19-11) 19-11		
			제1반	(204 ~ 202-9) 204, 202-9		
		제2반	(21-5 ~ 22) 21-5, 22			
효촌7리	1	제3반	(201-1) 201-1			
		제1반	(45-53 ~ 45-62) 45-53, 45-59, 45-62			
				제2반	(32-2 ~ 32-7) 32-2, 32-5, 32-7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3반	(31-3) 31-3
				제4반	(28-1 ~ 36-14) 28-1, 36-10, 36-14
		문주1리	1	제1반	(173 ~ 253) 173, 174, 182, 188, 184, 253
				제2반	(152 ~ 425) 152, 154, 156, 166, 184, 425
		문주2리	1	제1반	(370 ~ 411) 370, 399, 410, 411, 373, 374, 376
				제2반	(318, 377) 318, 365, 374, 376
				제3반	(211 ~ 389) 211, 318, 379, 380, 387, 388, 389
		황청리	1	제1반	(8 ~ 215) 8, 116, 215
				제2반	(78 ~ 115) 78, 113, 114, 115
				제3반	(78 ~ 96) 78, 89, 96
		은행1리	1	제1반	(80 ~ 385) 80, 93, 264, 279, 275 ~ 305, 306 ~ 307, 308 ~ 309, 312 ~ 319, 326 ~ 334, 385
				제2반	(118 ~ 390) 118 ~ 249, 265, 279, 273 ~ 275, 277 ~ 279, 280 ~ 295, 296, 1 ~ 306, 307 ~ 319, 324 ~ 334, 370 ~ 373, 384 ~ 390
		은행2리	1	제1반	(275 ~ 388) 275, 291, 292, 293, 331, 337, 379, 383, 384, 385, 388
				제2반	(361 ~ 392) 361, 362, 363, 370, 372, 392
		두산1리	1	제1반	(22 ~ 197) 22, 136, 144, 148, 152, 164, 150, 141,
				제2반	(101 ~ 166) 101, 114, 117, 123, 161, 162, 163, 164,
				제3반	(34 ~ 52) 34, 37, 45, 52
		두산2리	1	제1반	(246 ~ 251) 246, 248, 250, 251
				제2반	(349 ~ 355) 349, 353, 354, 355
		쌍수1리	1	제1반	(314 ~ 315-12) 314, 314-12 ~ 314-19, 315-6, 315-7, 315-10, 315-12
				제2반	(316-3 ~ 317-15) 316-3 ~ 40, 317-9 ~ 15
		쌍수2리	1	제1반	(331 ~ 336-4) 331, 335-5, 355-6, 355-1, 355-2
				제2반	335-3, 335-4, 336, 336-1, 336-2, 336-3, 336-4
		쌍수3리	1	제1반	294-3 성무아파트 1동
				제2반	293-1 성무아파트 2동
				제3반	299 성무아파트 3동
				제4반	299 성무아파트 4동
				제5반	300-1 성무아파트 5동
				제6반	299 성무아파트 6동
				제7반	302-1 성무아파트 7동
				제8반	299 성무아파트 8동
				제9반	299 성무아파트 9동
제10반	299 성무아파트 10동				
제11반	299 성무아파트 11동				
제12반	290 성무아파트 101동, 102동				
제13반	290 성무아파트 103동				
제14반	290 성무아파트 104동, 105동				
제15반	290 성무아파트 106동, 107동				
제16반	290 성무아파트 108동, 109동				
고은1리	1	제1반	(441 ~ 446) 441, 442, 444-2, 444-1, 446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2반	(455-2 ~ 460-9) 452-9, 457-2, 457-3, 457-4, 459-7, 459-8, 452-2, 458, 460-1, 460-9, 460-13
				제3반	(453 ~ 466-2) 454, 453, 455-7, 455-8, 456-2, 456-4, 466-2
		고은2리	1	제1반	(537-1 ~ 557-1) 537-1, 537-2, 537-3, 538, 539, 540, 541, 542, 550, 557-1
				제2반	(532 ~ 544-2) 532, 533, 534, 535, 536, 537, 539, 540, 542, 544-2
		고은3리	1	제1반	(82 ~ 130) 82, 94, 95, 96, 129, 130
				제2반	(192 ~ 195) 192, 194, 195
				제3반	(234 ~ 238) 234, 237, 238
				제4반	(390 ~ 419) 390, 392-1, 419
		고은4리	1	제1반	(182 ~ 279) 182, 261, 262, 263, 276, 277, 279
		화당1리	1	제1반	(103 ~ 115) 103, 104, 106, 107, 109, 113, 114, 115
				제2반	(94 ~ 236) 94, 99, 96, 100, 101, 102-1, 236
				제3반	(64-1 ~ 86-2) 64-1, 65-1, 67-4, 86-2, 83
		화당2리	1	제1반	(231-4 ~ 240) 231-4, 231-5, 232, 238, 239, 240
				제2반	(254 ~ 269) 254, 257, 258-2, 258-5, 256-2, 253, 256, 263, 264-2, 269
				제3반	(411 ~ 427) 411, 414, 412, 413, 424-3, 425, 427
				제4반	(362-2 ~ 370-4) 362-2, 365-2, 364-2, 367, 368, 368-2, 369-1, 369-2, 369-3, 370-2, 370-3, 370-4
		가산1리	1	제1반	(620-1 ~ 624) 620-1 ~ 620-5, 626, 627, 628, 629,
				제2반	(623 ~ 635) 623 ~ 625, 626, 627, 628, 629, 635
				제3반	(636 ~ 660)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00
				제4반	(663 ~ 681) 663, 665, 666, 667, 668, 681, 683
				제5반	(664 ~ 679) 664, 666, 667, 669, 670, 671, 672, 674,
				제6반	(600-6 ~ 662) 600-6, 606,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62
		가산2리	1	제1반	(250 ~ 743)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60, 261, 309, 310, 311, 313, 724, 725, 741,
		가산3리	1	제1반	(456-1 ~ 541) 456-1, 456-2, 460, 461, 458-1, 458-2, 463, 534, 535, 536, 539, 540, 541
				제2반	(540 ~ 619-3) 540, 541, 542, 547, 551, 552, 619-2, 619-3
		신송1리	1	제1반	(15 ~ 201) 15, 167, 169, 175, 181, 182, 183, 192, 193, 194, 197, 198, 199, 201
				제2반	(102 ~ 433) 102, 166, 165, 164, 202, 201, 203, 433
		신송2리	1	제1반	(60 ~ 730) 60 ~ 487, 613 ~ 730
		신송3리	1	제1반	(488-1 ~ 549) 488-1, 488-2, 488-3, 489 ~ 549
				제2반	(550 ~ 612) 550 ~ 610-2, 611, 612
가중1리	1	제1반	(93-1 ~ 115) 93-1, 93-2, 94, 95, 93-3, 93-4, 97, 114, 115		
		제2반	(86-1 ~ 153) 86-1, 86-2, 148, 146-1, 147-1, 147-2, 147-3, 150, 152, 153		
		제3반	(183 ~ 211) 187-1, 188-1, 189-1, 197, 183, 184, 198, 199, 207-1, 207-2, 208, 209, 210, 211		
가중2리	1	제1반	(391 ~ 395) 391, 392, 393-1, 393-2, 399, 398, 397, 396, 394, 395, 400-1, 400-2, 401-1, 401-2, 401-3, 402, 402-1, 403, 406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소 계	34	34	제2반	(404 ~ 410) 404, 408, 407, 409-1, 409-2, 410
				100	
	문의면	미천1리	1	제1반	(226 ~ 356) 226, 352, 363, 354, 355, 356
				제2반	(348 ~ 358) 348, 349, 350, 352, 353, 355, 356
				제3반	(347 ~ 364) 347, 347-1, 348, 449, 350, 352, 354, 355, 356, 364
				제4반	(365 ~ 374) 365, 366, 367, 368, 369, 370, 374
				제5반	(561 ~ 591) 561, 562, 563, 566, 567, 569-2, 570, 573, 571, 572-2, 57-4, 573, 574, 591-1
		미천2리	1	제1반	114-24 ~ 114-36, 114-38 ~ 114-57
				제2반	114-5 ~ 114-22, 114-25, 121-83
				제3반	121-13 ~ 121-23, 121-26 ~ 121-37
		미천3리	1	제1반	(32-7 ~ 153-9) 32-7, 114-124, 114-39, 114-126, 114-128, 114-30, 114-134, 114-138, 114-141, 114-140, 129-1, 153-9
				제2반	(22-1 ~ 153-29) 22-1, 22-4, 22-7, 22-8, 22-10, 22-17, 148-4, 151-1, 153-19, 153-23, 153-29
				제3반	(17 ~ 154-12) 17, 17-13, 17-11, 17-18, 17-19, 33-5, 153-19, 153-21, 153-23, 153-16, 153-18, 153-22, 154-12
				제4반	(12-1 ~ 221) 12-1, 153-14, 154-1, 220, 221
				제5반	(15-1 ~ 220) 15-1, 16-5, 16-16, 21-8, 154, 154-14, 154-15, 212, 213, 220
		미천5리	1	제1반	153, 226, 228-29 ~ 228-49, 228-51, 228-53, 228-115, 228-118, 231-19, 231-21, 231-22, 231-24, 232-2, 237-1
				제2반	121, 121-2 ~ 121-11, 228-54 ~ 228-57, 228-60, 228-61, 228-64, 228-65, 228-68, 228-69, 228-71, 228-73, 228-75, 228-77, 228-79, 228-80
	제3반			153-3 ~ 153-6, 153-9, 183-8, 228-81 ~ 228-94, 228-97, 228-99, 228-100, 228-102	
	미천6리	1	제1반	(601 ~ 616) 601, 602, 603, 605-2, 605-1, 606, 607, 608, 609, 610, 613, 614, 616	
			제2반	(68-2 ~ 288) 88-2, 134-1, 134-2, 134-3, 134-4, 134-6, 134-7, 134-8, 134-9, 134-10, 134-11, 134-12, 134-13, 134-14, 132, 135, 212, 213-1, 213-2, 213-3, 213-4, 213-5, 213-2, 215-1, 216-2, 215-3, 215-4, 215-5, 215-6, 215-7, 221-2, 223, 226, 282	
	미천7리	1	제1반	114-58 ~ 114-71, 114-72 ~ 114-87	
제2반			114-89, 114-104 ~ 114-110, 114-112 ~ 114-114, 121-63 ~ 121-65, 121-68, 121-73		
제3반			121-37 ~ 121-55		
미천8리	1	제1반	231, 231-1 ~ 231-14, 213-16, 231-17, 231-27, 231-28, 231-29, 231-30, 232-1, 235, 237		
		제2반	228, 228-4 ~ 228-10, 228-12 ~ 228-22, 228-117, 236-2, 236-4 ~ 236-9, 237-1, 256-2, 258-3, 357		
		제3반	228-1 ~ 228-3, 228-23 ~ 228-28, 357, 547, 661-3		
남계1리	1	제1반	(201 ~ 293) 201, 242-4, 248, 250-1, 250-2, 287, 288, 293		
		제2반	(150-4 ~ 363-4) 150-4, 151-10, 155-4, 156, 158-3, 159-1, 160-5, 160-7, 160-9, 364-1, 354-2, 356-1, 359-1, 359-2, 359-3, 359-4, 359-5, 360, 361, 363-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3반	(365 ~ 376-3)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1, 372-2, 372-3, 373, 374, 375-1, 375-2, 376-1, 376-2, 376-3
				제4반	(347 ~ 138) 347, 353, 351-2, 353, 138
		남계2리	1	제1반	(9 ~ 449) 9, 446, 447, 448-1, 448-2, 449
				제2반	(365 ~ 458) 365, 366, 367, 369, 370, 371, 372-2, 372-3, 373, 374, 375-1, 375-2, 376-3, 380-2, 450, 451, 452-2, 452-3, 454, 455, 450
				제3반	8-6, 8-12, 8-24, 8-36, 508, 510, 562-1, 562
		남계3리	1	제1반	(630 ~ 634-1) 631, 631-1, 631-2, 631-3, 631-4, 631-5, 632-1, 632-2, 632-3, 632-4, 632-5, 633-1, 633-2, 663-3, 633-4, 633-5, 634
				제2반	(637-6 ~ 641-3) 637-1, 637-2, 637-3, 637-4, 637-5, 637-6, 638-1, 638-2, 638-4, 638-5, 638-6, 638-9, 638-8, 638-9, 639-1, 639-2, 639-3, 639-4, 639-5, 639-6, 639-7, 639-8, 639-9, 641-1, 641-2, 641-
				제3반	(705 ~ 722) 705, 706, 707, 722
		상장1리	1	제1반	(15 ~ 32) 5, 21, 22-1, 22-2, 22-3, 22-4, 23, 24, 25, 26, 27, 28, 29-1, 29-2, 30-1, 30-2, 31, 32
				제2반	(157 ~ 169) 157, 158, 160, 161, 163, 166, 167, 168,
				제3반	(176 ~ 253-1) 176, 253-1
		상장2리	1	제1반	(516 ~ 763) 516, 763, 516, 517, 520, 781
		산덕리	1	제1반	(561-2 ~ 573) 561-2, 560-3, 562-8, 566-3, 567-1, 567-2, 567-3, 568-2, 570-1, 570-2, 572, 573
				제2반	(579 ~ 596) 579, 580, 581, 582, 584, 587, 588-1, 588-2, 590, 590-1, 590-2, 591, 592, 593, 594, 595,
				제3반	(313 ~ 344) 313, 314, 315, 316, 31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2, 343, 344, 342, 341, 358-2
				제4반	(215 ~ 241) 215, 216, 217, 218, 219, 220, 222, 223, 224, 225, 226, 240, 241
				제5반	(17 ~ 189) 17, 49, 50, 125-1, 125-2, 125-3, 125-5, 174, 178, 179, 180, 181, 189
				제6반	(242 ~ 356) 242, 243, 244, 246, 247, 249, 250, 251,
		구룡1리	1	제1반	(167 ~ 194) 167, 169, 170, 171, 172, 174, 176, 177, 178, 193, 194
				제2반	(10 ~ 55) 10, 54, 55
				제3반	(99 ~ 203) 99, 200, 201, 202, 203
		구룡2리	1	제1반	(390 ~ 428-2) 390, 391-1, 391-2, 392, 393-1, 394-2, 394, 397, 415, 417, 421, 422, 423-2, 426-2, 428-
				제2반	(166 ~ 202)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7, 178, 199, 200, 201, 202
		괴곡리	1	제1반	(33-1 ~ 268-2) 33-1, 33-4, 33-3, 34-3, 38-3, 41-1, 120-4, 205, 206, 211, 212, 254, 255, 257, 258, 259, 264-2, 267, 268-1, 268-2
제2반	(20 ~ 75) 20-1, 21-1, 21-4, 22, 24, 25, 26, 27, 29, 30, 74, 75				
문덕리	1	제1반	(86-7 ~ 118-3) 86-7, 85-2, 88, 116, 118-1, 118-3		
		제2반	(615 ~ 629) 615, 620, 625, 627, 629		
소전1리	1	제1반	(39-3 ~ 67-1) 39-3, 39-1, 41, 42, 43-1, 57-2, 59, 61-1, 61-2, 62, 63, 64, 65, 67-1		
		제2반	(111-1 ~ 168) 111-1, 155, 156, 158, 159, 162, 165, 166, 167, 168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소전2리	1	제1반	(413 ~ 426-13) 413, 424, 426-1, 426-2, 426-3, 426-4, 426-5, 426-13
				제2반	(426-6 ~ 430-7) 426-6, 426-9, 426-10, 426-11, 426-7, 426-8, 426-12, 426-14,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430-7
		후곡리	1	제1반	(77 ~ 914) 77, 289, 294, 341, 343, 350, 357, 365, 366-1, 381, 394, 394-2, 640, 378-8, 914
				제2반	(355 ~ 1101) 355, 378-1, 394-2, 642, 818, 819, 823, 908, 921-1, 923-3, 1101
				제3반	(146-1 ~ 373) 146-1, 289, 342, 343, 348
				제4반	(35 ~ 212-4) 35, 35-2, 56, 60-3, 104-6, 105, 105-4, 169, 212-4
		품곡리	1	제1반	(66 ~ 120) 66, 67-2, 100, 101, 102-3, 103, 106, 107, 111, 119, 120
				제2반	(178 ~ 198) 178, 182, 183, 184, 185, 186, 190, 191, 192, 193-2, 197, 198
				제3반	(226) 226
		두모1리	1	제1반	(565-1 ~ 607-1) 565-1, 566-2, 576-2, 576, 602-1, 602-2, 667-1
				제2반	(583 ~ 602) 583, 585, 586, 587, 589, 598, 599, 601,
				제3반	(594 ~ 657-8) 597, 653, 654, 655, 656, 657-1, 657-2, 657-3, 657-4, 657-6, 657-7, 657-8, 594, 595, 596, 652-1, 652-2, 652-3, 652-4
				제4반	(629 ~ 672-6) 660, 661, 662, 663, 671-1, 672-1, 672-3, 672-4, 672-5, 672-6, 670, 637, 629, 630,
		두모2리	1	제1반	(19-2 ~ 161-4) 119-2, 119-3, 116-1, 161-2, 161-4
				제2반	(6-1 ~ 258) 6-1, 7, 8, 9, 10, 11, 12-1, 12-2, 12-3, 12-4, 17-1, 17-3, 250-2, 254, 255, 257, 258
				제3반	(238-1 ~ 268-2) 238-1, 238-2, 239-1, 239-2, 340-1, 441-1, 242-1, 242-2, 243, 244-2, 266, 267-1, 267-2, 268-2
		도원1리	1	제1반	(305-1 ~ 329) 305-1, 305-2, 311-1, 312-2, 313-1, 313-2, 314-1, 314-3, 315, 316, 317, 318, 319, 321, 321-1, 321-2, 323, 329
				제2반	(324 ~ 338) 324, 325, 327, 328, 331, 332, 329
				제3반	(364-1 ~ 397) 364-1, 364-2, 364-3, 367, 368, 369-1, 369-2, 369-3, 372, 373, 374, 378, 379, 393-1, 393-2, 384-1, 397
		도원2리	1	제1반	(14-2 ~ 499) 14-2, 15, 17-1, 18, 19, 20, 22, 499
				제2반	(30-1 ~ 491) 30, 31, 35-1, 488, 489, 491
				제3반	(134 ~ 210) 134, 135, 136, 137, 138, 139, 162-1,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86, 189, 190, 200, 201
		등동1리	1	제1반	(289 ~ 294-2, 산46-1) 289, 290-1, 290-2, 290-3, 292, 293, 294-1, 294-2, 산46-1
				제2반	(204 ~ 405-3) 204, 208-1, 396-3, 397, 398-1, 398-2, 399-1, 399-2, 400-1, 400-2, 402-1, 405-3
제3반	(427-1 ~ 440) 427-1, 427-2, 428, 430, 431, 437-2, 438, 440				
등동2리	1	제1반	(324 ~ 353-3) 324, 325, 326, 327, 328-1, 329, 330, 331, 332-1, 332-2, 332-3, 332-4, 332-5, 334-3, 349-1, 353-2, 353-3		
		제2반	(130-1 ~ 138) 130-1, 131, 133, 135-1, 135-2, 136-2, 137-2, 138		
		제3반	(178-2 ~ 181-4) 178-2, 178-4, 178-5, 178-6, 179-2, 179-3, 179-4, 181-1, 181-2, 181-3, 181-4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요암리	1	제4반	(6 ~ 20) 6, 9, 15-1, 15-2, 15-4, 17-1, 17-4, 19, 20
				제1반	(162-1 ~ 165) 162-1, 164-1, 164-9, 165
		마구리	1	제2반	(124-1 ~ 125) 124-1, 124-2, 125
				제1반	(35 ~ 73) 38, 39, 40, 41, 35, 36, 37, 62, 63, 64, 66, 67, 72, 68, 69, 70, 73
		마동1리	1	제1반	(80-1 ~ 87) 80-1, 80-2, 80-3, 80-4, 79, 87
				제2반	(75 ~ 78-8) 75, 76, 77, 78-1, 78-8
				제3반	(22-1 ~ 27) 22-1, 27
		마동2리	1	제1반	(77-1 ~ 65-3) 77-1, 83-1, 82, 78-1, 78-4, 63-1, 63-5, 65-3
		염타리	1	제1반	(1 ~ 55) 1, 22, 24, 25, 27, 40, 52, 54, 55
		노현1리	1	제1반	(49 ~ 587) 49, 236, 265, 365, 390, 439, 461, 453, 509, 581
				제2반	(268 ~ 669) 268, 269, 365, 509, 541, 582, 597, 600, 453, 583, 586, 588, 629, 663, 669
				제3반	(365 ~ 668) 365, 461, 578, 583, 588, 597, 617, 663, 627, 628, 630, 668
				제4반	(365 ~ 629) 365, 600, 604, 617, 618, 622, 517, 556, 587, 597, 598, 625, 629
		노현2리	1	제1반	(47 ~ 354) 47, 49, 51, 55, 58, 67, 68, 305-1, 350,
제2반	(293 ~ 306) 293, 297, 298, 299, 303, 305, 306				
제3반	(113 ~ 358) 113, 123, 281, 282, 283, 297, 305, 358				
제4반	(232 ~ 268) 232, 234, 236, 268				
소계	2면	70	70	177	
서원구	소 계	39	39	101	
	남이면	척산1리	1	제1반	(499 ~ 524) 502, 523, 499, 498, 501, 524, 525
				제2반	(503 ~ 519) 503, 519
				제3반	(517 ~ 520) 517, 518, 519, 520
				제4반	(400 ~ 432) 400, 401, 402, 420, 421, 422, 423, 432
		척산2리	1	제1반	(335-1 ~ 588-4) 355-1, 337-1, 337-3, 348-3, 348-5 ~ 348-13, 349-1 ~ 349-5, 588-1 ~ 588-4, 349, 354-1, 354-2, 356-1
				제2반	(589-1 ~ 593-2) 589-1, 589-2, 590, 591-1 ~ 591-5, 591-8, 592, 592-2, 592-6, 592-5, 593-2
				제3반	(356-1 ~ 349-5) 356-1, 354-1, 354-2, 348-5 ~ 348-10, 549, 349-1, 349-5
		척산3리	1	제1반	(127 ~ 267) 120, 121, 122, 135, 136, 137, 138, 267
				제2반	(200 ~ 379) 200, 201, 202, 263, 266, 268, 269, 270,
				제3반	(153 ~ 509) 153, 154, 155, 156, 509
				제4반	(220 ~ 산114) 220, 225, 226-1, 산114
		척산4리	1	제1반	(635-2 ~ 653-2) 635-2, 635-3, 636, 638-1 ~ 638-5, 639, 640, 641-1 ~ 641-3, 648-1, 648-2, 649-1, 653-1, 653-2, 642
				제2반	(665-3 ~ 678-2) 665-3, 665-4, 666, 667-1, 667-2, 669, 674-4, 678-2
외천1리	1	제1반	(232~279) 232, 234, 235, 235-1, 235-2, 236-4, 229-4, 236-9, 236-11, 236-15, 237-3, 253, 253-1~253-2, 254, 254-5~254-7, 271, 271-1~271-3, 275, 276, 277, 277-2~277-3, 278-2~278-3, 278-5,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2반	(228-1 ~ 346) 228-1, 228-4, 283, 284, 286, 289, 290-1~290-2, 291, 291-1, 292, 293, 294, 295-1, 296, 306-1, 310-1, 311, 312, 313, 315, 315-1, 318, 319, 320-2~320-3, 321, 328, 346-1, 346-3, 346-5
				제3반	(63-1~70-21) 63-1, 63-5, 64-1, 64-4, 64-10, 64-11, 65-4, 66-1~66-5, 67-1~67-25, 68-1, 69-1, 69-3, 70-21
		외천2리	1	제1반	(339-1 ~ 460) 339, 400, 456, 457, 458, 459, 460
				제2반	(461 ~ 467) 461, 462, 463, 464, 467
				제3반	(176-1 ~ 224) 176-1, 176-2, 176-3, 176-4, 176-5, 193, 194, 195, 196, 197, 206-1, 207, 208-1, 208-3, 209, 210, 211, 212, 218, 219, 220, 221, 222, 223,
		외천3리	1	제1반	(109 ~ 172-8) 109, 109-5 ~ 109-6, 110, 110-1 ~ 110-4, 123, 123-1 ~ 123-2, 126-2 ~ 126-3, 128-1 ~ 128-2, 134-2, 136, 136-1, 167-1, 168, 169, 170-1, 171-1, 172-1, 172-7 ~ 172-8
		문동1리	1	제1반	(427 ~ 443) 427, 428, 443
				제2반	(369 ~ 382) 369, 380, 381, 382
				제3반	(262 ~ 276) 262, 263, 276, 265
				제4반	(301 ~ 308)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문동2리	1	제1반	(26 ~ 89) 26, 27, 28, 29, 89
				제2반	(22 ~ 25) 22, 23, 24, 25
				제3반	(89 ~ 92) 89, 90, 91, 92, 150
		척북1리	1	제1반	(37 ~ 50) 37, 42, 43, 44, 45, 46, 47, 48, 49, 50
				제2반	(51 ~ 57) 51 ~ 52, 53, 54, 55, 56, 57
		척북2리	1	제1반	74-7(삼포아파트 101동)
				제2반	74-7(삼포아파트 102동)
				제3반	74-7, 74-10, 74-13(삼포아파트 105동)
		척북3리	1	제1반	74-7(삼포아파트 103동)
				제2반	74-7, 74-11, 74-12, 74-13(삼포아파트 104동 및 상
				제3반	74-7, 74-13(삼포아파트 106동)
		산막리	1	제1반	(400 ~ 427) 400, 427, 420, 422, 419, 418, 423, 425, 409, 410
				제2반	(355 ~ 395) 355, 356, 356-1, 377, 392, 393, 394, 395, 370, 371
				제3반	(236-1 ~ 403) 236-1, 371, 376, 378, 380, 398, 399, 401, 402, 403
제4반	(195 ~ 214) 195, 196, 197, 199, 200, 203, 204, 205, 206, 209, 216, 215, 213, 214				
비룡1리	1	제1반	(90 ~ 112) 90, 91, 92, 94, 96, 98, 99, 100, 102, 104, 105, 110, 112, 114		
		제2반	(60 ~ 172) 60, 72, 73, 74, 76, 77, 78, 79, 80, 81, 82, 83, 84, 155, 161, 162, 163, 165, 172		
비룡2리	1	제1반	(162 ~ 172) 169, 276, 323, 326, 329, 322, 320		
		제2반	(278 ~ 284) 278, 279, 280, 281, 228, 284		
구미리	1	제1반	(143 ~ 산4-2) 143, 144, 145, 146, 146-1, 183, 187, 190 ~ 192, 산4-2		
		제2반	(154 ~ 168) 154, 156, 157, 158, 160, 162, 165, 166, 167, 168		
		제3반	(90 ~ 93) 90, 92, 93		
		제4반	(103 ~ 142) 103, 136, 137-1, 138, 139, 140, 141, 142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사동1리	1	제1반	(22 ~ 39-1) 22, 25-1, 25-2, 31, 31-1, 34, 35-2, 36-1, 36-3, 38-1, 39-1
		사동2리	1	제1반	(135 ~ 285) 135, 189, 190-1, 190-2, 190-3, 190-4, 191, 192, 197, 257, 258, 263, 270, 271, 274-1, 277, 278-1, 279, 280-1, 280-2, 280-3, 283, 284, 285
		갈원1리	1	제1반	(9-1 ~ 40) 9-1, 36-5, 36-2, 36-4, 37, 38-1, 38-2,
				제2반	(43 ~ 146-3) 43, 43-1 ~ 43-12, 85, 90, 141, 142, 79-3, 79-4, 73-1, 74-2, 75-2, 75-5, 75-6, 76-1, 76-2, 77-8, 143-1, 143-3, 145-1, 145-3
		갈원2리	1	제1반	(157-2 ~ 173-7) 157-2, 159-3, 165-1, 166-1, 167-1, 168-1, 168-2, 170-1, 173-4 ~ 173-7
				제2반	(172 ~ 185-1) 172, 172-1, 173, 173-1, 173-3, 174, 175, 177-1, 182-1, 182-2, 182-4, 182-5, 182-6,
		팔봉리	1	제1반	(178 ~ 323) 178, 179, 182, 263, 269, 286, 288, 290, 291, 292, 293, 301, 304, 307, 323
				제2반	(81 ~ 91) 81, 86, 87, 89, 91
				제3반	(77 ~ 128) 77, 78, 108, 109, 110, 128
		상발리	1	제1반	(43 ~ 192) 43, 91, 192
				제2반	(58 ~ 73) 58, 57, 61, 67, 68, 69, 73
		구암리	1	제1반	(260 ~ 296) 260, 261, 262, 263, 264, 272, 273, 294, 295, 296
				제2반	(161 ~ 170) 161, 162, 163, 170
				제3반	(26 ~ 95) 26, 27, 28, 95
		석실리	1	제1반	(51 ~ 66) 51, 52, 53, 54, 66
				제2반	(67 ~ 78) 67, 68, 69, 70, 78
				제3반	(84 ~ 127) 84, 85, 86, 87, 127
				제4반	(234 ~ 237) 234, 235, 236, 237
				제5반	(275 ~ 324) 275, 276, 277, 317, 324
		석판1리	1	제1반	(165-1~212) 165-1, 171, 172, 174, 176, 176-1, 177, 179, 180, 180-1, 185, 185-1, 185-2, 188, 188-3~188-5, 190-1, 191-1, 192-2, 195, 200, 201, 203,
				제2반	(270~379-1) 270, 270-1, 270-2, 274, 275, 277, 278, 279, 281, 282, 283, 284, 286, 288-2, 289, 290-1, 290-2, 292, 293, 294, 297-2, 298, 299, 300, 301-1~301-5, 302-2, 309-1, 379-1
		석판2리	1	제1반	(2-3~25-28) 2-3, 2-4, 4, 5, 6-1, 7-3, 7-4, 7-6~7-8, 12-1, 19, 25-8, 25-13, 25-16, 25-17, 25-21, 25-22, 25-24, 25-28
				제2반	(40~104) 40, 43-3, 44-2, 44-4, 44-5, 45, 46, 47, 47-4, 55, 56, 61-1, 61-2, 64, 66-3, 68, 86-1, 90, 90-5, 90-7~90-9, 94, 101-4, 103, 104
대련1리	1	제1반	(214 ~ 250) 248-1~248-3, 249-1~249-5, 250-1~250-10, 251-1~251-5, 252-1~252-7, 253, 255,		
		제2반	(218 ~ 240-2) 218~240-2		
대련2리	1	제1반	(20 ~ 258) 20~70, 89-1, 94-1, 102, 103, 118-1~118-6, 122		
가좌1리	1	제1반	270~279, 366~375		
		제2반	64~78, 244~269, 376~388		
		제3반	280~365		
가좌2리	1	제1반	1~63, 79~243		
양촌1리	1	제1반	(280 ~ 350) 280, 345, 343, 346, 348, 349, 350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2반	(351 ~ 374) 351, 352, 354, 355, 356, 362, 363, 360, 358, 364, 365, 369, 368, 367, 371, 372, 373, 374		
				제3반	(213 ~ 255) 213, 214, 215, 236, 237, 240, 242, 243,		
				제4반	(159 ~ 186) 159, 163, 169, 172, 185, 186		
		양촌2리	1	제1반	1~35,40~53		
				제2반	36~39, 54~79, 93~113		
		양촌3리	1	제1반	267~305		
				제2반	306~337		
		가마1리	1	제1반	(332 ~ 344) 332, 333, 335, 336, 337, 338, 339, 340, 342, 343, 344		
				제2반	(286 ~ 293)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제3반	(243 ~ 290) 243, 275, 276, 277, 279, 282, 283, 287,		
		가마2리	1	제1반	(212 ~ 213) 212, 213		
				제2반	(99 ~ 114) 99, 100, 102, 106, 113, 114		
				제3반	(18 ~ 24) 18, 19, 21, 22, 24		
				제4반	(214-1 ~ 214-9) 214-1, 214-2, 214-3, 214-9		
		수대리	1	제1반	(19 ~ 111) 19, 23, 34, 35, 39, 52, 63, 64, 100, 109, 191, 111		
				제2반	(198 ~ 273) 198, 161, 263, 264, 273		
				제3반	(165 ~ 261) 165, 167, 169, 173, 261		
		부용외천1리	1	제1반	(317 ~ 376) 317, 321-2, 322, 313, 329, 330, 331, 332, 333, 336, 337, 349, 350, 351, 352, 353-3, 354, 355, 356, 357, 358, 369, 370, 375, 376		
		부용외천2리	1	제1반	(518-1 ~ 652) 518-1, 520, 524-1, 531, 533, 534, 536, 537, 538, 541, 618, 619, 620, 622, 624, 652		
				제2반	(526-1 ~ 630-2) 526-1, 526-2, 528, 529-2, 530, 531, 532, 621-1, 627, 628, 629, 630-2		
				제3반	(1041-1 ~ 1836-2) 1041-1, 1061, 1066, 1069-1,		
		부용외천3리	1	제1반	(263 ~ 495) 264, 265, 266, 267, 267-1, 267-2, 495		
				제2반	(654 ~ 690) 654, 655, 656-1, 664, 665, 666, 667, 688, 689, 690		
		소 계		31	31	76	
		현도면	상삼리	1	제1반	(51 ~ 331) 51, 141, 240, 308, 311, 331	
					제2반	(51 ~ 311) 51, 153, 140, 196, 197, 311	
제3반	(179 ~ 242) 179, 226, 230, 232, 241, 242						
제4반	(219 ~ 325) 219, 225, 230, 231, 325						
제5반	(382) 382						
중삼리	1		제1반	(103 ~ 157) 103, 106, 113, 134, 135, 136, 157			
			제2반	(175 ~ 231) 175, 178, 204, 205, 206, 228, 231			
			제3반	(237 ~ 245) 237, 239, 240, 241, 242, 245			
			제4반	(37 ~ 266) 37, 40, 59, 249, 250, 251, 266			
			제5반	(240 ~ 321) 240, 309, 315, 321			
죽전1리	1		제1반	(606 ~ 652) 606, 610, 629, 631, 635, 636			
			제2반	(4 ~ 635) 4, 247, 606, 610, 627			
죽전2리	1		제1반	(251 ~ 269) 251, 256, 259, 260, 261, 267, 268, 269			
			제2반	(156 ~ 277) 156, 225, 260, 267, 268, 269, 274, 277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죽전3리	1	제1반	(313 ~ 317) 313, 314, 315, 317
				제2반	(4 ~ 317) 4, 42, 45, 54, 65, 67, 10,1 314, 315, 317
		우록1리	1	제1반	(66 ~ 439) 66, 107, 106, 114, 407, 108, 109, 118,
				제2반	(10 ~ 551) 10, 105, 408, 440, 421, 441 ~ 439, 551
				제3반	(105 ~ 441) 414, 411, 447, 105, 407, 408, 424, 421, 108, 406, 425, 427, 429, 440
		우록2리	1	제1반	(708-2 ~ 735-2) 708-2, 714-1, 730-1, 730-2, 730-3, 730-5, 730-6, 731, 731-1, 731-2, 731-4, 731-5, 731-6, 735-2
				제2반	(260 ~ 307-3) 260, 261, 263, 264, 265, 266-1, 267, 268, 269, 270, 272, 277-2, 278-2, 279, 293-1, 296-7, 304, 305, 305-1, 306, 306-1, 307-2, 307-3
		우록3리	1	제1반	(334-2 ~ 348-3) 334-2, 334-6, 334-7, 336-1, 337-1, 338, 339, 340-2, 342-1, 347-1, 347-3, 348-3
		시동리	1	제1반	(53 ~ 70) 52, 53, 54, 55, 56, 62, 63, 66, 68, 69, 70
				제2반	(53 ~ 68) 53, 54, 55, 62, 68
				제3반	(4 ~ 69) 4, 22, 54, 56, 63, 65, 66, 69
				제4반	(63 ~ 522) 63, 184, 255, 419, 181, 254, 260, 522
		선동1리	1	제1반	(193 ~ 197-3) 193, 194-1, 194-3 ~ 194-10, 195, 196, 197, 197-2, 197-3
				제2반	(172 ~ 252) 172, 172-1, 173, 174-2, 175-1 ~ 175-3, 176, 176-1, 177, 177-1 ~ 177-3, 178, 179, 181, 182, 183, 183-1 ~ 183-3, 184-2, 200, 201, 201-1, 203, 203-1 ~ 203-2, 204-1 ~ 204-2, 208, 208-1, 251, 252
				제3반	(55-1 ~ 171) 55-1, 55-3, 56-1 ~ 56-9, 110-5, 118-1, 118-10, 152-3 ~ 152-6, 163, 164, 165-1 ~ 165-2, 166, 167, 168, 169, 170, 171
				제4반	(406-2 ~ 502-5) 406-2 ~ 406-3, 428-2, 465-3 ~ 465-4, 465-6 ~ 465-8, 474-1, 476-3, 476-6, 481-2, 484, 485-1, 485-5, 491-1, 496-1, 496-6, 498-5, 499-2 ~ 499-3, 500-3, 501-4, 502-5
		선동2리	1	제1반	(337 ~ 373) 337, 342, 342-1, 353-1 ~ 353-6, 354, 372, 373
		시목1리	1	제1반	(292 ~ 435) 292, 405, 410, 411, 421, 422, 435
				제2반	(292 ~ 442) 292, 405, 411, 421, 412, 441, 442, 302, 337, 394
		시목2리	1	제1반	(35 ~ 292) 35, 96, 165, 196, 197, 199, 200, 206, 292
제2반	(101 ~ 458) 101, 113, 120, 138, 153, 165, 156, 445, 422, 454, 455, 456, 458				
시목3리	1	제1반	(229 ~ 515) 229, 233, 235, 237, 292, 330, 335, 337, 356, 376, 377, 392, 405, 411, 435, 456, 515		
		제2반	(153 ~ 432) 150, 252, 302, 432		
중척1리	1	제1반	(203-1 ~ 233-3) 203-1, 205, 206, 206-1, 207-1 ~ 207-2, 230-1, 231, 231-1 ~ 231-3, 232, 232-1, 233-		
		제2반	(241 ~ 257) 241, 242-1 ~ 242-3, 242-5 ~ 242-6, 243, 243-1, 245-3, 247, 247-1, 248, 249, 249-1 ~ 249-14, 253, 253-1 ~ 253-2, 254, 254-1 ~ 254-5, 257		
		제3반	(5 ~ 374-5) 5, 10-1, 10-3, 13, 14, 15, 25-1, 26, 31, 33, 34, 314-1 ~ 314-2, 315, 317-1, 329-1 ~ 329-1, 330-1, 330-3, 337-2 ~ 337-3, 355-3, 357-4 ~ 357-6, 359-1, 363-1, 372, 374-1, 374-5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중척2리	1	제1반	(91-3 ~ 114) 91-3, 92, 92-1 ~ 92-2, 92-5, 93-1, 95-2, 95-4, 98, 99, 99-1 ~ 99-2, 101, 102, 103, 104, 106, 106-1 ~ 106-2, 107-1 ~ 107-3, 108, 109, 110, 110-2, 113, 114
				제2반	(130-1 ~ 495-2) 130-1, 135-1, 151-2 ~ 151-4, 154-3, 157-1, 157-3 ~ 157-4, 159, 169, 170-1 ~ 170-2, 173, 175, 175-1 ~ 175-2, 176, 176-1 ~ 176-4, 178, 179, 179-2, 180, 422-5, 423-4, 423-6, 445, 454, 482-1 ~ 482-2, 486-1 ~ 486-2, 487-1, 488, 495-2
		중척3리	1	제1반	(554-3 ~ 615) 554-3, 555, 576-1, 578-1, 580, 583-1, 588-1, 591-1, 611-1, 614, 615
		하석1리	1	제1반	(286 ~ 533) 286, 287, 295, 316, 358, 493, 519
				제2반	(194 ~ 269) 194, 267, 268, 269
				제3반	(93 ~ 269) 94, 180, 189, 194, 195, 268, 269
		하석2리	1	제1반	(43 ~ 456) 43, 98, 105, 382, 411, 428, 432, 434, 435, 436, 439, 446, 447, 456
				제2반	(5 ~ 439) 5, 21, 22, 29, 50, 439
		노산1리	1	제1반	(17 ~ 262) 17, 32, 65, 66, 124, 233, 262
				제2반	(57 ~ 762) 57, 63, 136, 142, 210, 232, 252, 315, 328, 629, 736, 739, 762
				제3반	(102 ~ 762) 102, 210, 235, 256, 264, 265, 266, 271, 330, 370, 629, 627, 631, 712, 736, 762
				제4반	(146 ~ 762) 146, 306, 307, 310, 315, 622, 624, 623, 633, 762
		노산2리	1	제1반	(66-826) 66, 107, 629, 640, 646, 684, 690, 722, 736, 739, 741, 821,
				제2반	(162-832) 162, 647, 685, 681, 687, 690, 699, 722, 724, 741, 820, 822, 824, 826, 832
				제3반	(79-739) 79, 286, 318, 520, 539, 571, 627, 638, 724, 739.
		노산3리	1	제1반	61-1, 61-3, 63, 64, 65, 65-1 ~ 17, 66, 66-1, 66-2, 산17-1, 산57, 460-1, 465-2
		달계1리	1	제1반	(475-1 ~ 496-2) 475-1, 475-4, 475-6, 476-1, 476-4 ~ 476-9, 476-11 ~ 476-12, 487-1, 492-1, 493, 494, 495, 496-2
				제2반	(439-1 ~ 462-2) 439-1, 440, 442, 443, 443-1 ~ 443-2, 446, 450-2, 451-1, 458-3 ~ 458-4, 458-6, 458-9 ~ 458-10, 460, 461, 462-1 ~ 462-2
				제3반	(316-1 ~ 437) 316-1 ~ 316-7, 317, 318-1, 319-1 ~ 319-2, 319-8, 319-14, 327-3, 327-5, 404, 411, 411-1 ~ 411-3, 412-2, 435-1 ~ 435-4, 436, 436-2,
		달계2리	1	제1반	(182 ~ 312) 182, 183, 187, 194, 274, 279, 281, 311,
제2반	(109 ~ 311) 109, 182, 183, 184, 187, 188, 189, 194,				
제3반	(27 ~ 274) 27, 36, 46, 51, 54, 56, 57, 64, 259, 274				
제4반	(92 ~ 164) 92, 116, 157, 164				
달계3리	1	제1반	(570 ~ 593-3) 570, 571-1 ~ 571-2, 571-4, 572, 572-1 ~ 572-2, 573-1, 575, 575-2, 576, 577-2 ~ 577-3, 577-8, 578, 593-3		
		제2반	(525-2 ~ 569) 525-2, 526, 537-1, 542, 543-1, 543-3, 544-1, 545-3, 548-3, 552-1, 553-2, 554, 561, 562-1 ~ 562-4, 563, 564, 564-1, 565, 566-1, 567,		
매봉1리	1	제1반	(276-1 ~ 310-1) 276-1 ~ 276-3, 277, 277-1, 278-1 ~ 278-4, 279, 280-1, 281-3, 284-1, 285-1, 286, 287, 288, 300-1, 308, 309-1, 310-1,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2반	(233-1~275-2) 233-1~233-8, 245, 247, 248-1~248-8, 249~249-5, 251-1~251-17, 251-1~251-17, 269, 273-1~273-22, 274-1~274-3, 275, 275-2				
				매봉2리	1	제1반	(118-2~261-2) 118-2, 119, 122-1, 121-1, 123-1, 127, 128, 130-1, 133, 141, 144, 147, 148, 153, 156, 157, 158, 224-1~224-33, 225~225-8, 254-1~254-12, 257, 258-1~258-3, 259-1~259-5, 261-2		
				양지1리	1	제1반	(206 ~ 551) 206, 244, 238, 284, 344, 348, 352, 355, 551, 353		
						제2반	(168 ~ 545) 168, 231, 255, 268, 269, 340, 342, 348, 352, 452, 545		
						제3반	(74 ~ 348) 74, 168, 166, 212, 244, 246, 283, 284, 291, 296, 344, 348		
				양지2리	1	제1반	(51 ~ 112) 51, 709, 74, 112		
						제2반	(45 ~ 101) 45, 51, 53, 70, 73, 74, 101		
				죽암1리	1	제1반	(379-1 ~ 489) 379-1, 387, 400, 401, 404-1, 405, 406, 407, 431-1, 489		
						제2반	(273-1 ~ 368-1) 273-1 ~ 273-3, 276-5, 283-2, 295, 295-2, 317-4, 352-1, 352-3, 352-6 ~ 352-7, 353-1 ~ 353-2, 354-1 ~ 354-2, 356-3, 360, 361-1 ~ 361-12, 362, 363, 364-1 ~ 364-3, 365-4, 365-6, 365-8, 365-10, 365-16, 368-1		
				죽암2리	1	제1반	(18 ~ 207) 18, 21, 38, 44, 45, 46, 65, 72, 74, 75, 75-1 ~ , 75-2, 76-2, 77, 151, 171-1 ~ 171-2, 184, 184-1, 202, 203, 204, 205, 206, 207		
소계	1읍2면	125	125	419					
흥덕구	오송읍	소 계	49	49	175				
						호계리	1	제1반	(6 ~ 17) 6, 12, 14, 15, 16, 17
								제2반	(20 ~ 36) 20, 25, 29, 32, 33, 35, 36
								제3반	(47 ~ 76) 47, 49, 52, 53, 54, 57, 60, 69, 70, 72, 76
						상정1리	1	제1반	(24 ~ 199) 24, 170, 173, 178, 182, 186, 191, 199, 283, 284
								제2반	(75 ~ 186) 75, 120, 151, 159, 160, 162, 165, 170, 173, 186
						상정2리	1	제1반	(9 ~ 401) 9, 10, 14, 82, 86, 90, 97, 107, 119, 120, 130, 232, 160, 178, 232, 401
								제2반	(45 ~ 511) 45, 47, 82, 87, 183, 464, 490, 496, 497, 498, 499, 502, 508, 509, 511
						공북1리	1	제1반	(31 ~ 134) 31, 68, 69, 70, 71, 72, 74, 81, 134
								제2반	(52 ~ 213) 52, 68, 72, 74, 82, 86, 134, 213
								제3반	(329 ~ 511) 329, 394, 397, 430, 432, 434, 435, 500,
						공북2리	1	제1반	(329 ~ 511) 329, 330, 367, 392, 394, 397, 400, 402, 410, 429, 430, 431, 432, 433, 434, 435, 500, 511
								제2반	(380 ~ 550) 380, 390, 394, 395, 400, 402, 421, 427, 432, 436, 437, 566
								제3반	(329 ~ 511) 329, 394, 397, 430, 432, 433, 434, 435, 500, 511
						쌍청1리	1	제1반	(59 ~ 365) 59, 147, 151, 152, 158, 159, 243, 287,
								제2반	(72 ~ 172) 72, 122, 125, 131, 158, 165, 166, 167, 169, 170, 172
								제3반	(26 ~ 238) 26, 34, 113, 150, 159, 167, 163, 172, 188, 190, 238
제4반	(321 ~ 440) 321, 350, 353, 359, 361, 368, 388, 438, 439, 440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쌍청2리	1	제1반	(26 ~ 459) 26, 49, 89, 113, 115, 122, 136, 138, 170, 320, 323, 324, 382, 438, 440, 459
				제2반	(49 ~ 450) 49, 112, 113, 115, 118, 120, 122, 178, 244, 238, 294, 320, 321, 322, 324, 450
				제3반	(112 ~ 324) 112, 113, 115, 121, 122, 123, 126, 132, 138, 159, 170, 321, 324
				제4반	(60 ~ 892) 60, 61, 62, 74, 112, 113, 122, 123, 440, 579, 892
				제5반	(305-39 ~ 305-41) 305-39, 305-40, 305-41
		만수1리	1	제1반	(46 ~ 204) 46, 47, 51, 102, 118, 119, 125, 126, 156, 171-2
				제2반	175, 185, 186, 204
				제3반	(1 ~ 51) 1, 6, 9, 16, 17, 19
				제4반	23, 24, 37, 43, 46, 57, 51
				제5반	(102~126)102, 118, 119, 125, 126, 517~544
		만수2리	1	제1반	549-1 (오송휴먼시아1단지 제101동)
				제2반	549-1 (오송휴먼시아1단지 제102동)
				제3반	549-1 (오송휴먼시아1단지 제103동)
				제4반	549-1 (오송휴먼시아1단지 제104동)
				제5반	549-1 (오송휴먼시아1단지 제105동)
				제6반	549-1 (오송휴먼시아1단지 제106동)
		만수3리	1	제1반	549-1 (오송휴먼시아1단지 제107동)
				제2반	549-1 (오송휴먼시아1단지 제108동)
				제3반	549-1 (오송휴먼시아1단지 제109동)
				제4반	549-1 (오송휴먼시아1단지 제110동)
				제5반	549-1 (오송휴먼시아1단지 제111동)
				제6반	549-1 (오송휴먼시아1단지 제112동, 상가동)
		만수4리	1	제1반	549 (오송마을휴먼시아2단지 제201동, 상가동)
				제2반	549 (오송마을휴먼시아2단지 제202동)
				제3반	549 (오송마을휴먼시아2단지 제203동, 제206동)
				제4반	549 (오송마을휴먼시아2단지 제204동)
				제5반	549 (오송마을휴먼시아2단지 제205동)
				제6반	549 (오송마을휴먼시아2단지 제207동)
				제7반	549 (오송마을휴먼시아2단지 제208동)
		만수5리	1	제1반	561~664, 667~673
				제2반	676~726, 732~744, 775~780, 783~870, 746~771
		연제1리	1	제1반	(731)오송상록롯데캐슬A301동, 상가동
				제2반	(731)오송상록롯데캐슬A302동
제3반	(731)오송상록롯데캐슬A303동				
제4반	(731)오송상록롯데캐슬A304동				
제5반	(731)오송상록롯데캐슬A305동				
제6반	(731)오송상록롯데캐슬A306동				
제7반	(731)오송상록롯데캐슬A307동				
연제2리	1	제1반	(523 ~ 538) 523, 524, 525, 529, 530, 536, 538		
		제2반	(524 ~ 563) 524, 531, 536, 538, 540, 563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연제3리	1	제1반	(736)오송호반베르디움A601동, 상가동
				제2반	(736)오송호반베르디움A602동
				제3반	(736)오송호반베르디움A603동
				제4반	(736)오송호반베르디움A604동
				제5반	(736)오송호반베르디움A605동
				제6반	(736)오송호반베르디움A606동
				제7반	(736)오송호반베르디움A607동
		연제4리	1	제1반	(700)오송힐데스하임A801동, 상가동
				제2반	(700)오송힐데스하임A802동
				제3반	(700)오송힐데스하임A803동
				제4반	(700)오송힐데스하임A804동
				제5반	(700)오송힐데스하임A805동
				제6반	(700)오송힐데스하임A806동
				제7반	(700)오송힐데스하임A807동
				제8반	(700)오송힐데스하임A808동
		연제5리	1	제1반	(726)오송미래도A501동, 상가동
				제2반	(726)오송미래도A502동
				제3반	(726)오송미래도A503동
				제4반	(726)오송미래도A504동
		연제6리	1	제1반	(740)대원칸타빌A701동, 상가동
				제2반	(740)대원칸타빌A702동
				제3반	(740)대원칸타빌A703동
				제4반	(740)대원칸타빌A704동
				제5반	(740)대원칸타빌A705동
		연제7리	1	제1반	742~746, 774~781, 749~752, 782~786, 817~836,
				제2반	803~816, 789~802, 761~773, 753~760
		궁평1리	1	제1반	(33 ~ 356) 33, 60, 95, 96, 99, 98, 120, 135, 250, 256, 257, 259, 270, 356
				제2반	(28 ~ 261) 28, 90, 109, 233, 225, 256, 257, 258, 259,
				제3반	(98 ~ 261) 98, 99, 150, 250, 253, 254, 256, 257, 258, 259, 261
				제4반	(60 ~ 279) 60, 90, 98, 99, 253, 254, 255, 256, 257,
		궁평2리	1	제1반	(55 ~ 390) 55, 268, 333, 334, 335, 336, 337, 98, 274, 276, 303
제2반	(268 ~ 337) 268, 333, 334, 335, 336, 337				
제3반	(62 ~ 378) 62, 267, 273, 276, 278, 355, 336, 357, 358, 367, 268, 274, 333, 336, 375, 378				
궁평3리	1	제1반	(53 ~ 56) 53, 54, 56		
		제2반	(60 ~ 145) 60, 61, 62, 63, 64, 65, 66, 135, 142, 145		
		제3반	(54 ~ 256) 54, 61, 62, 70, 71, 72, 74, 75, 80, 135, 143, 147, 256		
궁평4리	1	제1반	271-3		
		제2반	271-3		
오송1리	1	제1반	(60 ~ 249) 60, 64, 125, 160, 249		
		제2반	(60 ~ 125) 60, 61, 66, 125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3반	(60 ~ 254) 60, 61, 67, 135, 250, 140, 254		
				제4반	(60 ~ 260) 60, 63, 66, 104, 196, 220, 260		
				제5반	(60-3 ~ 250) 60-3, 61, 66, 67, 69, 71, 124, 144, 250		
				제6반	54-1, 54-31, 53-3, 107-5, 151-3, 107-5, 153-1, 167-1, 167-3		
				제7반	47-3, 47-4, 51-1, 51-25, 53-1, 53-9, 60-59, 60-123		
				제8반	44-2, 44, 14, 46-2, 46-21, 56-1, 56-14		
				오송2리	1	제1반	(60 ~ 250) 60, 64, 65, 66, 67, 142, 143, 145, 146,
						제2반	(60 ~ 250) 60, 67, 138, 138-2, 140, 180, 210, 250
		제3반	(60 ~ 254) 60, 66, 140, 142, 143, 144, 145, 222, 250,				
		제4반	(21 ~ 250) 21, 60, 66, 67, 131, 134, 138, 140, 142, 143, 145, 180, 181, 210, 235, 250				
		제5반	(176-6) 176-6				
		제6반	(144-8 ~ 144-40) 144-8, 144-10, 144-40				
		오송3리	1	제1반	(43-2~273-2)43-2, 43-4, 250-2~250-15, 250-20, 251-2~251-4, 252, 256-1~256-7, 257-2~257-15, 258-1~258-12, 261-2~261-5, 273-2		
				제2반	(245-1~255-5)245-1, 246-3, 246-4, 246-9, 246-19, 246-88, 246-91, 249-3~249-10, 250-16~250-19, 253-1~253-8, 254-6, 255-2~255-5		
				제3반	(245-3~275-27)245-3, 246-11, 246-16~246-18, 246-20~ 246-85, 247-1~247-3, 275-3, 275-20,		
				제4반	(276-285~281-18)276-285~276-371, 281-4~281-		
		오송4리	1	제1반	(60 ~ 83) 60, 66, 78, 79, 80, 81, 82, 83		
				제2반	(61 ~ 250) 61, 81, 83, 101, 102, 104, 112, 113, 181,		
				제3반	29-1 ~ 29-25		
		오송5리	1	제1반	(358-1 ~ 360-63) 358-1, 358-5, 358-15, 358-16, 359-2, 359-4, 359-6, 360-10, 360-11, 360-60,		
				제2반	(360-68 ~ 362-17) 360-68, 360-76, 360-83, 360-84, 360-85, 360-86, 360-87, 360-88, 360-112, 362-5, 362-16, 362-17		
		오송6리	1	제1반	263-3		
				제2반	263-3		
		오송7리	1	제1반	(242-5~221)219-2~219-4, 220-1, 221, 222, 223-8, 223-16~223-20, 223-28~223-30, 223-44~223-49, 223-57, 242-5, 242-12, 242-16		
				제2반	(220-2~315-3)220-2, 223-10, 223-11, 223-21~223-25, 223-31~223-35, 223-52~223-56, 223-58~223-63, 242-10, 242-11, 242-14, 242-15, 242-20, 242-22, 315-3, 316-2		
		동평1리	1	제1반	(67 ~ 179) 67, 139, 147, 150, 153, 165, 168, 170,		
				제2반	(20 ~ 193) 20, 80, 132, 141, 142, 143, 144, 179, 183, 185, 193		
제3반	(70 ~ 357) 70, 84, 90, 124, 136, 142, 168, 185, 193,						
동평2리	1	제1반	(33 ~ 236) 33, 44, 48, 82, 89, 90, 102, 142, 170, 236				
		제2반	(6 ~ 235) 6, 67, 87, 88, 90, 142, 145-2, 153-5, 179, 192, 235				
		제3반	(6 ~ 413) 6, 44, 65, 140, 141, 171, 179, 357, 413,				
동평3리	1	제1반	(38 ~ 624) 38, 82, 84, 178				
		제2반	179, 185, 400, 445, 453, 482, 624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서평1리	1	제1반	(156-1~176-1) 156-1~156-4, 157-2, 158-1~158-4, 160, 166-1, 166-2, 168-4, 168-5, 171-1, 173-2~173-14, 173-17~173-23, 176-1
				제2반	(1-3~153-5) 1-3, 1-4, 31-7, 31-8, 140-1~140-3, 140-5, 141-1~141-3, 142-4, 143, 144-1~144-6, 144-9, 150-1, 150-3, 152-3, 153-5
				제3반	(61-2~179-2) 61-2, 62-4, 62-7, 63-3~63-5, 64-1, 67-1, 68-2~68-4, 76-2, 76-4, 82-3~82-7, 82-10, 83-8~83-11, 84-1, 90-1, 90-5, 90-7, 90-10, 90-15, 118-3, 138-6, 178-5, 178-6, 179-2
				제4반	(359-3~676-16) 359-3, 360, 360-1, 360-2, 497, 499, 500-1, 583-31, 589-1, 591-2, 592-3, 593-30, 594-1, 600-1, 602-1, 602-4, 604-1, 614-1, 616-3, 617-1~617-5, 619-1~619-4, 620-13, 620-14, 620-20~620-22, 621-4, 621-6, 623-4, 623-9, 623-12, 623-13, 623-24, 668-39, 668-47, 670-10~670-12, 672-3, 672-5, 673-3, 676-16
		서평2리	1	제1반	(363 ~ 376) 363, 372, 373, 376
				제2반	(434 ~ 458) 434, 436, 458
				제3반	(461 ~ 630) 461, 489, 624, 630
		서평3리	1	제1반	(25 ~ 231) 25, 27, 53, 156, 231
		서평4리	1	제1반	29-3(보영아파트 101호~106호, 201호~206호, 301호, 306호, 401호~406호, 501호~506호, 601호~606호, 701호~706호, 804호~806호, 906호, 상가)
				제2반	29-3(보영아파트 107호~110호, 207호~210호, 307호~310호, 407호~410호, 507호~510호, 607호~610호, 707호~710호, 807호~810호, 907호~910호, 1007호~1010호, 1109호~1110호, 1209호~1210호, 1309호)
		봉산1리	1	제1반	(432 ~ 443) 432, 433, 435, 439, 440, 441, 443
				제2반	(34 ~ 455) 34, 48, 134, 240, 346, 428-1, 454, 455
				제3반	(429 ~ 466) 429, 431, 448, 445, 443, 449, 455, 456, 401, 465, 466
		봉산2리	1	제1반	(120 ~ 286) 120, 235, 238, 240, 267, 268, 286
				제2반	(185 ~ 346) 185, 204, 240, 285, 346
				제3반	(134 ~ 346) 134, 204, 240, 249, 346
		봉산3리	1	제1반	(567 ~ 597) 567, 591~597
				제2반	(598~611) 598, 600~606, 608, 611
		봉산4리	1	제1반	321~345
				제2반	346~399
		봉산5리	1	제1반	612-6(삼부아파트 1동A 101~104, 201~204, 301~304, 401~404, 501~504, 601~604, 701~704, 801~803, 901~903, 1001~1003, 1101~1103)
				제2반	612-6(삼부아파트 1동A 105~108, 205~208, 305~308, 405~408, 505~508, 605~608, 705~708, 804~806, 904~906, 1004~1006, 1104~1105)
				제3반	612-6(삼부아파트 1동B 101~105, 201~205, 301~305, 401~405, 501~505, 601~605, 701~705, 801~804, 901~904, 1001~1004, 1101~1103)
				제4반	612-6(삼부아파트 1동B 106~110, 206~210, 306~310, 406~410, 506~510, 606~610, 706~710, 805~808, 905~908, 1005~1008, 1104~1106)
제5반	612-6(삼부아파트 2동 101~406)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정중1리	1	제1반	(19~125) 19, 23, 24, 27, 29, 35, 45, 94, 98, 108, 125, 195, 197, 198, 199, 200, 204, 206, 208, 212,
				제2반	(126~327) 126, 173, 178, 179, 188, 190, 193, 194
				제3반	(216~327-1) 216, 217, 250, 275, 276, 279, 286, 291, 327-1
				제4반	(90~509) 90, 160, 187, 297, 303, 308, 327, 375, 400, 509
		정중2리	1	제1반	(107~147) 107, 125, 138, 147
				제2반	(157~350) 157, 189, 190, 198, 210, 218, 250, 300, 301, 302, 339, 340, 350
				제3반	(351~591) 351, 353, 355, 360, 367, 374, 377, 591
		정중3리	1	제1반	(40~556) 40, 529, 556
				제2반	(562~565) 562, 563, 564, 565
				제3반	(569~596) 569, 570, 579, 595, 596
				제4반	(557~604) 557, 558, 594, 604
		정중4리	1	제1반	(35~95) 35, 36, 65, 86, 95
				제2반	(96~125) 96, 101, 102, 125
		정중5리	1	제1반	(562-8) 562-8
		상봉1리	1	제1반	(75~231) 75, 76, 112, 114, 133, 231
				제2반	(114~231) 114, 115, 130, 132, 133, 231
		상봉2리	1	제1반	(75~241) 75, 114, 132, 212, 228, 231, 241
				제2반	(26~448) 50, 60-1, 61, 73, 74-1, 151, 212, 220, 231, 305, 306, 307, 371, 448
				제3반	(114~233) 114, 212, 228, 233
				제4반	(350~371) 350, 367, 30, 371
소 계	35	35	110		
강내면	연정1리	1	제1반	(92~277) 92-4, 92-3, 120, 131, 156, 155-1, 155-6, 159, 162, 152-3, 156, 93, 92, 124, 151, 152, 153, 154, 155, 155-2, 155-1, 155-8, 168, 277	
			제2반	(92~185-3) 131-1, 131-2, 131-3, 151, 151-1, 152-2, 155, 155-6, 145-1, 172, 185-1, 92, 93, 152-	
	연정2리	1	제1반	(2~175) 2, 3, 173, 173-1, 173-2, 153, 174, 131-3, 155, 155-3, 175, 155-7, 160, 168, 169, 170, 171,	
			제2반	(5~181-2) 5, 20, 22, 81, 81-2, 132, 79-5, 79-4, 111, 19, 79-1, 17, 16-2, 16, 13, 6, 81, 17-3	
	궁현1리	1	제1반	(5~181-2) 5, 20, 22, 81, 81-2, 132, 79-5, 79-4, 111, 19, 79-1, 17, 16-2, 16, 13, 6, 81, 17-3	
			제2반	(3~11) 3, 8, 10, 8-1, 5, 4, 11	
	궁현2리	1	제1반	(13~246) 13, 134, 135, 227-1, 191-5, 134-11, 134-10, 190, 246, 230, 191, 134	
			제2반	(16~236-2) 131, 16, 195, 136-2, 134, 115, 236, 232-3, 134, 135, 191, 192, 191-2, 191-5, 134-5,	
	저산1리	1	제1반	(2~248) 2, 36, 226, 229, 201, 218, 34, 228, 248	
			제2반	(7~248) 7, 38, 216, 23, 229, 228, 226, 223, 219, 218, 71, 220, 248	
			제3반	(9~230) 9, 11, 12, 16, 36, 40, 42, 44, 49, 27, 43, 35, 47, 103, 226, 15, 10, 9, 159, 47, 45, 226, 230	
	저산2리	1	제1반	(16~168) 16, 50, 48, 49, 44, 42, 133, 167, 168, 60, 11, 25, 27, 33, 47, 34, 32, 49, 48, 45, 36	
			제2반	(159~164) 159, 164	
제3반			(19~30) 19, 24, 23, 30		
당곡리	1	제1반	(4~122) 4, 13, 26, 28, 32, 15, 14, 122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2반	(1-5 ~ 123) 1-5, 34, 122, 123
		산단리	1	제1반	(32 ~ 201) 32, 33, 34, 37, 135, 49, 50, 137, 136, 135, 74, 134, 133, 132, 82-1, 201
				제2반	(34 ~ 202) 34, 135, 78, 61, 51, 52, 50, 49, 48, 38, 37, 36, 200, 201, 91, 202
		다락1리	1	제1반	(산50 ~ 347-1) 341, 326, 331, 341-1, 315-8, 317, 315, 341-5, 347-1, 347, 346, 315-1, 341-4
				제2반	(310 ~ 341) 310, 315, 326, 315-10, 319, 317, 320, 321, 318, 322, 315-5, 262, 315-1, 341, 316-9, 327, 326-11, 315-8
		다락2리	1	제1반	(24 ~ 207) 60, 24, 206, 207, 73-2, 28, 35, 49, 68-7, 49, 68, 25, 29, 72, 80
				제2반	(24 ~ 80) 72, 24, 80, 70, 73-2, 68, 68-6, 68-1, 66, 62, 64, 24-1
		태성1리	1	제1반	(83 ~ 303) 82, 120, 90, 170, 87, 89, 121, 169, 89-7, 89-3, 89-5, 89-2, 84, 83-3, 90, 63, 167, 127, 52, 114, 114-1, 125, 303
				제2반	(38 ~ 315-2) 38, 304, 265, 306, 310, 199, 315-1, 315, 314-1, 314, 315-2, 312, 311, 310-3, 310-2, 308, 307, 236
		태성2리	1	제1반	(23 ~ 411) 23, 389, 355, 265-7, 265-5, 265-3, 265,
				제2반	(54 ~ 406-2) 54, 265-9, 406-1, 264, 405, 406, 212, 380, 372, 265-2
		사곡1리	1	제1반	(8 ~ 446) 8, 13, 324, 276, 284-2, 320-3, 162, 165, 321, 272, 320, 320-1, 320-2, 230, 446, 341, 320-3, 316, 368, 368-2, 327, 341-6, 311, 237, 354, 168, 301, 343, 305, 306, 341, 342, 341-2, 353
				제2반	(163 ~ 472) 163, 342, 472, 436, 341, 368, 449, 301,
				제3반	(109 ~ 368) 109, 166, 221, 325, 301, 368, 343
		사곡2리	1	제1반	(102 ~ 449) 102, 444, 443, 449, 446-5, 442, 436, 368-3, 368, 325, 221, 109, 446, 115
				제2반	(7 ~ 432) 7, 432, 230, 168, 166, 165, 163, 162, 162-2, 158, 158-2, 157, 24, 11, 168, 30, 66, 26, 115
		황탄리	1	제1반	(18 ~ 19) 18, 18-5, 18-9, 18-13, 18-15, 18-17, 19
				제2반	(59 ~ 385) 59, 60-1, 60-2, 60-3, 60-4, 60-5, 60-7, 62, 63, 66-1, 249, 261-2, 274, 385
		월탄1리	1	제1반	(72 ~ 83) 72, 79, 83
				제2반	(105 ~ 243) 105, 107, 242, 243
				제3반	(256-1 ~ 301) 256-1, 290-1, 291, 293, 277, 278-1, 278-2, 30, 272, 273, 274, 275, 276
				제4반	(266 ~ 243-3) 266, 243-3
				제5반	(346 ~ 350-3) 346, 349, 350-2, 350-3
		월탄2리	1	제1반	(90) 90(태암수정@101동 가
				제2반	(90) 90(태암수정@101동 나 1 ~ 5층)
				제3반	(90) 90(태암수정@101동 나 6 ~ 10층)
				제4반	(90) 90(태암수정@102동)
		월탄3리	1	제1반	(46-7 ~ 89-24) 89-3, 89-4, 89-7, 89-8, 89-9, 89-10, 89-11, 89-14, 89-15, 89-16, 89-17, 89-18, 89-23, 89-24, 47-1, 46-7, 46-8, 467-11, 46-18, 49-1, 49-2, 50, 51, 51, 52, 63-1, 63-2, 64-1 ~ 64-3, 65,
		탑연1리	1	제1반	(74-1 ~ 299) 74-1, 101, 107-1, 102-2, 107-2, 110, 128-1, 109, 128-1, 109, 297, 102, 299
				제2반	(5 ~ 457) 128-5, 72-1, 37, 133-2, 345-1, 128, 128-1, 5, 130, 297, 102, 74-1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탐연2리	1	제3반	(2~342) 2, 129, 111, 70-1, 73, 95, 94-1, 128-1, 325, 107-2, 298, 342, 110		
				제1반	(148~264-1) 148, 187-1, 187-4, 188, 189-1, 189-4, 190-1, 191-1~2, 192, 193, 194, 195, 196, 198, 199-1, 200, 201, 202, 203-2, 204-1, 205-1, 205-4, 206-1, 217-7, 216-8, 218-1~2, 216-6, 210-1, 213-1, 217-8, 204-5, 205-3, 205-7, 206-7~8, 206-3, 238-3, 240-3, 240-6, 241-3, 242-3, 243-3, 244-3, 168-1, 226-1~2, 225, 224-1, 222, 221-1~2, 227-2~4, 228-1~3, 231-2, 233, 234, 235, 236, 237-4, 237-1, 240-1, 247-1, 246-2, 245-4, 245-5, 245-1~2, 250-2, 251-1, 252-1~3, 264-1, 259-4		
				제2반	(118-1~354) 118-1~35, 148-15~16, 149-1~2, 150-1~19, 151, 152-2, 153-1, 154-1~5, 155-1, 155-4, 156-1, 156-3, 157-1, 157-6~7, 158-1~15, 160-2, 163-1~2, 164, 164-3, 354		
				제3반	(120~178-8) 120, 121-1, 166-3, 166-5~8, 170-3, 167-3~4, 150-21, 172, 150-7, 150-23~24, 171-3~4, 148-1~17, 178-1~8, 146-2, 146-5~6, 118-32, 176, 176-1~9, 173-2~6		
				제4반	(179-2~275-58) 179-2, 275-17~18, 275-41, 275-55, 275-57~58		
				제5반	(산1-2~산10-13) 산1-2~3, 산2-2, 산2-4~5, 산2-1, 3~18, 산2-20~27, 산4-2~3, 산6, 산8, 산8-1, 산10-3~13(260-1~365) 260-1, 299, 290-1~5, 286-3, 285, 285-4, 286, 286-1, 288, 287-1~5, 303, 300, 301, 302, 291-4, 292-7, 293-5, 294-5, 295, 295-1, 296, 297-1~2, 298, 299-1~7, 325, 327, 328, 320, 328-5, 336-1, 322, 312-2, 312, 312-2, 321-1, 218-2, 309-1, 310-1, 311-1, 311-9~10, 304, 305, 306, 307, 308, 365, 279-2, 279-5~8, 280, 282-1~4, 282		
				탐연3리	1	제1반	322-1
						제2반	322-1
						제3반	322-1
						제4반	322-1
						제5반	135-8
						제6반	135-8
				탐연4리	1	제1반	301-1(주은반석아파트 101동)
						제2반	301-1(주은반석아파트 102동)
				탐연5리	1	제1반	88(신성청원미소지움 제101동, 상가동)
		제2반	388(신성청원미소지움 제102동)				
		제3반	388(신성청원미소지움 제103동)				
		제4반	388(신성청원미소지움 제104동)				
		제5반	388(신성청원미소지움 제105동)				
		제6반	388(신성청원미소지움 제106동)				
		석화1리	1	제1반	(116-1~269) 116-1~116-3, 117-1~117-7, 118-1~118-3, 259, 261, 266, 267, 268, 269		
				제2반	(119~256-2) 119, 120, 121, 122, 125-1, 127-1~127-10, 141-7, 143, 144-1~144-5, 145-1~145-3, 146-3~146-11, 256-2		
				제3반	(128~146-2) 128, 129, 130, 133-8, 134-1, 135-2, 136-1~136-5, 140-1~140-11, 141-1~141-12, 146-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석화2리	1	제1반	(107-1~175-8)107-1~107-10, 158-7~158-9, 171-1~171-12, 173~173-4, 174-1~174-5, 175-1~175-
				제2반	(21~164-3)21, 24-2, 97-1, 105, 105-2, 158-1, 158-5, 158-6, 159~159-8, 160-1~160-3, 161-1, 162-2, 164-1~164-3,
				제3반	(166-1~184-1)166-1~166-3,167, 168, 169~169-2, 170-1~170-8, 177-1~177-8,178-1~178-3,184-1
				제4반	191-2
		사인1리	1	제1반	(5 ~ 268) 5, 268, 240, 60, 65, 242, 252, 247, 254, 54, 66, 242, 252, 247, 254, 54, 66, 248-4, 248-7, 249,
				제2반	(24 ~ 267) 93, 94, 255, 248-2, 247, 248, 248-1, 249, 255-1, 267, 250, 54, 80, 255, 254, 246, 24
				제3반	(54 ~ 260) 54, 225, 225-2, 252, 248-8, 248-1, 74, 75, 248.
		사인2리	1	제1반	60, 54-2, 255, 67, 260, 255-2, 251-1, 250-1, 247, (55 ~ 442) 55, 68, 260, 250-2, 58, 257, 60, 61, 66, 83, 88, 100-1, 251, 442
				제2반	(65 ~ 255) 65, 89, 65-3, 68, 69, 70, 75, 107, 88, 67-1, 67, 65-5, 61, 250-4, 33, 249-1, 255, 82, 76, 74, 140, 225, 255
				제3반	(24 ~ 252-2) 24, 54-1, 88, 88-1, 62, 65, 93, 89, 90, 92, 66, 252, 252-2
		월곡1리	1	제1반	(149 ~ 291) 142, 211, 273, 265, 190, 288, 290, 274, 105, 270, 283, 284, 145, 193, 272, 291
				제2반	(133 ~ 288) 133, 139, 288, 290, 274, 105, 286, 208, 134, 142, 278, 284, 273, 282
				제3반	(118 ~ 292) 118, 273, 292, 275, 276, 288, 257
				제4반	(12 ~ 286) 12, 156, 273, 272, 286, 278, 139
				제5반	(23 ~ 778) 23, 177-1, 105, 202, 128, 106, 108, 118-3, 102, 164, 778
		월곡2리	1	제1반	300(월곡아파트)
		월곡3리	1	제1반	(150-35) 150-35
				제2반	(150-35) 150-35
				제3반	(150-33) 150-33
				제4반	(150-12) 150-12
				제5반	(150-12) 150-12
				제6반	(150-7) 150-7
				제7반	(150-7) 150-7
				제8반	(150-45 ~ 150-75) 150-45, 150-47 ~ 54, 150-71, 150-74 ~ 75
		월곡4리	1	제1반	(223-6 ~ 298-9) 223-6, 223-7, 248-2, 248-7, 248-10, 262-1, 262-2, 263-2, 263-15, 298-9(두진아파트 101동 1-2층 및 상가)
				제2반	263-2(두진아파트 101동 3-4층)
				제3반	263-2(두진아파트 101동 5-6층)
제4반	263-14(두진아파트 102동)				
월곡5리	1	제1반	227(일송그린아파트 1-5층) 245-3, 335		
		제2반	227(일송그린아파트 6-10층)		
월곡6리	1	제1반	428 (청원쌍용예가아파트 101동)		
		제2반	428 (청원쌍용예가아파트 102동)		
		제3반	428 (청원쌍용예가아파트 103동, 104동)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4반	429 (청원쌍용예가아파트 201동)	
				제5반	429 (청원쌍용예가아파트 202동)	
				제6반	429 (청원쌍용예가아파트 203동)	
				제7반	429 (청원쌍용예가아파트 204동,205동)	
		월곡7리	1	제1반	(301-10 ~ 301-11) 301-10, 301-11(세진빌라)	
				제2반	(224-1 ~ 358) 224-1~224-11, 231, 234, 235, 238, 241, 242, 244-10, 246, 261-1~261-4, 248-2, 248-7, 299-5, 299-7, 299-13, 299-14, 299-16, 300-3, 301-1, 301-9, 331-1~331-7, 357,358	
		학천리	1	제1반	(253 ~ 264) 256, 257, 258, 253, 263, 264	
				제2반	(239 ~ 288-1) 239, 262, 272, 267, 252, 288, 285, 235, 242, 234, 288-1	
				제3반	(156 ~ 360) 156, 281, 262-1, 236, 288, 267, 262, 256, 288-2, 299-2, 298, 360	
				제4반	(산43 ~ 335) 산43, 222, 223, 224, 236, 84, 81, 92, 63, 66, 225, 77, 263, 45, 335	
		소 계	41	41	134	
		옥산면	오산1리	1	제1반	(532-3 ~ 582-8) 532-3, 545-5, 546-2, 545-6, 545-7, 545-8, 545-3, 546-1, 544-1, 544-2, 543-11, 543-3 ~ 5, 543-1, 542-1, 548-6, 548-4, 543-12, 548-5, 549-9, 549-7, 549-6, 549-3, 551-14, 551-15, 551-18, 551-19, 551-20, 584-8, 584-10, 582-4,
					제2반	(535-4 ~ 540-7) 535-4, 535-2, 535-1, 535-7, 537-10, 537-14, 537-12, 537-3 ~ 6, 537-7 ~ 9, 538-1 ~ 2, 538-5, 537-17, 536-1 ~ 3, 540-1, 540-3 ~ 7,
					제3반	(400-13 ~ 586-5) 400-13, 463-1, 470, 527-3, 586-5
제4반	(400-4 ~ 644-14) 400-4, 400-13, 401-2, 477-1, 486-5, 527-4, 527-6, 579-4, 641-1, 644, 644-14					
오산2리	1		제1반	(145-2 ~ 158-3) 145-2, 145-5, 146-1, 150-1, 152-1, 155-1, 155-4 ~ 6, 156-1, 156-4 ~ 7, 157-2, 158-1, 158-3		
			제2반	(산14 ~ 249-3) 산14, 39, 96, 97, 98-2, 106-6, 102, 105-1, 106-1, 107-1, 113-6, 164-1, 164-6, 165-1, 165-3, 164-5, 165-11, 166-9, 166-3, 173-16, 174-1, 174-11, 174-13, 175-3, 249-1, 249-3		
			제3반	(산14 ~ 243-3) 39, 96, 97, 98-2, 106-6, 102, 105-1, 106-1, 107-1, 113-6, 164-1, 164-6, 165-1, 165-3, 164-5, 165-11, 166-1, 166-3, 173-16, 174-1, 174-11, 174-13, 175-3, 249-1, 249-3		
오산3리	1		제1반	(196-4 ~ 214-1) 196-4, 196-7 ~ 9, 196-11, 202-1, 211-1, 211-4, 211-6 ~ 7, 211-9 ~ 12, 211-16 ~ 17, 211-21, 211-26 ~ 28, 214-1		
			제2반	(233 ~ 205-2) 233, 210-1, 210-3, 211-29 ~ 31, 211-24 ~ 25, 211-35, 204-1, 204-3, 210-3 ~ 6, 210-1, 211-1, 204-2, 205-2		
오산4리	1		제1반	(159-2 ~ 159-10) 159-2, 159-10		
			제2반	(159-2 ~ 159-10) 159-2, 159-10		
			제3반	(159-2 ~ 159-10) 159-2, 159-10		
오산5리	1		제1반	(257-10 ~ 264-19) 257-10, 257-15 ~ 17, 158-6, 263-1, 263-15, 264-2, 264-4, 264-6, 264-10, 264-12 ~ 14, 264-16 ~ 19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2반	(253-1 ~ 590-3) 253-1, 254, 255-10, 256-8, 257-12 ~ 14, 260-2, 260-5 ~ 6, 261-6 ~ 8, 261-10 ~ 11, 261-13, 262-3 ~ 4, 263-14, 354-1, 556-4, 556-6, 556-8, 590-3
		오산6리	1	제1반	(384-17 ~ 384-27) 384-17, 384-19, 384-27
				제2반	(384-17 ~ 384-27) 384-17, 384-19, 384-27
				제3반	(384-17 ~ 384-27) 384-17, 384-19, 384-27
				제4반	(384-17 ~ 384-27) 384-17, 384-19, 384-27
		오산7리	1	제1반	(384-2 ~ 384-3) 384-2, 384-3
				제2반	(384-2 ~ 384-3) 384-2, 384-3
		오산8리	1	제1반	(159-4) 159-4
				제2반	(159-4) 159-4
		오산9리	1	제1반	(159-4) 159-4
				제2반	(160-1) 160-1
				제3반	(160-1) 160-1
				제4반	(160-1) 160-1
		오산10리	1	제1반	(247-1) 247-1
				제2반	(247-1) 247-1
				제3반	(247-1) 247-1
				제4반	(247-1) 247-1
				제5반	(247-1) 247-1
				제6반	(247-1) 247-1
		오산11리	1	제1반	(586-2) 586-2(옥산빌라)
				제2반	(589-1) 589-1(금정1차@ 103동)
		오산12리	1	제1반	(589-5) 589-5(금정2차@ 101동)
				제2반	(589-5) 589-5(금정2차@ 102동)
		오산13리	1	제1반	560-5~591-1 (아트빌아파트 제301동, 상가동)
				제2반	560-5~591-1 (아트빌아파트 제302동 101호~706호)
				제3반	560-5~591-1 (아트빌아파트 제302동 707호~1510호)
				제4반	560-5~591-1 (아트빌아파트 제303동 101호~706호)
				제5반	560-5~591-1 (아트빌아파트 제303동 707호~1510호)
				제6반	560-5~591-1 (아트빌아파트 제304동)
				제7반	560-5~591-1 (아트빌아파트 제305동)
				제8반	560-5~591-1 (아트빌아파트 제306동)
		덕촌1리	1	제1반	(196 ~ 206) 205, 206, 204-1, 204, 203, 201, 200, 196, 197
				제2반	(169 ~ 234) 196-1, 195, 194, 193, 192, 191-1, 191-2, 190, 169, 199, 108, 187, 186-3, 186-1, 186-4, 286-5, 231, 234
				제3반	(176-1 ~ 306) 176-1, 176-2, 176-3, 176, 176-2, 176-5, 176-6, 240-1, 240-2, 240-3, 240-4, 240-7, 240-6, 157-4, 306
				제4반	(16 ~ 517) 16, 22, 164-2, 160, 183, 182 181, 125-3, 122, 121, 115-2, 452-2, 517, 476
		덕촌2리	1	제1반	(1 ~ 50-1) 1, 2, 3, 4, 5, 7-1, 7-3, 38-1, 39-1, 39-2, 39-3, 3, 39-4, 39-5, 40, 40-1, 41-1, 41-2, 49, 50-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2반	(37-1 ~ 76-2) 47, 74, 76-1, 76-2, 69, 54, 55-2, 55-1, 56, 55-3, 56-3, 57, 59, 37-1, 37-2
				제3반	(26-1 ~ 100) 33, 35-2, 31-1, 31-2, 30, 31-4, 26-1, 29, 100-1
				제4반	(82 ~ 110-2) 82, 83, 86, 87-1, 87-2, 87-3, 87-4, 87-5, 87, 89-1, 89, 89-3, 105-1, 107, 108, 110
		덕촌3리	1	제1반	88-41, 671-1, 675-4, 683-5, 683-8, 683-9, 682-2, 677-3, 682-3, 693-2, 692-1, 681
				제2반	(688-6 ~ 789) 688-6, 698-1, 688-70, 752, 669, 761-4, 770, 775, 789, 761-4
		신촌리	1	제1반	(69 ~ 83) 69, 71, 71-1, 77, 78, 79, 81, 82, 80-1, 83
				제2반	(16 ~ 66) 66, 55, 64, 50-3, 21, 17, 16, 44, 38, 43
				제3반	(124-1 ~ 345-22) 124-56, 124-57, 124-9, 124-2, 124-50, 124-19, 124-22, 124-1, 345-3, 345-22
				제4반	(16 ~ 50-4) 16, 17, 19, 20, 21, 23, 25-2, 26, 27-2, 30-3, 30-4, 31, 32-2, 39, 44, 50-1, 50-4
				제5반	(124-5 ~ 347-3) 124-5 ~ 6, 344-3, 347-3, 345-3, 274-1, 274-3, 124-17, 124-20, 324-3, 265-3, 345-2, 273-2, 273-3, 273-6, 273-7, 273-9, 273-10, 273-11, 345-1, 271-1, 124-50, 124-51, 272-4, 272-2, 271-1, 261-1, 261-3
		환희1리	1	제1반	(10 ~ 488) 450, 455, 434, 470, 473, 469, 471, 472, 414, 10, 408, 344, 25, 27, 374, 466, 477, 475, 474, 481, 484, 485, 493, 494, 436, 487, 488
				제2반	(498 ~ 505) 511, 505, 504, 503, 302, 501, 500, 498,
				제3반	(16 ~ 250) 227, 228, 105, 245, 246, 250, 6, 7
		환희2리	1	제1반	(106 ~ 137) 137, 135, 134, 133, 132, 114, 113, 121, 116, 109, 107, 118, 106
				제2반	(5 ~ 45-1) 29, 40, 5, 45, 45-1
		가락1리	1	제1반	(334 ~ 446) 411, 409, 408, 334, 350, 351, 446, 441, 349, 336, 335
				제2반	(285 ~ 446) 445, 441, 442, 443, 444, 446, 350, 287, 288, 285
				제3반	(85 ~ 587) 494, 495, 496, 449, 85, 450, 484, 587,
				제4반	(475 ~ 743) 475, 492, 743, 476, 490, 484
		가락2리	1	제1반	(75 ~ 740) 75, 739-4, 739-2, 739-3, 739-1, 734, 739-6, 739-5, 740
				제2반	(639 ~ 738-1) 639, 737, 640-1, 640-2, 641-2, 735, 732, 738-1, 724-4, 731, 731-2, 731-3, 730
				제3반	(637 ~ 738-1) 637, 639, 540-1, 640-2, 641-1, 735, 732, 738-1, 727-4, 731, 731-2, 731-3, 730
		가락3리	1	제1반	(106-2 ~ 764-65) 106-2, 764-1, 764-13 ~ 14, 764-17 ~ 18, 764-23 ~ 24, 764-26, 764-55, 764-28, 765-24 ~ 25, 765-29, 765-34 ~ 35, 765-39, 765-41, 765-55, 765-62, 764-65
				제2반	(764-19 ~ 772) 764-19, 765-1, 765-5, 765-9, 765-11 ~ 12, 765-14 ~ 15, 765-19, 765-21, 766-3, 766-5, 766-19, 769-4, 769-9, 771, 772
제3반	(765-4 ~ 768) 765-4, 765-12, 765-14, 765-15, 765-16, 765-18, 765-19, 765-20, 765-30, 766-1, 766-3, 766-5, 766-42, 768				
가락4리	1	제1반	(126-7 ~ 609) 126-7, 127-1,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44-2, 148, 609,		
		제2반	(79-1)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가락5리	1	제1반	(749~757) 749, 750-1~2, 750-2, 751-1~4, 751-6, 751-8, 753, 753-1~2, 754-2~4, 754-9, 755, 755-1, 756, 756-1, 757
				제2반	754-6~7, 762, 762-1~2, 763-1, 763-4~9
		가락6리	1	제1반	(729-2~8) 729-2, 729-6, 729-8
		가락7리	1	제1반	(455-1~455-3) 455-1, 455-3 화인테크노빌아파트 101동101호~101동 612호
				제2반	(455-1~455-3) 455-1, 455-3 화인테크노빌아파트 101동701호~101동 1212호
				제3반	(455-1~455-3) 455-1, 455-3 화인테크노빌아파트 102동101호~102동 612호
				제4반	(455-1~455-3) 455-1, 455-3 화인테크노빌아파트 102동701호~102동 1212호
		동림리	1	제1반	(3~116) 4, 86, 88, 90, 91, 92, 99, 116, 100, 102, 101, 104, 3
				제2반	(152~368) 220, 152, 316, 357-1, 358, 357-3, 357-2, 360, 361-2, 363, 368, 367, 366, 359
				제3반	(365~602) 365, 377-1, 377-2, 378, 379-1, 379-2, 379-3, 398, 599, 600, 602
				제4반	(467-7~518) 497, 467-7, 487-1, 491, 490, 492, 493, 487-1, 488-1, 500, 502, 505, 518, 510, 506, 508, 507, 499
		금계리	1	제1반	(32~139) 32, 138, 38-2, 136, 135, 134-2, 134-1, 94-1, 93-2, 96, 98, 103, 105, 100, 99, 139, 93-2
				제2반	(17~256) 214, 213, 17, 229-2, 230, 28-2, 212, 248, 215, 242, 247, 256
				제3반	(264~297) 264, 294, 286, 284, 282, 297, 295, 268
				제4반	(487-3~491) 487-3, 488, 489, 490, 491
				제5반	(493~503) 493, 495, 496, 500, 501, 502-2, 503-1
		장동리	1	제1반	(54-2~559) 558, 559, 557, 537, 538, 546, 534-9, 545, 541, 542, 544, 540-1, 540-2, 543, 542, 524, 527, 522, 521
				제2반	(326~490) 456, 457-2, 490, 326, 327, 328, 326-2, 339, 336, 340, 342, 341, 343
				제3반	(343~377) 345, 346, 349, 367, 368, 375, 374, 360, 369, 373, 365, 376, 377, 364, 361, 343
				제4반	(364~396) 370, 372, 378, 379, 380, 383, 382, 364, 385, 364, 396, 394, 397
				제5반	(159) 159
		사정1리	1	제1반	(12~312) 12, 32, 119, 123, 132, 133, 157, 184, 196, 197, 178, 199, 200, 213, 312
				제2반	(12~215) 12, 13, 15, 39, 299, 300, 302, 304, 305, 311, 312, 313, 314, 315
		사정2리	1	제1반	(391~397) 391, 392, 395, 396, 397
				제2반	(401~446) 401, 406, 407, 408, 410, 412, 431, 446
		수락리	1	제1반	(265~423) 423, 379, 376, 371, 375, 372-3, 377-2, 369-2, 336-3, 339, 340, 338, 337, 336-8, 336-7, 345, 344-1, 336-1, 316, 304-2, 276-2, 275-2, 272, 266, 267, 265, 268-3
				제2반	(229-2~443) 263-1, 263-2, 268-2, 269-3, 254, 253, 249, 336-3, 334, 333-1, 348-1, 347, 346, 343, 342, 240-2, 233, 229-2, 439, 443, 478, 347, 344-1
제3반	(94~115) 104, 108-6, 108-2, 108-3, 108-1, 110, 112, 115, 94, 93, 96, 97-1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장남리	1	제1반	(32 ~ 186) 186, 32, 146, 140-1, 146-4, 140-1, 146-6, 147-1, 34, 146-5, 146-7, 140-8, 186, 140-4
				제2반	(31 ~ 140-7) 140-7, 140-6, 139-3, 140-1, 139-1, 138, 37-4, 136, 123-3, 31
				제3반	(6-8) 6, 7, 8
		호죽1리	1	제1반	(711-1 ~ 724) 724, 711-1
				제2반	(79 ~ 607) 79, 591, 590, 607, 606, 93, 599, 604
				제3반	(90 ~ 500) 499, 500, 498, 493, 494, 495, 497, 90
				제4반	(86 ~ 480) 479, 476, 86, 480, 478, 466, 474
				제5반	(388 ~ 474) 388, 474, 473
				제6반	(98 ~ 641) 98, 630, 629, 641
		호죽2리	1	제1반	(291 ~ 311) 311, 305, 295, 296, 288, 291, 292
				제2반	(25 ~ 221) 204, 209, 25, 208, 59, 158, 154, 159, 157
				제3반	(59 ~ 159) 143, 144, 145, 59, 158, 154, 159, 157
				제4반	(197 ~ 224) 197, 198, 199, 224
		남촌1리	1	제1반	(27 ~ 122) 34, 27, 31, 29, 62-4, 67, 66, 64, 65, 63, 69, 78-1, 80, 82, 119, 120-1, 122
				제2반	(18 ~ 199-12) 18, 50, 199-12
		남촌2리	1	제1반	(590 ~ 698) 599, 600, 462-4, 598, 603-1, 603-2, 603-5, 603-6, 603-7, 596, 604, 632, 693
				제2반	(393 ~ 479) 396, 394-1, 395, 393, 397, 477-1, 477-2, 477-3, 477-4, 479
		소로1리	1	제1반	(272 ~ 292) 282, 283, 278, 288, 287, 285, 289, 272, 291, 292
				제2반	(260 ~ 310) 272, 269, 264, 267, 260, 310, 305, 303, 290, 295
				제3반	(293 ~ 418) 317, 373, 374, 379, 383, 294, 293, 296, 298, 299, 418, 300
				제4반	(127 ~ 404) 396, 404, 401, 400, 393, 127, 402, 399
		소로2리	1	제1반	(64 ~ 159) 150, 148, 149, 159, 71, 65, 64, 66
				제2반	(66 ~ 128) 83, 84, 85, 66, 128
		국사1리	1	제1반	(313 ~ 339) 313, 332, 333, 337-3, 337-1, 337-2, 336, 334
				제2반	(339 ~ 350-4) 349, 339, 346, 347, 348, 345, 341, 343, 350-2, 350-1, 351, 350-4
				제3반	(387-2 ~ 409) 402, 397, 409, 387-2
				제4반	(129-1 ~ 218-1) 152, 151-1, 129-1, 155, 218-1
제5반	(40 ~ 399) 129-1, 155, 218-1, 40, 41, 382, 399, 387-3, 381, 386-1, 388, 385				
국사2리	1	제1반	(1 ~ 702) 698, 701, 702-2, 702, 700, 697, 3, 398-2,		
		제2반	(504-1 ~ 636) 520, 509, 504-1, 504-2, 504-3, 504-4, 531, 532-1, 532-2, 533, 534, 535-2, 536, 538, 539, 542, 636		
소계	2읍1면	217	217	698	
청원구	소계	53	53	170	
	내수읍	내수1리	1	제1반	(34 ~ 45) 34, 36, 38, 45
				제2반	(38 ~ 46) 38, 45, 46
				제3반	(34 ~ 55) 34, 36, 38, 55
제4반	(34 ~ 55) 34, 36, 45, 55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5반	(190 ~ 199) 190, 197-1 ~ 2, 198, 198-4 ~ 8, 199
				제6반	(529 ~ 529-106) 529, 529-106
		내수2리	1	제1반	(278 ~ 309) 278, 287-7, 288, 309
				제2반	(288 ~ 330) 288, 287-7, 309, 330
				제3반	(288 ~ 352) 288, 289 330, 352
		내수3리	1	제1반	(311 ~ 317) 311, 312, 313, 314, 315, 316, 317
		내수4리	1	제1반	(200-3)
				제2반	(200-3)
				제3반	(200-3)
				제4반	(200-3)
				제5반	(200-3)
				제6반	241(신한빌리지)
		내수5리	1	제1반	(200-3)
				제2반	(200-3)
				제3반	(200-3)
				제4반	(200-3)
		내수6리	1	제1반	(37 ~ 533-1) 37, 39-2, 533-1(수정로앞@ 가동
				제2반	(37) 37(수정로앞@ 나동
		마산1리	1	제1반	(148-1 ~ 152) 148-1 ~ 2, 150, 152
				제2반	(165 ~ 167) 165,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7
				제3반	(165-1 ~ 171-3) 165-1 ~ 9, 168, 169-1 ~ 6, 170-1 ~ 3, 171-3
				제4반	(171-1 ~ 171-6) 171-1, 171-6
				제5반	(1-1 ~ 155-6) 1-1 ~ 1-20, 155-1 ~ 6
		마산2리	1	제1반	(127 ~ 197-84) 127, 134-1, 197-26 ~ 27, 197-29 ~ 30, 197-33, 197-35, 197-38 ~ 42, 197-44 ~ 45, 197-47, 197-83 ~ 84
				제2반	(197-49 ~ 197-118) 197-49, 197-50, 197-51, 197-52, 197-53, 197-54, 197-55, 197-57, 197-60, 197-61, 197-62, 197-63, 197-64, 197-66, 197-67, 197-69, 197-70, 197-72, 197-73, 197-77, 197-113, 197-114, 197-117, 197-118
				제3반	(91-1 ~ 197-73) 91-1 ~ 2, 92-1, 92-8, 94-4, 94-2, 94-3, 94-5, 94-6, 94-7, 94-9, 94-10, 94-11, 94-12, 94-13, 94-14, 94-15, 197-55, 197-60, 197-63, 97-64, 197-66, 197-72, 197-73, 126-7 ~ 9
				제4반	(126-7 ~ 9) 126-7 ~ 9
마산3리	1	제1반	(13-1 ~ 10-14) 13-1 ~ 8, 10-1 ~ 14		
		제2반	(72 ~ 72-13) 72, 72-1 ~ 13		
		제3반	(178~182-32) 178~182-32, 187-2, 188-2		
마산4리	1	제1반	(162 ~ 167) 162, 164, 165, 167		
		제2반	(159 ~ 197-2) 159, 160, 161, 197-2		
		제3반	(159-1 ~ 197-88) 159-1 ~ 29, 164-1 ~ 4, 157-1 ~ 2, 197-82, 197-88		
		제4반	(157-6 ~ 158-18) 157-6 ~ 12, 158-1 ~ 18		
		제5반	149-12, 197-8(상당연립)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마산5리	1	제1반	123(진흥1차아파트 101동)
				제2반	123(진흥1차아파트 102동)
				제3반	123(진흥1차아파트 103동)
				제4반	123(진흥1차아파트 104동)
				제5반	123(진흥1차아파트 105동)
				제6반	123(진흥1차아파트 106동)
				제7반	123(진흥1차아파트 107동)
				제8반	123(진흥1차아파트 108동)
				제9반	123(진흥1차아파트 109동)
				제10반	93-2(극동빌라)
		마산6리	1	제1반	7-3 (진흥2차아파트 201동)
				제2반	7-3 (진흥2차아파트 202동)
				제3반	8-5 (진흥2차아파트 203동)
				제4반	8-5 (진흥2차아파트 204동)
				제5반	6-4 (진흥2차아파트 205동)
				제6반	5-5 (진흥2차아파트 206동)
				제7반	5-5 (진흥2차아파트 207동)
				제8반	6 (진흥2차아파트 208동)
				제9반	197-159(우창진주1차아파트)
				제10반	12-1(우창진주2차아파트)
		마산7리	1	제1반	210 (주공아파트 101)
				제2반	210 (주공아파트 102)
				제3반	210 (주공아파트 103)
				제4반	210 (주공아파트 104)
				제5반	210 (주공아파트 105)
				제6반	210 (주공아파트 106)
		풍정1리	1	제1반	(202 ~ 241) 202, 203, 218, 241
		풍정2리	1	제1반	(74) 74
		덕암1리	1	제1반	(508 ~ 509) 508, 509
				제2반	(192 ~ 509) 192, 508, 509
		덕암2리	1	제1반	(158 ~ 192) 158, 183, 192
				제2반	(151 ~ 229) 151, 158, 229
				제3반	(158 ~ 194) 158, 182, 184, 194
제4반	(192) 192				
도원1리	1	제1반	(157-22 ~ 195) 157-22, 157-2, 184, 185, 185-1 ~ 2, 185-7, 192, 193-1, 195		
		제2반	(157-2 ~ 158-1) 157-2 ~ 18, 156-1 ~ 8, 157-1 ~ 18, 158-1		
		제3반	(123-1 ~ 163) 123-1, 131-1, 132-1 ~ 5, 162, 163		
		제4반	(134-1 ~ 16) 134-1 ~ 16		
도원2리	1	제1반	(56 ~ 60) 56, 60		
		제2반	(56 ~ 60) 56, 60		
		제3반	(56 ~ 60) 56, 60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도원3리	1	제4반	(56 ~ 60) 56, 60
				제1반	(55) 55
				제2반	(55) 55
				제3반	(55) 55
		도원4리	1	제1반	(23) 23(우창진주3차@ 301동
				제2반	(23) 23(우창진주3차@ 302동
				제3반	(23) 23(우창진주3차@ 303동
				제4반	(23) 23(우창진주3차@ 304동
		행동1리	1	제1반	(90 ~ 97) 90, 96, 97
				제2반	(76 ~ 168) 76, 156, 157, 168
				제3반	(162 ~ 473) 162, 167, 197, 199, 467, 473
				제4반	(572 ~ 579) 572, 574, 578, 579
		행동2리	1	제1반	(90 ~ 473) 90, 473
				제2반	(474) 474
		세교1리	1	제1반	(113 ~ 277) 113, 186, 201, 208, 277
				제2반	(204 ~ 259) 204, 246, 248, 259
		세교2리	1	제1반	(63 ~ 369) 63, 64, 67, 68, 242, 369
		비상리	1	제1반	(77 ~ 396) 77, 112, 120, 121, 116, 215, 216, 142, 231, 233, 239, 240, 233, 242, 244, 238, 250, 263, 264, 249, 292, 101, 294, 343, 345, 385, 396
				제2반	(58 ~ 450) 58, 138, 239, 225, 230, 249, 282, 287, 207, 342, 380, 339, 383, 389, 390, 450
				제3반	(24 ~ 399) 24, 47, 38, 48, 68, 100, 109, 125, 126, 136, 132, 137, 142, 233, 235, 250, 383, 399
				제4반	(27 ~ 290) 27, 142, 68, 218, 244, 290
				제5반	(225 ~ 398) 225, 280, 282, 384, 285, 287, 290, 343, 383, 398
				제6반	(378 ~ 413) 378, 380, 387, 388, 381, 375, 398, 399, 407, 413
		저곡리	1	제1반	(51 ~ 133) 51, 53, 54, 55, 63, 64, 67, 69, 73, 84, 117, 122, 121, 128, 133
				제2반	(54 ~ 132) 54, 55, 63, 64, 66, 67, 73, 74, 76, 117, 121, 130, 132
				제3반	(62 ~ 142) 62, 63, 65, 66, 69, 73, 74, 76, 78, 79, 114, 117, 118, 119, 121, 122, 124, 131, 132, 142
		우산1리	1	제1반	(189~756)189,192,198,202,224,427,428-7,429,457,458, 459,460,461,471,472,473,477,479,480,481,502,503,
				제2반	(401~749)401,402,403,410,411,414,426,425-2,428-8, 455-1,456,462,464,465,466,467,469,470,504-4,505,506, 509, 510, 531, 573, 585, 668, 747, 749
		우산2리	1	제1반	(62 ~ 86) 62, 63, 71, 76, 77, 78, 79, 86
				제2반	(112-1 ~ 343-3) 112-1, 293, 323, 324-1, 324, 326-1, 327-1, 327-3, 341, 342, 343-1, 343-3
		우산3리	1	제1반	504-8(강우스파빌 1동)
				제2반	504-8(강우스파빌 2동)
				제3반	504-8(강우스파빌 3동)
				제4반	504-8(강우스파빌 4동)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초정리	1	제1반	(165 ~ 293-2) 165, 167, 1, 241, 255, 266, 265, 269, 280-1, 282, 284, 288-3, 293, 293-1, 293-2
				제2반	(263 ~ 312-3) 263, 265, 277-1, 277-2, 278-1, 311-1, 312-3
		비중리	1	제1반	(25 ~ 531) 25, 75, 87, 89, 83, 69, 104, 105, 110, 106, 238, 285, 531
				제2반	(25 ~ 408) 25, 87, 88, 89, 134, 110, 121, 207, 208, 203, 209, 152, 270, 408
		구성1리	1	제1반	(129 ~ 149) 129, 140, 140-1, 141-2, 141-3, 141-4, 142-2, 143, 146-1, 146-2, 146-3, 147, 148, 149
				제2반	(82-2 ~ 161) 82-2, 82-3, 124, 125, 126, 128, 151, 152, 153, 154-1, 154-3, 154-4, 154-5, 155-1, 157-1, 158-2, 159, 161
				제3반	(85-1 ~ 94) 85-1, 86, 86-1, 87-1, 89, 94
		구성2리	1	제1반	(330-1 ~ 335-2) 330-1, 335-2
				제2반	(321 ~ 367) 312, 313, 314-1, 331-1, 354, 365, 365-2, 365-3, 367-2, 307, 308, 309, 311
		구성3리	1	제1반	(6 ~ 303-5) 6, 247-3, 247-6, 247-12, 247-28, 247-30, 247-31, 247-33, 247-36, 247-40, 262, 262-1, 266-7, 247-1, 285-2, 303-5
		국동리	1	제1반	(34 ~ 101) 34, 62, 64, 68, 86, 91, 93, 96, 97, 98, 101
				제2반	(14 ~ 101) 14, 34, 62, 64, 68, 91, 98, 101
		목방1리	1	제1반	(64 ~ 700) 64, 300, 308, 311, 344, 404, 692, 700
				제2반	(286 ~ 692) 286, 300, 304, 305, 692
				제3반	(162 ~ 692) 162, 169, 177, 282, 291, 300, 307, 344, 345, 359, 692
				제4반	(300 ~ 315) 300, 315
				제5반	(구성247-4 ~ 248) 구성247-4 ~ 28
		목방2리	1	제1반	(162-1 ~ 353-2) 162-1 ~ 5, 166-4 ~ 5, 167, 168, 169-1, 170-1 ~ 3, 180-1 ~ 5, 353-2
				제2반	(173 ~ 348-1) 173, 174-1 ~ 4, 175, 176-1, 177-1, 177-4, 171-5, 206-1, 348-1
		은곡1리	1	제1반	(90 ~ 98) 90, 98
				제2반	(90 ~ 100) 90, 94, 96, 97, 99, 100
		은곡2리	1	제1반	(118 ~ 172) 118, 119, 120, 140, 141, 142, 143, 148, 149, 172
				제2반	(148 ~ 282) 148, 149, 282
				제3반	(184 ~ 193) 184, 190, 191, 193
		은곡3리	1	제1반	(251 ~ 257) 251, 254, 257
		은곡4리	1	제1반	(301 ~ 393-1) 301, 393-1(덕일한마음@ 101동)
				제2반	(310 ~ 387-7) 310, 387-7(덕일한마음@ 102동)
				제3반	(301 ~ 393-1) 301, 393-1(덕일한마음@ 103동)
				제4반	(301 ~ 393-1) 301, 310, 393-1(덕일한마음@ 104동)
				제5반	(310 ~ 393-1) 310, 393-1(덕일한마음@ 105동)
제6반	(310 ~ 387-10) 310, 387-9, 387-10(덕일한마음@ 106)				
은곡5리	1	제1반	302(천일아파트 201동, 상가)		
		제2반	302(천일아파트 202동)		
		제3반	302(천일아파트 203동)		
		제4반	302(천일아파트 204동)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5반	302(천일아파트 205동)	
				제6반	302(천일아파트 206동)	
				제7반	293-7(천일빌라)	
		은곡6리	1	제1반	(246-3 ~ 253-3)246-3, 253-3(무지개아파트101동, 상	
				제2반	246-3(무지개아파트102동)	
				제3반	246-3(무지개아파트103동)	
				제4반	246-3(무지개아파트104동)	
				제5반	246-3(무지개아파트105동)	
		원통1리	1	제1반	(35-2 ~ 40-5) 35-2, 37, 40-1, 40-2, 40-3, 40-4,	
		원통2리	1	제1반	(72-5 ~ 519-3) 72, 141, 144, 156, 172, 514, 516, 518, 518, 519-3	
				제2반	(103 ~ 130) 103, 104, 105, 106, 107-1, 126-2, 130	
		원통3리	1	제1반	(산95 ~ 산74) 산74, 산95	
		신안리	1	제1반	(187 ~ 213) 187, 192, 193, 211, 213	
				제2반	(214 ~ 233) 214, 233	
		입동리	1	제1반	27-7, 23-1, 23-2, 23-4	
				제2반	24-1, 25-1, 26-9	
		입상1리	1	제1반	(226 ~ 376) 226, 376	
		입상2리	1	제1반	(22-5 ~ 26-9) 22-5, 22-6,	
		학평1리	1	제1반	(139 ~ 140) 139-1, 139-3, 139-5, 139-4, 139-6, 139-7, 139-8, 139-9, 139-10, 139-11, 139-13, 139-15, 139-16, 139-20, 139-22, 139-23, 139-24, 139-25, 139-32, 139-33, 139-34, 139-35, 139-36,	
		학평2리	1	제1반	(211-2 ~ 2190-2) 211-2, 211-3, 219-9,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1, 219-2	
		소 계	113	113	422	
		오창읍	여천1리	1	제1반	(115 ~ 515) 419, 491, 515, 504, 491, 489, 500, 501, 502, 502, 115, 495, 490, 485, 462
					제2반	(46 ~ 500) 487, 491, 485, 498, 480, 486, 36, 428, 350, 465, 429, 250, 472, 489, 480, 486, 491, 501, 490, 500, 413, 412, 428, 350, 360, 475, 467, 473, 46
여천2리	1		제1반	(360 ~ 490) 378, 370, 485, 425, 424, 459, 417, 427, 428, 360, 413, 420, 412, 409, 452, 470, 490, 415,		
			제2반	(181 ~ 474) 474, 413, 360, 181, 300, 374, 361, 381, 417, 360, 377, 397, 384, 376, 380, 357, 401, 428, 378,		
			제3반	(350 ~ 423) 390, 382, 423, 364, 386, 398, 377, 398, 396, 399, 378		
화산리(華山)	1		제1반	(403 ~ 426) 403, 406, 408, 409, 410, 414, 415, 416, 417, 420, 422, 424, 426, 429, 436		
유리	1		제1반	(39 ~ 490) 39, 466, 475, 477, 480, 482, 483, 484, 455, 488, 490, 491		
			제2반	(450 ~ 491) 450, 474, 475, 476, 477, 480, 482, 485, 486, 490, 487, 467		
일신리	1		제1반	(31 ~ 420) 31, 241, 245, 246, 283, 285, 286, 287, 291, 295, 296, 297, 298, 299, 420		
			제2반	(237 ~ 352) 237, 245, 246, 249, 250, 253, 285, 286, 294, 295, 352, 296		
모정1리	1		제1반	(산3 ~ 287) 195, 198, 204, 207, 산3, 289, 298		
		제2반	(128 ~ 245) 128, 129, 131, 132, 133, 148, 204, 245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모정2리	1	제3반	(2 ~ 304) 2, 128, 162, 254, 245, 247, 248, 250, 266, 272, 280, 302, 304, 247
				제1반	(263-2 ~ 310-1) 263-2, 263-3, 263-5, 272-2, 279-1, 273-5, 299, 300-1 ~ 2, 303, 304, 304-1 ~ 4, 310-
				제2반	(244 ~ 290-4) 244, 245, 245-1, 247, 247-1, 250-3, 280, 282, 284-1, 285, 288, 288-1, 288-2, 289, 289-1, 289-2, 298-3, 290-4
		학소리	1	제1반	(4 ~ 278) 259, 271, 260, 264, 236, 269, 241, 4, 256, 270, 272, 278, 250, 257
				제2반	(58 ~ 269) 251, 259, 236, 250, 249, 239, 257, 256, 269, 58
				제3반	(233 ~ 259) 250, 248, 237, 236, 259, 257, 255, 251,
				제4반	(235 ~ 269) 222, 250, 249, 236, 259, 258, 256, 235, 243, 248, 269, 257, 233, 237
		원1리	1	제1반	(7 ~ 127) 7, 96-1, 105-1, 105-2, 105-3, 105-4, 106, 107, 109, 118, 120, 122, 123, 125, 126, 126-1, 127
				제2반	(153 ~ 180-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2, 163, 169-1, 169-2, 169-3, 173-2, 174-2,
		원2리	1	제1반	(209 ~ 210-3) 209, 211, 210-1, 212, 213-1, 213-3, 214-1, 214-2, 215-3, 210-3
				제2반	(217-1 ~ 307) 217-1, 217-3, 217-4, 218, 207-8, 207-1, 218, 307
		북현1리	1	제1반	(39 ~ 169) 39, 79, 95, 131, 162, 166, 167, 168, 169
				제2반	(170 ~ 397) 170, 171, 174, 195, 224, 227, 231, 267,
		북현2리	1	제1반	(164 ~ 397) 164, 261, 360, 362, 363, 365, 378, 379, 393, 394, 395, 397, 197
		북현3리	1	제1반	(79 ~ 197) 79, 89, 93, 101, 102, 107, 129, 130, 108, 162, 173, 174, 189, 193, 195, 196, 197
				제2반	(91-4) 91-4
		북현4리	1	제1반	(100-2) 100-2
				제2반	(100-2) 100-2
				제3반	(98-2) 98-2
				제4반	(98-2) 98-2
				제5반	(98-8) 98-8
		양지리	1	제1반	(178-1 ~ 185) 178-1, 179-5, 180, 180-1, 182, 183, 184, 185
				제2반	(34-1 ~ 144) 34-1, 36-1, 40, 42-4, 43, 46, 48-1, 53-1, 53-4, 55-1, 144
				제3반	(14-1 ~ 119) 14-1, 18-2, 19, 23-2, 24, 28-2, 78-2, 81-1, 81-2, 82-1, 83, 83-1, 83-4, 84-2, 87, 114-1, 116, 118-1, 119
				제4반	(117-2 ~ 117-44) 117-2 ~ 117-44
		장대1리	1	제1반	(50-3 ~ 57-1) 50-3 ~ 4, 51-1 ~ 2 ~ 3, 52-2 ~ 3 ~ 4 ~ 5, 54-1 ~ 3, 55-1 ~ 2, 55-4 ~ 5 ~ 6, 56-1, 57-1
				제2반	(53-1 ~ 299-1) 53-1, 294-4, 294-3, 294-2, 294-6, 294-7, 297-2, 297-3, 297-5, 295-2, 196-2, 299-1
				제3반	(233-2 ~ 293-3) 233-2, 232-3, 228-3, 236-2, 236-3, 238, 237-1, 278-1, 280-1, 281-1, 282-1, 284, 218-4, 285-1, 286-2, 287, 288, 289, 288-1, 293-1,
		장대2리	1	제1반	(50 ~ 641) 50, 641, 215, 269, 283, 291, 299, 303, 305, 318, 343, 345, 346, 347, 348, 320, 321, 322, 359, 374, 376, 377, 398
				제2반	(283 ~ 410) 283, 290, 291, 322, 348, 358, 365, 374, 375, 376, 410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장대3리	1	제3반	(75 ~ 450) 75, 417, 419, 422, 248, 330, 343, 345, 351, 360, 365, 370, 371, 377, 378, 382, 394, 408.
				제1반	(300-1 ~ 401) 300-1 ~ 6, 302-1, 303-3, 304-1, 304-2, 304-3, 303-4, 324-1, 401
				제2반	(290 ~ 309-8) 290, 291-3, 291-5, 291-6, 291-7, 191-1, 292-1, 292-3, 308-1, 308-2, 308-3, 309-4, 309-5, 309-6, 309-7, 309-8
				제3반	(310 ~ 314-2) 310, 311-1, 311-2, 311-3, 311-5, 311-6, 311-7, 311-8, 311-9, 311-10, 315-1, 315-2, 314-1, 314-2
		장대4리	1	제1반	(330) 330
				제2반	(330) 330
				제3반	(337) 337
				제4반	(333-4) 333-4
				제5반	-330
		창리1리	1	제1반	(1 ~ 41-3) 1, 2-1 ~ 7, 2-9 ~ 10, 2-12, 2-14, 3-1, 3-2, 4-1, 4-3, 4-5, 4-14 ~ 15, 6, 7-2, 8, 9-10, 40-4 ~
				제2반	(41-6 ~ 154-32) 41-6, 43-1, 43-5, 44-1 ~ 3, 45-1 ~ 4, 46-1, 46-8, 48, 49-1, 54, 56-14 ~ 15, 56-19, 154-30, 154-32
		창리2리	1	제1반	(4-11 ~ 17) 4-11 ~ 17
				제2반	(4-11 ~ 17) 4-11 ~ 17
				제3반	(4-11 ~ 17) 4-11 ~ 17
		창리3리	1	제1반	(35-1 ~ 70-1) 35-1, 35-3, 38, 40-2, 50-12, 51, 56-6, 56-21, 56-28 ~ 30, 60-3, 64, 65-2, 70-1
				제2반	(92-116) 92, 93-1, 97, 99, 99-1, 100, 103-2, 104, 106, 107, 108, 110, 111, 116
		창리4리	1	제1반	9-3(경희아파트 가동)
				제2반	9-3(경희아파트 나동 101-601호, 102-602호, 103-603호, 104-604호, 105-605호, 106-606호)
				제3반	9-3 ~ 152(경희아파트 나동 107-607호, 108-608, 109-609호, 110-610호, 111-511호), 16-1, 18-1, 18-2, 18-4, 151, 151-6, 152
		창리5리	1	제1반	50-2, 52, 115, 115-2, (금정1차아파트 101-601호, 102-702호, 103-803호, 104-904호)
				제2반	115(금정1차아파트 105-1005호, 106-1106, 207-1107호, 208호-1208호)
제3반	115 (금정1차아파트 109-1110호, 109-1109호, 110-1110호)				
제4반	117, 117-3, 117-4, (금정2차아파트)				
주성리	1	제1반	(21-1 ~ 37) 21-1, 28, 30, 30-1, 31, 32, 32-1, 33, 33-1, 36, 37		
		제2반	(165 ~ 203) 165, 166, 167, 168, 169, 170, 171-1 ~ 3, 172, 173, 174, 180, 181, 200, 202, 203		
		제3반	(89 ~ 147) 89, 90, 90-1, 113, 120, 121, 122, 131, 132, 132-1 ~ 4, 133, 134, 136, 137, 138, 140, 140-1, 141, 143, 145, 146, 147		
송대리	1	제1반	(110 ~ 144) 115, 119, 140, 110, 115, 112, 144		
		제2반	(45, 177) 145, 204, 45, 109, 177, 62, 112, 72, 152,		
		제3반	(62 ~ 204) 62 137, 142, 149, 145, 63, 140, 144, 154,		
도암리	1	제1반	(91 ~ 200) 91, 91-2, 95, 180, 188, 185-1, 188-2, 188-3, 200-1, 94		
과정1리	1	제1반	(62 ~ 644) 507, 502, 510, 495, 476, 62, 644, 497,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2반	(476 ~ 678) 498, 657, 671, 563, 476, 492, 493, 678, 491, 496
				제3반	(49 ~ 632) 491, 492, 490, 493, 501, 419, 495, 502, 49, 476, 632, 498
				제4반	(448 ~ 692) 554, 553, 497, 563, 448, 643, 557, 642, 567, 559, 692, 542, 495, 640, 477
		과정2리	1	제1반	(36 ~ 865) 656, 865, 640, 557, 642, 448, 568, 662, 499, 661, 667, 498, 36, 673, 478
				제2반	(36 ~ 675) 644, 673, 631, 675, 563, 640, 441, 638, 642, 672, 36, 643, 473, 62, 282, 493, 632, 653, 563
				제3반	(36 ~ 692) 692, 423, 643, 644, 36, 37, 493
		과정3리	1	제1반	507-1 ~ 509-2 (덕성그린아파트 101동 101-1502호)
				제2반	507-1 ~ 509-2 (덕성그린아파트 101동 103-1504호)
				제3반	507-1 ~ 509-2 (덕성그린아파트 101동 105-1506호)
				제4반	507-1 ~ 509-2 (덕성그린아파트 101동 107-1508호)
				제5반	507-1 ~ 511-1 (덕성그린아파트 102동 101-1502호)
				제6반	507-1 ~ 511-1 (덕성그린아파트 102동 103-1504호)
				제7반	507-1 ~ 511-1 (덕성그린아파트 102동 105-1506호)
		과정4리	1	제1반	(575~575-8) 575~575-8
		가곡1리	1	제1반	(332 ~ 389) 372, 388-3, 383, 370, 332, 386, 389, 371, 366, 385, 381-2, 388-2
				제2반	(334 ~ 388-2) 366, 357, 354, 380, 358, 380-2, 381, 388-1, 381-4, 388-2, 388, 368, 387, 334, 372
				제3반	(29 ~ 388-4) 387-1, 387, 29, 382, 380, 386, 385, 372, 371-4, 388, 388-2, 383-3, 381-1, 382-2, 381-2, 380-3, 368, 352, 388-4, 371, 381, 320-4, 391, 332-1, 384-1, 380-4, 320
		가곡2리	1	제1반	(396 ~ 428) 428, 402, 405, 414, 413, 412, 397, 407, 401, 400, 406, 396
		가곡3리	1	제1반	(68 ~ 346) 68, 320, 332, 331, 335, 337, 339, 341-1, 341, 340, 346, 343, 338, 330
		석우리	1	제1반	(15 ~ 115) 15, 98, 110, 112, 114, 115
				제2반	24, 63, 65, 64, 67, 68, 77, 91, 95, 96, 110, 113, 119,
		상평리	1	제1반	(11 ~ 50) 11, 36, 50
				제2반	(36 ~ 108) 87, 36, 35, 108, 50
		기암리	1	제1반	(67 ~ 436) 104, 103, 115, 84, 436, 85, 67, 107, 108, 102, 105, 114
				제2반	(32 ~ 116) 108, 114, 106, 107, 116, 115, 32, 117, 84
		탑리	1	제1반	(130-1 ~ 459) 296, 295, 309, 263, 301, 294-3, 309-1, 263-7, 260, 451, 130-1, 258, 315, 319-2, 459,
				제2반	(117 ~ 320) 261, 279-2, 260, 320, 263, 117, 309, 297, 319-1, 296, 281, 306, 271, 304, 258, 315
				제3반	(2 ~ 321) 234, 321, 309, 31-6, 311, 310, 262, 258, 308, 2, 301, 296
				제4반	(117 ~ 320) 301, 227, 117, 303, 288, 286, 350, 248, 320, 296, 224, 225
				제5반	(256 ~ 320) 279, 258, 294-1, 263, 294, 293, 275, 296, 263-1, 288, 308, 303, 256, 320
농소리	1	제1반	(28 ~ 114) 28, 112, 112-3, 112-6, 113, 113-2, 113-4, 113-5, 113-6, 114		
		제2반	(114 ~ 130) 114, 120, 130		
		제3반	(130 ~ 161) 130, 133, 161, 135, 145, 146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신평1리	1	제1반	(23-2 ~ 602) 23-2, 55, 544, 555, 556, 557, 558, 559, 590, 590-2, 620
				제2반	(14 ~ 620) 58, 14, 417, 471, 544, 555, 555-2, 556, 557, 559 ~ 565, 590, 590-2, 608, 620
				제3반	(59 ~ 657) 59, 105, 608, 609-2, 609-3, 620, 640, 657, (1 ~ 50-1) 1, 1-2, 10, 13, 17, 20, 21, 22, 23, 27, 41-1, 42, 50-1
		신평2리	1	제1반	(1 ~ 50-1), 1, 1-2, 10, 13, 17, 20, 21, 22, 23, 27, 41-1, 42, 50-1
				제2반	(13 ~ 45) 13, 17, 17-1, 20, 21, 22, 23, 23-1, 38, 40, 40-2, 40-4, 41, 43, 45
				제3반	(13 ~ 620-1) 13, 21, 25, 40, 42, 45, 57, 59-1, 82, 185, 589-2, 620, 620-1, 14
		중신리	1	제1반	(113 ~ 156) 113, 115, 123, 144, 145, 150, 152, 158,
				제2반	(159 ~ 65) 65, 159, 168, 171, 173, 175, 176
				제3반	(178 ~ 181) 178, 179, 181
				제4반	(182 ~ 214) 182,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5, 214
				제5반	(218 ~ 275) 218, 219, 257, 275
		각1리	1	제1반	(189-1 ~ 319-11) 189-1, 299, 299-3, 299-4, 302-1, 302-4 ~ 302-8, 319-1, 319-6 ~ 319-11
				제2반	(639-1 ~ 644-11) 639-1, 639-4, 639-7 ~ 639-9, 640-1 ~ 640-5, 641-1 ~ 641-14, 642-1 ~ 642-8, 643-1 ~ 643-6, 644-2 ~ 644-11
		각2리	1	제1반	(360 ~ 407) 360, 361-3, 378, 378-1, 380, 380-1, 380-3, 380-4, 380-5, 380-8, 394-2, 398, 398-1, 398-2, 398-3, 400, 400-4, 401-7, 407
				제2반	(367 ~ 367-4) 367, 367-1, 367-2, 367-3, 367-4
				제3반	(653-1 ~ 659-8) 653-1, 653-3 ~ 653-6, 654-1 ~ 654-6, 655-1 ~ 655-3, 656-2 ~ 656-3, 657-1 ~ 657-4, 658-1 ~ 658-4, 659-1 ~ 659-3, 659-5 ~ 659-8
		각3리	1	제1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1동 101호 ~ 1802호)
				제2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1동 103호 ~ 1804호)
				제3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2동 101호 ~ 1802호)
				제4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2동 103호 ~ 1804호)
		각4리	1	제1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3동 101호 ~ 1802호)
				제2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3동 103호 ~ 1804호)
				제3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3동 105호 ~ 1806호)
				제4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4동 101호 ~ 1702호)
제5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4동 103호 ~ 1704호)				
제6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4동 105호 ~ 1706호)				
각5리	1	제1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5동 101호 ~ 1802호)		
		제2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5동 303호 ~ 1804호)		
		제3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6동 101호 ~ 1802호)		
		제4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6동 103호 ~ 1804호)		
각6리	1	제1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7동 101호 ~ 1802호)		
		제2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8동 201호 ~ 1802호)		
		제3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8동 203호 ~ 1804호)		
		제4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9동 101호 ~ 1802호)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각7리	1	제5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09동 103호 ~ 1804호)
				제1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10동 101호 ~ 1802호)
				제2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10동 103호 ~ 1804호)
				제3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11동 201호 ~ 1802호)
				제4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11동 203호 ~ 1804호)
				제5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12동 201호 ~ 1702호)
				제6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12동 203호 ~ 1704호)
		각8리	1	제1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13동 101호 ~ 1702호, 상가)
				제2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14동 101호 ~ 1702호)
				제3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14동 103호 ~ 1704호)
				제4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15동 101호 ~ 1802호)
				제5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15동 103호 ~ 1804호)
				제6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16동 101호 ~ 1802호)
				제7반	638-1(우림필유1차아파트 116동 103호 ~ 1804호)
		각9리	1	제1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1동 101호 ~ 1802호), 636-2, 636-6
				제2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1동 103호 ~ 1804호)
				제3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1동 105호 ~ 1806호)
				제4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8동 101호 ~ 1802호, 상
				제5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8동 103호 ~ 1804호)
				제6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9동 101호 ~ 1802호)
				제7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9동 103호 ~ 1804호)
		각10리	1	제1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2동 101호 ~ 1802호)
				제2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2동 103호 ~ 1804호)
				제3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2동 105호 ~ 1806호)
				제4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2동 107호 ~ 1808호)
				제5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3동 101호 ~ 1802호)
				제6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3동 103호 ~ 1804호)
				제7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3동 105호 ~ 1806호)
				제8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3동 107호 ~ 1808호)
		각11리	1	제1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4동 101호 ~ 1802호)
				제2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4동 103호 ~ 1804호)
				제3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5동 101호 ~ 1802호)
				제4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5동 103호 ~ 1804호)
				제5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12동 101호 ~ 1802호)
				제6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12동 103호 ~ 1804호)
		각12리	1	제1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6동 201호 ~ 1802호)
				제2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6동 103호 ~ 1804호)
				제3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6동 105호 ~ 1806호)
				제4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7동 201호 ~ 1802호)
				제5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7동 103호 ~ 1804호)
				제6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07동 105호 ~ 1806호)
		각13리	1	제1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10동 101호 ~ 1802호)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2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10동 103호 ~ 1804호)
				제3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10동 105호 ~ 1806호)
				제4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11동 101호 ~ 1802호)
				제5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11동 103호 ~ 1804호)
				제6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11동 105호 ~ 1806호)
		각14리	1	제1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13동 101호 ~ 1502호)
				제2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13동 103호 ~ 1504호)
				제3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13동 105호 ~ 1306호)
				제4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14동 101호 ~ 1702호)
				제5반	637-6(중앙하이츠빌아파트 214동 103호 ~ 1704호)
		각15리	1	제1반	645-1(코아루아파트 301동 101호 ~ 1802호)
				제2반	645-1(코아루아파트 301동 103호 ~ 1804호)
				제3반	645-1(코아루아파트 302동 101호 ~ 1802호)
				제4반	645-1(코아루아파트 302동 103호 ~ 1704호)
				제5반	645-1(코아루아파트 303동 101호 ~ 1802호)
				제6반	645-1(코아루아파트 303동 103호 ~ 1804호)
				제7반	645-1(코아루아파트 303동 105호 ~ 1806호)
		각16리	1	제1반	645-1(코아루아파트 304동 101호 ~ 1802호)
				제2반	645-1(코아루아파트 304동 103호 ~ 1804호)
				제3반	645-1(코아루아파트 305동 201호 ~ 1702호)
				제4반	645-1(코아루아파트 305동 103호 ~ 1704호)
				제5반	645-1(코아루아파트 306동 101호 ~ 1802호)
				제6반	645-1(코아루아파트 306동 103호 ~ 1804호)
				제7반	645-1(코아루아파트 306동 105호 ~ 1806호)
		각17리	1	제1반	645-1(코아루아파트 307동 201호 ~ 1702호)
				제2반	645-1(코아루아파트 307동 103호 ~ 1704호)
				제3반	645-1(코아루아파트 308동 101호 ~ 1802호)
				제4반	645-1(코아루아파트 308동 203호 ~ 1804호)
				제5반	645-1(코아루아파트 308동 105호 ~ 1806호)
				제6반	645-1(코아루아파트 309동 201호 ~ 1702호)
				제7반	645-1(코아루아파트 309동 203호 ~ 1704호)
				제8반	645-1(코아루아파트 309동 105호 ~ 1706호)
		각18리	1	제1반	645-1(코아루아파트 310동 101호 ~ 1802호)
				제2반	645-1(코아루아파트 310동 103호 ~ 1804호)
				제3반	645-1(코아루아파트 311동 101호 ~ 1802호)
제4반	645-1(코아루아파트 311동 103호 ~ 1804호)				
제5반	645-1(코아루아파트 311동 105호 ~ 1806호)				
각19리	1	제1반	637-9(대원칸타빌아파트 501동 101호 ~ 1802호)		
		제2반	637-9(대원칸타빌아파트 501동 103호 ~ 1804호)		
		제3반	637-9(대원칸타빌아파트 501동 105호 ~ 1806호), 637-		
		제4반	637-9(대원칸타빌아파트 502동 101호 ~ 1802호)		
		제5반	637-9(대원칸타빌아파트 502동 103호 ~ 1804호)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각20리	1	제6반	637-9(대원칸타빌아파트 502동 105호 ~ 1806호)
				제1반	637-9(대원칸타빌아파트 503동 101호 ~ 1302호)
				제2반	637-9(대원칸타빌아파트 503동 103호 ~ 1304호)
				제3반	637-9(대원칸타빌아파트 503동 105호 ~ 1306호)
				제4반	637-9(대원칸타빌아파트 504동 101호 ~ 1402호)
				제5반	637-9(대원칸타빌아파트 504동 303호 ~ 1404호)
				제6반	637-9(대원칸타빌아파트 504동 105호 ~ 1406호)
				제7반	637-9(대원칸타빌아파트 504동 107호 ~ 1508호, 상가)
				제8반	637-9(대원칸타빌아파트 505동 101호 ~ 1402호)
				제9반	637-9(대원칸타빌아파트 505동 103호 ~ 1404호)
		각21리	1	제1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1동 101호 ~ 1802호)
				제2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1동 103호 ~ 1804호)
				제3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1동 305호 ~ 1806호)
				제4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1동 107호 ~ 1808호)
				제5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2동 101호 ~ 1802호)
				제6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2동 103호 ~ 1804호)
				제7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2동 305호 ~ 1806호)
				제8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2동 107호 ~ 1808호)
		각22리	1	제1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3동 101호 ~ 1702호)
				제2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3동 103호 ~ 1704호)
				제3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3동 305호 ~ 1706호)
				제4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3동 107호 ~ 1708호)
				제5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4동 101호 ~ 1702호)
				제6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4동 303호 ~ 1704호)
				제7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4동 105호 ~ 1706호)
				제8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5동 101호 ~ 1802호)
				제9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5동 103호 ~ 1804호)
		각23리	1	제1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6동 101호 ~ 1802호)
				제2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6동 103호 ~ 1804호)
				제3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7동 101호 ~ 1802호)
				제4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7동 103호 ~ 1804호)
		각24리	1	제1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8동 101호 ~ 1802호)
				제2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8동 103호 ~ 1804호)
				제3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8동 305호 ~ 1806호)
				제4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9동 301호 ~ 1802호)
				제5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09동 103호 ~ 1804호)
		각25리	1	제1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0동 301호 ~ 1802호)
				제2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0동 103호 ~ 1804호)
				제3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1동 301호 ~ 1802호)
				제4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1동 103호 ~ 1804호)
				제5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2동 301호 ~ 1802호)
				제6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2동 103호 ~ 1804호)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각26리	1	제7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2동 105호 ~ 1806호)
				제1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3동 101호 ~ 1802호)
				제2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3동 103호 ~ 1804호, 상가
				제3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4동 101호 ~ 1802호)
				제4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4동 103호 ~ 1804호)
				제5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4동 105호 ~ 1806호)
				제6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5동 301호 ~ 1802호)
				제7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5동 103호 ~ 1804호)
				제8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5동 305호 ~ 1806호)
		각27리	1	제1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6동 101호 ~ 1802호)
				제2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6동 103호 ~ 1804호)
				제3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6동 105호 ~ 1806호)
				제4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7동 101호 ~ 1802호, 상가
				제5반	646-1(우림필유2차아파트 617동 103호 ~ 1804호),
		각28리	1	제1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1동 101호 ~ 1502호)
				제2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1동 103호 ~ 1504호)
				제3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1동 105호 ~ 1506호)
				제4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2동 101호 ~ 1502호)
				제5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2동 103호 ~ 1504호)
				제6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2동 105호 ~ 1506호)
		각29리	1	제1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3동 101호 ~ 1502호)
				제2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3동 103호 ~ 1504호)
				제3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3동 105호 ~ 1506호)
				제4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4동 101호 ~ 1402호)
				제5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4동 103호 ~ 1504호)
				제6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4동 105호 ~ 1506호)
				제7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5동 101호 ~ 1502호)
				제8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5동 103호 ~ 1504호), 646-5
		각30리	1	제1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6동 101호 ~ 1502호)
				제2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7동 101호 ~ 1502호)
				제3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8동 101호 ~ 1502호)
				제4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9동 101호 ~ 1402호)
				제5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9동 203호 ~ 1404호)
				제6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09동 105호 ~ 1506호)
		각31리	1	제1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10동 101호 ~ 1402호)
				제2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10동 103호 ~ 1404호)
				제3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10동 105호 ~ 1406호)
				제4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11동 101호 ~ 1402호)
				제5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11동 203호 ~ 1404호)
				제6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11동 105호 ~ 1406호)
				제7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12동 101호 ~ 1502호, 상가)
				제8반	646-6(이안오창아파트 712동 103호 ~ 1504호)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각32리	1	제1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1동 101호 ~ 1802호)
				제2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1동 103호 ~ 1704호)
				제3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2동 101호 ~ 1802호)
				제4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3동 101호 ~ 1802호)
				제5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3동 103호 ~ 1704호)
				제6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4동 101호 ~ 1802호)
				제7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4동 103호 ~ 1804호)
		각33리	1	제1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5동 101호 ~ 1802호)
				제2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5동 103호 ~ 1804호)
				제3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6동 101호 ~ 1802호)
				제4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6동 103호 ~ 1804호)
				제5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7동 201호 ~ 1802호)
				제6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7동 103호 ~ 1804호)
				제7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7동 105호 ~ 1806호)
		각34리	1	제1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8동 101호 ~ 1702호)
				제2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8동 203호 ~ 1704호)
				제3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09동 101호 ~ 1802호)
				제4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0동 201호 ~ 1802호)
				제5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1동 101호 ~ 1802호)
				제6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1동 203호 ~ 1804호)
		각35리	1	제1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2동 101호 ~ 1802호)
				제2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2동 103호 ~ 1804호)
				제3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3동 101호 ~ 1802호)
				제4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8동 101호 ~ 1802호)
				제5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8동 103호 ~ 1804호)
		각36리	1	제1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4동 101호 ~ 1802호)
				제2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4동 103호 ~ 1604호)
				제3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5동 101호 ~ 1602호)
				제4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5동 103호 ~ 1604호)
				제5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6동 201호 ~ 1802호)
				제6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6동 103호 ~ 1604호)
				제7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7동 101호 ~ 1802호)
				제8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7동 103호 ~ 1804호)
각37리	1	제1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19동 201호 ~ 1802호)		
		제2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20동 201호 ~ 1802호)		
		제3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21동 101호 ~ 1802호)		
		제4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21동 103호 ~ 1804호)		
		제5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22동 201호 ~ 1802호)		
		제6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22동 203호 ~ 1804호)		
각38리	1	제1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23동 101호 ~ 1602호)		
		제2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24동 101호 ~ 1802호)		
		제3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24동 103호 ~ 1604호)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4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25동 201호 ~ 1802호)
				제5반	637-1(한라비발디아파트 825동 203호 ~ 1804호, 상가)
		각39리	1	제1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1동 101호 ~ 1502호)
				제2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1동 103호 ~ 1504호)
				제3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1동 105호 ~ 1506호)
				제4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2동 101호 ~ 1402호)
				제5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2동 103호 ~ 1404호)
				제6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2동 205호 ~ 1406호)
				제7반	(648-1 ~ 652-7) 648-1 ~ 648-6, 649-1 ~ 649-4, 649-6 ~ 649-9, 650-1 ~ 650-3, 650-5 ~ 650-8, 650-9, 651-3 ~ 651-6, 652-1 ~ 652-7
		각40리	1	제1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3동 101호 ~ 1502호)
				제2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3동 103호 ~ 1504호)
				제3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5동 101호 ~ 1502호)
				제4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5동 103호 ~ 1504호)
				제5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7동 101호 ~ 1502호)
				제6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7동 103호 ~ 1504호)
		각41리	1	제1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4동 101호 ~ 1502호)
				제2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4동 103호 ~ 1504호)
				제3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4동 105호 ~ 1506호)
				제4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6동 101호 ~ 1502호)
				제5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6동 103호 ~ 1504호)
				제6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6동 105호 ~ 1506호)
				제7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8동 101호 ~ 1502호)
				제8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8동 103호 ~ 1504호)
				제9반	647-1(쌍용스윗닷홈오창예가 908동 105호 ~ 1506호)
		양청1리	1	제1반	(710~722-16) 710, 711-1~711-11, 712-1~712-23, 713-1~713-6, 714-1~714-8, 715, 718-1~718-22, 719-1~719-9, 720-1~720-13, 721-1~721-6, 722-
		양청2리	1	제1반	(705~741-17) 705, 706-1~706-16, 707-1~707-3, 708, 709-1~709-5, 736-1~736-26, 739-1~739-8, 740-1~740-15, 741-1~741-17
		양청3리	1	제1반	(702~759-8)702, 704, 748-1~748-16, 749-1~749-12, 753, 754-1~754-8, 755-1~755-11, 756-1~756-9, 757-1~757-6, 758-1~758-10, 759-
		양청4리	1	제1반	(688~776-5) 688, 689-1~689-3, 690-1~690-7, 691, 692, 693, 694, 695-1~695-14, 697-1~697-10, 698-1~698-4, 699-1~699-8, 700-1~700-10, 701-1~701-9, 770-1~770-21, 771-1~771-10, 772-1~772-18, 773-1~773-9, 774-1~774-8, 775-
양청5리	1	제1반	(781-1~820) 781-1~781-7, 782-1~782-11, 783-1~783-10, 784-1~784-10, 785-1~785-4, 786-1~786-6, 787-1~787-6, 788-1~788-3, 789-1~789-9, 790-1~790-9, 791-1~791-6, 792-1~792-4, 819-1~819-5, 820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2반	(767-1~818-5) 767-1~767-5, 768-1~768-4, 769-1~769-10, 777-1~777-27, 778-1~778-10, 779-1~779-4, 780-1~780-7, 793-1~793-5, 794-1~794-5, 795-1~795-5, 796-1~796-10, 797-1~797-9, 798-1~798-7, 799-1~799-9, 800-1~800-9, 808-1~808-8, 809-1~809-12, 812-1~812-4, 815-1~815-6, 816-1~816-7, 817-
		양청6리	1	제1반	(723-1~752-9) 723-1~723-14, 724-1~724-18, 725-1~725-6, 726-1~726-6, 728-1~728-8, 729-1~729-18, 730-1~730-10, 731-1~731-14, 732-1~732-16, 733-1~733-15, 734-1~734-8, 750-1~750-5, 751-1~751-8, 752-1~752-9
		양청7리	1	제1반	(735-1~747-12) 735-1~735-11, 737-1~737-20, 738-1~738-9, 742-1~742-8, 743-1~743-12, 744-1~744-5, 745-1~745-10, 746-1~746-14, 747-
		양청8리	1	제1반	(749-17~769-10) 749-17~749-19, 760-1~760-7, 761-1~761-12, 762-1~762-10, 763-1~763-10, 764-1~764-18, 765-1~765-12, 766-1~766-11, 767-1~767-5, 768-1~768-4, 769-1~769-10
		양청9리	1	제1반	(657-1~684-2) 657-1~657-5, 658-1~658-10, 659-1~659-7, 660-1~660-3, 661-1~661-14, 662-1~662-7, 663-1~663-14, 664-1~664-11, 665-1~665-7, 666-1~666-5, 667-1~667-6, 668-1~668-18, 670-1~670-24, 671-1~671-18, 672-1~672-11, 673-1~673-8, 674-1~674-9, 675-1~675-7, 676-1~676-7, 677-1~677-11, 678-1~678-12, 679-1~679-12, 680-1~680-18, 681-
		구룡1리	1	제1반	(377-2~392-5) 377-2~377-21, 378-1~378-8, 379-1~379-7, 380-2, 381-1~381-3, 382-2~382-21, 383, 384-1~384-16, 385-1~385-5, 386-1~386-6, 387-1~387-11, 388-1~388-8, 389-1~389-12, 390-1~390-18, 391-1~391-10, 392-1~392-3,
				제2반	(393-1~401-8) 393-1~393-6, 394-1~394-8, 396-1~396-11, 397-1~397-27, 398-1~398-11, 399-1~399-11, 400-1~400-15, 401-1~401-8
		구룡2리	1	제1반	(430-1~440) 430-1~430-12, 431-1~431-6, 436, 437-1~437-6, 438-1~438-6, 439-1~439-6, 440
				제2반	(425-1~435-4) 425-1~425-6, 426-1~426-6, 427-1~427-9, 428-1~428-9, 429-1~429-8, 432-1~432-12, 433-1~433-12, 434-1~434-7, 435-
		구룡3리	1	제1반	(406-1~408-14) 406-1~406-7, 407-1~407-13, 408-1~408-14
				제2반	(402-1~405-14) 402-1~402-24, 403-1~403-14, 404-1~404-12, 405-1~405-14
		구룡4리	1	제1반	(376-2~416-8) 376-2~376-3, 409-1~409-18, 415-1~415-11, 416-1~416-8
				제2반	(410-1~414-7) 410-1~410-20, 412-1~412-12, 413, 414-1~414-7
		구룡5리	1	제1반	(417-1~424-12) 417-1~417-8, 422-1~422-8, 423-1~423-8, 424-1~424-12
				제2반	(418-1~421-10) 418-1~418-12, 419-1~419-12, 420-1~420-12, 421-1~421-10,
		성산1리	1	제1반	(1 ~ 144-13) 111, 101, 112, 113, 100, 101-1, 114, 116, 117, 125, 126, 123, 144-13
				제2반	(116 ~ 300) 144, 143, 116, 177, 300, 135, 207, 203, 203-1, 144-6, 180-3, 135, 206, 119, 117
				제3반	(119 ~ 214) 119, 135, 144, 145, 183, 203, 206, 207,
				제4반	(295 ~ 산93) 295, 300, 301, 302, 303, 307, 산92, 산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성산2리	1	제1반	(187 ~ 538) 187, 378, 461, 476, 508, 502, 516, 517, 519, 520, 463, 519, 520, 533, 537, 538
		후기1리	1	제1반	(30 ~ 507) 100-1, 92, 97, 99, 98, 99-1, 99-3, 100-2, 173, 14 175, 176, 176-1, 181, 185, 190, 196, 193 220, 383, 30, 288, 300, 348, 349, 350, 381, 383, 385, 386, 507, 99-3, 289, 268, 280
		후기2리	1	제1반	284, 285, 286, 230, 293, 294, 295, 297, 309
				제2반	(1 ~ 520) 501, 1, 11, 52, 498, 499, 520, 502, 505, 506, 507, 508, 510, 510-2, 513, 514, 518, 521
		용두리	1	제1반	(12 ~ 105) 100, 100-2, 103, 12, 105, 102, 100-3, 65, 102-2, 99-2, 96-1
				제2반	(99-2 ~ 137) 103, 137, 111, 107-2, 107-1, 106, 105, 130, 99-2
		화산리(花山)	1	제1반	(69 ~ 190) 190, 85, 98, 74, 86, 95-2, 83, 73, 74-1, 69, 79-1, 75, 82, 80, 78, 75-1, 84-1, 79, 76-1, 77, 77-3, 78-1
				제2반	(75-3 ~ 101) 95-5, 101, 99, 99-2, 94-2, 94-1, 85, 100, 95, 75-3
		가좌1리	1	제1반	(36 ~ 452) 36, 56, 75, 89, 91, 91-2, 91-4, 91-5, 92, 130, 135, 136, 138, 139, 140, 452
				제2반	(14 ~ 519-5) 14, 15, 23, 27, 36, 36-2, 37, 39, 54, 66, 113, 149, 151, 339, 348-2, 519-5
		가좌2리	1	제1반	(107 ~ 350) 350, 347, 150, 338, 348, 339, 107
		가좌3리	1	제1반	(510-1 ~ 519-1) 510-1, 511-3, 512-3, 515-2, 516, 518-1 ~ 5, 519-1
				제2반	(414 ~ 445-6) 414, 442, 443, 444, 445-1 ~ 6
		두릉리	1	제1반	(17 ~ 418) 404, 242, 17, 329, 248, 245, 412, 411, 391, 330, 352-1, 353, 352, 411-2, 418, 158, 384
				제2반	(27-3 ~ 57) 51-3, 51, 50, 51-4, 57, 27-3
				제3반	(156 ~ 411-1) 240, 252, 296, 248, 245, 245-1, 244, 243, 156, 252-4, 332-1, 411-1
				제4반	(121 ~ 248) 153, 252, 160, 248, 245-3 242-1, 163, 160, 159, 158-1, 158, 157, 154, 121-1, 156
		성재1리	1	제1반	(1-1 ~ 443) 1-1, 41, 76, 77, 78, 80, 81, 82, 84, 443
				제2반	(85 ~ 315) 85, 86, 87, 89, 90, 91, 92, 95, 96, 110,
		성재2리	1	제1반	(7 ~ 459) 7, 26, 110, 130, 295, 310, 311, 313, 317, 330, 331, 333, 337, 344, 345, 350, 360, 391, 454, 455, 457, 459
성재3리	1	제1반	(634-1 ~ 656) 634-1, 637, 635-1, 635-2, 638-2, 639-1, 639-2, 639-3, 640, 641, 647, 648, 649, 650, 651-1, 652, 653, 654, 655-1, 655-2, 656		
성재4리	1	제1반	(489 ~ 559) 489, 492, 494, 495, 496, 572, 545, 550, 559, 512		
백현1리	1	제1반	42 ~ 42-3, 43 ~ 43-3, 44, 45 ~ 45-3, 50, 51, 52 ~ 52-3, 96-1, 192 ~ 192-3, 193 ~ 193-3		
백현2리	1	제1반	125, 126-1 ~ 126-6, 127 ~ 127-2, 130 ~ 134, 137, 138, 139-1 ~ 139-14, 141		
소 계	51	51	106		
북이면	신기리	1	제1반	(220 ~ 251) 220, 221, 221-1, 198-1, 228, 241-4, 241-5, 237-6, 242-5, 243-1, 243-6, 243-7, 247, 250-2, 251-2, 251-4	
		제2반	(212 ~ 224) 219-1, 219-3, 219-4, 219-5, 217-6, 212-3, 220, 220-4, 221-4, 222, 224-1, 226		
		제3반	(63 ~ 236) 63, 217-1, 221, 222-3, 224, 224-1, 228, 123, 236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4반	(225 ~ 231) 225, 226, 226-3, 227, 229, 231
		신대1리	1	제1반	(73-8 ~ 305) 73-8, 200, 200-2, 200-3, 217, 290-4, 291-1, 298-3, 299, 302, 304, 305
	제2반			(60 ~ 300) 60, 73, 75-2, 263, 285-1, 286-1, 286-3, 286-4, 286-6, 287-1, 287, 289, 290, 296, 293,	
	제3반			(12 ~ 250) 12, 13, 13-4, 14, 73-5, 76, 76-3, 76-5, 80, 213, 250	
		신대2리	1	제1반	(158 ~ 197-2) 154, 189-4, 189-5, 194-2, 194-3, 194-4, 194-1, 193-1, 193-2, 195, 195-4, 196-1, 196-2, 196-4, 197-1, 196-3, 197-2
	제2반			(197-1 ~ 218-1) 197-1, 198-1, 200-1, 201, 202, 203-1, 207-2, 204, 205, 209, 210-2, 218-1	
		현암1리	1	제1반	(249 ~ 366) 249, 250, 251-1, 251-2, 297, 360, 366
	제2반			(239 ~ 275) 239, 240, 256-2, 270, 272, 274, 268, 271-1, 271-2, 273, 247, 275	
	제3반			(238 ~ 281) 238, 276, 277, 278-1, 278-2, 279,	
		현암2리	1	제1반	(341 ~ 386) 341, 381, 381-1, 382, 383, 384, 385-2, 385-3, 386
	제2반			(386-1 ~ 398-1) 386-1, 387, 307-1, 388, 389, 389-2, 398-4, 398-1	
		서당1리	1	제1반	(48 ~ 384) 48, 57, 60, 64, 151, 186, 187, 188, 190, 191, 254, 261, 262, 266, 267, 269, 384
	제2반			(50 ~ 297) 50, 52, 53, 54, 56, 58, 60, 63, 64, 110, 174, 180, 190, 251, 262, 264, 274, 297	
		서당2리	1	제1반	(19 ~ 394) 산19, 113, 209, 209-2, 210, 210-2, 230, 380, 382-2, 383-3, 384, 388, 392, 394
	제2반			(60 ~ 394) 60, 101, 119, 119-1, 191, 210, 230, 241-1, 348, 380, 382-2, 384, 384-3, 385, 388, 389, 392,	
		대길1리	1	제1반	(57 ~ 244) 57, 137, 179-3, 186, 196, 201, 201-2, 210-4, 210-5, 220, 237, 241, 241-3, 241-4, 241-2, 242, 242-3, 242-4, 243-4, 244-2, 244-4, 244-5,
	제2반			(188 ~ 296) 188-1, 189, 195, 196-2, 197, 201-1, 215, 220, 241-3, 242-3, 243-1, 243-3, 244, 244-1, 244-2, 273, 273-1, 296-2	
		대길2리	1	제1반	(160 ~ 179) 160, 177-3, 177-5, 177-7, 177-8, 177-9,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12, 179-16
	제2반			(20 ~ 180) 20-1, 23-1, 23-2, 24, 24-1, 24-3, 24-4, 33-1, 35-2, 35-9, 36, 37-1, 37-2, 37-3, 38, 38-2, 38-4, 38-5, 180, 180-1, 180-3	
		석화리	1	제1반	(117 ~ 123) 117, 121, 123-2
	제2반			(115 ~ 117) 115, 117	
	제3반			(112 ~ 114) 112, 113, 114	
		영하1리	1	제1반	(26 ~ 38) 26-5, 35, 36, 38
	제2반			(2 ~ 9) 2-2, 4, 5, 6, 9-1	
		영하2리	1	제1반	(262 ~ 288-123) 262, 263-1, 263-3, 264, 265, 265-1, 266, 272-1, 273, 275, 277, 280-3, 281, 282, 283, 288-123
	제2반			(318-1 ~ 323-3) 318-1, 319, 321, 322, 323-1, 323-3	
		선암1리	1	제1반	(179 ~ 190) 179, 179-1, 187, 187-5, 188, 189, 189-4, 189-6, 190
	제2반			(151 ~ 189) 151, 151-1, 153, 167, 167-1, 167-3, 171, 171-1, 171-3, 171-5, 175, 189, 20-3, 21-1,	
		선암2리	1	제1반	22-2, 23-1, 23-4, 23, 23-5, 23-6, 24, 25, 25-2, 25-3, 25-4, 25-5, 27-2, 28, 28-1, 29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호명리	1	제1반	(106 ~ 109) 106-3, 106-5, 107-2, 108-2, 108-3, 108-4, 108-7, 108-8, 109-1, 109-2
				제2반	(10 ~ 157) 산10, 산14, 산15, 140, 141, 142-1, 142-3, 143, 144-1, 144-2, 147, 149, 150, 152, 157
				제3반	(170 ~ 313) 171-2, 178, 178-1, 178-2, 179-1, 179-2, 180, 181, 182, 183, 213, 213-1, 213-2, 213-4, 214, 215, 215-1, 313
				제4반	(158 ~ 177) 158, 159, 160, 162, 163, 164, 166-1, 166-2, 166-3, 166-4, 166-6, 167, 168, 169, 170, 171, 171-1, 171-2, 174, 174-1, 175, 176, 177
		부연1리	1	제1반	(325 ~ 338) 325-1, 326, 327, 356-1, 356-2, 347-2, 330-2, 338-1, 339, 341, 340, 342, 343, 345-1, 344, 344-2, 344-1, 338-1, 338-2
		부연2리	1	제1반	(89 ~ 164) 89, 94, 95, 96-1, 98-2, 98-3, 98-4, 98-5, 99, 100-3, 114-2, 120-1, 120-2, 121-2 ~ 3, 123,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9, 140, 153-1,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9, 140, 153-1
		토성1리	1	제1반	(231-1 ~ 282) 231-1, 245, 246, 247, 248, 249, 249-1, 250, 251, 252, 253, 256, 260-2, 266-1 ~ 2 ~ 3 ~ 4 ~ 5,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4-1 ~ 2,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토성2리	1	제1반	(41-2 ~ 80-1) 41-2, 42-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44-1 ~ 2 ~ 3 ~ 4, 63, 64, 65, 70, 71, 72, 74, 75, 76, 77, 78, 79, 80-1
				제2반	(369-1 ~ 409-2) 369-1 ~ 4, 371, 373, 374, 380-1, 380-2, 392, 393, 394, 395, 396, 397, 399, 400, 401, 402-2, 409-2
		장재1리	1	제1반	(37 ~ 103) 37, 38, 39, 40, 41, 43, 44, 45, 46-1, 46-3, 47-1, 47-2, 47-3, 48-4, 48-6, 103
				제2반	(3 ~ 36) 3, 3-2, 9, 12, 13, 14, 16 ~ 27-1, 32, 34, 35,
		장재2리	1	제1반	(415 ~ 422-10) 415, 416-3, 416, 416-4, 416-6, 421, 421-2, 421-3, 422-1, 422-2, 422-3, 422-4, 422-5, 422-6, 422-7, 422-8, 422-9, 422-10, 416-5
		금암1리	1	제1반	(27 ~ 49) 27, 36, 37, 48, 49, 29
		금암2리	1	제1반	(29 ~ 612) 117, 124, 128, 131, 385, 612
		광암리	1	제1반	(96 ~ 162) 96, 97, 105-1, 105-4, 105-13, 106-1, 106-2, 110, 111, 116-2, 117-1, 135, 138-1, 162-
		금대1리	1	제1반	(10-1 ~ 49-1) 10-1 ~ 2, 20-2, 21-2, 22-2, 32-1, 32-1 ~ 3 ~ 4 ~ 5, 34-1 ~ 4, 35, 36-1, 37-1, 36-2 ~ 3 ~ 4, 37-3, 42-2, 43-2 ~ 3 ~ 4 ~ 5 ~ 6 ~ 7, 45-2, 49-1
		금대2리	1	제1반	(53 ~ 158-3) 53, 53-2, 55, 56-2, 56-1, 57-2, 143-1, 145-1 ~ 2, 157-1, 157-6, 158-3
				제2반	(169 ~ 206-7)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7-3 ~ 4 ~ 5, 179-1 ~ 5, 197-2 ~ 3, 198, 200-3, 201, 206-4 ~ 6 ~ 7
		옥수리	1	제1반	(183 ~ 230) 183-2, 183-1, 184-1, 185-1, 185-2, 222-1, 223-1, 224, 225, 229, 230
				제2반	(218 ~ 252-2) 218, 219, 224, 1, 232, 233, 236-1, 237-1, 237-2, 238, 240, 241-1, 252-2
제3반	(339 ~ 351-2) 348-1, 348, 347, 339, 349-1, 349-2, 351-1, 350-1				
제4반	(116 ~ 234) 116, 117, 165-4, 234				
내추1리	1	제1반	(1 ~ 15-8) 1-2, 2-1, 3-2, 4-1, 5-1, 6, 8-1, 8-4, 15-2, 15-3, 15-1, 15-4, 15-6, 15-7, 15-8		
		제2반	(49-1 ~ 212) 49-1, 49-2, 117-2, 119-1, 119-2, 120, 142, 143-2, 145, 147, 143-2, 211, 212		
내추2리	1	제1반	(216-3 ~ 368) 216-3, 216-4, 217, 217-1, 218, 219, 307 ~ 314, 347 ~ 368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제2반	(301 ~ 346) 301 ~ 306, 315 ~ 346
		추학1리	1	제1반	(451 ~ 496-1) 451, 452-1, 457-1,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1, 469-2, 470, 471-2, 472-1, 472-2, 495, 496-1
		추학2리	1	제1반	(289 ~ 395) 289, 290, 291, 292, 296-1, 296-2, 296-3, 295, 302, 362, 363, 361, 357, 360, 364, 395
	제2반			(332 ~ 347) 332, 333, 334, 335, 336, 337, 346,	
		추학3리	1	제1반	(415-1 ~ 427) 415-1, 417-1, 417-2, 419-1, 420-2, 420-1, 421-2, 421-3, 423, 424, 425, 426-2, 421-
		장양1리	1	제1반	(434-1 ~ 437-24) 434-1 ~ 2, 435, 436-1 ~ 2 ~ 3 ~ 4 ~ 5 ~ 6 ~ 7 ~ 8 ~ 9, 437, 437-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23 ~ 24
	제2반			(438-1 ~ 446-6) 438-1 ~ 2 ~ 3, 439, 440, 440-1, 441, 442-1 ~ 2 ~ 3 ~ 4 ~ 5, 443, 444-1 ~ 2, 445, 445-1, 446, 446-4 ~ 5 ~ 6	
	제3반			(506 ~ 605-2) 506, 562, 581-1, 601, 605, 605-1 ~ 2	
		장양2리	1	제1반	(382 ~ 688) 382, 400, 466, 683, 688
		장양3리	1	제1반	(164 ~ 535) 164, 165, 166, 167, 172, 535
		장양4리	1	제1반	(19 ~ 28) 19, 20, 25, 26, 28
		용계1리	1	제1반	(425-2 ~ 495) 425-2, 463, 469, 495
	제2반			(417 ~ 488) 417, 466, 477, 485, 486, 488	
		용계2리	1	제1반	(567-1 ~ 590) 567-1, 568, 569, 571, 589, 590
	제2반			(414-2 ~ 532) 414-2, 521-1, 523, 524, 528, 532	
		용계3리	1	제1반	(235 ~ 468) 235, 236, 238, 248-1, 248, 249, 431-3, 444, 460, 461-2, 468
	제2반			(247-1 ~ 253-3) 247-1, 247-2, 248, 249, 250, 250-1, 252-2, 253, 253-2	
	제3반			(201-1 ~ 205-1) 201-1, 202, 203, 204, 205-1	
		대울1리	1	제1반	(272-1 ~ 307-3) 272-1, 276, 300-2, 300-4, 302-2, 302-3, 302-4, 303-1, 303-2, 304, 304-1, 304-3, 305-2, 305-3, 305-4, 305-5, 306-6, 306-7, 307-1,
		대울2리	1	제1반	(119 ~ 142-6) 119, 120, 137,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8, 142-6
	제2반			(203-1 ~ 210-6) 203-1 ~ 2, 204-2, 205-2, 205-3, 204, 206-1 ~ 2 ~ 3 ~ 4 ~ 5 ~ 6 ~ 7 ~ 8, 208-2 ~ 3 ~ 4 ~ 5 ~ 6 ~ 7, 209-1 ~ 2 ~ 3 ~ 4 ~ 5, 210-2, 210-6	
		석성1리	1	제1반	(438 ~ 440) 438, 439, 440
	제2반			(440 ~ 448) 440, 441, 442, 448	
	제3반			(439-3 ~ 450) 429-3, 449, 450	
	제4반			(383 ~ 387) 383, 383-1, 388-1, 394, 397	
		석성2리	1	제1반	(12-1 ~ 312-1) 12-1, 22-1, 48-3, 49, 49-1, 50, 294-1, 294-2, 296-1, 309-1, 308, 309, 310, 311-
	제2반			(339-2 ~ 429-3) 339-2, 393-2, 393-3, 395-1, 396-3, 396-7, 397, 298-1, 400-2, 400-4, 429-2, 429-3	
	제3반			(47-2 ~ 49-7) 47-2, 49-3, 49-2, 49-4, 49-5, 49-6,	
		석성3리	1	제1반	(449 ~ 469-3) 449, 450, 458, 459, 467, 468, 469-1, 469-2, 469-3
	제2반			(470 ~ 475) 470, 471, 472, 473-1, 473-2, 473-3, 473-5, 475	
		내둔리	1	제1반	(3-3 ~ 189) 3-3, 18, 19, 20, 25, 187-2, 188, 189
	제2반			(9-2 ~ 68) 9-2, 22, 23, 24, 25, 68	

###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제4조 관련)

구	읍·면	행정리	이장수	반	관할구역
		화상1리	1	제1반	(171 ~ 859) 171, 172, 173,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9, 178-10, 178-11, 178-13, 178-14, 178-15, 178-16, 178-17, 178-18, 179, 181, 182, 183, 775, 859, 178-7, 178-8
				제2반	(183 ~ 190) 183, 184, 185, 186, 188, 187, 189, 190
				제3반	(157 ~ 203) 157, 158, 159, 192, 193, 197, 198, 199, 201, 202, 203
				제4반	(154 ~ 212) 154, 155, 206, 207, 208, 209, 210, 211,
				제5반	(150 ~ 156) 150, 151, 152, 153, 154, 156
				제6반	(31 ~ 41) 31, 32, 37, 38, 39, 40, 41
		화상2리	1	제1반	(704-1 ~ 704-5) 704-1, 704-2, 704-3, 704-4, 704-5
				제2반	(705-1 ~ 706-2) 705-1, 705-2, 705-3, 706-1, 706-2
		화하1리	1	제1반	(11-3 ~ 35-3) 11-3, 11-5, 25-8, 29, 30, 32-1, 32-5, 35-1, 25-2, 35-3
				제2반	(16-1 ~ 33) 16-1, 16-2, 17, 18, 24-1, 24-2, 25, 26, 27, 25-5, 33
		화하2리	1	제1반	(78 ~ 114) 78, 79, 80, 80-1, 111, 114
				제2반	(37 ~ 78) 37, 76, 77, 78
				제3반	(62 ~ 70) 62, 63-1, 63-2, 64, 64-2, 69-1, 69-2, 69-3, 69-4, 69-5, 69-6, 69-7, 70
		송정1리	1	제1반	(107 ~ 142) 107, 108, 142-2
				제2반	(109 ~ 114) 109, 142-3, 110, 111, 112, 113-1, 113-2, 114
		송정2리	1	제1반	(126 ~ 145) 126, 130, 131, 132-2, 133-3, 133-4, 137-2, 139, 145
				제2반	(268 ~ 276) 268-2, 269, 269-1, 269-9, 270-1, 270-3, 272, 273, 274, 276-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이·통장의 신원보증을 수혜가 있는 조례로 양 시·군 자치법규 통합
  - ※ 종전 청주시 미규정, 청원군 신원보증 ⇒ 신원보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연간 소요비용 추계액 : 3,066,000원  
(산출기초 : 3,000원 × 1,022명 = 3,066,000원)

청주시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안

의안 번호	6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주민투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로 제정함.
- 외국인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주민투표의 대상 및 투표청구 주민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서명요청방식, 기간, 서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7조, 8조)
-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공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제5조, 제7조, 제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주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설치·분할·통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
3. 여럿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대립되는 주요정책 결정사항
7.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



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부의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청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투표운동 기간 중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戶別)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교부신청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청주시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청주시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59호 청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청원군 주민투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b>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b>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청 주 시 장 (인)</b></p>			
<p><b>※ 작성요령</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4.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b>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b>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 입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p> <p>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b>청 주 시 장 귀하</b></p>				
<p><b>※ 작성요령</b></p> <p>1.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p> <p>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b>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b>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 입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입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청 주 시 장 (인)</b></p>					
<p><b>※ 작성요령</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                          명을                          기재</li> <li>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                          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청주시 ○○읍·면·동 (○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b>주 민 투 표 청 구 서</b>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margin-left: 250px;"><b>청 주 시 장 귀하</b></p>				
<p><b>※ 붙임서류 : 관련자료</b></p> <p><b>※ 작성요령</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li> </ol>				

[별지 제7호서식]

<b>이 의 신 청 서</b>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margin-left: 150px;">청 주 시 장 귀하</p>			
<p>※ 붙임서류 : 증명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 청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연서 주민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청주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61호 청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청원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7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청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함.
-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안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센터의 조직)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시장이 지정하는 자원봉사 주무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5. 센터 사무국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

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직원임용) ① 센터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채용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직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직원의 임용절차, 승진,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정년)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가 자원봉사에 관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법인에

한정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서와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기한일부터 5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 회계 및 물품관리 등 모든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4조(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 ① 시장은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실적의 관리 및 확인에 관한 사항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자원봉사자 등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포상) ①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공무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종류, 포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경력 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그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 센터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

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실비지급)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센터의 민간위탁)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때에는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20조(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75호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청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특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 전 청주시 및 청원군의 장이 위촉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임기 개시일 전까지 운영한다.

제4조(자원봉사센터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은 이 조례에 따른 봉사활동실적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는 이 조례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리개발위원회 조례안

의안 번호	7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청주시 리개발위원회 조례」로 제정함.
- 리개발위원회 기능 및 의결사항(안 제2조)
- 리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리개발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재산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의 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장·면장 및 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장, 새마을지도자(남·여), 그 밖의 지역유지 중에서 읍장·면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장·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읍장·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청주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장·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장·면장을 경유하여 청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리개발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리개발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분  
다.



# 청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안

의안 번호	7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주민등록사무의 구·동위임조례」와 「청원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를 제정함
- 청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권한 위임 (안 제2조)
- 위임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 감독 (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도·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 읍장·면장·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이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장·면장·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11호 청주시 주민등록사무의 구·동위임조례, 청원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청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보험의 가입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 례 안 : 붙임

## 청주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발급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포함),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별지 서식)을 갖추어 두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95호 청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제2269호 청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청원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  
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보험  
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 보 험 관 리 대 장

부서명	보험 회사	계약 일자	만기 일자	보험 금액	보험증권 번호	대 상 자		비고
						직급	성 명	

#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

의안 번호	7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와 「청원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함.
-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안 제2조)
-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
-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 회의(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청주시의 기본적인 정책과 계획 등 중요한 사항과 법령 등에서 정한 심의·자문 또는 의결 등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정사항)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중요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정수행에 지속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사안
3. 각종 법령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
4. 시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중요한 결정 사항
6. 시 소속 공무원의 민사, 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요한 계획 또는 시책 등에 관하여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정업무담당국장이 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실장·국장 및 국주무과장, 회계업무담당과장, 시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청주시장이 위촉한다.
-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분야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시정조정위원회(○○분야)"라고 한다.
-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위촉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위원회 구성은 시 본청 실장·국장 및 국주무과장중에서 10명 이내로 임명한다.
- ⑦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 외부 인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 소관부서에서 시정업무담당과의 협의를 받아 위촉한다.
- ⑧ 관계공무원 또는 청주시장이 위촉하는 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

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수시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업무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간사가 회의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 심의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정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청원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조정위원회 위원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7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제안운영 조례」와 「청원군 지방공무원제안 규칙」을 통합하여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로 제정함.
- 제안의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안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안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채택제안 시상종류 및 수여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채택제안 시상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채택제안 부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채택제안의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제안규정」, 「국민제안규정」,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 례 안 : 붙임

##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내국인과 외국인 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 산하 공단·재단(이하 "공단·재단"이라 한다) 직원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행"이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시민제안,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1. 시민제안: 내국인과 외국인이 제출하는 제안
2. 공무원제안: 시 소속 공무원, 공단·재단 직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자유제안: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4. 지정제안: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
2. 다른 사람이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7. 법령·지침·상급기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과 서식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8. 그 밖에 청주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

##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6조(제안의 제출) ① 내국인과 외국인 또는 시 소속 공무원과 공단·재단 직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이나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FAX) 또는 시 홈페이지



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공동제출) 제안자가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경우 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경우 제안의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에서 창의성은 높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고, 보완된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을 때에는 공동제안에 준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시상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의 지급 금액
3.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재심사
4. 채택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8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안전행정국장
2. 시의회 의원
3.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4. 시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그 밖의 위원회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실무심사위원회, 숙성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제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한 제11조 및 제12조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재단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4조(심사구분)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제15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

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9조(채택제안 시상 종류 및 수여대상) ① 채택 제안에 대한 시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부문
2. 제안실행부문
3. 예산절감부문

②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제안부문: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이바지 한 자
2. 제안실행부문: 창안과제의 우수한 추진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 소속 공무원과 공단·재단직원 및 부서
3. 예산절감부문: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 소속 공무원과 공단·재단직원, 창의적 제안 또는 예산낭비사례 신고를 통하여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내국인과 외국인

③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세부 시상분야, 시상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채택 제안의 등급은 부문별로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

무원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⑥ 제안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청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시상시기) 시상 시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안부문: 반기별(연 2회)
2. 제안실행부문: 연 1회
3. 예산절감부문: 연 1회

제21조(부상금의 지급) ① 창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경우 최고 5백만원으로, 시 소속 공무원과 공단·재단직원의 경우 최고 3백만원으로 하며, 창안의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③ 창안의 실시결과 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시 및 공단·재단 부서에 대해서는 최고 2백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이나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3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때에는 그 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승진이나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창안의 실시 지연사유가 실시부서에 있을 때에는 창안이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인사상 특전의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창안의 실시가 결정되었거나 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4조(그 밖의 보상) 제안의 전시 등으로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6장 권리의 승계

제25조(권리의 승계) 시장은 창안이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있는 실용신안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등록권 등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6조(승계의 결정) 시장은 창안으로써 제25조에 따라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권리의 양도) 창안자가 제26조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8조(출원)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권리의 양도나 인계를 받았을 때에는 시장 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의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28조에 따라 출원된 창안은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장 창안의 사후관리

제30조(창안의 실시)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기간) 시장은 창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행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제33조(실행의 권고) 시장은 창안이 다른 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실행성과의 평가) ① 창안을 실행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행 기관 및 실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행 및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5조(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제안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청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7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를 「청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로 제정함.
- 읍·면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0조)
-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2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읍·면의 명칭을 붙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회관의 위치는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과 특수사정 등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장·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단체 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즉시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 등을 심의 결정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읍·면사무소의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시설 관리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사무소 부속 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장·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할 때는 수탁 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 계획) 읍장·면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예산 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장·면장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사용

제16조(사용 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 용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 ⑥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 시설 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도 개시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 결정에 따른다.

제19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권리 양도 제한) 제16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3조(손해 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관의 시설과 그에 따른 부속물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손해 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원상 복구 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장 위탁 관리

제24조(위탁) ① 읍장·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 감독) ① 읍장·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업무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법」, 「지방채정법」 및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사용허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위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탁관리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관리로 본다.



#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7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청원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안 제5조)
-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 및 감면 규정(안 제10조)
-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안 15조부터 22조까지)
-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부칙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7. 비공식 주민조직 활동의 지원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

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면장·동장이 정하며,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면장·동장이 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



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읍장·면장·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장·면장·동장은 관할 구역 안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장·면장·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읍장·면장·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장·면장·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장·면장·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읍장·면장·동장과 위원회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읍장·면장·동장 또는 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에서 공익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수강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장·면장·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

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장·면장·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장·면장·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장·면장·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장·면장·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읍장·면장·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직능단체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된 자

③ 읍장·면장·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경우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

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장·면장·동장이 위촉하며,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읍장·면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모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촉 해제) ① 읍장·면장·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⑤ 읍장·면장·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23조(예산지원 등) 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 또는 워크숍 개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와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자치센터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포상과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자치센터의 자치위원에 대하여 선진 주민자치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면장·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12호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7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와 「청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와 새마을사업의 정의(안 제2조)
-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에 필요한 사업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근거(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청주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청주시협의회, 청주시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청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청주시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청주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새마을사업 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

례」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98호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청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8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청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제정함.
-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무예치액과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청주시 지정금고에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각각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 별표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과장(본청, 구청)
3.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과 주무담당주사(본청, 구청)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과장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촉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

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 연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그 소집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5호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청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별표]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4조 관련)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 나. 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 다.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 라.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활동 사업
  - 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가. 자연재해저감시설 :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하되 아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

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댐
- 「도로법」 제2조제2항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나. 재난 예보·경보시설 : 설치·보수·보강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 피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구입 및 임차 등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의 구입

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가.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 나.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다. 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8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와 「청원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제정함.
- 수습주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실무반원의 임무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종합상황실의 운영 및 근무인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하였을 때

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청주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청주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청주시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청주시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계"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를 말한다.

8. "기반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에너지·통신·교통·

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예방단계"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  
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자체를 억제  
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대비단계"란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  
는 경우에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  
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  
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대응단계"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국가기반체계  
의 마비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자원 및 역량을 활  
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복구단계"란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  
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  
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4급부터 5급까지의 상  
당직을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라 재난관리책임  
기관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제2장 청주시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청주시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대책 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 16조에 따라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북도대책본부"라 한다)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북도 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주시대책본 부를 설치하여야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할 우려가 있어 청주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 관련하여 청주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기간

제4조(청주시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청주시대책본부에는 차 장과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청주 시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청주시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청주시대책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청주시대책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청주시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시 소속 공무원 중 자연·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인적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청주시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 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 ⑥ 법 제19조에 따라 청주시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부서의 장이 되며 청주시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고,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기반재난업무부서의 장이 되며 제2조제13호의 기반보호총괄관이 되어 청주시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청주시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청주시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주시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 청주시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3장 청주시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청주시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청주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청주시대책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된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청주시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 4

② 기반재난의 경우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난 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반재난 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④ 청주시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모의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무반에 파견근무 할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장이 청주시대책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 제9조제5항에 따라 청주시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청주시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청주시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게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청주시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청주시대책본부장의 현장 상황관리체제) ①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③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 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등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 시 청주시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자연·인적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 총괄 지휘한다.

⑥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주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주시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 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대책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충청북도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청주시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장상황 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 및 충청북도대책본부에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 및 충청북도대책본부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충청북도지사·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대책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 기관 등과 유

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대책본부 또는 충청북도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청주시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 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 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재난 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 청주시대책본부장은 기반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관련 장비

③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 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주시대책본부장, 충청북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 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청주시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청주시대책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보고

3. 보고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청주시기반재난상황실(이하 "청주시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청주시재난상황실장은 충청북도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 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주시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련사항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 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기능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 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로 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발신자의 성명 및 수신·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한 사항의 경우 전화(유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청주시대책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 별지 제2호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별지 제3호서식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 청주시대책본부 및 관계기관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소속 4급이나 5급 상당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반재난 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충청북도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3. 기반보호관련 청주시안전관리계획의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4.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지역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

## 한 업무총괄

### 5.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충청북도기반보호상황실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장하고 사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충청북도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대책본부장은 필요할 때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 가능성을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충청북도 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주시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주시대책본부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 및 충청북도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그 밖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청주시대책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2호에 따른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청주시대책본부장은 기능 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본부장은 제27조에 따라 추가로 투입된 자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 청주시본부장은 관계 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31조(청주시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청주시대책본부장은 제21조에 따라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청주시대책본부장 및 관계 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청원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제6조제1항 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전 결 권 자			
			차 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본부조직 및 운영	5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
	재해일지 기록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지도감독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	홍수 등 경보 발령시					○
	홍수주의보 발령시					○
	기상주의보 발령시					○
방재용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
수난구조 사항	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수난구조 상황파악					○
군지원 사항	군장비등 지원요청 및 협의				○	
	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
구호활동 사항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구호활동 상황 파악					○
통신망 운영에 관한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
피해종합대책	기상자료 수집					○
	피해상황 자료수집					○
	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피해액 확정 (다만, 비우심일 경우 통제관 전결)		○			
	복구계획 수립 (다만, 비우심일 경우 통제관 전결)	○				
복구사업 지도 감독					○	
지시 및 기준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별표 2]

**기반체계보호 전결 사항**(제6조제1항 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장	총괄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청주시 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	4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상황일지 기록 비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	
청주시 대책본부 회의운영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감독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상 단 조	상 계 관 리	예방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비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응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수습·복구단계별 조치사항		○		
재난상황 수집전파						○
대규모 발생 예측·분석						○
군 지 원 사 항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
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			
공 권 력 투 입 지 원 사 항	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				
	병역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
통 합 지 원 종 합 대 책	지원상황 자료수집					○
	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현장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		
	현장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조치						○

[별표 3]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당업무
반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
재난정보 관리팀 (3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li> <li>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li> <li>3. 재난정보 수집·분석</li> <li>4.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li> <li>5.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li> </ol>
상황분석 판단팀 (1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li> <li>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li> <li>3.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li> <li>4. 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개최, 상황개시 및 해제, 체제별 근무명령</li> <li>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li> </ol>
유관부서 지원팀 (5명)	<p>〈건설 관련 부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li> <li>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li> <li>3.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li> </ol> <p>〈사회복구 및 보건위생, 환경 관련 부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li> <li>2.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li> <li>3. 재해지역 수해 부유 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li> </ol> <p>〈자원봉사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li> </ol> <p>〈농정관련 부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경지·농작물·수산증양시설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li> </ol> <p>〈건축·관광 관련부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후건축, 축대, 관광시설 등 피해사전예방 조치</li> </ol>
유관기관 지원팀 (11명)	<p>〈청주상당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청남경찰서, 청주동부소방서, 청주서부소방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KT충북마케팅단 청주지사, 한국도로공사충청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댐 및 저수지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li> <li>1. 전기·통신시설보호 및 재난발생시 전기·통신 고립해소</li> <li>1. 상황발생시 교통통제 상황파악 및 전파 등</li> <li>1. 기상상황에 따른 임시휴교 등 학생보호</li> <li>1. 긴급 상황발생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li> </ol>

2. 근무방법

- 가. 재난정보관리팀 및 상황분석판단팀 : 24시간 3교대 근무 원칙
- 나. 유관부서 지원팀 : 상황실에서 상시 주간근무하며 소관업무 추진하되 종합상황실장은 해당부서에서 재난업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다. 유관기관 지원팀 : 각 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추진 및 상시연락체제 구축

[별표 4]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총괄조정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 제 관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종합상황실장	본부장·차장,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종합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상황총괄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li> <li>2.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li> <li>3.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li> <li>4.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li> <li>5.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li> <li>6. 피해정보 수집·보고</li> <li>7.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li> <li>8.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li> <li>9.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li> <li>10. 현장 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수습지원단 운영 지원</li> <li>11.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li> </ol>
행정지원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인사 방문시 의견업무 및 보고서 작성</li> <li>2. 상급기관 및 시장 현장 방문시 보고자료 작성</li> <li>3.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li> <li>4.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운영</li> <li>5.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li> <li>6.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li> <li>7.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li> <li>8. 피해자 보상대책</li> </ol>



구조구급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 운영</li> <li>2.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구호 현황 파악</li> <li>3.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관리</li> <li>4.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li> <li>5. 피해지역주변 주민대피 및 인명구조활동 실시</li> <li>6.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 운영</li> <li>7.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li> <li>8. 의료 및 방역실시에 관한사항</li> <li>9. 의연금에 관한 사항</li> <li>10. 그 밖에 대민구호에 관한 사항</li> </ol>
비상지원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li> <li>2. 응급복구에 관한사항</li> <li>3.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장비지원 협조요청</li> <li>4.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li> <li>5.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현장 설치운영</li> <li>6. 사고현장주변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li> </ol>
자원봉사 지원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원봉사지원업무 총괄</li> <li>2.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li> <li>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li> <li>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li> </ol>
홍보지원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li> <li>2. 재난 예 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 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li> <li>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지원 등)</li> <li>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li> <li>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li> <li>6.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li> <li>7. 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li> <li>8.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li> <li>9. 그 밖에 대민홍보와 관련된 사항</li> </ol>

[별표 5]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당업무
상황실장	○ 시대책본부 기반재난상황실 업무 총괄
1. 상황관리팀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수집</li> <li>-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정보 수집</li> <li>- 각종 재난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li> </ul> </li> <li>○ 일일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서 작성·전파</li> <li>○ 관련공무원 비상연락망 구축</li> <li>○ 관계기관 협조 체계구축</li> <li>○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li> </ul>
2. 상황분석팀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li> <li>○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li> <li>-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li> </ul> </li> <li>○ 소관업무의 분야별·지역별 동향 분석·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li> <li>-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li> </ul> </li> <li>○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분야별 대응방안 검토</li> <li>○ 대체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체계 구축 등</li> </ul>

2. 근무방법

- 상황관리팀 4명은 2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상황분석팀은 2명은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재난유형별 소관기관 및 관계기관 파견근무자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직공무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당업무
통 제 관		○ 기반재난담당국장은 대비단계에서 기반재난 상황업무 총괄하고 총괄조정관을 보좌
상황실장		○ 통제관 보좌
상 황 총 괄	상황관리팀 : 5명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각종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 지역별, 분야별 동향파악 강화 ○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확립 ○ 관계기관·지자체 기반보호 책임관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전파 - 기반대책본부 상황실·관계기관 및 단체 ○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팀 : 3명	○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 분야별·지역별 동향파악 및 정보분석 강화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소관분야 상황단계별 편람점검 ○ 대체인력·장비 등의 관리상황 및 투입여부 검토 등
	상황대책팀 : 2명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후속 조치 검토 - 대책본부 가동여부 검토 ○ 진행(교섭)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 4명		○ 불법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점검 ○ 주요시설물 보호계획 수립내용 점검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 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상황총괄반의 상황관리팀은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 근무 장소는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 파견자와 치안 및 구조구급대책반은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제관의 허락을 받아 소속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직공무원 소속과 직원을 장비 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7]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당업무	
총괄조정관	○ 기획행정국장은 대응단계에서부터 재난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을 보좌	
통 제 관	○ 총괄조정관 보좌	
1. 상황총괄반	상황실장	○ 상황총괄반 업무총괄 ○ 통제관 보좌
	상황관리팀 : (6명)	○ 지역기반보호 통합상황실 운영 - 지역별·분야별, 기관별 정보활동 강화 및 공유체계 확립 - 재난진행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 긴급 상황관리 ○ 긴급 상황보고서작성 - 즉보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대책팀 : (4명)	○ 지역대책본부 가동(대체자원 지정 및 관리·투입 협조·지원 등) ○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관리 ○ 경찰·지자체 보고체계 구축 및 지휘권 확보 ○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 재난 예·경보발령 및 방송 요청 ○ 재난사태 선포·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
	보고서작성팀:(2명)	○ 실시간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2.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7명)	○ 불법유형에 따른 종합 대응 ○ 주요시설물 보호 조치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3. 행정지원반 (6명)	○ 의회보고, 본부장·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경찰력 배치 점검 ○ 지역대책본부장 지휘 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4. 홍보지원반 (3명)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TV, 라디오 인터뷰 등	

※ 총괄조정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실무반의 팀장 및 반원은 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씩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직공무원 소속과 직원을 장비 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재난상황보고서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별지 제2호서식]

##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통보)서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기초단체 조치사항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기반체계 관련 과금 전망 및 대책
  - 
  - 
  -

###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서

수 신 : ○○시(도)(기반보호 상황실)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지역기반 보호관련 사항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동(면) 리 번지	
3. 피해 개요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7. 향후전망 및 지역기반보호 대책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8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와 「청원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정함.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청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청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 검토항목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 중에서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

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회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협의검토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한차례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
2. 개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그 밖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11조(회의록)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03호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청원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사

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및 구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게 하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행정지원 및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전반기에 제설·제빙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참여 유도, 행정지원 등의 사전대비와 사후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및 구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및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까지의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이면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정오(12시)까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등의 비치·관리 및 지원)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제품을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지원) 시장은 연 1회 읍·면·동별 제설·제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62호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

- 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행위제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를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63호 청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청원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yellow;"> <p><b>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b></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v style="width: 45%; padding: 5px;"> <p>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width: 45%; padding: 5px;">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주시청, T. - - - ) 청주시장</p> </div> </div> </div> <div style="margin-top: 20px; 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left;"> <p>침수위선(적색) →</p> <p>침수흔적(청색 삼각형)</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문자로 침수위선 표기</p> <p>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li> <li>○기둥 규격: 지름 10cm 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li> <li>○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li> <li>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li> <li>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li> <li>○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li> <li>○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li> <li>○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li> <li>○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li> <li>○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li> </ul>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b>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b></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 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청주시청, T. - - - ) 청주시장</p> </div>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li> <li>○기둥 규격: 지름 10cm 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li> <li>○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li> <li>○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li> <li>○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li> <li>○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li> </ul>

#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임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청주시 지역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청주시 지역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

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면·동 지역 방재단원은 시 지역 방재단원이 되며 시 방재단장의 지시에 따른다.

⑧ 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4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대표는 읍·면·동 지역 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임) 단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제6조(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위하여 시 지역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은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평상시 관리
2. 자연재난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와 정비



3. 재난의 예방, 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수도·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재난지역의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과약 및 방재단에 보고

10. 재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의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소집할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나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 여유가 없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의 방송장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따르지 않을 경우라도 불이익은 따르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은 차이 나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할 경우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때에 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 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드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의 방재단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전문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하였을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의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을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397호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청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단장, 부단장, 간사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위 축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청주시 지역자율방  
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 청주시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청주시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청주시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 청주시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 인 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 원 가 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 문 분 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붙임)				

상기 본 단체는 청주시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붙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청주시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연번	성 명	성 별	연 령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직 업	비 고
1								
2								
3								
4								
⋮								

[별지 제3호서식]

## 활 동 확 인 서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대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 및 민간단체 대표 성명 (인)				

본인은 청주시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나 읍·면·동 및 민간단체의 대표 등

[별지 제4호서식]

##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청주시지역자율방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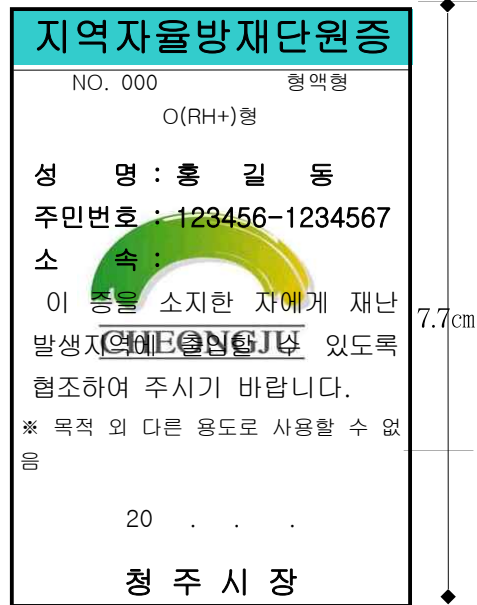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 출 입 증





# 청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관련 용어 정의(제2조)
-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제5조)
-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 때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밀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



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 관할 구역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② 시 관할구역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機資材) 등을 비축(備蓄)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제외하고 4명 이상으로 한다.

④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별로 평가반장을 둘 수 있다.

⑤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⑦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시기) ①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때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은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표지(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제한 표지(별지 제4호서식)
3. 사용가능 표지(별지 제5호서식)

④ 위험도 평가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전부를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지자체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機資材) 및 인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다른 지자체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료, 보고서 작성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4호 청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청일	
------	--	-----	--

성명		주민번호	
----	--	------	--

소속		직급	
----	--	----	--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input type="checkbox"/> 교량·터널	<input type="checkbox"/> 댐·저수지
<input type="checkbox"/> 철도	<input type="checkbox"/> 원자력시설	<input type="checkbox"/> 항만
<input type="checkbox"/> 가스·전력·통신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분야(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주 소 :

사 진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청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43-200-29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평가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043-000-0000 )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평가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043-000-0000 )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평가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043-000-0000 )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043-000-0000 )



#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관리주체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유지관리부서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서 정한 시설 중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기구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 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유지관리부서"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별표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 관리주체는 영 제11조제2항 별표 6의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부서의 책무) 유지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시장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제7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건강보호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3호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 **어린이놀이시설**(제2조제2호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8.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9.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0.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1.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의안 번호	8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를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로 제정함.
-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청주시민의 안전을 확보(안 제1조)
- 안전청구 대상 시설물 등을 규정(안 제3조)
- 시민안전청구 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제1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청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청구권자) 청주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안전청구 방법) 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

### 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

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청구인의 책무) 청구인은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청구접수 및 조치) 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하여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시장이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 제2장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제8조(구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난관리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관리담당과장
2.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3.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승강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5.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시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
4. 회의에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주사가 하며, 서기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청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점검 방법) 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

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 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긴급한 경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은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의 부담)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민안전청구제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33호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8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와 「청원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
-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전관리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주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시장
2. 실장·국장

3. 청주동부소방서장
4. 청주서부소방서장
5. 청주상당경찰서장
6. 청주홍덕경찰서장
7. 청주청남경찰서장
8. 충청북도청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9. 관할부대장
10.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재난책임기관의 장
11. 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12.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

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소집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 정리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

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 의견수렴) 새로운 정책개발, 주요시책 입안 또는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 의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업무 부서와 관련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

청할 수 있다.

1. 관계전문가 참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나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갖춰 두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 통지)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17호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청원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전관리자문단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록 등) 자문단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지역방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우수한 방법대 및 대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순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청주시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주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각 읍·면·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자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연계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업무 협조 지원
5.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법활동을 위한 초소설치 비용 및 운영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야식비
2. 방법순찰 차량구입비 및 유지 경비(보험료, 유류비 등)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방법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한다.

1.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시장은 그 밖에 방법대원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대 등에게는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법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법대 및 방법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한 방법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방법대원에 대한 표창 등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08호 청주시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군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9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운영 조례」를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운영 조례」로 제정함.
- 회관의 사용범위(안 제3조)
- 회관의 사용허가(안 제4조)
- 회관의 사용료(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민방위회관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청주시 민방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민방위교육회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② “회관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회관 내 시설(부속 시설 포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회관(2층)의 교육장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에 한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2층)의 사용허가는 민방위교육 일정을 제외한 기간 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회관(2층)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을 허가할 경우 회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1. 민방위 교육 일정에 차질이 있을 때
2.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① 시장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2. 허가 받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재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측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시간) 교육장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일	토·일 공휴일
시 간	08:00~22:00	09:00~18:00

제8조(사용료) ①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행사가 끝난 후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행사
3. 시의 정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권 양도금지)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체금액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는 사용일 15일 전에 신청을 취소할 경우 전체금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7일 전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할 경우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며, 7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할 경우 2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

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관리) 회관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무원  
원을 둘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117호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  
용·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민방위교육회관 시설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기본 시설 사용료	교육장 (2층)	1회2시간 이내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시간 초과시 매 시간당 기본요금의 20% 가산</li> <li>·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은 기본요금의 20% 가산</li> <li>※ 야간: 18:00~22:00</li> </ul>
부속 시설 사용료	냉 난 방	실 사용량	유 류 현 시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방 사용료 동력(KW)×전력단가(원)</li> <li>· 난방사용료 [동력(KW)×전력단가(원)] + [유류사용량×유류현시가]</li> </ul>



#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협의회의 심의사항(안 제2조)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청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 제6항에 정한 사항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4.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
5.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자의 사기양양 및 민·관·군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청주시의회의장
2.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3. 육군제2161부대 1대대장
4. 육군제2161부대 3대대장
5. 청주상당경찰서장
6. 청주홍덕경찰서장
7. 청주청남경찰서장
8. 국가정보원충북지부 관계관
9. 국군기무부대 관계관
10.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공안업무 담당)
11. 청주소년원장
12. 청주보호관찰소장
13. 충북지방병무청 관계관
14. 청주동부소방서장
15. 청주서부소방서장
16. 청주시재향군인회장
1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고 위촉 해제

가 없는 한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업무담당과장
2. 작전담당 간사: 대대 작전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대대 동원과장
4. 경찰담당 간사: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⑥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민방위 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운영

나. 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수행

라. 민방위대 운영 및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마. 주민신고 조직관리 및 주민신고 훈련

2.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전 상정

나.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건의

### 3.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

### 4. 경찰담당 간사

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의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의 각 간사가 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시와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면장·동장이 된다.

③ 시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 감

독한다.

④ 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읍·면·동의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2~3개 반을 운영하며, 반원은 1명 이상 3명 이하로 편성한다.

⑤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⑦ 지원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육성 지원
4.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지역합동 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6.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5조(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읍·면·동에

서 운영하는 각 호의 기구도 이하 같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제6조(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시 지역에서 통합방위상황(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이 발생할 때에는 통합방위 관계법령 및 청주시통합방위예규를 적용 한다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영 제36조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  
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 활동의 실시

2. 탁 트인 곳(개활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임목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청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로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제4조(회원의 등록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회의 운영) 재해업무담당 부서에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회원의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제7조(현지 조사업무)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회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개최)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회 운

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경비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여비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 여비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중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3.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회원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등록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등록해 지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회원 가입(변경) 등록 신청서

회 원 번 호		희망업무 분 야	<input type="checkbox"/> 예방 <input type="checkbox"/> 복구	<input type="checkbox"/> 대비·대응 <input type="checkbox"/> 정책 환류
접수연월일		인 준 연 월 일		

단 체 명 (기 관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직 위 와 성 명		/		
주 소 : (    -    )		전 화 : (    )		
		팩 스 : (    )		
이 메 일 :				
홈페이지 :				
담 당 자	직 위		연 락 처	사 무 실 :
	성 명			휴 대 폰 :
주요 업무분야 :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위와 같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기관) :

(직인)

제○○-○○○호

## 회 원 증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위 기관(단체)은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청주시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회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9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로 제정함.
-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이하 “안전관리 대책기간”이라 한다)  
“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기상 여건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 해당연  
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  
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  
역 내에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 · 구명로프(투척로프) · 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정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시설 중 그 설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수 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해당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시장은 관리지역 중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 안전시설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해 퇴거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그 밖에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 제3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9조(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구분 모집할 수 있다.

제10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시장이 물놀이 안전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12조(배치기준) 관리 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순찰배치

제13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 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물놀이 안전 대책기간 중으로 하되,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비관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물의 대여활동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복제)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 TF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 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 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④ 비상근무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시장은 안전관리 대책기간 동안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해서는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안전시설 점검 및 안전사고 예찰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등 예비관찰 활동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시장이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정비·확충해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을 운영해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인터넷, 트위터, 스마트폰, 아이폰
4. 현수막
5. 반상회보, 전단지
6. 차량이용 방송
7.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경보장치 등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동장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9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를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로 제정함.
- 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설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구입한 그레이더(부속품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보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면·동 단위로 배정 보관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보관할 수 있다.

제4조(관리) 제설장비는 읍장·면장·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 책임자는 제설작업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다만, 총괄적 관리·감독은 해당 구청 건설교통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제5조(운영) ①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청주시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트랙터를 소유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한다.

② 시장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의 트랙터에 대하여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장비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는 읍·면·동별로 선정 관리하되,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및 일정액의 실제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설작업 외의 사용) 제설장비는 제설작업 외에 청주시 관할 구역 다음 각 호의 작업에 대하여 총괄관리자 또는 읍장·면장·동장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비포장 농로의 노면정리 작업
2. 농경지의 평탄 작업
3. 그 밖에 공익에 관련된 작업

제10조(사용료) 제9조에 따른 제설장비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제설장비 관리·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제설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입·보관·관리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설장비로 본다.





#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9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와 「청원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함.
-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및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재난현장 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재난현장 상황과약 및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하 "통합지휘소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 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

하는 자를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이라 한다)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발생 시,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

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의 화재, 붕괴
5.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의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휘소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정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장

###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 제1절 재난현장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충청북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常勤)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한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장은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의로의 전환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67호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청원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9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세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시세 기본조례」와 「청원군 군세 기본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제정함.
-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24조)
-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제46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 제5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30조, 제6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청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시세는 다음과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 5. 자동차세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 또는 읍장·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 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로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교부 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직접교부 한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

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留置)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붙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시장이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장·통장·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일반우편 송달부)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통상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2장 부과징수

제9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붙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에 대해서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시세를 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리)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시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도세, 시세의 순서로 징수한다.

제12조(미납시세 등의 열람) ① 미납시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납시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

2. 체납된 시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 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시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5조(예탁)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청주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

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7조(시세의 수납)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8조(시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할 때의 충당순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9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시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대상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또는 교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

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한꺼번에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담보의 요구)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게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으로 시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 ② 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5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  
이 필요한 재산을 압류할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할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해서  
는 재산권의 종별·설정연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에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6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  
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시세 확정 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 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9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30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수색이나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이나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1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

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2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시장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 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른 토지 임대료·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3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 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유분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2절 처분

제34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따라 그 담보물을 공매할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써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압류재산현황·공매대행·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2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체납된 시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6조(공매처분 유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7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 금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시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영 제86조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할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채납처분비·시세·가산금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채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

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을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을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8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 금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청주시보에 게재하거나 시 분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제39조(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의 업무처리)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중지명령으로 체납처분이 정지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같은 기간 내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40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 진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중 시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령하는 결정의 신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중지기간 연장

제41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와 제149조, 제152조와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로 하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

한 시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이 집회할 때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동의는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해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

계획안의 인가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 가결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이 인가 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시세채권의 변제 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시세채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 진행 중에 새로 채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시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시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 따른 상계권 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4조(법원인가 결정 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되면 이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채납액은 법령 및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보다는 시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시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물적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서로 알면서 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계산한다.

#### 제4장 보칙

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하였을 때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4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5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심의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 사안에 따라 간사는 위원회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해당업무 주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



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7호 청주시 시세 기본조례, 청원군  
군세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청주시 시세 조례안

의안 번호	9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세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시세 조례」와 「청원군 군세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시세 조례」를 제정함.
- 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주민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 재산세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23조)
-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제2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시세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5조에 따른다.

###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

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장 주민세

####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인

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읍·면 지역 5,000원,  
동 지역 5,200원

나.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 2.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200,000원

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건축물을 증축이나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절 소득분

제9조(세율)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제2절 종업원분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4. 평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5장 재산세

제12조(세율)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읍·면지역은 제외한다):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3. 주택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4. 선박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및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청주시가 설치된 때부터 5년간 통합 이전의 관할구역(중전의 청주시, 청원군)별로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하였을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하였을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을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하였을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하였을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하였을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선박을 취득하였을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하였을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

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19호 청주시 시세조례, 청원군 군세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

의안 번호	10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세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시세 감면조례」와 「청원군 군세감면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제정함.
-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종교단체 의료기관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 사항(안 제4조)
-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사항(안 제5조)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사항(안 제7조)
- 감면 제외대상 및 감면 신청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주시 시세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이름으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

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면제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용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용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



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예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내수 농공단지

## 2. 현도 농공단지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청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시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  
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 방  
법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준용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  
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  
과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18호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청원군  
군세 감면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  
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세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청원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금고지정 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7조)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금고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금고약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금고운용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제34조,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 「지방공기업법」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3월 26일 ~ 2014년 4월 15일

- 안 제7조 별표의 시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대손충당금적립률 ⇒ 원화유동성비율, 보통예금 금리 ⇒ 공금예금 적용금리로 의견 반영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 례 안 : 붙임

##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청주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5.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6. "기금"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7.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수) 금고는 단일금고(1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고지정 방법)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제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시 관할 구역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3.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제6조(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라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기간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까지로 한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3. 시민 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시장이 제5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청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8조(협력사업) ① 시와 금고가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금고와 관련되어 제공받는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과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고의 자발적 출연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며, 전문가는 청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위원 전체의 과반수로 한다.

1. 청주시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시 소속 관계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 될 때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

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 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주사 가 된다.

⑦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 상황 등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

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청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내주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약정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정성 평가보고 등을 상반기·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청주시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자금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정성에 급격한 변동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상반기·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92호 청주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금고지정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 청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총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계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small>*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small>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자기자본비율(7점) <small>*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7점)로 평가</small> - 고정이하여신비율(7점) - 자기자본이익율(6점) - 원화유동성비율(1점) <small>*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기준을 따름.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small>	21	
	계	18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계	20	
	가. 관할구역안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small>*금고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small>	5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3	
	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small>*"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small>	5 4	

##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 관련)

###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 가, 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를 적용하여야 한다.

###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점)**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국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에서 작성한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에서 작성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원화유동성비율 (유동성, 1점)

##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공금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

###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

###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적용기준을 비교·평가

##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20점)

### 가. 관할구역 안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할구역 안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
- 금고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7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8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과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금융기관 중앙 종합전산센터의 전산시스템 정보 보호관리체계 인증서 및 보안평가 결과서를 제출받아 비교·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

## 5. 지역사회 기여 및 청주시와 협력사업 (9점)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

### 나. 청주시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으로만 비교·평가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세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청원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청주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 연도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전전 연도 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에 사용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 연도 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전전 연도 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주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 중복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76호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원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



방세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으로 본다.



#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10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세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와 「청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함.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제4조(기준)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였을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붙임으로써 징수한다.

- 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1천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  
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면제하며, 유선 및 도선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시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통장·반장·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 및 통·리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국가유공자증서 및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정한다.
6. 재해의 발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감면대상자의 제증명 등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 당사자 명의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3과 같이 공용, 면제 등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 시장은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기준일로부터 6개월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별표 1 바목) 발급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0호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청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1. 증명		
가.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증명	1통	350
나.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농가, 비농가	1통	250
2) 가축자가사육사실증명	1통	500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50
2) 수출실적	1통	350
3) 분배농지상환완료	1통	350
4)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5) 실수요자증명	1통	350
6)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가) 가소요량	1통	3,500
나) 확정소요량	1통	1,200
7) 시설보유증명	1통	350
8) (식품환경)영업허가(휴업, 폐업)사실증명	1통	350
9) 의료기관, 약국(휴업, 폐업)사실증명	1통	600
라.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 농지	1통	350
2) 공부의 등본·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1통	350
나) 토지도면	1통	350
다) 건물도면	1통	350



구 분	기 준	요 액
마.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측량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도면의 등본 교부 3) 환지(예정지)증명 4) 환지예정지분할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6)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7) 표준주택설계도면 8) 체비지 분할 신청 9) 토지대금완납증명 10)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증명 1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통 1통 1필지 1필지 1필지	6,000 350 500 350 350 350 1,600 350 350 400 1,000 (갈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바.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 증명	1건	800
사.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3) 원천징수용 제증명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보관 확인서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건 1건 1건 1건 1건	350 350 350 350 350
아.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2) 공(시)영 주택분양금 납부 증명 3)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건 1건 1주택당	400 400 800

구 분	기 준	요 액
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확인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800
차. 교육에 관한 증명 1)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당	200
2)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당	200
카. 그 밖의 증명 1) 그 밖에 사실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1건당	400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가. 일반행정 관계		
1) 인허가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00
2) 행정서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
3)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가) 신 규	1건	5,000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4) 유통관련업	1건	700
5) 그 밖에 각종 인가·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600
6)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다만, 초과 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가) 법인	1건	30,000
나) 개인	1건	20,000
8)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800
9) 부동산 중개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
10) 부동산 중개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11)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나. 문화관계		
1) 공연장업 등록신청	1건	10,000
2)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	1건	5,000
3)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
4)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신청	1건	5,000
5)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
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
9) 5) 부터 8)까지의 변경신청	1건	5,000

구 분	기 준	요 액
10)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10,000
1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건	5,000
1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1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1건	5,000
14) 노래연습장 등록신청	1건	20,000
1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16) 노래연습장·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등록(신고)	1건	5,000
17) 유기장업 허가		
가) 종합유원시설업		
· 신규	1건	50,000
· 변경	1건	25,000
나) 그 밖의 유기장업		
· 신규	1건	25,000
· 변경	1건	13,000
18) 그 밖의 유기장업 신고		
가) 신규	1건	25,000
나) 변경	1건	13,000
19) 체육시설업의 신고		
가) 신규	1건	30,000
나) 변경	1건	10,000
20)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가)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신고	1건	30,000
나)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1건	20,000
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	1건	5,000
21) 영화업 신고	1건	20,000
22)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23)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
24)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5,000
2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
2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0,000
다. 보건 사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급)	1건	40,000
2)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건	20,000
3)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1건	10,000
4) 치과기공소인정신청		
가) 신규	1건	15,000
나) 양도양수 인정신고	1건	10,000
5)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		
가) 신규	1건	15,000
나) 양도양수 등록신고	1건	10,000
6) 위생처리업신고		
가) 신규	1건	3,500
나) 변경	1건	2,300

구 분	기 준	요 액
7) 세척제제조업신고		
가) 신규	1건	15,000
나) 변경	1건	8,000
8) 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고		
가) 신규	1건	3,500
나) 변경	1건	2,300
9) 장난감제조업신고		
10) 영업양수신고		
4)~9)의 영업양수 신고수수료는 신규영업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에 준한다.		
라. 농수산 관계		
1)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	600
2) 축사표준설계도 발급신청	1건	250
3) 내수면 어업면허	1건	10,000
4) 내수면 어업면허기간 연장허가	1건	5,000
5) 내수면 어업허가	1건	5,000
6)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7)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8) 어업권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9)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마. 상공,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입지 지정승인	1건	1,200
2) 농수산물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	1건	1,200
3) 석유판매업(주유소, 부생연료판매소) 등록신청	1건	20,000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7)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
8)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1건	10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바. 건설운수 관계		
1)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1건	1,200
2)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승인 신청	1건	600
3) 공(시)영주택(증축, 개축)승인 신청	1건	600
4)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600
5) 하천허가 변경신고	1건	600
5-1) 재식 및 벌채, 농업용 하천 점용허가	1건	1,200
6) 도선장설치허가 신청	1건	1,200
7)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	척 당	1,1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 당	1,5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1인 이하의 배	척 당	2,0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 당	2,500
8) 체비지명의변경 신청	1건	600
9) 토지사용(체비지) 승락서	1건	600
10) 체비지 확인서	1건	600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1) 체비지 소유권 확인원	1건	600
12)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600

[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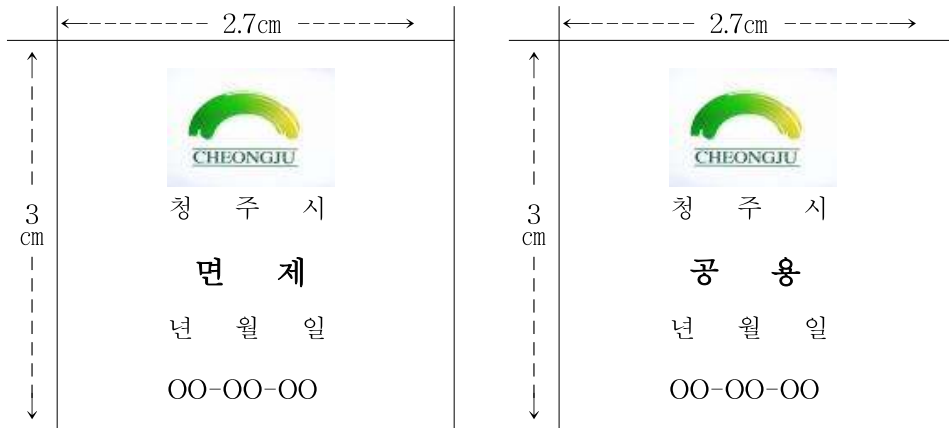
공개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등	○ 열람 -1건(10매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300원 · B4이하:250원 ○ 복제 -1건(10매기준)1회:250원 · 10매초과시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시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본) - · A3이상: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1회: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 오디오자 료)	○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청취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 비디오자 료)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열람·시청	원본의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10컷기준) 1회:500원 ·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1매기준) -A3이상 300원 · 1매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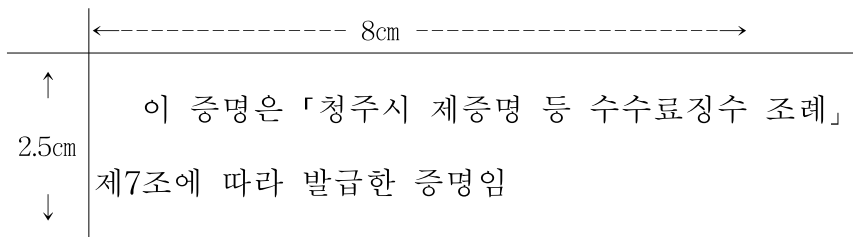
[별표 3]

## 수수료 면제 · 공용 날인(제7조 관련)

### 1. 인증기계기



### 2. 수수료감면 사실 확인 고무인





#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세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수입증지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수입 수수료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무인발급기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수입증지 판매인 및 판매인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판매인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시 수입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한 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증지를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계기로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청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무인발급기 등의 사용) ①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를 전자 이미지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청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자연보호운동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8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7조에 따라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시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

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청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 시가 충청북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증지 판매인) ① 수입증지는 제10조에 따라 시장에게 판매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 보다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신고수리할 수 있다.

③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을 때에는 직장금고는 소속 직원 중에서 판매 적임자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0조(판매인 신고 등) ①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지 판매인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장금고가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공제회장 등 직원복지회의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인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인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인 의무)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

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2조(증지취급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는 제2항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인 명의 및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5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명의(위치)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폐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시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를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폐지신고의 수리) ① 시장은 판매인으로부터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지정 판매인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6조(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그 밖의 관계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이 사망하였을 때
2. 판매인이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할 때
3.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되었을 때

제17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증지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消印)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증지의 소인) 증지를 소인(消印)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인(消印)을 사용하여 증지를 붙인 지면과 증지표면에 걸쳐 명백히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제20조(증지의 무효) 소인(消印)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21조(증지의 환매) 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 받거나 다른 자치단체의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폐지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증지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제22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증지교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교환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23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24조(계기,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고장이나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印影)된 증지는 결손 소인(消印)을 하며, 소인(消印)된 면을 붙여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① 시금고에서는 매일 증지수불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 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98호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청원군 수입증지 조례는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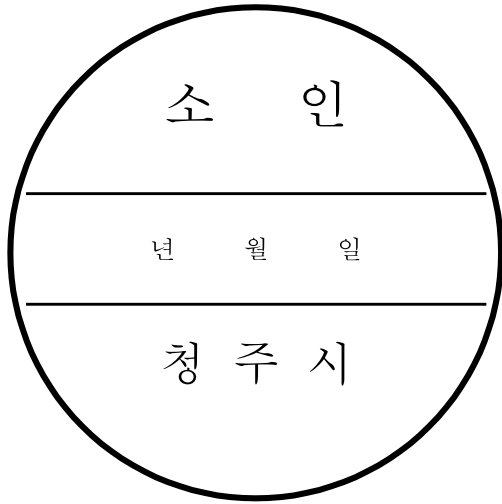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소인인규격**(제19조관련)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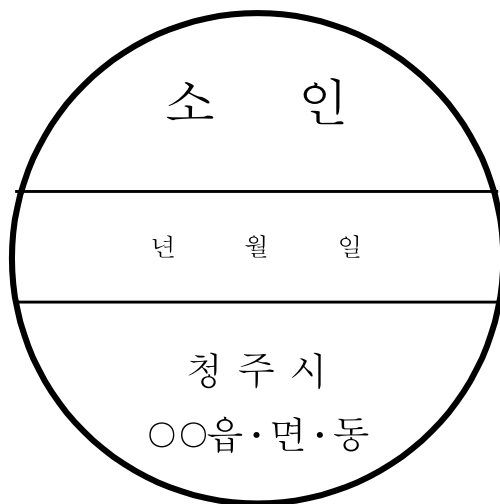


(구)



2.5cm)

(읍·면·동)



##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이 청주시의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아래와 같이 판매인으로  
신고합니다.

1. 수입증지판매소예정위치 :

(    에서                    m)

2. 직    업 :

3. 붙임서류 : 위치도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무인)

청 주 시 장            귀하

제 호

##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필증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1. 수입증지판매소 예정위치

(                    에서                    m)

2. 직 업 :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 수입증지 매수(출납, 보관교환, 환매) 청구서

구분 권종	재 고 량		청구(교환, 환매)량		공 제 액 (청구액의 5/100)	현금납부 (지불액)	비 고 (사유)
	매수	금액	매수	금 액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교환, 환매) 청구합니다.

. . . . .  
청 구 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

###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No.		
수입증지지급(교환,환매)원부		
판매인	주소	
	성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7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계	매	원
할인금액	매	원
차인금액	매	원
발 행 년 월 일		

No.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7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계	매	원
할인금액	매	원
차인금액	매	원
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증 지참인에게 지급(교환환매)함.  . . .		
청주시 수입금 출납원 (인)  귀하		

[별지 제5호서식]

<b>수입증지 판매 인명의(위치)변경 신고서</b>					
지정번호    제            호			지 정 연월일	년            월            일	
기 지 정 자	판매소 위치		명 의 위 치 변 경  요 구 서	판매소 위 치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명칭 (위치) 변경 사유					
 <p>위 사유에 따라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코자 신청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무인)</p> <p>청주시장 귀하</p> 					

[별지 제6호서식]

### 수입증지 판매 폐지 신고서

지정번호		제	호	지정연월일	년	월
				일		
지 정 인	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사유발생 년월일					

위와 같이 사유가 발생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계기 고유번호 :

연 월 일	금일까지 금액(A)	전일까지 금액(B)	금일결손(C)		금일발행(A-B-C)		결 재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담당자	담 당	과장, 읍장, 면장, 동장



[별지 제8호서식]

###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

무인민원발급기번호 :

연 월 일	금일까지 금액(A)	전일까지 금액(B)	금일결손(C)		금일발행(A-B-C)		결 재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담당자	담 당	과장, 읍장, 면장, 동장

[별지 제9호서식]

###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연 월 일	금일까지 금액(A)	전일까지 금액(B)	금일결손(C)		금일발행(A-B-C)		결            재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담당자	담    당	과장, 읍장, 면장, 동장

#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10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세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와 「청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
-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안 제3조)
-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환수해야할 사항과 환수시 이자율 규정(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주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에 따른 청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결손처분 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 가. 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 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 다. 법 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 라.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
    - 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4.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실적이 우수한 자
  5. 법 제6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있으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
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

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체납액 징수 1건당 30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와 상당구·서원구·흥덕구·청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각각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는 세입업무 담당국장, 구는 상당구청장·서원구청장·흥덕구청장·청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여성을 우선하여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 시장과 구청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이나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7조(지급) ① 시장이나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시장이나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 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탈루·은닉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8호 청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청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세입징수포상금 심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수 신 : 청주시장(○○구청장)

발 신 :

(단위 : 원)

구 분	건수	금 액			포상금	비고
		본세	가산금	계		
탈루세액, 은닉재산 발굴	탈루세액, 부당환급액					
	은닉재산 (현금,예금 등)					
숨은세원 발굴	미등기					
	납세의무성립 1년경과					
	그 밖의 사항					
지난 연도 체 납 액 징 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특별공적						
합 계						

- [붙임] 1. 탈루세액· 부당환급(감면) 제공, 은닉재산 신고에 증명자료 1부  
2. 숨은 세원 발굴에 따른 징수내역 1부  
3. 체납액 징수내역 1부  
4. 특별공적 관련 증명자료 1부

[별지 제2호서식]

탈루·은닉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납기	부과자 (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징수 확인 (담당)	포상금	지급일
	직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 “구분”란에는 탈루·은닉세원, 미등기, 1년 경과 등을 표시

[별지 제3호서식]

##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징 수 확 인 (담당)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성 명	구분	년도 납기	고지서 번 호	세 목	징수액	주 소	성 명				

※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 연수(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를 표시



#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세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2.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제115조 및 「청주시 시세 조례」 제16조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 중 해당 연도 1월중에 개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연세액(年稅額)을 납부한 자
2.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인터넷뱅킹·폰뱅킹·자동이체 납부 지로 납부자 등 포함)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지원 대상 중에서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연납자 수, 재산세 납기 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장면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의 지급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제6조(명부관리) 시장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회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위원의 정수 (안 제2조)
  - 청주시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
-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안 제3조)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지방공기업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청주시결산검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며 시의회에서 선임하며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

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며 시의회 위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해서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 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은 이를 다시 검사할 수 있다.

제8조(검사 협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청주시금고의 책

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위촉 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될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을 포함한다.

제12조(여비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 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이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69호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액 수
일 비	일 100,000원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상 부시장 상당액



[별지 서식]

위      촉      장

○ ○ ○

청주시의 결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장(인)



#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의안 번호	10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회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제정함.
- 재정보증 대상인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재정보증 한도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

액은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분임경리관·지출원·출납원·그 밖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위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68호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회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 제외사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청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제 비용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청주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6호까지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청의 경리관(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 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나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나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3.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청의 분임경리관(회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할 때에 심사대상 안전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

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지명하며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반영)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의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공사로 하되, 감독 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청원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회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적용대상 사업 (안 제3조)
  - 2억원 이상의 공사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 5천만원 이상의 용역( 학술용역 제외)
-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할 때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가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도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 “건설기계대여사업자”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13.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사업자,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 등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임금 지불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임금지불서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바로 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근로자 상담)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70호 청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청원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관급 공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1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회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물품관리조례」와 「청원군 물품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제정함.
- 물품 출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8조)
- 물품 보관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3조)
- 물품 관련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제26조)
- 물품의 검사 및 인계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제3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제94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속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구청장, 읍장·면장·동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영 제57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

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나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청주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장 출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이나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나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구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그 가격이 장부에 처음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될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

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 총량
2. 2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⑥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

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석 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 제3장 보관

제19조(보관으로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품과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되었을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시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 책임) 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제4장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 관계 장부와 전표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마다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舊)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전산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 포함)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그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집행할 경우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계의 철저)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기구개편으로 수반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64호 청주시 물품관리조례, 청원군 물품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제5조 관련)

### ○ 물품의 종류

- (1) 비 품: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 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2) 소모품: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성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 품종구분 기준

####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 ③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어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 물품상태 분류기준

- (1) 신 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2) 중 품: 사용된 물품으로써 수리를 필요로하지 아니하는 물품
- (3)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4) 폐 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제6조 관련)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 수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 용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 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 입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 생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양 도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 여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공유재산편입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매 각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 체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 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 실	잃어버린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 납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관 급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 연 감 모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 리 전 환	물품 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 류 전 환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사 용 전 환	동일물품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공 차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 상 양 여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 증	물품을 기증받은 경우
잡 건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이동의 경우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1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회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청원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정함.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7조)
- 행정재산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3조)
- 일반재산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제42조)
- 청사·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3조 ~ 제6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청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본청의 관·실장·국장·과장에게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재산소재지 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에게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에 따라 청주시공유재산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  
서 대행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2  
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  
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

## 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현재액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보고서식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



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를 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과약)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을 허가할 때에는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 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일반재산

###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

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불일치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에 한정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 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의 인구 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할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물폐율을 거꾸로 계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 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5. 지상 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곱하기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나누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 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높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생산·연구시설에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직전 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

간은 맨 처음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처음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미루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장부를 갖춰 놓아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

### 제2절 매각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 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할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할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때에 재산명도 날짜를 연장할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써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조성원가의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안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써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 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사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한 번에 매각할 수 있다.
4.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

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으로써 시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6.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의 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  
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 제3절 신탁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  
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  
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1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  
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 제6장 청사관리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청사를 신축할 때에 위  
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별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 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가·감소 등 장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나타낸 외형설계를 하며, 증축이 가능 하도록 설계
3.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가능 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4. 냉난방시설을 빠짐없이 완전히 갖추어 설계
5.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6.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를 신축할 때에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을 신축할 때 타당성 조사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청사의 종합화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장 관사관리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1급, 2급 이외의 관사 등

제50조(관사의 면적 제한) 1급 관사의 면적은 단독주택의 경우 165제곱미터,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3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

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관리·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 두어야 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시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체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잠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준비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

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精算)하여야 하며, 다음에 사용할 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 사용 중에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장 보칙

제61조(변상금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며,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가. 공인을 도용(盜用)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정하여 재산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소관에 속한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다.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58호 종전의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청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 사용,

수익허가, 대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 사용·수익허가, 대부된 재산으로 보며, 그 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표]

##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5조 관련)

1. 시의 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sup>2</sup>)

기관별 구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관·과장실	담 당	직 원
시 본 청	132	56.16	38.88	17.92	7.65	7.2
구 본 청	99	38.88	-	17.92	7.65	7.2
읍청사 동청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sup>2</sup>)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의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명	200명이상시 면적 =0.8m <sup>2</sup> ×사용인원
	4~2.4m <sup>2</sup> /인	26~1.5m <sup>2</sup> /인	2~1.2m <sup>2</sup> /인	1.6~1m <sup>2</sup> /인	1.2~0.9m <sup>2</sup> /인	
상황실	시 본 청	2.64 × (과장급 이상 수 + 구청장 수)				
	구 청	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장·면장·동장 수)				
셔쓰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m <sup>2</sup> / 인	0.40m <sup>2</sup> / 인	0.33m <sup>2</sup> / 인		
	엘리베이터	(12.87~19.6m <sup>2</sup> ) × 대수				
식 당	1.63m <sup>2</sup>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m <sup>2</sup>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m <sup>2</sup> ×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m <sup>2</sup> ~0.2m <sup>2</sup> ×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 <sup>2</sup> / 인	11.52m <sup>2</sup> / 인	8.64m <sup>2</sup> / 인			
자 료 실	(0.3~0.4m <sup>2</sup> ) × 공무원수					
창 고	0.72m <sup>2</sup> /인 ~ 0.85m <sup>2</sup> /인					
전 산 실	9.79m <sup>2</sup>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m <sup>2</sup>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sup>2</sup>)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 무 공 간	500m <sup>2</sup>		800m <sup>2</sup>		1,000m <sup>2</sup>	
	층 장 비 실	6.6m <sup>2</sup>		8.4m <sup>2</sup>		10.2m <sup>2</sup>	
주장비실	사 무 공 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 장 비 실	14	37	74	111	149	
	사 무 공 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 장 비 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2. 의회 청사

(단위 : m<sup>2</sup>)

구분		실명	면적기준	비고	
의원실	a	의장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 의 장 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 원 장 실	집행기관 실장·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 : 3개	
회의실	b	본 회의 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m <sup>2</sup> 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m <sup>2</sup>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 원 회 실	의원 수 × 8.2m <sup>2</sup>	위원회 수 : 3개	
부속공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m <sup>2</sup>		
		사무실	직원 수 × 7.2m <sup>2</sup>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m <sup>2</sup>		
	대기실	의원	의원 수 × 2.5m <sup>2</sup>		
		기자	50m <sup>2</sup>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m <sup>2</sup>		
	d	휴게실	의원	의원 수 × 2m <sup>2</sup>	
			직원	직원 수 × 2m <sup>2</sup>	
			방청객	방청객 수* × 2m <sup>2</sup>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m <sup>2</sup>			
화 장 실	시 : 45~47m <sup>2</sup> 구 : 44~46m <sup>2</sup>				
기 타	예비실(50m <sup>2</sup> )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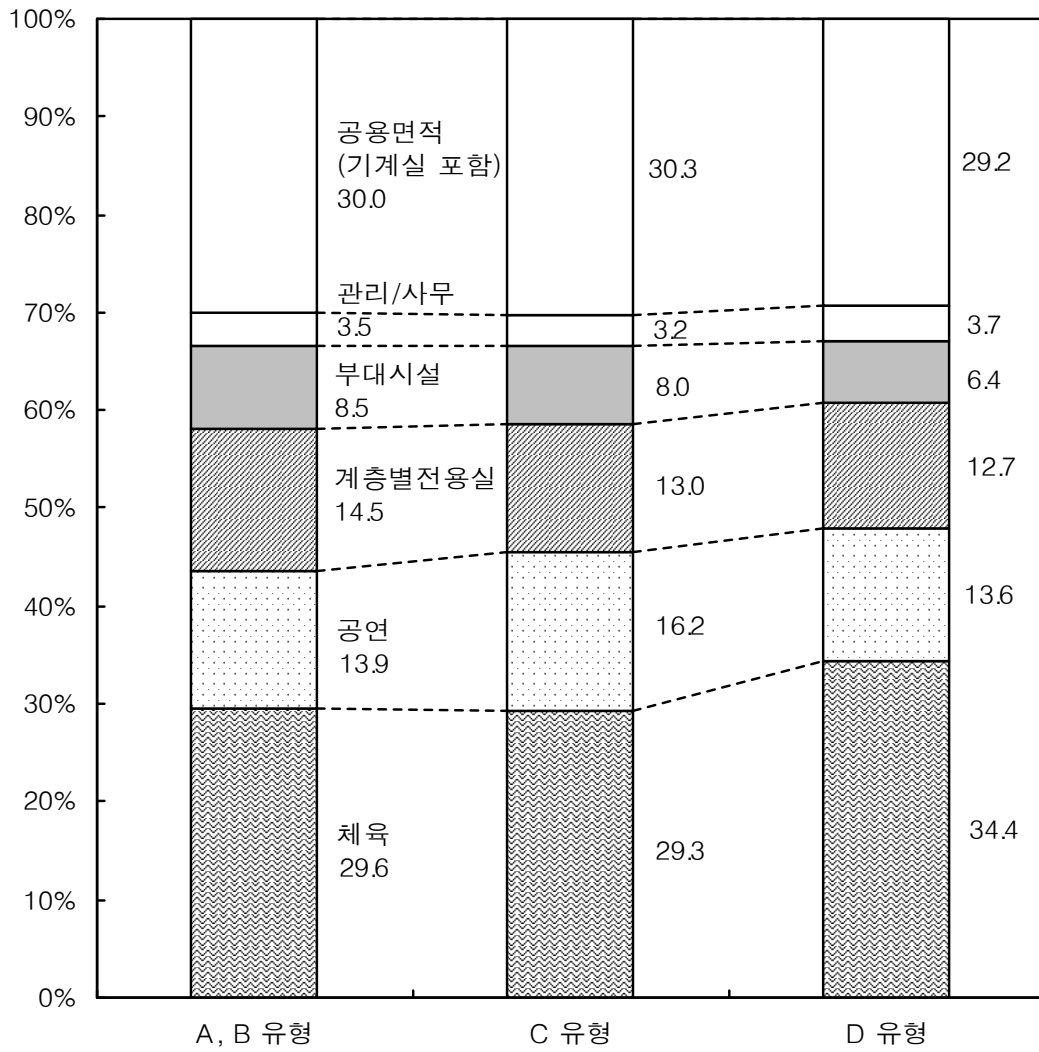


3.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구	수 용 시 설
A	30 - 5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li> <li>-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li> <li>-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li> <li>-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ul>
B	15 - 3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li> <li>-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li> <li>-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li> <li>-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li> <li>-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ul>
C	10 - 15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li>-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li> <li>-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li> </ul>
D	10만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li> <li>-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li> </ul>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sup>2</sup>)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 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 (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 면 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li> <li>•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li> </ul>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 설 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 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 습 실	55	55	50	30
	분 장 실 (남, 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 실 (1)	14	12	10	15
	악 실 (2)	14	12	10	-
	소 계 ①	905	763	661	338
부 속 시 설	도 구 비 치 창 고	216	180	120	40
	도 구 반 입 실	33	-	-	-
	영 사 실	48	40	30	20
	음 향 실	36	30	30	20
	기 기 실 (무 대)	36	30	25	-
	조 명 실	24	20	20	20
	측 벽 투 광 실	12	12	12	-
	방 송 중 계 실	12	10	10	-
	소 계 ②	417	322	247	100
합 계	계 ① + ②	1,322	1,085	908	438
	공 용 부 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 동 실 (1)	68	60	30	30
	아 동 실 (2)	68	60	30	-
	부 속 창 고	6	4	4	4
	소 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 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 인 실 (남)	60	50	50	30
	노 인 실 (여)	60	50	50	30
	휴 계 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 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 녀 실 (1)	120	108	50	50
	부 녀 실 (2)	120	108	50	50
	부 녀 실 (3)	35	35	35	-
	소 계 ⑧	275	251	135	100
공 용 시 설	강 의 실	75	60	60	60
	회 의 실 (1)	90	70	70	70
	회 의 실 (2)	90	70	70	35
	회 의 실 (3)	70	70	-	-
	회 의 실 (4)	40	35	-	-
	다 목 적 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 자 재 창 고	18	14	12	-
	전 시 코 너	36	30	-	-
	소 계 ⑨	611	507	340	165
합 계	계 ⑤ ~ ⑨	1,322	1,127	729	409
	공 용 부 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m<sup>2</sup>)

구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설	전시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휴게시설	식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 ~ 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m<sup>2</sup>)

구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③ + 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계	3,498	2,890	2,048	1,390

5) 그 밖의 시설

(단위 : m<sup>2</sup>)

구분	시 설 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 리 사 무 실	87	72	51	22
	관 장 실	64	64	64	30
	응 접 및 탕 비 실	26	26	26	26
	소 회 의 실	32	27	20	10
	숙 직 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 계 ㉓	343	309	231	148
합 계	계 ㉓	343	309	231	148
	공 용 부 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m<sup>2</sup>)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구(區) 보건소	비 고	
진료활동	a	접수 / 수납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48.00	
		약국조제실	13.86	
		약국창고	13.86	
		일반진찰실	53.46	
		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보건사업	b	장애자용 화장실	4.86	
		결핵관리실	17.82	
		상담실	35.64	
진료지원	c	방사선실	81.66	
진료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사무부문	d	소장실	33	
		전실(탕비실)	9.90	
		소회의실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m <sup>2</sup>	
		다목적실	144	
		창고	59.4	
		여자휴게실	40	
		당직실	13.86	
화장실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66	
연계공간		로비 · 복도 · 계단	(a+b+c+d+e) × 30~40%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m<sup>2</sup>)

구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업무공간	a	기 관 장 실	33	
		사 무 실	직원 수 × 7.2	
소요공간	b	조 직 배 양 실	82.5 내외	
		중 합 검 정 실	72.6 내외	
		가 축 질 병 진 단 실	36.3 내외	
		꽃 가 루 은 행	99 내외	
		여 성 기 능 교 육 실	66 내외	
		화 상 정 보 시 스템	66 내외	
		농 기계 수 리 지 원 센 터	330내외	
예 비 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공간	c	휴 게 실	직원 수 × 2	
		화 장 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비 · 복도 · 계단	(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시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회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출자방법과 한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청주시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 명칭과 사업)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② 사업은 산업단지의 개발·분양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시에 두어야 한다.

제4조(출자방법과 한도) ① 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②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25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회사가 증자할 경우 제2항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이나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9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당 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여서 청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 및 청산) ① 회사는 제2조제2항의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1년 이내에 해산과 청산을 종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6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1년 이내에 해산과 청산을 종결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출자에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16호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제10조에 따라 회사의 해산과 청산이 종결된 때 폐지한다.

---

# 복 지 문 화 국

---



#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1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와 「청원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함.
- 청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조의5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청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청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장, 청주시의회의원, 사회복지업무담당 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주요정책의 심의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사회복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안건의 사전검토

4.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등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4조제5항까지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각 협의체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발언내용
6. 그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자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관계자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39호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청원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이 정한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



무소를 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충청북도 및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시는 희생·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시가 개최하는 중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 예우
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지역 인물록 등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7.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

개

8.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함양 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 업적선양

제6조(예산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제7조(복지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2. 국가보훈유공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3.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무료 배부
4.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호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8호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1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와 「청원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
-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독립유공자 지원대상자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예산조치 : 42,000천원 (통합 전 32,400천원, 통합 후 74,400천원)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

외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에 수령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될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될 경우
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등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청주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이 판단된 경우 등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5호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청원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보훈등록번호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그밖의 변동사항				
<p>「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청주시장 귀하</p>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b>담당공무원 확인사항</b>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독립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	
<p>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보훈명예수당을 수혜가 높은 금액으로 양 시·군 자치법규 통합
  - ※ 종전 청주시 월 3만원, 청원군 월 10만원 ⇒ 월 10만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연간 소요비용 추계액 : 42,000,000원  
(산출기초 : 70,000원 × 50명 × 12월 = 42,000,000원)

청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장

#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재향군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재향군인 예우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 제1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와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떨치고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청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의 명성을 떨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

2.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 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99호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와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1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와 「청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참전유공자 정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참전유공자 지원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예산조치 : 1,353,600천원 (통합 전 3,601,800천원, 통합 후 4,955,400)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청주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서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2014년 1월 1일 현재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이하 “유공자 등”이라 한다)으로 지급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 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7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 사업)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유족에게 유족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8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관계자 및 유족 등(법에 따른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 등에 대하여 매년 1월 중

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인이나 관련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명예수당 등을 환수한다. 이때 사망으로 본인이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자에게서 환수할 수 있다.

1. 청주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수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9호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청원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b>참전 · 유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b>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								
전 입 일										
예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명							
<p>「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 · 유족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청 주 시 장 귀하</p>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b>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b>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 공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 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p>「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청 주 시 장 귀하</p>														
<p>※ 구비서류</p> <p>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 <u>다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u></p> <p>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p> <p>3. 신청인 통장사본 1부.</p>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수혜가 높은 금액으로 양 시·군 자치법규 통합
  - ※ 종전 청주시 월 5만원, 청원군 월 8만원 ⇒ 월 8만원
- 관련조문 :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제1호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4년 7월 1일부터 명예수당 월 8만원 통합 지급

### 나. 추계 결과

- 연간 소요비용 추계액 : 1,353,600천원
- 소요비용 산출내역
  - 대상인원 : 청주시 3,760명, 청원군 1,330명
  - 산출기초 : 3,760명 × 30,000원 × 12월 = 1,353,600,000원

###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 중 지방세로 재원조달

청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676,800	1,353,600	1,353,600	1,353,600	1,353,600	6,091,200
재원 조달						
의 존 재 원	소 계					
	보조금(국고)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676,800	1,353,600	1,353,600	1,353,600	6,091,200
	지 방 세	676,800	1,353,600	1,353,600	1,353,600	6,091,200
	세 외 수 입	0	0	0	0	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민자 등)						

#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11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와 「청원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
- 의료급여사업 목적 및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의료급여기금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의료급여기금 대불금 상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소관과장, 구의 업무소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소관담당주사, 구의 업무소관담당주사로 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리하거나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책임에 관해서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 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시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금액과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하 “대불금”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참고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대불금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장·면장·동장,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1호 청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원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의  
료급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납입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 호 . . . 년도					제 호 . . . 년도					제 호 . . . 년도					제 호 . . . 년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의료 보호 기금		소관			의료 보호 기금		소관			의료 보호 기금		소관			의료 보호 기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불 액	상환 액	미납 액		상환금 내 용	대불 액	상환 액	미납 액		상환금 내 용	대불 액	상환 액	미납 액		상환금 내 용	대불 액	상환 액	미납 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주시장 인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주시장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청주시장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장 분 입 수 입 원				

[별지 제2호서식]

(전면)

우 편 엽 서	
우 표	□ □ □ - □ □ □
귀하	

(후면)

의료보호기금상환 독 촉 장		
제 호	년도	분기분
대불상환금	금	원
<p>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까지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 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p>		
20 년 월 일		
시장 (구청장)		(인)



#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2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와 「청원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저소득층 정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저소득층으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조손세대
5. 소년소녀가장세대

제4조(지원 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고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면 시장은 선정기준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조사 실시) ① 시장은 보험공단에서 신청한 적격여부에 대한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76호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청원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12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와 「청원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
-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3월 26일 ~ 2014년 4월 15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전문대학 포함) 입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영세농민·어민”이란 영세농민의 경우 경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경지 소유 농가를 말하며, 영세어민의 경우 소형 양어장(3,3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함) 경영자나 어선을 이용한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그 밖의 “저소득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120퍼센트 범위까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2. 수급자자녀 중 고등학교(3학년) 학업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학생의 대학(전문대학 포함) 입학생

3. 영세 농민·어민 자녀

4. 그 밖의 저소득층 자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장학금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6조(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장·면장·동장은 관할 구청장을 경유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장·면장·동장이 관할 구청장을 경유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청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7조(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①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 또는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와 그 밖의 수입금 등에 의한다.

②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며,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총괄관리 및 집행하며, 기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장부를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국장, 기금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분야, 교육·장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학생의 선발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1호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청원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기금으로 본다.



#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12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청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
- 자활기금 용어 정의 및 기금 조성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자활기금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자활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제1호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 인정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를 말한다.
5. "부정수급자"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 조성) ①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 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8.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 창업자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대여 받은 생  
업자금 채무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8.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5조(기금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청주시금고 및 다른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기금 대여 및 상환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승인받은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 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참고하여 시장이 결정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④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는 대여자금 상환완료 이전에 같은 용도로 대여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대여자금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

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⑥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단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 때

3.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대여 및 상환 등에 대해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른다.

제10조(사업자금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의 자금과 제9조제5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주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 및 결손 처분)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또는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9호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여자금 이자는 2014. 7. 1부터 1퍼센트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자활기금지원신청서

1. 신청금액 : 금                      원(₩                      )

2. 신청내용

가. 사유(목적) :

나.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지 원 금	자부담	자부담방법	비 고

다. 세부사업계획 : 따로 붙임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코자 자활기금의 지원을 연대 보증하여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주      소 :                      (인)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성      명 :

주      소 :                      (인)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성      명 :

주      소 :                      (인)

주민등록번호 :

청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사 업 계 획 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명 :
5. 신 청 액 : 금                      원(₩                      )
6. 사 업 계 획(구체적으로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청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재 정 보 증 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이 청주시자활기금 지원을 받은 후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지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주 소 : (인)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성 명 :  
주 소 : (인)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성 명 :  
주 소 : (인)  
주민등록번호 :

청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자활기금 지원추천서

1. 자활기업체명 :
2. 사업장 주소 :
3. 구성인원 :           명(수급자    명)
4. 사업명 :
  - 소요사업비 :
  - 착수시기 :
  - 자금소요시기 :
5. 지원신청금액 : 금           원(₩            )
6. 사업계획(구체적으로 작성)
7. 사업수지 세부 예상분석 : 붙임
8. 사업의 전망
9. 사업추진능력
10. 자활기업체에 대한 주민 여론
11. ○○자활기업체가 자활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지원 신청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지원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   ○○○○○ (직인)

청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용도)변경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2. 사업명 및 지원금액(당초):

- 사 업 명 :
- 지 원 금 액 : 금                    원(₩                    )

3. 사업(용도)변경 신청내용(구체적으로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청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수 납 의 회 서

영 수 필 통 지 서

납입고지서

영수증

회계 년도	년도 자활기금 특별회계			회계 년도	년도 자활기금 특별회계			회계 년도	년도 자활기금 특별회계			회계 년도	년도 자활기금 특별회계					
납 부 의 무 자	성 명			납 부 의 무 자	성 명			납 부 의 무 자	성 명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주민번호				주민번호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지 원 금	과 목			지 원 금	과 목			지 원 금	과 목			지 원 금	과 목					
	대출년도	년			대출년도	년			대출년도	년			대출년도	년				
년분 상환 내역	계	원 금	이 자	년분 상환 내역	합	계	원 금	이 자	년분 상환 내역	합	계	원 금	이 자	년분 상환 내역	합	계	원 금	이 자
상환 잔액	회 원			상환 잔액	회 원			상환 잔액	회 원			상환 잔액	회 원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 인				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청 주 시 장 수 납 기 관				청 주 시 장 수 납 기 관				청 주 시 장 수 납 기 관				청 주 시 장 수 납 기 관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독 촉 장**

상환의무자 성명 : 주소 :  
연대보증인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지원년월일 :

미상환액 :

연 체 이 자 : 원( . . .현재)

합 계 : 원

귀하가 지원받은(연대보증한) 청주시 자활기금지원금이 위와 같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상기 연체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납부되지 않을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직인)

### 자활기금 지원사업 관리카드

지 원 번 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자 택 :										
	휴대폰 :										
지원년월일				지 원 금 액	일 금 원(₩ )						
상 환 기 간	거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상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지 원 이 자	%	연체이자	%	용 도							
연 대 보 증 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화번호		특이사항			
가 족 사 항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 업	특 이 사 항						
지 원 금 회 수 내 역											
년 월 일	상 환 내 역			잔 액			연 체			확 인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완납 확인	완납일	년 월 일		상환내역		계	원 금	이 자	연체이자		
	담당공무원: (인)		계			원 금	이 자				



[별지 제9호서식]

# 자활기금지원금 관리대장

년도 지원분

(단위: 원)

지원 번호	지원대상자		연대보증인				지원액			상환내용				완납 년월일	완납 확인필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지원 연월일	금액	상환기 간	계	원금	이자	연체 이자			



#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2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와 「청원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함.
- 복지관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시설의 위탁운영 및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7조)
- 복지관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주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청주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기관”이란 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3. “재 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끝나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복지관 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복지관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수행한다.

1.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

가. 가족기능 강화: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기능 보완사업, 가정문

제 해결·치료사업, 부양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나. 지역사회보호사업: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다. 교육문화사업: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성인기능 교실, 노인여가·문화, 문화 복지사업

라. 자활지원 등: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그 밖의 특화사업

### 3. 지역 조직화 기능

가.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육구조사, 실습지도

나. 주민조직화: 주민복지 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교육

다. 자원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제5조(시설 이용) 복지관 시설은 시민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민을 우선하며, 청주시민 외의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내용

제7조(비용 수납) 복지관 운영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시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허가취소)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면제
2. 제1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3.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에 공공복지를 위한 자선행사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12조(사용료 반환) 사용료는 선납(先納)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시의 사정으로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전액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전액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100분의 50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운영하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

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여 수탁자의 사업실적,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능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을 접수할 때에 법인에서는 일정액의 예탁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탁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직원)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시설의 위탁·수탁 협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기능보강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 및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위탁 계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으로 기간만료 60일 전에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 ⑤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에 든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⑥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22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전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 ⑦ 수탁자가 시설을 증축·개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⑧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해 때문에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원본을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 금액은 위탁·수탁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복지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할 때
2. 제20조에 따른 검사 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다.

③ 위탁을 해지한 경우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 비품 전부는 시에 귀속된다.

제23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하거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6호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청원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관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별표 1]

**사회복지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계	8개소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52-1(용암동)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 290(수곡동)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청주시 상당구 충청대로 107번길 16-1(율량동)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70번길 16(복대동)
청주사회복지관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13-1(영운동)
청주종합사회복지관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392(신봉동)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청주시 청원구 중심상업2로 32(오창읍)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1로 180(오송읍)

[별표 2]

**사회복지관 시설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기 본	추 가	
대 강 당	평일 3시간 이 내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시간 3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이용 시 시간당 20%가산</li> </ul>	※ 냉난방시설 이용 시 : 이용료의 20%가산
	토·일·공휴일 3시간 이내	100,000원		
식 당	1회	100,000원		

[별지 서식]

### ( 종합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법인명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구성 원수	계	임원	직원	회원 등
주요사업내용					
자산총액 (천원)	기 본 (출연재산)	수익용재산	법인의 연 간 수 익 금 액	연간 운영비 부담 가능액	
복지관연간운영 계획(천원)	계	자 부 담	운영수입	보조지원	
수탁신청사유 (취지)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 청 주 시 장 귀하

- 붙임** 1. 법인 또는 단체현황 1부  
 2. 정관, 설립허가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단체인 경우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경비부담 승낙서 및 재원조달계약서 각 1부  
 ※ 다만,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복지재단 설립, 구성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0조)
-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복지재단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 문화·체계화·효율화를 위하여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기본원칙)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정치적 중립성 유지
2. 인사의 독립성 유지
3.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과 업무 연계성 유지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평가, 교육
2.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공동사업
3. 콜센터 운영, 통합사례관리
4. 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인증 및 컨설팅
5.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 보급

6. 국가, 시,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적용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2.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상임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

④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고 상근으로 한다.

⑤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에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결산서를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차례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任免)한다.

제11조(재원구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원금
2.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해져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시와 산하 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가능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보고서·결산보고서 및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사무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관계 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재단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고,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50호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병역전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료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청주동물원 등 청주시 소속기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④ 병역명문가 우대를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12호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용자 조례안

의안 번호	12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용자조례」를 「청주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용자 조례」로 제정함.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정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용자 및 상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신청방법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용자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과 그 밖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용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제3조(용자대상) ① 기금의 용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4.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대학원생 제외)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용자대상에도 불구하고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게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

## 제2장 기금의 조성

제4조(용자금액 등) ① 기금의 용자액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5조(신청절차) ① 기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용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용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용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하도록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용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용자금의 상환 등) ① 시장은 이 기금을 용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용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용자를 받은 자가 용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용자를 받은 자가 청주시 관할 구역외로 이주할 때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용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청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회계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할 경우 시장은 기금을 수탁 받은 금융기관



에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0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용자금과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1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 제4장 보칙

제13조(감면조치·결손처분) ① 기금을 용자받는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금을 용자받은 자와 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상환의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3. 그 밖에 상환능력이 상실하였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시장은 자금을 용자받은 가구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 기금운용상황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20호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용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용자를 받은 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 2퍼센트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

리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로 본다.



#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장려수당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장려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나. 예산조치 : 414,000천원 (통합 전 660,000천원, 통합 후 1,074,000천원)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국가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국가와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 종사자로 한다.

1. 일반사회복지관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다만, 아동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다만,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법인시설로서, 국가 및 시로부터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운영비 지원과 기능 보강비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

고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4조(지급기준) 청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수당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청주시장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장려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29호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사회복지시설 근무 종사자 장려수당을 수혜가 있는 금액으로 양 시·군 자치법규 통합
  - ※ 종전 청주시 5만원, 청원군 미지급 ⇒ 5만원
- 관련조문 :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4년 7월 1일부터 장려수당 5만원 통합 지급

나. 추계 결과

- 연간 소요비용 추계액 : 414,000천원
- 소요비용 산출내역
  - 대상인원 : 청주시 1,100명, 청원군 690명
  - 산출기초 : 690명 × 50,000원 × 12월 = 414,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 중 지방세로 재원조달

청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207,000	414,000	414,000	414,000	414,000	1,863,000
재원 조달						
의 존 재 원	소 계					
	보조금(국고)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207,000	414,000	414,000	414,000	1,863,000
	지 방 세	207,000	414,000	414,000	414,000	1,863,000
	세 외 수 입	0	0	0	0	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민자 등)						



# 청주시 장애인 자립자금 이차채액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장애인자립자금 이차채액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장애인자립자금 이차채액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장애인자립자금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대상, 방법,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장애인 자립자금 이차차액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장애인이 자활·자립을 위하여 대여 받은 자립자금의 이차차액보전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자금"이란 장애인이 자활·자립을 위하여 대여받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자금을 말한다.
3. "이차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자립자금 이차액과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용자 조례」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을 자립자금에 적용한 이차액과의 차액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재원) 이차보전금의 재원은 청주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서 2014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청원군에서 자립자금을 대출 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자립자금을 대여 받은 장애인이 금융기관에

대여금의 이자를 납부한 경우 장애인에게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제6조(지원기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조건에 따라 약정된 상환기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변경사항 통보) 자립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의 주소나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요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복지대상자자립자금 이차차액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점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제3조(사전 공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청주시보, 청주시민신문,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방법) 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설치계약을 한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설치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최소한 1개월 전에 이유를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심사) ①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자 심사 및 제5조 우선계약자 선정, 제7조 계약해지의 사안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는 청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대행한다.

제9조(공표의 원칙)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계약의 접수현황, 계약체결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한 자는 성명, 전화번호 등을 자동판매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

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수도·연료사용료 등은 실제  
비용을 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8호 청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청원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  
기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기준**(제5조 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의료급여 1종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의료 급여2종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

가. 위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신청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청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순으로 하고 그래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세대원 수가 많은 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별지 서식]

<b>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b>								
신청인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휴대폰:			
	주소							
신내 청용	사업명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내 청상	<input type="checkbox"/>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비과세 대상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노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가사 족향	성명	신청인 과 관계	주민등록 번호	건강상태 (장애, 질병)	직업	월소득 (천원)	비고	
<p>「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청주시장 귀하</p>								
<p>&lt;구비서류&gt;</p> <p>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p> <p>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p> <p>※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같음함.</p>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13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로 제정함.
-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청주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한 지역에 마을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목련원)을 말한다.
2. "설치지역"이란 화장시설을 설치한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주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관련 마을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

3.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

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관련 마을 전체거주세대 80퍼센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부를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청주시의회 의원
2. 기금운용관련 담당 국장
3. 환경분야 교수
4. 변호사
5. 회계사 또는 세무사
6. 금융기관 관계자
7. 해당 지역 동장
8. 해당 지역 주민대표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당연직 제외)할 때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제5조 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05호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기 금 관 리 대 장

(단위 : 원)

월 일	예 금				인 출 (또는 예금해지)		잔 액	비 고
	예금종류	금 액	이 율	예금기관	적 요	금 액		

[별지 제2호서식]

## 기금 지급 대장

(단위 : 원)

월 일	적 요	수 령 자	지 급 액	잔 액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 현금출납부

(단위 : 원)

년		적 요	수 령 자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월	일					





#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3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청원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원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 노인복지관의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노인복지관 위탁평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청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 사회교육사업
2. 노인종합상담사업
3. 노인 일자리사업
4. 노인 건강증진 및 기능보완 사업
5. 요보호노인 보호 및 지원
6. 노인자원봉사사업
7.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8. 그 밖에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의 사용)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이용자 범위)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정신질환자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4. 시설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이용료) 복지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2와 같이 최소한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료)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초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가산 징수하고, 사용자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 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③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나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위탁 운영)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수탁기관적격심의회위원회)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수탁기관적격심의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 학계 전문가
2.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청주시의회 의원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의 회계·법률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선정심의회기준) ① 선정 심의회기준은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과 노인복지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기본능력은 관리운영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등으로 구성하며, 노인 복지사업 수행능력은 노인복지사업 수행의 전문성, 사업 계획서 및 실천성, 복지사업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한다.

제14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실시하고 청주시 홈페이지 및 청주시보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 적격심의결과를 공개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위탁평가심사위원회) ① 재위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청주시위탁평가심사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위탁평가 및 재위탁) ①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위탁 사무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현지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새로운 시설로 신설 및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4.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4.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수탁기관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 및 운영할 경우
- ② 수탁기관이 수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이 위탁을 해지할 때에는 30일 전에 수탁기관에 취소통보를 하

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수탁기관이 허가 없이 복지관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 훼손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8호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원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복지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계약서상의 위탁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위탁평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청주시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72번길 21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225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62번길 1-18	
청원군노인복지관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61	

[별표 2]

**이 용 료**(제7조 관련)

구 분	운영기준	이용료	비고
부설노인대학	1인/1월	시중요금의 50% 이하	
주간보호사업장	1인/1일 09:00~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수가 적용</li> <li>• 중식·간식비 100%</li> </ul>	
목욕료	1인 1회	시중요금의 50% 이하	
이·미용료	1인 1회	“	
물리치료실	1회	“	
식 비	1식	“	

[별표 3]

**사 용 료**(제8조제1항 관련)

강 당	2시간	100,000원 이하	○추가 시간당 20% (총 6시간 이하) ○인원, 냉난방, 야간 사용등 판단 금액 산정
운동시설	2시간	100,000원 이하	“



# 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지원 대상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보조 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과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사업
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상담 사업
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주관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검사) ① 지회장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회로부터 해당 업무를 보고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03호 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화목한 가정을 가꾸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조부모·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조부모·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양양을 위한 시책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대학총장·교육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주시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2. 효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6.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
7. 그 밖의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7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조부모·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99호 청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전검사 요원에 관한 사항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9조)
- 사전검사 요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2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 검사 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이용의 편리성과 정보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충족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전검사 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이란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증표를 휴대한 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약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요원 일부 또는 전부를 소집하여 의견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주 의무) ①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시장에게 통지 받은 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 보고서를 붙여서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사 실시) 시장은 편의증진법 제22조 및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요원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대상) ① 검사의 대상은 편의증진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② 편의증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검사 요원) ① 시장은 요원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청주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건축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2명 이내로 임명한다.

② 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현장조사, 서류검토, 기술지원 등으로 한다.

제8조(검사보고서 작성과 보고) ① 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검사 요원의 의무) ① 요원은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요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평을 도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6호 청주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전검사를 받은 대상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사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의견서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 소				
시 설 주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편의시설위치					
대 지 면 적			건 물 명 칭		
건 축 면 적			층 수		
연 면 적			대상시설별		
구 조		공사종별		주 용 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확인					
편 의 시 설 종 류		설치대상여부		설 치 여 부	비 고
		의 무	권 장		
매 개 시 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 부 시 설	출 입 구 (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 생 시 설	화 장 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안 내 시 설	점 자 블 락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기 피난시설				
그 밖의 시설	객 실				
	관람석 및 연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붙임 : 편의시설 설계도 1부. 상기와 같이 편의시설 검토 결과 적정하게 설계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청주시지원센터 검토확인자 (인)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완료서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 소				
시 설 주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대 지 위 치					
대 지 면 적				건 물 명 칭	
건 축 면 적				층 수	
연 면 적				대상시설별	
구 조		공사종별		주 용 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확인					
편 의 시 설 종 류		설치대상여부		설 치 여 부	비 고
		의 무	권 장		
매 개 시 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 부 시 설	출 입 구 (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 생 시 설	화 장 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안 내 시 설	점 자 블 러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기 피난시설				
그 밖의 시설	객 실				
	관람석 및 연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붙임 : 편의시설 설계도 및 사진 일체.					
상기와 같이 편의시설 점검 결과 적정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청주시지원센터				검토확인자	인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					



#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13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제정함
- 지원대상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 나. 예산조치 : 7,600천원 (통합 전 13,000천원, 통합 후 20,600천원)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 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1,500,000원 이내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 장애 1~2급: 1,500,000원

2. 장애 3~4급: 1,000,000원

3. 장애 5~6급: 700,000원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 지원금 지원 신청자는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생아의 만 3세까지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 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2. 지적·자폐·정신장애 1~2급 출산 여성 장애인으로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읍장·면장·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4호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신청 중이거나 환수 중인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혜가 높은 금액으로 양 시·군 자치법규 통합
  - ※ 종전 청주시 1,500,000원 이내, 청원군 미지급 ⇒ 1,500,000원 이내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연간 소요비용 추계액 : 7,600,000원
    - 1~2급 : 1,500,000원 × 3명 = 4,500,000원
    - 3~4급 : 1,000,000원 × 1명 = 1,000,000원
    - 5~6급 : 700,000원 × 3명 = 2,100,000원

청주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장



#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13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정함.
-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기금운용관리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이란 청주시의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관련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 구분) 장애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금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주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청주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기금 운용관리) ① 기금은 청주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 적립기금의 이자 수익금과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퍼센트 금액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장애인업무 담당부서의장이 기금출납원은 장애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청주시장이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용기금 사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1.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2. 장애인의 권익증진
3.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재활
4.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예산편성 심의 후 사용한다.

제12조(관련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1호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장애인 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13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청원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
-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청주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주시의 출연금
2.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노인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관리는 별도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청주시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면 지역과 동(洞)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한다.

1.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장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4. 그 밖에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補闕)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기금운용 대상사업) ① 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및 산하노인회(동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2. 독거노인보호사업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4.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5. 청주시 노인회보 발간
6.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예산을 편성, 심의한 후 사용한다.

제12조(회계관리) ①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 적용한다.

제14조(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의 기금운용 상황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1호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원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으로 본다.

#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나. 예산조치 : 4,800천원 (통합 전 117,000천원, 통합 후 121,800천원)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대 이상 가정”이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등) ① 지급 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한다.

- ②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 지급액은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



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73호 청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군 효도 수당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호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별지 제3호서식]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			
변경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자격변동 사유			
사 유	내 용		비 고
직계존속 사망 (65세 이상 노인)			
직계비속 사망 (효도대상자)			
주 소 변 동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4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주시장 귀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효도수당 지급대상을 수혜가 높은 금액으로 양 시·군 자치법규 통합

※ 종전 청주시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청원군 3년 이상 거주, 70세 이상 ⇒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연간 소요비용 추계액 : 4,800,000원

(산출기초 : 50,000원 × 8명 × 12월 = 4,800,000원)

청주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장

#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3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와 「청원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후 운영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로당 시설의 신축·개축, 보수 및 건물 매입 등 기능보강사업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와 난방비
3. 경로당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 밖의 비품 구입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개축의 경우에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

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시장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86호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청원군 경로당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14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와 「청원군 장수노인수당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
-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범위)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수당 지급기준일은 만 85세가 되는 날로 하며, 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2. 수당은 1명당 월 40,000원으로 한다.
3.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에 한정함)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동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0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말소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 읍장·면장·동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07호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청  
원군 장수노인수당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수수당을 지  
급하던 대상자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수  
수당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①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②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동거여부	직 업
③지급계좌	예금주 (장수노인)		계좌번호		
<p>「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수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p>					
<p><b>청주시장 귀하</b></p>					

[별지 제2호서식]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

(구청·읍·면·동)

일련 번호	지급대상자				장수수당 지급개시		장수수당 지급중단		지급 계좌번호		비고 (연락처)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연 령	신 청 일 자	지 급 개시일	중 단 일 자	중 단 사 유	예금주	계좌 번호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4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목련공원 관리 조례」와 「청원군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청원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을 제정함.
-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장사시설의 사용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분묘, 봉안묘 및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3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청주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분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추모동산, 장례식장 및 그 부속시설과 부지를 총칭한다.
2. “봉안묘”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가족묘를 말한다.
3.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4. “개인단”이란 봉안당에 하나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5. “부부단”이란 봉안당에 부부의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추모동산”이란 유택동산에 산골 처리된 유골을 합동 매장하는 시

설을 말한다.

8.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8조제1항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시도 이상)·철도·하천(지방2급하천 이상)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로부터 차폐된 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5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침수우려 예상지역
2. 마을별 간이상수원 취수원에서 100미터 이내 지역

###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자격) ① 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분묘 및 봉안묘는 사망일 현재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봉안당은 사망일 현재 기준 3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자연장지는 사망일 현재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봉안묘, 봉안당, 자연장지는 사망일(개장유골은 신청일) 현재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가족과 공원묘지에 이미 안치된 자의 가족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유연·무연분묘의 유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봉안당, 봉안묘, 자연장지에 안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목련원과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은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유택동산은 목련원에서 화장한 유골이나 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납골에 한정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은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화장 후 봉안시설 등에 안치되었던 유골은 목련원과 봉안당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였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위장전입자 등)

6.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였을 때

7. 그 밖에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 환급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묘지관리자가 최초 매장 이후 합장 등 추가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그 실제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 연장사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사망일 전 30일 이상 시에 주소를 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5.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연분묘

6. 시에 주소를 둔 장기기증자

7.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권자(시 외에 주소를 둔 자를 포함한다)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 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와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 후 봉안당 개인단이나 자연장지에 안치할 경우에만 감면한다.

제12조(주소변경 등 신고)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3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장사시설안의 시설, 기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시장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장제한) ① 사용허가를 받아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거나 안치하

여 이미 사용 중인 자는 장사시설 내 다른 장소로 개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장사시설에 매장(안치)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개장 및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분묘에서 봉안묘, 봉안당, 자연장지로의 개장과 봉안묘나 봉안당에서 자연장지로의 개장
2.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의 합장
3. 배우자 중 한쪽이 이미 부부단에 안치된 경우 적법하게 설치된 타 장사 시설에 안치된 배우자를 부부단으로 합장
4. 분묘에서 국가유공자 기단으로 이장이나 합장

제15조(위탁운영) ①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1. 지역주민협의체
2.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② 시장은 지역주민협의체와 체결한 협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금액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시장과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민원불편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위탁의 취소 결정일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청원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청원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3장 분묘, 봉안묘, 자연장지

제18조(분묘의 면적 등) ① 분묘는 접속형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묘의 면적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분묘 등의 구조) ① 분묘와 봉안묘의 시설물은 석조로 하며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시설물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20조(분묘, 봉안묘 및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① 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0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매화공원 및 오창장미공원의 분묘 가운데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봉안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면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합장한 분묘의 사용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한다.

제21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분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개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묘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장 전인 때에 한정하여 이미 납부된 금액의 전액을

환급한다. 다만, 매화공원의 경우 이미 분양 받은 묘지는 납부된 금액의 반액을 환급한다.

③ 분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개장을 하는 경우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기간까지 개장지를 분묘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매화공원과 오창장미공원은 예외로 한다.

제22조(합장) ① 합장을 할 분묘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합장묘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따른 최초 매장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장된 자의 배우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장할 수 있다.

제23조(개장명령)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분묘 및 봉안묘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장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4조(자연장의 방법) ①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한 골분은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분 등 천연소재를 사용한 생화학적 분해가 가

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어떠한 유품도 매장해서는 안 된다.

②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5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③ 자연장의 시설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장 봉안당

제25조(시설기준 등) ① 봉안당에는 연고자실과 무연고자실을 두고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며,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유골안치단에는 위패를 부착한다.

③ 유골함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사용기간 등)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무연고 유골의 처리 등) ①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 지역의 사업장에서 발굴되는 무연분묘의 유골은 무연고자실에 안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굴되는 무연유골은 지역에 관계없이 안치할 수 있다.

② 유택동산에 산골된 유골과 봉안당 및 봉안묘에 안장되어 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은 유택동산에 일정기간 보관 후 목련공원 묘역 추모동산에 합동 매장한다.

## 제5장 특별회계 운용

제28조(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장사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재료비, 전입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회계의 세출은 장사시설의 시체 및 유골의 안장(안치), 묘역관리, 관리사무소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30조(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 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185호 청주시 목련공원 관리 조례, 청원군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사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청원군에 20

14년6월3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망한 사람은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봉안당의 사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된 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중인 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서상의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6조(매화공원 및 오창장미공원의 납골묘(탑)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매화공원 및 오창장미공원의 납골묘(탑)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의 적용을 받는 장사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8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공원묘지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장사시설특별회계로 본다.



[별표 1]

**청주시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6조 관련)

1. 공원묘지

명 칭	위 치
목련공원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731(월오동) 일원
매화공원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청룡리 106번지 일원
오창장미공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산85번지 일원

2. 화장시설

명 칭	위 치
목련원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731(월오동) 일원

3. 봉안당

명 칭	위 치
목련당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731(월오동) 일원
매화원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장인차로 460
오창장미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88

4. 자연장지, 유택동산, 장례식장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731(월오동)일원

[별표 2]

**청주시 장사시설의 사용료**(제10조 관련)

1. 분묘

(단위 : 원)

명 칭	구분	최초 15년				연장 사용료	비 고
		계	사용료	매장비	관리비		
목련공원	단장	1,021,000	1,021,000			680,000	
	합장	1,324,000	1,324,000			890,000	
매화공원	단장	382,650	70,000	158,900	153,750		
	합장	511,820	105,000	198,620	208,200		
오창장미공원	단장	1,615,250	1,302,600	158,900	153,750		
	합장	2,169,170	1,762,350	198,620	208,200		

※ 합장묘의 추가매장비는 198,620원으로 한다.

2. 봉안묘(탑)

(단위 : 원)

명 칭	구분	사용료	관리비	비 고
목련공원		2,500,000		연장사용료 2,500,000
매화공원	10m <sup>2</sup> (18기내)		153,750	사용기간 영구임대 매15년마다 관리비납부 (추가설치 없음)
	15m <sup>2</sup> (24기내)		208,200	
오창장미공원	10m <sup>2</sup> (18기내)		153,750	
	15m <sup>2</sup> (24기내)		208,200	
	30m <sup>2</sup> (48기내)		416,400	

3. 자연장지

(단위 : 원)

명 칭	구분	사용료	비 고
목련공원	개인단	390,000	
	부부단	780,000	

4. 봉안당

(단위 : 원)

명 칭	구분		계	사용료	관리비	비 고
목 련 당	유연	개인단	300,000			
		부부단	500,000			
	무 연		135,000			
매 화 원 오창장미원	유연	개인단	200,000	60,000	140,000	
		부부단	400,000	120,000	280,000	
	무 연		160,000	60,000	100,000	

5. 화장시설(목련원)

(단위 : 원)

구 분(구당)	사 용 료			비고
	청주시민	인접지역	기타지역	
대인(만15세 이상)	100,000	300,000	500,000	
소인(만15세 미만)	50,000	100,000	200,000	
사 산 아	30,000	50,000	100,000	
개 장 유 골	50,000	100,000	200,000	

6. 장례식장

(단위 : 원)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청주시민	기타지역	
빈 소	238제곱미터(1일기준)	300,000	500,000	
	112제곱미터(1일기준)	150,000	300,000	
안치실 1실당(1일기준)		30,000	50,000	
염습실 1회		50,000	50,000	

※ 사용료의 기준

구 분	기 준	비 고
분묘, 목련원, 장례식장	고인	
개 장	분묘의 소재지	
사 산 아	부모의 주소	

※ 장례식장 빈소 및 안치실 사용료

- 장례식장 빈소 및 안치실의 사용료는 24시간을 1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24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하며,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 인접지역이란 청주시를 제외한 충청북도의 지역을 말한다.

[별표 3]

**분묘의 면적 등**(제18조 관련)

1. 분묘

(단위 : m<sup>2</sup>이하)

명 칭	구 분	면 적	비 고
목련공원	단 장	5.0	
	합 장	6.5	
매화공원 오창장미공원	단 장	10.0	
	합 장	15.0	

2. 봉안묘(탑)

(단위 : m<sup>2</sup>이하, 기 이내)

명 칭	면적	유골함 안치수	비 고
목련공원	6.5	10	
매화공원 오창장미공원	10.0	18	추가설치 없음
	15.0	24	
	30.0	48	

[별표 4]

## 분묘 등의 규격(제19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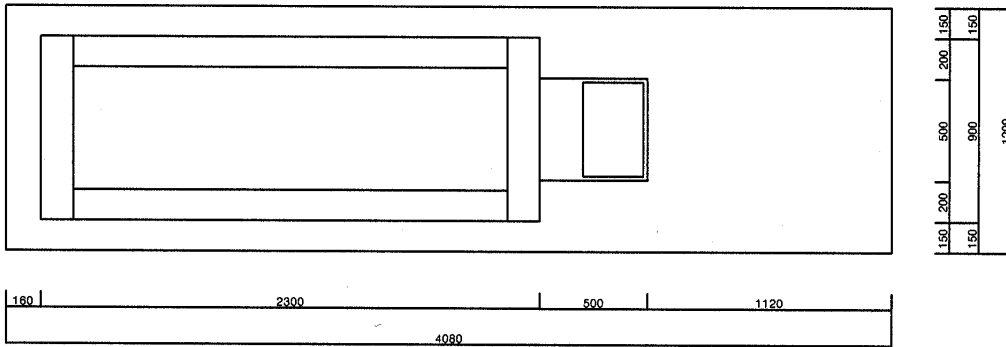
### 1. 분묘

가. 목련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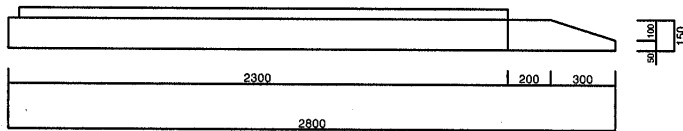
단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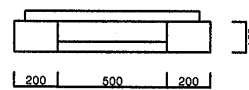
(단위 : mm)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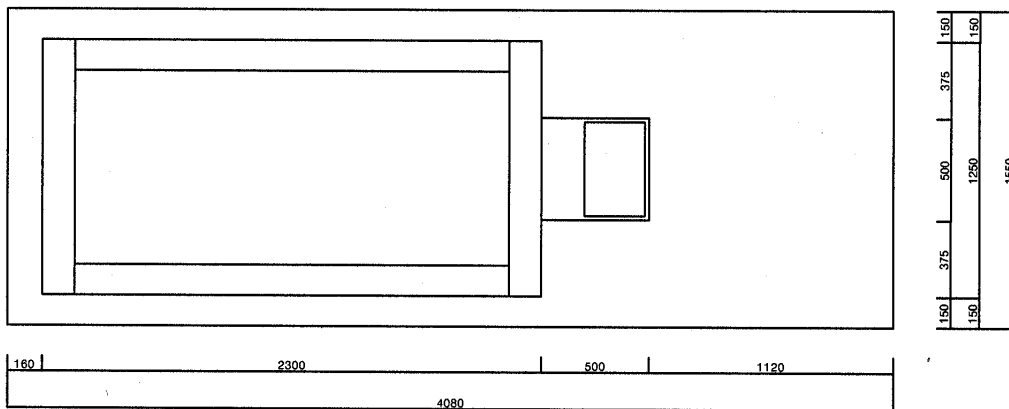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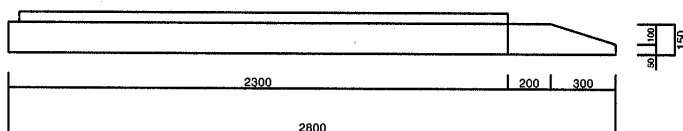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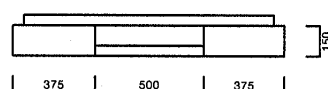
평면도



측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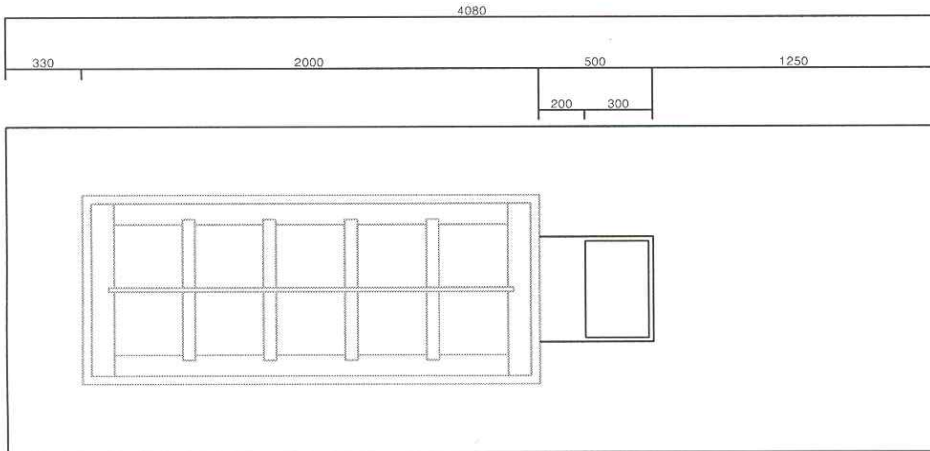
나. 매화공원, 오창장미공원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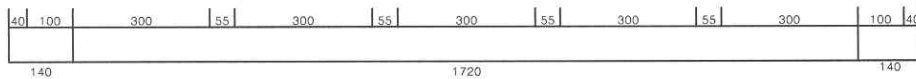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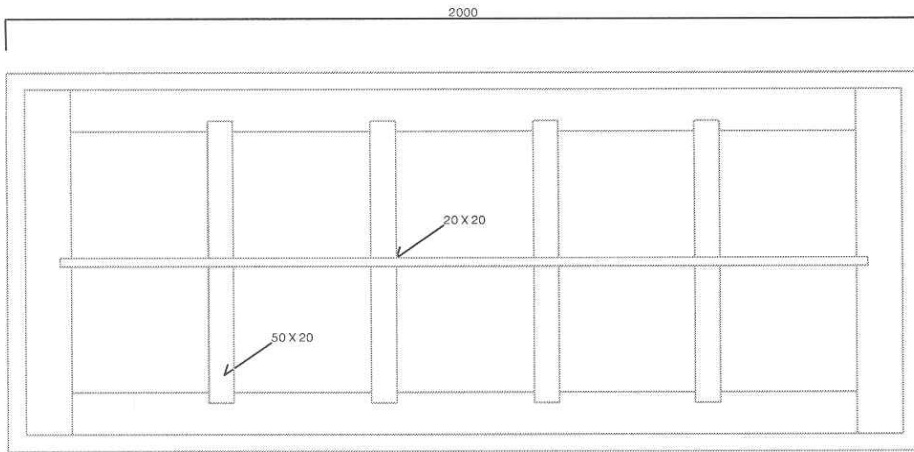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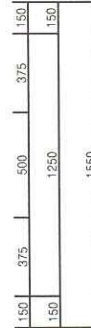
명 칭	구분	봉 분 (가로×세로×높이)	묘 비 (가로×세로×높이)	비고
매화공원	단장	110×240×50	30×12×50	
	합장	170×240×50	30×12×50	
오창장미공원	단장	110×240×50	40×25×20	
	합장	170×240×50	40×25×20	

## 2. 봉안묘(목련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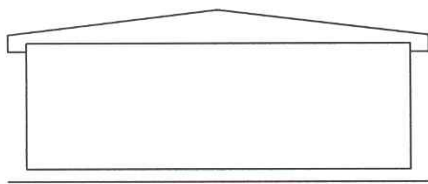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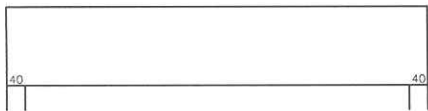
( 단 위 : m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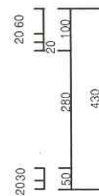
평면도 1 : 200



내부규격 1 : 100



입면도 1 : 100





[별표 5]

**봉안당의 시설기준**(제25조 관련)

(단위 : cm)

구 분		시 설 기 준 (가로×세로×높이, 가로×세로)
유 골 안치단	개인단	30×30×30이내
	부부단	60×30×30이내
유 골 함		20×20×20이내로 내구성이 강한 것
위 패		① 유골안치단의 위패 5×13 이내로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기록 부착한다.(목련당은 표식으로 대신한다) ② 유골함 위패 4×10 이내로 제1항과 같게 기록 부착한다. (목련당은 표식으로 대신한다)



#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4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청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청주시 장애인복지 기금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청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중 위원회 활

동능력이 있는 자

4. 청주시의회 의원

5. 청주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청주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장애인 LPG차량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원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의 LPG구입비 지원에 관한 지원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의 LPG구입비(이하 "연료비" 라 한다)의 지원 대상 (이하 "지원 대상"이라 한다)은 청주시 13개 읍·면(동은 제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하여 자가운전자 중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관리) ① 지원신청은 지원 대상 본인의 신청에 따르며 해당 읍장·면장은 행정전산망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을 붙여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연료비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료비 지원은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제6조(지급시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분기별로 연료비를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 등이 취소된 때
2.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았을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장애인 LPG차량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 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4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족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장애인가족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책무) 센터는 장애인복지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 도우미사업

2.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

6.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센터 기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업비 집행방법, 사무국장 및 사회복지사 등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과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단체 임직원 및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할 때에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센터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 및 일부 자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장비·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와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⑤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 ⑦ 수탁자는 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1. 센터에서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청주시에 귀속된다.

제16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센터의 운영경비



## 2.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제17조(지원방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센터의 운영경비 지원 및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재무·회계) 센터장은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의 규정을 따른다.

제19조(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센터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업 및 소요예산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상황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업무의 위탁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에 따라 위탁한 계약기관과의 업무는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기간 연장은 3개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4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탁자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제3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1월 22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도모
2. 입소자의 건강 유지, 여가선용, 상담지도
3. 입소자에 대한 상시 보호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4. 치매노인과 중풍노인의 분리보호
5.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 등을 위한 진료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6. 교양·오락·치매, 중풍 치료 등 프로그램개발
7. 그 밖에 요양을 위한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 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

1. 침실

2. 사무실
3. 요양보호사실
4. 자원봉사자실
5. 의료 및 간호사실
6. 물리(작업)치료실
7. 프로그램실
8. 식당 및 조리실
9. 비상재해시설
10. 화장실
11.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12.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제5조(입소대상자)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제6조(입소신청 및 입소비용) ①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 입소허가가 된 자에 대한 비용수납 및 보증금의 징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노인복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입소비용 등의 감면) 시장은 65세 이상의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감면한다.

제8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허위사실 등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제9조(운영·관리) 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요양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탁사무 평가 및 재 위탁) ① 시장은 수탁자가 재 수탁을 희망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 평가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탁사무 운영실적 평가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현지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다.

제12조(위탁 평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재 위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탁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청주시의회의원,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사회복지시설장 등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에 따른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 또는 재 위탁 할 수 없다.
4.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명의로 하여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 변경 금지) 요양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청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하였을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 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요양시설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을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요양 시설의 유지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요양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등 장부를 검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원 배치)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시설장 임면(任免) ) ① 직영 시 시설장을 공무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6급 이상 공무원(6급 상당 공무원 포함)으로 하고 민간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시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위탁의 경우 시설장은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자체 임명한 후 시장에게 임면사항을 통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령과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관련 시행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별표]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상삼길 80	
행복의집 사랑노인요양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상삼길 80	

#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안 번호	14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와 「청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분석평가의 시기(안 제6조)
- 분석평가서의 작성 등(안 제6조)
-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안 제8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안 제11조~제13조)
- 분석평가 교육, 자문, 정보의 수집·보급, 전문인력 육성 등(안 제15조~제1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청주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3. "출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의 성인지 관점의 향상, 분석평가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분석평가 대상) ① 시장 및 출자기관·수탁기관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청주시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

제5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 요구차이
4. 성평등을 위한 법령 및 예산 조치사항
5.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제6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청주시의회 제출 전

제7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이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③ 분석평가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평가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출자·수탁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통지를 받은 경우 반영결과를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석평



가책임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분석평가책임관은 시장 및 출자·수탁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서를 제출한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분석평가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① 시장 및 출자·수탁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 시장은 통지 받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시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내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게 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

계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분석평가책임관, 본청 국 주무과장, 업무 및 예산관련 부서장과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5조(분석평가 교육) 시장 및 출자·수탁기관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

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분석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분석평가 자문) 시장 및 출자·수탁기관의 장은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시장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12호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청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촉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설치, 운영,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청주시의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

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 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청주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互選)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아동·여성폭력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관련 기관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유형 중 4개 기관유형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

제7조(지역연대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실비 보상)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 보호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기

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학교주변 등 시민들이 아동·여성 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요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위한 악성댓글 추방 인터넷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 및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련정보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39호 청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청원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따  
른 지역연대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14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청원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
-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6조)
-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5조)
-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제32조)
- '여성상'에 관한 사항(안 제33조~제3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4조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재정법」 제34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에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2장 여성정책

제3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시장은 여성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시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

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립·공립 연구기관, 정부 및 충청북도가 출연한 출연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에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자문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퇴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상위직으로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양성평등 의식제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성차별 개선 등) 시장은 직장에서 남녀차별과 성희롱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차별과 성희롱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복지증진 등)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2.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우선 구매 추진과 같은 법 제10조의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및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시장은 가족환경의 변화에 맞는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맞벌이 부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여성의 국제협력) 시장은 여성의 국제협력 참여를 확대하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법 제3조제2호의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주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장 청주시여성발전위원회

제17조(설치)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청주시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여성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3.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6.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종합취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여성관련 주요사항 등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면 지역과 동(洞)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동수(同數)로 한다.

1. 복지문화국장
2.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여성단체대표
4.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2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새로이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2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6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
4. 여성사회교육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며 적립원금과 이자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수익

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관리 심의)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3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여성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뚜렷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장 청주시 여성상

제33조(청주시 여성상) 시장은 꾸준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평등 사회 구현

에 이바지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청주시 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준다.

제34조(수상 및 인원) ① 여성상의 시상부문은 효행·평등·봉사·예능·신 지식인 등 5개 부분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1명씩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표창패를 준다.

제35조(시상 시기) 시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시상 대상자) ① 수상 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선정한다.

② 이미 수상을 한 사람과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라 상을 받은 사람은 여성상을 받을 수 없다.

제37조(수상 대상자 추천) ① 수상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장과 여성단체의 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과 여성단체의 장이 추천한 수상 대상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38조(수상 대상자 선정) 수상 대상자는 청주시 여성상공적심사위원회에 의뢰하여 선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5호 청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청원군 여성발전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으로 본다.





# 청주시 보육 조례안

의안 번호	14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보육 조례」와 「청원군 보육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보육 조례」를 제정함.
-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1조)
-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8조)
-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2조)
-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6조

「평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보육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장난감대여센터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

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 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

행규칙」 제23조를 따른다.

③ 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어린이집 운영은 직접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영리법인·단체 및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육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와 전대(轉貸)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 대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위

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법규 준수)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관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9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과 상담을 위하여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보육관련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계·기구·자재 등을 갖춰 놓아야 한다.

제20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재·교구 등 장난감 대여
2. 부모에 대한 육아교육 및 부모간 공동 육아 나눔터
3. 아이들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4. 일시보육 제공
5. 양육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6.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를 따른다.

③ 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 종사자를 임면(任免)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위탁운영)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수탁내용 등을 미리 청주시 홈페이지와 청주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이 끝나면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제5장 비용 보조

제23조(비용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센터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4조(보조금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 된 경우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과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69호 청주시보육조례, 청원군 보육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육  
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된 공립어린이집 또는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  
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안 제6조)
- 센터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2.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한부모 가정 아동
3.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과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약계층 아동 보호사업: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사업

2. 교육적 지원 사업: 아동 학습능력 제고,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3. 정서적 지원 사업: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사업
4. 문화서비스 제공 사업: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게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 제공사업
5.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사업비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았을 때
3.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9조(위원회 설치)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사업의 재정적 확보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센터 운영에 따른 자문 및 지도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 의원 1명
2. 시 아동업무 담당과장
3. 시에 있는 센터의 장으로 관할 구역 센터의 장 4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명
5. 청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
6.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상반기·하반기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민

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및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19호 청주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청원군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 여성친화도시추진단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2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청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 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정책에 환류(還流) 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

해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 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계획 수립과 평가에 대한 제안과 추진을 위하여 청주시여성친화도시추진단을 설치한다.

제5조(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필요할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6조(조성기준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7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 정책 수립·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관리 및 확보
2. 여성의 리더십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

시

② 시장은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위원 40퍼센트 이상 위촉(당연직 제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위원회에 성인지 정책전문가 1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9조(공공이용 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적·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0조(주거 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1조(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창업보육 지원
3. 여성친화 기업 발굴 및 확산

제12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2. 공공 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아토피 예방시스템 등의 친환경적 도시 환경 조성

제13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제안을 토

대로 시에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여성친화도시 추진단

제14조(설치)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여성친화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5조(기능) 추진단은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제안 및 추진한다.

1.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현황 점검, 모니터, 지도 및 평가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추진단은 부시장,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여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전문가 등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다.

③ 여성친화도시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그 외 민간인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시의원과 성인지 정책, 여성친화도시, 도시공간정책, 여성친화도시사업과 관련된 전문가·여성 NGO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1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③ 시장은 추진단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간사) ①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추진단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04호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여성친화도시 추진단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5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주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기능, 조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청주시에 설치하는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명칭은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과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와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特化)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한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한 4명 이상으로 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과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탁·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위탁운영은 시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장비와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알맞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 법 제12조에 따라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와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과 운영 전체의 장부나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센터 지원) 시장은 센터 설치·운영과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41호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5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조례」를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로 제정함.
- 지원대상자 범위 및 지원내용(안 제3조)
- 사업비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조손가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 나. 예산조치 : 16,920천원 (통합 전 42,480천원, 통합 후 59,400천원)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생활 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층"이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대리양육 가정위탁에 따른 양육보조금과 세대별 위로금 수급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나. "2층"이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 대리양육 가정위탁에 따른 양육보조금과 세대별 위로금 수급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 "3층"이란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소득인정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의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개별가구에서 제외된 세대의 경우에는 조손가정에 포함한다.

2. "조손가정 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학습지 제공, 인터넷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 제공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5. "사업예산"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6. "비사업예산"이란 민간 후원을 활용한 예산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자 범위 및 지원내용)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세대로 한다. 다만,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때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② 계층별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2층: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 아동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아동 성장도우미
2. 3층: 조손가정 아동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아동 성장도우미

③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구분)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전부를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조손가정수당

2. 비예산사업

가.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나.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지원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에 따른 선정을 병행한다.

제6조(조사 실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관계 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등 선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7조(사업비 확보)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기탁할 것을 권고(勸告)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실시) 조손가정수당 금액은 세대당 월 30,000원으로 하며, 지급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세대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제9조(보고 및 점검) ①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소득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중지) 시장은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청주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지원 대상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를 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4.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5.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53호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조손가정수당을 수혜가 높은 금액으로 양 시·군 자치법규  
통합

※ 종전 청주시 월 3만원, 청원군 미지급 ⇒ 월 3만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연간 소요비용 추계액 : 16,920,000원

(산출기초 : 30,000원 × 47명 × 12월 = 16,920,000원)

청주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장

# 청주시 미혼자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미혼자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미혼자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지원금 청구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20,000천원 (통합 전 4,000천원, 통합 후 24,000천원)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미혼자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자의 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미혼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가 없으며 혼인의 경험이 없는 관내 거주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제2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미혼자 중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와 같이 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의 자로 한다.

② 대상자의 연령은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청구 및 지급절차) ① 결혼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혼자 결혼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장·면장·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한 경우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읍장·면장·동장이 추천한 신청인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읍장·면장·동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 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를 달아 통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읍장·면장·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를 검토하고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의 지정된 은행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을 입금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미혼자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미혼자 결혼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택 : 휴대폰 :	
재산규모	건물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건강보험료		원			
청주시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년, 월)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비고	
배우자 주소	배우자성명				외국인등록일	
<p>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청주시 미혼자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결혼비용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며 결혼 후 청주시에 거주할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인)</p> <p>청주시장 귀하</p>						
이장·통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 결과						
이장·통장 사실확인	적, 부	성명 (인)	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	적, 부	담당 공무원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추천 의견 (간략하게 기재)						

※ 부모와 동거할 경우 영농규모, 주택보유 현황은 부모의 현황을 기재  
주민등록 등본, 농지원부 사본, 건강보험료 사본 읍면동에서 첨부

추천자 ○ ○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 지원금 청구서

1. 사 업 명 : 청주시 미혼자 결혼지원사업
2. 혼인 이행자(청구자)
  - 가. 주 소 :
  - 나. 성 명 :
  - 다. 주민등록번호 :
  - 라. 연락처 : 자택(       -       ), 휴대폰(       -       -       )
3. 배우자 인적사항
  - 가. 국적(주소) :
  - 나. 성 명 :
  - 다. 생년월일(연령) :
4. 결혼 일자 :
5. 결혼 장소 :
6. 결혼 지출 비용 :
7. 청구금액 :
8. 입금계좌번호 :

위와 같이 「청주시 미혼자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오며, 지원금을 수령 후 같은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 합니다.

20 . . . .

청구인 (인)

- 붙임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끝.

청주시장 귀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미혼자 결혼지원을 수혜가 있는 조례로 양 시·군 자치법규 통합
  - ※ 종전 청주시 미지급, 청원군 3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연간 소요비용 추계액 : 20,000,000원
  - (산출기초 : 2,000,000원 × 10명 = 20,000,000원)

청주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장



#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5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장난감대여센터의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장난감대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불임

##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이하 "대여센터"라 한다)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32 목령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설치하며 명칭은 "목령장난감나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여센터"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장난감, 비디오물, 디스크(DVD, CD)를 무료로 대여·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비디오물, 디스크(DVD, CD)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대여센터에 개인의 정보를 등록하고 대여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대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회원가입) ① 대여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청주시 소재 직장인만 해당된다.

③ 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연체료)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 대여 자료의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별표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대여물품을 가능한 실내에서 사용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하며, 바코드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등록 취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자
2. 회원탈퇴 희망자
3. 대여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및 파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자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장난감 대여센터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자
6.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하는 자

제9조(장난감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

제10조(자료폐기) ① 시장은 이용가치가 없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훼손·파손 장난감은 폐기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대여 받은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전출 및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대여한 장난감을 폐기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① 시장은 대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여센터를 효율적

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 프로그램운영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대여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운영자"라고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시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등

제13조(위탁계약)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여센터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대여센터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지원

②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수탁 계약사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지 및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계약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별표]

**장난감대여센터 연체료** (제6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연체료	1일 1점당 500원	



#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5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청원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청원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6조, 제7조)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 지원센터의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8조)
-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국적법」 제2조 ~ 제4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한국어와 한국문화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保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 등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갖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업무 담당국장,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기관의 관계자와 교수, 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다문화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시책에 관한 조정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적절치 않은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부서 및 지역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련부서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다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으로 체결한다.

제17조(지원센터의 조직)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9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청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시의 정책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할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로가 있을 경우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

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99호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청원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청원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위탁한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청주시 또는 청원군과 체결한 위탁계약 또는 약정상의 기간으로 한다.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5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와 「청원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운용 규정」 을 통합하여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를 제정함.
-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안제5조~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제21조, 제22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추가비용 1,855,000천원

(통합 전 8,966,000천원, 통합 후 10,821,000천원)

- 출산장려금 : 추가비용 55,000천원  
(통합 전 1,406,000천원, 통합 후 1,461,000천원)
- 양육지원금 : 추가비용 1,800,000천원  
(통합 전 7,560,000천원, 통합 후 9,360,000천원)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제21조, 제22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출산장려 및 양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산장려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 및 양육과 임산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예산확보 및 건강관리 지원) 청주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출산장려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외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장려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출생신고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경우
2. 신생아가 출생 후 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3개월 이상 시

- 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② 양육지원금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기준을 충족한 셋째 이상의 대상자가 출생 후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지원한다.
  - ③ 이 조례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와 양육에 관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신청인) ① 지원금의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제6조(신청절차) 지원금의 신청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할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청주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47호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출산장려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을 수혜가 높은 금액으로 양 시·군 자치법규 통합
  - 출산장려지원금
    - 2자녀 : 종전 청주시 50만원, 청원군 미지급 ⇒ 50만원
    - 3자녀 : 종전 청주시 100만원, 청원군 미지급 ⇒ 100만원
    - 다문화가정 : 종전 청주시 미지급, 청원군 20만원 추가 ⇒ 20만원
  - 양육지원금 : 종전 청주시 월 15만원, 청원군 미지급 ⇒ 월 15만원
  
- 관련조문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4년 7월 1일부터 출산장려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통합 지급

나. 추계 결과

- 연간 소요비용 추계액 : 1,855,000천원
- 소요비용 산출내역
  - 양육지원금 : 150,000원 × 1,000명 × 12월 = 1,800,000,000원
  - ※ 대상인원 : 청주시 4,200명, 청원군 1,000명

- 출산장려지원금 : 55,000,000원
  - 2자녀 : 40명 × 500,000원 = 20,000,000원
  - 3자녀 : 15명 × 1,000,000원 = 15,000,000원
  - 다문화가정 : 100명 × 200,000원 = 2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재원조달

청주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927,500	1,855,000	1,855,000	1,855,000	1,855,000	8,347,500
재원 조달						
의 존 재 원	소 계					
	보조금(국고)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927,500	1,855,000	1,855,000	1,855,000	8,347,500
	지 방 세	927,500	1,855,000	1,855,000	1,855,000	8,347,500
	세 외 수 입	0	0	0	0	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민자 등)						



#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5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운영 조례」를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운영 조례」로 제정함.
- 구(區) 명칭변경에 따른 아동복지관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행정기구·조직 변경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아동복지관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행정기구·조직 변경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역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과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청주시 아동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33(모충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회의, 교육,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상담사업: 아동 및 가족상담사업, 심리진단사업, 집단상담 및 집단치료사업, 특수치료사업 등
2. 교육·문화사업: 교육·문화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아동권리·안

전교육사업, 아동체육·문화공간 제공 등

3. 지역연계 사업: 사례발굴 및 관리, 지역복지사업, 아동관련 기관과의 협조 지원사업 등

4.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아동복지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분야 전문가, 교육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 아동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해당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관업무 담당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6조(위원회 임기 및 기능)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3. 그 밖에 결격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⑤ 위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 시장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복지관 운영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제한) ① 복지관의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 아동을 우선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이용료 등)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최소한의 실제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제 경비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은 공익의 목적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시설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시장이 조정(調整)할 수 있다.
3. 시설사용자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 신청은 사용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설의 사용료 징수는 별표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아동관련 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때에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법을 위반하거나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6.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위탁 사무를 시정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14호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아동복지관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표]

**사 용 료**(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 각 프로그램실	1일 4시간	20,000원	
○ 3층 교육실		30,000원	
○ 부대시설	1회	10,000원	

- ※ 사용료는 기준시간을 적용하며 초과시 사용료는 1시간당(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적용)해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 사용료는 사용개시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5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위생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와 「청원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
- 향토음식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향토음식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향토음식점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향토음식 지정업소 보고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향토음식 명칭사용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업무 담당국장, 향토음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청주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식품관련 전문교수, 학자, 언론인, 식품관련단체·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음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이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경진대회나 품평회를 개최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를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등 선진견학
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제공
5.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제14조(보고감독 등) 시장은 필요할 경우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96호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청원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향토음식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향토

음식점 지정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16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위생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청원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함.
- 식품진흥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과징금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20조)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8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구청의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제4조(기금 관리·운용) ① 기금의 예탁과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은행의 지정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로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시와 기금 은행은 약정서를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계정설치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징수절차) ①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금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다.

②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40은 충청북도 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 60은 시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한다. 다만, 제1항과 제2항 규정 외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청의 위생업무담당과장

2. 식품위생 관련단체 대표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용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자총액·용자한도·용자조건·용자절차 등의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용자 대상) 기금 용자대상은 시 관할구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개선자금에 한정한다.

제12조(융자 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3.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금 시설개선융자금 대출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대출업무 위탁) ① 시장은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 금리는 제4조제1항의 금융기관에서 일반대출 금리보다 2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결산은 모두 수탁금융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용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용자대상자의 용자신청금액이 용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장은 식품제조업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등에 용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용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용자대상 선정 통지)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영업자가 제출한 용자대상 업소의 용자신청금액이 용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용자대상 업소별로 용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된 용자대상 업소와 용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용자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용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대출 금리는 은행과 약정하여 정하며,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용자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포함):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③ 시설개선자금의 용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시장은 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용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용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4. 대출당시의 시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⑤ 그 밖에 용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지한 용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에 있는 수탁금융기관의 본점이나 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대출받은 식품위생업소가 있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과 구청장은 용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용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 보상금의 지급) ① 위해식품 등의 신고 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한 후 지급한다. 다만, 행정처분청에서 해당 신고사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완료 전이라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2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감시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3. 같은 사람이 보상 받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고하는 경우

제2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77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원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본다.

② 종전의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의서

고지서발행번호 제 호			담당자		식품진흥기금 출납원		식품진흥기금 운용관	
발 의	년 월 일	①						
발행고지서	년 월 일	①						
납 부 기 한	년 월 일	①						
정수부등기	년 월 일	①	납 부 자 현 황	업소명	업주명	소재지		전화번호
고지서번호	년 월 일	①						
적 요				항				
- 위반사항 :			세 항					
			목					
			납부금액 : 금 원					
- 산출근거 :			(₩ )					
- 계 : 원								

[별지 제2호서식]

원 부 ( 청주시금고은행용 )	납입통지서 ( 고지서발부행정기관용 )	납부위탁서 ( 수납은행용 )	영 수 증 ( 납부자용 )
회계연도 :            년도 건 명 : 식품진흥기금 납부은행 : 납부기한 :       .       .       까지	회계연도 :            년도 건 명 : 식품진흥기금 납부은행 : 납부기한 :       .       .       까지	회계연도 :            년도 건 명 : 식품진흥기금 납부은행 : 납부기한 :       .       .       까지	회계연도 :            년도 건 명 : 식품진흥기금 납부은행 : 납부기한 :       .       .       까지
<b>입금계좌</b>	<b>입금계좌</b>	<b>입금계좌</b>	<b>입금계좌</b>
<b>입금계좌 :</b> <b>(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b> <b>( ₩                   원 )</b>	<b>입금계좌 :</b> <b>(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b> <b>( ₩                   원 )</b>	<b>입금계좌 :</b> <b>(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b> <b>( ₩                   원 )</b>	<b>입금계좌 :</b> <b>(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b> <b>( ₩                   원 )</b>
<b>계 : 금                   원</b> <b>( ₩                   )</b>	<b>계 : 금                   원</b> <b>( ₩                   )</b>	<b>계 : 금                   원</b> <b>( ₩                   )</b>	<b>계 : 금                   원</b> <b>( ₩                   )</b>
발부기관 : 발행번호 : 납부 업체명 : 납부자 주소 :	발부기관 : 발행번호 : 납부 업체명 : 납부자 주소 :	발부기관 : 발행번호 : 납부업체명 : 납부자 주소 :	발부기관 : 발행번호 : 납부업체명 : 납부자 주소 :
납부자 성명 :	납부자 성명 :	납부자성명 :	납부자 성명 :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관 귀하	년   월   일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관 (인) 수납은행 귀하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시금고(은행)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주 소		⑦전화번호	
사업장규모	⑧영업장 면 적	m <sup>2</sup>	⑨자산총액	천원
업 종		⑩대출희망 은행	은행 지점	
자금용자 신청내역	⑪실소요 금 액	⑫용자신청금액(원)		⑬비율(⑪/⑫)
<p>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b>청주시장 귀하</b></p> <p>구비서류</p> <p>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p> <p>2. 영업허가증 사본 1부</p>				

[별지 제4호서식]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주 소		⑦전화번호
사업계획	⑧사업기간		
	⑨사업내용	-	
		-	
<p>위와 같이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b>청주시장 귀하</b></p> <p>구비서류</p> <p>1. 사업내용 관계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1부</p>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금 대출 추천서

업 체 명 (업 소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대출금액 : 금                      원(₩                      )
- 대출기간 :
- 신청기간 :                      까지

귀하는    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금 대상자로 선정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은행 ○○지점에 대출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간까지 융자금을 받지 못하거나, 융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

1. 대여금액 : 금 \_\_\_\_\_ 원(₩ \_\_\_\_\_ )

2. 자금구분 :           자금

3. 대여기간 :

4. 이자율

○ 대여금리 :                   연                   %

○ 대출금리 :                   연                   %

5. 상환조건

6. 그 밖의 사항

위 금액을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주시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대출업무 위탁약정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상황보고서( 분기)

가. 총괄

구분	대여금 관리 현황			분기대출 현황			분기회수 현황			비고
	계	기대출 총액	잔액	대출액	미 대출액	사유	회수액	미 회수액	사유	
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업 소 명	대 표 자	업 종	용 자 결 정 액	은 행 승 인 액	전 월 말 잔 액	월중 대출및회수				연 체 액	금 월 말 잔 액	상 환 예 정 일	비 고
						대 출		회 수					
						일자	금액	일자	금액				

[별지 제8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융자금액	원	대출일자		대출금리	

○ 상환내역

년월일	적 요	상환금	원금잔액	이자불입액	이자누계	회 수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안

의안 번호	16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문화상 조례」와 「청원군 군민대상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를 제정함.
- 시상부문 5개 부문 (안 제2조)
- 청주시민대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시상시기 및 방법 (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의 창달,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청주시 시민대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청주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국외에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크게 빛낸 사람에게 특별 공로상을 줄 수 있다.

1. 지역사회
2. 문화예술
3. 체육교육
4. 산업경제
5. 사회복지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시상부문별 1명으로 하며, 이에 상응하는 공적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대상자의 자격) ① 수상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2. 같은 부문의 수상 경력이 있는 자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장
2. 각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장
3. 구청장
4.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각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시민대상 시상 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시상은 매년 시장이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상자 예우) 시장은 시민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민대상 부문의 각종 행사 시 초청
2.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786호 청주시 문화상 조례, 청원군 군민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청주시와 청원군 거주자와 사업장 근무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주시 거주자와 사업장 근무자로 본다.

# 청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6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문화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불임

## 청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 19조에 따라 청주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문화원”이란 청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청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문화원의 사업) 청주시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국외 교류

-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청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 ① 청주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청주시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60호 청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의안 번호	16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를 「청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로 제정함.
-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라 청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

②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안의 건물주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과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변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시설물 및 도로구조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등 옥외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모든 환경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공연·전시시설, 조명시설 등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6조(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실과 서예원
2. 화랑과 필방
3. 도자기 전시와 판매
4. 토산품과 민속가구 판매
5. 서점(예술과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안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와 문화 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의 거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기업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의 범위는 해당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상가변영회나 문화의 거리 개발업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용과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조건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계획) 위탁운영자는 매년 각 시설별 운영 프로그램과 소요예산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운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53호 청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 문화의 거리 연간 운영계획서

□ 운영목적

□ 운영개요

- 기 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 세부 추진계획

시 설 별	추진기간	프로그램명	내 용	참여인원	소요액	비고
계						

□ 문제점 및 대책

□ 기대효과

※ 본 서식은 현황에 맞게 적의 조정할 수 있음

#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6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제정함.
-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손해배상에 관한사항 (안 제13조)
-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사항 (안 제14조)
- 위탁운영자의 의무에 관한사항 (안 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 144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조성한 청주시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칭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관람실
2. 문화창작실
3. 문화사랑방
4. 문화시청각실
5. 개인연습실
6. 정보자료실
7. 유아놀이방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영화,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의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요원) ①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자료의 정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설 운영자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의 비치)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 이용자 기록부

2. 도서, CD, 비디오테이프 등 관련자료 대출기록부
3. 시설물 및 기자재 보유현황 및 점검 기록부
4. 종사자(직원 및 자원봉사자) 현황 및 근무기록부
5. 프로그램운용(연간, 월간, 주간) 계획 및 실시기록부
6. 도서구입, 기자재구입, 프로그램 운용예산 관리기록부
7.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사항 등

제8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10시부터 20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단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제9조(휴관) ①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
2. 매주 월요일
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의 집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신청) ①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자는 즉시 신청수락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등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③ 제1항의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문화관람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11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① 시장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조치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청주시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문화의집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문화관람실의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의 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문화의 집 및 그 밖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4조(관리 및 위탁운영) ① 시장은 문화의 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탁운영자와 시장이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자는 매년 문화의 집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위탁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의 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자의 의무)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위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잃어버렸을 때에는 위탁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인건비, 자료구입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의 집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09호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별표]

**문화의 집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계	2개소
청주문화의 집	<u>청주시 상당구 대성로6번길 18(석교동)</u>
흥덕문화의 집	<u>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사직동)</u>



[별지 제1호서식]

문화관람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전화번호	자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H·P	
	주소				
신청사항	사용목적 (용도)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간)
	변경신청	신청사유 :			
		변경사항 :			
관람료					
기타서류	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팸플렛 1부				
<p>「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소 :</p> <p style="text-align: center;">단체명 :</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p> <p>청주시장(위탁운영자 ○○○)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 작 품 목 록

작 품 명	규 격	작 가 인 적 사 항				비 고
		작 가 명	주 소	현 직	연 락 처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별지 제3호서식]

### 문화의 집 이용자 기록부

번호	월일	성 명	연령	주 소	전 화	이용공간 (해당란에 ○표)					
						정 보 자료실	시 청 각 실	문 화 창작실	문 화 사랑방	인터넷 부 스	기타

[별지 제4호서식]

### 문화의 집 각종자료 이용자 기록부

번호	월일	자 료 이 용 신 청 자				대여 시간	반납 시간	반납 확인	비고
		자료명	수량	성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

<b>문화의 집 운영 위탁신청서</b>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전화번호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단체명			
<p>「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50px;">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청인 :   (인)</p> <p>청주시장 귀하</p>			
붙임서류	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수수료
	2. 사업계획서		없음

[별지 제6호서식]

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전화번호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간	당초		연장		
사유					
단체명					
<p>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 운영기간을                      「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 (인)</p> <p>청주시장 귀하</p>					
붙임서류	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수수료	
	2. 사업계획서			없 음	

#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6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조 례 안 : 불임**

##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충청북도지정 무형문화재 배첩장의 기능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청주시배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주시배첩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41번길 40(봉명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배첩기법 특히, 충청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배첩장의 기능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후계자 양성과 시민홍보 교육장을 말한다.
2. “배첩장”이란 충청북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제7호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첩의 제작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배첩장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3. 전통배첩기술의 재현 및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맞는 배첩장 기능보유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시장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전수교육관을 개관하며 전수교육관 내의 시설물과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전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2.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 시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개관시간) 전수교육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343호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6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 제2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 제319호 청주신봉동백제고분군의 관리·운영과 연구·홍보를 위하여 건립한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438번길 9(신봉동)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신봉동백제고분군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주시 백제유물·유적에 대한 연구와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물전시관 설치 및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청주시장은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목적에 적합한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같다.

③ 청주시장은 위탁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186호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 청주시 총렬사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6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총렬사 관리 조례」를 「청주시 총렬사 관리 조례」로 제정함.
- 청주시 총렬사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주시 총렬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충렬사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기념물 제16호 동래부사 송상현 충렬사 일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주 충렬사(이하 “충렬사”라 한다)는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산 1-33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충렬사 관리에 따른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렬사 일원의 사당, 전시관 및 시설물과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충렬사 관람자의 편의 도모와 통제 등에 관한 사항
3. 충렬공 송상현의 위업 홍보와 전승에 관한 사항
4. 충렬사 제례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목적에 적합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내 행동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음식물 취사 행위
2. 시설물과 수목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설물 관리와 관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총렬사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시설물과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총렬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2. 전시계획 변경으로 전시품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수·보수에 필요한 시간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개관시간) 총렬사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199호 청주시 총렬사 관리 조례는 폐

지한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6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제정함.
-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투자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4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14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사업의 추진, 문화산업 지원육성 및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사업"이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창조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지식산업"이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연구 개발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적 정신활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4. "문화산업단지"란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5.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이하 "투자조합" 이라 한다)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제3조(법인의 설립·운영) ①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② 재단에는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④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2. 문화사업관련 부대사업 시행과 관련시설물 관리·운영
3. 문화산업단지 관리·운영과 시설물 관리
4. 창업보육 지원사업
5. 연구개발 지원사업
6. 마케팅활동 지원사업
7. 문예진흥 지원사업

8. 전문인력 양성사업
9. 투자조합의 결성
10. 지식산업 지원사업
11. 문화산업관련 기업 육성사업
12.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1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1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성) ① 재단의 설립·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의 지원금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기관, 단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사업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투자조합에 출자할 목적으로 출연된 재원은 다른 경비로 전용(轉用)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출연금 등의 지원)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

원할 수 있다.

제8조(투자조합의 운영·지원) ① 투자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투자조합의 결성을 목적으로 시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결성계획 또는 사업계획과 운용방법 등을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재단이 제출한 투자조합의 결성계획이 지원목적에 들어 맞다고 인정되면 시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투자조합의 수익금 처리 등) ① 투자조합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익금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자조합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保全)
2.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 편입
3. 재단의 운영경비 충당

② 투자조합이 운용기간 도래로 해산될 때에는 정산결과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금액을,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금과 청주시금고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할 경우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



나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운용) 재단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및 사업실적을 재단에서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재단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행정지원) 시는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장 등의 사용) 문화사업 및 문화산업단지의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문화사업 및 문화산업단지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에 귀속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사업 및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95호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청주시 문화산

업진흥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6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한국공예관의 기능(안 제4조)
- 한국공예관의 운영(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의 발달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조성한 청주시 한국공예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한국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7 (운천동)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관"이란 사무실, 전시실, 회의실, 실습실, 정보센터, 판매장 및 부대시설과 비품 일체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대관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공예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현대, 생활공예품 및 문화상품 판매
2. 소장공예품 및 공예작가들의 작품 전시
3. 실용적 공예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중 운영
4. 공예 관련 정보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이용객 콘텐츠서비스 제공

5. 공예 관련 회의, 세미나 등 개최

6. 그 밖에 공예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용허가) ① 공예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예관 시설 사용허가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시장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6조(사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하는 사용료를 선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휴관) ① 공예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설날, 추석
4.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관람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권) 사용자가 유료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청주시(이하 “도·시”라 한다)의 주최·주관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시에서 후원하는 공예 관련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개월 전 취소 시에는 전액 반환
2. 사용일 15일 이전 1개월 이내 취소 시에는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3. 사용일 15일 이내 취소 시에는 2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4. 청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중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5.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탁운영자와 시장의 협약에 따라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 설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자는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에게 공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58호 청주시 한국 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별표]

## 청주시한국공예관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 1. 시설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전시실	1㎡당 1일	15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2. 부속설비사용료

시설명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냉난방	1전시실	1일	40,000	
	2전시실	"	30,000	

[별지 서식]

## 청주시한국공예관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연 락 처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행 사 명 칭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사 용 목 적 주요행사 내용				
입장료징수유무		유 , 무 (유료인 경우 : 원)		
사 용 허 가 변 경 내 용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사 유				
비 고		필요시 행사계획서 첨부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서명, 날인                 </div> 청 주 시 장 귀하				

#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

의안 번호	17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를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로 제정함.
-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관광진흥시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지 등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비밀보호)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얻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광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1호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관광진흥자문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문화관광해설사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청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

설 활동을 한다.

제5조(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및 오

후 3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심화교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의안 번호	17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로 제정함.
- 청주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안 제3조~제5조)
- 청주시 향토유적 지정에 관한사항(안 제7조~제10조)
- 청주시 향토유적 보존 및 관리에 관한사항(안 제11조~제1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유적(비지정 문화재)을 보호·관리하여 계승 발전시켜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적(비지정 문화재)”이란 「문화재 보호법」 및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향토적,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
2. 향토문화, 토속, 풍속 등을 연구 또는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
3. 동식물, 광물 등 지질학적, 생물학적 생성물과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향토유적으로써의 보존가치가 있는 것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주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간사는 문화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의 보호구역 설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적의 수리, 복구, 이전 및 주변의 행위제한, 시설물 설치, 지장물 제거 등 향토유적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유적 보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① 유형·무형의 향토유적으로써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적이 망실, 훼손 등으로 향토유적으로써의 가치가 상실되었을 경우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지정기준) 향토유적의 지정기준은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으로써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 ①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향토유적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구역지정기준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는 향토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유적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2. 유적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
3. 그 밖에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지장이 있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이 여건변동으로 필요성이 없을 경우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고시) ①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및 보호구역 설정과 해제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같다.

②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 시장은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향토유적 지정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적 지정서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적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소유자 또는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적은 보호 관리에 적정한 개인, 단체, 법인 또는 소재지 구청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존관리) 시장 및 향토유적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변형이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시장은 향토 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3. 유적과 보호구역안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매수요구 또는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장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유적 또는 그 주변에서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유적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향토 유적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 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점검) 시장은 향토 유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 보조 등) ① 시장은 향토유적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미술, 조각, 공예, 서적, 등 이동이 가능한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 유적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등을 문서, 영상, 음향, 사진 등으로 기록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기록부 작성) 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향토 유적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관리 기록부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계도 등)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내역과 사유를 주민에게 계도하여 향토유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존관리에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향토유적 보호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적 제 호

## 지 정 서

위 치 :

명 칭 :

수 량 :

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관리자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위 사항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 향토 유적 지정서 발급대장

지정 번호	유적명	지 정 연월일	소재지 또 는 보관장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호 구역	전화 번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별지 제3호서식]

(전면)

### 향토유적관리기록부

지정번호 :

명 칭		수량		소재지	
지 정 년월일				연락처	전 화
					핸드폰
소유자	주소			관리자	주소
	성명				성명
지정 내역		보호 구역		보수 실적	

<현황사진>

(후면)

### 향토유적관리기록부

문화재명 :

점 검 년월일	점 검 결 과	점 검 자		비 고
		직급	성명	



#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요금 및 관람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9조)
-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안 12조~제2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의 관리·운영 및 관람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이란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7세 이상 13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경”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을 말한다.
4.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서 경로우대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이하 “문화재단지”라 한다)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람료”란 문화재단지를 관람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납부해야 할 요금을 말한다.
9. “주차료” 문화재단지 주차장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관람료 등 징수)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단지 이용객에게 관람료 및 주차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주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거나 장려하는 행사시에는 그 기간 동안 이용객에게 관람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관람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한다.

② 관람료 등 주차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요금표 등 게시) 시장은 관람요금표와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관람료 등은 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의 매표소에서 관람권, 주차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② 관람권 및 주차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관람료 등 납입) ① 징수한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예에 준하여 다음 날까지 청주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단지 관리·운영자는 관람료 등의 징수현황 등을 다음 달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 등 반환)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주차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7세 미만의 자 및 65세 이상인 자
  2. 국민과 외교사절 및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문화재단지에 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사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상자 가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른 관람료 면제대상자. 이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음주 만취자
3. 타인이나 시설물에 위협을 주는 자
4. 그 밖에 문화재단지의 안전관리에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문화재단지의 관리) 시장은 문화재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문화재단지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파손하는 자에게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개장시간) 문의문화재단지 및 주차장의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절기(5월~9월): 09:00~20:00
2. 동절기(10월~4월): 09:00~18:00

제13조(휴무일) 문화재단지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추석, 설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장하며 다음 날을 휴무일로 한다)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관람이 곤란한 경우. 다만, 필요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개장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재단지 전체 또는 일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주차장관리 운영을 개인, 법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자에게 필요한 임대료 징수 및 필요한 시설을 명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탁운영자와 시장이 협약에 따라 결정하며, 협약기간 만료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자는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위탁취소) 시장은 위탁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문화재단지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 할 때

제16조(임대료 징수) ① 문화재단지 임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임대료는 임대계약 시 선납하여야 한다.

제17조(임대료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임대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3. 문화재단지 홍보차원의 방송 및 영화촬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수탁대상자) 문화재단지 안 시설물을 수탁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관련단체에 등록하였거나 학교 등에서 문화예술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재단지의 운영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을 시장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도난·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계약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와 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처분, 계약사항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것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별표]

## 관람료 및 주차료(제3조제2항 관련)

### 1. 관람료

(단위 : 1인당/원)

구 분	어 린 이 (초등생포함7~13세)	청소년 및 군인 (14~19세, 하사 이하 군인)	어 른 (20~64세)	비 고
개 인	500원	800원	1,000원	
단 체	300원	600원	800원	
개 인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주시로 등재된 자	250원	400원	500원	
단 체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주시로 등재된 자	150원	300원	400원	

### 2. 주차료

(단위 : 원)

구 분	당일(주간)	비 고
대·중형버스 (13인승 이상)	2,000	※ 그날 18:00까지
소형승용차 (12인승 이하)	1,000	※ 경승용차 50% 할인
화물차	4톤이상	2,000
	4톤미만	1,000
대·중형버스 (13인승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주시로 등재된 자	1,000	※ 그날 18:00까지
소형승용차 (12인승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주시로 등재된 자	500	※ 경승용차 50% 할인
화물차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주시로 등재된 자	4톤이상	1,000
	4톤미만	500

[별지 제1호서식]

## 관 랑 권

(앞면)

<p>문의문화재단지관람권</p> <p>(원 부)</p> <p>발행번호 :</p> <p>구분 : 개인, 단체 명</p> <p>요금 : 원</p> <p>취급자 : (인)</p> <p>년 월 일</p> <p>청 주 시 장</p>	<p>문의문화재단지관람권</p> <p>(발 행)</p> <p>발행번호 :</p> <p>구분 : 개인, 단체 명</p> <p>요금 : 원</p> <p>취급자 : (인)</p> <p>년 월 일</p> <p>청 주 시 장</p> <p>(그 날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p>
--	--

(뒷면)

<p>안 내 도</p>	<p>문의문화재단지 안에서 주의사항</p>
--------------	-------------------------

[별지 제2호서식]

## 주 차 권

(앞면)

<b>문의문화재단지주차권</b> (원 부) 발행번호 : 차 종 : 승용차(대형, 소형, 경차) 화물차(4톤 이상, 4톤 이하) 이륜차 주차기간 : 그날 18:00까지 요 금 : 원 취 급 자 : (인) 발행일자 : 년 월 일 청 주 시 장	<b>문의문화재단지주차권</b> (발 행) 발행번호 : 차 종 : 승용차(대형, 소형, 경차) 화물차(4톤 이상, 4톤 이하) 이륜차 주차기간 : 그날 18:00까지 요 금 : 원 취 급 자 : (인) 발행일자 : 년 월 일 청 주 시 장
---	---

(뒷면)

안 내 도	문의문화재단지 안에서 주의사항
-------	------------------

[별지 제3호서식]

## 입장료 및 입장객 징수현황(   년   월)

(단위 : 명, 원)

구 분	월인원	월금액	연누계인원	연누계금액
개인(일반)				
단체(일반)				
개인(시민)				
단체(시민)				
유료입장 소계				
무료입장 소계				
합 계				

#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7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립대청호미술관 관리운영 조례」를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관리·운영 조례」로 제정함.
-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대관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설치 및 운영

제2조(전시실 설치)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4조(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월~4월: 10:00~18:00
2. 5월~9월: 10:00~20:0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은 문의문화재단지 입장객에 한정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초대전 등 특별전을 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별도 징수할 수 있다.

②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를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미술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일반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대관자는 시장에게 관람료 징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관 운영상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 및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모든 물품 및 인력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전체 및 일부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자에게 필요한 임대료 징수 및 필요한 시설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 할 경우 이 조례 규정 외의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장 소장품 관리

제10조(소장 작품의 구입)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대청호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소장품 관리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품으로 관리한다.

1. 구입하거나 관리 전환 된 미술작품



2.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국외 우수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3. 그 밖에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제12조(소장품 관리) 소장품은 소장품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은 수장고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소장품 이용)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 1에 준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소장품 대여) 시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대여신청)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대여의 결정)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 진흥을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을 자는 대여 전달까지 보험가입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가진다.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대여 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인수) 제16조에 따라 작품대여를 허가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여 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9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① 작품을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0조(작품불용결정) 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청호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1조(매각 및 폐기)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 제4장 자문위원회 운영

제22조(설치)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청호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수집 대상 작품의 선정 및 수집 여부 결정
5. 수집대상작품의 적정 가격 산정
6. 초대전 등 특별전 개최 시 입장료 징수 여부 및 입장요금
7. 그 밖에 작품 수집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미술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미술전문인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25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2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작품수집 관련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9조(실비보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대관

제30조(대관)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술관 운영 방침에 맞게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전시 등을 위하여 전시실 등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대관의 범위) 미술관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 허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전시실
2. 부속설비: 냉난방 설비, 기자재

제32조(사용시간) ① 미술관 시설의 대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월~4월: 10:00~18:00
2. 5월~9월: 10:00~20:00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중 일부시간만 대관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3조(대관일수 산정) 대관일수에는 전시 기간 중 작품설치, 휴관기간은 제외한다.

제34조(대관허가) ① 전시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서를 전시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관 관리·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시장은 전시일 5일 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시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제39조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의 관리·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대관료) ① 제34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 개시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와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전시실 등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대관료는 별표 2와 같으며 납입고지서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 개시일 5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 개시일 4일 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80퍼센트 반환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50퍼센트 반환. 이 경우 1개월 이상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 해당금액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37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시실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감면: 청주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반액 감면: 청주시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제38조(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시장은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받아 이미 대관된 전시실 등의 사용 중지와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할 때
2. 제3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4. 제36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4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

제41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①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자가 대관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회복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장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장

제42조(관장) 시장은 미술진흥과 미술관 발전을 위하여 청주시립 대청호 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무 및 임기) ① 관장은 대청호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4조(실비 보상) ① 관장이 미술진흥 및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상시 근무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장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9조에 따른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립대청호미술관 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중이거나 대여신청서 접수 중인 것은 이 조례에 따라 대여 및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청호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소장품 이용료**(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사 진 촬 영	1점	10,000원	
사진원판사용	1매	5,000원	

[별표 2]

**대관료**(제36조제3항 관련)

구 분	사 용 기 준	단 위	금 액	비 고
전시실	1일 (조례 제4조에 따른 관람시간 기준)	실	30,000원	대관시간 중 일부시간 사용 한 경우 1일 사용한 것으로 본 다.
냉난방 등	시간당 적용	실	20,000원	

[별지 제1호서식]

### 소장품 대여(열람)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대여작품	관리번호	부문	작가명	작품명	제작년도	규격	비고
대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여받는 사 유							
<p style="text-align: center;">「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 소장품 대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청인 성명 (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50px;">대청호미술관장 귀하</p>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소 장 품 인 수 증

	관리번호	부 문	작가명	작품명	제작년도	규 격	비 고
대여작품							
대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여조건	1. 2. 3.						
<p>「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상품을 인수합니다.</p> <p>년 월 일</p> <p>인수자 성명 (인) (전화번호: ) 주소</p> <p>대청호미술관장 귀하</p>							

#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7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위원회 기능 및 역할(안 제2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제13조)
- 사업비의 확보 및 집행방법(안 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친환경 농산물인 청원생명브랜드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청원생명축제를 추진하고자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과학과 친환경 농업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청주를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및 역할) 청주시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축제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4. 실무추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심의·의결
5. 그 밖에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축제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사안이 있을 때
4. 그 밖에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이 필요

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실무추진위원회 구성)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축제와 관련된 실무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실무추진위원회 기능)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축제 세부운영에 관한 협의
3. 축제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축제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등

제10조(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실무추진위원회 회의) ①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지시가 있을 때
2.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실무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사안이 있을 때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축제추진위원이나 실무추진위원,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3조(상황실) ① 시장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축제의 세부적인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축제상황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실무

2. 시장의 지시사항이나 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임사항
  3. 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 등 모든 실무 보조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실무 등
- ③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두며,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 제14조(사업비의 확보 및 집행방법) ① 시장은 사전에 축제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위원회에 보조하여 집행하게 하거나 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기관·단체에 지원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서 집행하는 세입·세출은 국가 및 청주시의 보조금 및 지원금, 수탁사업자 등의 자체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④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별도 지정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사업비의 보조·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축제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한다.

제16조(실비변상) 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과 자문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축제와 관련한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청원생명축제 추진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7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옹기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충청북도지정 옹기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청주시옹기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주시옹기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안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옹기기법의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후계자 양성과 시민홍보 교육장을 말한다.
2. "옹기장"이란 충청북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제12호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기의 제작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옹기장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3. 전통옹기 기술의 재현 및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수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따른 옹기장 기능보유자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전수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 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취소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용기장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전수교육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용기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 청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교육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체육진흥협회의의 기능(안 제2조)
- 체육진흥협회의의 구성(안 제3조)
- 체육진흥협회의 위원 임기(안 제4조)
- 체육진흥협회의의 개최시기, 방법(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에 두는 체육진흥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청주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청주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1명 또는 중학교·고등학교 체육교사 1명, 청주시체육회 부회장 중 1명 또는 사무국장 그리고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 기관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7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교육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청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로 제정함.
-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장애인 체육동호회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장애인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활용하는 자발적·일상적·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생활체육클럽"이란 청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 생활체육클럽) ① 장애인 생활체육클럽(이하 "생활체육클럽"이라 한다)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1. 생활체육클럽 종목별 장애인 7명 이상의 상시 구성원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

② 생활체육클럽 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 체육지원) 청주시장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청주시장은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 체육관련 체육회가 승인 또는 추천하는 단체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클럽과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전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87호 청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교육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보조 기준액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6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 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교육경비업무담당국장 1명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 공무원 2명

4.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3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과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보조금 지원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액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장(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신청서와 교육장의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사업의 결정 순위 등) ①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는 학교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  
례, 청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비보  
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청원  
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 집행된 교육경비는 이 조  
례에 따라 신청,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교육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청원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학교급식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4조, 제5조, 「유아교육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과 아동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및 우수한 우리지역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자에게 학교나 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이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
  -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증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

3. "급식경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산물·수산물·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인건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제1호의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을 말한다.
6.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과 수급 등에 필요한 활동과 학교급식지원의 정책개발, 식생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상급식의 시행에 대한 계획과 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수급 지원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급식프로그램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운영 및 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의 우수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또는 식재료 구입비를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시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며, 고등학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

고, 시장은 이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의무) 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급식경비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며, 고등학교는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 공급자는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자에게 급식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시장의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취소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와 지원 절차
2.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급식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제9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면 지역과 동(洞)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한다.

1. 청주시 부시장
2. 청주시 학교급식담당국장
3. 청주교육지원청 학교급식담당국장
4. 청주시의회 추천 의원 2명
5.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3명
6. 농업인단체 및 친환경 농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농업인 2명
7. 교원단체 추천 1명
8. 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1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시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학교급식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청원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청원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결정·집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후에도 통합전 청원군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은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종전대로 유지한다.

#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교육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공부방 설치 및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부방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 공부방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공부방"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개인·단체 등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발전시키고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위탁"이란 시의 공부방 사무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제3조(공부방 설치 및 선정)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부방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기존 공부방의 이용률 및 주변 지역의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재정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재정 형편상 공부방의 신설이 어려울 때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공하는 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부방을 설치하여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공부방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 중 부대시설 확보 가능 여부와 접근 용이성 및 잠재적 수요예측 등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기준) ① 공부방의 시설은 각종 도서와 휴식공간 확보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부방의 면적은 최소한 6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열람석(독서대 및 좌석)은 30석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별도의 자원봉사실(상담실 겸용)이 있어야 한다.

③ 독서분위기 조성에 필요할 경우 칸막이, 별실 등을 설치하여 열람 좌석을 남녀로 구분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시장은 공부방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내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부방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부방을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매년 공부방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는 사용료 및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부방 위탁운영과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공부방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공부방임을 알 수 있도록 ○○○읍·면·동 청소년 공부방이란 현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시간) ① 공부방은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은 공부방별 여건에 따라 시장과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일주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시간표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공부방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수탁자는 공부방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공부방에 공부방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부방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2. 공부방 분위기 쇄신을 위한 협의
3. 위원회를 통한 자원봉사자 확보
4. 공부방 운영실태 분석 및 연말결산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의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지역인사,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위촉 및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요원) ① 수탁자는 대학생, 퇴직공무원 및 교사, 주부 등을 활용하여 공부방에 1명의 상근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1~2명의 일일 보조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상근자를 채용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상근자는 청소년들의 학습지도와 생활고충 상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④ 상근자는 공부방 분위기를 해치는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매일 운영 일지를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홍보) ① 시장과 수탁자는 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보를 비롯한 각종 소식지에 공부방 명칭, 위치, 열람좌석 등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안내전단을 제작하여 지역 내의 학교, 학원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중점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매분기 종료 후 운영에 관한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필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이나 각종 서식을 제작하여 수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을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부방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조치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15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조례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공부방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교육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
- 쉼터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소년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주시 청소년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쉼터"란 가출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사회로의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3. "위탁"이란 청주시 청소년쉼터(이하 "쉼터"라 한다) 사무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청소년 단체에 맡겨 그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와 기능) 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적극 발견하여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시 보호(숙식제공), 상담 및 선도 활동
2. 가출 예방에 관한 사업
3.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4. 사회봉사 활동과 취미, 문화체험활동 사업
5.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6.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와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시설기준 등) ① 컴퓨터의 설치·운영은 청소년의 성별로 분리하여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컴퓨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방법)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컴퓨터의 관리·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시 관내의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  
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컴퓨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컴퓨터의 보조금과 위탁계약에 따른 재산과 물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컴퓨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단체 선정) ① 시장은 공개공모를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  
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년 2회에 걸쳐 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수입과 지출서를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컴퓨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컴퓨터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컴퓨터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시장은 컴퓨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마다 컴퓨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컴퓨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용 청소년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지원 사항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의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지역인사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위촉 및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요원) ① 수탁자는 상담·선도기능 향상을 위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운영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요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컴퓨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매분기 종료 후 운영에 관한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와 수탁관리 시설물에 출입하여 서류 등 관련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과 각종 서식을 제작하여 수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와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쉼터의 기능에 위배된 경우

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15일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컴퓨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별표 1]

**시설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일시쉼터

- 이동형의 일반기준(의료특화형 이동쉼터 포함)
  - 10명 이상의 청소년이 탑승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기본으로 함
  - 이동형 쉼터 운영 시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

가) \* 유형별 시설기준

구 분		이동형 일시쉼터
기본 구성		이동형 차량(상담, 휴식 등)
상담 시설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위기 개입	생활, 조리 시설	간편 조리시설 (전자레인지, 냉온수기 등)
	휴게시설	휴게 좌석(소파, 간이침대)
	응급처치	치료약품 구비
문화 시설	정보공간	정보 부스(인터넷PC)
	문화공간	만화, 도서, 잡지 배치 영화관람용 DVD, TV 배치 게임기(플레이스테이션 등) 보드게임 배치
업무 시설	사무공간	업무용PC 배치

○ 단기쉼터

- 일반기준

- 숙식, 단체활동실, 상담실, 사무실 등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입소인원 당 건물 연면적 13.22㎡ 이상)
- 모든 쉼터는 보호시설 체계에 알맞은 수행기능 및 제공서비스를 고려하여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구비하여야 함.

구분	기준	주요내용	기타
위치		-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 - 가출청소년 밀집지역과 근접한 곳 - 안전과 생활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	
침실	정원 1인당 3.3㎡	- 채광과 환기가 잘 될 것 - 난방과 냉방이 가능할 것 - 소음이 많지 않을 것 - 실무자가 쉽게 살필 수 있는 곳 - 문은 안에서 잠길 수 없도록 할 것	1실 당 4명 이하
식당(조리실 포함) 및 욕실		- 식당 벽, 바닥 등이 파손되지 않고 식당내부에서 악취가 나지 않으며 모든 물품들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가 양호할 것 - 365일 온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단체활동실	66㎡	-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배치될 것 - 다용도로 상용될 수 있도록 공간배치	
상담실	16.5㎡	- 개별상담 및 집단 상담이 가능할 것	
사무실	직원1인당 3.3㎡		

- 법정사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 숙식시설(침실, 식당 및 욕실 포함)
    -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구비하고 상당수준의 일조량을 확보하며, 남·녀 청소년이 동일건물의 동일 층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구분 설치
  - 단체활동실 1개소
  - 상담실 1개소
  - 사무실 1개소

[별표 2]

**청소년쉼터 종사자 배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
		10명미 만	10~15명 미만	15~20명 미만	20~25명 이하	
소 장	1	1	1	1	1	1
실장(부장)	-	-	-	1	1	
보호·상담원	이동 4 (아웃리치전 담 2명)	2	3	4	5	2
고정 6 (야간보호자2 명 추가)	-	-	-	-	-	
행정원	1	-	1	1	1	-
취사원	-	-	-	1	1	-
총 계	6(이동형) 8(고정형)	3	5	8	9	3

\* 동 기준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다만, 기 운영 쉼터의 종사자 인건비 감액은 불가)

\* '12년에 고정형 일시쉼터에 야간보호 전담인력 2명 신규 배치(이에, 고정형일시 8명)

#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8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교육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와 「청원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청소년육성사업 등을 위하여 지원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구성)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8년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청소년자립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급 대상자의 선발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우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수당지급)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면 지역과 동(洞)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동수(同數)로 한다.

1. 청소년단체 임원

2. 청주시의원

3. 학부모

4.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부서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청주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며, 여유자금



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 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출납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청소년업무 담당주사

제9조(기금지급대상 등) ① 기금의 지급대상은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학자(진학) 지원금: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일반대학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격 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기·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② 관할구역 청소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청소년 교류사업
3.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③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대상자추천 및 선발) ① 대상자는 읍장·면장·동장이 제9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청소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읍장·면장·동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불량이나 지원목적 외 사용 등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 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용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96호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청원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자립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8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교육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원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원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수련시설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수련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을 위한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운영·보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지도 및 상담활동
4. 수련시설 사용료 징수

5.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시설의 이용)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외의 자

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제6조(운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 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 ①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건 제공,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화재보험을 시장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청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 및 제8조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해당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제11조(이용제한 및 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12조(사용료 등)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종료 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교재대, 외래강사 초빙 시의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식대는 그러하지 않다.

1. 청주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면제
2.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전액면제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 행사, 청소년단체 설립목적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사용할 때: 50퍼센트 감면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과 사용허가 신청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청주시와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을 때: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시설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3. 신청인이 사용 5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하는 경우로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전액
4.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계약(납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5조(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 철거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

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원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위탁

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별표 1]

**청주시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51번길 56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 751-56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청주시 상당구 수암로 20번길 4-8	

[별표 2]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원)

1.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이용시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강 당	1일 4시간	250,000	325,000	1시간 초과마다 30,000원 가산 ※ 부과세 별도
헬스장	월 회비	25,000	25,000	회원제 운영(비회원 1일 이용 시는 2,000원)
독서실 (열람실)	1인당 1일 입장 시	300	400	
음악감상실 (다목적실)	1일 기본4 시간	30,000	39,000	기본 1시간 초과마다 10,000원 가산

※ 야간은 일과시간 이후부터 22:00까지를 의미하며,  
일반인 및 야간 이용 시는 상기 이용기본료에 3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이용시간	청소년	일반	비 고
숙박실	1인 1숙	8,500	12,000	○ 단체 및 유스호스텔 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숙박료에 한정하여 10% 할인
식 대 (1인 1식)	1인 1식	4,000	5,000	
수련활동비 (1인/박)		7,000		단위프로그램요금 적용
분임토의실		100,000	130,000	※ 강당사용 및 분임토의실 사용기준 6시간 - 1시간 초과 시 별도 요금 부과(20,000원)
소강당		150,000	180,000	
중강당		200,000	250,000	
대강당		250,000	300,000	
야외공연장		100,000	130,000	
캠프화이어장		100,000	130,000	



[별지 제1호서식]

##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용목적			
주 시 설			
사용시설			
부대시설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참가예정인원	
	~ 20   년   월   일		
사 용 자	주소또는단체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전 화 번 호
행    사	행 사 명		
주요계획	행사개요		
<p>「청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또는날인)</p> <p>청주시장   귀하</p>			

##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서

1. 신청자  
○ 주소 :  
○ 성명 :
2. 사용목적 :
3. 사용시설 :
4. 사용기간 :
5. 준수사항 :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직업(단체)명	
사용시설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참가예정인원		
	20   년   월   일			
감면종류	전 액    일 부			
감면사유				
<p>「청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또는날인)</p> <p>청주시장   귀하</p>				

##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감면증인서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직업(단체)명	
사용구분				
사용목적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참가예정인원		
감면종류	전액		일부	
감면사유				
<p>「청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 주 시 장 (직 인)</p>				

# 청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8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교육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와 「청원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무원과 민간인 각 1명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서장과 청주시의원, 학부모,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 받는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청원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8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교육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청원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통합자원체계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2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제3조(기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

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구축 운영
5.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사업
6.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7.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복지지원
8.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긴급구조, 자활, 재활, 법률,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
9.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4조(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되돌려 줘야 한다.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④ 시장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7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청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 구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



## 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

### 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청주시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2.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3.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4.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개정 제안
5.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실행위원회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협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모색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제10조(지원단 설치) 각급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보호를 위하여 1388청소년 지원단을 각각 둔다.

#### 제4장 보칙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센터 운영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 시정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시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청주시 사무의 위

탁관리 조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10호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된 위수탁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별표 1]

**자격기준** (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기준
센터의 장 (소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관리 업무 수행 직원 (팀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청소년 대상 실무 수행 직원 (팀원)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분장표**(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주 요 업 무
<p>상 담 지원팀 (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인사, 회계, 관리, 전산 등 운영관리 및 행정업무지원 업무</li> <li>○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li> <li>○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운영</li> <li>○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 등 운영</li> <li>○ 상담프로그램 운영(성교육,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등)</li> <li>○ 상담통계 및 유형분석·관리, 사례집 발간 등</li> <li>○ 홍보 및 그 이외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연수·교육</li> <li>○ 위기청소년 실태조사</li> <li>○ 교육연수 및 홍보사업</li> </ul>
<p>통 합 지원팀 (3~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출, 자살,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새터민, 다문화 등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업무</li> <li>○ 학업중단 청소년 학습 및 자립지원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운영</li> <li>○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상담지원업무</li> <li>○ 진로지도, 직업체험 안내,</li> <li>○ 청소년복지증진사업,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li> <li>○ 청소년 활동전반 및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 제공</li> <li>○ 청소년 참여촉진 및 기타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li> <li>○ 기타 통합지원과 관련된 사항</li> </ul>

[별표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경력산정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직종별	구 분	경 력	환산 비율
전문상담원 · 생활지도원	“갑”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단,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상담기관</li> <li>○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복지·보호활동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상근)</li> <li>○ 군 의무복무경력</li> <li>○ 청소년 동반자 근무경력1)</li> <li>○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문상담원 근무경력</li> <li>○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전문상담원 근무경력</li> </ul>	100%
	“을”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li> <li>○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상근)</li> <li>○ 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담·교육과 관련한 근무 경력</li> </ul>	80%
	“병”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근무경력</li> <li>○ 시설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li>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에서 상임임시직·촉탁 등으로 근무경력</li> <li>○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원 근무경력</li> </ul>	50%
행정직	“갑”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지도 또는 행정업무실무 경력</li> <li>○ 군 의무복무경력</li> </ul>	100%

1) 전일제 청소년동반자의 근무경력은 100% 인정하고, 시간제 동반자는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정부투자기관 등 “이라 함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별표 5】”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중 정부투자기관, 공사 및 공단(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포함)을 말함

[별표 4]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기준**(제6조제2항 관련)

### 1. 입지기준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1개 이상

2) 상담대기실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3)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1개 이상(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의 공동 사용 가능)

4) 전화 등 상담실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5) 위생시설

근무하는 종사자와 예상되는 이용자의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6) 사업실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7) 교육실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8) 개인상담실

(1) 3개소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나. 규모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 3. 운영기준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교육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청원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3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

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청주시장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될 구역은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청주시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청주시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

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해당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 농 정 국

---





#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8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농정국 농업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를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로 제정함.
- 육성사업 발굴 분야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농촌체험관광마을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 19조~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영농,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개발하여 도시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촌체험관광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지역의 다양한 유형·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농촌체험관광마을의 책무) 농촌체험관광마을은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의 연구와 운영, 경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의 농촌체험관광마을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사업)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한다.

1.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분야
2.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실현을 위한 소득증대 활성화 분야
3.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정착을 위한 도시주민과의 교류분야
4.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자원 활용 및 보전을 위한 유형·무형문화·예술분야
5.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육성해야 할 분야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육성분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자문 및 교육)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취소) 시장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의지가 없고, 현저히 미흡할 때
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농촌체험관광마을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또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농촌체험관광마을 관련 전문가,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농촌체험관광마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 안건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회의 참석이 미온적이고 위원회 운영에 소극적일 때

제15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농촌체험관광마을육성 지원 조례는 폐지

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  
촉된 농촌체험관광마을 실무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농정국 농업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육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청주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 전문 인력화 등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여성정책"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6.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 시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범위) 여성농어업인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장 시행계획

제5조(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사업 계획
2. 교육사업
3. 복지증진 시책
4. 귀농 및 이주에 따른 지원 시책

제6조(협조요청)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육성 및 지원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2.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3. 독립적 농어업경영을 하려는 경우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어업 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전액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8조(교육강화)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 교육
2.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 토론회 등 개최
3.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본인의 교육비
6. 평생학습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복지증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정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건강, 교양, 문화 활동 등 지원
6. 농어업인 양성 평등을 위한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어업인

## 위축 확대

7. 법 제11조의2에 따른 도우미 지원

8.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제10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귀농 및 이주에 따른 정착지원) ① 시장은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 및 관련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육성정책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

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여성농어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업무담당국장, 농어업인업무담당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1.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

2.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지원(여성농어업인단체를 포함한다) 사업
5. 실태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농정국 농업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지원 대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청주시 농어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이란 다른 지역에서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이주하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다른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시의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다른 지역"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업 관련 용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지원 대상) ① 귀농·귀촌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가진 귀농인 및 귀촌인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세부적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훈련 지원)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농업기술센터 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착자금 지원 사업
2. 농기계임대 지원 사업
3. 생활자재 구입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우선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각종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지원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귀촌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귀농·귀촌인 지원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지원대장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8조(취소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을 말한다)한 경우
3.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4. 보조사업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한 경우
5. 농업 관련분야와 관계없는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
6.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7.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청주시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청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귀농·귀촌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2. 지원대상자의 선정
3. 안정적 정착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
4. 고충처리 및 귀농·귀촌 홍보대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9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농정국 농업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와 「청원군 양수기 운용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
- 양수기 보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양수기 보관관리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양수기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한해대책 등을 위하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동에 보관하며 한해지역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장·면장·동장 책임으로 보관 관리한다.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장·면장·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양도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



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재해발생시 사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대여 및 사용의 승인) 읍장·면장·동장은 한해지역에서 농업을 위하여 대여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

1. 한해대책
2. 배수관리
3. 그 밖에 농업에 관련된 사업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장·면장·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4호 청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청원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양수기, 발동기 사용신청서

품 명 :

사용목적 :

사 용 처 :

사 용 료 :                 무료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 품목에 대하여 「청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제9조제1항, 제 11조,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안

의안 번호	19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농정국 원예유통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로 제정함.
-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21조)
- 중도매업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제32조)
- 시장도매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3조 ~ 42조)
-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3조 ~ 제46조)
-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 제70조)
- 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71조 ~ 제8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장소·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유지작물류, 두류·잡곡 중 신선한 것, 농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
2. 수산부류: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젓갈류, 활어류, 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

제4조(휴업일과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매일 오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1월 1일, 1월 2일
3. 설날과 다음 날(2일간)
4. 추석날과 다음 날(2일간)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조정(調整)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도매시장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적정 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上限) 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2개 법인
2. 수산부류: 1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上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시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6조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으려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지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52조의2의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 외에 자본금 규모,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 전에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과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 요건)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 외에 제7조에 따라 임원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6억5천만원
2. 수산부류: 1억5천만원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이나 중앙회 자본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최저거래 금액)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25억원 이상
2. 수산부류: 2억5천만원 이상. 다만, 비수기(5월부터 9월)는 2억원 이상

제13조(순자산금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금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금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금액 확보 현황을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결과를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순자산금액을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확보보고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영업을 재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算定)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며, 최저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

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나 정액보상의 특  
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증금 반환)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자  
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  
하자나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반환한다.

제16조(장부 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장부를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선지급 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과 거래금액, 중도매인·매매참가인별 미수  
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매매·수의  
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  
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과 거래금  
액, 판매원표의 사본이나 내용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  
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결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

라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도매시장법인 관리)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휴업·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의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려는 경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휴업·폐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주시보, 일간신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사용면적 결정)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승인 요건)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승인요건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3장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

제22조(적정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上限) 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과일 54명, 채소 56명

2. 수산부류: 생선어류 20명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上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허가조건) 시장은 도매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중도매법인은 5년으로 한다.

③ 중도매인은 제22조의 적정 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최저거래금액)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경우: 청과부류 2,000만원 이상, 수산부류 1,500만원 이상. 다만, 비수기(청과부류 : 1월부터 4월, 수산부류 : 5월부터 9월)는 1,000만원 이상

2. 법인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제26조(보증금 납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에 갈음할 수 있으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 사용면적 배정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법인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을 우대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나 대

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써 입증자료를 붙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질병, 장기 출타, 장기 해외체류

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시장은 보조경매참가자의 질서문란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 참여를 금지하도록 한다.

제31조(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 승인요건)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 승인요건은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2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와 관리는 제26조와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매매참가인이 다음과 같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도매시장에서 판매행위를 한 경우

2. 등록 후 2년간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



3.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위반하거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제4장 시장도매인

제33조(적정 수) ①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6개 법인

2. 수산부류: 3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지정조건)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 가입, 시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33조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임원 요건) ① 시장도매인의 임원은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 외에 제34조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3억원
2. 수산부류: 1억원

제38조(최저거래금액)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5천만원 이상
2. 수산부류: 5천만원 이상

제39조(장부 비치) 시장도매인은 시장에게 보고,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제16조를 준용하여 장부를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는 일별·품목별 거래물량과 거래금액,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판매기록부를 갖춰 두고 관리한다.

제40조(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정관 변경, 주주·임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승인요건)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승인요건으로 임원의 요건은 제36조, 자본금 규모는 제37조, 거래규모는 제38조, 순자산액 비율, 보증

금 납부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제42조(준용)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은 제9조, 순자산금액 비율은 제13조, 보증금 납부는 제14조, 보증금 반환은 제15조, 휴업·폐업 신고는 제19조, 시설사용면적 결정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 제5장 산지유통인과 출하자

제43조(산지유통인 등록과 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에서 판매·매수나 중개 업무를 할 경우

2. 등록 후 2년간 출하실적이 없을 경우

3.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위반하거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통지할 경우 시장이 행한 것과 같은 효력

을 갖는다.

제44조(출하자 신고) ①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출하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업무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불량출하자 제재) 시장은 속박이·수량·중량 등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시 검사제도 등을 실시하여 불량출하자에 대하여 도매시장에 출하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최소출하량 기준) 법 제38조제4호에 따라 최소출하량의 기준은 청주시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 제6장 경매방법 등

제47조(경매·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입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식: 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경우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불러야 함

3. 기록식: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경우 숫자를 기재한 표지판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등급 등을 표시하거나 큰 소리로 부른 후에 입찰참가자가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경매·입찰을 할 때에 출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의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와 선별(출해주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명·품목·등급·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명·품목·등급·수량 등 기재)

#### 4. 경매실시

-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소집
-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 실시
- 다. 견본 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등급·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큰 소리로 부름
-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 바. 경매사가 경락가와 경락자를 큰 소리로 부름

####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경락단가·금액 기재)

제49조(품목별 경매시각과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시작 시각과 경매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제1항의 품목별 경매시작 시각과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0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별표 3에 정하는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51조(경매사 확보기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경매사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실적을 말한다)

에 따른다.

제52조(경매사 관리)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임명이나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과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54조(경매참가 거부와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이나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나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나 입찰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③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와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고의나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입찰에 있어서 담합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지시키거나 재경매·재입찰을 지시할 수 있다.

### 제7장 매매방법 등

제56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매수하여 도매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의 매수·위탁·중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거래 중 매수·중개의 경우에는 매수·중개금액, 매수대금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57조(수탁판매의 예외품목) 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모든 어류·패류를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품목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다른 지역 도매



시장법인에 한정한다.

- 제58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 허가)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려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자격자로 판단될 경우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62조 부터 제64조까지, 68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 ⑤ 제4항 이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정가매매·수의매매) 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은 다음 방식에 따른다.

1. 출하자가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정가매매·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면 출하자는 출하 농수산물을 접수하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정가매매·수의매매에 따른 거래방식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 방식을 요청하면 출하 접수할 때에 정가매매·수의매매 방법 등을 기록하고, 매매할 수

있다.

3. 정가매매·수의매매 거래시간은 경매 전 반입물량의 경우 해당 품목 경매 실시 전에 판매하여야 하고, 정가매매·수의매매의 거래장소는 경매 또는 입찰대상 농수산물과 구별하여 진열하여야 한다.

② 출하자는 사전예약으로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할 때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매매체결 후 매매방법 차이로 발생한 가격차에 대하여 보전(保全)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결정한 매매방법으로 거래된 후에는 매매방법 차이로 발생한 가격차에 대하여 보전(保全)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하고, 접수증 등에 유의사항 안내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60조(거래특례) 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제1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거래확인서 발급) 도매시장법인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2조(표준송품장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출하자가 작성 제출한 표준송품장을 접수날짜 순서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3조(판매원표 관리) ① 시행규칙 제37조의3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판매원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차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본을 붙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판매날짜 순서로 판매원표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내역을 실시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용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

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64조(표준정산서 관리) 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정산창구·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날짜 순서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전자거래 관리)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이며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6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중량 단위로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이 확보·사용해야 할 장비와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처리 장비
2. 수송차량
3. 지게차 등 하역장비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 메가폰

6. 그 밖에 경매에 필요한 장비와 용기

#### 제8장 대금결제 등

제68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과 관리) ①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 창구의 형식과 운영·관리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에게 대금결제 내역이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도매시장 법인·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수탁이나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9조(출하대금의 지급청구) ① 출하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결제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제14조와 제42조에 따라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한 보증금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70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출하자는 위탁한 농수산물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출하손실보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출하손실보전금 지급에 대비하여 전년도 위탁상장수수료의 1000분의 5 이상을 별도계정을 설치·적립하여야 하며, 출하손실 보전적립금의 부족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족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립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가 출하손실보전 심사를 청구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 가입) ① 시장은 제14조와 제42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 도매인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손해보험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지정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 제9장 사용료와 부담금 등

제72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매월 정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할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으로 총액 산정(算定)하고,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별 배분방법은 부류별 사용료 총액에 거래금액 비율과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2분의 1로 산출·부과한다.

2. 매장면적에 따른 부과 대상은 시행규칙 제44조의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과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73조(시설사용료)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74조(관리부과금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매월 전기·상하수도 그 밖의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제72조와 제73조의 사용료와 1항의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 기간·금액·장소 등을 적어서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납기경과 15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시장사용료는 「지방세법」 제27조, 시설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르고,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5조(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 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2.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

②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제76조(장려금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해당 금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장 시장시설

제77조(부속업소 제한) 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



매인과 거래 관계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시장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세입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음식점
2. 이용·미용업소
3. 약국, 의료시설
4. 금융기관, 우체국, 주유소, 편의점, 농축수산 관련 점포 그 밖의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업소

제78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이나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9조(시설의 용도 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이나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면적·사용기간 그 밖의 사용조건 등을 도매시장 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둘 경우에는 영업장소를 구분·분리하여 지정한다.

제80조(시설의 재임대 금지)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재임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1조(시설의 변경 금지) ①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

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형태의 변경행위와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2조(시설의 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 법인해산·폐업, 허가취소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이나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3조(시설 관리책임)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제84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5조(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게 도매시장 출입, 시장시설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이나 거래질서 확립과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 소독, 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

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입·반출, 도매시장에서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86조(시설의 사용관리)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게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지정 취소, 사용제한·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 감독, 재해 예방, 교통 정리, 보건위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을 사용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재임대하거나 위탁 관리한 경우
4. 시설을 사용할 때에 허용한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사정 변경으로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
6.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파손한 경우
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변경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시행한 경우
8. 사용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87조(보수 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한 자에게 보수 또는 필요한 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88조(대집행) 제81조, 제82조, 제86조, 제87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경

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9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이나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 제11장 위원회

제90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청주시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와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와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가매매·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 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5.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농업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매시장법인 대표, 중도매인조합 대표, 산지유통인 대표
  2. 농업관련단체와 소비자관련단체 등의 임원과 직원
  3. 유통관련기관 등의 임원과 직원이나 유통관련전문가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청주시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의 분쟁

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

에 해당 하는 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조정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장 보칙

제93조(도매업무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허가취소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제94조(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거래물

량·가격정보,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품목별 거래량·가격 등을 기재한 거래현황을 별지 제22호서식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표준하역비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출하자료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96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시설사용 면적의 위차, 점포수 조정, 사용료의 차등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은 시장과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평가결과 공고 등을 통하여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7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에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이 미달된 농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정밀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에 출하금지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98조(거래실적과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과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과 미수금 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9조(보고와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



인·시장 도매인·중도매인에게 재정과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 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0조(재해발생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1조(불법행위고발센터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매시장에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제10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11호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중매

인, 등록된 경매사, 허가된 부속 영업인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도매시장의 명칭과 장소·면적**(제2조 관련)

명 칭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장 소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54(봉명동)
면 적	대지 : 44,088제곱미터 건물 : 20,302제곱미터

[별표 2]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과 경매장소**(제49조 관련)

구 분	경매개시 시각	경 매 장 소
과일류	06 : 00	청과경매장이거나 시장이 정하는 장소
채소류	03 : 00	채소경매장이거나 시장이 정하는 장소
수산물	06 : 00	수산경매장이거나 시장이 정하는 장소

[별표 3]

**거래관계자의 표시**(제50조 관련)

(거래참가증)

<앞면>

<b>거 래 참 가 증</b> (1)		
	사진 (3cm×4cm)	
<b>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b> (2)		

<뒷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관계자임을 증명함.  . . .
<b>청 주 시 장 (인)</b>
1. 본 증은 거래참여시 반드시 달아야 한다. 2. 도매시장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3. 시장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4. 자격상실 시에는 시장에게 반드시 반납한다. 5. 분실 시 즉시 신고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가로 70mm × 세로 100mm

- ※ 1. (1)란에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구분 표시  
 2. (2)란에는 부류명 기재

(거래관계자 표시)

거래관계자	표지구분	바탕 색	표지글씨
경매사	모자 또는 조끼	곤 색	앞면에 황색 글씨로 “경매사”라 표시
중도매인	모자 또는 조끼	주된 경매참가 도매법인별 표시	앞면에 허가번호 표시
매매참가인	모자 또는 조끼		앞면에 등록번호 표시

[별표 4]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경매사 확보기준**(제51조 관련)

(청과부류)

5천톤 미만	5천톤 이상 ~ 3만톤 미만	3만톤 이상 ~ 7만톤 미만	7만톤 이상 ~ 10만톤 미만	10만톤 이상 ~ 20만톤 미만	20만톤 이상
2명	3명	5명	7명	9명	매 3만톤마다 1명 추가

(수산물부류)

5천톤 미만	5천톤 이상 ~ 1만톤 미만	1만톤 이상 ~ 5만톤 미만	5만톤 이상
2명	3명	5명	매 1만톤마다 1명 추가

[별지 제1호서식]

<b>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b>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	
	도 매 시 장 명		
	위 치		
	취 급 부 류		
<p>「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청주시장 귀하</p>			
<p>붙임서류 1. 정관</p> <p>2.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p> <p>3. 임원의 이력서</p> <p>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p> <p>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과 인력운영계획 등을 포함한다)</p> <p>6. 조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p>			

[별지 제2호서식]

지 정 번 호	도매시장법인지정서		
도 매 시 장 명			
주 소			
법 인 명		대 표 자	
지 정 기 간	부 터	까 지 (	년 간)
취 급 부 류			
<p style="text-align: center;">「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지정조건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청 주 시 장</p>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중도매업허가증				사진 (3cm×4cm)
신청인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법인의 경우 법인명	형 태	□개인 □법인	
허가사항	참가도매시장명				
	거 래 품 목				
	허 가 기 간	부 터                      까 지 (    년간)			
<p>「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p> <p>허가조건 :</p>  <p style="font-size: 24px; letter-spacing: 20px;">년    월    일</p>  <p style="font-size: 24px; letter-spacing: 20px;">청    주    시    장</p>					



[별지 제7호서식]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			
	도 매 시 장 명				
	위 치				
	취 급 부 류				
<p>「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청주시장 귀하</p>					
<p>붙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정관</li><li>2.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li><li>3. 임원의 이력서</li><li>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li><li>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과 인력운영계획 등을 포함한다)</li><li>6. 조례 제37조의 자본금 규모, 제38조의 거래규모, 제42조의 순자산액 비율과 거래보증금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li></ol>					

[별지 제8호서식]

지 정 번 호	시장도매인지정서		
도 매 시 장 명			
주 소			
법 인 명		대 표 자	
지 정 기 간	부 터                      까 지 (     년간)		
취 급 부 류			
<p>「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35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p> <p>지정조건 :</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   주   시   장</p>			



[별지 제10호서식]

<h2 style="margin: 0;">산지유통인 등록변경 신청서</h2>				<p>처리기간</p> <hr/> <p>1일</p>
<p>신청인</p>	<p>등록번호</p>			
	<p>성명</p>	<p>※법인의 경우 법인명</p>	<p>주민등록번호</p>	<p>※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p>
	<p>주소</p>	<p>(전화번호 : )</p>		
<p>변경사항</p>		<p>종 전</p>	<p>변 경</p>	
<p>「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margin-right: 150px;">년</span> <span style="margin-right: 50px;">월</span> <span>일</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margin-right: 150px;">신청인</span> <span>(인)</span> </p> <p style="margin-top: 20px;">청주시장 귀하</p>				

[별지 제11호서식]

<전면>

<b>산지유통인 등록증</b>	
사진 (3cmx4cm)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품목: 등록일자:
<b>청 주 시 장</b>	

가로 7.5cm× 세로 6.0cm

<후면>

년월일	기재사항 변경	확인인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별지 제14호서식]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상호	※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중도매업허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택: ) (점포: )
허가신청사항	거래품목			
	취급계획	(물량 : ) (금액 : )		
	기간			
<p>「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청주시장 귀하</p>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와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순자산액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4. 보증서(보증인 2명) 5. 각서 6. 사진(3cm×4cm) 2매				

[별지 제15호서식]

허 가 번 호	상 장 예 외 품 목 거 래 허 가 증		사 진 (3cm×4cm)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상 호	※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중 도 매 업 허 가 번 호	
주 소			
허 가 기 간			
거 래 품 목			
<p>「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장예외품목거래를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 주 시 장</p>			





[별지 제18호서식]

거 래 확 인 서					
품 목	단 위	반출물량	가 격	반출지 (대상)	반출차량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61조에 따라 상기 물품의 거래사실을 확인  
함.

년    월    일

(도 매 시 장 범 인 명)

[별지 제19호서식]

## 판 매 원 표

출하일자 :       년       월       일

관리번호						경매번호					
출하구분						접수	하역	정산	검산	기록	경매사
산지		(시·군)									
판매일자		년    월    일									
출하 자	이름	전화 번호				운 송 자	이름	전화 번호			
	주소						차량 번호				
출하자 (등록번호)	품 목	중량·규 격	등 급	수 량		가 격 (경락)	판매대 금	낙찰자번호 (매수인)			
합    계		판매량				판 매 대 금					
운 송 비 · 선 급 금				출하자가가격제시		공 제 액 계					
하 역 비 · 선 별 비						차 인 지 급 액					
폐 기 물 유 발 부 담 금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명)					
상 장 수 수 료											



[별지 제20호서식]

### 표준정산서

정산일자								상호명			
출하자	성명	귀하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자택			
							점포				
<p>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발행자  (인)</p>											
거래방법	년	월	일	품목·품종	단위별 단량	등급	수량	단가	총거래 금액	매수인	
계											
송금내역	송금액						수수료				
	은행명						은행입				
	계좌번호						하역비				
	예금주						선금금				
							폐기물				
							유발부담금				
							지불액				



[별지 제22호서식]

## 거 래 실 적 보 고 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명)

년    월    일

부류	품목	거래실적(당일)		상장경매실적		거래실적(누계)		비고	
		물량 (톤)	금액 (천원)	물량 (톤)	금액 (천원)	물량 (톤)	금액 (천원)		
합계									
과 실 류	사과								
	배								
	· · · · · ·								
	채 소 류	배추							
		무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 일 일 시 황 표

확인자 : (인)

작성자 : (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명)

년 월 일

부 류	품 목	거래 단위	등급	경락 또는 1차 도매가격		거래동향	주출하자
				최 저	최 고		

※ 작성품목은 계절별 반입상황에 따라 변경됨.

[별지 제24호서식]

**월별 거래실적 보고서**

(기간 : . . . . ~ . . . .)

허가·지정번호 (등록번호)	성명	상호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잔액	담보금액



#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9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농정국 원예유통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우수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조례」를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조례」로 제정함.
- 사용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용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안에서 우수농수특산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특산품”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먹는 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 그 표시를 위하여 시가 특허청에 등록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
3. “가공한 상품”이란 시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먹는 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청주시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특산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따라 시가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유형에 한정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절차 등)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심의) 상표의 사용권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원예유통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6조(사용권의 부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상표사용의 정지) ① 상표사용자는 농수특산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상표사용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제8조(사용권의 취소) ①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업종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상표사용의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5.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상표사용 관리를 위한 관리공무원의 조사 및 지시에 불응한 경우
  7. 상표사용권자가 보조사업 또는 상표사용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사용 품목을 1년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9. 포장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상표사용의 정지 및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경우 상표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사후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상표사용자 및 부여품목에 대한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에 대해서 국내·국외 전시판매의 우선권 부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우수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고유상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9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농정국 원예유통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관리 조례」로 제정함
- 융자금의 상환 및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감면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한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분할 상환 한다.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수탁금융기관의 정책자금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5조(용자상환금 회수) 용자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감독) ① 시장은 자금을 용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용자금 회수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말까지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관리 상황을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세입·세출) ① 주민소득 용자금의 세입은 회수용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주민소득 용자금 회수에 대한 운영비의 세출은 일반회계로 편성한다.

제8조(용자금의 반환) 시장은 용자를 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용자금 반환통보) 제8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용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 용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다만, 2002년 5월 9일 이전에 용자된 용자금에 한정한다.

제11조(준용)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9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농정국 산림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와 「청원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가로수 식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 가로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의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 행정구역 내 가로수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역이나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가.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나.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구도 등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특별시도·광역시도는 제외한다)

- 다. 면도, 이도, 농도 등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의 도로
- 라.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도로로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  
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 "관리청"이란 가로수를 직접 관리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을 말한다.
  3. "바뀌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풍해·설해 등으로부터 가로수 피해방지를 위한 경우(재해예방),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4.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풍해·설해 등으로부터 가로수 피해방지를 위해(재해예방) 제거가 필요한 가로수 또는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한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5.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고 수분흡수와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이나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이나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9. “띠녹지”란 가로녹지량 증진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폭이 넓은 보도에 있는 가로수 사이에 키 작은 나무나 꽃을 심어 만든 공간을 말한다.
10. “가로수 관수시설”이란 가로수에 급수나 시비 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식재수종
4. 가로수의 질적·양적 증진과 정비 방안
5.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 등

7. 띠녹지 조성 및 관리계획

8.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와 띠녹지 조성 및 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5년마다 재검토했다. 다만, 도로상황이나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가로수조성 및 관리 심의 등)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조성 및 관리의 시책 개발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과 설계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주민·주변개발자·전문가 등의 제안사항

6. 도로변 띠녹지 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수종의 선정 등)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및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지명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종
7. 생육상태, 병해충과 공해에 강하여 사후관리가 용이한 수종
8.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 끊기와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수형, 가지와 잎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이식할 수 있을 것
7. 지하매설물에 지장이 없고 공해에 강할 것

제7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과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식재한다.

1.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보도폭원이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도·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하여 도로의 구조 보존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4.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식재할 수 있다.
6.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7. 가로수 굴취·이식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도·차도 경계선으로부터 보호틀 가장자리까지의 보도폭은 잔디 또는 블록형으로 조성하는 등 가로수 식재열의 일정한 폭은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제8조(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변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성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균식·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 및 초화류는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화



분형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신규개설이나 재정비하는 25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자전거도로 설치계획 구간은 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할 경우 1미터 이상의 띠녹지를 조성하여야 하며, 기존 도로변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구간은 자전거도로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규개설이나 재정비하는 도로의 가로수는 수종에 따라 흉고직경 또는 근원경 6센티미터 이상 규격의 나무를 식재하여야 한다.

제9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0조(조성협의 등)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산지나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이나 변경에 가로수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이나 교체할 경우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① 가로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뀌심기와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와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이 어려운 가로수

5.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6.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및 피해가 우려되는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뀌심기나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2조(이식·제거·가지치기 등)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재해예방, 도로표지·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통신시설물의 안전,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 등을 위하여 이식·가지치기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거할 수 있다.

② 가로수 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이나 지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신청사항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14일 이내에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가로수와 가로수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와 승인받은 사업을 완료한 원인자와 훼손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복구 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가지치기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13조(병해충의 방제)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 처리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물·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를 최소량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 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이나

지시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가로수 주요층해 및 방제는 별표 3에 따라 방제하여야 한다.

제14조(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지형과 토양 보호) 시장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식재나 식재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운전자·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성토

다. 도로의 신설·개량·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토·성토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나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의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할 것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이나 기 조성지의 토양이 다져짐,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객토나 시비를 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가로수의 식재가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하여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에 적재되지 않도록 할 것

제16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보호덮개 등 가로수관리시설물의 설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가로수관리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관리시설물의 연차별 관리계획을 세워 별표 4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4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뀌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

사목, 메워심기나 신규 식재량,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의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나 식재·바꿔심기·메워심기·가지치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시민참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나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과 협조

②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나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나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주변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와 관리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와 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훼손자부담금)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관리시설물이 사고나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상당금액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훼손자부담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시장은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 등으로 가로수의 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이식·제거·가지치기는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1조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청 간의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관리청 간 협의에 의한다.

제23조(가로수관리대장)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가로수조성 및 관리 내용을 노선별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재해예방) ① 시장은 풍해, 설해 등으로부터 가로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2. 생육환경개선사업
3. 가지치기
4.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② 제1항에 따라 바뀌심기를 할 경우 전선 등 주변 시설물과 경합

되는 지역에는 관목 또는 아교목의 수종으로 교체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66호 청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청원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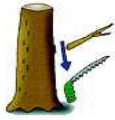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제12조제6항 관련)

<p>1. 대 상</p>	<p>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해충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p>
<p>2. 시기 및 횟 수</p>	<p>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다. 그 밖의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이 진 후 가지치기 금지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철 가지치기 금지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p>
<p>3. 방 법</p>	<p>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 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 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 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앓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중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p>
<p>4. 절단면의 처 리</p>	<p>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p>

[별표 2]

## 가지치기(전정) 방법 (제12조제6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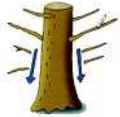
### 1. 가지치기 일반사항



지움부가 없을 때 줄기 가까이 가지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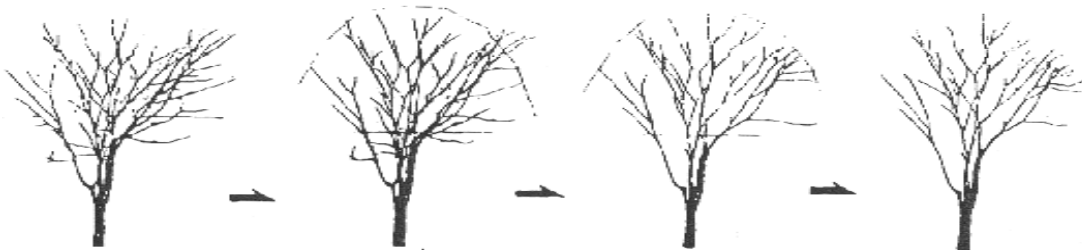


지움부가 있을 때 지움부 가까이 가지치기



으뜸가지 이하에 있는 것만 가지치기

### 2. 느티나무 등 평정형



원 상태

수관폭 축소 범위 설정  
지하고 설정

숙음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 3. 버즘나무 등 원정형



원 상태

약 전 지

차년도 성장상태

#### 4. 은행나무 등 원추형



원 상 태  
지하고 설정  
수고 설정

약 전 지

차년도 성장상태

2차 약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별표 3]

###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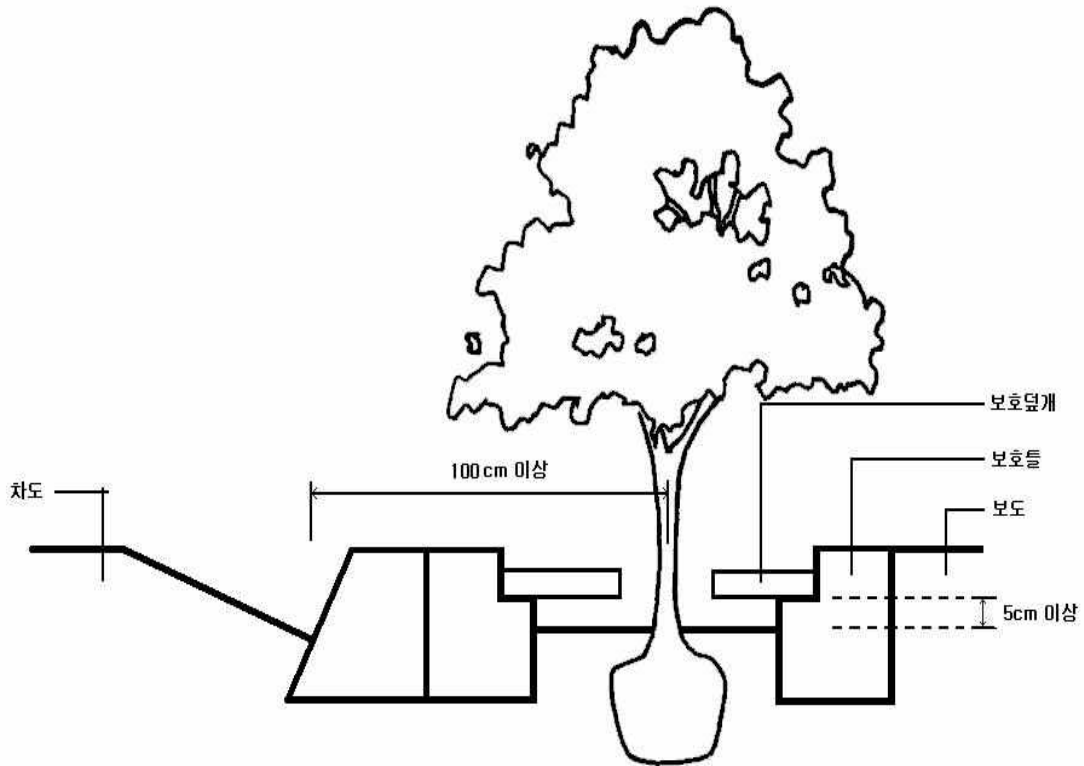
수병	가해수종	가해구분	방제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벗나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li> <li>디프제 살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화기: 6월 상순</li> <li>2화기: 8월 초·중순</li> </ul>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사시 포플러류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가지 절단 소각</li> <li>사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li> </ul>	5월 하순~6월 중순
제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가지 절단 소각</li> <li>만코지 수화제 살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화기: 5월 초·중순</li> <li>2화기: 9월 초~중순</li> </ul>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나무 느티나무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덩어리 채취 소각</li> <li>디프제 살포</li> </ul>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li> <li>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관살포: 5월 하순~6월 초순</li> <li>나무주사: 6~7월</li> </ul>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나무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li> <li>디프제 살포</li> </ul>	4월 중·하순
응애류	벗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li> </ul>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벗나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li> </ul>	발생초기(수시)
각지벌레류	벗나무 소나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로프리트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li> </ul>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4]

## 가로수관리시설물 설치방법

1-1 : 관리시설물과 가로수의 위치



- 가로수의 중심에서 보·차도 경계까지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보호덮개(철제 등 구조물)와 지면과의 높이 차이는 5c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차량이나 기타 인위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 보호틀과 보도의 높이를 같게 하여 우수 등이 보호틀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2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설치방법

### <시설별 설치기준>

#### 가. 보호틀

- 보호틀은 도로의 여건에 따라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부정형으로 한다.
- 가로수의 원활한 생육공간 확보와 비포장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순으로 설치하고, 부정형은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설치한다.
- 대상형 보호틀은 교통량·보행자가 많지 않거나 보도의 폭이 넓은 경우 설치한다. 대상형 보호틀의 크기는 좁은 폭을 1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직사각형 보호틀의 크기는 좁은 폭 1m 이상, 넓은 폭 1.2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정사각형의 보호틀은 교통량·보행자가 아주 적거나 보도의 폭이 협소할 경우 설치한다. 정사각형 보호틀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1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나. 보호덮개

- 보호덮개는 철제, 플라스틱, 화강석, 콘크리트 등의 구조물 또는 나무파쇄물, 자갈 등으로 한다.
- 철제, 플라스틱, 화강석, 콘크리트 등의 구조물로 된 보호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파쇄물, 자갈을 채우거나 잔디, 초화류, 관목류 등을 심을 수 있으며 구조물로 된 보호덮개 하단에 잔디 등을 식재할 수 있다.

#### 다. 보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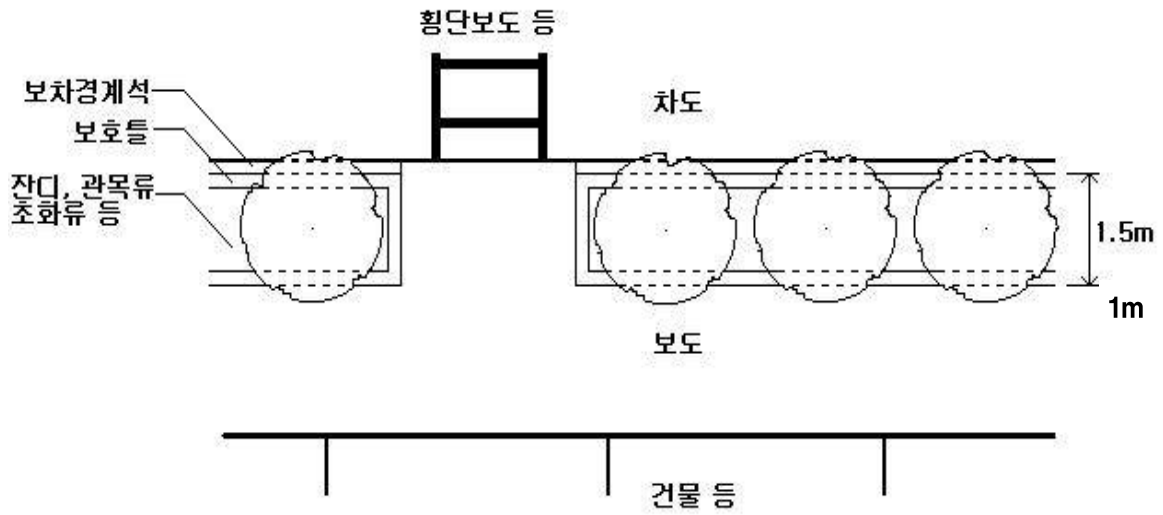
- 보호대는 보행자나 교통에 의해 가로수 피해가 예상되는 횡단보도 주변 등의 가로수나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로수에 설치할 수 있다.

#### 라. 통기·관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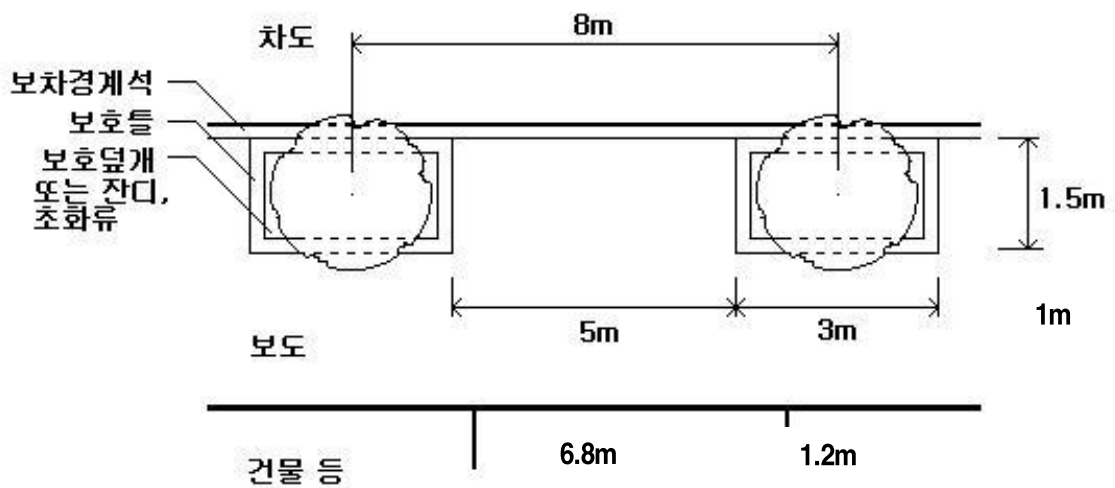
- 통기·관수시설은 답압 등으로 인해 우수·관수 등이 땅속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거나 통기성이 불량할 때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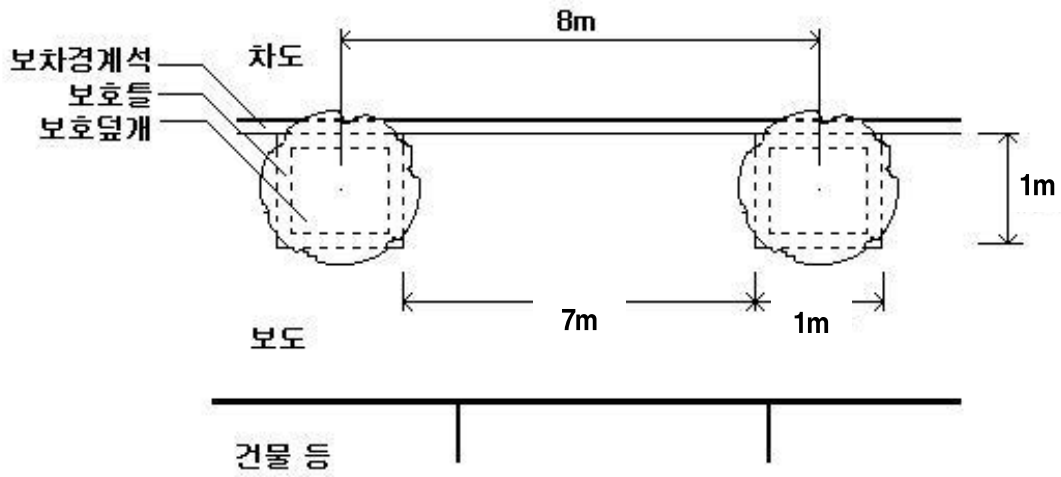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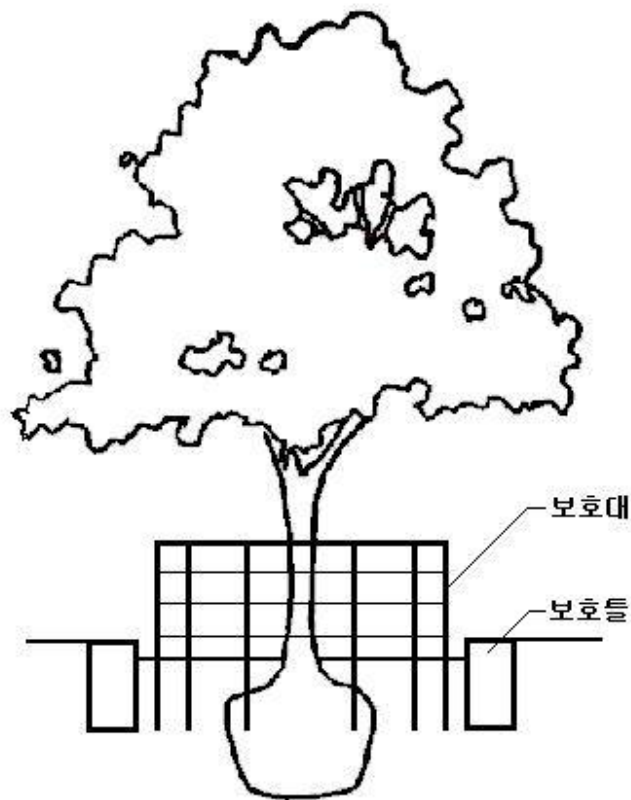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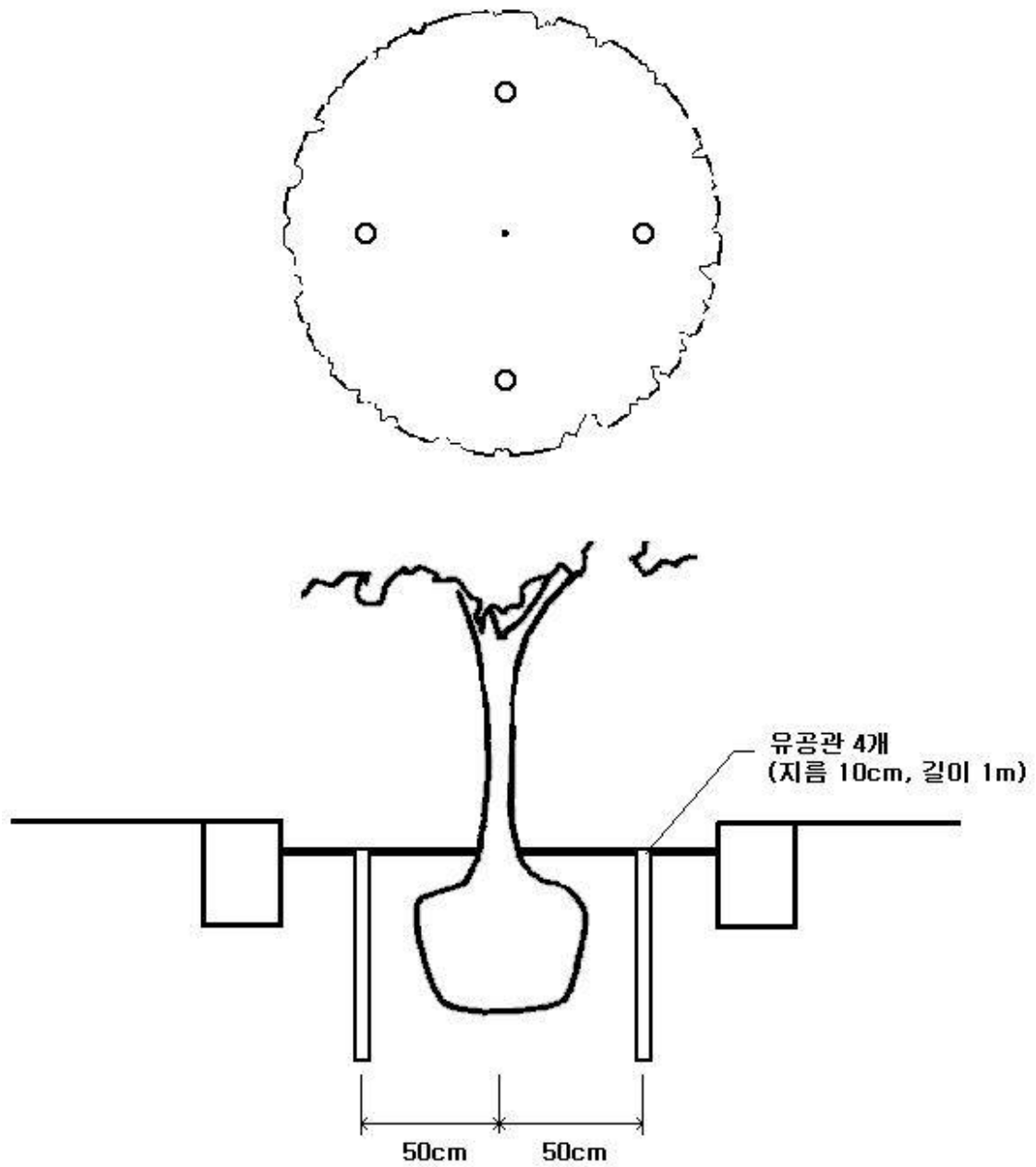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보호대 설치(예)>



<통기·관수시설 설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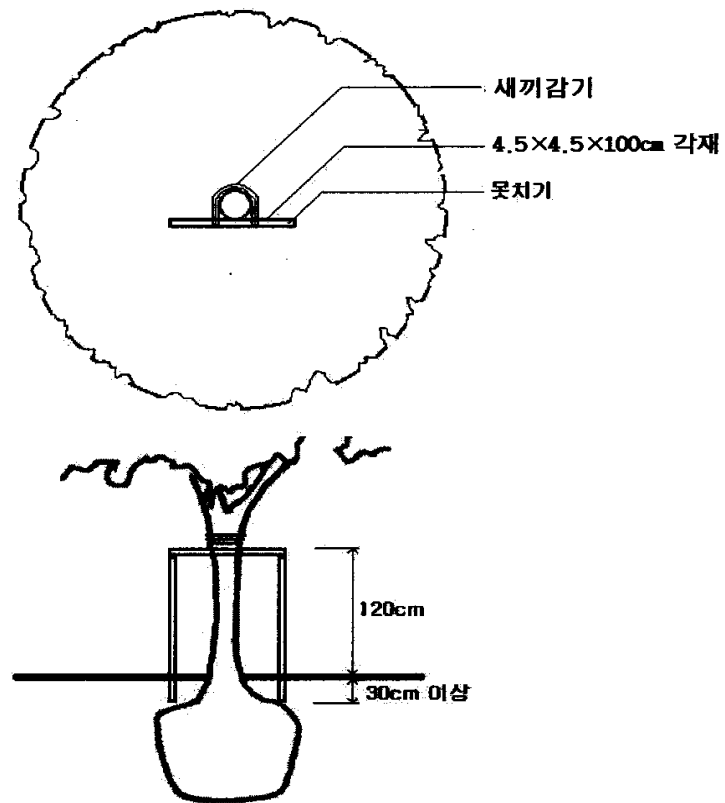


- 가로수 중심으로부터 50cm 되는 곳에 지름 10cm 이상의 유공관을 4개 이상 설치하여 통기성을 개선하고 우수나 관수 시 땅속 깊이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1m 이상 깊이로 설치한다.
- 유공관 내부는 지름 2cm 가량의 쇠석으로 채운다.

### 1-3 : 지주대의 설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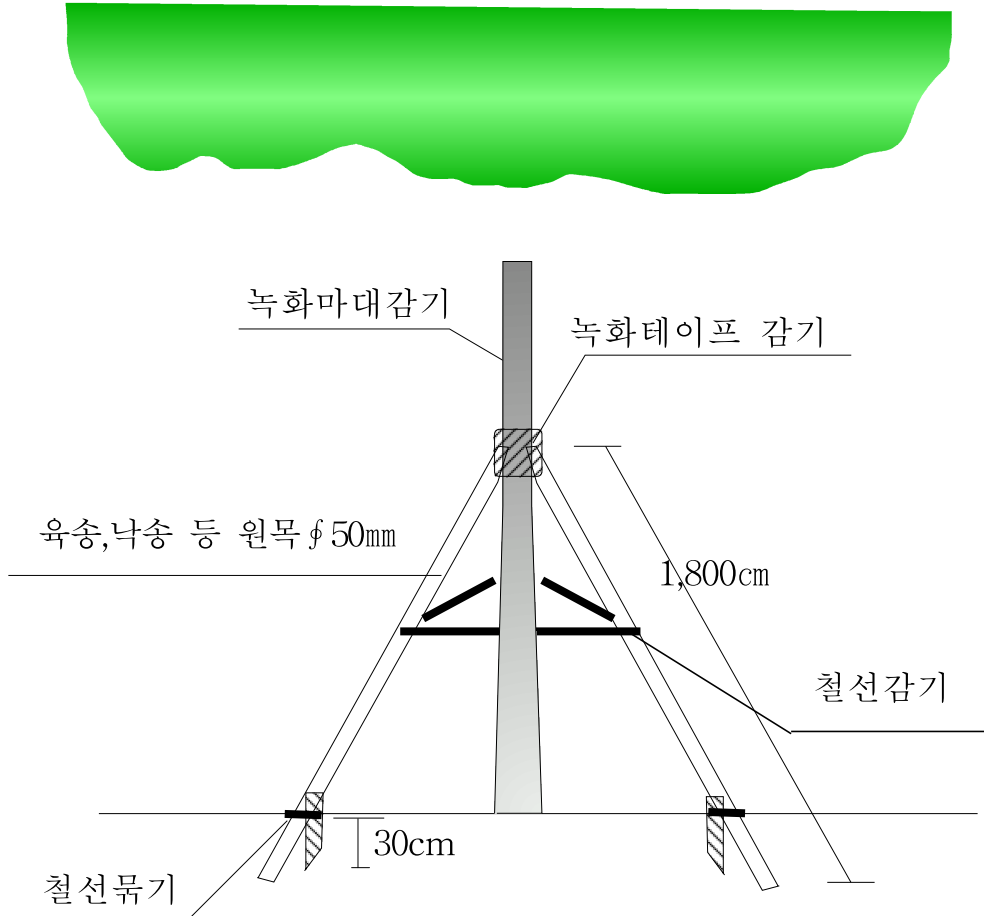
- 지주대는 박피 통나무, 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 수고 4.5m 이상의 가로수에는 지주목을 삼각형, 사각형으로 세우거나 당김줄형으로 설치한다.
- 수고 4.5m 이하의 가로수는 이각형, 삼발이, 삼각형, 사각형을 설치한다.
- 매몰형지주대는 수목식재가 경관상 매우 중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표에 지주대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 사용한다.
- 지주대와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완충재를 수간에 대어 가로수의 성장에 따른 수간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지주의 방향은 주풍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사지 등 지형적인 관계나 지반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 땅속에 지주대를 박을 때 선단부가 쪼개지거나 부서질 우려가 있는 경우 톱으로 그 부분을 잘라 보기 흉하지 않도록 해 놓는 동시에 내구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지주대의 지상부에 페인트나 방부제를 발라 놓는다.
- 가로수가 완전히 활착되어 더 이상 지주대의 필요가 없을 경우 생장에 따른 수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주대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각지주대 설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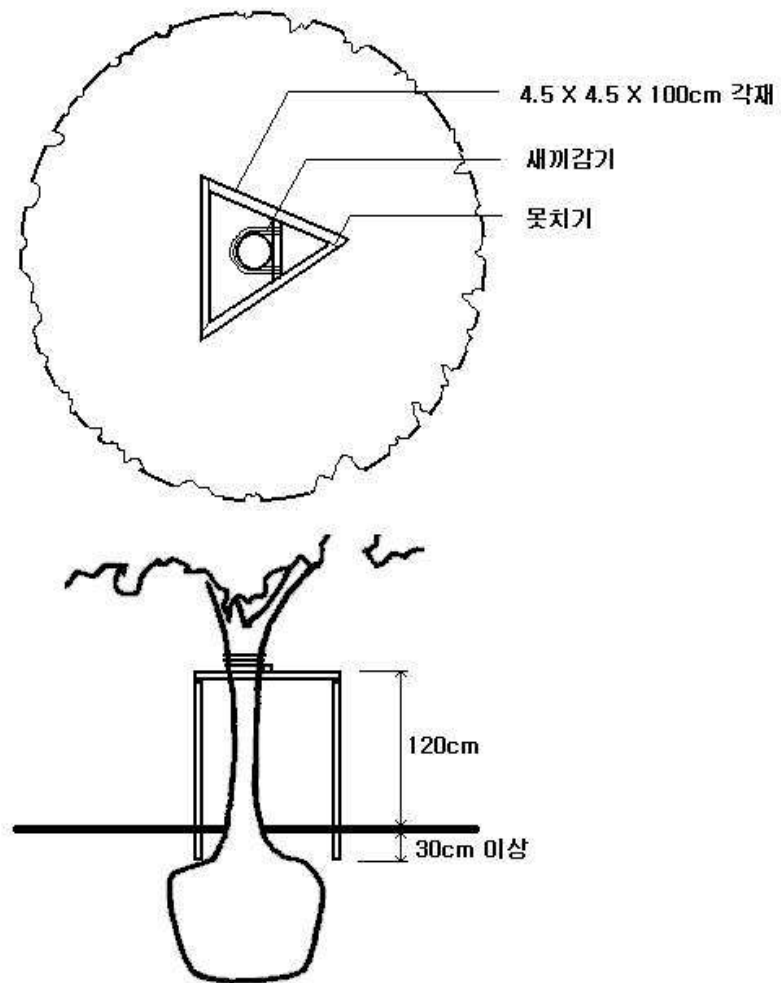
- 수고가 2m 이하일 경우 적용하며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cm 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가로수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지주대(소형) 설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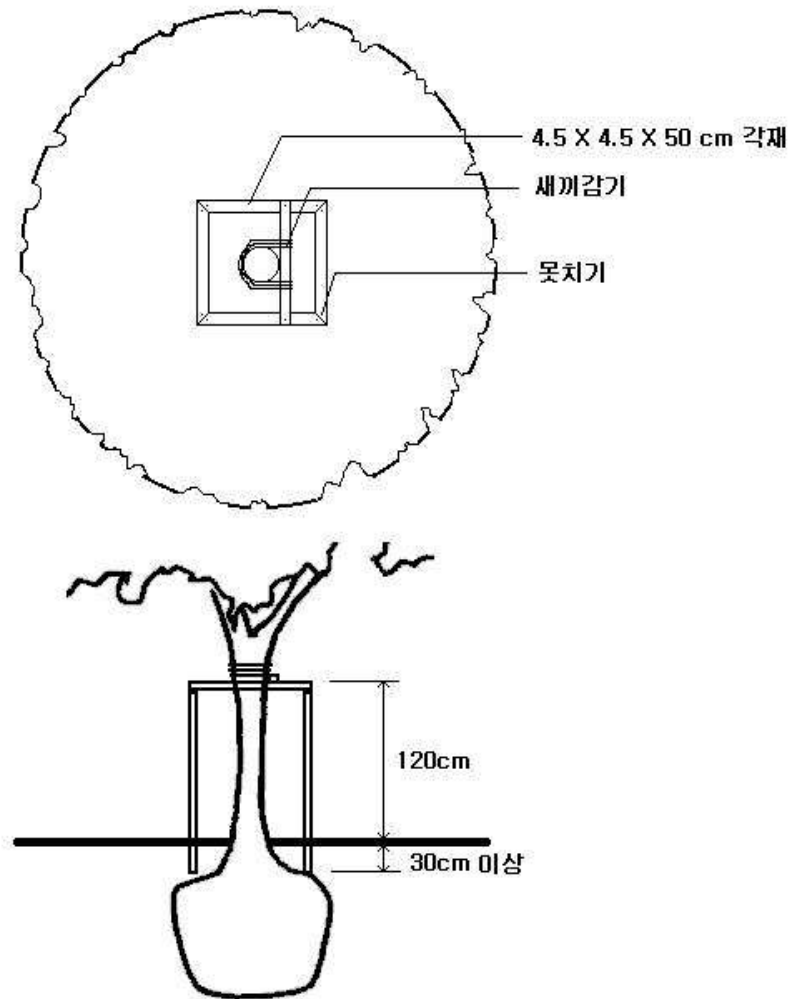
- 삼발이지주대(소형) : 일반적으로 수고 5m 이하의 수고일 경우 적용하며 경관상 주요지점이 아닌 곳에 설치한다. 길이 180cm 정도의 박피 통나무나 각재 또는 플라스틱 등 기타 재료로 된 것을 사용하여 삼각형으로 걸쳐 주간을 안정시킨다.
- 삼발이지주대(대형) : 일반적으로 수고 5m 이상일 경우 적용하며 경관상 주요지점이 아닌 곳에 설치한다. 길이는 270cm 정도의 지주대를 사용하고 약 50cm를 땅에 묻는다.

<삼각지주대 설치(예)>



- 삼각지주대는 삼발이지주대에 비해 소요되는 공간이 적어 보도의 폭이 좁을 경우에 사용한다.
- 각재나 박피 통나무,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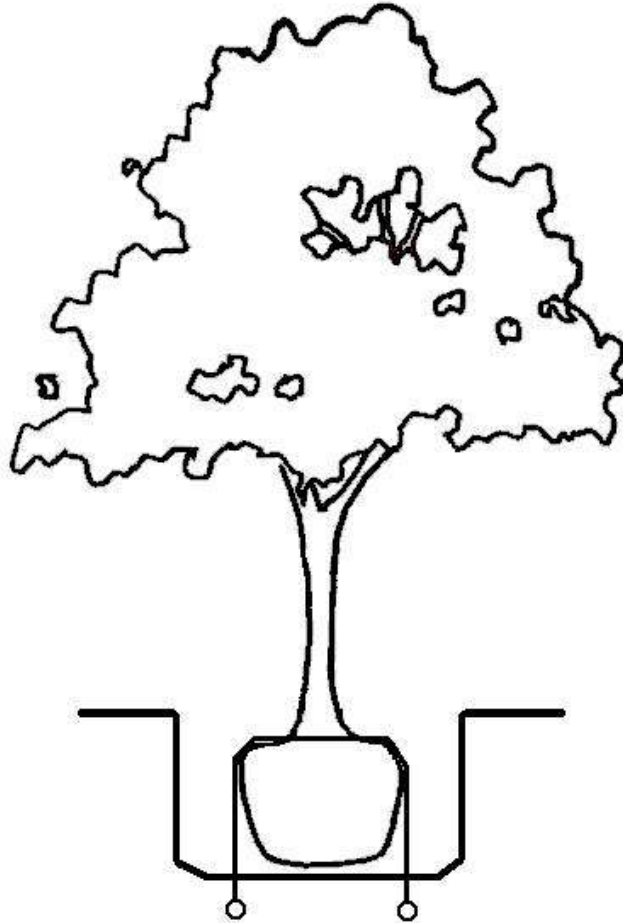
<사각지주대 설치(예)>



- 삼각 지주목과 마찬가지로 보도의 폭이 좁을 때 사용한다.
- 각재나 박피 통나무,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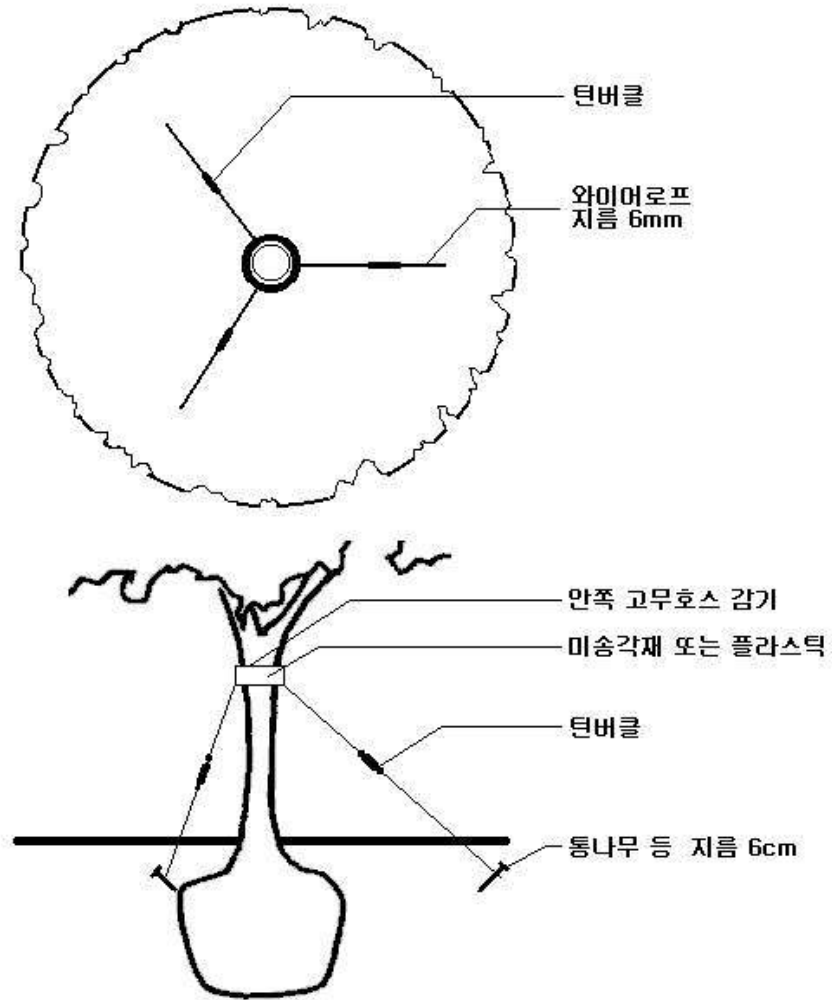


<매몰형지주대 설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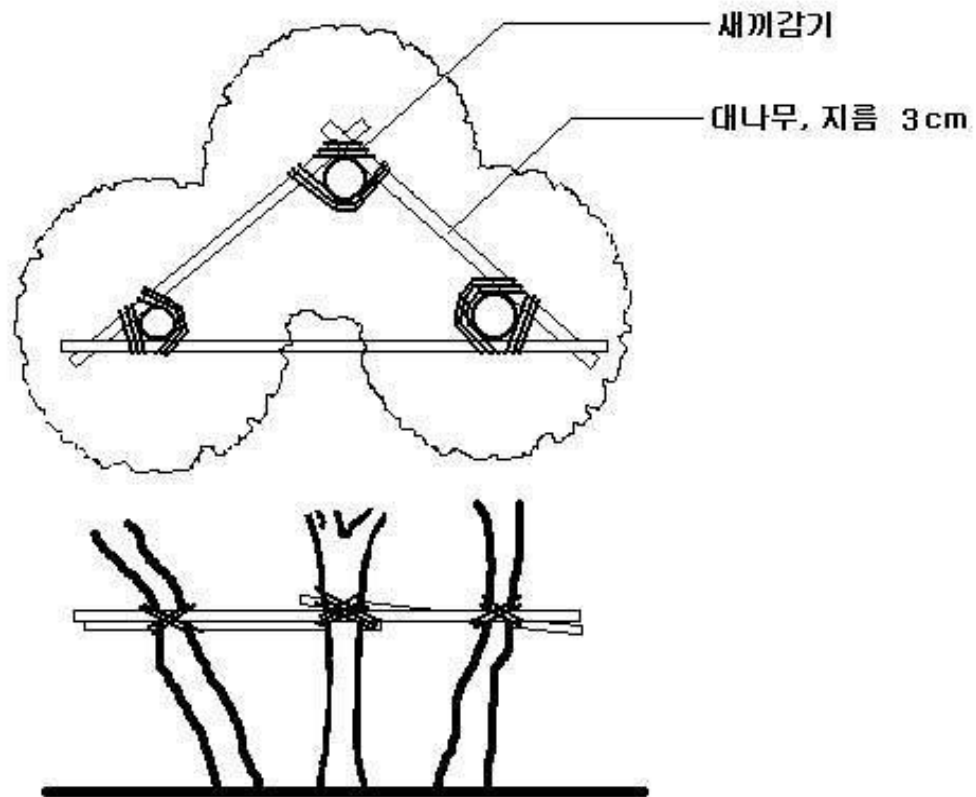
- 가로수의 식재가 매우 중요한 위치일 경우, 또는 지주대가 통행에 지장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한다.

<당김줄지주대 설치(예)>



- 일반적으로 대형 거목에 적용하며 특히 경관적 가치가 요구되는 곳에 설치한다. 수목의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중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와이어로프에 표식(끈, 리본 등)을 달아야 한다.

<연계형지주대 설치(예)>



- 균식을 할 경우 3~4개의 수목을 한꺼번에 안정시킬 경우에 사용한다. 수목의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한다.

[별표 5]

**훼손자·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 관련)

<p>훼손자 부담금</p>	<p>△ 피해발생의 경우 ▽</p>	<p>1. 벌채, 수간절단, 약품 등에 의하여 가로수 및 가로수시설물의 훼손율이 50% 이상 되어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징수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p> <p>2. 과도한 가지훼손 및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20% 이상 50% 미만) ⇒ 부담금 징수 : 수목비의 20% 이상 50% 미만+보호시설재료비+실작업비</p> <p>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10% 이상 20% 미만) ⇒ 부담금 징수 : 수목비의 10% 이상 20% 미만+실작업비</p>
<p>원인자 부담금</p>	<p>△ 원인발생의 경우 ▽</p>	<p>4. 이식을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예치 : 하자 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예치 : 하자 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이식비(징수)</p> <p>5. 제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징수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징수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p>
<p>○ 산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공사설계비(식재비, 이식비, 제거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li> <li>-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li> </ul> <p>○ 징수금 : 「청주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에 따라 세외수입 과목으로 부과·징수</p> <p>○ 예치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방법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li> <li>- 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 담보 기간 동안 예치</li> <li>-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li> </ul>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사업(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대상	위 치 (노선명)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기 타						
「청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사업(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서						
승인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위 치 (노선명)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승 인 조 건						
그 밖의 사항						
<p>「청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p>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9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농정국 산림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옥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로 제정함.
- 옥화자연휴양림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 옥화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6조)
- 옥화자연휴양림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1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산61-2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초등학교학생 포함)를 말한다.
2.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일 반: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단 체: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입장료: 휴양림 안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사용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휴양림 안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성수기 및 주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

휴일 전날을 말한다.

8. 비수기 및 평일: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관리인 등) ①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인 등을 고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 등의 자격, 인원 등 관리인 등의 고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관리 등) 시장은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운영능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관리·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① 제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계약서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된 위탁계약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을 청주시장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탁자의 지원)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휴양림의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및 시설사용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 입장 06:00, 퇴장 20:00

나. 시설물 사용 시는 입실 15:00, 퇴실 13:00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가. 입장 08:00, 퇴장 18:00

나. 시설물 사용 시는 입실 15:00, 퇴실 13:00

제10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입장료 징수 등)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 외의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설치할 때 마다 시설비와 유지 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정한다.

제13조(시설물사용 예약) ① 휴양림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시설사용 예약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예약이 유효한 것으로 하며, 4~2일 전 예약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입금하여야 예약이 유효하며, 사용 예정일 그날 예약자는 예약즉시 입금하여야 예약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4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청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할구역 안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야영수련활동 시(20명 이상)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성수기 및 주말은 제외한다.

제15조(사용료의 환불 및 배상처리 등) ① 이미 납부된 시설 사용료는 입실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휴양림 시설사용 예약자가 사용일 또는 사용예정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약금을 환불한다.

③ 환불은 예약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상한다.

1.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환불
2. 사용예정일 4~2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3.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4. 사용예정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예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제16조(입장료의 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인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  
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제17조(입장의 제한) 휴양림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하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4.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 휴양림관리에 필요할 때

5. 그 밖의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 입장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이용객의 행위제한) 휴양림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자
2. 음주에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자
3.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자
4. 각종 행상행위를 하는 자
5. 동물·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자
6. 각종 시설물을 오손, 파괴, 이전시키는 자
7. 그 밖에 휴양림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자

제19조(시설물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휴양림 안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휴양림시설 긴급 개수·보수 시
3. 휴양림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20조(손해배상) 휴양림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파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손해 배상토록 할 수 있다.

제21조(요금표의 게시) 휴양림 안에서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세입조치) 입장료, 시설사용료, 수익금 등 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청주시 세입으로 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관리 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옥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입장료 징수기준**(제10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일 반	청소년·군인	어 린 이	비 고
개 인	1,000	500	300	
단 체	500	300	200	

[별표 2]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시 설 명	구 분	사용기준	요 금(단위:원)		비 고
			성 수 기 및 주말	비 수 기 및 평일	
주 차 료	- 소형차량 (승용, 승합 15인승 이하, 화물총중량 3톤이하)	1대/1일	무료	무료	※ 1일 사용료는 다음날 13시까지 하며 13시 이후는 추가 요금 징수
	- 대형차량 (승합 16인승이상, 화물총중량 3톤이상)	1대/1일	무료	무료	
	- 이 룰 차	1대/1일	무료	무료	
숲속의집	- 23㎡(7 평형)	1실/1일	48,000	37,000	입장료포함
	- 33㎡(10평형)	1실/1일	78,000	60,000	“
	- 39㎡(12평형)	1실/1일	85,000	65,000	“
	- 50㎡(15평형)	1실/1일	104,000	80,000	“
	- 89㎡(27평형)	1실/1일	176,000	135,000	“
	- 99㎡(30평형)	1실/1일	215,000	165,000	“
찜 질 방	- 3평형	1실	무료	무료	이용시간:10:00~22:00
야영테크	2.5×2.5	개소/1일	7,000	7,000	입장료 미포함
	3.5×3.5	개소/1일	9,000	9,000	“
야 영 장	4~ 5인용 텐트 1조	개소/1일	3,000	3,000	입장료 미포함
	6~10인용 텐트 1조	개소/1일	4,000	4,000	“
	20인용 이상	개소/1일	7,000	7,000	“
물놀이장	일반. 청소년. 군인	1명/1일	무료	무료	야영장, 야영테크 ※ 숲속의 집 이용자가 많을 경우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일반 입장객은 이용이 제한됨
	어 린 이	1명/1일	무료	무료	

[별표 3]

**예약금 환불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계 약 취 소 유 형	환 불 기 준
<p>① 성수기 및 주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li> <li>-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및 연락 없이 불참</li> </ul> <p>② 비수기 및 평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환급</li> <li>-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li> <li>-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li> <li>-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li> <li>-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li> <li>- 계약금 환급</li> <li>-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li> <li>-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li> </ul>

<b>옥화자연휴양림관리 · 운영위탁계약서</b>		
① 휴양림소재지		
② 휴양림명칭		
휴양림 내역	③ 면적	ha
	④ 시설물의 종류 및 물량	
계약 내역	⑤ 계약금	금                    원(₩                    )
	⑥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그 밖의 조건	불임
<p style="text-align: center;">「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 사항을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인을 “갑”이라 하고 수탁인을 “을”로 하여 불임 위탁 계약 조항을 준수할 것을 계약하고 상호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p>  년            월            일</p> <p>  위탁인(갑) 성            명                    (인)</p> <p style="padding-left: 100px;">  주            소</p> <p style="padding-left: 100px;">  주민등록번호</p> <p style="margin-top: 20px;">  수탁인(을) 성            명                    (인)</p> <p style="padding-left: 100px;">  주            소</p> <p style="padding-left: 100px;">  주민등록번호</p> </div>		
<p>불 임 : 옥화자연휴양림 · 관리 · 운영위탁계약조항 1부</p>		

## 옥화자연휴양림관리·운영위탁계약조항

### ○위탁재산의 표시

재산표시	지 번	지 목	면 적	위탁내용	비 고

**제1조** “을”은 계약을 체결한 후 “갑”으로부터 계약서를 수령함으로써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을”은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재산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제4조** “을”은 위탁받은 재산에서의 수익금의 할을 “갑”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수익금”이란 위탁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제5조** “을”은 수익금산출명세서를 매 다음 달 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5조의 수익금산출명세서에는 수입·지출내역이 정확히 명시 되어야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속증거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제1조의 사업수행 상 관리·운영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서를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농정국 산림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업무 담당국장, 산사태업무 담당부서의 장,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전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취약 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심의위원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현지조사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현지조사에 필요한 관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3호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 도 시 주 택 국

---





#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19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청원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
-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사항(안제 3조)
- 대지보상 특별회계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도시행정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조례」를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지정 시 고려사항(안 제4조)
  - 개별법, 상위계획, 주변여건 및 기반시설 등 검토
-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안 제5조)
  - 지정 가능지역(낙후지역, 소규모 공장 난립 지역, 이전부지 등) 및 지정 불가지역(문화재보호구역, 접도구역) 열거
- 지정규모(안 제5조)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안 제11조)
  -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 변경 불가(단, 여건변화등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
- 시설지원(안 제12조)
  -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19호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지역)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지역내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하 “공장건축가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을 말한다.
2. “관리지역”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3. “공장”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 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 정련, 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지정 시 고려사항)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개별법에 따른 관련 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 시장은 관할지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3. 학교, 군부대, 시장(市場)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6.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시장은 관할지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2.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5.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6.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터 이내인 지역

7. 유효저수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보호수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보호구역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11. 「지하수법」 제2조에 따른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 하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외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2.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
13.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해당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14. 농업용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5.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

16.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제6조(지정규모)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계획수립) ① 시장은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따른 공장입주제한 유무, 상습 재해지역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절차)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지정지역의 100분이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지정·고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

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주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지정면적
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지정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해당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지원)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 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와 「청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시 및 지역건설사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경영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평가한 후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계획서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허가할 때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사용 등을 권하여 장려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평가한 후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계획서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⑥ 시장은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에 지방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지역건설협회에서는 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와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과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와 다른 지역건설업체를 제6조에 따른 청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인으로 본다.

제6조(협의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를 두며,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청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청주시의회 의원 2명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90호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청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0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와 「청원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
-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1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으로 한다.

제6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청원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로 본다.

# 청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의안 번호	20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설계 자문위원회 조례」와 「청원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통합하여 「청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함.
-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 설계자문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 · 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주시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청주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자문·심의에 따라 시행한 설계 등에 대한 사후관리
5.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 30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수행 부서의 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8.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면직시키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신체적·정신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회의 참석과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안설명) 자문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자문의뢰

업무담당과장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용역 책임 기술자 등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전자문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에게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현장조사 시 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동행하여 현장설명 및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결) ① 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심의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자문·심의 등에 대하여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자문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자문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자문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자문대상) 위원회의 설계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총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공사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14조(자문서류 작성)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현황조서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3. 사전 자체 심사자료
4. 체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6.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 설계 제출 불가능 시에는 그 사유서)
7.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 9. 건설기계부분 내역서

② 건설공사설계의 변경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설계자문 변경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설계변경 도서

###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5조(결과처리 및 사후관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를 설계 및 시공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성과품 납품 전, 공사착공 전, 공사완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사후평가 및 점검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1호 청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1. 안 건 :
2. 회의일시 :
3. 장 소 :

일련번호	위원성명	서명

4. 참석자 :

5. 회의결과 : 별첨

[별지 제2호서식]

설 계 자 문 대 장

공사명		의안번호		신청자	
접수일자		사전심사기간		회의일시	완결일자
공사기간		총공사비		금회공사비	
자문위원				의견서 제출위원	
				회의 불참위원	
자문결과					
특기사항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사 전 자 문 검 토 의 건 서

- 자문안전명 :
  
- 의        견 :

위와 같이 사전자문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자문위원                      ①

청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설 계 자 문 요 청 서

「청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 공사설계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착공예정연월일 :  
    준공예정연월일 :
6. 설계상특기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설 계 자 문 변 경 요 청 서

「청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 공사의 설계변경 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당초 설계 금액 :  
변경 설계 금액 : (증감)
6. 착공예정연월일 :
7. 준공예정연월일 :
8. 계 약 업 체 명 :
9. 변 경 사 항 :
10.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조 치 결 과 서

○ 건 명 :

구 분	지 적 내 용	조 치 내 용	비 고
<p>(주) 1.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p>			

[별지 제7호서식]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 조치결과서

○ 건 명 :

구 분	지 적 내 용	조 치 내 용	비 고
<p>(주) 1.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p>			

# 청주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안 번호	20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도시개발조례」를 「청주시 도시개발 조례」로 제정함.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공청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관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제60조, 제6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도시개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 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개최)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시 그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 구역을 여러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① 법 제7조 및 영 제11조 및 제13조

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및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청주시보와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은 주민의견청취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제9조(과소 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과소 토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법 제60조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관리자는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특별회계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차입금

7.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용자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61조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 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②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용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사비

제13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에 따라 관리자의 회계 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용자조건) ① 용자금의 이자율은 청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용자기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일 경우 10년 거치 후 일시상환으로 하며,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용자는 시장과 용자대상기관(이하 "용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용자 약정에 따른다.

④ 용자기관은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하였을 경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도  
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자금의 운용규모 및 집행의 우선순위
2. 특별회계자금의 용자규모·용자이율 등 용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전용에 따른 용자금의 회수
5.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  
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경제실장,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농정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3명 이내의 청주시의회 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  
및 경제전문가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과장  
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도시개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조 및 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융자한 보조금과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0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로 제정함.
- 호미골 체육공원 기능 관한 사항(안 제4조)
- 호미골 체육공원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호미골 체육공원 시설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호미골 체육공원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호미골 체육공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 · 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시설용지 내 설치된 골프연습장(투구연습장 포함)·게이트볼장·배드민턴장·배구장·족구장·테니스장·축구장 등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3. "그 밖의 시설"이란 부지 내 인가·허가나 승인을 받아 조성한 시설물을 말한다.
4. "위탁"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협약에 따라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이하 "체육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 기부채납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한 자.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운영·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이란 기부채납자·법인·단체 등이 시장으로부터 체육공원 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체육공원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47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안에 둔다.

제4조(기능) 체육공원은 시민과 이용객에게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제5조(관리의 위탁) ①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부채납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기간 산정 결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651조를 준용한다.

② 기부채납의 범위는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무상 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직접경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입찰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무상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제6조의 위탁·수탁협약사항 승계내용과 무상사용권 양도·양수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대(轉貸)할 경우에도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 전대(轉貸)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전대차 사업계획에 따라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조례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수탁자와 전대(轉貸)자 간의 계약내용에 있



어 모든 민사상·형사상 책임문제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수탁 협약)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위탁·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는 골프연습장 시설을 운영할 때 공공시설로서의 건물과 그 밖의 부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시에 시민 등 이용객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전대(轉貸)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입점자 또는 전대(轉貸)자와의 계약 등 모든 권리를 소멸시켜야 하며, 수탁기간이 끝난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④ 수탁기간에 사용·수익 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는 수탁기간이 끝나거나 수탁의 취소·반납을 할 경우 시설물 보수·수선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보수·수선을 마친 후 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한 경우

2.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체육공원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반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가 제5조나 제13조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와 입점자 또는 전대(轉貸)자 상호 간의 계약권리에 관한 모든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외의 시설은 시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되,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변경)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설치 등을 할 경우, 위탁기간·수탁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나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제11조(보험 등의 가입) ①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공작물·기계기구 등에 대한 손해와 안전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골프연습장 영업에 따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수탁사용기간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업에 따른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체육업무부서 소속 직원에게 수탁시설물에 대하여 상반기·하반기 각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 일지를 갖추어 두고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호미곶체육공원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조례」를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제정함.
- 주민참여 등(안 제3조)
-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안 제5조)
- 건축규제완화(안 제6조)
- 도시재생센터 설치 및 업무(안 제7조,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나. 예산조치 : 162백만원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3월 26일 ~ 2014년 4월 15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정책이나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

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참여에 따른 의견을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의견제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5호에 따른 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 · 청소년 등 소외계층 여가 및 문화 활동 시설
2. 시민의 여가 활동 등 문화 집회시설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

제6조(건축규제의 완화)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3.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4.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2. 도시재생 기획·연구·분석·평가·보고
3.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4.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5.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6.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7.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코디네이터, 컨설턴트 등) 육성
8.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자들로 구성한다.

1. 센터장은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업무 수행자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무국 및 사업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과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법인 및 단체의 선정은 도시재생 관련업무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단체)이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의거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보고) 수탁자는 시장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66호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 청주시 건축 조례안

의안 번호	20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허가민원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건축 조례」와 「청원군 건축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건축 조례」을 제정함.
- 건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건축법」 제4조 ~ 제6조, 제13조, 제20조, 제22조, 제42조, 제45조, 제57조 ~ 제61조, 제8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제26조제3항제2호 단서 중 “다만, 미사용승인”을 다만, 미사용 승인,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승인”으로 제출의견 반영
- 별표2, 1호 사목 및 별표2, 2호 아목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각각 “3미터, 2미터”에서 각각 “2미터, 1미터”로 제출의견 반영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건축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청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주시 건축 조례」(청주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한정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안의 건축물의 심의

5.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 관한 사항. 다만, 미관도로 이면부의 도로(폭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7.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오피스텔의 실의 수가 200실 이상인 건축물
  -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



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3 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3 이하의 증축·개축이거나 1개층 이하의 수직 증축
  4.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및 내부 대수선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별도 요구가 없는 한 제10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서면심의로 하며, 그 의결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과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1.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2. 기존 건축물의 외부형태와 색채의 원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개층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
3. 미관지구 안에서 건물의 외부변경 없이 내부구조에 대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는 건축물
4. 기존 건축물로서 미관지구 전면(주된 도로에 접한 면을 말한다)에 변형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5.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공사중인 건축물로서 외부나 주요 구조체의 변형 없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 범위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6. 그 밖에 미관지구 안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건축물

7. 소위원회 심의 및 서면심의 시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위원회에 건축심의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축심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청주시의회 의원 2명 및 건축·소방·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예술·색채·환경·

역사·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통하여 위촉하고, 어느 한 성별이 60 퍼센트를 넘지 않게 구성하며, 비전문가의 비율은 2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고, 위촉할 때에 청렴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와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 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조경,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서기 및 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주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15일 이내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에 관한 기준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영 제5조의5에 따라 충청북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 후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주무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특례

제1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에 따라 완화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서 시장,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 구청장은 적용대상을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너비 3미터 이상으로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

2. 축사, 작물재배사 및 농어업용 창고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1. 건축물의 건폐율: 100분의 140

2.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40

3. 건축물의 높이 제한: 100분의 140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00분의 140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⑥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



2. 증축·개축: 증축·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65조의2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나.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지구 용적률의 1.5배 이하

제19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는 필요에 따라 건축허가 주관부서에서 정하고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해당 실무 담당자를 우선으로 하며 부재 시에는 업무대행자 또는 담당주사가 참석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석시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의 참석자는 해당 회의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의견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예치금의 예치 시기는 건축주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설계변경(공사비의 증액과 시공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및 명의변경은 허가서와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필증 수령 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 포함)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의 보증기간은 해당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하여 계산한 기간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4. 건축주는 예치금을 예치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청주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3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으로서 분양

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시행 시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기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은 무보상 자진철거 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일 것

제25조(가설건축물 신고 등)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공업지역 안 및 읍·면지역 안에서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2층 이하로서 목재, 철판, 천막 등을 이용한 구조로 녹지지역에서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원예용, 농수산물 보관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업지역 안의 공장 및 읍·면지역 안에서 레일 또는 바퀴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공업지역 안 및 읍·면지역 안의 공장부지에서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연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또는 유리온실구조의 화초 소매점

6. 도로변의 원두막 등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농산물·수산물 판매시설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7. 재래시장 안에서 철파이프천막 구조로서 50제곱미터 미만인 임시 점포. 다만,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8. 10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관리소

제26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한다) 허가 및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 및 대행자 지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대상: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22조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업무대행자의 지정: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를 한 자로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사용승인신청 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 또는 청주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 에서 추천하는 건축사 중에서 허가권자가 선정하는 자

3. 업무범위: 제2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함으로써 시장 또는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4.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최근 1년간 3개월을 초과하는 자는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선임된 업무대행 건축사는 해임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수수료(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변경은 제외한다)를 위한 현

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해당 수수료(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의 20퍼센트. 다만, 허가처리 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해당 수수료의 100퍼센트. 다만, 미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승인 처리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수수료(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이 처리된 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별로 건축사협회에 일괄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건축법」 제2조제2항 제17호에서 정한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제28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으로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6.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 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7.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8.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9.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꽃 재배용 비닐하우스
11. 노외주차장의 관리사무소

제29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중축으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0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청주시에 근무하는 건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31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농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버섯재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3.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4.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7.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③ 제1항에 따른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식재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나무 심기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나무 심기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응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도로의 지정 등)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된 하천·구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제방도로
3. 공원 안 도로

### 제6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이상 이어야 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4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제35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구역  
은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  
지 상호간의 건축물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1. 용도: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동수: 2동 이하
3. 층수: 10층 이하

####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제36조(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  
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  
경우에 전면 도로의 너비는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속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며,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더 큰 도로에 접속한 부분에 대해서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을 접속한 도  
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길게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며, 적  
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큰 도로에 접속한 부분에 대해서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응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유수지·공공공지·완충녹지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④ 전면도로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에 따른 광로, 대로, 중로1류로 계획된 도로에 접하는 대지(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 및 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5미터로 한다.

③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정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④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장 공개공지 등

제3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

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 운동시설 · 위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대상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로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이 최소 30제곱미터 이상

3. 최소 폭은 5미터 이상

4.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등 다종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관측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



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다만, 산출된 용적률은 해당지역 기준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 \{\text{공개공지 등 면적} - (\text{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text{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 \text{대지면적}] \times \text{해당지역 기준 용적률}$
2.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기준 이하(다만, 산출된 높이는 법 제60조의 높이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 \{\text{공개공지 등 면적} - (\text{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text{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 \text{대지면적}] \times \text{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후퇴 또는 지정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 제8장 보칙

제39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액은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상응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2.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 금액
  - 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나. 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업무 의무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에 상응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다. 법 제60조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라.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마.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가 이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제4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 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싸이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이거나 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로에 한정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공작물은 하중이 30톤 이상의 냉각탑·물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1조(건축상) ① 시장은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공모하여 선정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상의 운영, 시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2호 청주시 건축조례, 청원군 건축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제22조 관련)

면 적	금 액	비 고
200m <sup>2</sup> 미만	단독주택 3천5백원	
	기 타 8천원	
200m <sup>2</sup> 이상 1,000m <sup>2</sup> 미만	단독주택 5천원	
	기 타 1만8천원	
1천m <sup>2</sup> 이상 5천m <sup>2</sup> 미만	4만5천원	
5천m <sup>2</sup> 이상 1만m <sup>2</sup> 미만	8만5천원	
1만m <sup>2</sup> 이상 3만m <sup>2</sup> 미만	17만원	
3만m <sup>2</sup> 이상 10만m <sup>2</sup> 미만	35만원	
10만m <sup>2</sup> 이상 30만m <sup>2</sup> 미만	70만원	
30만m <sup>2</sup> 이상	1백40만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하며, 대수선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포함되는 층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다만, 영 제3조의2제7호의 경우에는 벽면적의 합계에 따라 적용).

2. 공작물 축조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주차장	제곱미터	설치면적	제1호에 따른 수수료
지하대피호	제곱미터	설치면적	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타 공작물	건	신청건수	2만원

3. 2개 이상 행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산정하여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한다.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34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용도	규 모	지 역	띄어야 할 거리	
가. 공장, 창고시설(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 농업용창고 제외)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1.5미터이상	
		· 그 밖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판매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 전지역	3미터 이상	
다. 숙박시설	· 여인숙, 여관	· 전지역	2미터 이상	
	· 그 밖의 시설	· 전지역	3미터 이상	
라.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1,000제곱미터 이상	· 전지역	3미터 이상	
마. 종교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 전지역	3미터 이상	
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의 건축물)	전체	· 전지역	3미터 이상	
사.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제외)	· 아파트	· 전지역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전지역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전지역	1미터 이상	
아. 의료시설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전지역	2미터 이상	
	· 정신병원, 요양소	· 전지역	6미터 이상	
	· 격리병원	· 전지역	6미터 이상	
자. 장례식장	전체	· 전지역	6미터 이상	
차.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 전지역	2미터 이상	
	· 위락시설	· 전지역	2미터 이상	
카.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전지역	6미터 이상	
	· 그 밖의 시설	· 전지역	4미터 이상	
타. 운동시설	1,000제곱미터이상	· 주거지역	2미터 이상	
		· 그 밖의 지역	1미터 이상	
파.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1,500제곱미터이상	· 주거지역	3미터 이상	
		· 그 밖의 지역	1미터 이상	
하. 그 밖의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체	· 주거지역 · 그 밖의 지역	4미터 이상 2미터 이상
	· 자동차관련시설	전체	· 주거지역 · 그 밖의 지역	3미터 이상 1미터 이상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전체	· 주거지역 · 그 밖의 지역	2미터 이상 1미터 이상
	·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전체	· 공업지역 · 그 밖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상
	· 묘지관련시설	전체	· 전지역	6미터 이상
	· 관광휴게시설	전체	· 전지역	2미터 이상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용도	규모	지역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단독주택	전체	· 전용주거지역 1미터 이상	
	그 밖의 용도	전체	· 전용주거지역 2미터 이상	
나.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제외)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 그 밖의 지역	1.5미터 이상	
다. 판매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 상업지역 제외	1.5미터 이상	
라. 숙박시설	여관, 여인숙	· 상업지역 제외	1미터 이상	
	그 밖의 시설	· 상업지역 제외	1.5미터 이상	
마.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1,000제곱미터 이상	· 상업지역 제외	1.5미터 이상	
바. 종교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 상업지역 제외	1.5미터 이상	
사.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의 건축물)	전체	· 상업지역 제외	1.5미터 이상	
아. 공동주택	· 아파트	· 상업지역 제외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상업지역 제외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상업지역 제외	1미터 이상	
자. 의료시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상업지역 제외	1미터 이상	
	정신병원, 요양소	· 상업지역 제외	4미터 이상	
	격리병원	· 상업지역 제외	4미터 이상	
차. 장례식장	전체	· 상업지역 제외	4미터 이상	
카. 위탁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 상업지역 제외	1미터 이상	
타. 그 밖의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체	· 주거지역 4미터 이상	
		· 그 밖의 지역(상업지역 제외)	2미터 이상	
	· 자동차관련시설	전체	· 주거지역	3미터 이상
			· 그 밖의 지역	1미터 이상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함)	전체	· 주거지역	3미터 이상
			· 그 밖의 지역	2미터 이상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전체	· 공업지역 · 그 밖의 지역	4미터 이상 6미터 이상
· 묘지관련시설	전체	· 전지역	6미터 이상	
· 관광휴게시설	전체	· 전지역	2미터 이상	
· 위에서 정하지 않는 건축물	전체	· 전지역	0.5미터 이상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제26조제3항 관련)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백원미만은 버림)으로 한다.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상 소요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5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3천500제곱미터 미만	7시간
3천50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9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7천500제곱미터 미만	11시간
7천5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3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2만 5천제곱미터 미만	16시간
2만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20시간
5만제곱미터 이상 7만5천제곱미터 미만	24시간
7만5천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8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31시간
15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33시간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6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8시간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4]

##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 기준**(제38조 관련)

### 1. 표기 내용

가. 안내문 :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나. 배치도 :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범례 :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라. 그 밖에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 2. 설치 규격 및 재질

가. 설치 규격 : 세로 1m 이상 × 가로 50cm 이상

나. 재질 :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으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별지 제1호서식]

진 축 심 의 신 청 서									
건축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계자	성 명				사무소명				
	주 소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구				
	지 목				면 적				
용 도	주 용 도				부속용도				
규 모	건축면적			연 면 적			지하면적		
	건 폐 율			용 적 율			최고높이		
	층 수			조경면적			공개공지		
	동 수			세대수			평 형		
건축구조					공사종류				
주차대수		법적: 대, 설치: 대,(지주식: 대, 기계식: 대)							
동 (층) 별 개 요									
구 분	면 적	용 도	구 분	면 적	용 도	구 분	면 적	용 도	
심의신청내용									
그 밖의 사항									
<p>「건축법」 제4조 및 「청주시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주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청 주 시 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결과

- 민 원 명 :
- 위    치 :
- 민 원 인 :
- 개 최 일 :
- 개최장소 :

[관계부서 검토결과]

관계공무원			관련법규	검토내용	검토의견	
소속	직·성명	서명			가	부
※ 종합의견 :						



[별지 제4호서식]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반환 청구서

건 축 주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허 가 번 호		허 가 일	
대 지 위 치		지 번	
사용승인일	. . .		
예 치 방 법	<input type="checkbox"/> 현금 등 <input type="checkbox"/> 보증서		
예 치 금 액	금                      원(W                      )		
<p>「청주시 건축 조례」 제21조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건축주) :                      (서명 또는 인)</p> <p>청 주 시 장 귀하</p>			
구비서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증		

[별지 제5호서식]

##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

(앞면)

위 치		건 물 명	
대 지 면 적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합 계	m <sup>2</sup>	용 도	
공 개 공 지 면 적		건 축 기 준 완 화 내 용	
공 개 공 지 내 휴 계 시 설			
공 개 공 지 배 치 도			
감 리 사 무 소 명		감 리 자	(인)

(뒷면)

전 경 사 진
안 내 판 사 진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0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허가민원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와 「청원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함.
-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등 (안 제4조)
- 지원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27조)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제3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4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임대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8항에 따라 청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청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에 한정한다.

제3조(적용제외) 공모사업과 국도비지원사업 및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모 주민숙원사업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한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2.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3.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정자 외 건축물은 제외한다)
6.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에 한정한다)
7. 옥외 주차장의 증설 및 유지보수
8.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9. 자전거 주차시설 개선
10. 그 밖에 위해(危害)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11.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

제5조(지원금액 등) ① 보조금 지원 금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부가가치세 포함)

1. 20~30세대 미만 70퍼센트 지원(다만, 전용 평균면적이 85제곱미터

터 이하인 경우는 80퍼센트 지원)

## 2. 300세대 이상 60퍼센트 지원

② 제1항의 범위에서 보조금지원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금액, 비율 등에 대하여 청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로 결정한다.

③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의 공동전기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50퍼센트 이상을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3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 공동주택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입주자 대표, 주택관리사, 건축 또는 토목 관계 전문가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부서의 장이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3. 지원사업 금액의 결정
4.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②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사업 및 금액 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노후상태(경과년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

제8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시장은 매년 게시판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 지원계획을 게시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착수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제8조제4항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사본,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입찰관련 증명서류,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비교견적서, 공정표 등)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착수신고 시 입주민 중에서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보조금신청서(증명자료 첨부)

2. 사업 전후사진 각 1부

② 시장은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 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붙인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危害)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

나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13조(설치)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다만, 공용부분에

한정한다.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민원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부서의 장이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이나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4.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후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사건의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에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쟁의 당사자가 다수인인 경우 대표자(3인 이내)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9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등은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 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및 조사)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등) ①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조정비용 등) 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1. 감정·진단·시험에 드는 비용

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다만,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드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 등이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드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에 대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정의 거부·중지·종결을 통보하였을 때에는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24조(조정외의 거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
5. 관리규약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록 작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26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28조(설치)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기능)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

· 의결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제3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임대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4. 임대주택관리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부서의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31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은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한다.

#### 제5장 별칙

제32조(과태료 징수절차)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청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 제6장 보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5호 청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청원군 공동주택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5조 규정을 적용할 때 통합 전 "청원군" 행정구역 공동주택 단지는 2018년까지 같은 지원사



업이 아닌 경우 보조금을 5,000만원까지(이전 지원 보조금을 포함한다)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 2,000만원 미만은 의무관리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비 전액 보조 지원한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천원)	비 고	
계				
○○ 분야				
○○ 분야				
○○ 분야				
그 밖의 사항				
<p>「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관리주체 (인)</p> <p>청 주 시 장 귀하</p>				
<p>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p>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착 수 신 고 서		
계 약 자	발 주 자	
	계약상대자	
계약내용	공 사 명	
	계 약 금 액	
	총 공사 금액	
	계약 보증금	
	착수 년월일	
	준공 예정일	
	그 밖의 사항	
<p>「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착수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고자    입주자 대표회의장(대표자)    (인)</p> <p style="margin-left: 120px;">아 파 트 관 리 소 장    (인)</p> <p style="margin-left: 100px;">(전화 :    )</p> <p style="margin-left: 10px; margin-top: 10px;">청 주 시 장    귀하</p>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별지 제3호서식]

사업 완료 보고서			
사업명			
계약금액	공사계약 금액		
	시 보조 금액		
	자체부담 금액		
계약업체명		착공일	년 월 일
계약일	년 월 일	준공일	년 월 일
사업내용	<p>「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확 인 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p> <p style="padding-left: 100px;">아 파 트 관 리 소 장      (인)</p> <p>청 주 시 장 귀하</p>		
<p>구비서류 : 1. 정산내역서(증빙자료 붙임). 2. 사업 전·후 사진 각1부.</p>			



[별지 제5호서식]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조정건명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용			
분쟁 조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제20조제2항 및 제3항      <input type="checkbox"/>공동주택관리      <input type="checkbox"/>공동주택  <input type="checkbox"/>제28조      <input type="checkbox"/>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임대주                 </p> <p>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분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이 조정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right;">                     청주시 <input type="checkbox"/>공동주택관리      <input type="checkbox"/>임대주택      분조정위원장                 </p>			



[별지 제7호서식]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석 대상자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참고인, 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〇〇:〇〇)			
출석장소				
<p>「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input type="checkbox"/>제22조제2항    에 따라 위 조정 건에  <input type="checkbox"/>제28조</p> <p>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청주시 <input type="checkbox"/>공동주택관리    <input type="checkbox"/>공동주택  <input type="checkbox"/>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임대주택</p> <p>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주시 <input type="checkbox"/>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input type="checkbox"/>임대주택</p>				
<p>※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p>				



[별지 제8호서식]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관리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분쟁조정 (거부·중지·종결)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 또는 중지사유				
<p>「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input type="checkbox"/>제24조제5항 <input type="checkbox"/>제28조 에 따라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함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주시 <input type="checkbox"/>공동주택관리 <input type="checkbox"/>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장</p>				



# 청주시 경관 조례안

의안 번호	20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허가민원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경관 조례」와 「청원군 경관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경관 조례」를 제정함.
-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경관법」 제3조, 제10조, 제13조~제14조, 제23조  
「경관법 시행령」 제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양 시군 소관부서 협의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안 제2조제6호 대규모 건축물의 정의 “연면적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의견 반영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경관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이란 시민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체계, 규범 등의 제도와 행정이라는 여과과정을 통하여 물리적 환경으로 표현되고 축적·기록된 종합적 경관을 말한다.
2. "자연경관"이란 하천, 산, 구릉지, 녹지, 습지 등 경관적인 가치가 높은 자연적인 요소로 구성된 경관을 말한다.
3. "역사문화경관"이란 문화재, 건축물, 기념물, 조형물, 터 등 역사속에서 형성되어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요소들로 구성된 경관을 말한다.
4. "시가지경관"이란 상업업무지, 주거지, 공원 등 인위적으로 구성된 경관적인 가치가 높은 요소들로 구성된 경관을 말한다.
5. "야간경관"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6. "대규모 건축물"이란 연면적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폭 25미터 이상 도로변으로부터 양측 30미터 구간 내에 한정함)을 말한다.
7. "도시구조물"이란 교량, 고가도로, 육교, 방음벽, 옹벽, 분수대,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등 도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공공구조물을 말한다.
8. "가로시설물"이란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쓰레기통, 안내표지판, 도로명판, 가로등, 가관점, 공공광고물, 게시대, 게시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공중전화부스 등 차도·보도·가로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 기본원칙)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포함한 경관계획에 따라 복원·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2장 경관계획

제5조(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경관 보전과 수준향상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 구분)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분야별·권역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녹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2. 수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3. 중심시가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4. 역사문화관광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
5. 야간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계획
6. 그 밖에 시민 요구와 시장이 도시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관계획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와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은 작성 후 공람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은 경관계획에 반영·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와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계획을 위한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과 분석결과
9. 현황사진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 받은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경관데이터 구축 포함)
2. 경관계획수립의 필요성
3. 경관형성사업의 필요성
4.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5. 그 밖에 경관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모든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주민



제안은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 및 관할 구청장에게 제안된 사항에 관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지를 결정할 경우 필요하면 청주시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시장은 제5조제1항과 제6조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관관리의 기본 목표와 방침
2. 해당 분야별·권역별 경관현황 조사와 이용 실태
3.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및 하위계획과의 관련체계
4. 경관기본구상의 설정
5.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6.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7.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과 재원조달 방법
8. 도시경관관리 시책 시행을 위한 추진전략과 관리기준
9. 경관의 보호와 형성을 위한 방침과 공공디자인계획 제시
  - 가. 경관유형별 특성화 계획
  -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계획
  -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연출계획

- 라. 랜드마크 형성과 조망연출계획
- 마. 자연을 도입한 공간디자인계획
-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연출계획
- 사. 건축물 디자인과 스카이라인 및 야간경관 연출계획
- 아. 색채계획
- 자. 가로경관과 야간경관 연출계획
- 차. 공원·녹지계획(공원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적용)
-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 타. 옥외시설물과 광고물디자인 체계 수립
- 파. 예술품 설치 기준계획
- 하. 호수 주변과 하천경관 연출계획

10. 그 밖에 도시경관의 보전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청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발표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등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제3장 경관사업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련 사업
3. 주요 수변 및 산변의 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및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개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방안
4. 유지관리비 조달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사업시행 전후대비 시뮬레이션
7. 그 밖에 사업을 위한 사례검토서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지역의 주민, 시 주관부서 공무원, 경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새로 위촉한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한 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와 홍보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장 경관협정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시

영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와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4.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와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기관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와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드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협정체결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집행결과를 증명 자료를 붙여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이나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과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 제5장 도시미관의 개선



제22조(주요경관지구의 지정)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주변지역의 경관형성 또는 보존상 필요한 지역을 주요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 하천, 호수 등 풍부한 자연을 가지는 지역
2. 역사적·문화적 자원이나 풍치(風致)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
3. 넓은 면적의 전원경관 또는 집단취락과 주변의 전원, 삼림 등이 전부가 되는 독자적인 경관을 가지는 지역
4. 중요한 교통 시설과 인접한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이 집적하고 있는 지역
6. 그 밖에 경관 형성을 계획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주요경관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요경관지구를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야간경관조명의 권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인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작품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제24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시장은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 건축물
2. 국가 및 충청북도 지정 문화재
3. 교량 및 공원과 수변공간
4. 랜드마크적인 상징조형물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25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에서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행위
2. 자연녹지지역에서 폭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 행위

제26조(경관조명의 정비) ① 시장은 무분별한 조명으로 보행자와 자동차운전자에게 시각적인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과도한 조명 시설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물 관리자에게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도한 조명시설에 대한 정비를 요구받은 시설물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장 경관위원회

제27조(경관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는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승인과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제5조제2항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1항 분야별·권역별 경관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7. 특수목적 경관관리지구의 지정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8. 지구경관관리 계획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9. 시민발의에 따른 경관지구의 지정과 계획의 수립
10. 야간경관계획 수립과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11. 시의 경관 관련 개선사업과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12. 도시구조물(기념조형물 포함)의 설치 및 개선·보수를 할 경우 구조물의 형태·디자인·색채에 관한 사항
13. 가로시설물의 설치 및 개선·보수를 할 경우 장치시설물의 형태·디자인·색채에 관한 사항
14. 시에서 시행하는 야간경관조명 시설의 설치 및 개수·보수에 관한 사항
15. 1만제곱미터 이상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대단위사업
16. 대규모 건축물의 외장디자인 및 경관계획
17. 그 밖에 시장이 경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단체의 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은 실시설계완료 이전

2.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③ 그 밖에 심의에 관련된 사항은 “청주시 경관 심의기준”을 따른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경관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과 경관협정의 인가 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5.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한다.

가. 민간시설물의 야간경관조명시설의 설치 및 개수·보수에 관한 사항

나. 경관 저해시설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경관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1조(심의 및 자문 신청) 조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경관분야

심의와 자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경관형성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와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제32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11호 청주시 경관 조례, 청원군 경관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경관심의(자문) 신청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심 의 <input type="checkbox"/></p> <p>경 관</p> <p>자 문 <input type="checkbox"/></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신 청 서</p> </div> </div>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자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단위: 천원)	계	국·도비	시비	자부담	기타
심 의 및 자 문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청주시 경관 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청기관      성 명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b>청주시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b></p>					



#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공공디자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청주시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문화회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하는 사항(안 제5조)
- 회관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회관시설의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의 모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청주시 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61에 둔다.

제3조(업무) 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
2. 향토문화 사업을 위한 각종사업
3. 각종 공공행사 유치 추진
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회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집회실
2. 연회장 및 주방시설
3. 민간사회단체 사무실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운영) ① 회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② 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문화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업

무를 겸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회관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재산관리) 재산관리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용허가) ①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  
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회관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것이 우려될 때
3.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해당하  
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초과 시간마다 5,  
000원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는 1일 3시  
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와 그 밖의 냉난방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허가취소)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허위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목적을 현저히 위반하여 사용할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파괴 또는 크게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크게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사용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

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그 시설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장부비치) 시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대장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위임) 시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시설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시설사용료	비 고
집 회 실	15,000	1. 사용기간 : 3시간 기준 2.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5,000원 가산 3. 냉난방 및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40 가산
연 회 장	15,000	
주방시설	30,000	
사 무 실	연 임대-재산평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임 대료 납부	전기·수도 등 사용료는 사용자 별도 부담





# 청주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공공디자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옥상녹화 및 사업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의 인공지반(이하 "옥상"이라 한다)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
  -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
  -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 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
3.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조경협의·조정"이란 사업주체별로 조경과 관련한 계획, 설계, 시공,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검토를 받거나 협의·조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신청 등)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옥상녹화 계획 변경) 옥상녹화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옥상녹화 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녹화사업의 변경에 관해서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옥상녹화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
2. 옥상녹화 수목의 수종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의 변경만을 말한다)
3. 옥상녹화 화단 깊이 10분의 2 이하의 변경인 경우
4. 초화류의 수종 변경인 경우

제5조(녹화완료 보고서 제출) 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가 완료되었을 경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옥상녹화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지출내역서

3. 송금계좌 통장 사본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녹화계획서와 같이 녹화가 완료 되었는지를 건축물의 감리자가 확인 제출하고, 기존 건축물인 경우에는 녹화지원 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건축물의 선정) 옥상녹화사업 지원 대상은 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선정한다. 다만, 해당연도 옥상녹화사업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정시설은 제외한다.

1. 자기 비용으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최근에 실시한 건축물

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6.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

7.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7조(협약 체결) 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과 건축물 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 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조정) 사업주체별로 추진하는 조경공사와 각종 일반 공사 중 부대 조경공사에 대하여 기본 설계 당시 조경 수목의 배식·시설물의 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조정을 거쳐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옥상녹화 및 사업비 지원 기준 등) ① 옥상녹화사업의 건축물 옥상녹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 중 50제곱미터 이상
2. 옥상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옥상면적의 2분의 1이상(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② 옥상녹화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주거용 건축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하
  2. 그 밖의 용도 건축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이하
- ③ 사업비를 지원받은 건축물은 10년 이내에 지원 신청 할 수 없다.
- ④ 시장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옥상녹화의 기본) ① 건축물 옥상녹화의 경우 옥상면적, 설계 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옥상녹화에 따른 조경 식재 시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구조안전성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에 따른 하중이 설계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할 것.
2. 녹지는 식목 등을 유지·육성하는 식재토양 및 배수층 등으로 구성할 것.
3. 식재 토양은 수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토양을 사용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토양의 두께 또는 지지대를 확보할 것.

4. 식재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피식물이나 덩굴식물 등을 사용하고 급수전 등 관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식물의 유지관리나 건조에 따라 양호한 육성이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을 도입할 것.
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바람이 직접 부딪치는 곳에 방풍을 위한 수벽 등을 설치하고 지주나 뿌리받침의 버팀대 등을 사용하여 뿌리의 안정을 도모할 것.
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11조(유지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수목 및 초화류 등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및 점검사항을 기록하는 등 성실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상녹화 지원 사업 완료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의 녹화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및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국토교통부고시 「조경 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2호 청주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2. 옥상조경 세부계획					
시설명	옥상조경세부시설	소요금액 (단위:천원)	산출근거	비고	
합 계					
방수공사	옥상바닥 방수				
배수공사	배수시설설치				
옥상녹화	소 계				
	인공지반(토양층) 설치				
	식재	초 화 류			
		지피식물			
		관 목			
		교 목			
	기 타				
조경시설	소 계				
	파 고 라				
	벤 치				
	정자(亭子)				
	환경조형물				
	보 행 통 로				
	정 원 석				
	분수·연못·수로 등 수경시설				

○ 해당란에 v 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도서가 있는 건물입니까? ① 준공도서가 있음 (설계도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② 준공도서가 없음
2. 건물 준공 후 용도 변경,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① 변경시기 :           년    월    일 ② 변경내용 :
3. 옥상녹화 후 건물이용자 외에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적극개방 ② 예약방문에 의한 부분개방 ③ 개방불가 ④기타(                            )
4. 현 건축물의 용도는 ? ① 교육시설   ② 의료, 복지시설   ③ 문화시설   ④ 주거   ⑤ 상업, 업무용 건물 ⑤ 그 밖의 사항 (                            )

<b>※ 최근 구조진단과 방수처리를 실시한 신청자의 경우만 답변해 주십시오</b>	
5. 건축물 정밀구조진단은 언제 하셨습니까 ? ① 1개월전   ② 2~4개월사이   ③ 5~7개월사이   ④ 8~10개월사이   ⑤ 1년이상 ※ 건축물구조진단 보고서 보유 여부 (   있다 /   없다   )	
6. 방수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① 우레탄 등 도막방수   ② FRP복합방수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④ 시트+도막 복합방수   ⑤ 아스팔트방수   ⑥ 그 밖의 사항(                            ) ※ 방수공사 한 일자 (                            개월 前)	

3. 건축물의 현황 사진

[건물의 전경 사진]

[건물의 옥상 전경 사진]

<b>옥상녹화사업완료서</b>				처리기한		
				15일		
①사업시행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팩스				
		핸드폰				
<b>1. 옥상녹화사업개요</b>						
② 건 물 현 황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건물소재지			건물명칭		
	준공연도	년	층수	지하 지상	층 층	건물구조
	연면적	m <sup>2</sup>	건물용 도	건물 내 상주인원		
③옥상유효면적				m <sup>2</sup>	④ 소요사업비	
					천원	
⑤사업시행기간			. . .부터 . . .까지	⑥ 보조금결정 액	천원	
⑦옥상조경면적	옥상녹화면적	조경시설 면적		인공지반 조성토량	기타	
	m <sup>2</sup>	m <sup>2</sup>	m <sup>3</sup>			
<p>「청주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 녹화사업 완료서를 제출하오니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청주시장 귀하</p>						
<구비서류>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2. 옥상조경 시설 설치 현황					
시 설 명	옥상조경 시설	규 격	시설설치현황	비고	
합 계					
방수공사	옥상바닥 방수	공법 및 시공면적	m <sup>2</sup>		
배수공사	배수시설설치	면적 또는 길이			
옥상녹화	소 계				
	인공지반(토양층) 설치		면적 및 토량		
	식재	초 화 류	종류 및 본수		
		지피식물	종류 및 식재면적		
		관 목	종류 및 본수		
		교 목	본수 및 규격 (근원직경 등)		
		기 타			
조경시설	소 계				
	파 고 라		개소, 면적		
	벤 치				
	정자(亭子)		개소, 면적	m <sup>2</sup>	
	환경조형물		종류 및 규격		
	보 행 통 로		면적		
	정 원 석		면적		
	분수·연못·수로 등 수경시설		면적	m <sup>2</sup>	
그 밖의 시설	소 계				

3. 옥상녹화사업 전경 사진

[옥상녹화 공사 전경 사진]

[옥상녹화사업 완료 후 전경 사진]

#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1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공공디자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청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함.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 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양성화 차원에서 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광고물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

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및 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소유자시설

8. 「건축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9. 「건축법」 제2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1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1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1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1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17. 「건축법」 제2조제2항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축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간판표시계획서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간판표시계획서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사회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충청북도의회 또는 청주시의회 의원

라. 청소년·성인지 정책 전문가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북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

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의사항 중 「청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옥상광고물을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내의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의 광고물 중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의 표시허가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시장에게 매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관계 법령 등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30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⑧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

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

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벽보 지정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 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광고

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은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

킬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되었을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 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두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2. 시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태료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절차·채납처분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39호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청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벽보 지정게시판의 관리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고시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  
촉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 종류 및 기준	이행강제금
<p>1.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p> <p>가. 면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이하</li> <li>- 2.1㎡ 이상 3.0㎡ 이하</li> <li>- 3.1㎡ 이상 4.0㎡ 이하</li> <li>- 4.1㎡ 이상 5.0㎡ 미만</li> </ul> <p>나. 면적 5㎡ 이상 1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이상 6.0㎡ 이하</li> <li>- 6.1㎡ 이상 7.0㎡ 이하</li> <li>- 7.1㎡ 이상 8.0㎡ 이하</li> <li>- 8.1㎡ 이상 9.0㎡ 이하</li> <li>- 9.1㎡ 이상 10.0㎡ 미만</li> </ul> <p>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이상 12.0㎡ 이하</li> <li>- 12.1㎡ 이상 14.0㎡ 이하</li> <li>- 14.1㎡ 이상 16.0㎡ 이하</li> <li>- 16.1㎡ 이상 18.0㎡ 이하</li> <li>- 18.1㎡ 이상 20.0㎡ 미만</li> </ul> <p>라. 면적 20㎡ 이상</p>	<p>20만원</p> <p>30만원</p> <p>40만원</p> <p>45만원</p> <p>55만원</p> <p>65만원</p> <p>75만원</p> <p>85만원</p> <p>95만원</p> <p>110만원</p> <p>130만원</p> <p>145만원</p> <p>165만원</p> <p>185만원</p> <p>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최고 500만원)</p>
<p>2. 돌출간판</p> <p>가. 연면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이하</li> <li>- 2.1㎡ 이상 3.0㎡ 이하</li> <li>- 3.1㎡ 이상 4.0㎡ 이하</li> <li>- 4.1㎡ 이상 5.0㎡ 미만</li> </ul> <p>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이상 6.0㎡ 이하</li> <li>- 6.1㎡ 이상 7.0㎡ 이하</li> <li>- 7.1㎡ 이상 8.0㎡ 이하</li> </ul>	<p>20만원</p> <p>30만원</p> <p>40만원</p> <p>49만원</p> <p>55만원</p> <p>65만원</p> <p>75만원</p>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0만원
라.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최고 500만원)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5만원
- 1.1㎡ 이상 2.0㎡ 이하	40만원
- 2.1㎡ 이상 3.0㎡ 미만	48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5만원
- 3.6㎡ 이상 4.0㎡ 이하	65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90만원
라.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최고 50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 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1m <sup>2</sup> 이상 3.0m <sup>2</sup> 이하	35만원
- 3.1m <sup>2</sup> 이상 4.0m <sup>2</sup> 이하	40만원
- 4.1m <sup>2</sup> 이상 5.0m <sup>2</sup> 미만	48만원
나. 연면적 5m <sup>2</sup> 이상 10m <sup>2</sup> 미만	
- 5.0m <sup>2</sup> 이상 6.0m <sup>2</sup> 이하	55만원
- 6.1m <sup>2</sup> 이상 7.0m <sup>2</sup> 이하	65만원
- 7.1m <sup>2</sup> 이상 8.0m <sup>2</sup> 이하	75만원
- 8.1m <sup>2</sup> 이상 9.0m <sup>2</sup> 이하	85만원
- 9.1m <sup>2</sup> 이상 10.0m <sup>2</sup> 미만	95만원
다. 연면적 10m <sup>2</sup> 이상 20m <sup>2</sup> 미만	
- 10.1m <sup>2</sup> 이상 12.0m <sup>2</sup> 이하	110만원
- 12.1m <sup>2</sup> 이상 14.0m <sup>2</sup> 이하	130만원
- 14.1m <sup>2</sup> 이상 16.0m <sup>2</sup> 이하	150만원
- 16.1m <sup>2</sup> 이상 18.0m <sup>2</sup> 이하	170만원
- 18.1m <sup>2</sup> 이상 20.0m <sup>2</sup> 미만	190만원
라. 연면적 20m <sup>2</sup> 이상 50m <sup>2</sup> 미만	
- 20.0m <sup>2</sup> 이상 25.0m <sup>2</sup> 이하	210만원
- 25.1m <sup>2</sup> 이상 30.0m <sup>2</sup> 이하	230만원
- 30.1m <sup>2</sup> 이상 35.0m <sup>2</sup> 이하	245만원
- 35.1m <sup>2</sup> 이상 40.0m <sup>2</sup> 이하	260만원
- 40.1m <sup>2</sup> 이상 45.0m <sup>2</sup> 이하	280만원
- 45.1m <sup>2</sup> 이상 50.0m <sup>2</sup> 미만	290만원
마. 연면적 50m <sup>2</sup> 이상	300만원 +연면적 50m <sup>2</sup>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sup>2</sup> 당 9만원을 더한 금액(최고 500만원)
5.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m <sup>2</sup> 이하	50만원
- 연면적 5.1m <sup>2</sup> 이상 10m <sup>2</sup> 이하	50만원
- 연면적 10.1m <sup>2</sup> 이상 15m <sup>2</sup>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1m <sup>2</sup> 이상 21m <sup>2</sup> 미만	70만원
- 연면적 21m <sup>2</sup> 이상	80만원 +연면적 21m <sup>2</sup>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sup>2</sup> 당 5만원을 더한 금액(최고 100만원)

<p>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드벌룬(공) 1개</li> <li>- 애드벌룬(공) 2개</li> <li>- 애드벌룬(공) 3개 이상</li> </ul>	<p>40만원</p> <p>60만원</p> <p>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최고 100만원)</p>
<p>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p> <p>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5㎡ 이하</li> <li>- 연면적 5.1㎡이상 10㎡이하</li> <li>- 연면적 10.1㎡이상 15㎡이하</li> <li>- 연면적 15.1㎡이상 21㎡미만</li> <li>- 연면적 21㎡ 이상</li> </ul>	<p>40만원</p> <p>50만원</p> <p>60만원</p> <p>70만원</p> <p>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최고 100만원)</p>
<p>나. 교통안내소</p>	<p>· 가로형 간판에 준함</p>
<p>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p>	<p>· 지주이용 간판에 준함</p>
<p>라.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p>	<p>·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p> <p>·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p>
<p>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p>	
<p>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p> <p>가. 비행선</p> <p>(1) 무인 비행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10㎡ 이하</li> <li>- 연면적 11㎡ 이상</li> </ul> <p>(2) 유인 비행선</p>	<p>150만원</p> <p>16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최고 50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10㎡ 이하</li> <li>- 연면적 11㎡ 이상</li> </ul>	<p>200만원</p> <p>21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최고 500만원)</p>
<p>나. 그 밖의 교통수단</p>	
<p>1) 연면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이하</li> </ul>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이상 2.0㎡ 이하</li> </ul>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 이상 3.0㎡ 미만</li> </ul>	29만원
<p>2) 연면적 3㎡ 이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 이상 4.0㎡ 이하</li> </ul>	3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 이상 5.0㎡ 미만</li> </ul>	45만원
<p>3) 연면적 5㎡ 이상</p>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4만원을 더한
	금액(최고 500만원)
<p>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p>	<p>· 가로형 간판에 준함</p>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2조제1항 관련 )

종 류	교육시 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3시간 이내)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옥 외 광 고 물 등 관 리 법 제 정 · 개 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밖에 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의 종류 및 기준	단위	수수료
1. 가로형 간판		
가. 일반 가로형 간판( 나향 외의 간판)	개	
- 면적 6㎡ 이하		3,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건물 옆 벽면·뒷 벽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도 조례 제5조제4호)	개	
- 면적 6㎡ 이하		30,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2. 세로형 간판	개	
- 면적 6㎡ 이하		2,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3. 돌출간판	개	
- 연면적 3.5㎡ 이하		15,000원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4,000원
4. 공연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와 같음
5. 옥상간판	개	
- 연면적 10㎡ 이하		3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6. 지주 이용 간판	개	
- 연면적 10㎡ 이하		1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7. 애드벌룬	개	
가. 공중에 띄우는 것		15,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이용 간판에 준함
8.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개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9.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개	9,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0,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등		2,000원
11.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개	4,000원
12. 창문 이용 광고물	개	4,000원
13. 현수막	개	
가.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7,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14. 벽보		
가. 가로 40센티미터×세로 55센티미터 이하	50매당	3,000원
나. 가로 40센티미터×세로 55센티미터 초과 가로 60센티미터×세로 90센티미터 이하	50매당	12,000원
15. 전단	1,000매당	3,000원
16.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 ·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 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는 포함)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등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며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1.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2.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3.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4.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5.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3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1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7.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8.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1.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2.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p>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이하</li> <li>- 0.6㎡ 이상 0.8㎡ 이하</li> <li>- 0.9㎡ 이상 1.0㎡ 미만</li> </ul>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이상 1.3㎡ 이하</li> <li>- 1.4㎡ 이상 1.6㎡ 이하</li> <li>- 1.7㎡ 이상 2.0㎡ 미만</li> </ul>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이상 2.3㎡ 이하</li> <li>- 2.4㎡ 이상 2.6㎡ 이하</li> <li>- 2.7㎡ 이상 3.0㎡ 미만</li> </ul> <p>라) 연면적 3㎡ 이상</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이하</li> <li>- 0.6㎡ 이상 0.8㎡ 이하</li> <li>- 0.9㎡ 이상 1.0㎡ 미만</li> </ul>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이상 1.3㎡ 이하</li> <li>- 1.4㎡ 이상 1.6㎡ 이하</li> <li>- 1.7㎡ 이상 2.0㎡ 미만</li> </ul>	<p>법 제20조제1항제1호</p>	<p>13만원</p> <p>22만원</p> <p>32만원</p> <p>42만원</p> <p>50만원</p> <p>64만원</p> <p>75만원</p> <p>100만원</p> <p>129만원</p> <p>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최고 500만원)</p> <p>8만원</p> <p>12만원</p> <p>14만원</p> <p>25만원</p> <p>33만원</p> <p>49만원</p>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58만원
- 2.0㎡ 이상 2.3㎡ 이하	67만원
- 2.4㎡ 이상 2.6㎡ 이하	79만원
- 2.7㎡ 이상 3.0㎡ 미만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최고 500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8만원
-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 2.1㎡ 이상 3.0㎡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22만원
- 3.8㎡ 이상 4.4㎡ 이하	25만원
- 4.5㎡ 이상 5.0㎡ 미만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42만원
- 6.1㎡ 이상 8.0㎡ 이하	58만원
- 8.1㎡ 이상 10.0㎡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최고 500만원)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최고 500만원)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장 이상</li> </ul>		<p>장당 42천원(최고 500만원)</p>
<p>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li>- 21장 이상</li> </ul>		<p>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최고 500만원)</p>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li>- 21장 이상</li> </ul>		<p>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최고 500만원)</p>
<p>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li>- 21장 이상</li> </ul>		<p>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최고 500만원)</p>
<p>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p> <p>가. 30일 이상 90일 미만</p> <p>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p> <p>다. 180일 이상 1년 미만</p> <p>라. 1년 이상</p>	<p>법 제20조제1항제2호</p>	<p>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p>
<p>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p> <p>가. 연 1회 위반한 경우</p> <p>나. 연 2회 위반한 경우</p> <p>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p>	<p>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p>	<p>80만원 200만원 500만원</p>
<p>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p> <p>가. 연 1회 위반한 경우</p>	<p>법 제20조제1항제5호</p>	<p>80만원</p>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처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명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⑱ 변  경 사 항	⑲ 비  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외광고업자등록번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 20 . . . . ( 년 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청 주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기한( 20 . . . ~ 20 .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 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 주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청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 보존용지(1종) 70g/㎡ ]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청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							처 리 기 한	
							30일	
광 고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광 고 물 심 의 신청내역	광 고 물 설치장소	( )						
	광고물 종류 (사용조명)	( )	수량	구 분	신 구	신규, 변경		
	광 고 물 규 격(m)				구 조 물 총 높이(m)			
	광 고 내 용							
시공업소 (광고업자)	성 명				업 소 명			
	주 민 번 호				전 화 번 호			
	주 소							
건 축 물 현 황	건 축 주				준 공 년 도			
	건 물 구 조				건 물 용 도			
	용 도 지 역				용 도 지 구			
	건 물 규 모	대지면적( m <sup>2</sup> ),			건축면적( m <sup>2</sup> )			
주변상황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 (인)         </div>								
<b>청주시장 귀하</b>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12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1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공공디자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청원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
-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및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청주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1. 부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담당과장
2.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옥외광고 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서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본청 및 구청)
3.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본청 및 구청)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기금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과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6호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원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 청원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공공디자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한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1조)
- 한옥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한옥 등의 보존기간(안 제13조)
- 한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경관 개선을 위하여 한옥의 보전(保全)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로 되어 있으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留置)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지역"이란 제2호에 따라 한옥마을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한옥수선 등"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6.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제12조에 따라 시장에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7.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8.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범위와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9. "한옥의 내부"란 설비, 부엌, 화장실과 목욕실 등을 말하며,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한옥마을,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건축물 중 시장이 한옥 보전(保全)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만 적용된다.

## 제2장 한옥위원회

제4조(설치) 시장은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 라 한다)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옥보전(保全) 및 진흥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제3조의 적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3. 한옥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에서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전(保全)·발전과 관련하여 자문·심의하도록 요청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옥지원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및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은 2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소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



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한옥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전(保全)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한옥의 등록

제12조(등록)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한옥의 소유자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이나 등록예정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6조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지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보존기간 중에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지원을 받은 한옥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에 마지못해 철거·멸실할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의 취소)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16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3조

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을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전(保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한옥을 보수하였을 때

제15조(한옥대장) 시장은 등록 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신축 등으로 등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4장 한옥에 대한 지원

제16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지 안 등록한옥의 소유자나 한옥등록 예정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신축(개축 포함)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2. 한옥대수선 등의 경우(한식기와 잇기 등):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 보수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③ 같은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한옥건축 및 보수 등의 경우: 20년 경과 후 신청할 때

2. 제2항제3호에 따른 한옥의 외관 및 내부 보수 등의 경우: 10년 경과 후 신청할 때

제1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16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예정통지를 받은 후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음으로써 제16조제2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지원 대상자가 된 한옥등록 예정자는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시기) 시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예정 결정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받은 등록예정자가 한옥보수 등의 완료 신고서 제출 이전까지 해당 한옥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한옥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건축하거나 보수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옥소유자 등에게 보조 지원 금액을 전부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개선 노력) ① 시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한옥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전통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을 매수함으로써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2조(준용) ①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조례에 따른 보조금 외에 보조금·용자금을 희망하는 자는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66호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한옥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주거정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지원 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금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신청 및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지붕을 제거하여 주민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지붕정비(이하 “지붕정비”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천정포함)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

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지붕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다만, 신축을 위한 철거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붕정비 면적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매년 지붕정비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정비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착수

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지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읍·면 지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 및 읍장·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 제10조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물소유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가·허가 등 관계 법에 따른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붕정비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정비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

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슬레이트 지원신청접수중인 것은 이 조례에 따른 접수로 본다.

제4조(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슬레이트 지붕 정비 지원 신청서				
건축물현황	위 치		지 번	
	지역/지구		건축년도	
	구 조		용 도	
	연면적(m <sup>2</sup> )		정비면적(m <sup>2</sup> )	
소유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지원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지붕개량(지붕틀철거 유무) <input type="checkbox"/> 농어촌빈집정비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전부 철거			
건축물 전경사진				
구 청 장 읍·면장	- 제4조 해당여부 :        - 제5조 해당여부 :        - 제10조 해당여부 :  <input type="checkbox"/> 직인			
<p>「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b>청주시장 귀하</b></p>				
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지붕개량에 한정함) 2. 설계도면 및 폐기물량 산출 내역 1부.			

[별지 제2호서식]

슬레이트 지붕 정비 완료 신고서				
사업구분	※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지붕개량 <input type="checkbox"/> 빈집정비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건축물 철거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건축물 현황	위치			
	연면적	m <sup>2</sup>	건축구조	
	건축용도		건축년도	
	정비면적	m <sup>2</sup>	공사기간	
철거시공사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주소	(☎ )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2.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정산증명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b>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b>				
소유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배출 위치				
운 반 자	상 호			
	주 소			
처 리 폐기물량	(톤)			
<p>「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한 결과를 확인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p>				
<p><b>청주시장 귀하</b></p>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의안 번호	21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주거정비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제정함.
-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조합설립 인가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 무허가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건설 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공사 등(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한다)이 시행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된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산정(算定)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算定)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算定)한다.

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 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로 산정(算定)한다.

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 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算定)한다.

6.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7. "공공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로, 시장을 말한다.

8. "위탁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10. "과소필지"란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에 필요한 시설

나.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 콘크리트·철골 콘크리트 구조나 강구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5층 이상

1)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20년

2) 1984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31일까지 준공: 25+[(준공 연  
도-1983)×2]년

3) 1991년 1월 1일 이후 준공: 40년

나. 4층 이하

1) 1983년12월31일 이전 준공: 20년

2) 1984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준공: 25+[(준공 연  
도-1983)]년

3) 1991년 1월 1일 이후 준공: 33년

2. 제1호 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  
물

가. 철근 콘크리트(5층 이상)·철골 콘크리트 구조나 강구조: 40년

나. 4층 이하 철근 콘크리트 구조: 30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건축물: 20년

②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침실·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2. 상수도·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3.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것

4. 기존 무허가건축물

##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①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에서 위임된 정비계획 수립대상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개선 사업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호수 밀도가 헥타르(ha)당 70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잇닿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정형의 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구역 내 주민의 소득수준이 구역이 속하는 도시의 도시근로자 가계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3분의 2 이상인 지역

2.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잇닿은 주택접도율

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나. 호수 밀도가 헥타르(ha)당 70호 이상인 지역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정형의 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 후단에 따라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의 조사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형·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 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28조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2.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같은 정비구역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잇닿아 있는 경우에는 상호경계조정을 위

한 정비구역이나 지구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이나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이나 획지의 변경
7.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제9조(안전진단 비용)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算定)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있는 구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붙인다.

제11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사업시행인가신청 예정시기의 변경

7. 법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합원 변경

제1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 사용승인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 원자격에 관한 사항
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7.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13조(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③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사업 조합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1.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명부(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조합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4조(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략적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동의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장이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

2.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

3. 시장이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신청인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결과를 신청인·토지 등 소유자 및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추진위원회 비용보조) ① 영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청주시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사용한 비용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신청할 경우 시장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절차를 거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검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세무사 등 정비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에게는 현장조사를 하도록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로 한다.

⑥ 검증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시행규정 중 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1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4. 영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규약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조례 제11조제1호와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 하는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토지 등 소유자

5. 법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으로 해당 법률에서 인가·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18조(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 사업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하는 경우는 영 제12조제9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주택재개발사업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② 법 제30조의3제6항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 자는 영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명세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3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일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가구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

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다.

3. 같은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할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 이상인 자

제24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청주시 건축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25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 공

고일(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 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최소 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 사업으로 무주택이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해당 정비구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법에 따른 정비 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로서,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4.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할 때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같은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같은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26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의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

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로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할 때 해당 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4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27조(설치)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청주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8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4. 정비 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29조(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이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30조(임기) ①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

체가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자문·고문 등으로 있을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켰을 때

3. 위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 운영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조정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조정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

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등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사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39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40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42조(공공관리의 대상사업) ①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

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나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관리를 요청하는 정비사업

3. 시장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 사업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관리 대상사업은 주민참여 강화를 위하여 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3조(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②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업무

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4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7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45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 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6조(설계자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관리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4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47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① 공공관리자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관리자는 공공관리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8조(공공관리의 정보공개) 공공관리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49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공공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을 할 때 성별분리 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제50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주시 출연금
2.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총액의 15퍼센트

3. 법 제6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부담금 및 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다만,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6. 법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국비·도비 교부금
7.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제51조(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법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련 국비·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6. 정비 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비
7.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8. 정비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제외한다) 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9. 정비사업 공공관리에 필요한 경비
10.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할 때 사용비용 보조
11.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
12. 원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3. 그 외 정비 사업에 필요한 경비
14.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2조(정비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립된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② 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청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부서의 장, 정비사업 업무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용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 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8조(간사·서기 및 수당)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비기금업무 부서의 장이, 서기는 정비기금업무 담당주

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회계공무원) ① 정비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가금운용관: 도시 및 환경 정비업무 담당국장

2. 분임정비가금운용관: 도시 및 환경 정비업무 부서의 장

3. 정비가금출납원: 도시 및 환경 정비업무 담당주사

② 정비가금운용관, 분임정비가금운용관, 정비가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비가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회계관리 및 관계 규정의 준용) ① 정비가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정비가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른 세계 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정비가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가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가금결산의 대략(大略)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62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하였을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용을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 수리) 인가

4.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 중지, 폐지 또는 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

5.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

6. 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 완료 공고

제63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

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 청구권자 관련 분양관계 서류

제6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유효기간) 제13조 및 제14조는 법 제16조의2의 효력이 있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추진위원회 등 비용보조 유효기간) 제16조는 법 제16조의2의 효력이 있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8호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허가·승인(심의 포함) 등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201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완료한 경우

제7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검증위원회 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주택재건축사업 <input type="checkbox"/> 도시환경정비사업 <input type="checkbox"/> 주택재개발사업			
신 청 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추 진 위 원 회 내 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 업 시 행 구 역	위 치	구역면 적		(㎡)
		토지 등 소유자 수	(            )명	추진위원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수 및 동의율	
	승인연월일				
	해산 동의 사항	① 토지 등 소유자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동 의 율
②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동 의 율	(동의자 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50퍼센트 이상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

1.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

2. 동의자 구분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여부(□ 동의자, □ 부동의자)

3. 동의자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지	소재지(공유 여부)	면적(m <sup>2</sup> )
		(계필지)	
		( )	
	건축물	소재지	동수
		( )	
		( )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동호, 번지상가	아파트 동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m <sup>2</sup>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m <sup>2</sup>

4. 동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 )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지장 및 서명 날인)

청주시장 귀하

첨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 2012. 8. 1 이전에 동의서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중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 정비사업조합 해산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주택재건축사업 <input type="checkbox"/> 도시환경정비사업 <input type="checkbox"/> 주택재개발사업	
신 청 인	조합의 명칭	조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조 합 내 역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		(전화: )
	사 업 시 행 구 역	위 치	구역면적 (㎡)
		토지 등 소유자 수	( )명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수 및 동의율 ( )%
	설립인가일		
해 산 사 항	① 토지 등 소유자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동의율 (동의자 수/ 토지 등 소유자 수) %
	②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동의율 (동의자 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수) %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 해산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청 주 시 장 귀하</p>			
구비서류	1.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50퍼센트 이상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조합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 정비사업조합 해산 동의서

1.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

2. 동의자 구분 : 조합설립 동의자 여부(□ 동의자, □ 부동의자)

3. 동의자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지	소재지(공유 여부)	면적(m <sup>2</sup> )
		(계 필지)	
		( )	
		( )	
	건축물	소재지	동수
		( )	
		( )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동 호, 번지	아파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상가 동 호	호
	m <sup>2</sup>	m <sup>2</sup>

4. 동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 ) 정비사업조합 해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지장 및 서명 날인)

청주시장 귀하

첨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 2012. 8. 1 이전에 동의서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종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사업시행구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위치		구역면적	(m <sup>2</sup> )
	토지 등 소유자	( )명	조사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수 및 동의율	( )명 ( )%
	추진단계	구역 지정일		
추진위원회 승인일				
조합설립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p>「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청주시장 귀하</p>				
구비서류	1.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사 동의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b>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동의서</b>				
<b>1. 소유자 인적사항</b>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	
<b>2. 소유권 현황</b>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				
권리 내역	토지	소재지(공유 여부)	면적(m <sup>2</sup> )	
		(계 필지)		
		( )		
	건축물	소재지		동수
		( )		
		( )		
	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유목적)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동호, 번지 상가		동호 아파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m <sup>2</sup>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m <sup>2</sup>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지장 및 서명 날인)				
<b>청주시장 귀하</b>				
첨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 2012. 8. 1 이전에 동의서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중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의안 번호	21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지적정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와 「청원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제정함.
-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지명의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청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지명의 제정, 변경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

원회의 위촉위원을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며,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

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95호 청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청원군 지명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지적정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와 「청원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청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회의 자문업무로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했을 경우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했을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와 서기 각 2 명을 두며,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 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



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16호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청원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동산평가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지적정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청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와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제5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 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 건축물, 토지이용 계획, 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과 제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되거나 잃어버려 없어진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

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산하여 올려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 제13조와 영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과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와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 또는 잃어버려 없어짐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 또는 잃어버려 없어졌거나 그렇게 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할 경우에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하여 시험적으로 만든 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책자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 행사, 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여러 종류의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도로명주소의 고지)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청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이장·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청주시도로 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과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담당과장, 서기는 도로명주소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보존 등

제22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1. 회의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와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74호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청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지적정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7조)
-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25조)
-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조직,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6조~2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제3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청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청주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 공부(公簿)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①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며,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시의 4급 이상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시 각 구청(이하 "구"라 한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算定)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구청별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사업지구의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구의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기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과장이,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관리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경계결정위원회

제15조(기능) 시 각 구청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그 밖의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구청별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주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사업지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구의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

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

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기피할 수 있다.

④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 및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調整)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따로 기록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관리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의견청취 등)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

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의견을 모아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자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의 거부) ① 위원회는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범위인 경우
2.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부한 때에는 거부사유를 지적소관청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청주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

제26조(조직 및 구성) ① 시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과 각 구청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각각 단장 1명, 담당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또는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각각 겸직하고, 담당은 청주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한다.

③ 지원단 및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27조(기능)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기술·인력·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선정·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



항

4.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38호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청원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도시주택국 지적정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공간정보관리 및 운영조례」와 「청원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공간정보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공간정보자문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 공간정보자문위원회 업무 지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20조)
- 공간정보자문위원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5조)
- 공간정보자문위원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제2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주시에서 구축한 공간정보 및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과 공간정보의 보호·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공간정보를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 별도의 기록매체에 복제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수수료"란 전산출력도면을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6. "1도면"이란 플로터로 출력된 A1 크기(45cm×55cm)를 말하며, 1도면 크기가 A1 크기 이하일 경우에도 1도면으로 본다.
7.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관계 기관"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각종 도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
9.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란 관계 기관 간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구축을 위한 협의 구성체를 말한다.
10.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지도·도면 및 위성영상 등이 있다.
11.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12.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또는 지적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3. "도시기준점"이란 시에서 설치한 1급부터 4급까지의 측량기준점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심사를 득한 기준점을 말한다.

14. "총괄부서"란 공간정보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를 포함하는 시의 전반적인 정보화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5. "관리부서"란 공간정보의 변경된 대장 속성정보를 입력·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의 생산·관리 또는 운영부서를 말한다.
16.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력·출력 장치를 말한다.
17.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력·출력 장치를 말한다.
18.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 제2장 공간정보사업의 추진체계

제3조(시행계획 등 제출) ①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3. 사업완료에 따른 기대효과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문서 등
- ② 총괄부서장은 제2항의 타당성·중복성·연계성·기술표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완·수정·그 밖의 변경 또는 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공간정보기본계획의 수립) 시 총괄부서에서는 법 제6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5년마다 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호환성 확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 자원관리) 총괄부서장은 시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공간정보 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 등 공간정보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에서 보유·구축 중인 공간정보데이터 및 공간정보 시스템 현황

### 제3장 공간정보자문위원회 운영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청주시공간정보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공간정보구축 사업에 대한 매년도 시행계획 및 장기 기본계획 수

립과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간정보 구축 및 발전 등에 관해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부 및 산하기관의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책임자

2. 청주시의회 의원

3.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공간정보 연구소를 담당하는 교수 및 전문가

4. 사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공간정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박사 또는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그 밖에 관계 기관 임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자문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협의회 설치) ① 자문위원회와는 별도로 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청주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회의록) ①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자문안 내용
4. 자문회의 결과
5. 위원발언 요지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자문회의

결과는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4조(위원수당)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공간정보업무 지정 및 시스템 운영

제15조(업무지정)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관리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관리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체계 구축·관리의 기획 및 총괄

나.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시설(H/W, S/W,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갱신, 유지관리

라. 관리부서의 공간정보체계 구축,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따른 협조·조정 및 지원

마.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 관련 계획수립, 교육, 관리 총괄

바. 수치지도 수정·갱신

사. 공간정보 자료제공

아. 자문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 2. 관리부서

-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신설·수정·삭제 등 최신의 자료 상태 유지를 위한 신속한 자료 갱신 또는 파일제출
- 나. 도시기반시설물을 신설·추가·보완·변경 공사할 때 위치와 속성값이 표시된 시설물도 파일 생성 및 총괄부서에 결과 파일 제출
- 다. 입력된 공간정보데이터 확인 점검
- 라.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 마. 자료유출 금지 등 공간정보 보안사항 준수
- 바. 관리부서 공간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 사. 단말기 운영 및 유지관리

- 제16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공간정보 관련 주전산기 등은 총괄부서 안 주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관리부서에 설치한다.
- ②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한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고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간정보 관련업무 추진상 효율성 및 공간정보 구축자료의 공동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 부서에서는 개별적 DB운용 또는 시스템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지·관리 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장비별·업무별 실무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간정보데이터의 통합관리) ① 공간정보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하여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각 관리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는 이를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에 대한 계획수립·통합시스템 구축 및 유지 운영 등을 위하여 관리부서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 및 시스템 등록·수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① 관리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공간정보 DB구축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에 따른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부서 및 관계 기관은 지하시설물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를 반드시 작성하거나 수정하여 주전산기에 입력 또는 총괄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 탐사 및 측량은 절대측량으로 한다.

제19조(도시기준점 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도시기준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

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갱신하여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형 및 속성자료의 신규, 수정, 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관리부서에서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처리기한까지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수치지도를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 확인 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의 백업 등 전산파일의 보존 및 파손 방지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장 공간정보의 제공 및 이용

제21조(공간정보 제공 등)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를 제외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가능성 그리고 그 밖에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는 물론 개인권리 침해여부와 자료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자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생산일자, 종류, 발행 부서 및 발행담당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공간정보의 제공신청을 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을 작성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⑦ 공간정보는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제공 제한) ① 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신청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정보신청 용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 시장은 관련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 및 징수방법) ① 제18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를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 별도의 기록매체에 복제하는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정보 전산출력 도면 및 항공사진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납부한다.

③ 사용료 등은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료 등의 감면) 수수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수익금의 처리) 제21조에 따라 징수되는 사용료 등은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6장 보안관리

제26조(공간정보의 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 지침」 및 「청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자료의 안정성 확보 및 복구)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분(백업화일)을 제

작·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공간정보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64호 청주시 공간정보 관리 및 운영 조례, 청원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조례에 따른 공간정보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리정보 복제사용료**(제23조제1항제1호 관련)

자료명	단가
수치지형도	0.3531원/byte

[별표 2]

**지리정보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도면종류		1매당 단가	비고
수치지형도	~ 1/1,000 이상	7,000원	
	1/1,000 미만 ~ 1/2,500 이상	9,500원	
	1/2,500 미만 ~ 1/5,000 이상	13,000원	
	1/5,000 미만 ~	16,000원	
도로명 기본지도		축척 없음	8,000원
항공사진 (1매당)	밀착 (23cm×34cm)	축척 없음	10,000원
	확대 (23cm×34cm)	축척 없음	20,000원

[별표 3]

**사용료 감면율**(제25조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2.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관기관(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송유관 등)이 신청하는 경우(최소한의 필요한 영역으로 제한)	100%
3. 학교, 연구기관 등 공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목적으로 관련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 출연한 기관	50%



[별지 제2호서식]

### 공간정보 제공 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공간정보 종류 (생산일자)	자료구분	건수 (매수)	출력자 (부제자) 소속/성명	사 용 용 도	수령자			수수료 (사용료)	제공 방법	
	제공일자						소속 (기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 1. 자료구분란에는 “공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기재
- 2. 제공방법에는 ON-LINE 또는 OFF-LINE으로 구분

## 보안서약서

본 기관(또는 개인)은 협조(제공) 받은 공간정보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유출·분실하지 않고 신청서에 기재된 사용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구 분	소속기관	부 서	성 명	서 명
책임자				
수령자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수임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과의 관계			
공간정보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공간정보를 인수함에 있어 이 정보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인식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관리 및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하고, 제반사고 발생 시 당 기관(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100px;">청주시장 귀하</p>				

[별지 제5호서식]

## 인 수 증

### 1. 인수물의 내용

지역명	사진(도엽)번호	매수	비고

2. 수령일자 :       년    월    일

### 3. 서약사항

본인은 공간정보를 인수함에 있어 이 정보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인식하고, 관리 및 취급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제반 사고 시 당 기관(본인)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인수자 소속 및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인계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청주시장 귀하

---

# 건 설 교 통 국

---





#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원인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사시행 명령에 따른 원인자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사대행과 비용부담(안 제5조)
- 비용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31조, 제7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와 제76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주유소
  - 나. 주차장
  - 다. 자동차 정류장
  -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주택 및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따른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이자가 직접 횡단차도 시설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이자가 제3조제2항에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든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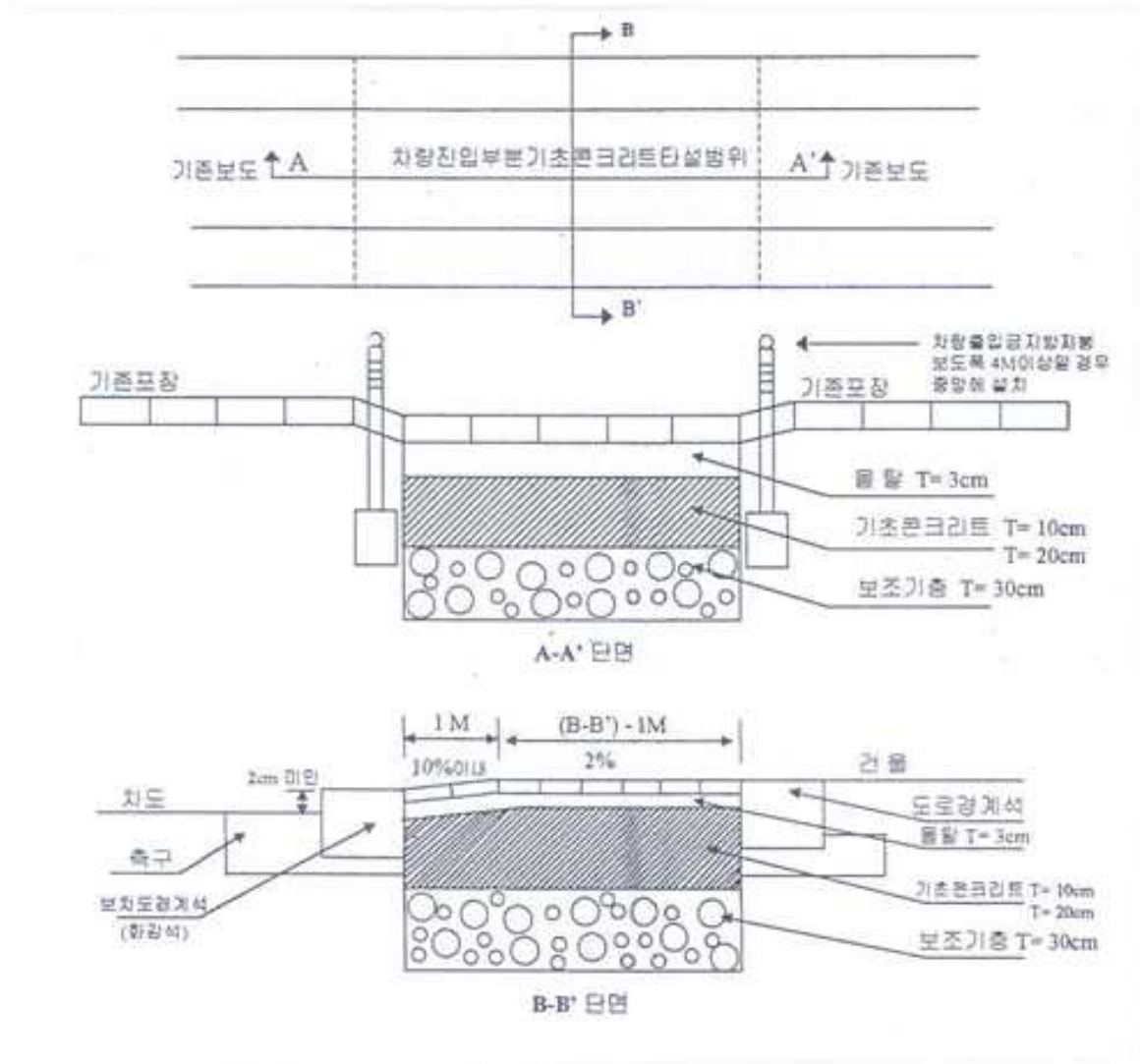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청원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공사시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대행공사 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공사 비용을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 보도횡단차량 출입(보차도)시설(제3조제1항 관련)



1. 1업소 1개의 보차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6M이내(경사부분 포함)
2. 1업소 2개의 보차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각6M이내(경사부분 포함)
3. 산업단지 및 대규모건축물 등에 1업소 1개의 보차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8M 또는 10M이내(경사부분 포함)

※ 기초 콘크리트는 화물차량(버스포함) 4.5톤미만 통행일 경우 T=10cm  
4.5톤이상 통행일 경우 T=20cm

#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청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가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모든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7. 그 밖에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

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의 재배치, 보도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전용도로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희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 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 확보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차 없는 구역 조성을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의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 개선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제8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선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제10조(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⑤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①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 시행 시 이행하도록 한다.

②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12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수도·하수도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제13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 ①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 계획수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인공구조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전

2. 건축공사: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허가 신청 시

4.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공사 착공 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행사 전

②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도로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시 본청 관련사업: 시 도로시설과

2. 사업소 및 구청 관련사업: 구청 건설교통과

제14조(보행권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때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다시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재원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

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활동에 관한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관계 공무원
2. 청주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전반기·하반기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2843호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설치기준(안 제6~8조)
- 시민자전거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자전거 무단방치의 금지(안 제11조)
-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자전거타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안 제14조)
- 자전거 등록 및 등록 등에 관한 혜택에 관한 사항(안 제16~1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3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5. "시민자전거 대여소"란 시민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이나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

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로 설계와 시공을 할 경우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및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5.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야광반사체와 야간 라이트를 부착하여 작동시켜 자전거를 타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과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등급 설정
  4.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
  5.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5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의 읍장·면장·동장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⑤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에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시장에게 묻지 못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시민자전거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전거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민자전거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대여·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가 시민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매각 또는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수리하여 저소득 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원 재활용과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관리·운영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 타기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시민이나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할 때 자전거타기에 숙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급, 이용시설의 확충, 자전거 교육, 동호회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에게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 시장은 자전거를 등록하거나 자전거로출근이나 퇴근을 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청원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자전거주차장, 시민·군민자전거, 시민자전거 대여소, 자전거수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시민자전거, 시민자전거대여소, 자전거수리센터로 본다.

[별표]

##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중 기숙사·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 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물
  -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물(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다세대 주택과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 비고 >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22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 「청원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
- 무단점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94조, 「지방자치법」 제2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7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청주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청원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22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와 「청원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를 제정함.
- 부담금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7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인자에게 손괴부분 복구에 드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정하고,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부담금이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한다.



제4조(부담금 납부) ① 원인자는 도로굴착 시 복구부담금 전액을 허가 시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납 및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도로손괴자 부담금의 납부기일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야간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허가조건 부여) 시장은 원인자에게 징수한 복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이때 도로굴착 복구를 수반하는 도로 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복구시기, 복구방법, 부담금 등 도로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①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기준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특수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이 정한다.

② 별표 1, 별표2의 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 조정할 수 있다.

③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년 초에 시장이 정한다.

제7조(손괴 및 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및 시설물손괴에 대한 복구는 그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 및 특수성에 따라 직접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굴착원인자 또는

시설물 손괴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 도로손괴 및 복구공사 시 해당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굴착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완료확인은 담당 공무원이 수행한다.

④ 복구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은 원인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를 검토하고 내용을 조정

2. 시장은 복구공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복구지역의 통장, 반장 또는 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

⑤ 하자 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환부) ① 시장은 원인자가 손괴부분을 복구 완료하고 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을 한 후 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도로공사 복구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손피자의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그 시설물의 손피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 시장은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피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손피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피자 확인이 장기간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시장이 먼저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피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41호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청원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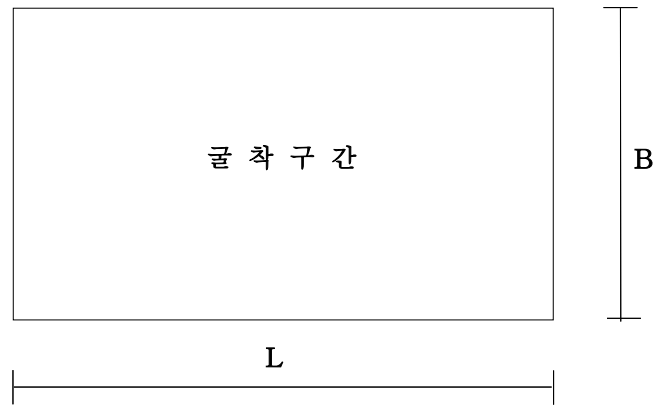
**도로 복구 부담금등 산출 기준**(제6조 관련)

- 표준 최적경사는 1 : 0.1로 본다(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
-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및 복구비용

구분	차도(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타일류	투수아스콘, 투수콘크리트, 아스팔트류, 콘크리트류 등
최소굴착면적	1.2m × 1.2m	1.0m × 1.0m	1.2m × 1.2m
최소굴착폭	1.2m	1.0m	1.2m
복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스팔트 포장도로</b></li> <li>-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자재비+시공비)</li> <li>○ <b>콘크리트 포장도로</b></li> <li>-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자재비+시공비)</li> <li>○ <b>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b></li> <li>-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자재비+시공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블록류</b></li> <li>-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자재비+시공비)</li> <li>-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li> <li>○ <b>타일류</b></li> <li>-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자재비+시공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자재비+시공비)</li> </ul>
그 밖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에서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흙막이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설계한다.</li> <li>○ 상기 복구비용을 산출할 때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외 되메우기는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자재로 추가 복구비용에 계산한다.</li> <li>○ 굴착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조달청, 충청북도 또는 청주시 설계기준 및 단가산출 기준과 정부 표준 품셈에 따라 굴착원인자와 협의하여 복구비 부과 담당자가 산출한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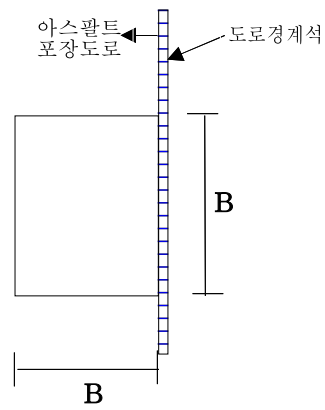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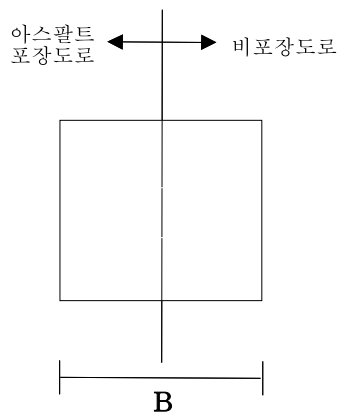
### 3. 복구면적

#### 1) 표준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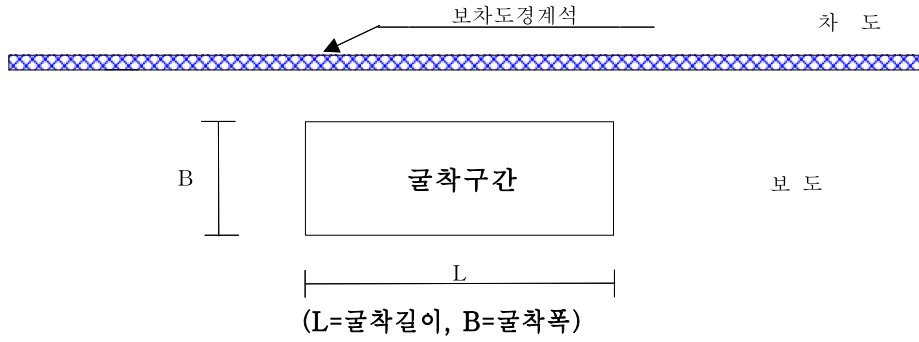


(L=굴착길이, B=굴착폭)

#### 2) 사리도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평면도(아스팔트,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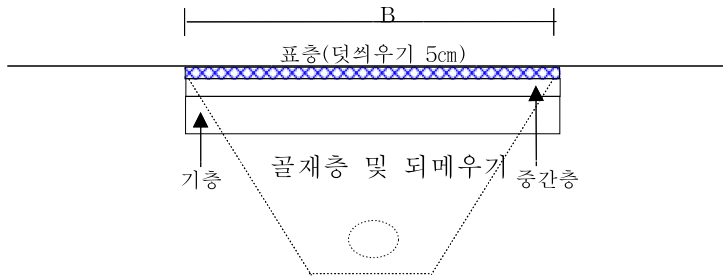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평면도(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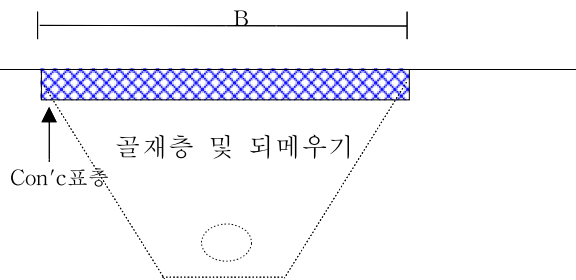
#### 4. 복구단면

1) 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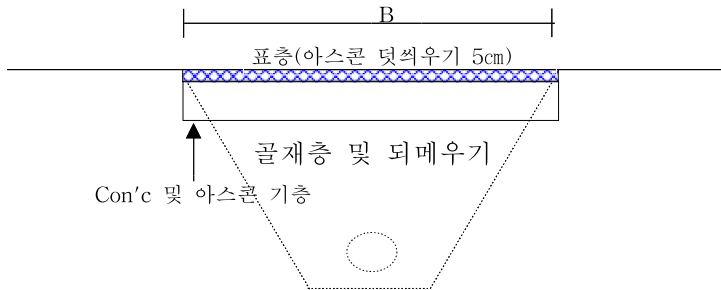
①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②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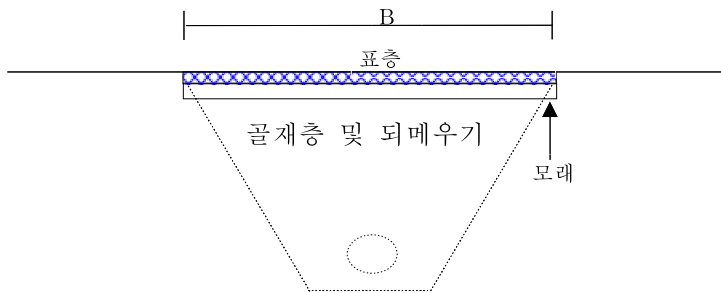


③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인 경우(기존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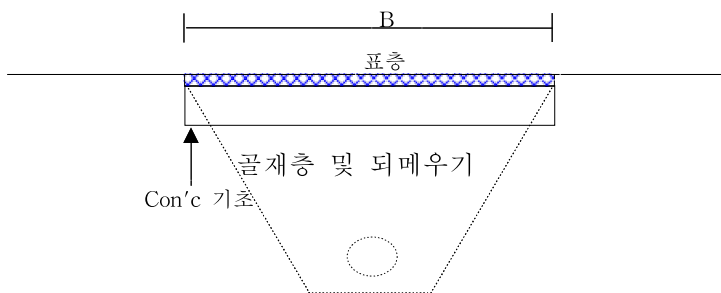


2) 보 도

① 블록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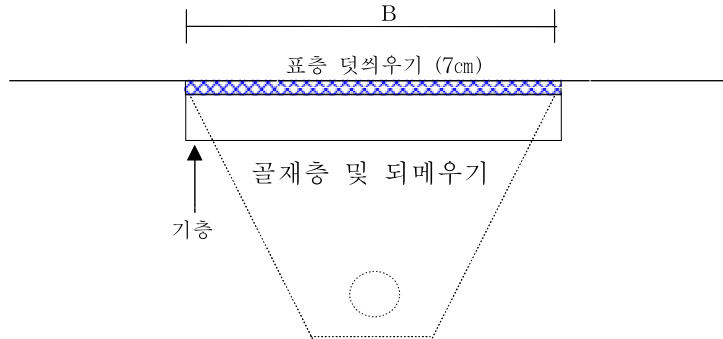


② 타 일 류





③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5. 특수포장도로의 복구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6. 보차도 경계석, 도로경계석, 측구, 식수대, 암거, 교량, 표지판, 교통시설물, 도로구획선등 도로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별도로 산출한다.

[별표 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제6조 관련)

종 별	적용범위	적 용 단 면		비 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폭 25m 이상	표 층 중 간 층 기 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5cm 6cm 14cm 30cm 20cm	※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 포장층(기층,중간층,표층)에 대하여는 기존 포장층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 포장
	폭 25m 미만	표 층 기 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5cm 10cm 30cm 20cm	※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콘크리트 포장도로	폭 6m 이상	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20cm 30cm 20cm	※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폭 6m 미만	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20cm 20cm 20cm	※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	폭 8m 이상	표층(아스콘) 기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5cm 15cm 30cm 20cm	※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폭 8m 미만	표층(아스콘) 기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5cm 10cm 30cm 20cm	※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보 도	일반보도 블록	보도블럭표층 모 래 보조기층	6cm 4cm 20cm	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 포장복구를 청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소형고압 블록	고압블럭표층 모 래 보조기층	8cm 4cm 20cm	
	석재 또는 타일	타일표층 몰탈(1:3) 콘크리트기초 보조기층	4.5cm 3cm 5cm 10cm	
	투수성 아스콘	표 층 보조기층 휠 터 층	7cm 15cm 5cm	
	기 타	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		
사 리 도	보조기층채로 원상복구		청주시가 유지관리 하는 비 포장도로	
기 타 도로 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별도산출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

1.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설치 등 도로관리청이 요구 시 매설 깊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 이하의 도로와 보도상에 매설하는 상하수도, 통신, 지중선로 등 차량, 그 밖에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관매설의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한다.
2. 굴착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내용을 도로상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도로굴착 복구에 저촉되는 각종 맨홀은 복구면과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모래질 및 보조기층재)로 되메우기를 하며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폭12m 이상의 도로상에 굴착연장이 100m 이상인 경우에는 다짐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로복구 공사는 도로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충청북도 또는 청주시 건설공사설계지침에 준하여 시행한다.
6. 도로굴착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진다.
7. 포장도로 굴착 시는 아스팔트 컷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사리도 및 토사도를 굴착할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 굴착 당일복구가 안되는 구간은 토사가 굴착지역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 굴착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허가신청 시 도로관리심의회 조정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주요 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계획을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11. ASP포장도로 복구시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로 관리청과 협의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 복구할 수 있다.
12. 포장복구 시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포장폭이 5m미만인 경우 전체를 1개 차선으로 보며, 포장폭이 5m이상 8m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복구한다.



#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22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청원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제정함.
-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안 제4조)
- 도로점용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점용료의 감면(안 제7조)
- 점용료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변상금의 징수 및 부과징수의 위임(안 제10~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38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 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10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 판매대, 자동판매기, 교통카드 보충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영 제28조제5항 각 호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
3. 제2조 각 호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38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는 법 제42조와 영 제45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 된 점용료 그 밖의 분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1조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38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청원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 기관 전기통신 관 가스관 송 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암 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하 다), 사설안내	간판(돌출간 판은 제외하 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타		표시면적	1년	20,700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제곱미터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년	41,400	
기타		1제곱미터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150	
	기타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시설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제5조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	적용 증가율 (%)	납부할 점용료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청주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만 해당한다)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



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사고 및 납치·성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주차·정차 위반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청주시에서 제작·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의 방법 외에 효

과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필요하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6호 청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어린이 보호 구역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보호 구역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본다.

#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22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제정함.
- 공동구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공동구관리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공동구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에 수용될 수도관·하수도관·전기통신 회선설비·전선로·통신선로·가스관·송유관·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
3. "점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영구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

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 전에 공동구내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① 제3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든 총비용에 대한 점용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공동구 설치 이후 공동구 추가 점용허가 시에는 제2항에 따른 점용료에 공동구 준공 시부터 허가신청 시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발표한 물가상승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점용료로 부과한다.

⑤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



자 하는 자 또는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제5조(공동구관리협의회) ① 영 제39조의2항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 개선 및 관리비용부담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구 시설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규모 및 기관별 부담액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사업의 시행계획(공사시기, 업체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동구관리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 공무원

3. 공동구를 점용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

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구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⑧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⑨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동구관리) ①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부과하되, 협의회 협의의 거쳐 정한다.

1. 조명·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리에 필요한 비용

2. 공동구의 개축·유지·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 4. 공동구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

②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 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점용자 또는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②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공 전날까지로 한다.

③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최초 연도 분은 승인 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승인 시에 징수한다.

④ 제6조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 징수한다.

제8조(준용)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공동구관리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절사 중인 사용료·점용료·관리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따른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로 본다.

<b>공동구점용(사용)허가 신청서</b>					처리기간
					10일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점용(사용) 목적·용도					
③점용(사용)구간					
④점용(사용)장소		점용(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 일간)		
⑤점용(사용)물 구조·재질					
⑥점용(사용)공사 실시방법					
⑦공사기간					
⑧도로종류					노선명
⑨점용(사용) 시설물의 종류		규격			면적·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청주시장 귀하</b>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공사 설계도면 1부.</li><li>2. 공사부위 또는 인근에 타 점용(사용)시설물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li><li>3. 사업시행자가 점용(사용)시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li></ol>	
수 수 료	없음
근거법률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4조의3항)
<p>※ 작성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li><li>③란은 평면도 및 횡단도에 공동구 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사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m<sup>2</sup>)을 표시하여야 합니다.</li><li>④란은 공동구명을 기재합니다.</li><li>⑤란은 점용(사용)목적물의 재질 및 구조를 기재합니다.</li><li>⑥란은 점용(사용)목적물이 벽체 또는 바닥, 천장 등에 설치되는 부위를 기재합니다.</li><li>⑧란은 일반국도. 광역시도. 군도. 도시계획도로로 구분 기재합니다.</li><li>⑨란의 점용(사용)시설물의 종류에는 전선로,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통신선로, 전기통신 회선설비, 송유관, 열수송관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sup>2</sup>·m로 기재합니다.</li></ol>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b>공동구점용(사용)허가증</b>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점용(사용)목적. 용도			
점용(사용)구간			
점용(사용)장소			
점용(사용)기간			
점용(사용)물 구조·재질			
공사기간			
도로종류		노선명	
점용(사용) 시설물의 종류	규격	면적·길이	
허가조건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청 주 시 장</b></p>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div>						
기관명 :						
일련번호		허가번호		허가일자		
도로종류및 노선번호		점용(사용) 장 소		피허가자 주소(전화)		
점용(사용) 목적.용도		점용(사용) 면적(길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점용(사용) 기 간		점용(사용) 시설물종류		점용(사용) 공사실시 방 법		
점용료 또 는 사용료		원		점용료(사용) 부과징수율		부과일 : 징수일 :
변동사항						
일 자	구 분	변동내용		사후관리 계획		
				허가조건및 이행사항	허가조건	이행사항
현지조사자	담 당	과 장				



(뒤쪽)

위 치 도	전 경 사 진
평 면 도	참 고 사 항



#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안 번호	22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와 「청원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
-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 주차장설치 용자 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주차장 설치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주차장법」 제21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청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에 따른 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태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8. 「자동차관리법」 제74조 및 제84조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10. 국비·도비 보조금

1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13. 그 밖의 잡수입

② 제1항제8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3조(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사업

3.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의 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및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주차장설치 용자 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 ①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25대 이상의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

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설치의 용자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용자신청서(별지 서식), 토지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용자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용자지원 대상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용자지원대상자는 주차장 설치 완료 후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설정 등기부등본, 노외주차장설치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용자지원한다.

⑤ 용자금액은 주차장 설치소요자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며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용자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환기간: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2. 이 율: 연 5퍼센트

3. 연체이율: 청주시금고 일반대출 연체이율(다만, 이미 시행한 사업은 연 18퍼센트를 적용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용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주차장 설치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안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로서 공동주택단지 안 부대·복리시설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변환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순위는 주차장 확보율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는 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면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300만원 이내에서, 야간개방에 필수적인 시설변경 공사가 요구되는 경우 500만원 이내에서, 지하주차장 야간개방에 필요한 보안시설(CCTV 등) 설치비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충당할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359호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청원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별지 서식]

주차장설치 시설자금 융자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주 차 장 명				
재산의 표시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건 물 (주차설비)	구 조			
		연 면 적	m <sup>2</sup>		
		주차규모	대		
총 설 치 비		원			
용 자 신 청 금 액		원			
상환기간 및 이율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년리 5%			
붙 임 서 류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허가신청서(확인) 3. 근저당 및 지상권설정 동의서			
위와 같이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주차장설치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청주시장 귀하					



#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의견청취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나. 예산조치 : 149,600천원 (통합 후 149,600천원)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청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와 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련이 있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과 교통약자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3. 교통관련 분야의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때에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교통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중에 발생하는 사안은 시의 다른 위원회

운영 관례에 따른다.

제7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법 제6조제2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과 개선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와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수요·공급에 따라 일정

비용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저상버스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률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차·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과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3. 특별교통수단 운행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과 교육
6. 교통약자의 이동수단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과 홍보
7. 그 밖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①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시가 설립한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 ②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 규정을 정하여 지원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나 서면,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차·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은 시 전역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이동하려는 지역이 시 경계 인접지역일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신청과 운영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신청과 예약제로 운영하며, 정기이용도 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심의·결정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⑥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고정설비와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이나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및 3급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  
질환자·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  
려운 사람

2.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  
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  
족과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  
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인접 시  
·군까지 운행할 경우 시내버스 요금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정하여 청주  
시보나 청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할 경우에  
도 또한 같다.

제17조(예산 확보) 시장은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택시요금 지원)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협약  
체결한 일반택시를 교통약자가 이용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84호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청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으로 본다. 다만, 위탁운영기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교통약자가 일반택시 이용시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양 시·군 자치법규 통합
- 관련조문 :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4년 7월 1일부터 일반택시 이용요금 일부지원

나. 추계 결과

- 연간 소요비용 추계액 : 139,200천원
  - ※ 2014년 한시적 경비 : 80,000천원
- 소요비용 산출내역
  - 대상인원 : 청주시 50명, 청원군 20명
  - 산출기초
    - 70명 × 5,350원 × 31회 × 12월 = 139,200,000원
    -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비용 : 8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 중 지방세로 재원조달

청주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149,600	139,200	139,200	139,200	139,200	706,400
재원 조달						
의 존 재 원	소 계					
	보조금(국고)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149,600	139,200	139,200	139,200	706,400
	지방세	149,600	139,200	139,200	139,200	706,400
	세외수입	0	0	0	0	0
지방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민자 등)						



# 청주시 주차장 조례안

의안 번호	23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주차장 조례」와 「청원군 주차장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제정함.
-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2, 제12조~제15조, 제1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주차장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설치한 모든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공공기관, 개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설치한 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주차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에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차요금 외에 주차요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4. “1일 주차”란 공영주차장에서 10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관리자에게 주차요금을 선납할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일 운영시간에 징수하는 1회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운전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사람
  5. 제1호에서 4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4급에서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7.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②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 ⑤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⑥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

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

⑦ 그 밖의 개별 조례에서 정하여진 감면 대상자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⑧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이나 인화성 물질을 싣고 있는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한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 및 경감에 관한 사항

###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점용면적( $m^2$ )×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도로(하천)점용

요율×기간(연)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m<sup>2</sup>)×해당토지(또는 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  
×도로(하천)점용요율×기간(연)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m<sup>2</sup>)×면수×해당토  
지 개별공시지가×도로(하천)점용요율×기간(연)운영일수/365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 도랑, 하천이나  
임야일 경우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⑤ 위탁관리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다  
만, 계약기간 중 관리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모든 법규와 공익에 어  
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  
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2장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제8조(노상주차장 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구  
조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  
조제1항과 같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제9조(노외주차장 설치기준) ① 노외주차장은 법 제12조제1항, 시행규  
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폐지 또는 변경의

경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 또는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붙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기계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③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운영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

④ 체납된 주차요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주차구획선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의 배치

도를 기준으로 하며, 도로 너비, 해당 주차장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단지조성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②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시장과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단지조성사업 등의 주차시설 공급계획은 블록별 장래 주차수급 분석 결과를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블록 설정기준은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구역을 준용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 관리) ①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방지
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3. 유료노외주차장이 가득 찬 경우 안전한 차량통제

② 시장이 설치한 공영노외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장기 주차된 자동차는 주차장 공용목적에 위하여 견인이동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주차전용건축물의 최소 주차면적)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해당 부지의 부지면적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 제3장 부설주차장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때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계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은 3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20퍼센트(예식장·장례식장은 설치 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식주차기의 내부에는 방향전환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면공지가 있어 방향전환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기계식주차장(지하식, 건축물식)의 경우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로 정하며 다음과 같다.

1.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하인 경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2.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인 경우: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여부는 청주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면제 요청된 건축물에서 인근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16조를 적용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시설물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서를 줄 때에는 별지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도 함께 주어야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

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며,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설치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 1평방미터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

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간·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물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나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별표 8과 같이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표 8과 같다.

#### 제4장 보칙

제20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67호 청주시 주차장 조례, 청원군 주차장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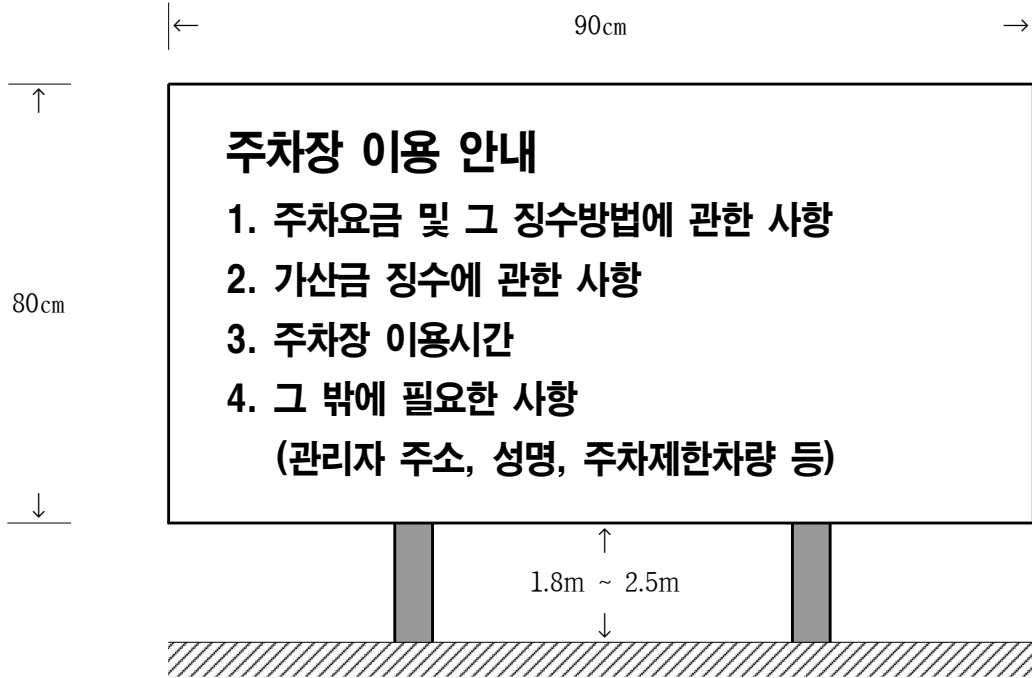
급지구분	1 회 주 차 권		1일 주차권	월 정 기 주 차 권	
	최초 30분	초과 10분		주 간	야 간
1 급	1,000원	400원	15,000원	150,000원	112,000원
2 급	500원	200원	9,000원	75,000원	56,000원
3 급	200원	100원	4,000원	30,000원	22,000원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의 구분은 자동차의 통행량 및 주차장 위치 등에 따라 시장이 등급을 결정 고시한다.
3. 공영주차장의 1일 운영시간에 징수하는 1회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본다.
5. 주차요금은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 이상일 경우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다.
  - 가.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나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 기준요금의 1.5배
  - 나.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6. 시외버스터미널 및 고속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의 경우 승차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이 경우 승차 여부는 승차권으로 확인한다.

[별표 2]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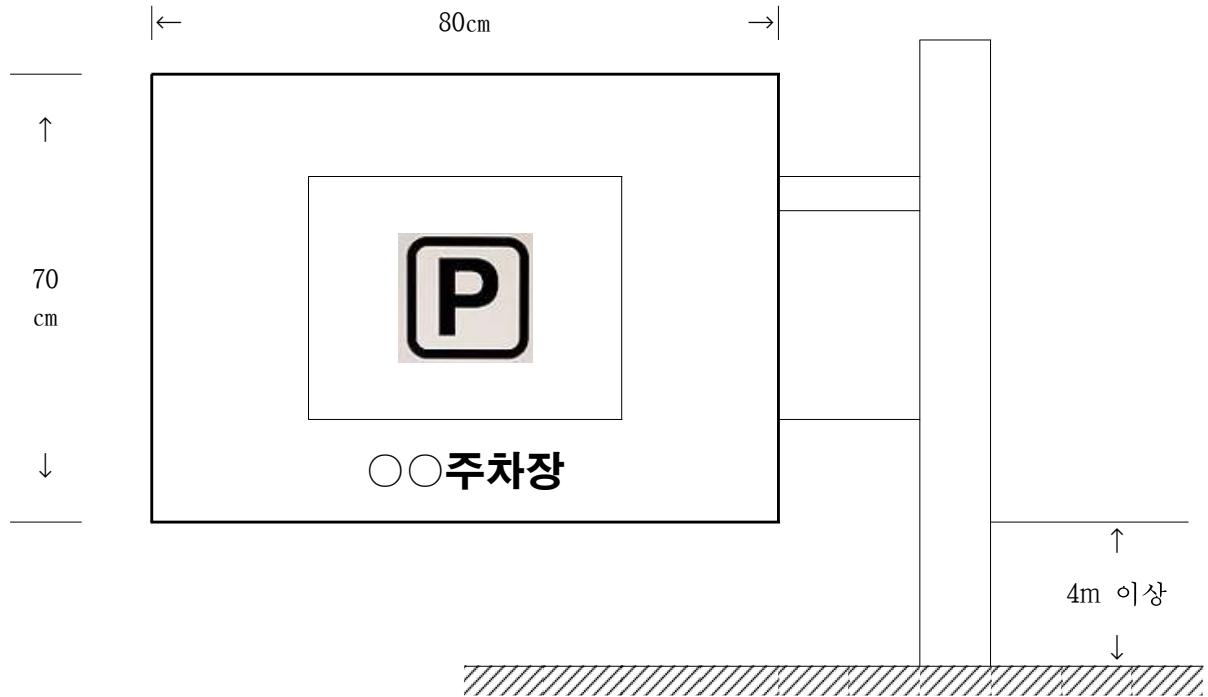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	알루미늄판	녹 색	흰 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판	녹 색	흰 색
민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판	청 색	흰 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3]

### 노외주차장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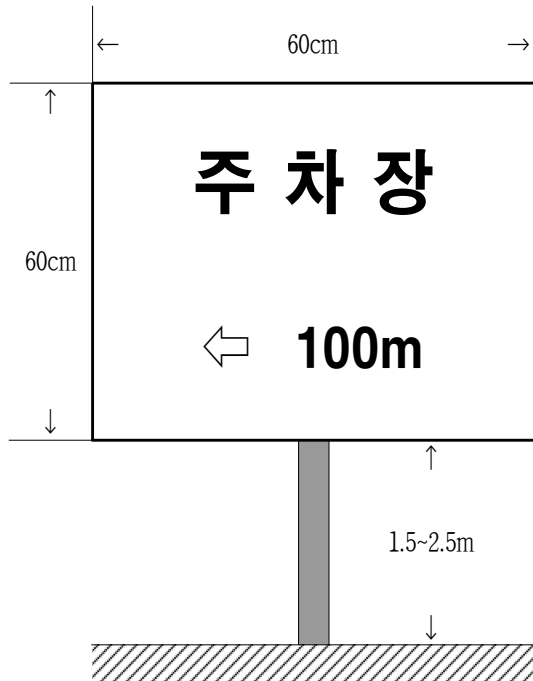
비고

1. 재 료 : 알루미늄
2.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3.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cm×세로 25cm)  
- 문자(가로17cm×세로17cm)
4.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4]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제6조제4항 관련)

(예 1)



(예 2)



비고

1. 재 료 : 알루미늄
2. 색 채 - 바탕(청색)  
- 문자 및 기호(흰색)
3.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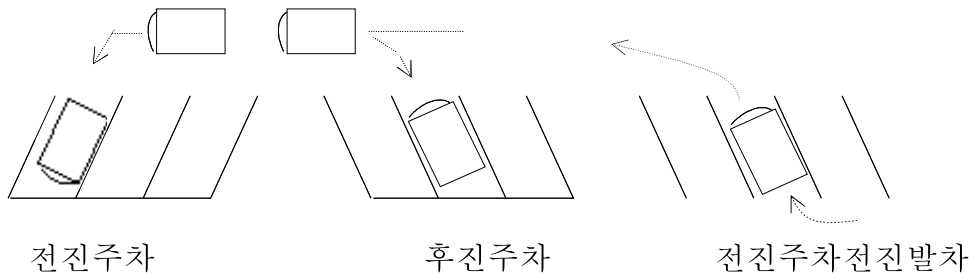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경쟁계약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금액이나 입찰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별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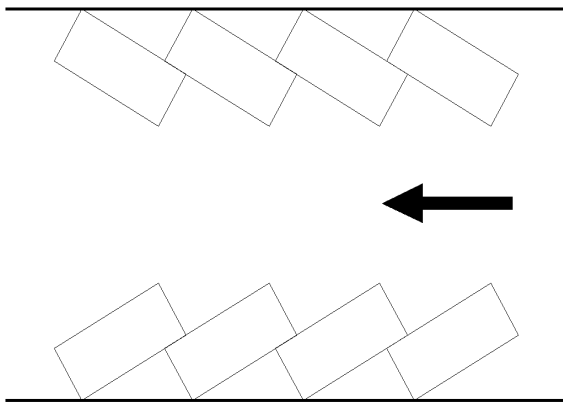
##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1. 주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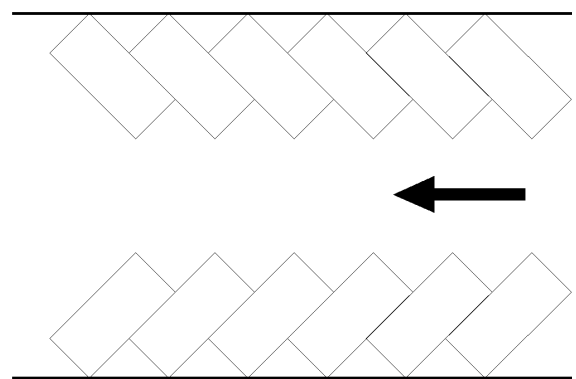


### 2.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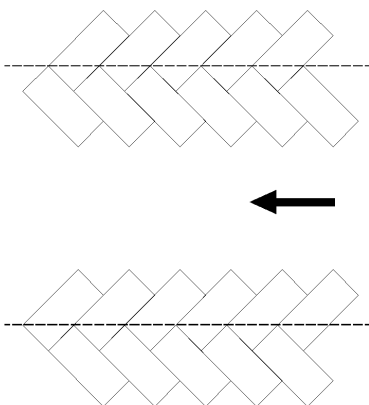
가. 30°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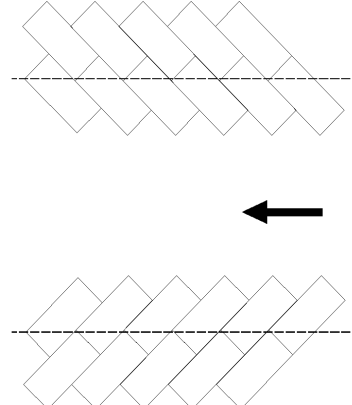
나. 45°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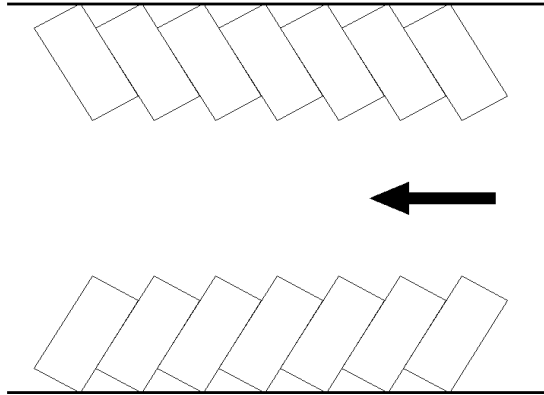
다. 45°교차주차(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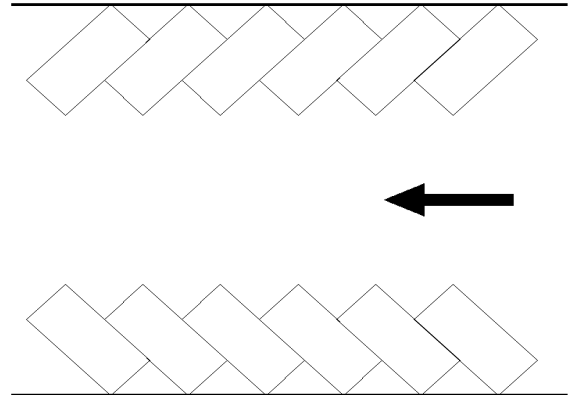
라. 45°교차주차(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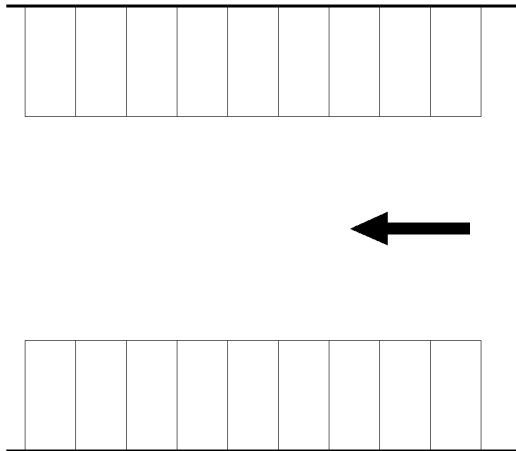
마. 60°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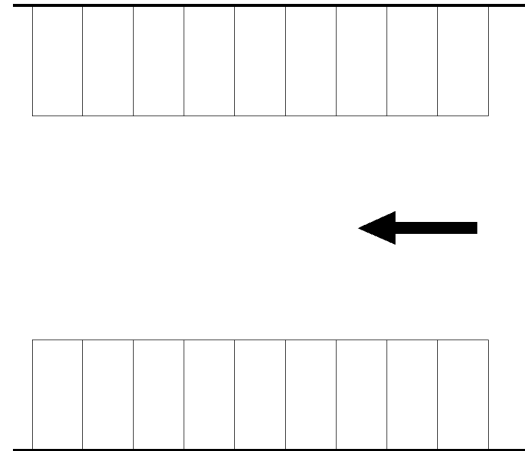
바. 60°후진주차



사. 90°전진주차



아. 90°후진주차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숙박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단, 예식장, 장례식장, 집회장의 경우는 80㎡당 1대로 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인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면수(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단, 1만㎡이상 공장의 경우에는 450㎡당 1대)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당 1대)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



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표 8]

## 장애인 전용표시(제19조제3항 관련)



비고

1. 재 료 : 알루미늄
2. 색채
  - 바탕 : 청색
  - 휠체어 그림 : 백색
3. 방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50cm)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9]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위반정도	기 본 과징금	가감후 과징금	근거법조문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경우	위반시	50	45	법 제6조제1항
	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5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한 경우	위반시	50	45	법 제17조제2항
	2회 이상 위반시		50	
3. 노외주차장의 시설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1회 위반시	50	45	법 제23조제3항
	개선명령 2회 위반시		5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또는 검사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위반시	50	45	법 제25조제1항
	2회 이상 위반시		50	

[별지 서식]

##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앞면)

6cm	No
	<b>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b>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인)
	9cm

비고

1. 바탕: 하늘색
2. 글씨: 검정색

(뒷면)

<b>주 의 사 항</b>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하여 드립니다.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와 「청원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차량 견인·보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36조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 견인·보관 등)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견인비용 등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견인료”란 차량 이동에 드는 비용을 말하고 “보관료”란 차량 보관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부과·징수)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견인료 또는 보관료를 납부 기한 까지 청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대행비용 지급)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중 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시설 통지 등에 든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중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시장이 월 1회 이상 지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06호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청원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견인료

구 분	견 인 료	비 고
대상차량		
2.5톤 미만	30,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	35,000원	
6.5톤 이상	50,000원	

2. 보관료

- 지정된 보관장소 인근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시간대 적용)을 적용하며 보관일부 터 1개월까지 부과 징수



[별지 제1호서식]

전인료 납부고지서(은행용)				납부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영수증(납부의무자용)				인수증(출고증)			
연도		고지번호	No	연도		고지번호	No	연도		고지번호	No	연도		고지번호	No
회계명		교통특별회계		회계명		교통특별회계		회계명		교통특별회계		회계명		교통특별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성명				납성명				납성명				납성명			
납부주소				납부주소				납부주소				납부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무면허번호				무면허번호				무면허번호				무면허번호			
자동차량번호				자동차량번호				자동차량번호				자동차량번호			
건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건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건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건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건인장소				건인장소				건인장소				건인장소			
건인료 원				건인료 원				건인료 원				건인료 원			
납부기한		. . .		납부장소				납부기한		. . .		납부장소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년 월 일  인수자 ○ ○ ○ (서명)  청 주 시 장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차량 출고시 제출			

[별지 제2호서식]

보관료 납부고지서(은행용)				납부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영수증(납부의무자용)				인수증(출고증)			
연도		고지번호	No	연도		고지번호	No	연도		고지번호	No	연도		고지번호	No
회계명		교통특별회계		회계명		교통특별회계		회계명		교통특별회계		회계명		교통특별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성명				납성명				납성명				납성명			
부주소				부주소				부주소				부주소			
의주민등록번호				의주민등록번호				의주민등록번호				의주민등록번호			
무면허번호				무면허번호				무면허번호				무면허번호			
자차량번호				자차량번호				자차량번호				자차량번호			
견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인장소				견인장소				견인장소				견인장소			
견인료				견인료				견인료				견인료			
납부기한		. . .		납부장소				납부기한		. . .		납부장소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주시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주시장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년 월 일  인수자 ○ ○ ○ (서명)  청주시장  ※차량 출고시 제출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②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시설물 종사자 및 이용자의 교통량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

으로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용차 요일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노상주차장(2급지)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근·퇴근을 할 경우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입·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7.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8. “통근버스운영”이란 종사자의 출근·퇴근 때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아·유아 보육·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9.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현금지급은 제외한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란 월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 단지 안 상가(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아파트 단지내 상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는 7.61로 한다.

제5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에 따른다.

③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외에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2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④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① 제5조에서 규정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며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말일 기준으로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요일제

가. 주차면 수가 5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함께 타기: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행: 차량 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입·진출하게 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구별이 가능한 승용차

②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 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각 구청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청주시의회 의원,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행계획서 미 이행의 경우 조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통근관리인 선임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통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통근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 선임·해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이 매일 반복되는 근무시간 중에 100분의 25 이상을 통근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근 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의 접수·처리와 이행 여부 확인
2.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신청 및 결정
3.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13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미 이행에 대한 조치사항

5. 제14조에 따른 관리인 선임 등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85호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제1항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2천제곱미터 이하	4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	600원	600원	600원	600원	600원	600원	6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600원	600원	650원	700원	750원	800원	8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600원	65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2천제곱미터 이하	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	[80만원+(2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80만원+(2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80만원+(2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80만원+(2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천76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천8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천3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2천16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2천3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2천3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별표 2]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제2항 관련)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
승용차 10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입·출입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10부제 기준과 병행하여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입·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 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입·출입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다만, 5·10부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번호 끝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 유료화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노상주차장요금(2급지) 이상 징수	○이행시간에 따라 -평일 9시간 이상: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100분의 20
승용차 함께타기	○출근·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입·출입하는 것	○전체 소속직원 소유승용차 대수 중 참여대수의 비율에 따라 -100분의 10이상~100분의 20미만:100분의 2 -100분의 30미만:100분의 5 -100분의 30이상:100분의10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의 출근·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전체의 100분의 25 이상에 대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시차출근제	○09:00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 이상 출근시간 조정. 다만, 오전 06:00 이전 또는 정오(12:00) 이후 교대 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	○1시간이상 차이나다 교통유발 부담금의 100분의 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종사자의 50% 이상에게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권 등을 제공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대중교통 이용의 날	○월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승용차 운영을 제한하고 종사자의 50% 이상이 참여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

[별표 3]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제6조제2항 관련)

□ 승용차 함께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	참여한 기업체
<p>○ 당해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1%</li>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2%</li>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3%</li>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4%</li>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5%</li> </ul>	<p>○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1%</li>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2%</li>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3%</li>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4%</li>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인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5%</li> </ul>

□ 통근버스 운영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p>○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시 : 1%</li>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 2%</li>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 3%</li>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 4%</li>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시 : 5%</li> </ul>	<p>○ 시설물의 종사자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 1%</li> <li>-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 2%</li> <li>-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 3%</li> <li>-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시 : 4%</li> <li>-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시 : 5%</li> </ul>

[별지 제1호서식]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sup>2</sup> ( m <sup>2</sup> )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차량소유대수	대

2. 교통량감축 이행프로그램 종류(해당난에 기재)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이행계획	비고
계			
승용차 부제운행	10부제	10	통제방법 :
	5부제	20	통제방법 :
	2부제	30	통제방법 :
	요일제	20	통제방법 :
주차장 유료화	10	주차요금	
	20	징수방법	
승용차 함께타기	2	통근승용차 : 대	
	5	시행차량 : 대	
	10	통근관리인선임 : 명	
통근버스운영	10	운행대수 : 대 이용자수 : 명	
시차제출근	5~	출근시간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1인당 월 만원 (전체 만원)	
기업체연합교통 수요관리		승용차함께타기 시행방법 : 통근버스공동운영 시행방법 :	
대중교통 이용의 날	3	월 회(시행(요)일 : )	
그 밖의 사항		창의적으로 교통량 감축하는 방법	

3.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기간 : . . . 부터 . . . 까지

4. 교통량감축 세부이행계획: 자체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    년    월)

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sup>2</sup> (    m <sup>2</sup> )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차량소유대수	대

2. 교통량 감축실태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이행실태	비고
계			
승용차 부제운행	10부제	통제방법 :	
	5부제	통제방법 :	
	2부제	통제방법 :	
	요일제	통제방법 :	
주차장 유료화	10 20	주차요금 징수방법	
승용차 함께타기	2 5 10	통근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관리인선임 :    명	
통근버스운영	10	운행대수 :    대 이용자수 :    명	
시차제출근	5~	출근시간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1인당 월    만원 (전체    만원)	
기업체연합교통 수요관리		승용차함께타기 시행방법 : 통근버스공동운영 시행방법 :	
대중교통 이용의 날	3	월 회(시행(요일) :    )	
그 밖의 사항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시행 : 시행방법 :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위  
 성 명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sup>2</sup> ( m <sup>2</sup> )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차량소유대수	대

2. 경감 신청내역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당초계획	신청(실적)	비고
계					
승용차 부제운행	10부제	10			
	5부제	20			
	2부제	30			
	요일제	20			
주차장 유료화		10 20			
승용차 함께타기		2 5 10			
통근 버스 운영		10			
시차제 출근		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10			
기업체연합교통 수요관리					
대중교통 이용의 날		3			
기 타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위  
    성 명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 통보서

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m <sup>2</sup> m <sup>2</sup> )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차량소유대수	대

2. 경감을 결정사항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당초계획	신청(실적)	비고
계					
승용차 부제운 행	10부제	10			
	5부제	20			
	2부제	30			
	요일제	20			
주차장 유료화		10 20			
승용차 함께타기		2 5 10			
통근버스운영		10			
시차제출근		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10			
기업체연합교통 수요관리					
대중교통 이용의 날		3			
그 밖의 사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위  
    성 명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통근관리인 관리대장

연번	대상시설물	통근관리인				선임일자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시민모니터단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전문성·효율성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여 대중교통체계의 활성화에 필요한 청주시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조정·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대중교통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업무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1.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2. 대중교통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
4. 대중교통 및 운수종사자 대표
5.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대표
6. 경찰, 도로교통협회 등 유관 기관 대표
7. 그 밖에 교통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청주시의회위원회는 교통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로 하되,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담당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청주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대중교통체계 담당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청주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민모니터단 구성) ① 위원회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
2.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에 대한 점검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37호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청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업무담당국장
2. 교통업무담당국장
3. 복지업무담당국장
4. 청주시의회 의원 2명
5. 관할 경찰서 교통관련과장 3명
6. 관할 소방서 과장 2명

7. 교통안전공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

8. 도로교통공단지부 교수

9.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 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안 번호	23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와 「청원군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제정함.
-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1대 소유한 사업자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79호 청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청원군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3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휴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2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주시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539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교육장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교육장: 교육관, 관리사무실 등
2. 실외교육장: 교육용도로,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모터카, 자전거 등

제4조(휴일 및 운영시간) ① 교육장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② 교육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는 09시부터 17시까지
2. 토요일: 09시부터 13시까지

제5조(위탁관리) ① 청주시장은 교육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

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제6조(교육비) 어린이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그 밖의 교육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305호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23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제정함.
-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등(안 제3조)
- 신고방법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등(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 제4조, 제12조, 제21조, 제26조, 제90조, 제92조,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법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에 모든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 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小)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1대 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 단위 관리비를 지급한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치 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법 제12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

5. "도급택시"란 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6.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택시부제"란 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택시의 정비를 위하여 청주시에 등록된 택시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영을 쉬는 형태를 말하며, 개인택시는 3개조, 법인택시는 6개조로 구분한다.

## 제2장 포상금의 신청과 지급

제3조(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한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1. 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 위반행위인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3. 법 제14조 위반행위인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4. 법 제21조제7항, 법 제85조제1항제2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구분란 14의2에 해당하는 도급택시
5.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행위인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부제 위반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5일 이내에 포상금 및 지급 신청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신고차량이 청주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고방법 및 지급신청) ①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업체명과 차량번호 등
3. 피신고자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 ③ 같은 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본다.
- ④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포상금은 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환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할 수 있다.

### 제3장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불법운행택시 신고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자 적정 여부
3.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를 개최할 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통 관련 업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통, 소비자보호 등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2. 법인택시조합·개인택시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신고현황,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적정 여부 및 참석 위원의 서명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해당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3호 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4조제1항 관련)

위반 행위별	포상금액(원)	비고
1.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500,000	
3.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	
4. 도급택시 운행	1,000,000	
5. 택시 부제 위반	100,000	

[별지 제1호서식]

<u>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u>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계좌번호 (거래은행)			
신 고 사 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체명 차량명 등		
		주소 또는 위치 차량번호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청주시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 불법운행 택시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

(A4횡양식)

연번	신고 일자	접 수 내 용								접수자	지 급 내 용			
		신고인				피신 고 인					지급 일자	사유	금액 (원)	은행명 (입금계좌)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신고유형	성명	주소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행위 내용					



# 청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23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하천방재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와 「청원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
-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안 제2조)
- 점용료등의 감면(안 제3조)
- 점용료등의 조정(안 제4조)
-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안 제5조,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 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도지사, 시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
4. 갈수기중 생활용수를 위한 우수점용의 경우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경우

②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해비율만큼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 허가받아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아래 사항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 ②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 재해비율에 따른 감면액만큼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부과 및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해당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936호 청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청원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산정기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1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가.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건설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나.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m <sup>3</sup> ~0.5m <sup>3</sup> /Sec까지 연액 10,000원 0.5m <sup>3</sup> /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다. 전기사업 연액 m <sup>3</sup> /Sec당 200,000원
5. 지하의 유수채취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가”목의 1/3 ※ 월 10,000m <sup>3</sup>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4 ※ 월 10,000m <sup>3</sup>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소하천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는 제외한다.
7.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	가. 해당연도의 골재사용료는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

	<p>한 토석 모래 자갈 등 도매 가격의 평균치의 15/100</p> <p>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p> <p>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p>
8. 갈대, 목초 및 그 밖에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토지 가격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소하천 수면에 한함)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5/10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50/10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2.5/100
11.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제9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0} ]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100) × 3/100} ]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
500퍼센트이상	전년도 점용료 + [ 전년도점용료 × 0.25

---

# 직 속 기 관

---



# 청주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조례」와 「청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9조, 제2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19조,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 및 청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소”이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2.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3.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관할 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수당 등) ① 청주시장은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및 지도·감독) ①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업무와 의료행위를 지도·감독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83호 청주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조례, 청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협의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안 번호	24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와 「청원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함.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청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시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 대표자
4. 청주시의회의원
5. 관계 공무원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 지역 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전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청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30호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청원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과 청원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 청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안

의안 번호	24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와 「청원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제정함.
- 진료수가 적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예방접종 수수료 (안 제6조)
- 각종 증명발급수수료 (안 제7조)
-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 나. 예산조치 : 12,000천원 (통합 전 24,000천원, 통합 후 36,000천원)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보건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 약제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 및 수수료"란 청주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한 자 및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와 진료를 받은 자에게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약제비"란 보건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을 이용한 경우  
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  
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  
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이하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  
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를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  
가 기준의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진료수가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수가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수수료) 예방접종수수료는 매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7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더하여 적용한다.

제8조(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할 때
2.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3.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치료 및 예방접종
4. 방문진료 및 이동순회진료
5.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비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1, 2급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자의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다만, 의약분업지역의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의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지원한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때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에 한정한다.

제9조(징수 방법)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그날에 선납 징수하며, 이미 발급된 수수료 등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1천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01호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청  
원군보건소 수가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제 증명 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 고
1. 건강진단서(채용 등)	1건	500	
2. 운전면허 신체 · 적성검사서	1건	500	
3.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1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	
4. 기 발급증명서 추가(재)발급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였을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다.)	1건	500	다만,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수혜가 높은 금액으로 양 시·군 자치법규 통합
  - ※ 종전 청주시 의약분업지역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 청원군 미지급
  - ⇒ 의약분업지역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연간 소요비용 추계액 : 12,000,000원
  - (산출기초 : 1,200원 × 10,000명 = 12,000,000원)

청주시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자살예방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안 제6조)
- 자살예방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자살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든지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은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3.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시책
4.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제6조(자살예방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청주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 추진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 ① 시장은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살예방센터는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61호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에 관한 조례, 청원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4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청원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수행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이용료 징수 및 면제,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3조)
-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2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 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제3조(설치·운영) 청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전문기관에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일반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정신보건법」 제51조에 따

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종합훈련 사회복지시설 비  
용수납 한도 고시금액 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  
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3. 제1조의 목적에 들어맞는 것으로써 센터에 등록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차상위계층 중에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 제3장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센터장, 정신보건임상 자문의, 정신보건 관  
계공무원, 수탁기관 관계자, 그 밖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위촉 해제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정신보건사업 업무와 센터 업무 협의
3. 보건소·센터·유관기관의 연계성 확보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자문 등) 센터의 사업수행 자문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의 후원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청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위탁운영

제16조(위탁) ① 제3조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자 선정) ① 센터의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자를 정할 때에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위탁할 수 없다.

4.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9조에 따라 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전부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할 경우
3. 제20조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是正)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1조(회계 관리 및 결산보고)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 연도 센터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후원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협조) 정신의료기관장, 정신요양시설장,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등은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51호 종전의 청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운영 위원회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리규정 (안 제6조)
- 회계 및 결산 (안 제10조)
- 보고·감독 등 (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제35조, 「의료법」 제3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4조와 제35조,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건립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 62번길 29에 둔다.

제3조(업무) 노인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진료와 입원진료
3.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기·단기적인 요양서비스
4.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5.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
6.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과 의료정보 제공
7.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
8. 노인성질환자의 임상과 역학적 조사·연구
9.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

제4조(위탁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병원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요양병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 내과, 신경과(신경외과), 정신과(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시에 있는 의원에서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

② 노인병원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노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시설보강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노인병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노인병원의 시설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와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이나 재위탁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규정) 수탁자는 노인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한 노인병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과 운영방침(치료, 간호, 보호, 지역 보건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 연수 등)
2.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의 근무체제(주간·야간 및 휴일 등)

5. 입원자 등에 대한 요양치료 체계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6.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7. 화재 등 비상재난에 대한 대책
8. 그 밖에 노인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입원 및 퇴원) ① 노인병원의 입원은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정하며, 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퇴원여부는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며, 퇴원 이후 보건소·요양시설·가정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수가) ① 노인병원의 의료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정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기록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입원·퇴원 판정의 경과와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그 밖의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 상황 등)

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에 관한 기록

5. 시설물·설비 구조에 관한 기록

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노인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붙은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감독 등) ①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노인병원의 시설과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병원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수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노인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55호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된 사항은 이 조  
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9조)
-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안 제10조)
- 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등 기증등록자"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기등 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 등 기증등록창구"란 장기 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 등 기증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 창구로 보내기 위해 설치한 시·구청 및 읍·면·동의 종합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의 범시민 장려를 위하여 청주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등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당·홍덕·서원·청원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할구역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4. 청주시의 직능단체장

5. 기업체 대표

6.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등기증 등록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흥덕보건소 보건사업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 등 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상당·흥덕·서원·청원보건소에 장기 등 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구청 및 읍·면·동의 종합민원실에 장기 등 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확산하

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목련공원 사용료 면제

2. 장기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3. 시가 설립·위탁·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면제

4.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의 면제

② 제1항 중 제1호와 제2호는 장기 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중 제3호와 제4호는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발급한 장기 기증 등록증을 제시한 자에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우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33호 청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24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제정함.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함(안 제3조)
- 과태료 부과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안 제4조)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청주시 재

무회계 규칙」 제32조에 따른 징수결정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  
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의 고지는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  
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  
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  
여야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처



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감경) 시장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 당사자의 이의제기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납부 관리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과태료 관련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29호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 2. 부과대상 및 부과액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제1호			
(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100	200	300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한 때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의견제출서		처리기간
		10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그 밖의 사항		
<p>「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주소 : <span style="margin-left: 200px;">(전화 :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span style="margin-left: 100px;">(서명 또는 인)</span></p> <p>청주시장 귀하</p>		
비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붙일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

받는 곳 :

제 목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 및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현황	명 칭			종별	
	개설자		생년월일 (남,여)		
	소재지				
위반행위	일 시				
	내 용				
처분내용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청 주 시 장

## 과태료 납부 독촉장

문서번호 :

받는 곳 :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납 부 의 무 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시설명)		주 소 (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당초 고지일자	
당초 고지번호	당초고지금액	취소(변경)금액	비고
취소(변경)사유			

붙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청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영 업 소	업 소 명 (시 설 명)			
	소 재 지			
과 태 료 처분내역	고 지 서 번 호	통 지 일 자		
	처 분 내 역	과태료 금액		
	처 분 사 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청주시장 귀하</p>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 제26조제4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기관		이의제기 일자	

-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1부.

### 청 주 시 장



[별지 제7호서식]

## 과 태 료 수 납 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호	처 분 통지일	납 부 기한	금액	납부의무자		납부일	채납내역		이의제기		비고
					성명	주소		독촉일	납부일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의안 번호	24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헌혈 장려조례」를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로 제정함
- 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

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혈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현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현혈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혈장려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현혈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현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현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현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청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청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현혈 및 현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현혈장려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현혈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56호 청주시 헌혈 장려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7조의2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 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하여 심장에 전기충격을 보냄으로써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 홍보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민간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설치장소 안내표지 설치 및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는 등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및 응급처치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홍보활동)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1호 청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안 번호	25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제정함.
- 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 표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흡연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마

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4.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5. 야외공연장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청주시보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실을 설치한 금연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구역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3. 금연구역의 그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흡연실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4. 흡연실을 설치한 금연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 안에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을 위한 비품만을 비치하

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흡연실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금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5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와 「청원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업기계임대 사업장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② 지역별로 안배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임대사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에서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한 임대료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상이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 한다.

④ 농업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리요원) 농업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 직원을 두며,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임차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준 및 기간) ①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업기계 대여는 1농가 1대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① 농업기계임대사업의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는 규칙에서 정한 징수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료는 1일 기준으로 하며 기종별 임대료 징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별지 서식의 감면신청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임대자가 농업기계 사용 2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12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임대를 받은 자)

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농업기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의의 관리 및 주의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등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⑤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부담경감과 제3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협의회)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협의회의를 개최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기상조건, 그 밖에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일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농업기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및 「청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청원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별지 서식]

## 임대료 감면 신청서

기종명	형 식	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	면제사유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기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감면 증명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5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청원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 농업기계수리센터의 기능 (안 제3조)
- 관리책임과 직원 및 요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부속품 대금 감면 : 청주 5만원 이하, 청원 2만원 이하 ⇒ 5만원 이하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42,300천원 (통합 전 82,300천원, 통합 후 124,600천원)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업기계수리센터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기능) ①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농업기계의 부속품 대체, 정비,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할 때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는 농업기술센터 본소, 읍·면·동, 리, 자연부락 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농업기계 순회 수리는 수리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④ 그 밖에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청주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수리센터의 운영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①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에 필요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② 부속품 대금은 구입할 때의 가격으로 하고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제8조(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수리 시 필요한 부속품 대금이 농가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며, 농업기술센터에 확보된 부품으로 한정한다.

제9조(망실 또는 훼손) ①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순회 수리 시 파손부품의 감모(減耗)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인으로 해당 연도 부품구입 예산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386호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부속품 대금 감면을 수혜가 높은 금액으로 양 시·군 자치법규 통합
  - ※ 종전 청주시 5만원 이하, 청원군 2만원 이하 ⇒ 5만원 이하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연간 소요비용 추계액 : 42,300,000원  
(산출기초 : 30,000원 × 1,410세대 = 42,300,000원)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5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제정함
- 기금의 용도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및 제4조, 「농촌진흥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2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7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라 농업인학습단체(농촌지도자청주시연합회, 생활개선청주시연합회, 청주시4-H연합회, 농업경영인청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청주시연합회)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기금의 과실 수익금 10퍼센트



### 3. 집행잔액이나 정산 반환금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기본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촉한다.

1. 농업인학습단체협의회회장
2. 농업분야 전문가
3. 농업관련 학계
4.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5. 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천자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지도사로 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청주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정립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계획) ① 기금관리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방법
2. 농촌전문인력육성 지원사업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기금의 사용) ① 농촌전문인력육성사업 재원은 기금 과실 수익금 90퍼센트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2.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학습활동 전개
3. 농촌 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 지원
4.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전 선도
5. 선진농업 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국외 연수 실시
6. 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회계관리) ①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회계업무 담당 지도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

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① 농촌지도자청주시연합회장, 생활개선청주시연합회장, 청주시4-H연합회장, 농업경영인청주시연합회장, 여성농업인청주시연합회장은 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전년도의 육성기금 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마다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청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5호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

축된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본다.



#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3월 26일 ~ 2014년 4월 15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여가활동 증진, 일자리 창출, 정서 함양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가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시 관할구역 안의 다음 각 목의 공간을 말한다.
  - 가.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 나.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제공되는 화장실, 관리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생태적 시설
  - 다. 인공지반위인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상자 등 다양



## 한 용기로 조성한 시설

제3조(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텃밭 확보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시민과 서로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인 지원책 마련 등 그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마다 청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향 및 목표
2. 세부 지원계획
3. 교육훈련 및 행사와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4.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과 보급 방안
5. 생활원예활동 보급사업 및 도시소비자 일자리 창출
6. 박람회, 전시회 또는 경진대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계획의 추진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수사례 발굴·표창)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록 해당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청주시농업기술센터를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청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지원센터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도시농업관”의 명칭으로 설치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업무 및 사업) 지원센터는 지원계획의 추진업무 및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지원한다.

1.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교육·연수·체험, 전시회, 실습 및 기술의 제공·보급
3. 농산물의 홍보·전시 및 체험·판매를 위한 물품, 시설, 인력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
4. 도농교류 관련사업, 텃밭조성·운영, 기술 보급지원을 위한 시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사업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3. 활성화사업을 위한 사업의 결과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농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性)이 전체 위원 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도시농업을 운영하는 관련자
2. 도시농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자 및 소비자단체 관련자

4.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

5. 청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도기획담당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된 위원 및 제12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6개월 이상 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私的)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참석위원 성명, 심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공정한 자문 및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그 안건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

③ 위원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스스로 그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준용) 제5조,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17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청주시 포상 조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 사 업 소

---





# 청주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5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청주시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청주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입주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입주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입주작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8조)
- 입주작가 준수사항 및 퇴실·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2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55에 둔다.

제3조(입주기간) 스튜디오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1. 장기 입주: 1년
2. 단기 입주: 6개월

제4조(운영시간) 스튜디오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작업실: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스튜디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실: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 운영)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 작품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2. 개인작업실 개방행사 개최

3. 전시실 운영
4. 도록 등 출판물 발간
5. 국내·국외 미술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운영
6. 지역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7.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6조(의무사항) ① 입주 작가는 개인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 작가는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개인 작업실 이용현황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각종 사고 예방) ① 스튜디오는 모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입주 작가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입주 작가는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와 관리를 자율적으로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 신청 공고) 시장은 입주 작가를 선발할 경우에는 모든 신청 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20일 이상 청주시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 신청 자격) ①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의 국내·국외 미술작가
2.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국외 미술작가

② 청주시 관할구역 거주 작가의 기준은 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관할 구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 하였던 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 하는 자 또는 청주 소재의 대학을 졸업한 자로 한다.

③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 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며, 세부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입주신청 서류) 스튜디오에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 정원 및 배정) 스튜디오 입주 작가의 정원은 15명으로 하며, 시장이 관할하는 지역 거주자 중 심사결과 우수작가로 우선 배정하며, 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① 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미술계 주요인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입주작가 심사결과를 결정·공고한 날로 해체한다.

제13조(입주작가 선정) ① 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입주 작가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스튜디오 업무담당부서의 장 1명과 스튜디오 학예연구사 1명 및 미술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입주작가 입주·출원에 관한 사항

2.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1

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위원 수당) 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입주 절차)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작가는 입주계약 체결 등 시장이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제20조(이용료 부담) ① 입주 작가는 개인 작업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공중과 TV·전화기·컴퓨터 등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입주 작가가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② 개인작업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인터넷 이용료와 입주 및 퇴실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 작가 본인이 부담한다.

제21조(입주작가 지원·관리) ① 시장은 입주 작가로 선정된 작가에게 작업실 1실을 제공한다.

② 입주 작가가 연간 120일 이상을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작가는 스튜디오 입주 작가로서의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는 스튜디오 입주 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개인 작업실 개방) ① 시장은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국외 미술관계 인사 및 학생 등에게 스튜디오 홍보를 위하여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 작가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개방할 수 있다.

② 입주 작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 작업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23조(입주작가 준수사항) ① 입주 작가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작가 등에게 개인작업실을 이용하게 하거나 그 가족이 함께 숙식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스튜디오의 모든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스튜디오에서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외의 냉난방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⑤ 스튜디오에서 기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⑥ 입주 작가의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⑦ 입주 작가 개인의 모든 물품 및 작품 등은 입주 작가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⑧ 입주 작가는 스튜디오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다.

⑨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개인작업실 내부 시설물의 변형, 변경공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작가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퇴실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스튜디오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퇴실 및 계약 해지) ① 입주 작가는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 작가가 입주 계약사항의 위반 또는 제22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해당 입주 작가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작가는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퇴실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강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전시실 사용) ① 입주작가 또는 그 외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실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전시하며, 전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 책임을 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시실 사용자는 전기료, 수도요금을 제외하고 전시회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02호 청주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미술창작스튜디오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신청서

입주구분	<input type="checkbox"/> 장기(1년)	<input type="checkbox"/> 단기(6개월)	•입주기간(1지망) : ~ •입주기간(2지망) : ~	
사 진 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성별	남•여
	주 소			
	연 락 처	자택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입주분야
<p style="text-align: center;">「청주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스튜디오 입주를 신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b>청주시장 귀하</b></p>				
<p>&lt;첨부서류&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 없음</li> <li>2. 주민등록표등본(다른 지역 거주자에 한정함) 1부(외국인은 여권 사본)</li> <li>3. 작품 소개자료 - 소정양식 없음</li> <li>4.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 소정양식 없음</li> <li>5. 국내외 수상경력 - 소정양식 없음</li> <li>6.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 - 소정양식 없음</li> <li>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서류</li> </ol>				

[별지 제2호서식]

## 전 시 계 획 서

개 요	전 시 명	
	기 간	
	분 야	
	작 품 수	
기획취지		
부대행사		
<세부 전시계획 : 별첨>		

위와 같이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

#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5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청주시평생교육원 청주시립오송도서관)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청주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기적의 도서관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기적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청주시 기적의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주시 기적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수수료"란 도서관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책임지고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그 밖의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시장은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

② 시장은 관장을 임명할 때 5급~6급 상당으로 한다.

③ 시장은 청주시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1명을 관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추천자 중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은 관장을 해임·면직 및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개관하고, 일요일과 중복되는 설·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3.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시장의 승인 필요)

제7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며,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대출하는 자료는 3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관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 테이프, 콤팩트 디스크, 카세트 테이프, 영상미디어 등 비  
도서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서에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  
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의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경우

제11조(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장의 임명 추천(면직 포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 및 변경,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장의 추천)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로 추천한다.

1. 도서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1급 정사서 자격이 있는 자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은 자

제1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도서관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기관은 공모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선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를 공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제2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예산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위임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의 부주의·계으름·과실 등으로 인한 화재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도서관 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기관은 사업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독서인구의 확대와 도서관 정보화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사업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성하여 위원회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 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위원회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탁의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도서관 설립 취지에 위반하는 활동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 직원에게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며, 위탁은  
영상화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자료) ① 일반 사람들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  
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  
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문고 및 유관 단체에 다시 기  
증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  
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관할을 옮길  
수 있고, 이용할 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다만, 폐기 또는 제적 할 사유를 명확하게 적은 목록을

시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17호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표]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제10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구 분	시 간		
다목적홀	주간	4시간	20,000원	09:00~18:00
	야간	4시간	30,000원	18:00~22:00

※ 1회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초과시 시간당(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해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2. 자료복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1면기준금액	비 고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	B5	30	
	A4	40	
	B4	50	
	A3	60	



#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5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청주시평생교육원 청주시립도서관)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청원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 청주시립도서관 명칭 및 위치, 별표 1(안 제2조)
- 대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료의 망실, 훼손에 대한 책임(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 나. 예산조치 : 139,320천원 (통합 후 139,320천원)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이를 공중에 제공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청주시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에는 청주시립도서관과 청주시립오송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을 두며, 각 시립도서관은 분관을 둔다
2. 시립도서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시설 사용허가 및 수수료) ① 도서관 안 부속시설의 사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서관 안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안의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 ④ 도서관 안 부속시설의 사용료와 도서관 자료복사 및 자료출력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관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청주시에 거주하고 도서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희귀 자료·귀중 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증자료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도서관 자료선정 기준에 준하여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이나 이관할 때에는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나 제적할 때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망가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료열람 장려) ① 관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주문화원·문화예술체육회관·박물관·공예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문화활동의 전개) ①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발달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독서의 달, 독서관련 행사 등 시민독서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관장, 청주시의회 의원 2명과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직무·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86호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원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  
촉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  
으로 본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본관	청주시립도서관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55(용암동 2098번지)
분관	청주상당도서관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95(수동 382-1)
분관	청주청원도서관	청주시 청원구 시뫼로 61번길 88-14(사천동 233-223)
분관	청주목령도서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32(양청리 813-4)
본관	청주시립오송도서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80(연제리 677)
분관	청주흥덕도서관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90번길 34(복대동 3025)
분관	청주서원도서관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35(분평동 1252)
분관	청주신울봉어린이도서관	청주시 흥덕구 신울로 153번길 16(복대동 1354)
분관	청주옥산도서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5길 10(오산리 250-3)



[별표 2]

**부속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제6조제4항 관련)

구분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기본시설	강 당	오전(09:00~13:00)	30,000원	
		오후(13:00~18:00)	30,000원	
		야간(18:00~22:00)	40,000원	
	문화사랑방 (전시공간)	1일(09:00~18:00)	30,000원	
냉난방기	강 당	1회(4시간)	30,000원	
	문화사랑방 (전시공간)	1일(09:00~18:00)	20,000원	
부속설비	강 당	1회(4시간)	20,000원	마이크, 조명, 빔프로젝트 등

※ 사용료는 기준시간을 적용하며 초과 시 사용료는 1시간당(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해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사용료는 사용개시 이전에 납부하여야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자료복사 및 출력수수료의 징수기준**(제6조제4항 관련)

구 분	규 격	1면기준 금액	비 고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	B5	30원	
	A4	40원	
	B4	60원	
	A3	80원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독서 장려를 위한 이동도서관 운영 신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 소요경비 추계액 : 139,320,000원
    -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 : 18,160,000원 × 2대 = 36,320,000
    - 노트북 컴퓨터 구입 : 1,500,000원 × 2대 = 3,000,000
    - 이동도서관 도서 구입 : 12,500원 × 4,000권 × 2대 = 100,000,000

청주시 평생교육원 청주시립도서관장

#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청주시평생교육원 청주시립도서관)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설립기준, 장서구비, 열람석 구비, 공간(안 제6조)
- 운영자의 직무, 수집, 정보제공, 대출, 지역주민 문화행사(안 제8조)
- 운영지원 기준, 인건비, 운영비, 자료구입비, 설비비(안 제13조)
- 작은도서관 협의회 구성, 운영(안 제 2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3월 26일 ~ 2014년 4월 15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통하여,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 기반시설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설치요건을 갖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4. "전용도서관"이란 출입구를 별도로 하고 다른 용도와의 혼용이 없

는 독립된 열람공간을 가진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의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대차서비스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2장 설치요건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축적
2. 자료와 정보의 제공·열람 및 대출
3.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 활동지원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6.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5조(위치)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다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이 경우 해당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마련

제7조(등록 및 취소)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등록할 경우에는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설립자가 도서관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폐관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③ 시장은 2년마다 관할구역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설립요건을 위반할 경우
2. 작은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독서문화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5.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제3장 운영

제8조(운영자의 직무)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제공, 열람, 대출 및 문화행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며,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1조(자료 관리) 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 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제1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의 지원으로 구입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은 예외로 한다.

제12조(입관 제한 등)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4장 운영 지원 등

제13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작은도서관에 인건비, 운영경비, 자료구입비, 설비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66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과 열람석 15석 이상을 구비한 전용도서관

2. 2,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3. 사서자격증이 있는 운영인력을 갖춘 도서관.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도서관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로 대체

4.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이 시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도서관 설치·운영 세부계획에 반영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원받는 작은도서관을 대



상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시설 및 운영전반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항을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제1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장 운영위원회

제15조(설치)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운영 체계
2.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5. 예산 운영
6. 도서 확보방안
7. 그 밖에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 내 주민으로 운영자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명예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인력 중에서 운영자가 지정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분기에 한 차례 개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보관한다.

제19조(위촉 해제) 운영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 제6장 작은도서관협의회

제20조(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를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2.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정보 보급과 운영 지원
  4. 그 밖의 협의회에서 직접 제공하는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 ② 협의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 운영자 과반수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③ 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며, 회장과 총무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협의회를 구성 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1조(운영규정) ① 협의회는 그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25호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운영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협의회 회원은 이 조례의 협의회 회원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① 명칭			
② 이용자 수	1일평균	명	주말평균 명
시설	③ 부지	면적	m <sup>2</sup> ( 평)
	④ 건물	면적	m <sup>2</sup> ( 평)
		용도별 면적	
	⑤ 열람석	좌석 수	석
		열람실별 좌석	
⑥ 기계·기구			
자료	⑦ 도서	권	
	⑧ 연속간행물	종	부
	⑨ 비도서자료	종	부
	⑩ 그밖의 자료		
⑪ 직원	전체인원	명	직원 명
			자원봉사자 명

제 호

## 작 은 도 서 관 등 록 증

1. 도서관 명칭 :
2. 소재지 :
3. 대표자명(성명) :
4.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5. 등록년월일:    년    월    일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  
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① 등록번호	제 호	② 등록년월일	
운영자	③ 성명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 )		
⑥ 명 칭			
⑦ 소 재 지 (전화: )			
⑧ 변경사항	현 행	변 경	
<p>「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청 주 시 장 귀하</p>			
※ 구비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 ※ ③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작은도서관 폐관 신고서			
① 등 록 번 호	제 호	② 등록년월일	
운영자	③ 성 명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 )		
⑥ 명 칭			
⑦ 소 재 지		(전화: )	
⑧ 사 유			
<p>「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청 주 시 장 귀중</p>			
※ ③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25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청주시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와 「청원군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
-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2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14조, 제21조, 제21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주시민의 평생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 청주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시장이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학습공동체 확산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 진흥)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조(자료수집에 대한 협조) 시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시설·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평생학습관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2. 평생교육 시책개발과 연구
3.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 연계체제 구축과 지원
4. 평생교육 기관이나 단체의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5. 평생교육 전문인력 정보은행 운영
6.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7.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
8.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과 학습 상담
9.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과 지원
10.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생교육사의 배치) 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및 강좌의 이용 등) ① 학습관 프로그램의 수강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청주시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대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등의 학습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 허가 시 사전에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학습비 징수 및 면제)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학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학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학습자 안전보험 가입)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상·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3장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제13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마을단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학습매니저와 시민강사 지원
3. 마을네트워크 구축 운영
4.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장 평생교육협의회

제1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관계 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6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 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 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② 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기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교육 전문가, 시 지역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8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과 평생학습 관련 기관장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의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생학습관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학습지원담당 주사로 한다.

제2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84호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청원군 평생교육 진흥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표]

**시설별 운영시간**(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운 영 시 간	비 고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오전반 10:00~12:00	
	오후반 14:00~17:00	
	야간반 19:00~22:00	
2. 도서실 및 인터넷카페	09:00~18:00	
3. 어린이놀이방	09:00~18:00	



#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6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운영조례」를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로 제정함.
-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대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유물 및 자료의 취득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일) 청주고인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특수한 사정으로 관람이 곤란한 경우

제3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대관)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장은 박물관 전시 및 관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존, 보급,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대관을 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대관허가 범위) 박물관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2. 부속시설: 냉난방 설비 등

제7조(대관료) ① 제5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별표와 같다.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받은 자가 박물관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무료대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3. 시장이 박물관의 사업목적에 맞는 활동으로 박물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가 후원하는 행사는 대관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9조(시설사용허가) 기념품판매소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사용허가 시설의 사용료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꺼번에 징수한다.

제11조(시설 사용료의 분납 및 반환) 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납할 수 있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관 및 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및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대관료 또는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승인 취소 등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청주시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소장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5.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고인쇄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화 예술계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고인쇄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유물 및 자료의 취득) 박물관 유물 및 자료는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다.

제22조(유물 및 자료의 구입) 시장이 박물관 유물 및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물 및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23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유물 및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및 자료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및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유물 및 자료의 기탁 등) 시장은 박물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및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유물 및 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 유물 및 자료를 분실하거나·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유물 및 자료 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 및 자료는 일반유물 및 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유물 및 자료를 이동 할 경우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물 및 자료의 분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박물관 유물 및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시유물 및 자료를 제외하고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유물 및 자료의 열람등) 시장은 유물 및 자료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유물 및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02호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주시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기념품판매소 시설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별표]

**박물관 대관요금**(제7조제2항 관련)

1. 시 설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1. 세미나실	오 전	50,000원	공휴일 휴일은 30%가산
	오 후	50,000원	
	야 간	65,000원	
2. 기획전시실	1일	15,000원	

2. 설 비

설 비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1. 동시통역시설	1회	200,000원	1회 기준
2. 냉방·난방시설	실사용량	도시가스 요금기준	



#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6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함.
-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중요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청주시금속활자주조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주시금속활자주조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96(운천동)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금속활자기법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후계자 양성과 시민홍보 교육장을 말한다.
2. "금속활자장"이란 문화재청이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활자의 제작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금속활자장의 기능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3. 전통 금속활자 기술의 재현 및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관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목적에 의한 금속활자장 기능보유자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전수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6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전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전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시설물과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전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2.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선·보수시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개관시간) 전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조정(調整)할 수 있다.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17호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위탁운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자로 본다.

# 청주시 유네스코 직지상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6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유네스코 직지상 지원조례」를 「청주시 유네스코 직지상 지원 조례」로 제정함
- 직지상의 수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상금출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유네스코 직지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여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세계적으로 크게 공헌한 자에게 유네스코 직지상을 수여하여 금속활자의 발상지인 청주를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직지상의 수여) ① 유네스코 직지상(이하 "직지상"이라 한다)은 유네스코본부가 2년마다 세계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세계적으로 크게 공헌한 개인·단체를 선정하여 수여한다.

② 직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3조(상금출연) 청주시는 2년마다 직지상 수상자에게 지급할 상금으로 미화 3만달러를 출연하며, 그 시기와 절차는 외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활용방법) 청주시는 직지상 수상자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직지의 세계화와 청주시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

제5조(그 밖의 사항) 직지상 홍보 및 심사위원회에 대한 모든 수당은 유네스코 관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15호 청주시 유네스코 직지상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직지의 날 조례안

의안 번호	26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직지의날조례」를 「청주시 직지의 날 조례」로 제정함.
- 직지의 날 일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직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직지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을 직지의 날로 정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축하며, 직지의 독창적인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여 청주시를 풍요로운 삶의 도시, 찾아 가보고 싶은 도시, 세계적인 지식문화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일자) 직지의 날은 9월 4일로 한다.

제3조(행사) ① 직지의 날에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1. 기념식, 직지상 시상식

2. 기념행사: 전시회, 공연, 학술회의, 이벤트행사 등

② 직지의 날 이전과 이후로 앞뒤 행사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

③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행사는 직지의 날 기념행사 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254호 청주시 직지의날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직지홍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직지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직지홍보단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지"의 창조적 가치와 정신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청주시에서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의 "직지"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지세계화를 앞당기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지세계화 업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흥덕사에서 주조된 금속활자의 창조적 가치와 유네스코 기록유산(직지심체요절)으로서의 세계적인 지식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영원히 계승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 및 홍보 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직지" 관련 교육을 받거나 홍보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지홍보단"이란 직지세계화 업무추진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홍보할 수 있는 직지홍보대사, 직지세계화시민홍보단, 직지문화연구원,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직지설명자원봉사자 및 그 밖에서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직지홍보물"이란 "직지"를 국내·국외에 널리 알리고 직지세계

화 추진을 위한 직지뱃지, 리플릿, 팸플릿, 책자, 현수막, 단원 조끼 등 직지이미지를 적용한 홍보물을 말한다.

제3조(임무) 직지홍보단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직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국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직지상 및 직지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3. 직지홍보단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직지의 가치 및 직지세계화와 관련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직지 관련 홍보사업

제4조(위촉관리) ① 직지홍보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지원 및 관계기관, 단체, 연고자의 추천을 받은 신청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직지홍보대사: 국내·국외에 활동력이 큰 인물로서 본인의 지원 및 추천을 받은 자로 국가관과 애향심이 투철하고 "직지"에 관심이 많은 내국외, 외국인 및 교민
2. 직지세계화 시민홍보단: 청주시민으로서 활동력과 덕망이 있고 직지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3. 직지문화연구원: 평생교육원 등에서 1년 이상 직지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직지홍보 및 교육 활동을 하려는 자
4.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의 직지설명자원봉사자
5. 그 밖에 직지홍보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시에서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직지세계화 시민홍보단은 읍·면·동 별로 10명 내외로 본인 신청 또는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관리한다.

③ 시장은 직지홍보대사의 활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한다.

제5조(신청서 등) 직지홍보단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지홍보단"으로 활동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홍보단원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직지홍보대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직지홍보대사 추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개인은 이력서(자기소개서) 1부
4. 단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6조(임기) 직지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직지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직지홍보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지교육(간담회 등)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직지홍보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홍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8조(교육 및 회의) ① 직지홍보단은 연 1회 이상 시에서 추진하는 직지에 관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직지홍보대사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고, 직지 세계화시민홍보단은 연 4회 이상 정례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직지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직지상 및 직지축제 행사 사전 홍보
2. 국내 전국행사 및 해외 직지 홍보 전시회 등
3. 직지 홍보 효과가 있는 국내외 대규모 행사 참여
4. 직지 조형물 또는 광고탑 등의 설치
5. 직지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전시물 제작 활용
6. 홍보 방송, 언론 관련 등 직지 홍보 사업

제10조(지원 등) ① 시장은 직지홍보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각종 직지 홍보 간행물 및 자료의 제작·제공
2. 직지세계화 시책 반영
3. 그 밖의 직지 홍보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과 자료 등의 지원

② 시장은 직지홍보단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표창,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지홍보대사를 직지 관련 행사에 초청할 경우 관련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지홍보단의 원만한 직지 홍보 활동을 위하여 매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무보수봉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지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81호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직지홍보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직지홍보단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사 진		직지홍보대사 관리카드			
		성 명	한글 :	주민등록번호	
			한자 :		
위촉일	20    년    월    일				
주 소 (E-mail)			연락처	자택(            ) 직장(            ) H.P.	
연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비 고
특기사항					

(뒷면)

직지홍보대사 활동상황			
성명		연락처	
일시	직지홍보 활동상황	확인란	
		담당	과장
성과 관련자료			

[별지 제2호서식]

사 진	<input type="checkbox"/> 직지세계화 홍보대사(위원) <input type="checkbox"/> 직지세계화 홍보단원		<b>신청서</b>		
	성 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서기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E-mail)			연락처	자택(            ) 직장(            ) H.P.(            )	
연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비 고
상기와 같이 <input type="checkbox"/> 직지세계화 홍보대사(위원) <input type="checkbox"/> 직지세계화 홍보단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성 명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직지홍보대사 추천서					
사 진	성 명	한글 :	주민등록번호		
		한자 :			
	생년월일 서기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E-mail)			연 락 처	자택(            ) 직장(            ) H.P.(            )	
연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비 고
<p><b>붙 임: 직지홍보대사 추천자 인적사항</b></p>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자를 직지홍보대사(위원)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 . . 성 명            (인)</p>					
<p><b>청주시장    귀하</b></p>					

# 청주시 직지찾기운동 지원사업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6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직지찾기운동 지원사업 운영조례」를 「청주시 직지찾기운동 지원사업 운영 조례」로 제정함.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주시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보상금 지급 정지 및 회수, 벌칙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직지찾기운동 지원사업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찾기 위한 사업과 지원범위를 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국민 참여 속에 직지찾기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국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라 한다)찾기운동 사업지원
2. 직지찾기운동 관련 국제교류·홍보사업지원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지가 있는 곳의 결정적 단서를 가지고 청주시에 신고한 자.
2. 직지를 소장하고 청주시에 신고한 자.
3. 신고자와 소장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4. 직지를 찾는 데 공헌한 국내·국외 개인이나 단체
5. 직지찾기를 위하여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제4조(지원범위) ① 직지의 소재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범위와 직지 소장자로부터 기부, 기탁, 구입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청주시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보상금 등 지급 범위를 결정한다.

② 직지를 찾는 데 든 비용이나 공헌한 자에게는 필요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③ 그 밖의 시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직지원본 확인을 위한 사전조사 및 전문가 감정, 출장 등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연구위원, 직지관련 기관·단체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

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1. 재원의 조달,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신고자가 요구하는 보상금을 비롯한 그 밖의 사항(다만, 정당성이 없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 후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3. 신고포상금, 보상금 등 지급범위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직지찾기운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제3조, 제4조, 제5조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직지가 신고 되어 원본으로 공인된 시점으로 한다.

③ 먼저 신고한 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회의 진행에 참고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거나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고발 및 보상금 회수, 지급결정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벌칙) 제3조제3호의 비공개 원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처벌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399호 청주시 직지찾기운동 지원사업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상금 지급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6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를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로 제정함.
- 상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상표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상표권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 및 직지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상표법」에 따라 청주시가 소유한 직지상표 관리 및 직지상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일적 이미지 활용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2. "서비스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상표권"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표법」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직지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상표) 상표의 형상(문자, 도형)은 별표 1과 같으며 상표사용물품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상표관련 사업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상표를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상표권 사용) ① 시의 직지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상표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로 청주시직지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상표사용 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승인 사항
2. 사용요율, 사용범위, 사용내용, 상표사용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직지명칭 사용 및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1명 이내

2. 청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3. 시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 2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상표 심의에 있어서 가벼운 내용이거나 시급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료 결정) 상표의 사용료는 100만원 이하로 하며 상호협약으로 결정한다.

제9조(사용료) ① 제3조에 따라 상표의 형상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결정에 따라 계약할 때 한꺼번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후원 사업이나 행사를 할 경우

2.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사회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에 준하는 금액 이상을 직지세계화 후원금으로 기부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상표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직지의 위상 및 품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상표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형태를 바꾸거나 또는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표권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직지상표 이미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상표 사용 전담부서 지정)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상표 사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사용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모든 부서에서의 상표사용 및 다른 사람, 다른 기관에 대한 허가사항은 사용 전담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디자인등록 등 협의) ① 시가 출원 및 등록된 상표를 소재로 디자인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시장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 내용은 시와 공동출원 및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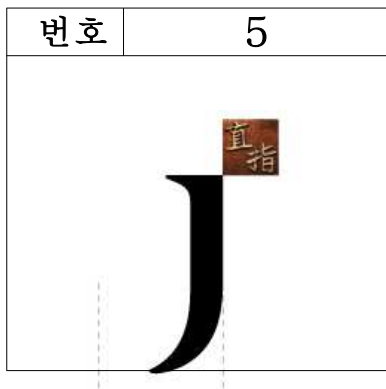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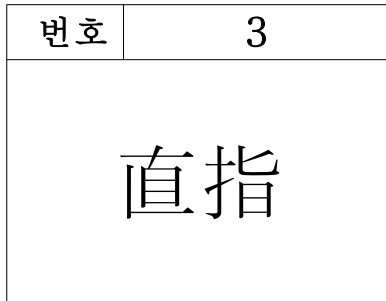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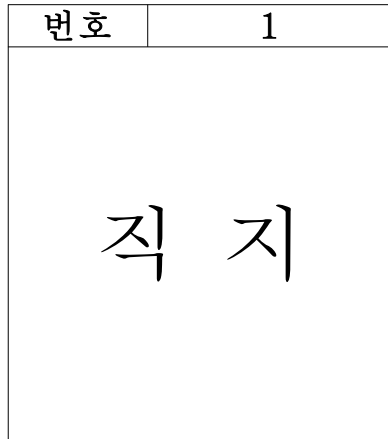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14호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직지상표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상표의 형상(제3조 관련)



[별표 2]

**상 표 사 용 물 품 류**(제3조 관련)

상표명	분 류			상 품 세 목
	구 분	상품류	상품군 (서비스업군)	
직지	교육업, 연예업, 문화활동업 등	제41류 (6종)	1.연예업	○ 무용공연업,오페라공연업,영화제작업
			3.출판관련업	○ 서적출판업
			8.문화예술 및 사회교육서비스업	○ 교육정보제공업,전람회개최관리업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제43류 (7종)	1.요식업	○ 간이식당업,관광음식점업,다방업, 레스토랑업,뷔페식당업,제과점업,휴게실업
		제45류 (1종)	3.기타서비스업	○ 예식장경영업
	종이,판지 및 이들의 제품	제16류 (7종)	11.종이류	○ 한지
			20.인쇄활자	○ 인쇄활자
			25.인쇄물	○ 악보,노래책,만화책,서적,잡지
	直指	종이,판지 및 이들의 제품	제16류 (10종)	12.문방구류
백운 직지	종이,판지 및 이들의 제품	제16류 (5종)	25.인쇄물	○ 그림엽서,전화카드,연하장,엽서,팸플렛
	직물 및 직물 제품	제24류 (3종)	16.포제신변품	○ 직물제수건,직물제손수건,보자기
	의류,신발,모자	제25류 (4종)	7.스웨터류· 와이셔츠류· 내의및잠옷류	○ 스포츠셔츠,운동용유니폼,T셔츠, 폴로셔츠

상표명	구 분	상품류	상품군(서비스업 군)	상 품 세 목
직지위드 마크 및 응용형	○ 과학, 사진, 영화등	제9류 (8종)	40.음악이 녹음된 음반류 등	○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테이프
			41.녹음 또는 녹 화된 테이프 등	○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
			42.노광된 필름 및 만화 영화	○ 노광된 영화필름, 만화영화, 슬라이드필 름, 영사된 필름
	○ 귀금속 및 그합금	제14류 (16종)	5.귀금속제 식기류	○ 귀금속제 밥그릇, 귀금속제 접시, 귀금 속제 찻잔, 귀금제 컵,
			7.귀금속제 기념품류	○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9.귀금속제 지갑	○ 귀금속제 지갑
			16.시계와그부품	○ 전자시계, 탁상시계, 팔목시계
	○ 종이,판지 및 이들 의 제품	제16류 (25종)	19.귀금속제,보석 류 장신구	○ 귀걸이, 귀금속제 배지, 귀금속제 버클, 귀금속제 핀, 넥타이핀, 목걸이
			5.종이제 또는 판지제 표찰류등	○ 스티커
			11.종이류	○ 포장용지, 한지
			12.문방구류	○ 봉투, 서류봉투, 수첩, 만년필, 볼펜, 붓, 먹, 문진, 베틀
			20.인쇄활자	○ 인쇄활자
			25.인쇄물	○ 그림엽서, 노래책, 달력, 만화책, 서적, 악보, 연하장, 엽서, 잡지, 팜플렛, 포스터
	○ 피혁 과 모조피혁 및 그제품	제18류 (9종)	28.사진류	○ 사진
			7.가방 및 대물류	○ 가죽제 열쇠케이스, 명함케이스, 비금속 제 지갑, 서류가방, 여행가방, 학생가방, 핸드백,
	○ 가구, 거울, 액 자 제품	제20류 (9종)	11.우산류	○ 양산, 우산
			5.비금속제 기념 품류	○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17.가구	○ 병풍
			21.방석,쿠션류	○ 방석, 베개, 쿠션,
			23.부채	○ 부채
		41.목제,밀랍제 등	○ 목제조각, 밀랍제 조각	

상표명	구 분	상품류	상품군(서비스업군)	상 품 세 목
직지워드 마크 및 응용형	○ 가정 용 또는 주 방 용 기구 및 용기	제21류 (11종)	7.비귀금속제식기류	○ 비귀금속제 대접, 비귀금속제 머그컵, 비귀금속제 받침접시, 비귀금속제 밥그릇, 비귀금속제 접시, 비귀금속제 찻받침대, 비귀금속제 찻잔, 유리컵, 플라스틱제 컵
			23.종이접시 및 컵	○ 종이컵
			27.비귀금속제 화병	○ 도자기
	○ 직물 및 직물제품	제24류 (3종)	16.포제 신변품	○ 보자기, 직물제 손수건, 직물제 수건
	○ 의류, 신발, 모자	제25류 (10종)	2.신발류	○ 가죽신, 단화
			5.양복	○ 아동복, 잠바,
			6.한복	○ 저고리
			7.스웨터, 와이셔츠류 등	○ 남방셔츠, 운동용 유니폼, T셔츠
			9.모자류	○ 모자
	11.혁대류	○ 혁대		
	○ 커피,차, 코코아 등	제30류 (6종)	14.차류	○ 구기자차, 녹차, 오가피차, 인삼차, 차의 잎, 홍차
	○ 알 콜 음 료	제33류 (10종)	1.일반주류	○ 뱀주, 소주,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함성청주
			2.양주,과실주	○ 매실주, 포도주
			3.중국주	○ 오가피주
	○ 교 육 업, 연예업, 문화활 동업 등	제41류 (13종)	1.연예업	○ 국악공연업, 극장운영업, 무용공연업, 연극공연업, 영화제작업
			3.출판관련업	○ 서적출판업,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8.문화예술및사회 교육서비스업	○ 교육정보제공업,진람회개최관리업
			11.마이크로필름 기록업및비디오촬영업	○ 마이크로필름기록업,비디오녹화촬영업, 사진촬영업
	12.기타서비스업	○ 번역업		
	○ 음 · 식 료 품 을 제 공 하 는 서비 스업	제43류 (11종)	1.요식업	○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 업, 뷔페식당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실업
2.숙박업			○ 관광숙박업, 모텔업, 여관업, 호텔업	

#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6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문화예술체육회관 문예운영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문화예술·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제정함.
-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대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시설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6조)
-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1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주예술의전당, 청주아트홀, 청주문화관 및 그에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게시,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강습, 공연,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등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예 운영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장기출장,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청주시(이하 “도·시”라 한다)의 국경조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같은 조건의 경우에는 우선 신청자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농수산물 전시판매와 건전소비 풍토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 판매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육성관련 행사는 제외한다.

제11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기계, 장비, 시설 등을 가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관계획에 따라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소된 허가 일수에 상응하는 무료 대관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부 시설을 향토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시민문화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민문화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문화 예술 기능 보유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수·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2. 질서를 어지럽힌 자
3.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15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1. 오전: 08:00부터 13: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시간, 설비를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되는 사용료를 행사 전에 선납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행사 당일 초과되는 사용료를

는 사용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시의 국경조 행사 및 주최 행사
2.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시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행사
4.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개월 전 취소 시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15일 이전 1개월 이내 취소 시에는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며, 사용일 15일 이내 취소 시에는 50퍼센트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
2. 청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제1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제22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시설 안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4호 청주시 문화예술·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관심의위원회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문화예술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시설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 청주예술의전당 사용료(제16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순수 공연	뮤지컬 오페라	대중 공연	기타		
공 연 장	대공연장	오전	170,000	340,000	510,000	60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공연연습(무대장비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무대 사용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순수공연은 학예발표회, 연극, 무용, 음악회 등을 말하고, 대중공연은 대중가요, 매직쇼, 토크쇼 등을 말함 ○순수공연과 대중공연이 함께 공연될 때에는 대중공연으로 봄 ○초과 사용 10분마다 대공연장은 10,000원, 소공연장은 5,000원씩 가산함 (다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오후	200,000	400,000	600,000	720,000	
		야간	250,000	500,000	750,000	900,000	
	소공연장	오전	60,000	120,000	180,000	-	
		오후	70,000	140,000	210,000	-	
		야간	90,000	180,000	270,000	-	
회 의 장	오전	120,000					
	오후	140,000					
	야간	180,000					
전 시 실	1제곱 미터 당 1일	200				○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 부속설비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아노	그랜드대형(외제)		1회	7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 사용량의 50%로 함 ○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 소공연장의 고무판, 덧마루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그랜드대형(국산)		"	50,000	
무대시설	오케스트라리프트		"	50,000	
	음향반사판		"	50,000	
	수평이동무대		"	30,000	
	승하강무대		"	30,000	
	고무판		"	50,000	
	덧마루		"	50,000	
	이동식합창대		"	50,000	
음향	기본(마이크 2개)		"	2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음향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추가		개당	3,000	
	전시실		세트/1회	20,000	
녹음	C D 녹음		1회	3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	150,000	○ 공연연습, 무대장치 설치를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소공연장		"	80,000	
	드라이아이스기		1회/1대	40,000	
	포그머신		"	20,000	
	P A R 6 4		"	1,000	
	P A R 4 6		"	2,000	
	엘립소이드		"	2,000	
	팔로우스포트		"	20,000	
	무빙		"	30,000	
영사기	35m/m		1회	50,000	
냉난방	대공연장	냉방	"	150,000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를 말함 ○ 초과 사용 10분마다 대공연장은 10,000원, 소공연장·전시실은 5,000원씩 가산함
		난방	"	200,000	
	소공연장(회의장)	냉방	"	50,000	
		난방	"	80,000	
	대전시실	냉방	"	75,000	
		난방	"	100,000	
	소전시실	냉방	"	50,000	
		난방	"	80,000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시 설 명				
동 시 통 역 시 설		1회	200,000	
영 화 촬 영		"	50,000	
중계방송	TV(비디오녹화)	"	50,000	
	라 디 오	"	30,000	
빔 프 로젝 트		"	50,000	
영 상 자 막 기		"	50,000	
영 상 홍 보 기		10일	30,000	
기 타 대 · 소 도 구		1회	취득가액의 5%	

※주 :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녹음, 무대조명의 1회란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말하며 영화, 공연시 사용은 매회를 1회로 함.



[별표 2]

**청주문화관 사용료**(제16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시 설 명				
시 설 사용료	1 전 시 실	1일 제공미터 당	170	○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 시까지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 당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 산함
	2 전 시 실	"	170	
	3 전 시 실	"	170	
	4 전 시 실	"	170	
냉 난 방	냉 방	1회	30,000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 를 말함 ○초과 사용 10분마다 2,000원 씩 가산함
	난 방	"	50,000	

[별표 3]

### 청주아트홀 사용료(제16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기준	사 용 료				비 고
	순수 공연	뮤지컬 오페라	대중 공연	행사	
오전	85,000	170,000	255,000	17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 공연연습(무대장치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무대 사용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을 가산함 (다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순수공연은 학예발표회, 연극, 무용, 음악회 등을 말하고, 대중공연은 대중가요, 매직쇼, 토크쇼 등을 말함 ○ 순수공연과 대중공연이 함께 공연 될 때에는 대중공연으로 봄
오후	100,000	200,000	300,000	200,000	
야간	130,000	255,000	380,000	255,000	

2. 부속설비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 고
피아노	1회	5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다만, 영화 및 공연의 부속설비 사용료는 매회를 1회로 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 음향 및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임 ○ 냉난방 1회 사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하고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을 가산
조명	"	100,000	
영상기35m/m	"	50,000	
확성마이크(2대 기준)	"	20,000	
마이크초과시	1대당	3,000	
TV(비디오녹화)	1회	50,000	
라디오중계방송	"	30,000	
고무판	"	30,000	
덧마루	"	40,000	
드라이아이스	"	40,000	
포크머신	"	20,000	
빔프로젝트	"	50,000	
냉방	"	100,000	
난방	"	130,000	



[별지 제2호서식]

## 문화예술시설사용허가서

사 용 자	단체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용목적 (행사명등)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사 용 료		계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사항 (허가조건)						
<p>「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p> <p style="margin-left: 4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청 주 시 장</p>						

[별지 제3호서식]

## 문화예술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단 체 의 소재지또는 대표자주소		연락처	사		
			자		
전시·공연 행사의명칭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시설사용				
	부속시설				
	그밖의사항				
변 경 사 유					
<p style="text-align: center;">「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주소: 성명:                          서명,무인,날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10px;">청주시장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 문화예술시설사용변경허가서

사용자	단체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 목적 (행사명등)										
사용기간		당초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까지	
		변경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시설		기본시설	당초							변경
		부속시설	당초							변경
사 용 료		계			기본시설			부속시설		
그 밖의 사항 (허가조건)										
<p>「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청 주 시 장</p>										

## 문화예술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			
			자			
전시·공연행사의명칭						
전시·공연행사의내용						
사용기간및시 간	년 년 ( 일	월 월 회	일 일 시간)	시부터 시까지	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및 설 비	기본시설					
	부속시설					
감면신청사유						
<p>「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5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무인,날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100px;">청 주 시 장 귀하</p>						





#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6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문화예술체육회관 문예운영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를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로 제정함
-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현황(안 제4조)
- 시립예술단 단원 및 사무원 위촉사항(안 제7조)
- 시립예술단 단체장·단원 및 사무국장·사무원 위촉기간(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청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청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체육회관장이 된다.

② 예술단에는 청주시 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청주시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청주시 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청주시 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등 4개 예술단체를 둔다.

③ 각 예술단체의 공연기획, 홍보, 공연지원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두며, 분야별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향악단: 지휘자 1명을 포함한 90명 이내
2. 합창단: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
3. 무용단: 안무자 1명을 포함하여 42명 이내
4. 국악단: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53명 이내
5. 사무국: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

④ 분야별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단원은 매일 상근하는 자로 예술단원과 사무원으로 구분한다.

가. 예술단원은 예능활동을 하는 단원을 말한다.

나. 사무원은 가목의 행정을 지원하는 직원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⑤ 각 단별 단원과 사무원의 직책과 그에 따른 인원, 상임단원의 본봉, 비상임단원의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체를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각 예술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지휘자 및 무용단 안무자(이하 “예술단체장”이라 한다)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체를 지휘·감독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③ 부지휘자, 훈련장은 예술단체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술단 운영 업무

2. 공연기획·지원 업무

3. 홍보·마케팅 업무

#### 4. 그 밖에 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4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운영과 정원, 사무원 승진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체육관장 및 제2조 제2항의 각 예술단체장과 사무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및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 및 각 단체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예술단체장의 재위촉, 단원 인사상의 문제 등 심의안건과 관계있는 자는 해당 사항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각 예술단체의 기본운영 계획, 연간 공연 계획,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계획,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 각 단의 공연·경영실적 평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체육회관 문예운영과장이 된다.

제5조(전형위원) 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전형 및 실기평정을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체별로 4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6조(나이의 제한) 단원의 위촉 나이는 「지방공무원법」의 정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각 예술단의 상임지휘자 및 안무자, 사무국장
2. 건강상 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고 실력이 우수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 나이를 연장할 경우

제7조(자격과 위촉) ① 각 예술단체장과 사무국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예술단원은 해당하는 각 예술단체의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사무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각 예술단체장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전형방법) 예술단원의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사무원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고 필요시 실기전형을 병행할 수 있으며 면접은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촉기간) ① 각 예술단체장·사무국장과 예술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사무원은 공무원정년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촉기간이 끝나는 예술단체장과 예술단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하고, 예술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승진 및 위촉 해제) ① 사무원의 승진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이에 따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원의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4. 예술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5.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6.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7.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8.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공연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 그 밖에 시장이 예술단체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복무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예산)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으로 정하며, 각 단의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분한다.

제13조(실비보상) ①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과 심의에 참여한 운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한 교습에 초빙된 외래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입장료의 징수) ① 예술단체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20퍼센트 안에서 판매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가입된 회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⑤ 징수된 입장료는 청주시의 세입으로 한다.

⑥ 입장료는 예술단체별,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체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 이외에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공연주관) 단장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공연, 음반제작, 예술강좌 등 예술 사업을 주관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7호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주시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6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문화예술체육회관 체육시설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문화예술·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청원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
- 체육시설 사용허가, 개방 및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사용시간, 사용료 및 초과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3조)
-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주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1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란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체력단련, 연습경기 등을 목적으로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나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같은 시간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체구성원은 경기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
  8. “기본금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고등학생을 말한다.
  12. “군경”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3. “어른”이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14.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그와 같다.
- ②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할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확하게 적어서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지급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競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7. 그 밖에 동일조건인 경우 우선 신청자

제5조(시설개방) ① 시장은 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부 시설물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수·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관리에 장애가 우려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할 경우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방해될만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가 내리는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할 때에는 이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시간, 설비를 초과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사용료를 행사 시작 전에 선납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유료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사용자가 유료관람권(이 경우 무료관람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람수입 전체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부속설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전체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제10조에 규정된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전체 발행매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발행할 수 없다.

④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예정 전체 금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미리 청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하거나 또는 이행지

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고 행사종료 후 정산한다.

제12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관람권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통신에 따라 배포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람권의 배포·수표할 때에 잘라낸 관람권은 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관장이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람수익 정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소각한다.

제13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간·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증표를 제시하는 자에 한정한다.

#### 1. 면제대상

가. 국가 또는 도·시의 국경조 행사 및 주최행사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도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행사

라.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청주지역학생이 관계 기관의 공식적인 강화 훈련기간 동안에 한정해서 연습을 위하여 체육 시설을 사용할 경우. 다만,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

마.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3호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이 개최하는 행사에 해당 지역 내 생활체육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2. 감경대상: 요금의 50퍼센트 감면

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국가보훈대상자

나.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일 경우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우선 순위자(우선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일 경우에는 우선 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바. 국가유공자이자 1급, 5·18민주항쟁 부상자 1급, 애국지사의 활



동보조인 1명 포함

3. 감경대상: 요금의 10퍼센트 감면

가. 청주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

나. 그린카드소지자가 청주수영장,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 배드민턴 체육관 등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감면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7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개월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15일 이전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사용일 1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남은금액을 반환한다.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4.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②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2. 이용개시일 이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은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6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 주최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지니고 있는 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니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에 따라 따로 정한다.

제17조(이용권) 이용권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행한다.

제18조(회원권) 체육시설에는 평상시 이용자를 위한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9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기계, 장비, 시설 등의 가동불능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허가 취소된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대관계획에 따라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된 허가일수에 상응하는 무료대관을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사용 3일 전까지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1조(양도 및 전대(轉貸) 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3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체육시설 안에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체육지도자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5조(체육시설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해당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 예술체육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손해보상보험을 시장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계약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체육시설 운영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조례와 관련법규에 따른 명령·처분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위반 및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1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결산서 제출)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회원모집) 운영자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원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신청중인 것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탁체결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종류
청주종합경기장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사직동)	축구장, 트랙, 관중석
청주야구장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사직동)	야구장
청주체육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사직동)	체육관
청주수영장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1(사직동)	수영장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1(사직동)	롤러장
남궁유도회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사직동)	체육관
청주유도회관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1514번길70(용정동)	체육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1(사직동)	체육관, 소강당
김수녕양궁장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1514번길 89(용정동)	양궁장
용정축구공원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1594번길 42(용정동)	축구장, 풋살장
배드민턴·태권도체육관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55(사직동)	배드민턴, 태권도
청주정구장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51번길 56(송정동)	정구장
청주국궁장	청주시 상당구 우암산로 114(수동)	국궁장
청주국제테니스장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380(금천동)	테니스장
충북스포츠센터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사직동)	다목적체육관, 펜싱, 레슬링, 복싱, 우슈, 태권도, 검도, 핸드볼, 배구, 농구
충북청원종합사격장	청주시 청원구 도원세교로 369(내수읍)	클레이사격장, 결선사격장, 10m, 25m, 50m사격장
청원공설운동장	청주시 청원구 도원세교로 343(내수읍)	축구장, 트랙, 관중석
국궁장(약수정)	청주시 청원구 도원세교로 356(내수읍)	국궁장
청원국민체육센터	청주시 청원구 청암로 91-4(내수읍)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청원양궁장	청주시 오창읍 양창리 24번지 외 1필지	양궁장
가덕생활체육공원	청주시 가덕면 인차리 산25-1번지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장, 관리동

[별표 2]

**체육시설 일일 사용시간**(제9조 관련)

(1) 일일 사용시간

구 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주 간	08:00 ~ 18:00	09:00 ~ 18:00
야 간	18:00 ~ 22:00	18:00 ~ 22:00

**체 육 시 설 사 용 료**(제10조 관련)

(2) 전용기본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 용 목 적		공휴일 (토·일)	평 일	비 고
종경기 합장	체육경기	육상장 (트랙)	주간 40,000	30,000	1. 전용시간 ◦주간 ·하계(3월~10월) 08:00~19:00 ·동계(11월~익년2월) 09:00~18:00 ◦야간 ·하계(3월~10월) 19:00~22:00 ·동계(11월~익년2월) 18:00~22:00 ◦전용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2시간 이하 : 기본요금료 50% 가산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 전액 가산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한다. 다만, 용정축구공원 평일 조기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한다. 2. 사용기준 ◦인조잔디구장은 1면 1회 2시간 기준 ◦풋살경기장은 1회 1시간 기준 ◦배드민턴장은 1회 3시간 기준 ◦정구장, 테니스장은 1코트 2시간 기준
		축구장 (필드)	주간 70,000	50,000	
		육상장 (트랙)	주간 130,000	90,000	
		축구장 (필드)	주간 150,000	120,000	
	체육경기 이외	육상장 (트랙)	야간 200,000	140,000	
		축구장 (필드)	야간 230,000	180,000	
청주야구장	체육경기	주간	40,000	30,000	
		야간	50,000	40,000	
	체육경기 이외행사	주간	100,000	80,000	
		야간	150,000	120,000	
남동회관	체육경기	주간	20,000	15,000	
		야간	30,000	20,000	
	체육경기 이외행사	주간	40,000	30,000	
		야간	60,000	50,000	
청주노년회	체육경기	주간	60,000	40,000	
		야간	80,000	60,000	
	체육경기 이외행사	주간	150,000	100,000	
		야간	200,000	150,000	
청주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60,000	40,000	
		야간	80,000	60,000	
	체육경기 이외행사	주간	150,000	100,000	
		야간	200,000	150,000	
청주수영장	체육경기	주간	250,000	200,000	
		야간	300,000	250,000	
	체육경기이외행사	주간	300,000	250,000	
		야간	350,000	300,000	



(단위 : 원)

청주로올리 스케이트장	체육경기		주간	65,000	45,000		
			야간	90,000	65,000		
	체육경기 이외행사		주간	115,000	85,000		
			야간	150,000	100,000		
올림픽 기념국민 생활관	체육경기		주간	66,000	45,000		
			야간	98,000	65,000		
	체육경기 이외행사		주간	119,000	80,000		
			야간	161,000	119,000		
소강당			60,000	40,000			
김수녕양공장	체육경기		주간	40,000	30,000		
	체육경기 이외행사		주간	85,000	65,000		
용정축구공원	축구경기	인조잔디	주간	50,000	35,000		
			야간	80,000	50,000		
		풋살경기	주간	15,000	10,000		
			야간	20,000	15,000		
	축구경기 이외	인조잔디	주간	150,000	100,000		
			야간	200,000	150,000		
		풋살경기	주간	20,000	15,000		
			야간	30,000	20,000		
배드민턴 ·태권도 체육관	체육경기	배드민턴	주간	70,000	50,000		
			야간	100,000	70,000		
		태권도장	주간	60,000	40,000		
			야간	80,000	60,000		
	체육경기 이외	배드민턴	주간	100,000	70,000		
			야간	150,000	100,000		
		태권도장	주간	90,000	60,000		
			야간	130,000	90,000		
청주 정구장	체육경기		주간	15,000	10,000		
			야간	20,000	15,000		
	체육경기 이외행사		주간	30,000	20,000		
			야간	40,000	30,000		
청주국제 테니스장	체육경기		주간	15,000	10,000		
			야간	20,000	15,000		
	체육경기 이외행사		주간	30,000	20,000		
			야간	40,000	30,000		
청주 국공장	체육경기		주간	30,000	20,000		
			야간	40,000	30,000		
	체육경기 이외행사		주간	60,000	40,000		
			야간	90,000	60,000		
청원공설 운동장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부가금 포함 3경기이내
			공휴일	평일	공휴일	평일	
	경기장	1일	200,000	120,000	250,000	150,000	
	라인설치	1일	50,000	50,000	250,000	150,000	
	엠프대여	1일	50,000	50,000			
실내 체육관	주간	1회	70,000	55,000	130,000	100,000	주간의 경우 조기,오전, 오후를 각 1회로 본다
	야간	1회	90,000	70,000	170,000	130,000	

(3)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이용자		개인 요금	단체 요금	비고
청주종합경기장	트랙	개인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료 : 1인당 요금임</li> <li>◦ 단체 : <b>20인 이상</b></li> <li>◦ 이용시간 : 2시간</li> <li>◦ <b>이용시간 : 초과 시 가산요금</b></li> <li>· 2시간 초과 : 기본이용료 전액가산</li> <li>· 2시간 이하 : 기본이용료 50% 가산</li> <li>◦ 육상경기장(트랙) 및 보조경기장에서 시도 대표 선수단의 강화훈련은 무료 (무료사용자는 필히 허가를 득하여 사용 하되, 1회 사용허가 일정은 5일 이내로 한정)</li> </ul>
		단체		150	
	필드	개인	1,500		
		단체		1,000	
청주야구장	단체			1,000	
용정죽구공원	단체			1,000	
남궁유도회관	개인		1,000		
	단체			800	
청주유도회관	개인		1,000		
	단체			800	
청주체육관	개인		2,500		
	단체			2,000	
청주수영장	개 인	일반	3,000	2,500	
		군경·청소년	2,000	1,500	
		어린이·노인	1,500	1,000	
		유아	1,300	1,000	
	선수 훈련	어린이	1,000		
		군경·청소년	1,200		
		대학·일반	1,700		
	회 원	일반(자유)	월50,000		
		일반(강습)	월60,000		
		군경, 청소년(자유)	월35,000		
		군경, 청소년(강습)	월45,000		
		어린이, 노인(자유)	월30,000		
		어린이, 노인(강습)	월40,000		
유아(자유)		월20,000			
유아(강습)	월30,000				
	아쿠아로빅	월60,000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이 용 자	개 인 요 금	단 체 요 금	비 고
청주인라인 롤러경기장	개인	일 반	1,000	800
		군경·청소년	800	600
		어린이·노인	800	600
	회원	일 반	월15,000	
		군경·청소년	월10,000	
		어린이·노인	월10,000	
	선수	일반·대학생	500	
		군경·청소년	400	
		로올러스케이트 임대	500	500
	인라인스케이트 임대	2,000	2,000	
올림피아 기념국민 생활관	개 인	1,000		
	단 체		800	
김수녕 양궁장	개 인	1,000		
	단 체		500	
배드민턴·태 권도체육관	배드 민턴	개 인	1,500	
		선 수 훈 련	1,000	
		회 원	월25,000	
		강 습 료	월70,000	
	태권 도	개 인	1,300	
		단 체		1,000
	회 원	월24,000		
청 주 정 구 장	개 인	2,000		
	선 수 훈 련	1,500		
	회 원	월40,000		
	강 습 료	월150,000		
청주국제 테니스장	개 인	2,000		
	선 수 훈 련	1,500		
	회 원	월40,000		
	강 습 료	월150,000		

(단위 : 원)

구 분	기 준	1인당 사용료			비 고
		개인	단체	회원	
클레이 사격장	기본(접시제공)	12,000	10,000	8,500	◦1라운드는 실탄25발로 한다. ◦단체는 동일소속팀 10인 이상으로 함. ◦등록된 선수는 단체로 인정 함.
	접시.총사용시	14,000	12,000	11,000	
	접시.실탄사용시	18,000	16,000	15,000	
	접시.총.실탄사용시	20,000	18,000	16,000	
실 내 사격장	10m공기소총 10m런닝보아	1,000	800		◦단체는 동일소속팀 10인 이상으로 함. ◦등록된 선수는 단체로 인정 함. ◦실탄표적지는 별도부담 ◦1회(4시간이내) : 오전11이전 사선사용 시 1회 사용료납부
	25m· 50m화약총	1,500	1,200		
실 내 체육관	1회	3,000	2,500		◦단체는 동일소속20인 이상으로 함. ◦조기,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청원군민 체육센터 (헬스장)	일반	2,500	2,000	35,000	◦단체는 동일소속20인 이상으로 함. ◦개인, 단체는 1회, 회원은 1월 기준임. ◦1회 2시간기본 요금임.(단, 체력측정은 기본시간없이 1회 기준임)
	청소년	2,000	1,500	30,000	
	어린이.노인	1,500	1,000	17,000	
청원군민 체육센터 (수영장)	일반	3,000	2,600	42,000	◦단체는 동일소속20인 이상으로 함. ◦개인, 단체는 1회, 회원은 1월 기준임. ◦1회 2시간기본 요금임. ◦초과사용 : 2시간이내는 기본 요금의 50%추가, 2시간초과는 기본요금추가
	청소년	2,500	2,300	30,000	
	어린이.노인	1,500	1,300	21,000	

(4) 생활체육공원

(단위 : 원)

구분	경기 구분	주. 야간	이용요금(원)		비 고
			공휴일	평일	
체육 경기	축구장	주간	50,000	35,000	1. 전용시간 ※ 주간 - 하계( 3월~10월) 08:00 ~ 19:00 - 동계(11월~익년2월) 09:00 ~18:00 ※ 야간 - 하계( 3월~10월) 19:00 ~ 22:00 - 동계(11월~익년2월) 18:00 ~22:00 ※ 전용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 2시간이하 : 기본요금료 50%가산 - 2시간초과 : 기본사용료 전액가산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감면 2. 사용기준 - 축구장 : 1회 2시간(20,000원) - 풋살장 : 1회 1시간( 3,000원) 3. 50%감면 국가유공자, 만 65세이상 노인
		야간	80,000	50,000	
	풋살장	주간	15,000	10,000	
		야간	20,000	15,000	
체육 경기 이외 행사	축구장	주간	150,000	100,000	
		야간	200,000	150,000	
	풋살장	주간	20,000	15,000	
		야간	30,000	20,000	

(5) 부속설비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단위	금 액	비 고
확 성 기 및 마이크	1회 2개까지 1개당 초과 시	3,500 1,200	1. 사용시간 ◦주간 ·하계(3월~10월) : 08:00~19:00 ·동계(11월~익년2월): 09:00~18:00 ◦야간 ·하계(3월~10월) : 19:00~22:00 ·동계(11월~익년2월): 18:00~22:00
전 광 판	1회 기본료	20,000	전기요금, 관허요금
수 도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요금	수도사용량 계산의 최고요율 적용
냉난방	1회 기본료	기본10,000원 사용량 실비	유료판매소 판매가격 적용
전기료		관허요금	전기사용량 계산적용
수영장계측 장비 1식	1일 1회	50,000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설치 및 철거 사용자부담)
사물함	월	2,000	실내수영장 개인사물함
집 기	1일 1회	1,000	탁자, 연단, 접의자 1개당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바닥깔기 (후로링)	1일	30,000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설치 및 철거 사용자부담)
조명사용료	1회 2시간	20,000	용정축구공원 축구장
	1회 1시간	3,000	용정국구공원 풋살장
식당.매점	1일(전부사용)	100,000	◦1개월 이상 계속 사용시는 별도 일반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함

(6) 중계방송 사용료

(단위 : 원)

종 류	구 분	요 금	
		텔 레 비 전	라 디 오
◦중계방송 ·체육경기  ·체육경기이외	국 내 국 제 공 통	20,000	10,000
		30,000	15,000
		30,000	15,000
◦체육경기의 녹화 녹음 촬영 ◦체육경기이외의 녹화 녹음·촬영		중계방송료의 50%	
		중계방송료와 동일	

(7) 입장료

(단위 : 원)

입 장 구 분	요 금	비 고
개 인 입 장 료	100	· 1인 1회 기준 · 각종경기 및 행사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단,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때) · 단체는 50명 이상
단 체 입 장 료	50	

(8) 그 밖의 사용료

(단위 : 원)

종 류	사 용 료
◦체육장시설을 사용한 영화촬영 행위	· 주간 : 30,000 · 야간 : 45,000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시	· 1개 1일간 : 5,000
◦프로그램 판매행위	· 장내반입 판매부수에 1부당 가격을 곱한 금액의 20%
◦광고물 게시	· 10㎡(청주체육관은 3㎡)이하 - 5일 이내 : 50,000 1일 초과마다 : 5,000 - 1년 : 500,000

[별표 2]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제1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전용사용	매1시간 초과당	1일 사용료의 100분의 8	청원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은 2시간이내는 기본요금의50%추가, 2 시간 초과는 기본요금추가적용
이용사용	"	1인당 사용료의 100분의 10	"



[별지 제1호서식]

##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1. 시설구분 :
2. 사용목적 및 기간
  - 가. 사용목적
  - 나. 사용기간
  - 다. 사용시간
3. 사용하고자하는 부대시설

설비명	개수	설비명	개수	설비명	개수

#### 4.관람료(1회)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대표자:

전화

서명,날인,무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체육시설사용허가서

1. 신청자 주소:
2. 단체 명:
3. 대표 자:
4. 시설 사용 구분:
5. 사용 목적:
6. 사용기간또는시간:
7. 사용 설비 내용:

설비명	개수	설비명	개수	설비명	개수

### 8. 관람료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 9. 사용료

계	기본시설	부대시설	비고

### 10. 조건

- 가.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 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할 것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청주시장

##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허 가 사 항	허 가 내 용		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또는 사 용 내 용					
경 기(행 사)명					
사 용 기 간	주 간				
	야 간				
관람권 또는 그 밖의 사 항					
허 가 조 건					
<p>「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청자 주소: _____                   성명:                   무인,서명,날인</p> <p style="margin-top: 20px;">청주시장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 체육시설변경사용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허 가 사 항	허 가 내 용		변 경 허 가 내 용	
사 용 구 분				
사 용 시 설 명 또 는 사 용 내 용				
경 기 (행 사) 명				
사 용 기 간	주간			
	야간			
관람권또는기타				
허 가 조 건				
<p style="text-align: center;">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청주시장</p>				

[별지 제5호서식]

## 관람권검인신청서

-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전화: )
- 행 사 명:
- 사용시설:
- 판매기간: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구 분	검 인 요 청		비 고
	수 량	금 액	
관람권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성    명:                   서명,무인,날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관람수입정산내역서

-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전화: )
- 행 사 명:
- 사용기간:
- 사용장소:
- 관람권 수입내역:

구 분 관람권	검 인		판 매		잔 매	정 산 내 역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기 금 및 세 금	회 관 사용료	관 램 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 문화예술체육회관사용료감면신청서

단체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	
				자	
전시·공연행사의 의명칭					
전시·공연행 사의내용					
사용기간및 시간	년 년 ( 일	월 월 회	일 일 시간)	시부터 시까지	출 연 및 참석예정인 원 수
사용시설및 설비	기본시설				
	부속시설				
감면신청사유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무인,날인  청주시장 귀하					

# 이 용 권

○ 시설명

(전면)

NO.  <b>보 관 용</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 분</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일 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요 금</td> <td></td> </tr> </table> 청주시장	구 분	일 반	요 금		NO.  <b>이 용 권</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 분</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일 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요 금</td> <td></td> </tr> </table> 청주시장	구 분	일 반	요 금		NO.  <b>영 수 증</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구 분</td> <td style="width: 80%; text-align: center;">일 반</td> </tr> </table> 청주시장	구 분	일 반
구 분	일 반											
요 금												
구 분	일 반											
요 금												
구 분	일 반											

(후면)

	1. 본권은 그날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  2. 해당 회관 검인표시가 없는 입장권은 무효입니다.  3. 경기장안에서는 모든규칙과 공중도덕을 지킵니다.	
--	---	--



[별지 제9호서식]

## 입 장 권(전산용)

(전면)

입 장 권 (입장요금 영수증)	
발행번호	발행일시
대 상	
인 원	명
요 금	원

청주시 ○ ○ ○ ○ ○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주시장

(후면)

1. 본권은 그 날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
2. 해당 회관 관인표시가 없는 입장권은 무효입니다.
3. 경기장 안에서는 모든규칙과 공중도덕을 지킵시다.

## 회 원 권

○ 시설명

(전면)

청주 NO.  월 회 원 권  종 목 :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주 소 :  . . . 청주시장	청주 NO.  월 회 원 권  종 목 :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주 소 :  . . . 청주시장
---	---

(후면)

		1	2	3	4	5	6	7	8	9	10	
30	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											11
29												12
28												13
27												14
26											15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 회 원 권(전산용)

(전면)

시 설 명	
사 진	회 원 번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청주시장	

(후면)

회 원 권
1. 본 회원권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본 시설, 그 밖에 회관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3. 회원권 재발급시 비용은 본인이 부담 4. 관계자의 요구 시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



#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조성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7조)
- 청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제2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

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영 제1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8조(도시공원 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공원 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별도 이용시간 및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및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해서는 청주시보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 하여야 한다.

제9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생태관련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에게서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은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 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공원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이나,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발급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거나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수도·하수도 및 그 밖의 부대시

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쇠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 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수·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는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12조(녹지의 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 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창고, 주유소, 학교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11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점용 허가기간)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점용료 부과 및 징수 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산정하며,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일수/365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점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를 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제17조(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도시공원의 이용신청) ① 공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신청 후 이용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은 접수순위와 청주시민을 우선으로 하되,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이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문화행사 등 비영리 목적의 사용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

제19조(이용제한) 시장은 공원시설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익이나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계절별, 시간대별 등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이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원시설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청주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제22조(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도시 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
2. 공원조성계획
3. 도시녹화계획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심의·자문 등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자문 한다.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주시의 관련분야 4급 이상의 공무원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4.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영 제13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녹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83호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청원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표]

**도시공원·녹지 점용료**(제15조제1항 관련)

점 용 대 상	기 준	점 · 사용료
1. 전주	연액당	· 단주 : 개당 720원 · H형주 : 주당 1,200원 · 철탑 : 개당 3,000원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변전소, 공동구	연액당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5
3. 도로, 교량, 궤도, 노외주차장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 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비상급수시설		
5. 초소, 표지		
6.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7. 통신시설		
8.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이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		
9.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공작물		
10. 영제22조 제1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11. 기존 건축물(종교용 시설포함)		
1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연액당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5, 다만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토석채취료를 「청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징수한다.
13. 그 밖의 점용		전 각호의 유사대상에 준하여 산정

[별지 서식]

### 공 원 시 설 이 용 신 청 서

NO. \_\_\_\_\_

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처리기간	10일
	주 소	전 화	
사 용 목 적		인원	명 내외
사용장소(위치)			
사용일시(시간)		년 월 일 ( : ~ : )	

본인은 공원시설 이용승인서 “제4호”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청주시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약속하며 공원시설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청주시장(공원녹지과장) 귀하

NO. \_\_\_\_\_

### 공 원 시 설 이 용 승 인 서

1.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 ), 장소 : (통제구역 제외)

2. 목 적 :

3. 이용자 : 인 원 : 명,내외

4. 공원시설 이용승인 조건

- 공원시설 이용시에는 반드시 본 승인서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민원발생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 화기물질 반입금지 (휴대용 가스렌지 등)
- 취사 및 낚시행위 금지, 임의 시설물 설치, 음주 행위 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등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 방송 및 앰프사용에 대한 임의 사용 및 고음 금지(핸드마이크 포함) - 소음 민원 주의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 철저
- 물품 영업·판매 행위 금지 및 특정업체 물품 등 홍보 금지
- 차량진입 금지, 행사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 공원시설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전기사용 등 문의전화 - - )
-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원이용으로 민원 발생시 이용승인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이용승인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공원시설 이용을 승인하오니, 공원시설 이용승인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





#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명암관망탑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명암관망탑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 명암관망탑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암유원지 내 명암관망탑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명암관망탑(이하 “관망탑”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685-31(용담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관망탑 시설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망탑”이란 관망탑 시설부지에 설치된 일체의 시설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설치한 규모 및 용도를 말한다.
2. “위탁”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망탑 시설을 기부채납자 또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운영·관리하게 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기부채납자 또는 개인·법인·단체가 시장으로부터 관망탑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기능) 관망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시민 및 명암유원지 이용객에게 편익 제공

2.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행사 등 시설물의 공공부문 활용
- 제5조(관리의 위탁) ① 관망탑 시설은 기부채납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기간 산정결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51조를 준용하여 20년을 사용기간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입찰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 ④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망탑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전대(轉貸)할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전대차 사업계획에 따라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이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수탁자와 전대자 간의 계약관계에 있어 일체의 민사상·형사상 책임문제를 청주시에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이 조례에 위배될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수탁자는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수탁 협약)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위탁·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가 관망탑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 시설로서 건물,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민 등 이용객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입점자와의 계약 등 일체의 권리를 소멸시켜야 하며, 수탁기간 종료 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④ 수탁기간 중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관망탑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경우 수탁자와 입점자 상호간의 계약관리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① 관망탑의 회의실, 전시실, 관망대 및 승강기는 시민 등이 무료로 자유롭게 입장하여 사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실, 전시실은 해당 시설용도로서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고 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망탑의 일반음식점, 상업시설 등에 대한 요금은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 규정의 관망탑 기능에 충실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된 사용료를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률은 수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청주시의 주최·주관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충청북도·청주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시설 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 위탁·수탁 기간 종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제12조(손해보험)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공작물·기계기구에 대한 손해 및 안전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수탁사용기간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잃음·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시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 직원에게 매년 1회 10월 중 정기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명암보트장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명암보트장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 명암보트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암유원지 내 명암보트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트장"이란 명암유원지 내 명암보트장(이하 "보트장"이라 한다) 시설부지 내에 설치된 일체의 시설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트장 시설을 기부채납자 또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운영·관리하게 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기부채납자 또는 개인·법인·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보트장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위치) 보트장은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98번길 38(용담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보트장 시설 내에 둔다.

제4조(기능) 보트장은 시민 및 이용객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5조(관리의 위탁) ① 보트장 시설은 기부채납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

허가기간 산정결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51조를 준용하여 20년을 사용기간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입찰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트장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제3자에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무상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제6조의 위탁·수탁협약사항 승계내용과 무상사용권 양도·양수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전대차 사업계획에 따라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이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수탁자와 전대자 간의 계약관계에 있어 일체의 민사상·형사상의 책임문제를 청주시에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이 조례에 위배될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수탁자는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수탁 협약)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위탁·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트장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 시설로서 건물,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민 등 이용객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입점자와의 계약 등 일체의 권리를 소멸시켜야 하며, 수탁기간 종료 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④ 수탁기간 중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무단폐업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보트장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제5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경우

수탁자와 입점자 상호간의 계약권리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보트장의 잔디광장,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은 시민 등이 무료로 자유롭게 입장하여 사용하게 하되, 유지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 위탁·수탁 기간 종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제11조(보험등의 가입) ①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공작물·기계기구에 대한 손해 및 안전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유선장사업자는 유선장 영업에 따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수탁사용기간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잃음·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유선장사업자는 유선장 영업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 직원에게 수탁관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 점검과 필요시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수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7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조성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정함.
-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한층 더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청주시 공원녹지 조성 및 녹화사업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녹색사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사업”이란 푸른청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저탄소 도시건설에 필요한 공원녹지 조성 및 녹화사업 활동 전반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녹색행사”란 회의, 공연, 기념식 등 각종행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 하는 녹화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녹색사업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시 녹색행사로 절약 된 행사비
3. 기금 운용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0.3퍼센트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사용은 조성한 연도부터 집행한다.

제6조(기금용도) 기금은 도시경관 향상과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공공공지의 취득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한다.

1. 녹색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사업
2. 녹색사업 교육 및 기술개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사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4. 녹색사업 국제화를 위해 교류협력 및 시장(市場) 개척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장기예치 기금액과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각각 예치관리하여야 하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하여

야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일부를 “나무은행” 운영기금으로 관리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2명과 녹색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중에서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업무부서의 장을 간사로 하고, 공원행정업무담당주사를 서기로 두며 각종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사항
3. 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4. 나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고,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예산결산 때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공원녹지업무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공원행정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나무은행 운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나무은행”을 운영한다.

제14조(나무은행의 목적 및 역할) ① 나무은행은 효율적인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민 나무 갖기 운동

2. 공동체 나무숲 가꾸기 운동

3. 공동체 꽃길, 화단조성 운동

4.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나무 심기운동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나무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당한 토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 또는 기업 및 단체는 참여신청을 할 때에 사업개요, 총사업

비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신청서, 사업장소, 품종, 지원금액 등 그 밖에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28호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녹색사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녹색사업육성기금으로 본다.





# 청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청정공원 지정 및 계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청정공원”이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음주 및 흡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정된 어린이공원을 말한다.
3.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4.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란 어린이놀이 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

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 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같은 법 제19조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규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청정공원 지정 및 계도)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음주 및 흡연행위가 제한된 청정공원으로 지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지정된 청정공원에서는 음주행위나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청정공원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관내의 관련 있는 사회단체 등을 지정하여 계도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청정공원의 공원 입구에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계획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 위생관리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식재 다만, 알레르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한다.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6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의 안전성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소란·방뇨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차·정차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공원 내에서의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7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  
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  
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  
검 결과 어린이공원의 개선·보수할 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공원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이하 “지킴이”  
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94호 청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안 번호	27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와 「청원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함.
-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일반회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출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청주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급수체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



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을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청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 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를 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에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상 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

을 건설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할 것 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청주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94호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청원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① 이 조례 제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안

의안 번호	27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수도급수조례」를 「청원군 수도급수조례」와 통합하여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제정함.
- 급수공사의 비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9조)
- 급수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 제27조)
- 수도요금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 ~ 제41조)
-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42조)
- 급수설비 관리책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청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곳"이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3.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
8.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9. "원인자부담금"이란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말한다.
10.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1.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곳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급수설비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을 수리하여 원형을 되찾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도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공사 신청인은 원인자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내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보수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장치 및 전용공업용수 급수공사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

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가 개별신청하면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역류에 따른 상수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세대별 계량기 포함) 후단에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역류방지밸브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가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수가압시설을 기부 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면 그 설계, 공사비의 부담 및 산출방법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부 받은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수도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가압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흡수정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설치공사를 할 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으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는 단지 안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한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분할 계량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수도·하수도 설비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수탁공사 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로 한다.
  - ⑤ 수탁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공사 전·중·후 사진, 계량기 봉인 사진 첨부)로 신청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신청인 참관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에게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수도·하수도 설비공사에 등록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② 시장은 급수공사 시공영업허가증을 내줄 경우에는 1건당 6,000원의 교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에 따른 교체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설치 후 10년 이상)에 따른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로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를 점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의 보수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⑥ 저수조는 소유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따라 산정(算定)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한 기간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



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기존에 설치한 계량기가 수돗물 사용량 계량에 적합하지 않아 제15조제4항에 따라 구경을 축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수요량 증가로 축소된 계량기 구경을 원상복구 할 때도 원인자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이 각종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보수,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를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장 급수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화재로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4.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5.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6.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7. 가구분할을 적용받고자 하거나, 수도사용자의 명이나 가구 수가 변경되었을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수돗물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용 및 선박 외에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수돗물 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합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참관하에 사용하되 한 차례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 교체, 보수, 검침, 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와 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차량주차,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로 급수설비를 파손 또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5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

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라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경매·공매처분에 따라 명의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정수 처분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해제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 중지기간에는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개전할 때에는 개전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연장

신청하여 급수 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할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지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동일한 관로로 사용하여 교차접속으로 인하여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수질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을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관·배수관에서 완전히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8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연대책임을 진다.

제29조(수도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효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명료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측정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가정용과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측정하는 경우에 가정용은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정용은 가구당 월 20톤을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사용량의 업종구분은 그 중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측정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측정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측정을 부득이하게 이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곳의 급수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때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계량기 이후의 누수량에 대해서는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도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가정용으로 우선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 공차범위를 초과하면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④ 수도사용자가 필요하여 임의로 설치한 수도계량기는 시험결과와 상관없이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지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낸 때에는 징수한 가산금에서 다음 셈식에 따라 산출한 가산금의 차액을 다음 달 수도사용 요금에 감액하여 부과한다.



가산금 = 체납액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그 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은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으로 알릴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 이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8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정산하되 과부족액은 다음 달 수도사용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여 특정하지 않은 여러 사람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6조제1항의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16조제1항의 시공 자재 검사수수료
  - 가. 계량기 구경 25mm 이하 2,000원
  - 나. 계량기 구경 32mm 이상 4,200원
3.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 가. 계량기 구경 25mm 이하 2,000원
  - 나. 계량기 구경 32mm 이상 4,200원
4. 제27조제1항의 개전수수료
  - 가. 계량기 구경 25mm 이하 5,000원
  - 나. 계량기 구경 32mm 이상 10,000원
5. 제33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 가. 계량기 구경 25mm 이하 2,000원
  - 나. 계량기 구경 32mm 이상 4,200원
6. 제46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 가. 계량기 구경 25mm 이하 5,000원

나. 계량기 구경 32mm 이상 10,000원

제41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으면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2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4. 상수도 급수관 또는 배수관의 파손 및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 되었을 때의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6.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특수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는  
별표 1 수도요금 요율표 일반용 1단계까지만 적용

9. 중소기업체의 월 100톤 초과 사용 시는 별표 1 수도요금 요율표  
일반용 2단계를 적용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설치, 운  
영자에게는 수도물 사용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수도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중수도 사용 계획서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는 상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  
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할 때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한부모 가족

4. 공익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관 리

제44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산도(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

조하거나 용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5조(급수표시)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시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6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정수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이 조례에 따른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0.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수도계량기의 훼손, 잃어버림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도사업자가 수리 또는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설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도계량기 기물에 대한 수리 및 구매 설치비용은 시장이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49조(과태료 등) 시장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모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50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급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51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징수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⑤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을 징수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4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21조의 신고
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 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일시급수
21. 운반급수와 요금
22. 제40조의 수수료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0호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청원군 수도급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수도요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별표 1의 수도요금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2014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수도요금 요율표**(제29조제1항, 제42조제1항 관련)

사 용 요 금		
업종별	사용구분(m <sup>3</sup> )	m <sup>3</sup> 단가(원)
가정용	0 ~ 20이하	450
	20초과 ~ 30이하	580
	30초과	930
일반용	0 ~ 50이하	950
	50초과 ~ 100이하	1,390
	100초과 ~ 300이하	1,860
	300초과	2,080
대중탕용	0 ~ 500이하	700
	500초과 ~ 1,000이하	1,540
	1,000초과 ~ 1,500이하	1,770
	1,500초과	2,040
전용공업용	0 ~ 500이하	200
	500초과	380

(주) 급수를 부정한 수단으로 도용한 자는 최종단계 요율의 3배를 적용한다.

(주) 월 100톤을 초과 사용한 중소제조업체는 일반용 2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별표 2]

**업종의 구분**(제30조제1항 관련)

업 종	업 태 명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li> <li>○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5m<sup>2</sup> 미만의 소규모 가게</li> <li>○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li> </ul>
일 반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li> </ul>
대 중 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대중목욕장업</li> </ul>
전용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침전수)으로 공급되는 것</li> </ul>

[별표 3]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제49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속임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수도계량기의 훼손, 잃어버림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계량기 수리 및 구입설치 비용부담 명령 ○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봉인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원상회복 명령. 단, 봉인 파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6.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종전 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업종위반			○ 업종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차액 징수 ○ 업종 직권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별표 4]

**구경별 기본요금** (제29조 관련)

(단위 : 원)

구 경 별 구 분	금 액	비 고
13m/m	1,000	
20m/m	1,310	
25m/m	1,990	
32m/m	4,960	
40m/m	5,370	
50m/m	8,870	
75m/m	18,450	
100m/m	29,800	
150m/m	61,570	
200m/m	92,550	
250m/m	125,370	
300m/m	167,120	
350m/m	221,340	
400m/m	268,080	





#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7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와 「청원군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를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로 제정함.
-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수질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권한의 위임(안 제2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47조제2항, 제55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 기본계획수립 등 상수도 공급계

획이 수립된 구역의 시설과 시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55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시설물의 개수·보수는 관리자와 협의회가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물의 개수·보수는 사용자인 협의회에서 보수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개수·보수비를 협의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와 협의회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수·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관리자가 개수·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으로 통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붙여 시장의 폐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지 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

### 3. 폐지후 급수대책

### 4.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비용은 협의회의 대표자 책임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관련 장부를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16조(협의회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실시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分擔)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대표자의 임무) 협의회는 대표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전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제20조(협의회 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비용)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대표 협의회는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서 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읍·면·동장 또는 협의회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4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회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다만, 시설의 설치 업무는 제외한다.)
2. 제7조에 따른 점검
3. 제8조에 따른 개선조치
4.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
5. 제10조에 따른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6. 제13조에 따른 요금징수
7. 제15조에 따른 계량기 설치
8. 제16조에 따른 협회 설치. 다만, 각 호에 대한 위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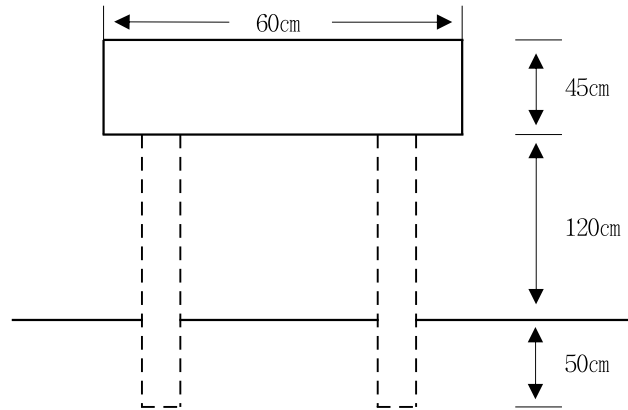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2호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청원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수도시  
설관리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재질 및 두께 : 2mm이상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탕 색 : 흰 색

글씨 : 청 색

####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치 :
    - 시설용량 :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전화 : 000 - 0000 )

청 주 시 장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관 리 번 호		청주시 제 호									
구분	항 목	내 역									
일반 현황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									
	협의회대표자	성 명				전 화 번 호	(043)	(HP)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 현황	총 투자액 (만원)	구 분	내 역	일 자	국 고 보조		지 방 비		주민 부담	기 타	
				· · ·	자재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시군비			
				· · ·							
				· · ·							
				· · ·							
				· · ·							
				· · ·							
시설 현황	수원의 종류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의 유형	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취수 시설	보유시설	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 기 사 항			
						양 호		불 량			
			집수정 1							심도: m	
			집수정 2							심도: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정수 시설	보유시설	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 기 사 항				
					양 호		불 량				
		소독설비									
		침 전 지									
배 수 지											
배 수 지											
송배수관로	구 분	송 수 관 로			배 수 관 로			총 연 장 (m)			
		관 중	직 경	연 장	관 중	직 경	연 장				
	소 계										
	소 계										
	총 계							총계:			
급수 현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일최대급수량 :					
	현 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제한 급수	1차 :		2차 :		3차 :		계: 일간			
수질 검사	검사 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전	검사기간	(개항목)					
	합격 여부					검사일시					
개량 내역	개량 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 공 자		개 량 내 역					
수원 이전	이 전 사 유				이 전 일 자			소 요 비 용	천원		
	이 전 위 치										

※ 시설 폐지시는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일 자	시설공사(변경)내역(~을 ~로)또는 특기사항	사 유
. . . . .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정기점검대장

관 리 번 호	청주시 제 호	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 거	취수원 부근		
	배수지 부근		
그 밖의 사항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관리번호	청주시 제 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등)의 유무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여부			





# 청주시 상수도 원인가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상수도 원인가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상수도 원인가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원인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원인가부담금 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별표 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71조, 제72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청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에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보수·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이 파손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보수, 유지비용 및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및 파손된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발생한 도로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과 직원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 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

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한 자의 확인과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이나 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 원인·정황·피해물·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이 파손이나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하여,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 시설의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든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 된 용량에 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이나 붕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 및 붕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과 재산상 피해에 따른 피해배상금
9. 그 밖의 홍보비 등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단위사업 및 부과금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3. 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 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부과 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은 시장과 협의·결정한다.
5. 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5조에 따른 금액 결정에 따르며, 설계도서 작성과 감리비,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와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누수와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일반영업종의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누수와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3. 급수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과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와 숙박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써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붙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원인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③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 산정 후 별지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한다.

④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은 전용급수장치의 신설이나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각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의 경우 주거시설의 가구수 부담금과 비주거시설의 구경별 부담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개조(증설) 급수신청의 경우 비주거시설은 구경별 차액분을 산정하며, 주거시설은 건축허가를 수반하여 가구수가 늘어날 경우 차액분을 산정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와 임시용 수도 급수장치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파손 또는 붕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파손 또는 붕괴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하여 낼 수 있다.

⑦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수도시설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이설·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수도시설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환불하거나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 납부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9조 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협의하여 원인자나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파손·붕괴부담공사는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 또는 붕괴한 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 또는 붕괴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든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1호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정산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 □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수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1인1일 급수량(LPCD)에 세대별 거주인구를 곱하여 산출하며, 비주거시설은 구경별 용수량은 청주시 최근 5년간의 관 구경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용수량은 시장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금액 산정**(제6조제11항 관련)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제5조제1항제1호의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sup>3</sup>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연도별 기준 유형자산을 자체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출된 단위사업비는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단위사업비로 할 수 있다.  
다. 신설·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 공사비를 적용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3. 추가사업비란 해당 사업지구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의미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순자산 = 총가동설비자산-기부금누계액 - [(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 +재평가적립금누계액) × (1-상각누계비율)]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3. 추가사업비란 기존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실소요 공사비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순자산 = 총가동설비자산-기부금누계액 - [(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 +재평가적립금누계액) × (1-상각누계비율)]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3. 청주시 읍·면 지역에 대한 주거용 원인자 부담금(13mm)에 대해서는 별표 2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7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_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_2 = CA\sqrt{2gh}(\text{오리피스공식})$$

$$- Q_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m <sup>3</sup> /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m <sup>3</sup> /hr)
C = 유량계수(Ca × Cv)	Ca = 수축계수(0.666적용)
Cv = 유속계수(0.97적용)	
∴ C = 0.666 × 0.97 = 0.64	
A = 면적(m <sup>2</sup> ) = 10,000a(cm <sup>2</sup> )	g = 중력가속도(9.8m/sec <sup>2</sup> )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 <sup>2</sup> )
(수두 10m는 수압1kg/cm <sup>2</sup> 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

Q = 손실수량(m <sup>3</sup> )	A = 면적(m <sup>2</sup> )
L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서식]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제7조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_\_\_\_\_에서 시행하는 \_\_\_\_\_사업의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청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_\_\_\_\_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_\_\_\_\_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을”은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을”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청주시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을”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갑”이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m<sup>3</sup>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 “갑”은 “을”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을”과 협의한다  
② “을”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갑”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자료제출) “갑”은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붙인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을”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청 주 시 장

(을)

# 청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의안 번호	27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하수시설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와 「청원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로 제정함.
-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적절한 관리 및 수도요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수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검토하여야 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① 시장은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건설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빗물이용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및 건축물

제5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제4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등 시설물의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의 위치·용량, 사업비 산출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법 시행  
규칙 제4조에서 정한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 판정 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서를 발급받은 자는 시장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  
한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붙  
여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도요금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중 빗물 사용량  
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같은 기간 중 수도요금에서 다음과 같이 감면  
할수 있다.

1. 가정용: 60퍼센트

2. 일반용: 30퍼센트

3. 대중탕용: 30퍼센트

4. 전용공업용: 30퍼센트

④ 빗물이용 사용량은 1개월 또는 2개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대상 미만의 시설물이라도 빗물설치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관리) ①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된다.

②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해야 한다.

2. 부적합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에는 반드시 "빗물이용시설"이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

3. 빗물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량기의 교체 시에도 또한 같다.

4.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5.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제8조(검침) 시장은 매월 빗물이용시설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  
침한 후 수도요금고지서 발급 시 감면 조치한다.

제9조(사용수량의 인정 배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  
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키는 경우 해당기간 중 사용수량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34호 청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청원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28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를 「청주시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제정함.
- 조직과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먹는물관리법」 제4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청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과 명칭) 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청주시상수도사업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환경부에서 정한 적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 한다)에 두며,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라 칭한다.

제3조(검사신청의 범위) 수질검사 신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에 따른 정수장의 정수
2.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 먹는 물 공동시설
5. 광역매립장 및 주변마을 음용지하수
6.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음용지하수
7. 그 밖에 청주시장 및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경우

제4조(수질검사 의뢰) 사업본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검사신청서를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을 따른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로 내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성적서의 발급) ①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검사성적서(이하 "검사 성적서"라 한다)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급된 검사성적서는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의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칠 수 없다.

④ 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결과의 통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이 원할 경우에는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수도법」에 따른 정수장의 정수: 면제
2.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면제
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면제
4. 먹는 물 공동시설: 면제
5.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음용지하수(영업용 및 허가용 또는 준공검사용 제외): 면제
6.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50퍼센트 이내 감면

② 제1항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검사신청 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검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합이 필요함에도 봉인·봉합이 없을 때
2. 봉인·봉합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3. 제4조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시료소요량보다 부족하거나 지정 채수



용기가 아닐 때

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를 채취한 날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9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와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검사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 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제11조(검사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 ① 본부장은 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발급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성명, 말소사유, 시료명을 청주시보·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검사용 시료의 소요량 및 검사수수료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 규칙」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87호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수질검사 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질검사성적서는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b>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b>			처리
			즉시
신청인 (검사 의뢰인)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재교부신청 사유			
성적서발행연월일	년    월    일	재발급 부수	부
시 료 종 류			
채 수 장 소			
<p>「청주시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b>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b></p>			
<p>구비서류 및 수수료 : 없음</p>			

#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8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와 「청원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정함.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2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수돗물과 관련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돗물 소비자
2. 청주시의회 의원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

5. 관계 공무원(상수도 및 보건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의 위원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나 자격이 상실 되었을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장기해외여행(1년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4.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 해제될 때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125호 청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청원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안 번호	28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와 「청원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함.
- 녹색제품 구매 촉진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청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써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소속 기관
2. 청주시의회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국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하면 산업계, 민간단체 등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은 이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에 필요하면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할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에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을 할 때에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할 경우

제8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 기준보다 현저하게 우수

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걸려서 적기에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에서 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 필요하면 환경부장관 등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할 경우 경



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자체평가와 기업체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우수기업체 또는 유공자 등에 게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청원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8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환경기본조례」와 「청원군 환경 기본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를 제정함.
- 환경보전의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제17조)
-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제5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청주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청주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본정책으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유지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및 폐기물처리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과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단체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주



기로 수정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조치)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수질·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종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는 공원·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장 시민참여 및 홍보

제14조(시민의 참여)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 공개)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교육 및 홍보) ① 시는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교육의 참여도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 실시 등) ① 시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는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지역 내 환경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와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성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드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협의회, 연구기관이 시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환경보전 시책 장려) ① 환경보전 시책에 시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 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우수 단체 등에게 시상할 수 있으며 상사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제협력 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 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206호 청주시 환경기본조례, 청원군 환경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8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를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로 제정함.
- 수상의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수상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수상후보자 추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운동의 생활화와 환경보전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또는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마을을 발굴 표창하는 청주시 환경대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 종류) 수상의 종류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마을(이하 "단체"라 한다)등 단체부분에 시상하도록 하고 금상, 은상, 동상은 개인과 1개 단체를 선정하여 각각 시상한다.

제3조(수상 대상자) 수상 대상자는 수상일 현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활동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한다. 다만, 3년 이내에 본상을 수상한 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환경개선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2. 수질, 대기, 쓰레기, 재활용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관리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3. 신기술 개발보급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제4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시 관내 기관·단체장, 구청장

등이 추천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평가)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별도의 확인평가반을 편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확인평가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시 환경대상(이하 “환경대상”이라 한다) 수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환경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매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상) ① 환경대상은 매년 6월 5일(세계환경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대상 심사결과 수상할 개인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환경대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환경기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846호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환경대상 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2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나. 예산조치 : 200,000천원 (통합 후 200,000천원)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젓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서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별표 1과 같이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③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에서 정한 신고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임야 등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구밀집지역 및 아파트 경계에서 축사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전체 세대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서 전체 세대수 9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축사에서 가장 인접한 가구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

4.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5마리 이하의 개. 다만, 생후 90일 이하의 개는 마릿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지역실정에 맞게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수거지역 및 반입할당량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 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 처리공정 중의 액온(液溫)이나 방류수질(연계처리를 포함한다)이 규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입량을 제한하거나 반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5조(수수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이하 “수수료” 라고 한다)를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징수한 수수료 중 처리 수수료에 한정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운영자 등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관리하며, 업체별 반입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이용자 및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중단하거나 반입 배정량을 삭감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 운영자 등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수시로 반입 장소를 확인하여 관외 반입을 예방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성상 및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계획수질을 초과하는 가축분뇨 반입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처리 인계서 발급) ①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한 물량에 대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수증 3부를 발행하여 1부는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며, 1부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영수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을 중단하거나 반입물량을 삭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규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이나 특별  
재난 선포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면제하는 금액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  
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  
촉장을 발급하되,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한다.

제9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공처리  
시설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  
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징수교부  
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시장은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00호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은 신규로 다시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지형도면에 따른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관련법	제 한 구 역	비고
전 부 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보건법」 제5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70조	○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수도법」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지하수법」 제12조	○ 지하수 보전구역	
일 부 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각 읍·면·동별 마을(리·통) 또는 인구밀집 지역(10호 이상)에서 반경 직선거리 500m 이내지역 ○ 아파트 단지(50호 이상)에서 반경 직선거리 1,000m 이내지역	

비고

1. 가구는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주민등록상 가구수)으로 한다.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 하지 않는다.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능한 가구)
3.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4.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5. 거리제한에서 이격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 또는 건축법상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L)

부과대상	계	수집·운반수수료	처리수수료	비고
축산농가	19	15	4	

비고) 공공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적산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인해 유입량을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축산분뇨 배출원단위를 근거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유입량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별표 3]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규제 기준**(제6조제3항 관련)

구 분		반입할당량 감량 및 규제			
동일한 위반행위로 2년 이내 적발된 경우 (분뇨 및 가축분뇨)	위반 횟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조치	2톤 삭감/일	5톤 삭감/일	10톤 삭감/일	반입 중지
제재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비 고		허가받은 수집·운반 할당량 기준			

## 가축분뇨 처리 인계서(1) - 운반자 보관용

《청색》

배 출 자	농 장 명(업소명)	(인허가번호 )		
	대 표 자(농장주)		주민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수집차량 번호			
	가축분뇨 위탁량	m <sup>3</sup>		
	축 사 면 적	m <sup>2</sup>		
	사 육 두 수	돼지 :	젓소 :	소 :
	배출일자			
운 반 자	업 소 명			
	대 표 자		주민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수집차량번호			
	운반일자			
처 리 자	처 리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반입 차량번호			
	처리방법			
	처리일자			
확 인	배 출 자	운 반 자	처 리 자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이 가축분뇨 처리 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가축분뇨 처리 인계서(2) - 처리자 보관용

《갈색》

배 출 자	농 장 명(업소명)	(인허가번호 )		
	대 표 자(농장주)		주민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수집차량 번호			
	가축분뇨 위탁량	m <sup>3</sup>		
	축 사 면 적	m <sup>2</sup>		
	사 육 두 수	돼지 :	젓소 :	소 :
	배출일자			
운 반 자	업 소 명			
	대 표 자		주민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수집 차량번호			
	운반일자			
처 리 자	처 리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반입 차량번호			
	처리방법			
	처리일자			
확 인	배 출 자	운 반 자	처 리 자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이 가축분뇨 처리 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가축분뇨 처리 인계서(3) - 배출자 보관용

《녹색》

배출자	농장명(업소명)	(인허가번호 )		
	대표자(농장주)		주민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집차량번호			
	가축분뇨 위탁량	m <sup>3</sup>		
	측사면적	m <sup>2</sup>		
	사육두수	돼지 :	젓소 :	소 :
	배출일자			
운반자	업소명			
	대표자		주민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집차량번호			
	운반일자			
처리자	처리자			
	소재지		전화번호	
	반입차량번호			
	처리방법			
	처리일자			
확인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이 가축분뇨 처리 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통합 청주시 전체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위한 용역비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 소요경비 추계액 : 200,000,000원
  - (산출기초 : 200,00,000원 × 1식 = 200,000,000원)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



#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8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청원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
-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국도보조금,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오염총량관리에 드는 비용 등
- 자금의 전용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특별회계의 예산은 하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 례 안 : 붙임

##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드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5. 수변녹지 조성사업
6.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7. 환경기초조사사업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오염하천정화사업
10. 수질자동측정 감시 장치의 설치 및 운영
11.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운영에 드는 비용
12. 녹조방지사업
13.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
14. 오염총량관리에 드는 비용
15.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드는 비용
16.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8조(준용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16호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본다.





#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8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와 「청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
-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이동 및 간이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 설치·관리자의 책목에 관한 사항(안 제 4조)
-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 유료화장실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가장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규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할 경우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그 밖에 공중화장실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할 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춰 놓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 실시
2. 대변기와 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要石)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깨지거나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색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하기 어려운 건물 안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 등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정화조 청소수수료, 청소관리 및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이동 및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인하여 여럿이 모이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간이화장실 설치) 시장은 전기·수도·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이나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이동 및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 설치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 및 간이화장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② 이동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갖춰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종료 후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7조(유료화장실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갖춰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7조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장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제1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요구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제19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주시 화장실업무 담당국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며,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중화장실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공중화장실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과태료 부과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81호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청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 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10	20	30
4.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4호	10	20	30
5. 법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5	10	20

##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소 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 체			설 치 연 도				관 리 책 임 원		직 급		
	관리주 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타 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 함		그밖의 사항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원)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연도						
	규 모		부 지 : m <sup>2</sup> , 화장실 면적 : m <sup>2</sup>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청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b>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b>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p>「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 주 시 장 인</p>								





#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1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업·임업·어업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게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2호 및 제1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7.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 “자율구제단”이란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을 대리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2장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등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청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또는 농림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토지 소재지 읍장·면장·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장·면장·동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통장 및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피해보상 요건)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해 시 지역에서 사람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자(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도 포함)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인명 피해 제외)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 제3장 인명피해 보상

제6조(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은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한다.

제7조(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며,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제 18조에 따른 자율구제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불법포획, 채취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 제3조에 따른 피해 신고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장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제9조(보상대상)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임업·어업상 피해 중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0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농작물 생육상태와 다른 작물로의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算定)할 수 있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한다.

제11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게 1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경작지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에 한정한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피해보상금 산정(算定)은 별표에 따른다.

2. 과수 피해보상은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 등 피해 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금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3. 보상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 매년 같은 지번에서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보상금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2조(피해보상 제외)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보상 산정(算定)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 지역에서 업을 하는 경우
4.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조에 따른 피해 신고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장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액 산정(算定)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피해보상 산정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부시장, 소관부서 국장 및 과장
2. 보건소장(인명피해의 경우에 한정하며, 피해발생지역 보건소장으로 한다)
3. 청주시의회 의원(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4. 야생동물이나 인명치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5. 농업인 단체 임원 또는 회원

③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이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18조(자율구제단 운영)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자율구제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거나 수렵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구제단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인적 피해우려가 야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율구제단 구성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자율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매년 3월 자율구제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선발인원 및 기준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계획을 따른다.

제19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시장은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급된 보상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신청 및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76호 청주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청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예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산정**(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농작물	수확기 피해 및 대파가 불가할 경우	▪ 피해액 × 0.8
	수확기 피해이나 타작물 등 대파가 가능할 경우	▪ 피해액 × 0.5
	같은 작물 대파가 가능할 경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종묘대금 + 비료대금)
	과수 피해	▪ 피해액 × 0.8
산림작물		▪ 피해액 × 0.8
수산양식물		▪ 피해액 × 0.8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신고서				
피해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 락 처	
피 해 발 생 현 황	피해지역			
	피해발생 일 자			
	가 해 야생동물			
	피해내용 (발생경위)			
<p>「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청주시장 귀하</p>				
<p>※ 구비서류</p> <p>1.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1부.</p> <p>2. 진단서 1부.</p>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신고서				
피해농가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연 락 처	
피해현황	피해지역			
	피 해 농작물등		가 해 야생동물	
	피해기간	~ ( 일간)		
	경작,재배 면 적	m <sup>2</sup>	실 제 피해면적	m <sup>2</sup>
<p>「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자 (서명 또는 인)</p> <p>청주시장 귀하</p>				
<p>※ 구비서류</p> <p>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p> <p>2. 피해지 약도(또는 위치설명도) 1부</p>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조사서																														
피해자		성명																												
		주소																												
피해조사결과	인명피해	피해내용																												
		피해경위																												
	농작물등피해	피해지역																												
		피해농작물등			가해야생동물																									
		경작,재배 면적	m <sup>2</sup>		피해면적	m <sup>2</sup>																								
		과수피해	경작지면적	m <sup>2</sup>																										
			평균피해율	%																										
피해산정면적	m <sup>2</sup>																													
피해보상제한여부	인명피해	수렵활동 중 피해인지 여부	여(    ), 부(    )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 여부	여(    ), 부(    )																											
		입산금지구역 무단입산 여부	여(    ), 부(    )																											
		불법포획, 채취활동 등에 의한 피해 여부	여(    ), 부(    )																											
		본인부담금이 10만원미만인지 여부	여(    ), 부(    )																											
	농작물등피해	피해면적 100m <sup>2</sup> 미만 해당여부	여(    ), 부(    )																											
		경작 등 금지지역 해당여부	여(    ), 부(    )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지원 여부	여(    ), 부(    )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여(    ), 부(    )																											
그 밖의 사항																														
<p>「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년</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일</td> <td style="width: 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피해자(유족)</td> <td></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장통장(입회자)</td> <td></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조사공무원 직</td> <td></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명 또는 인)</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명 또는 인)</td> </tr> </table>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서명 또는 인)	이장통장(입회자)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서명 또는 인)																										
이장통장(입회자)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																														
<p>※ 조사방법</p> <p>1. 피해 농작물등 각각 작성</p> <p>2. 현장사진 붙임</p>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결정 통보서			
피해자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명피해	피해내용		가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피해지역		
	피해 농작물등		가해야생동물
	경작,재배 면적	(㎡)	
	피해면적	(㎡)	
보상금액		원	
<p>「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 주 시 장 인</p>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피해보상금		
<p>「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청주시장 귀하</p>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 사본			

[별지 제6호서식]

###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

연번	피 해 자			피 해 발생일	피 해 내 용	보상금 신청액	처 리 결 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상금 지급액	보상금 지급날짜	미보상 (사유)

[별지 제7호서식]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

연 번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자			농작물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										처리결과	
	성명	주소	신고일	피해 농경지	피해 작물	가해야생 동물 명	경작 면적 (㎡)	피해 면적 (㎡)	피해율 (%)	보상 단가 (㎡/원)	피해액 (원)	보상 비율 (%)	산정 보상액 (원)	보상액 (지급일)	미보상 (사유)



#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읍장·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선정,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기금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등

○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시장 또는 읍장·면장은 사업을 직접 시행함. 다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시행할 수 있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8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읍장·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선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기금 조성 및 기본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중에서 이장 또는 마을대표를 주민대표로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지역의 덕망 있는 자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주민회의) 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장·면장은 제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



과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주민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 또는 읍장·면장은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 공동재산으로 형성하는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 또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시행할 수 있다.

1. 상수도, 하수도 및 마을상수도
  2. 도로, 다리,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3.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마을공동작업장, 복지시설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 ②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읍장·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가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한다.
- ③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 ①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반환금액·방법·기한 등을 밝혀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시장 또는 읍장·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읍장·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결산부속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시장 또는 읍장·면장은 단위사업별로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연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및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인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리)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추진개요

- 가. 사업목적
- 나. 사업지역 현황
- 다. 사업내용
- 라. 사업효과
- 마. 재원확보계획
- 바.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단위 : 천원)

추진 일정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근 거	기 타 (위치 등)
합	계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리 마을회 대표(이장) ○○○(인)

○○읍장·면장 귀하

<b>결 산 보 고 서</b>			
(      년      월      일)			
수 입 지 부		지 출 지 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전기이월금 1. 명시이월금 2. 사고이월금		I. 주민지원사업비	
II. 기 금 1. 현 금 2. 예 금			
III. 군 비 1. 현 금 2. 예 금			
IV. 기타 수입 1. 예금이자 2. 기타수입		II. 차기 이월금 1. 명시이월금 2. 사고이월금	
합 계		합 계	

작성방법

- 전기이월금란 : 해당 읍·면에서 전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을 기재
- 기금란 : 해당 연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교부받은 지원금액 기재
- 시비란 : 해당 연도 군비로 교부받은 지원금액을 기재
- 기타수입란 : 해당 연도 발생 예금이자 및 지체상금 등을 기재
- 주민지원사업비란 : 해당 연도 지출한 실제 집행액
- 차기이월금란 : 회계연도 말일 현재 남아 있는 잔액

[별지 제3호서식]

### ○○○○ 년도 주민지원사업 결산 부속명세서

사업명	※ ○○○○사업			사업비(원)						추진과정 (지출,미준공 ,명시)	비고
	사업내용			계획사업비			집행	차년 이월	불용		
	사업지	계획	시행자	총계	기금	자담					
합계											

※ 사업구분별 작성 :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육영사업, 직접지원

##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 앞 면 >

관리 번호			관 리 책 임 자	○○이장 (전화번호 ) ○○담당 (전화번호 )
사 업 명		사업장소		지원대상자 (또는 소유자)
착 공 일		설계· 시공자	상호(명칭)	
준 공 일 (시설설치,기 자재구입일 등)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내용 (사업비 포함)	(사업계획)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		사 업 비 세부집행 내역(천원)	○ 집행액            천원  - 보조 :  - 자담 :  - 기타 :
	(변경사항)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			
농기계, 차량 구입	기    종		색    상	
	차대번호		회 사 명	
	마    력			
그 밖의 참고사항				

## 주민지원사업장 지도·점검 내역

< 뒷 면 >

사업명	출장자	지도·점검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치일	조치내용	비 고 (특이사항 등)



#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을 통합하여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처리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종량제봉투의 종류·용도 및 재질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제외한 가정에서 이사, 집수리(신축, 철거 제외), 정원손질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6.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재사용, 재활용, 공공용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로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7. "대행업자"란 시장이 해야 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인 서류로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및 규정 준수,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 지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시 관내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청결유지 책무) 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청결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시미관이 저해 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명

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지시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 안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4. 건물의 철거 중 폐기물의 방치행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 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대 집행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 범위) ①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과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제57조는 법 제2조 및 법률 제2조에 따른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 구역은 시의 모든 지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제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중 제24조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정하여 별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 광역관리)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광역폐기물 처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 처리규약에는 자치단체 간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정부담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자에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2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9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무) 시장은 시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의 수집·운반) ① 제9조 단서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수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상업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주기와 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시간은 배출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한 후 투명비닐봉지나 용기에 담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전용마대에 각각 담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불연성 폐기물을 전용마대에 담아 배출하지 않고,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직접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위탁 처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와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을 정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와 같이 포상금 또는 은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배출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과태료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5일 이상 경과되어 신고한 경우
3. 전문 신고꾼 본인과 가족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월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4. 포상금 지급 해당 연도가 아닌 연도에 발생한 불법투기 행위의 경우

제12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4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사업장 업종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정한다.

제13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장 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용도 및 재질)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전용마대로 구분되며,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고, 전용마대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을 담

는데 사용한다. 또한, 공사장폐기물 중 타는 폐기물은 붉은색 마대봉투를, 안타는 폐기물은 녹색 마대봉투를 사용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가연성폐기물 종량제봉투색상은 붉은색(재사용은 흰색), 불연성폐기물 종량제봉투색상은 녹색으로 제작하여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공공용폐기물 종량제봉투색상은 청색으로 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불법제작, 불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앞면에 시 심볼마크와 재질,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와 종량제봉투 앞면과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에서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에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종량제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와 같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내용, 제작업체 고유번호, 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작업체는 종량제봉투 겉면에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기재된 제작일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시작 및 종료시간
2. 일일 생산량
3. 종량제봉투 불량 발생량
4. 점검자의 성명

제16조(재사용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재사용종량제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홍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문양 및 제작사양은 별표 9, 별표 10과 같이 한다.

④ 재사용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시장이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⑤ 시장은 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 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인쇄비 등 모든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가격 결정) ①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드는 경비
3. 종량제봉투 제작에 드는 경비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판매인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 이익을 줄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1과 같은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나 전용마대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청장·읍장·면장·동장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불법투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청소의 날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읍장·면장·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나 전용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만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에게 제작, 공급, 판매를 위탁·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공급하는 경우 구청장·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불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종량제봉투판매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판매인 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인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점포 위치도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폐기물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단지, 예산의 절감이나 구입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학교, 법인 및 단체 등에서 종량제봉투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나 자체적 분배나 저렴하게 구입할 목적으로 지정받으려는 종량제봉투판매인에 대한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20조(종량제봉투판매소 위치변경 및 양도·양수 등) ①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판매인 지정서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도 1부

②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인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1부

③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종량제봉투판매소를 30일 이

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휴업·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종량제봉투판매인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판매인은 시장 외의 자에게서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종량제봉투판매인에게서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종량제봉투 용량별 가격표 및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별표 2)의 부착
4. 모조종량제봉투나 불법유출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종량제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에 보고
6. 시 외의 지역으로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환불을 요청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여 준다.
7.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이행상태(휴업이나 폐업여부 포함)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정기 점검하여 지역주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도매점을 통하여 소매점 봉투 판매실적



을 반기별로 제출받아 판매량이 30퍼센트 이상 급감한 소매점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종량제봉투판매인이 제2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종량제봉투가 아닌 모조종량제봉투를 판매한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판매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인의 제21조에 따른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종량제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불편을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읍장·면장·동장이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나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별도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지정된 장소"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장소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시 외의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구입한 영수증을 붙여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면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한 사항을 종량제봉투판매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시장은 시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전용마대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경우의 반입(처리)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5.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는 시 수입증지(증지요금계기사용)나 시 홈페이지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활용하여 징수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2의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로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28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의 환불) ① 제11조제6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 후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환불 요청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반납한 후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환불

하여야 한다.

②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확인한 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제29조(지정된 장소 이용 수수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지정 장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6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이용객에게 직접 징수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5.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장거절(전염병 질환자,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만, 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
2. 통장·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환경관리원, 소년소녀가장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정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며, 가구당 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명 가구는 월 6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종량제일반용봉투를 분기별로 무료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신고포상금제)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며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

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 제4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3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건물이나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2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약해지나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증감을 지시할 수 있다.

제33조(청소대행사업비의 교부) ①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집·운반비 등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청소대행 사업비는 중량이나 가구당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량(톤) 산정기준: 최근 1년간 수집·운반경비 ÷ 매립장 반입량 (톤)

2. 가구당 산정기준: 최근 1년간 수집·운반경비 ÷ 총가구수 ÷ 12월

③ 제2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산출은 시장이 전년도 1년간 수집·운반한 쓰레기의 양과 그 수집·운반에 든 비용을 기준으로 매년 12월 30일까지 산정하며,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여 다음 연도에 1년간 적용한다.

제34조(대행업자 지도·감독) 시장은 제32조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의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나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실태의 걱정 여부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35조(대행업자의 의무) 대행업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되며 법이나 시행령, 조례 및 시장이 정한 청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제36조(평가원칙) ① 시장은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과정에 가능하면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37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걱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38조(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제39조의 평가 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39조(평가지침 작성·통보)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게 매년 초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0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외부전문용역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 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할 경우 시민, 관련 공무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대행업무 평가에 관한 자문, 심의 등을 위하여 청주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2. 청주시의회 의원 2명 이내
3.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 학위소지자나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4명 이내
4. 관련분야 공무원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허위사실 등으로 위촉된 경우

제4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관계 부서나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나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폐기물 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평가결과의 통보) ① 시장은 제37조의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 업체에 대하여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체에게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처리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제52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장은 이행 상황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거나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려면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점검목적에 방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하거나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영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55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별표 13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이의방법, 이의기간을 분명하게 밝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와 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피처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⑥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청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5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92호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청원군 폐기물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량제 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는 이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종량제봉투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과태료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제11조제6항, 제27조제1항  
관련)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가 방 류	가로 0.7m 이상	2,000	
	가로 0.7m 미만	1,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가 스 레 인 지	모든 규격	1,000	
간 판	가로 2m(1m 추가1,000원)	2,000	
거 울	1m x 1m 이상	2,000	
	1m x 1m 미만	1,000	
건 조 대	모든 규격	2,000	
고 무 통	지름 1 m 이상	3,000	
	지름 0.5m 이상	2,000	
	지름 0.5m 미만	1,000	
기름탱크(가정용)	2드럼 이상	6,000	
	2드럼 미만	4,000	
계 입 기	업소용	10,000	
개 집	개당	4,000	
공 기 청 정 기	높이 1m 이상	2,000	
	높이 1m 미만	1,000	
나 무 조 각	10kg당	2,000	
난 로 ( 가 정 용 )	모든 규격	2,000	
늘 이 방 매트	1.5m x 1.5m 기준	2,000	
냉장고(업소용)	초 대 형	50,000	
	대 형	30,000	
냉 장 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200ℓ 이상	4,000	
	200ℓ 미만	3,000	
다 리 미	모든규격	1,000	
롤 스 크 린	모든 규격	3,000	
마 네 킹	전신	4,000	
	반신	2,000	
문 갑	모든 규격	3,000	
문 짝 ( 가 정 용 )	모든규격	4,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물 탱 크	3톤 이상	6,000	
	3톤 미만	4,000	
밥 상	5인용 이상	3,000	
	5인용 미만	2,000	
방 석	개당	500	
변 기	양변기	5,000	
	좌변기	3,000	
병 풍	1폭당	500	
보일러(가스, 기 름 )	모든 규격	7,000	
보 행 기	모든 규격	2,000	
복 사 기	업 소 용	5,000	
	가 정 용	3,000	
비 디 오	모든 규격	2,000	
사과상자(나무)	모든 규격	1,000	
서 랫 장	5단 이상	4,000	
	5단 미만	2,000	
선 풍 기	스탠드형	3,000	
	벽거리형	2,000	
	일 반 형	2,000	
수 족 관(어 항 )	가로 1m (1m 추가 2,000원)	4,000	
	가로 1m 미만	3,000	
시 계	높이 1.5m 이상	3,000	
	높이 1.5m 미만	2,000	
	기 타	1,000	
식 기 건 조 기	모든 규격	3,000	
식 기 세 척 기	12인 이상	5,000	
	6인 이상	4,000	
	5인 이하	3,000	
식 탁	5인 이상	5,000	
	3인 이상	4,000	
	2인 이하	2,000	
	5인 이상(대리석)	10,000	
	4인 이하(대리석)	7,000	
신 발 장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싱 크 대 ( 1 쪽 )	폭 1m 이상	5,000	
	폭 1m 미만	3,000	
세 면 기	모든 규격	2,000	
세 탁 기	모든 규격	4,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쇼 파	3인용 이상 2인용 1인용	6,000 4,000 2,000	
스 피 커	높이 1 m 이상 높이 0.5m 이상 높이 0.5m 미만	3,000 2,000 1,000	
스 키	1 짝당	2,000	
오 락 기	모든 규격	5,000	
오 디 오	대 형 소 형	5,000 2,000	
오 르 간 ( 풍 금 )	모든 규격	5,000	
욕 조	모든 규격	5,000	
온 풍 기	264m <sup>2</sup> 형 이상 66m <sup>2</sup> 형 이상 66m <sup>2</sup> 형 미만	8,000 5,000 3,000	
옷 걸 이	스탠드형 행거형	1,000 3,000	
유 리 ( 장 )	3.3m <sup>2</sup> 이상 3.3m <sup>2</sup> 미만	2,000 1,000	
유 모 차	모든 규격	2,000	
이 불 ( 가 정 용 )	겨 울 용 여 름 용	2,000 1,000	
인 형 류	3kg까지(1kg 추가 500원)	1,000	
액 자	1m × 1m 이상 1m × 1m 미만	2,000 1,000	
에 어 콘	264m <sup>2</sup> 형 이상 66m <sup>2</sup> 형 이상 66m <sup>2</sup> 형 미만	8,000 5,000 3,000	
의 자	장 의 자 1 인 용	3,000 2,000	
자 전 거	성인용(두발) 아동용(두발) 아동용(세발)	3,000 3,000 2,000	
자 동 판 매 기	대형(높이 1m 이상) 소형(높이 1m 미만)	10,000 5,000	
장 남 감 류	3kg까지(1kg 추가 500원)	1,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장 식 장	모든 규격	4,000	
장 농	폭1.2m 이상 장1쪽	15,000	
	폭0.9m 이상 장1쪽	10,000	
	폭0.9m 미만 장1쪽	5,000	
장식용등(천장용)	모든 규격	3,000	
장 판	전기장판(1인용)	2,000	
	전기장판(2인용)	3,000	
	옥(황토)장판(1인용)	3,000	
	옥(황토)장판(2인용)	5,000	
전 자 레 인 지	모든 규격	3,000	
전기밥통(밥솥)	모든 규격	2,000	
전 축	폭1m 이상	4,000	
	폭0.5m~1m 미만	3,000	
	폭0.5m 미만	2,000	
정 수 기	사무실용(높이 0.7m 이상)	5,000	
	가정용 (높이 0.7m 미만)	3,000	
재 봉 틀	모든 규격	3,000	
책 장	1.2m×1.9m 이상	3,000	
	1.2m×1.9m 미만	2,000	
책 꽃 이	5단 이상	5,000	
	4단	4,000	
	3단	3,000	
	2단	2,000	
	1단	1,000	
청소기(가정용)	대(520w형 이상)	2,000	
	소(520w형 미만)	1,000	
책 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침 대	1인용 침대(메트리스, 받침대, 머리판 및 테두리)	10,000	
	- 1인용 메트리스	5,000	
	- 1인용 받침대	2,000	
	- 1인용 머리판 및 테두리	3,000	
	2인용 침대(메트리스, 받침대, 머리판 및 테두리)	15,000	
	- 2인용 메트리스	8,000	
	- 2인용 받침대	3,000	
	- 2인용 머리판 및 테두리	4,000	
유아용 침대	8,000		
돌침대	20,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카 페 트	2m <sup>2</sup> (1m <sup>2</sup> 추가 1,000원)	2,000	
컴 퓨 터	본 체	3,000	
	모 니 터	2,000	
	키 보 드	1,000	
컴 퓨 터 책 상	모든 규격	3,000	
캐 비 넷	모든 규격	4,000	
타 이 어	화물차(개당)	3,000	
	승용차(개당)	1,000	
텐 트	5인 이상	3,000	
	5인 미만	2,000	
텔 레 비 전	29인치 이상	5,000	
	29인치 미만	3,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파 티 션	1.5m x 1m 기준	2,000	
피 아 노	업라이트	10,000	
	그 랜 드	15,000	
팩 스 기 기	모든규격	2,000	
프 린 터 기	업 소 용	3,000	
	가 정 용	1,000	
F. R. P 탱크	1톤(5드럼) 이상	20,000	
	1톤(5드럼) 미만	15,000	
합 판	크기 1m 이상	2,000	
	크기 1m 미만	1,000	
화 일 캐 비 넷	4단 이상	3,000	
	4단 미만	2,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3,000	
항 아 리	높이0.5m 이상	4,000	
	높이0.5m 미만	2,000	
헬 스 기 구	10kg 이상	12,000	
	5kg 이상	7,000	
	5kg 미만	3,000	
쌀 통	0.6m×1.2m 이상	3,000	
	0.6m×1.2m 미만	2,000	

※ 상기품목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유사품목에 준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제11조제6항 관련)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행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나.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류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그밖의 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가정용 합성수지류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흘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장소에 배출
나.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 윤활유	○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마. 형광등	○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형광등 분류배출용기에 배출

### 3. 그 밖의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 종이류 (고지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다. 의류	○ 면섬유류 ○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라. 영농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마. 소형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청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소형가전제품 분류배출함에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바. 그 밖의 자원	○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배출용기에 배출
	○ 장판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류하여 배출



[별표 3]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15조제5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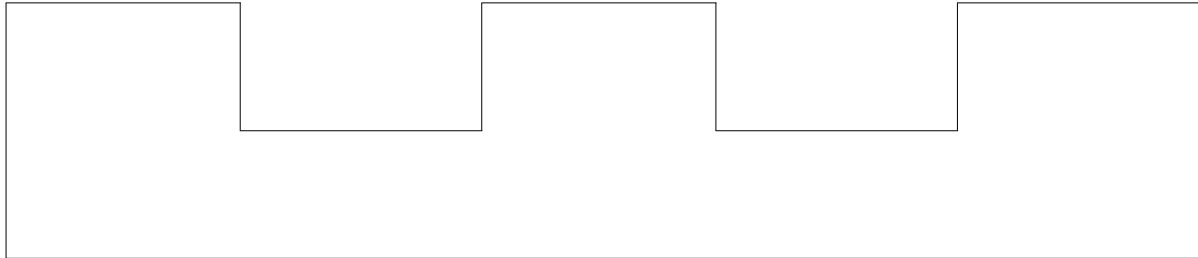
**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00ℓ)**  
**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

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2.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공사장 전용 마대)를 사용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진 후 부터 밤12시 전까지.

**청 주 시 장**

연락처 : 청주시 자원정책과 : ☎ 000-0000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청원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서원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15조제5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



**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00ℓ)**  
**- 공사장 전용마대 -**  
**Construction Waste Gunny Bag For Incin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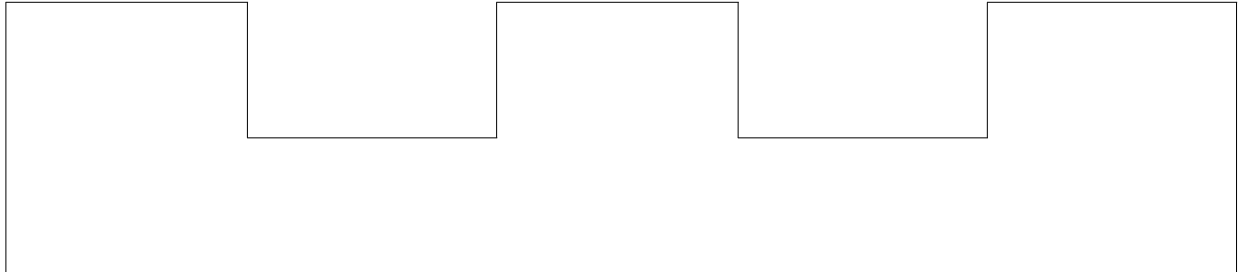
1. 이 봉투에는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쓰레기, 폐목재, 낙엽, 나뭇가지 및 뿌리 등 불에 타는 공사장 쓰레기를 담아야 합니다.
2.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 : 종이류, 병류, 캔류, 헌옷, 고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진 후 부터 밤12시 전까지.

**청 주 시 장**

연락처 : 청주시 자원정책과 : ☎ 000-0000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청원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서원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5]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15조제5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00ℓ)**  
- 공사장 전용마대 -  
**Construction Waste Gunny Bag For Incombusti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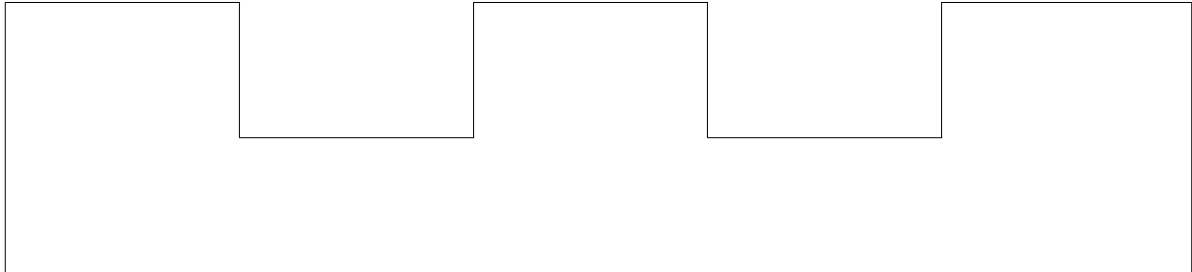
1. 이 봉투에는 폐토사, 폐기와, 폐벽돌 등 가정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쓰레기와 도자기 파편, 깨진 유리조각 등 불에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를 담아야 합니다.
2. 정원을 손질하고 난 나뭇가지, 낙엽, 폐목재 등 불에 타는 타는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공사장 전용마대)에 담아야 합니다.
3.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진 후 부터 밤12시 전까지.

**청 주 시 장**

연락처 : 청주시 자원정책과 : ☎ 000-0000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청원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서원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6]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15조제5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



**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00ℓ)**

- 공 공 용 -

**Public Waste Bag For Incineration**

1. 재활용품 및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공공용봉투는 불에 타는 쓰레기로서 가로 및 골목길, 하천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의 쓰레기로 낙엽, 잡초 등을 담을 수 있으며, 시장이 지정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공공용봉투를 가정용 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진 후 부터 밤12시 전까지.

**청 주 시 장**

연락처 : 청주시 자원정책과 : ☎ 000-0000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청원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서원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7]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15조제5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



**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00ℓ)**  
- 공공용 전용마대 -  
**Public Waste Gunny Bag For Incineration**

1. 재활용품 및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공공용봉투는 불에 타는 쓰레기로서 가로 및 골목길, 하천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의 쓰레기로 낙엽, 잡초, 폐목재 등을 담을 수 있으며, 시장이 지정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공공용봉투를 가정용 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진 후 부터 밤12시 전까지.

**청 주 시 장**

연락처 : 청주시 자원정책과 : ☎ 000-0000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청원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서원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8]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15조제5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



**안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00ℓ)**  
- 공공용 전용마대 -  
**Public Waste Gunny Bag For Incombustibles**

1. 재활용품 및 불에 타는 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공공용봉투는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로서 가로 및 골목길, 하천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의 쓰레기로 유리, 화분, 돌 등을 담을 수 있으며, 시장이 지정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공공용봉투를 가정용 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진 후 부터 밤12시 전까지.

**청 주 시 장**

연락처 : 청주시 자원정책과 : ☎ 000-0000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청원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청주시 서원구 환경위생과 : ☎ 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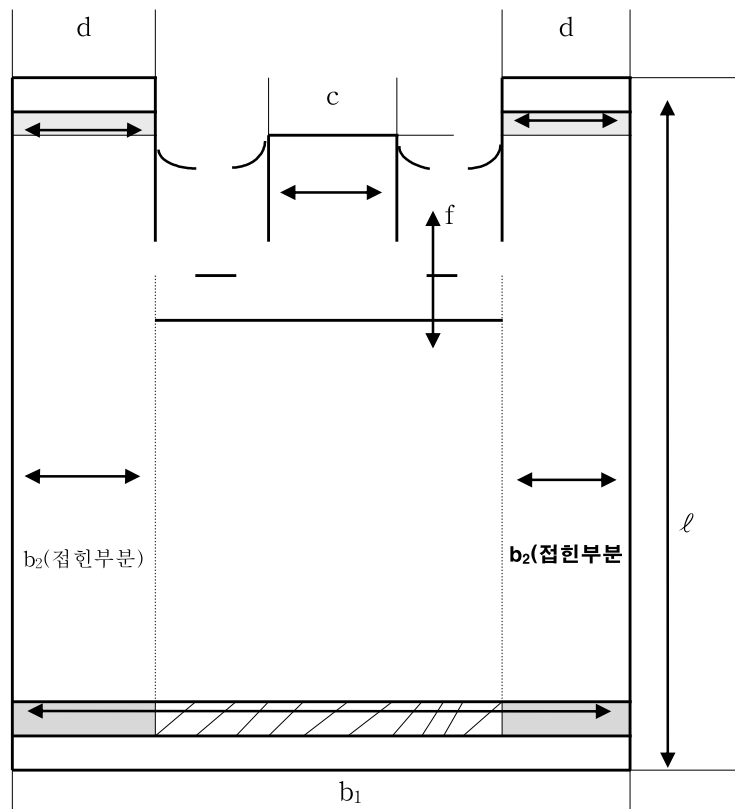
## 재사용봉투의 문양(제16조제3항 관련)



(비 고) 재사용봉투의 다른 한쪽 면은 공익광고 또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별표 10]

### 재사용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3항 관련)



(비 고)

- 1)  $l$ 은 봉투의 높이, 봉투의 너비는 접힌부분을 펼친 전체너비  $b_1+2b_2$ 로 하고,  $b_1$ 은 봉투의 마무리 너비,  $b_2$ 는 접힌 부분의 접혀 들어간 너비,  $c$ 는 묶는선 폭,  $d$ 는 손잡이끈 폭,  $f$ 는 묶는선 길이 임.
- 2) 그림중의 사선부분 및 검게 칠해진 부분은 열접합 부분을 나타내고 사선 부분은 평접합 부분을 검게 칠해진 부분은 거싯접합 부분을 나타냄.
- 3) 재사용봉투 문장은 별표 9와 같이 한다.



[별표 11]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관련)



-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1 만큼 띄워서 중앙 맞춤으로 한다.
- 2) 글씨체는 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12]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식**(제18조제1항, 제27조제2항 관련)

[ $\ell$  당 처리비용×봉투용량( $\ell$ )×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  
산정하되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

- 주) 1)  $\ell$  당 처리비용은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무상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봉투의 용량을 총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 총 처리비용(연간) ÷ 사용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 무상지급 봉투, 공공용 봉투)
- 2) 봉투용량이란 연간 사용된 규격봉투의 총 용량을 말함
- 3) 주민부담율은 총 봉투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 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합산한 것을 상기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규격봉투에 담아버리는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주민부담율의 현실화를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
- 4) 종량봉투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 5) 종량제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퍼센트(%)를 기준으로 적용 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판매수수료 [( $\ell$  당 처리비용×봉투용량( $\ell$ )×주민부담율+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 요율] ÷ (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함
- 6) 최종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
- 7)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 청소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 처리비용 중 수거원가는 노무비, 경비, 적환장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처리원가는 수송비, 반입료,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 [직영처리비, 위탁처리비(대행업체 처리비) 등]  
- 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제55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수집·운반이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 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부식 및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생활폐기물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2. 아파트 및 연립주택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보관 용기를 사용하여 9분리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주택 건설업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신축 시 100세대당 9분리 이상 보관시설 1조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은 100세대로 보아 9분리 이상 1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종이류, 의류 (2분류) : 내용물이 비에 젖지 않는 시설로 설치
  - 나. 병류, PET병, 캔류, 플라스틱류 (4분류) : 내용물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
  - 다. 봉지류 : 내용물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고, 바람에 날리지 않는 시설로 설치
  - 라. 불연생활쓰레기, 가연생활쓰레기 등 2분류 처리시설 설치

[별표 1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사업장 업종**(제12조 관련)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 업무를 행하는 혈액원
5.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7.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인요양 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8.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소
9.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소
10.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용기계 정비사업장
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세탁업

[별표 15]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제7항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별	포상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비고
○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2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5	
○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 불법 규격봉투 또는 불법 유통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0	

[별표 16]

**지정된 장소의 이용 수수료**(제29조제1항 관련)

(단위:원)

대인	소인	비 고
800	500	- 대인 : 13세 이상 64세 이하 - 소인 : 6세 이상 13세 미만

[별표 17]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비**(제27조제4호 관련)

구 분	처리비(수수료)	비 고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40원/kg/ℓ	시장이 설치한 시설에서 처리할 경우에만 해당

[별지 제1호서식]

### 종량제봉투판매인 지정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판매소위치			
주업종			
<p>「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인을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 주 시 장 (인)</p>			



### 종량제봉투판매소(휴업·폐업)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휴대폰	
영업소재지				
휴·폐업내용				
휴·폐업사유		재개업일자		
<p>「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휴업·폐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left: 50px;">청주시장 귀하</p>				
구비서류 1.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서식]

###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	휴대폰	
영업소재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p>「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청주시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2. 점포 위치도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의 경우)			
4. 지정서 원본 (변경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 종량제봉투판매인 양도·양수 신고서

			처 리 기 간	5일
승 계 를 하 는 사 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승 계 를 받 는 사 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관 매 지 정 소	명 칭 ( 상 호 )	변 경 전		변 경 후
	영 업 의 종 류			
	소 재 지			
등 록 번 호			승 계 사 유	<input type="checkbox"/> 양도 · 양수 <input type="checkbox"/> 상 속 <input type="checkbox"/> 기 타
<p>「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인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p>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p> <p>청주시장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정서 원본</li> <li>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li> <li>3. 양도의 경우(양도·양수증명서 1부, 양도자인감증명 1부.)</li> <li>4.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1부.)</li> </ol>				

[별지 제5호서식]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					발급번호				
배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배출예정일								
	배출장소	(공사명 : )							
	폐기물종류	계	폐토사	페콘크리트	폐벽돌	페타일	폐석재	폐블럭	기타 ( )
	배출량(톤)								
운반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운반일		운반장소			운반차량			
	운반방법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배출자) (인)									
00 구청장 귀하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확인증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확인증					발급번호		00-0000		
배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배출예정일								
	배출장소	(공사명 : )							
	폐기물종류	계	폐토사	페콘크리트	폐벽돌	페타일	폐석재	폐블럭	기타 ( )
	배출량(톤)								
운반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운반일		운반장소			운반차량			
	운반방법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소속 성명 (인)									

## 과태료 처분 통지

제 호

받 음 :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호	과태료 처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발부일	이의제기	
				당초	독촉		성명	주소		이의제기일	법원 통보 일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공공용봉투의 수불대장

공공용봉투의 수불대장											
신청내역				수불내용				사용내역			
신청일	신청자	신청매수	신청용도	인수일	인수인(인)	반출일	반출자(인)	사용일	사용매수	사용용도	사용자(인)



## 영 수 증

번호 :

쓰레기처리수수료

금 원

대 인(500원) 명  
소 인(300원) 명

청 주 시 장

번호 :

쓰레기처리수수료

금 원

대 인(500원) 명  
소 인(300원) 명

청 주 시 장

번호 :

쓰레기처리수수료

금 원

대 인(500원) 명  
소 인(300원) 명

「청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청 주 시 장  
(영수자 : 인)

비고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인 : 13세 이상 64세 이하
2. 소인 : 6세 이상 13세 미만



#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4조의8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 및 장비, 인력 확보계획, 보관 용기의 설치
2.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폐기물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1회용품의 사용자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재활용 촉진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원재활용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추진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 안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 등 재활용여건

제6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로 구성된 청주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등의 지급)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과태료 징수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0조 별표 8 제2호다목의 4)란의 라)는 제외한다.

제9조(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갑)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 수납부 기록·관리) 시장은 과태료 부과장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1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포상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 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 mm) 또는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매·소매 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6조(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7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 일시, 위반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서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9조(시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 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뢰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같은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에 본인의 위반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감경대상자용)를 위반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에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할 담당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해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본인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피신고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은 현금 또는 시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실명계좌에 입금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감경대상자용)가 발급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입증자료

를 검토하여 신고사항이 사실일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가 발급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1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20만원과 연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 사업장이 점검일에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8. 포상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신고한 경우
  9. 신고자의 포상금 예산이 전부 집행되어 없어진 경우
-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2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청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23호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청원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13조 관련)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 및 은누리상 품권금 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1항)	100	2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	100	200	300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4)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나. 목욕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1)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2)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15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과 대 료				포상금 및 청주시은누리 상품권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장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2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4.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	100	200	300	

과 대 료				포상금 및 은누리상 품권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 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	100	200	300	
6. 빈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100	200	300	
7.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100	200	300	
나. 지정부산물매출사업자	100	200	300	
8.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9.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30	50	100	
10.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주)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갑)

##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



[별지 제1호서식]  
(을)

과 태 료 처 분 통 지(감경대상자용)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감경대상자용)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  
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성 명:

① 고 지 금 액

② 취 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 소(변경)사유: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 번호	
	⑤ 고지 받은 일 자		⑦ 과태료 금액	
	⑧ 과태료 처분 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  
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청 주 시 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범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범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 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일련 번호	②고지 서번호	③과태료 처분통지 일	④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금액 (천원)	납부의무자		⑩과태 료납부 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의 제기일	⑫법원 통보일

※ 서식은 A4형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7호서식]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연락처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시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그 밖의 사항)

⑥ 그 밖의 참고사항 :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인)

청주 시장 귀하

절 취 선

###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위와 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연월일	신 고 내 용			사실확인		과태료고지		신고포상금 지급	
		위반내역	위 반 업소명	대표자 성 명	확인통보일	회보일	감경납부	일 반 납 부	포상금액	포상자

-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5)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별지 제9호서식]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신고번호 : 호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시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서가 년 월 일 우리 시에 신고되었기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귀하

절 취 선

## 사실확인회보서

신고번호 호

위 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그 밖의 사항 : ( )

년 월 일

확인자 : 시 구 읍·면·동 번지

대표자 성명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연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시    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그 밖의 사항)

⑥ 그 밖의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

---

---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

---

---

(담당공무원의 의견)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청주시장 귀하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안 제4조)
-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안 제8조)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 등(안 제11조)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안 제1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이나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

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류·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장치"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전산기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억제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 시민, 단체 등에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지원금, 전용수거용기, 종량제봉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준비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준비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위탁비용 명시 여부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중량제"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자별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하거나,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납부필증 등의 색상 및 규격 등은 시장이 정하며, 공급과 판매는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일괄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⑥ 무게 측정·기록 후 수수료를 일괄 부과·징수한 경우 시장은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징수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만, 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

2. 소년·소녀가장 세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방법과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지역을 정한다. 다만, 읍·면지역 및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운 지역은 분류배출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시간·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나 배출자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거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수거를 거

부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거나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행정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에게 전용수거장치를 대신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나 유지관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 징수 및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전용수거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설치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전용수거장치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류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 대행업체수는 인구 10만명당 1개 업체로 제한하되, 발생량 및 적정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汚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선정 및 대행기간, 지도감독, 대행실적 평가 등은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을 하려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이 현저하게 적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1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 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 ① 시장은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 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

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서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20조(준용) 이 조례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32호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청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1조제2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쓰레기</li> <li>-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li> <li>-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li> <li>-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li> </ul>

※ 음식물류 폐기물로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

- 과일류 : 밤,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살구 등 핵과류의 씨
- 육 류 : 소, 돼지 등 육류의 뼈다귀 및 털
- 채소류 : 마늘껍질, 양파껍질, 마늘대 등
- 어패류 : 조개, 굴, 소라 등 패류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전화 : )				
사업장규모	⑥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 급식 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kg/일		kg/일	kg/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일	원/kg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청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음식점 영업허가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2. 위탁계약서 사본 3. 수탁업체의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작성요령>

-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붙여서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활용			
		자가처리방법	자가처리량	처리량누계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자	누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할 때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 급식 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실·객실 합계면적 :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 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 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div>					
청주시장 귀하					





#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재활용센터의 명칭과 위치(안 제2조)
- 재활용센터의 업무(안 제4조)
-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주시에 설치하는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재활용센터의 명칭은 청주시재활용(3R)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33(모충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폐가구, 폐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2. "중고제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활용 가능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4. "나눔장터"란 재활용 가능한 의류, 도서, 잡화 등을 수집 또는 기증받아 꼭 필요한 시민에게 교환, 무상제공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업무)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2.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리, 교환 및 판매
3. 나눔장터 개설 및 운영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견학장소 제공
5.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5조(위탁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위탁협약 체결)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이나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20일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권리설정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재활용센터 활성화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언론매체와 청주시 홈페이지, 시민신문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조사 시킬 수,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80호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지하수 조례안

의안 번호	29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하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지하수조례」를 「청주시 지하수 조례」로 제정함.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기준 완화(안 제3조)
-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11조)
-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관리·운용(안 제12조~제16조)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납입(안 제17조~2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하수법」 제30조의3,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의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지하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5조의 단서규정에 따



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하거나 신고할 때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해당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청주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이나 자료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운용)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제14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제16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해당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전·후 3개월의 평균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수용가가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⑥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

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말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23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할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가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5

호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독촉기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26조(과태료 수납부 기록·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86호 청주시 지하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통합 전 청원군 지역은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위 반 행 위 조 사 서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

나. 대 표 자 :

다. 법 인 번 호 :

라. 주민등록번호 :

마. 소 재 지 :

바. 연 락 처 : (전화) (팩스)

2. 위반내용

3. 위반사유(※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

20 년 월 일

진술인 : (인)

조사자 : (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시 행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에 따라 금○○○○○○○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2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20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인별통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지하수법 제 조규정	
납 부	성명 :
의무자	주소 :
과태료금액 :	
위의 과태료는 지하수법 제 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청 주 시 장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지하수법 제 조규정	
납 부	성명 :
의무자	주소 :
과태료금액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청 주 시 장	

(시통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지하수법 제 조규정	
납 부	성명 :
의무자	주소 :
과태료금액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귀하	

(개인별통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지하수법 제 조규정		
납 부	성명 :	
의무자	주소 :	
과태료금액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청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b>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b>			
납 부 의무자	① 성명 또는 상 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금액		⑦ 당초납부기일	
<p style="text-align: center;">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청 주 시 장 (인)                 </p>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① 성명 또는 상 호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부 과 기 관			
	⑤ 고 지 받 은 일 자			
	⑥ 과 태 료 처 분 사 유			
⑦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p>「지하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span style="margin-right: 100px;">년</span> <span style="margin-right: 100px;">월</span> <span>일</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span style="margin-right: 100px;">신 청 인</span> <span>(인)</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font-weight: bold;">청 주 시 장 귀 하</p>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

시 행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청 주 시 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와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 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호	납 부 의 무 자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부과 금액 (천원)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상호 또는 명 칭	성 명	주 소			당 초	독 촉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안 번호	29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하수시설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제정함.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오수·폐수의 유입처리에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부담금의 운용·관리 및 징수에 관한 사항(안 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 권한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 이라 한다)의 처리구역 내에서 오수·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차집관로"란 배수설비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차집관로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설치비 및 시설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수·폐수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생활오수"란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처리시설 운영관리) ① 시장은 처리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 제2장 오수·폐수의 유입처리

제5조(유입처리 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수·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유입처리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순수하게 생활오수만 유입 할 경우는 배수설비 설치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오수·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설치(변경) 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③ 배수설비를 오수·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 ④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고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⑤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다만, 배수관 관경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시장은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확인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개시 등 신고) 사업자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수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중단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등)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 기준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경우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량기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 배출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순수하게 생활오수만 배출하는 경우는 설치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사업소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 농도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계량기의 형식은 사업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기준에 의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량기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계량기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⑥ 사업소장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사업소장은 사업자가 제4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2조의 배출 기준에 따른다.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량(SS)

4. 총 질소(T-N)

5. 총 인(T-P)

6. 총 대장균군

7.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② 사업소장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오염부하 할당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배출기준) ①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13조(유입처리 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였거나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자

제14조(사용의 제한) 사업소장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

측되는 경우에는 차집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안 후 3시간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①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발생량과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부담금의 운용·관리 및 징수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준용)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 및 운용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세출은 제17조에 따른다.

제17조(세입금의 사용) ① 시설설치비는 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한다.

② 시설투자적립금은 처리시설 증설, 기계·장비의 교체 등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③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사용한다.

④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부담금 납부) 처리시설에 오수·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부담금의 부과) ① 시설설치비는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동처리 구역 내 편입 등으로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부과하여야 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투자적립금은 실제 오수·폐수배출량의 비율에 따라 산출 부과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유지관리비는 오수·폐수배출량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순수한 생활오수에 대해서는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④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하며 시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⑤ 시장은 시설투자 적립금 및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 부과하며, 해당 월의 부담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부과하고 납부일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며, 시설 설치비, 기본부과금의 납부일은 고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⑥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부담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⑦ 시장은 처리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를 6개월간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을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 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

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유지관리비의 추징)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의 적정처리, 시설물 또는 폐수관거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회복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에 100분의 2의 증가산금을 추가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독촉 등)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발부 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5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6조(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부담금 납부기간 중 납부대상자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가동 정지 시는 제외한다.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양도, 상속, 합병, 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사업자 대표회

제28조(구성 및 운영) ①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처리 시설별로 6명 이상 20명 이하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대표회를 둔다.

② 사업자 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사업자 대표회는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29조(기능)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결정사항 협의
2. 사업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및 건의사항 검토 등

제30조(의결) 사업자 대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보칙

제3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오수·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2.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신청의 수리
3. 제7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 신고수리
4. 제9조에 따른 유량조정조 설치, 지도
5.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
6. 제22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추징
7. 제23조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 부과
8. 제24조에 따른 독촉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제19조제1항 관련)

### 1. 산출공식

$$AS = (P \times R) \times \frac{BLi}{BLs}$$

- AS :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
- P :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 R : 물가상승율
-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 2. 적용방법

가.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 처리용량 × (BOD + COD + SS)

나. 물가상승율 (R) = 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연월 : 배수설비 사용개시연월
- 준공연월 : 처리시설 준공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다.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BLi) = 유량 × (BOD + COD + SS)

-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구 분	대 상	산 정 방 법
오염도	폐수 등	제5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등의 배출농도
	사업장의 오수	(BOD + COD + SS) = 300mg/ℓ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BOD + COD + SS) = 600mg/ℓ
유 량	오수·폐수 등	제5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수·폐수 등의 유량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입주예상 가구수 × 4명 × 0.2톤/일

[별표 2]

## 유지관리비 및 시설투자적립금 산출기준(제19조제2항 관련)

### 1. 업소별 월간 비용부담금(BS) 산출방법

$$\circ BS = BS_1 + BS_2$$

(1)  $BS_1$  : 처리대상 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BS_1 = M \times \left\{ \underbrace{0. \sum_{i=1}^n BLi}_{\text{}} + \underbrace{0.7 \sum_{i=1}^n F(Li)}_{\text{}} \right\}$$

가)  $M$  : 월간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시설투자적립금

- 1)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 2) 시설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E = Ei \times Fi$$

- $E$  : 월간 시설투자적립금
- $Ei$  : 시설투자적립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 $Fi$  :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20/10,000)

나)  $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폐수등 배출사업자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 부하량이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 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 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오수만 배출하는 업소는 적용 제외

1) 일평균배출오염부하량(BLi)

$$BLi = (BOD + COD + SS + T-N + T-P) \times \text{유량} / 1,000$$

2) 오염도 및 유량산정방법

구분	대상	산정방법
오염도	폐수	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등의 배출농도
	사업장의 오수	(BOD+COD+SS+T-N+T-P) = 449mg/ℓ
유량	사업장의 오수·폐수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수·폐수 등의 유량

다) 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식으로 산출한다.

$$1) F(Li) = a \cdot Qi \times \left\{ \frac{b \cdot BODi + d \cdot SSi + e \cdot T-Ni + f \cdot T-Pi}{2} \right\}$$

- Q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오수·폐수 등의 배출량
- BODi, CODi, SSi, T-Ni, T-Pi : 비용부담 대상자의 BOD, COD, SS, T-N, T-P의 농도.

다만, COD농도가 BOD농도보다 높을 경우 다음식을 적용한다.

$$f(Li) = a \cdot Qi \times \{c \cdot CODi + d \cdot SSi + e \cdot T-Ni + f \cdot T-Pi\}$$

-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2) 누진계수

(가) 유량 계수(a)

유량(m³/일)	a	비고
Qi ≤ 500	1.0	
500 < Qi ≤ 3,000	1.1	
3,000 < Qi ≤ 5,000	1.2	
5,000 < Qi ≤ 10,000	1.3	
10,000 < Qi	1.4	



(나) BOD 계수(b)

BOD 값(mg/ℓ)	b	비 고
BOD ≤ 100	0.8	
100 < BOD ≤ 150	1.0	
150 < BOD ≤ 200	1.2	
200 < BOD ≤ 300	1.4	
300 < BOD ≤ 400	1.6	
400 < BOD ≤ 500	1.8	
500 < BOD	2.0	

(다) COD 계수(c)

COD 값(mg/ℓ)	c	비 고
COD ≤ 100	0.8	
100 < COD ≤ 150	1.0	
150 < COD ≤ 200	1.3	
200 < COD ≤ 300	1.6	
300 < COD ≤ 400	2.0	
400 < COD ≤ 500	2.5	
500 < COD	3.0	

(라) SS 계수(d)

SS 값(mg/ℓ)	d	비 고
SS ≤ 100	0.8	
100 < SS ≤ 150	1.0	
150 < SS ≤ 200	1.2	
200 < SS ≤ 300	1.4	
300 < SS ≤ 400	1.6	
400 < SS ≤ 500	1.8	
500 < SS	2.0	

(마) T-N(e), T-P(f) 계수

T-N값(mg/ℓ)	T-P값(mg/ℓ)	e, f	비 고
T-N < 30	T-P < 2	0.8	
30 < T-N ≤ 60	2 < T-P ≤ 5	1.0	
60 < T-N ≤ 80	5 < T-P ≤ 8	1.2	
80 < T-N ≤ 100	8 < T-P ≤ 10	1.4	
100 < T-N ≤ 200	10 < T-P ≤ 20	1.7	
200 < T-N	20 < T-P	2.0	

(2) BS<sub>2</sub>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으로서 세부산출기준은 비용부담 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 ○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며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해서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사용량 × 0.8(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나. 오수·폐수등의 오염농도 산정

### ○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 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소장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 오수의 경우

####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45 mg/ℓ
• COD	129 mg/ℓ
• SS	120 mg/ℓ
• T-N	50 mg/ℓ
• T-P	5 mg/ℓ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b>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b>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p>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m<sup>3</sup>/일</p> <p>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생물화학적 mg/l, 화학적 mg/l, 부유물질량 mg/l          산소요구량 산소요구량</p> <p>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m<sup>3</sup>/일</p>		
<p>「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에 따라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폐수 유입을 승인(변경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청 주 시 장</b></p>			



[별지 제4호서식]

신 고 번 호 제 호	<b>배수설비설치 (변경) 신고증</b>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p>「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신고를 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청 주 시 장</b></p>			

[별지 제5호서식]

<b>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b>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사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청주시 구 읍·면·동 번지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sup>3</sup> /일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사항	2차 검사	비 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청 주 시 장 귀 하</b>							
*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없음		



[별지 제6호서식]

<b>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b>					처리기간
					5일
신 고 인	상 호		전 화 번 호		
	성 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 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장 주 소					
업 종		주 생 산 품			
사용개시 예정일					
배 수 설 비 설 치 신 고 내 용 중 변 경 사 항					
<p>「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 개시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서 명)</p> <p style="text-align: center;"><b>청 주 시 장 귀하</b></p>					
<p>※ 비고 : 배수설비 설치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계 변경 시공한 경우 변경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 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제출</p>					

[별지 제7호서식]

<b>배수설비 (중지, 일시중지) 신고서</b>				
신 고 인	상 호		전 화 번 호	
	성 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업 종		주 생산 품		
사 유				
내 용				
일 시	~			
<p>「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중지, 일시중지)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청 주 시 장</b> 귀하</p>				
※ 비고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29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징수조례」를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제정함.
-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안 제3조)
-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안 제4조)
-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제3조(사용료 징수기준) 처리시설 사용료는 1,000리터당, 1,000원(1,000리터 미만인 경우는 1,000리터로 간주)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물량(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을 반입될 때마다 확인하여 기록·정리하여야 하며, 제2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그 날 징수한 분뇨수거료 중 리터당 1원을 10일 이내 처리시설 사용료로 청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쌍방계약) 처리시설이 없는 다른 시·군이 처리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쌍방계약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관계 공무원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부정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포탈된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8조(처리시설 사용 및 반입할당량 등에 관한 조정) 시장은 처리시설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될 경우 처리시설 사용 및 반입할당량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927호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안

의안 번호	29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하수시설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하수도사용조례」와 「청원군 하수도사용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제정함.
-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안 제3조)
- 사용개시 등의 신고 (안 제4조)
- 하수관거 점검과 준설 등 (안 제6조)
- 중수도의 설치신고와 확인 (안 제8조)
-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안 제13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안 제15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안 제16조)
- 하수배출량의 산정 (안 제18조)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안 제22조)
-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안 제23조)
-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안 제2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15조, 제24조, 제27조, 제65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자, 하수를 유입하는 시설과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관거, 그 밖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와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과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수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汚水)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차집관거”란 생활하수나 비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와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50미터 이내로 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하수 유입 입지 여건, 장래 하수관거 설치 계획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 사용량과 하수 사용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算定)기준의 적용기준(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에 따라 급수사용 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을 받아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와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시사용 계획서
2. 사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사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하수관망도, 배치도, 구조물도

제6조(하수관거 점검과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와 준설(浚渫)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와 준설(浚渫)을 할

수 있다.

제7조(점용시설이나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중수도의 설치신고와 확인)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 중수도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나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청주시 중수도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중수도의 용도 제한) 중수도의 용도 제한은 「청주시 중수도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중수도의 수질기준 및 검사) 중수도의 수질기준 및 검사는 「청주시 중수도 운영 조례」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수선·철거·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 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와 접속부분의 설치시공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 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기준과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 배수설비를 준공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 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막힘, 파손,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준설, 개·보수)하여야 할 것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것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과 별표 2의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

공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 사용료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 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 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⑥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하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신용카드 등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 승인 한 날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算定)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나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신고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하수의 양이나 질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는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없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가장 많이 사용한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기기에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과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때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

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점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算定)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점용허가를 취소한다.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算定)기준과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汚水)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汚水)발생량 산정(算定)기준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汚水)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算定)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오수(汚水)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汚水)발생량

나.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汚水)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汚水)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算定)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算定)할 수 있다.
4. 오수(汚水)발생량(1m<sup>3</sup>/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算定) 방식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汚水)발생량(m<sup>3</sup>/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m<sup>3</sup>/일)를 곱하여 산정(算定)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과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허가 시 부과를 원칙으로 한다.
  -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이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나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 ② 제23조에 따라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지역이나 원인자가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지역 건축물의 신축·증축과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汚水)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 되는 오수(汚水)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제23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算定)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算定)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sup>3</sup>/일)를 곱하여 산정(算定)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算定)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청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算定)한다)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한다.

나. 가목에 따라 하수발생량을 산정(算定)할 경우에 타행위 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22조제1항제4호 별표 6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 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이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汚水)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과 처리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노의 수집·운반을 분노 수집·운반 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노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노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분노 수집·운반업자가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나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 정보화 조례」에 따라 개발된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수증 발급 및 수집·운반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노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상수원보호구역, 1일 300톤규모 이하의 마을단위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자
6. 한부모·조손가족
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중수도나 재이용수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 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



용료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한 가산금에서 다음 셈식에 따라 산출한 가산금의 차액을 다음 달 하수도사용 요금에 감액하여 부과한다.

가산금 = 체납액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부과액 조정신청) 하수도사용료·하수도점용료·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소멸시효) 제15조의 하수도사용료와 제19조의 하수도점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과 가산금,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제31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하수도사용료·하수도점용료·하수도원인자부담·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5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6조에 따른 하수관거의 점검과 준설(浚渫)
5. 제7조에 따른 점용시설이나 공작물의 준공검사
6.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와 확인
7.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8.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9.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10.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1.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2. 제2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4. 제25조에 따른 감면
15. 제26조에 따른 감면(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제외)
16.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제외)
17. 제28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급
18.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다만, 6층 이하2,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설치(변경)신고·준공검사, 오염도 결과

에 따른 과태료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내부청소 미실시, 지도점검에 따른  
과태료

다. 기술인 교육에 따른 과태료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6호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청  
원군 하수도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제15조 관련)

업 종	단 계	사용구분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 (원)		비 고
			동	읍·면	
가정용	1단계	0~20	290	165	
	2단계	21~30	480	230	
	3단계	31이상	780	325	
일반용	1단계	0~50	530	220	
	2단계	51~100	960	330	
	3단계	101이상~300이하	1,120	440	
	4단계	301이상	1,250	-	
대중탕용		0~200	-	230	
		0~500	450	320	
		501이상	-	440	
		500초과~1000이하	750		
		1000초과~1500이하	900	-	
		1,500초과	1,110	-	
전용공업용	1단계	0~200		127	
	2단계	201이상		138	
산업용		m <sup>3</sup> 당	450	-	
산업단지처리구역		m <sup>3</sup> 당	170		

※ 다만, 읍·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는 사용량 구분단계를 일반용 1단계까지만 적용한다.

[별표 2]

**공공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제15조 관련)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li> <li>·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u>10m<sup>2</sup></u> 미만의 소규모 가게</li> <li>·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li> </ul>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li> </ul>
대중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대중목욕장업</li> </ul>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li> <li>· 두채 재배업소</li> </ul>
산업단지 처리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산업단지 내 자체 폐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구역</li> </ul>
전용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것</li> </ul>

- (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 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3.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별표 1의 하수도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의 효율을 적용함.

[별표 3]

###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sup>3</sup>/시간)] ×  $\frac{1}{1000}$  (kg/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당가(원/kg)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21조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5]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제22조, 제24조 관련)

(오수량 : m<sup>3</sup>/일)

구 분	최 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 · 용도변경				2차 증축 · 용도변경			
		증가 량 (B)	총오 수량 (C) (A+B)	부과 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 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E)>10 전체부과
						12	15	12	(B)+(E)<10 미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11	22	11	
조례 시행일 이후 신축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22조 및 제24조)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

$$\triangleright a = \left(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청주시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청주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5조 관련)

□ 수거식화장실의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구 분	수 수 료 ( 원 )		
	수집·운반비	처리비	계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	13,170	1,000	14,170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220	100	1,320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포함)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8]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6조 관련)

구 분  업 종	감 면 비 율(%)			
	동지역		읍·면지역	
	중수도	재이용수	중수도	재이용수
가 정 용	30	30	20	20
일 반 용	30	30	20	20
대중탕용	30	30	20	20
산 업 용	30	30	20	20
산업단지처리구역	30	30		
전용공업용			20	20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지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 현황	설 치 목 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 치 위 치		시 구 로 번지( 동)							
	관 중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 출 수 량		m <sup>3</sup> /일	※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부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 완 사 항		2차 검사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 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 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 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7. 그 밖의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 명(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 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하수시설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원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 제7조)
- 위탁사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74조제3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2개 시·군 규제심사 필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관리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기관에 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대상)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은 시장이 설치 또는 위탁관리하기로 정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 부담 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상황, 사업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환경부에서 제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을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술·가격 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하여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발주부서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라 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자격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회의

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사안의 심사가 끝나면 위촉된 위원은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9조(위탁기관)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지키며 수탁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 협약 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비용의 지급, 책임소재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조직 및 인원) ① 수탁기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 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구성 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 인원은 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여건 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2. 수 처리 시설 및 슬러지 처리 시설의 운영 관리
3.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5.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6.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7.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 개발
9. 그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위탁운영 비용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서 산정한 처리단가 또는 다음 해 정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 산출내역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위탁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휘·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

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복지 향상 등) ① 수탁기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경영수익차원에서 경제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

결된 공공하수처리설에 대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안 제5조)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주변마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8조, 제22조~제25조, 제2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3월 26일 ~ 2014년 4월 15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청주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 산정한 폐기물 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군간 협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 시설로 직접 영향권 내의 집단 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중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 시설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계획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 설치기관에 건의
5.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

③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제6조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건의·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사업구분 제4호



에 따른 그 밖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발전기금
2. 주민건강 진단비
3.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4. 그 밖에 시장과 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비지원(소각시설로 한정한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 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사업구분 제3호 육영 사업
4.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
5. 농기계구입 및 농사용자재 구입
6. 그 밖에 시장과 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재산적 보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하여 국내·국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적극 지원한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존속기간)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근속연수 1년 미만 환경관리원의 월 수당 지급금액 수준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협약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체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377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지원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0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안 제5조)
- 폐기물 반입 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역주민의 감시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3월 26일 ~ 2014년 4월 15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청주권 광역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장을 말한다.
2. "매립장"이란 청주권 광역매립장, 용정매립장, 문암매립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로 사료화, 퇴비화 시키는 시설
  - 나.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이하 "음폐수"라 한다)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설
4. "재활용품 선별장"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거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란 청주시푸르미스포츠허터 내의 실내수영장, 사우나시설, 헬스 및 에어로빅장, 찜질방,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과 주변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침출수"란 쓰레기 따위의 폐기물이 썩어 고였다가 흐르는 물을 말한다.

7. "세륜"이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차량의 바퀴를 씻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조직과 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술개발에 맞춰 시설기능 보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 가. 반입 폐기물의 계량, 성질과 상태 분석
- 나. 소각로의 운전과 유지보수
- 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의 처리
- 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 바.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과 반출 관리
- 사.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
- 아. 그 밖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 2. 재활용품 선별장

- 가. 선별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
- 나.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 및 잔재물 처리
- 다. 선별한 재활용 자원의 보관·계량·반출 및 판매
- 라.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수·폐수의 처리
- 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각종 통계 보고
- 바. 그 밖에 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가.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의 처리
- 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
-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부산물의 반입·반출 관리
- 마.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

바. 생산되는 제품(퇴비, 사료, 에너지)의 적정 관리

사.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계량과 성질 및 상태 분석, 통계 보고

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 홍보

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차.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2장 폐기물의 반입

제6조(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7조(폐기물 반입시간) ①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을 긴급히 처리해야할 경우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 반입대상)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수거·운반된 폐기물
2.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반입 가능 폐기물
3. 시장과 위탁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및



## 음식물류 폐기물

②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경우 시장은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반입차량 등록) ①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가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입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공차무계를 계상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카드를 반입일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1. 자동차등록원부
2. 폐기물수집운반 차량증 사본
3. 공중차량 계량 시의 차량 전·후·좌·우(4면)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및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 변경
2. 폐기물 반입 업체의 허가사항 변경
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③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카드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발급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계량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증과 계량카드의 관리) 폐기물 반입자는 폐기물반입차량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시장은 폐기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입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반입량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측정된 폐기물 운반차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되, 공차무게는 제외한다. 다만, 계량대의 작동곤란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 체결에 따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 반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 반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화

일로 작성·기록 및 유지·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반입 수수료 부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반입수수료는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적용한다.

③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최대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과다 집합된 음식물류 폐기물: 무상 처리
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수탁업자의 자체 과실로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소각시설 톤당 처리단가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처리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수탁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협약 및 계약 체결에 따른 반입수수료

④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폐기물 처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량한 양
2.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설치한 유량계의 음폐수 측정량
3.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처리단가

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반입 수수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폐기물
2. 시장이 주관하는 공공행사로 발생한 폐기물
3. 무단 투기된 가연성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② 수거 부서에서는 제1항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반입 2일 전에 폐기물 발생 사유, 발생자, 발생일시, 반입차량, 반입한 날짜를 폐기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폐기물 반입을 일시 제한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폐기물 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반입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보호와 환경 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자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을 금지·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반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방법을 위반한 경우
4.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
5. 불연성 폐기물이나 별표 3의 반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6. 폭발과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7.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표 4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준수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종류와 양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반입차량 준수사항) ① 반입차량은 청소등록차량,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차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한다.

② 반입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출입 시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무단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

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반차량은 악취, 비산(飛散), 분진 발생을 예방하고, 폐기물과 침출수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압축 적재함이 장착된 차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재함을 밀폐하고 오수·누수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운반차량은 외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요 시 검사를 거쳐 계량한 후 운영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처리시설에 하역하여야 한다.

⑦ 하역한 모든 차량은 지정된 세륜 시설을 통과하여 세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 제재) 폐기물 반입차량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반입차량 등록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나 행위자 소속 업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입등록을 취소하고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거나 제13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이 제한된 경우
2.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한 경

우

### 3.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의 관리위탁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주민편의시설 위탁) 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수탁자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위탁 절차 및 방법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위탁업무) ①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에 따른다.

제21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은 위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주시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기술 수준

2. 재정부담 능력

3. 관련 분야의 책임능력 · 전문성 확보 여부

② 제1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을 위탁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운영계획을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 · 운영에 필요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성실히 운영 ·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축 · 개축 ·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반납받아야 한다.

제27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시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주민편의시설의 사용료) 시장은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장이 정한 사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4장 지역주민의 감시

제31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처리되는 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에 따라 1일 반입차량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선정한 표본차량에 한정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제7조의 폐기물 반입시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위

촉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감시요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촉 해제할 때에는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한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히,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 등으로 수거차량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본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제33조(주민감시요원의 감독)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의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34조(소각열의 이용) ①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증기·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

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공급자와 수급자 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35조(생산품의 공급)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 사료 및 에너지 등은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 2961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청주시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협약서 또는 계약서상의 위탁기간으로 한다.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치**(제3조 관련)

시 설 명 칭	위 치
청주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969-2(휴암동) 일원
청주시 청주권 광역매립장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산83번지 일원
용정매립장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461-1
문암매립장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100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969-4(휴암동) 일원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청주시 흥덕구 미호로 521번길 103(신대동) 일원
주민편익시설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969(휴암동) 일원

[별표 2]

**폐기물 반입 시간**(제7조 관련)

구 분		요 일	시 간		비 고
시설	시 기		생활폐기물	공사장폐기물	
청주권 광역 매립장	하절기 (4월 1일~10월 31일)	평 일	06:30~14:30	07:30~14:30	※ 공휴일 반입금지 (다만, 공휴일이 토요일 이 나 월요일인 경우 11까지 반입 할 수 있다)
		월 요 일	06:30~15:30	07:30~14:30	
		토 요 일	06:30~11:00	07:30~11:00	
	동절기 (11월 1일~3월 31일)	평 일	07:00~15:00	08:00~15:00	
		월 요 일	07:00~16:00	08:00~15:00	
		토 요 일	07:00~11:00	08:00~11:00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연 중	평 일	06:00~15:00		※ 공휴일 반입금지
		토 요 일	06:00~11:00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연 중	평 일	08:00~16:00		
		월 요 일	08:00~16:00		
		토 요 일 일 요 일 공 휴 일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연 중	연 중	00:00~24:00		

[별표 3]

**반입대상 폐기물**(제8조제2항 관련)

구분 폐기물처리시설	반입대상 폐기물	비고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가연성폐기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활용이 안 되는 폐종이류</li> <li>2. 나무조각류</li> <li>3.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화초류</li> <li>4. 가정에서 배출되는 장롱, 서랍장, 목재 싱크대 등의 대형폐기물</li> <li>5. 그 밖에 가연성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쓰레기</li> <li>6. 음식물류 폐기물(제12조제3항 및 시장이 공공위생상 무단투기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할 경우)</li> <li>7.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하는 폐기물</li> <li>8. 청주시 음식물 처리 후 잔여물</li> <li>9.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li> <li>10. 그 밖에 공공목적상 소각이 필요한 폐기물</li> </ol>	
청주권 광역매립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li> <li>2. 불법투기 폐기물로 행위자 추적이 불가능한 폐기물</li> </ol>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li> <li>2.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li> </ol>	



[별표 4]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준수수칙**(제15조제1항 관련)

1. 모든 폐기물의 반입시간은 시에서 정한 반입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전 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지정폐기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진입 시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쓰레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반입폐기물은 반드시 계량을 하여야 하며, 자동계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비실에 연락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실시하는 쓰레기 질(성질과 상태)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통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폐기물 운반차량은 쓰레기 투입 완료 후 반드시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반입 시 주변에 흘린 폐기물 등은 해당업체에서 청소하여야 한다.
10. 시설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파손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처리시설의 임의 출입 및 시설·장비 조작을 금지한다.
12. 공차중량 계량 시 장착장비 외에 추가장비 부착 시는 공차중량계량 카드를 재발급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별표 5]

## 위반차량 제재기준(제17조 관련)

### ▣ 폐기물처리시설 공통사항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 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개월 같은 위반 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나. 각 반입차량별 제재를 원칙으로 하나 “2. 제재기준 구분 8” 위반 시 사용자 전체 차량의 반입을 금지한다.
- 다.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위반 사항에 따라 각각의 반입금지 일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라.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위반사항은 반입금지 기간 3일을 적용한다.

#### 2. 제재기준

구분	위반 행위(적발)	1차	2차	3차	4차	5차	비고
1	○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반입 등록을 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반입 금지					완납시까지 반입정지
2	○ 분리 수거되지 않은 상태로 적재차량이 10% 이상 혼합쓰레기 반입 시(재활용 미분류, 비규격봉투사용, 불연성폐기물)	경고	반입 금지 3일	반입 금지 5일	반입 금지 10일	반입 금지 15일	즉시 반출 조치
3	○ 청소차량의 청결상태 위반	경고	반입 금지 3일	반입 금지 5일			
4	○ 출입증 및 계량카드 미부착	경고	반입 금지 3일	반입 금지 5일			
5	○ 지시사항 불응 (업무방해, 적발통지서 날인 거부 등)	경고	반입 금지 3일	반입 금지 5일	반입 금지 10일	반입 금지 15일	
6	○ 조례에 의한 지시 사항 및 사용자 준수 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경고	반입 금지 3일	반입 금지 5일	반입 금지 10일	반입 금지 15일	
7	○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금지 15일					즉시 반출 조치
8	○ 제15조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이 파손되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반입금지 1개월					사용자 전체 차량

## ▣ 생활폐기물(광역매립장)

위반행위	제재사항(해당 연도)	비 고
생활폐기물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상물품을 50% 이상 혼합 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차량 반입금지</li> <li>- 1회 위반 : 반출</li> <li>- 2회 위반 : 3일</li> <li>- 3회 위반 : 10일</li> </ul>	재활용이 불가하여 현실적으로 혼합 매립이 불가피한 재활용 폐기물 반입 허용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생활폐기물 반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폐기물 반출</li> <li>• 혼합 비율에 따라 차량반입 금지</li> <li>- 30~50% 미만 : 3일</li> <li>- 50~80% 미만 : 5일</li> <li>- 80% 이상 : 7일</li> </ul>	가로청소차량 제외 화재 발생 잔재물 제외 불법투기된 폐기물 수거량은 제외
운반 시 오수 또는 폐기물의 낙하 및 난폭 운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차량</li> <li>- 1회 위반 : 경고</li> <li>- 2회 위반 : 반송</li> <li>- 3회 위반 : 3일 반입금지</li> </ul>	
조례 제8조 위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차량 반입 금지</li> <li>- 1회 위반 : 3일</li> <li>- 2회 위반 : 10일</li> <li>- 3회 위반 : 30일</li> </ul>	

※ 음식물쓰레기 수거 제외 지역은 해당 없음

## ■ 생활폐기물(광역소각장)

구 분	위반행위(적발)	제 재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4차	5차	
일반쓰레기	가연성쓰레기가 아닌 불연성 쓰레기 10%이상 혼합 반입 시	경고	회차	반입 금지 (3일)	반입 금지 (5일)	반입 금지 (10일)	※ 정상은 육안으로 판단
규격봉투	규격봉투 사용치 않는 쓰레기 10%이상 혼합 반입 시	경고	회차	반입 금지 (3일)	반입 금지 (5일)	반입 금지 (10일)	※ 정상은 육안으로 판단
음식물쓰레기	미분리된 음식물 20%이상 혼합 반입 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제외지역 제외	경고	회차	반입 금지 (3일)	반입 금지 (5일)	반입 금지 (10일)	※ 정상은 육안으로 판단
재활용품	미분리된 재활용품 20%이상 혼합 반입 시	경고	회차	반입 금지 (3일)	반입 금지 (5일)	반입 금지 (10일)	※ 정상은 육안으로 판단
비반입 폐기물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 10%이상 혼합 반입 시 [단, 의료(감염성)폐기물, 동물사체, 산업폐기물은 제외]	경고	회차	반입 금지 (3일)	반입 금지 (5일)	반입 금지 (10일)	※ 정상은 육안으로 판단
광역쓰레기	타시·군 쓰레기 반입 시	“반입차량 영구 출입금지”					
기타사항	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불이행시(업무방해, 적발 날인거부)	경고	회차	반입 금지 (3일)	반입 금지 (5일)	반입 금지 (10일)	
	다른 차량카드 소지 출입 시	경고	반입 금지 (5일)	반입 금지 (10일)	-	-	
	청소차량의 청결 불량 시	경고	회차	반입 금지 (3일)	-	-	

## ■ 하수준설토(광역매립장)

위반행위	제재사항(해당 연도)	비 고
하수 준설토 차량에 준설토가 아닌 이물질 혼합반입(분리수거가 안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차량</li> <li>- 1회 위반 : 반송</li> <li>- 2회 위반 : 3일</li> <li>- 3회 위반 : 10일</li> </ul>	
하수 준설토 차량에 준설토 외 폐기물 위장 반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폐기물 반출조치</li> <li>혼합 비율에 따라 해당 차량 반입 금지</li> <li>- 30 ~ 50% 미만 : 3일</li> <li>- 50 ~ 80% 미만 : 5일</li> <li>- 80% 이상 : 7일</li> </ul>	

■ 공사장 폐기물(광역매립장)

위반행위	제재사항(해당 연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장폐기물 차량에 재활용가능 물품 등 혼합 반입 시</li> <li>• 최대직경 50cm 이상 크기로 반입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차량 반입금지</li> <li>- 1회 위반 : 반송</li> <li>- 2회 위반 : 3일</li> <li>- 3회 위반 : 10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장폐기물 차량에 사업장 폐기물 (가내공업폐기물) 혼합 반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폐기물 반송</li> <li>• 혼합 비율에 따라 해당운반업체 건설폐기물 전체 차량 반입 금지</li> <li>- 50% 미만 : 3일</li> <li>- 50% 이상 : 10일</li> </ul>	

■ 그 밖의 사항(공통사항)

위반행위	제재사항(해당 연도)	비 고
경미한 사항 위반 시 (노상 방류, 비산, 시·군 미표시, 반입시간 위반, 전용도로 주정차 등 기타사항)	해당차량 경고	-시 가로청소차량 제외 -화재발생 잔재물 제외 -불법 투기된 생활폐기물 제외
감시업무 방해 및 매립지 저해 차량 (지시 불이행)	해당차량 반송	
반입 규정 위반 차량 적발 통지서 날인 불응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 3일 반입금지 (사실확인 입증 운전자 제시)	-규정 위반차량 적발 시 날인 거부행위 상습 방지
카드 대여 및 대여 받은 차량, 박스 교체	해당 차량 7일간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가능한 자의 범위**(제19조제2항  
관련)

구 분	위탁 가능 범위	비고
<p align="center">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p>	<p>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2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시설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li> <li>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 경우에 한정한다.)</li> <li>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li> <li>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li> <li>5.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같은 법 제17조의4에 따라 출자한 법인(「폐기물처리시설 시설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li> <li>6. 「폐기물처리시설 시설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5호에 따른 다음 기관(「폐기물처리시설 시설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출자법인</li> <li>나. 동일분야 시설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li> </ul> </li> </ol>	
<p align="center">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p>	<p>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자</li> <li>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를 받은 자로 선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li> <li>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시가출자한 법인</li> </ol>	
<p align="center">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p>	<p>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환경공단</li> <li>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li> <li>3.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li> <li>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기준에 맞는 자</li> </ol>	

[별지 제1호서식]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			
차량번호		차량용적량	
공차중량	kg	차 종 및 형 식	
차량소유자	상호 :	대 표 자	
	주소 :	전화번호	
운반폐기물 종 류			
<p style="text-align: center;">「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청 주 시 장    귀 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li> <li>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li> <li>3. 공차중량 계량 시의 차량 전·후·좌·우(4면) 사진 각 1부. (부착장비 등 이 보일 수 있도록 상세 근접 촬영)</li> </ol>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차량등록번호	
차종 및 형식	
상호(업체명)	
소 유 자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바탕 색상은 녹색으로 한다.



## 계 량 카 드

 CHEONGJU <b>청 주 시</b>
카드번호 : 차량번호 :
이 카드는 <b>청주시</b> 의 재산입니다. 이 카드를 습득하신 분은 <b>청주시자원관리사업소</b>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습득신고 : 043-200-4952</b>
<b>청주권 광역 소각시설</b>

85mm

54mm

[별지 제4호서식]

<b>생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서</b>				
차량번호		차량용적량		
공차중량	kg	차종 및 형식		
차량소유자	상호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운반폐기물 종 류				
변경(말소, 재발급)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사 유
<p>「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차량의 변경(재발급, 말소)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청 주 시 장    귀 하</p>				
<p>구비서류</p> <p>1. 자동차등록원부</p> <p>2. 발급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p>				

## 계량카드 재발급신청서

1. 소 속 기 관 :
2. 차 량 번 호 :
3. 폐기물 종류 :
4. 재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귀 하

### 처 리 내 용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인

결			
재			

[별지 제6호서식]

### 계량카드 발급대장

일 련 번 호	신 청 인						차 량 번 호						카 드 번 호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발 급 사 유	차 량 번 호	용 도	총 중 량 ( 공 차 중 량)	차량소유자			
										성 명 (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b>계 량 확 인 서</b> (소각장보관용)		제 호 <b>계 량 확 인 서</b> (반입자보관용)	
구 별		구 별	
반입일시	년 월 일 시 분	반입일시	년 월 일 시 분
차량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운반업체명		운반업체명	
운전자(성명)		운전자(성명)	
반입장소		반입장소	
반입품명		반입품명	
반 입 량	kg	반 입 량	kg
총 무 계	kg	총 무 계	kg
공차무게	kg	공차무게	kg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폐기물계량확인서를 교부합니 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취급자 (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폐기물계량확인서를 교부합니 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취급자 (인)	

[별지 제8호서식]

### 폐기물 반입대장

일련 번호	ID 번호	차량 번호	업체명	폐기물 종 류	입고	1차 계량	2차 계량	평균 중량	반입량 (입고-출고중량)
					출고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30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함.
- 주민지원기금 지원의 대상(안 제4조, 제9조)
-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안 제5조, 제10조)
-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3월 26일 ~ 2014년 4월 15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청주권 광역매립장을 말한다.

###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제3조(기금의 조성)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가산금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

례」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 4.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 지원대상)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주민에게 지원한다.

1.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
2.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사항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총당금
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의 결손 총당금
4.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

제6조(기금의 수입·지출)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

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제7조(기금의 지원) 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으로 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따른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까지로 한다.

제9조(기금지원 대상) 주민지원기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민에게 지원한다.

제10조(기금의 용도) 주민지원기금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 제4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3조 및 제7조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금운용 관련 담당국장

2. 청주시의회 의원

3. 환경분야 교수

4. 변호사

5. 회계사

6. 금융기관 관계자

7. 해당 지역 동장

8. 주민대표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제1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제5조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74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지원기금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기금 관리 대 장

(단위 : 원)

연월일	예 금				인 출 (또는 예금해지)		잔 액	비 고
	예금 종류	금 액	이 율	예금기관	적 요	금 액		

[별지 제2호서식]

## 기금지급대장

(단위 : 원)

연월일	적요	채주	지급액	잔액	비고



[별지 제3호서식]

## 현금출납부

(단위 : 원)

년		적 요	채 주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월	일					



#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0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청주랜드관리사업소)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청주시 「청주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시설운영 관리조례」를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입장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입장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랜드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중학생·고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군경"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을 말한다.
7. 시설물
  - 가. "어린이회관"이란 본관, 제1전시관, 제2전시관, 제3전시관, 생태관,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어린이 회관에서 사용되는 장비 모두를 말한다.

나. "동물원"이란 사무실, 관리자, 사육시설 및 부대시설, 동물, 동물원에서 사용되는 장비 모두를 말한다.

다. "부대시설"이란 놀이동산, 가게, 식당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관리와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들에게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등 게시) 시장은 관람객 및 사용자의 준수 사항, 입장요금표, 시설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장 관람

제5조(입장료) ① 청주랜드의 시설물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동물원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입장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물원 입장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
2. 어린이날 또는 국경일에 입장하는 어린이
3. 아이사랑카드를 지참한 사람
4. 노인
5.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나. 교사의 인솔 하에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청주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생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  
람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9. 군인, 경찰이 정복을 착용하거나 증명서를 제시하고 입장할 때

10. 단체로 입장할 때 인솔자

1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의 하나로 관람하는 개  
인 또는 단체

12. 그린카드를 지참하고 입장하는 사람

13.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대상자. 이 경우 해당 증명서  
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제한) ① 시장은 시설보호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고 판단할 때에는 입장하는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장할 경우에  
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이나 동물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청주랜드의 안전 관리·유지 상 위해(危害)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

### 제3장 시설물의 사용

제8조(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청주랜드의 어린이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회관과 동물원 사용은 경쟁입찰에 따라 사용자를 정하며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부대시설을 제외한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 승인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승인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승인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

한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 신청  
할 때

4. 그 밖에 청주랜드 관리·유지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 승인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에는 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사용의 제한, 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제13조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했을 때

4.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필요할 때

5.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② 제1항제2호, 제3호와 제5호에 따라 사용승인 취소 등을 하였을 경  
우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시설 사용료) ① 청주랜드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간 사용요율에 대해서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② 기준시간을 초과사용 시 산출기준은 각 관람권의 액면금액에 따라  
정산한다.

③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제1항의 사용료를 부담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설비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청주랜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 신청한 경우로서 취소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이 취소된 때

제12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청주랜드의 시설물을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영리사업일 때
2. 재해 등으로 본래 사용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시설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31호 청주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시설운영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시설 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 사용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 입 장 료

시 설 명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개 인	단 체	
어린이회관			무 료	무 료	
동 물 원	어 린 이	1명 1회	500원	400원	
	청소년·군경	"	800원	600원	
	어 른	"	1,000원	800원	

※ 단체 : 20명 이상

[별표 2]

□ 시설사용료

1. 시설물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1. 명 암 홀	오전(09:00-13:00)	20,000원	※초과할 경우 사용료 계산 : 1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5% 가산(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오후(14:00-18:00)	20,000원	
	야간(18:00-22:00)	40,000원	
2. 매점(식당) 3. 유원시설 4. 기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시장이 정한다.		

2. 설비

설 비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1. 마이크(1조)	1회	5,000원	1회란 1일 이내의 사용을 말한다. (다만, 오전, 오후 등 일부만 사용하였을 때에도 1회 사용으로 한다)
2. 피아노	1회	60,000원	
3. 조명	1회	10,000원	
4. 냉·난방료	1회	75,000원	

3. 과학오락기

오 락 기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1. 게임기	1회	500원	
2. 회전목마	1회	· 어린이 : 800원 · 청소년 : 1,000원 · 어 른 : 1,700원	※ 사용자 구분 · 어린이 : 12세 이하의 사람 ·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미만인 사람 · 어 른 : 20세 이상의 사람
3. 미니기차	1회	· 어린이 : 700원 · 청소년 : 800원 · 어 른 : 1,000원	
4. 공중자전거	1회	· 어린이 : 700원 · 청소년 : 800원 · 어 른 : 1,000원	
5. 박치기차	1회	· 어린이 : 900원 · 청소년 : 1,200원 · 어 른 : 1,700원	
6. 우주전투기	1회	· 어린이 : 1,000원 · 청소년 : 1,300원 · 어 른 : 1,700원	

[별지 제1호서식]

청주랜드 시설사용 신청서

신청인	주소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연락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시설	기본시설	1. 명암홀		
	부속시설	마이크( 조), 피아노, 조명, 냉방 · 난방, 그 밖의 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용시간 :         ~         (    일    회)		
사용목적 주요행사내용				
입장료징수유무		대인                  원 소인                  원 유                                  무		
비고		붙임 : 주요행사 계획서 1부		
<p>「청주시 청주랜드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신청인 주소</p> <p>                                성명    (인)</p> <p>청주시장    귀 하</p>				



---

# 폐 지 조 례 안

---





# 청원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0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종전 조례제명의 띄어쓰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원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원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폐지조례안

청원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0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종전 조례제명의 띄어쓰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0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정보통신과)

## 1. 제안이유

- 1993. 10. 15. 제정된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는 2011. 3. 29.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으며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원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0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기획경제실 지역경제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원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3월 26일 ~ 2014년 4월 15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원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청원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원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0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 새로 제정되는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원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원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폐지조례안

청원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원군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0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청 주 시 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청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통합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원군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원군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청원군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원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0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 통합 청주시 규모에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어 위 조례를 폐지 후 향후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제정 검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원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원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청원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원군 읍·면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1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 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종전의 청원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원군 읍·면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원군 읍·면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청원군 읍·면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1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 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 종전의 청주시 구·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주시 행정절차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1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1. 제안이유

- 2003. 4. 11. 제정된 「청주시 행정절차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며,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주시 행정절차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주시 행정절차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행정절차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주시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1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1. 제안이유

- 2005. 10. 14. 제정된 「청주시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며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주시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2006.5.16)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4월 15일 ~ 2014년 5월 5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주시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 번호	31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 2011. 11. 11. 제정된 「청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과 사업이 중복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며,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주시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1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 2010. 1. 8. 제정된 「청주시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운영 실적 저조와 실효성 및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주시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주시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원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16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1. 제안이유

- 1986년 청원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본 조례는 제정된 이후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며,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 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원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원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청원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원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17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실효성 및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원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원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청원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원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18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가 광역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며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원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원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청원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19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1.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가 광역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며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20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교육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 2007. 1. 5. 제정된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원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21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농정국 농업정책과)

## 1. 제안이유

- 2000년 청원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농촌용수구역 설정 및 이용계획이 없으며 위원회 또한 운영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 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원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원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청원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원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22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농정국 친환경농산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 향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3.3.24)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원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원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청원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23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농정국 축산과)

## 1. 제안이유

- 2008. 6. 13. 제정된 「청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를 「동물보호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며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1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원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24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

## 1. 제안이유

- 현재 출산장려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동안 시행되고 있지 않은 조례로 실효성이 없으며,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원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원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청원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원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25
----------	-----

제출연월일 : 2014. 7. 1.

제출자 : 청주시장  
(소관부서 :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

## 1. 제안이유

-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따라
- 「의료법」 제62조(의료촉탁)가 삭제되고, 그동안 시행되고 있지 않은 조례로 실효성이 없고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원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2개 시·군 소관부서와 합의 필
- 라. 입법예고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0일 ※ 특이사항 없음
- 마. 기 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조례안 : 붙임

청주시 조례 제 호

## 청원군 축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청원군 축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